제국의 이중성

근대 독도를 둘러싼 한국 · 일본 · 러시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러두기

* 러시아어는 러시아 원음에 가깝게 표기했다. 예를 들면 페테르부르크를 '뻬쩨르부르크'로 표기했다.
* 러시아인의 시간적 활동에 대해서 러시아력을 채택했는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러시아력과 양력을 함께 표기했다. 19세기 러시아력을 양력으로 전환하려면 12일을 더하면 된다.
* 이 책은 2018년 EBS 10부작 '독도채널c', YTN 5부작 '독도인물사전', 2019년 YTN 3·1절 특집 다큐멘터리 등의 시나리오로 활용되었다.
* 이 저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NRF-2014S1A6A402590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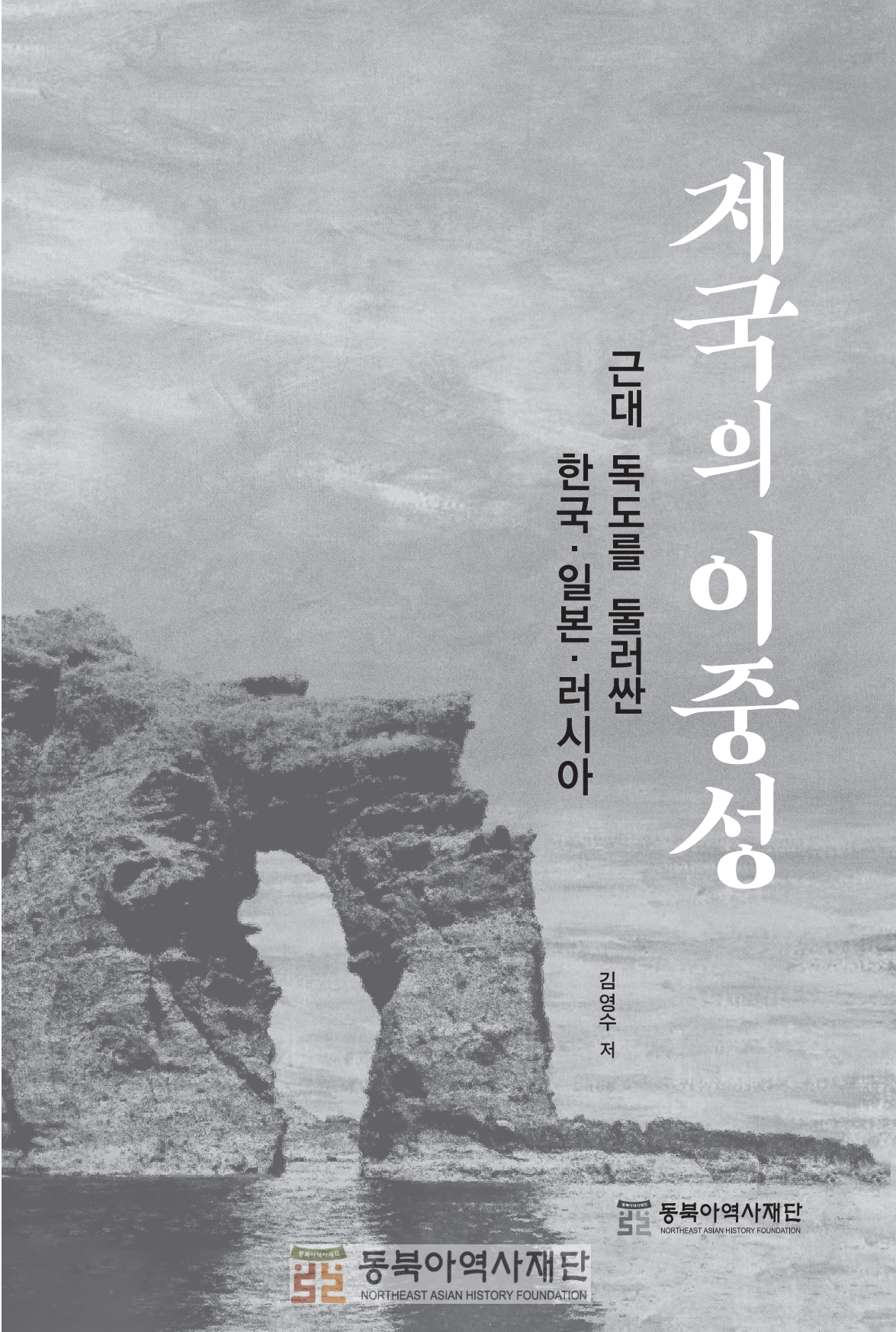

계국의 이중성

근대 독도를 둘러싼 한국·일본·러시아

김영수 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눈앞에는 광활한 아무르만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의 안개 띠처럼 보인다. 이곳이 세상 끝이고 이제 멀리로는 더 항해할 수 없는 듯하다. 마치 오디세우스가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며 기이한 존재들을 만나리라고 예감하던 그런 마음이 영혼을 사로잡는다.
>
> –체홉, 『사할린섬』, 2부 1장

10년이 훌쩍 지났다. 2008년 독도연구소에 들어와서 어느덧 2019년이 되었다. 그사이 필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독도를 방문했다. 처음 독도에 들어갔을 때 받은 인상은 커다란 돌섬이 동해에 우뚝 서 있는 느낌이었다.

초여름 독도의 동도에서 주변을 조용히 살펴본 느낌은 이랬다. 등 뒤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선착장 파도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저 멀리 하늘과 파도가 맞닿아 있었다. 옅은 희뿌연 파란 하늘과 연푸른 파도가 함께 보였다. 에메랄드빛 파도가 눈부시게 부서졌다. 잠시 후 비가 한두 방울 떨어졌다. 등 뒤에서 차가움과 서늘함이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렇게 눈부신 에메랄드 빛이 나에게 다가왔고 그 마법에 홀리듯 독도에 관한 학술서를 쓰기로 결심했다.

2009년 여름 필자는 유럽을 향하는 창으로 불리는 뻬쩨르부르크(Петербург)로 향했다. 그 도시에 소재한 해군함대문서보관소(РГАВМФ) 소장 한국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뻬쩨르부르크 바로 위에 위치한 러시아의 발틱함대가 있는 끄론쉬따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Кронштадт)를 답사하기 위해서였다. 러시아는 2개의 해양 거점지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블라디보스톡과 끄론쉬따트다.

해군함대문서보관소는 명칭 그대로 러시아 해군부의 문서를 총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두 차례 이상 한국을 방문한 극동총독 알렉세예프(Е.И. Алексеев)의 문서,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에 침몰한 드미뜨리 돈스꼬이(Дмитрий Донской) 문서, 한국 해안지도를 소장한 지도 컬렉션은 나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끄론쉬따트는 러일전쟁 당시 뤼순에서 사망한 태평양함대사령관 마까로프(С.О. Макаров)의 거리가 있을 정도로 러시아 해군을 위한 도시였다. 지금은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건설되어 뻬쩨르부르크에서 차로 3시간 이상을 달리면 비교적 쉽게 끄론쉬타트를 방문할 수 있다. 끄론쉬타트로 가는 날 날씨는 화창했지만 밀려오는 파도의 검푸른 물결이 넘실거렸다. 러일전쟁 당시 끄론쉬따트에서 출발한 러시아 발틱함대는 대서양을 거치고 인도양을 지나 동해에 도착했다. 6개월이 넘는 긴 항해였지만 러시아 함대는 동해에서 대부분 침몰했다. 1905년 5월 러시아 해군은 참혹한 최후를 맞았다.

그런데 1854년 4월 조선 동해안을 조사했던 전함 팔라다호의 기념비가 끄론쉬따트에 있었는데, 일본인 단체 관광객이 기념비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목격했다. 사실 팔라다호는 일본과 청국과의 조약 체결을 위해서 동해에 파견되었고, 러시아와 일본은 1855년 시모다조약(下田條約)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하지만 동일한 이름으로 1899년 건조된 장갑함 팔라다호는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4년 12월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 일본인 관광객을 보면서 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나는 끄론쉬따트의 강렬한 검푸른 빛깔을 떠올린다. 그때 비로소 울릉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와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시선을 넘어서 러시아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끄론쉬따트의 검푸른색은 나에게 러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고 뻬쩨르부르크 근교 관련 클래식을 찾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19세기 후반 제정러시아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음악가 차이콥스키(П.И. Чайковский, 1840–1893)와 작가 안톤 체홉(А.П. Чехов, 1860–1904)을 만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권력과 인간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에게 던져주었다.

차이콥스키는 1868년 교향곡 1번(Tchaikovsky Symphony No.1) 〈겨울날의 환상(Зимние грёзы)〉을 작곡했다. 낮에는 학교에서 강의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창작에 몰두해 만든 첫 번째 교향곡이었다. 이 교향곡은 뻬쩨르부르크 근교 라도쥐스꼬예(Ладожское) 호수에 대한 추억이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저무는 광야, 무섭고도 매몰찬 눈보라, 안개 자욱한 환상 속에서 러시아의 자연과 인간을 생각하며 창작한 겨울날의 꿈같은 환상곡이었다. 첫 번째 교향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간과 민족에 대한 웅장하면서도 쓸쓸한 작품이었다. 혹시 권력 앞에 무너진 인간의 슬픔이 처절하기 때문에 그토록 아름다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을 들어보았다면 광활한 자연 앞에 선 인간의 고독이 담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1번의 환상적인 조화도 들어보길 독자들에게 추천한다.[1]

동시대를 살았던 음악가 차이콥스키와 작가 체홉은 예술적으로 교류했다. 체홉은 1888년 12월 차이콥스키의 동생인 극작가 마제스트 일리이치(Модест Ильич)를 알

---

1 차이콥스키는 1866년 3월 모스크바음악원의 전신인 음악교실에서 교편을 잡자마자 그해 26세의 나이에 교향곡 1번을 작곡했다. 초연은 1866년 12월 모스크바에서 3악장만 연주되었다. 1악장은 겨울날의 환상, 2악장은 안개의 땅, 3–4악장의 주요 선율은 1861년 카잔에서 학생운동 중 불렸던 '꽃이 피었네'라는 민요가 바탕이었다. 차이콥스키의 곡은 러시아인의 삶은 물론 민요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한상희, 『겨울날의 幻想 속에서』, 좋은 땅, 2012, 207–21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게 되었다. 체홉은 마제스트의 오찬에 초대받아 자연스럽게 차이콥스키를 만날 수 있었다. 그 후 체홉은 단편집 『해질녘에(В сумерках)』(1887년 출판) 초판을 차이콥스키에게 전달했다. 체홉은 이미 차이콥스키의 1888년 교향곡 5번(Tchaikovsky Symphony No.5)을 즐겨 들을 정도로 차이콥스키를 존경하고 있었다.

체홉은 1889년 10월 모스크바에 있는 차이콥스키의 집(Садовой-Кудринская улица)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체홉은 차이콥스키가 구상 중이던 오페라 레르몬또프의 소설 〈벨라(Бэла)〉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차이콥스키는 1889년 10월 14일자 서명이 들어간 자신의 사진을 체홉에게 선물했다. 1890년 봄 체홉은 단편집 『우울한 사람들(Хмурые люди)』을 출간하며 차이콥스키에게 헌정했다. 그 단편집의 첫 장에 '차이콥스키를 기념하며'라는 문구가 실렸다. 체홉은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ЕвгенийОнегин)〉을 즐겨 들었다. 체홉은 1889년 완성된 희곡 『숲의 요정(Леший)』('바냐 아저씨'로 개작)에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의 렌스키 아리아를 삽입했을 정도였다.[2] 체홉은 1892년 모스크바 근교 멜리호보(Мелихово)의 작업실에 차이콥스키의 사진을 걸어두었다.

그런데 체홉은 1890년 시베리아와 사할린섬을 여행한 후 현장보고서 「사할린섬」(1893-1894)을 발표했다. 체홉은 1890년 9월 11일 "나는 사할린섬에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고, 늦게 잠들 수밖에 없었다. 생각에 사로잡혀 모든 나날이 극도의 긴장이었다"라고 편지에 적었다.[3] 사할린은 당시 러시아 본토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유형지였는데,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속고 속이고 울고 웃으며 한평생을 보내는 인

2 Балабанович Е.Е. Чехов и Чайковский(체홉과 차이콥스키). М. 1970. СС.88-108.

3 김영수, 「해제: 사할린섬과 갈매기」, 『안톤 체호프 사할린섬』, 동북아역사재단, 2013, 32-33쪽. 이 번역서는 2013년 프레시안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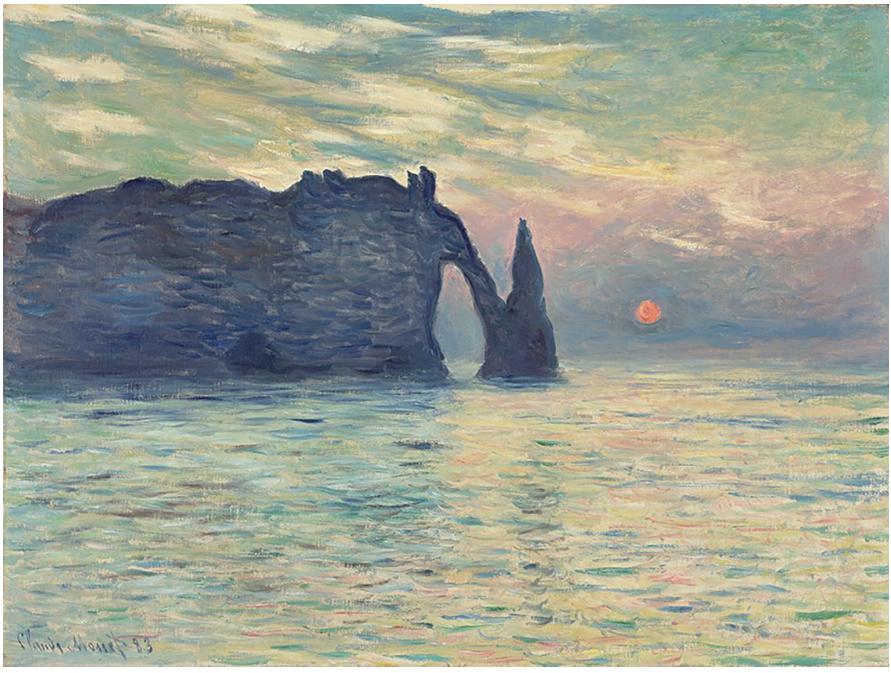

모네의 〈암벽, 에트르타, 일몰〉(1883)

간의 단면에 대해서 궁금한 독자에게 일독을 권한다.[4]

나는 독도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주변의 코끼리바위, 독립문바위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그림이 화가 모네가 1883년에 그린 〈암벽, 에트르타, 일몰(The Cliff, Étretat, Sunset)〉이었다. 동해 독도에서 본 독립문바위의 모양이 노르망디 에트르타에도 비슷하게 있었다. 자연이 깎아놓은 '독립문바위' 모습

4 김이경, 「가난한 이주농에 대한 성실한 탐구」, 『주간경향』 1065호, 2014. 3. 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서양과 동양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경이로웠다. 자연은 서양과 동양에 모두 공평하게 존재했고, 근대 서양인과 동양인의 사고도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모네(Oscar-Claude Monet, 1840-1926)를 통해서 인상주의 회화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다. 모네는 1883년부터 1886년까지 르아브르 근처의 해안 에트르타의 자연을 그리며 성숙해지기 시작했다. 〈암벽, 에트르타, 일몰〉은 빛의 변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각기 다른 인상을 포착하려는 체계적인 시도였다. 1885년 모네의 작업에 대한 모파상의 회상에 따르면 "그는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다른 효과를 보이는 동일한 주제를 표현하려 했다. 그는 하늘의 변화에 따라 캔버스를 집어 올리고 옆으로 치우기를 반복했다." 그림은 모든 질적인 측면을 충족함으로써 완성된다는 모네의 생각 때문에, 연작(聯作)을 위한 이러한 기본 원리는 모네로 하여금 우연히 마주친 자연과 접촉한 자신의 모습을 기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5]

인상파는 빛과 자연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그림에 담았는데, 순간적으로 변하는 색채와 빛에 따라 자연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에 기초를 두었다. 후기인상주의는 도시와 토속(土俗)에 자신의 마음을 그렸는데, 화가들은 순수하고 밝은 색채, 짧은 붓놀림으로 형태의 윤곽을 그리는 기법, 전통적인 주제로부터의 탈피 등에서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더 풍부한 표현을 위해 그들의 제한된 목표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음악 분야에서 프랑스 인상주의를 개척했다고 평가받는 포레(G. Faure, 1845-1924)의 작품을 듣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피아노 반주가 붙은 리트(Lied: 독일 가곡)는 프랑스대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급부상했다. 포레는 드뷔시와 라벨 이전 프

5 폴 스미스, 『인상주의』, 예경, 2002, 101-10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랑스의 멜로디를 독일 가곡에 필적하는 장르로 격상시켰다. 그는 실내악에서 형식의 집중과 유려한 악상 처리가 돋보이는 작품을 작곡했다.[6]

포레가 1894년에 작곡한 야상곡(Nocturnes No.6 in D flat Major Op.63)은 잔잔한 물결 앞에 있는 뜨거운 영혼의 인간을 떠올리게 하는 곡으로 모네의 〈암벽, 에트르타, 일몰〉의 그림과 절묘하게 어울렸다. 1937년 파리에서 처음으로 국제음악경연이 열렸는데, 포레의 피아노 야상곡 제6번을 가장 훌륭하게 연주한 사람이 우승할 정도로 포레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7] 그는 1892년 파리음악원 교수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음악원 교수들이 그의 음악을 불온한 모더니즘이라고 결사반대하여 지방 음악원의 감독관을 맡은 아픔을 갖고 있었다. 그의 음악은 화성과 멜로디의 변화가 핵심이었는데 단순한 리듬형을 반복 사용하여 곡의 통일성을 유지했다. 나는 지금도 포레의 음악을 들으면 근대 음악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들 속에서 개인적인 불운들을 헤치며 그토록 아름답게 표현한 그의 선율을 사랑한다.

이번 책을 쓰면서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다.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지리학 분야의 학자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10년 동안 독도연구소에 몸담으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독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우선 독도연구소의 10년 세월을 정리하고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동북아역사재단 김도형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석사논문을 혹독하게 지도해주신 성균관대 서중석 명예교수님, 석사시절 연구자로서의 기초를 가르쳐주신 성균관대 임경석 교수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유학시절 늘 사료와 해석을 강조하며 박

---

6 김용환, 『19세기 음악』, 음악세계, 2005, 276-277쪽.

7 요한 하위징아, 『호모 루덴스』, 연암서가, 2010, 31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논문을 지도해준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아이로뻬또프(O.P. Айропетов) 교수님께 늘 감사하다. 역사 분야에서 초창기 독도 연구를 이끌었던 전 서울대 신용하 교수님, 전 단국대 송병기 교수님에게 경의를 표한다. 국제법 분야에서 나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던 박현진 전 독도연구소장, 유하영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국방대학교 김병렬 교수, 한남대 이석용 교수, 부산대 박찬호 교수, 인하대 김현수 교수, 인천대 노영돈 교수, 양희철 해양정책연구소장에게 감사드린다. 근대사에서 독도 연구로 커다란 자극을 준 동국대 한철호 교수님, 현대사에서 독도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 이화여대 정병준 교수님, 독도 자료와 연구의 방향을 알려준 국사편찬위원회 박진희 편사연구관에게 감사드린다. 독도연구소에서 10년 이상 함께 고생한 전 독도연구소장 곽진오, 전 독도연구소장 홍성근, 전 독도체험관장 정영미 박사님에게 감사하다. 지금도 독도연구소에서 함께 공동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관원, 이원택 박사님에게도 감사드린다. 또한 10년 동안 독도와 동해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김영원, 신길수, 류광철, 장동희 전 국제표기명칭 대사님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표지 사진을 흔쾌히 제공해주신 동아지도 안동립 대표에게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지난 10년 동안 나의 고민을 들어준 소중한 선후배 모두에게 고개를 숙인다.

이 책은 2018년 EBS 10부작 '독도채널e', YTN 5부작 '독도인물사전', 2019년 YTN 3·1절 특집 다큐멘터리 등의 시나리오로 일부 활용되었다. 함께 영상을 제작하며 나의 상상력을 자극한 박철원 기자, 유동아 피디, 허성호 피디, 유승재 피디 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현실 감각을 일깨워준 조종엽, 유원모, 문소영, 박동미, 옥유정, 박상현 기자 등에게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을 꼼꼼히 검토하고 디자인해주신 성미애, 박윤희 선생님에게 감사드린다.

나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달력을 바꾸면서 최근 3년 동안의 탁상 달력을 함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구공간에 함께 놓아두었다. 그 달력들을 보면서 작년보다 성장하는 나를 꿈꿨다. 여전히 현실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2012년 『미쩰의 시기』 출간 이후 2019년 『제국의 이중성』을 완성하면서 다음에 나올 학술서를 또다시 꿈꾼다. 그것은 오디세우스가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며 기이한 존재들을 만나리라고 예감하던 그런 마음이다.

2019년 6월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저자의 글 5

프롤로그 19

머리말

I. 들어가며 33
II. 서양의 독도 발견 및 러시아의 한국 해양탐사 35
III. 1870년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해양탐사 38
IV. 울릉도 개척·삼림·어업을 둘러싼 조선, 일본, 러시아의 활동 41
V.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47
VI. 나오며 50

제1부 러일의 해양탐사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장 독도와 동해를 포함한 러시아의 해양탐사

팔라다호의 해양탐사와 러시아의 울릉도·독도 발견

I. 들어가며 56
II. 팔라다호의 구성과 운영 및 곤차로프의 항해 이유 60
III. 발트해-보닌제도 및 나가사키-시베리아 항해 과정 63
IV. 러시아 함대의 울릉도·독도 발견 76
V. 나오며 80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탐사와 곤차로프의 조선·일본·중국 인식

I. 들어가며 83
II. 팔라다호의 조선 방문과 곤차로프의 조선 인식 86
III. 팔라다호의 일본 방문 및 곤차로프의 일본과 중국에 대한 시선 99
IV. 나오며 104

19세기 후반 러시아 함대의 조선 해양탐사

I. 들어가며 107
II. 한러수교 이전 러시아의 해양탐사 111
III. 아관파천 이전 러시아의 해양탐사 115
IV. 나오며 12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장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해양탐사와 일본 외무성의 조사 결과

I. 들어가며 128
II. 세와키 히사토의 블라디보스톡 출장과 '죽도'와 '송도' 인식 131
III. 도다와 무토의 '죽도'와 '송도'개척 요구와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 144
IV. 사이토 시치로베에와 무토 헤이가쿠의 송도개척 요구와 일본 정부의 조사 152
V. 송도개척 재요구와 일본 외무성의 결정 160
VI. 나오며 170

3장 울릉도 이주·삼림·어업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

고종과 이규원의 울릉도와 독도 위치와 명칭에 관한 인식 과정

I. 들어가며 174
II. 조선시대의 울릉도 정책 및 이규원의 검찰사 임명 177
III.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주요 내용 및 참고자료 181
IV. 『동국문헌비고』의 주요 내용 및 참고자료 185
V. 고종 시대 울릉도와 우산도 인식과 명칭 194
VI. 나오며 198

이규원과 이명우의 울릉도 조사와 조선 정부의 울릉도 이주정책

I. 들어가며 201
II. 고종의 울릉도 검찰관 파견과 활동 203
III. 고종의 밀지와 이명우의 울릉도 파견 226
IV. 고종의 울릉도 개간과 조선의 울릉도 관할 230
V. 나오며 242

4장 대한제국의 울릉도 조사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우용정의 울릉도 파견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I. 들어가며 246
II. 라포르트의 울릉도 조사 249
III. 울릉도의 관제개혁과 우용정의 울릉도 파견 과정 260
IV. 울릉도 불법침입 일본인 문제 합법화 시도에 대한 대한제국의 외교적 대응 273
V.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과 반포 과정 286
VI. 나오며 29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용정의 울릉도 조사와 한일공동조사단의 활동

I. 들어가며 294
II. 우용정의 울릉도 조사 및 울릉도의 역사와 자연 296
III. 우용정의 울릉도 행정 관할 활동 302
IV. 한일공동조사단의 조사 내용 및 울릉도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대립 308
V. 동래감리서 주사 김면수의 울릉도 조사 324
VI. 나오며 327

제2부 러일의 울릉도·독도 조사, 대한제국의 영토해양 인식과 정책

5장 러시아의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한국 영토해양 조사와 정책

한국의 영토와 해양에 관한 러시아의 조사와 정책

I. 들어가며 332
II.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해양 조사와 정책 336
III. 뽀지오와 뀨네르가 바라본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영토와 영해 344
IV. 나오며 351

러시아 함정 야꾸트호의 울릉도 조사의 과정과 내용

I. 들어가며 353
II. 일본과 한국이 바라본 러시아 함정의 울릉도 조사 과정 356
III. 1903년 러시아 탐사단의 울릉도 조사와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립 366
IV. 나오며 374

6장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일본의 울릉도·독도 조사

일본 정부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의 과정 및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고시의 유무

I. 들어가며 378
II. 나카이 요자부로의 '죽도' 어업과 영토편입 요청 381
III. 일본 정부 관료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 개입 391
IV.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사본 문제와 '고시'의 유무 403
V. 나오며 40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나카이 요자부로의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와 '죽도어업조합'의 조직과 운영

I. 들어가며 412
II. 1905년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의 조직과 운영 415
III. 1906년 '죽도어업조합'의 조직과 운영 423
IV. 나카이의 강치 어업의 독점과 남획 433
V. 나오며 437

7장 대한제국의 영토해양정책

울도군수 배계주와 강영우의 활동과 대한제국의 영토해양정책

I. 들어가며 442
II. 배계주의 임명과 활동 및 일본인의 불법벌목 445
III. 선박 제익선 구입 과정, 전사능 위조사건과 김성술 자살사건 453
IV. 강영우 임명과 활동 및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 459
V. 배계주의 재임명과 활동 463
VI. 울릉도 주재 일본경찰서 설치와 대한제국의 대응 471
VII. 나오며 484

울도군수 심흥택과 심능익의 활동과 대한제국의 영토해양정책

I. 들어가며 487
II. 러일전쟁 이전 심흥택의 활동 및 대한제국의 대응 490
III. 러일전쟁 이후 심흥택의 활동과 대한제국의 독도 수호 501
IV. 울도군수 심능익의 활동과 울릉도 경제상황의 악화 515
V. 나오며 521

8장 석도와 독도 등의 명칭 관련 한국의 인식

I. 들어가며 526
II.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전후 울릉도·우산도·석도·독도의 명칭 530
III. 러일전쟁 이후 울릉도·독도·석도의 명칭과 한국의 인식 537
IV. 나오며 544

맺음말 547
에필로그 565
찾아보기 59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묘석 위에 적힌 것은 바로 죽은 사람이 살아남은 모두에게 보내는 침묵의 메시지다.
>
> – 엘리아스, 『죽어가는 자의 고독』, 1부 9장

영토의식은 근대 민족국가의 성립을 전후하여 '민족'의 연대감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영토의식은 민족의 내부결속과 자아의식을 강화하는 기능을 했고, 동시에 주변국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1]

영토의식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지정학과 공간혁명, 오리엔탈리즘과 제국주의 등이 있다. 지정학과 공간혁명은 영역(공간)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었다. 지정학은 2개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바다와 육지의 관계에 영향을 받은 미국과 영국의 지정학이고, 다른 하나는 대륙 공간에 중점을 둔 독일의 지정학이었다. 지정학은 영역(공간)에서의 힘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2] 일본 지리학계에서도 지정학이란 태평양전쟁과 결합하여 다양한 지정학 운동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3]

영국의 지정학자 맥킨더(Halford J. Mackinder)에 따르면 역사에서 정치적 세력의 실제 균형은, 한편으로 경제와 전략 양쪽을 포함한 지리적 조건의 산물로, 다른 한편

---

1 근대시기 신문은 함께 읽는 의사소통 공동체를 형성해서 민족이라는 상상의 정치공동체를 만들었다. 신문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와 민족의 집단정체성을 내면화했다(Benedict R. O. Anderson,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4, 95쪽).

2 Philippe Moreau Defarges, 이대희 역, 『지정학 입문: 공간과 권력의 정치학』, 새물결, 1997, 15–16쪽.

3 水内俊雄, 심정보 역, 『공간의 정치지리』, 푸른길, 2010, 45–4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으로 서로 경쟁하는 민족의 인원과 조직 등의 상대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었다.[4]

하지만 지정학은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과학주의적 유토피아(진보와 과학)의 붕괴와 함께 약화되었다. 그 이유는 지정학이 자국의 힘의 논리에 따라 타국을 위협하는 논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은 근대 러시아의 팽창과 일본의 황화를 견제하는 논리로 지정학을 이용했다.

16세기 유럽 세계에서 육지에서 바다로의 관심과 힘의 이동을 최초의 '공간혁명'으로 표현한 사람은 독일의 법학자 카를 슈미트(Carl Schmitt)였다. 슈미트는 20세기 전반까지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다양한 각축을 모으고 정리하면서 제국주의적 지정학을 넘는 '대공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슈미트에 따르면 세계사는 대륙국가에 대한 해양국가의 투쟁이며 동시에 해양국가에 대한 대륙국가의 투쟁의 역사였다. 전지구적 권력과 지배력의 획득이 육상권력이냐 해양권력이냐에 달려 있었는데, 이러한 경쟁 속에서 육상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지구적 각축은 지정학적 사고의 기본 틀을 형성하게 된다. 지정학적 사고, 공간적 사고란 처음부터 정치적 차원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국에 갇힌 정치사나 정치학적 패러다임이 아닌 지역적 유동성을 전제로 삼는 공간 감각이 필요하다.[5]

그럼에도 지정학은 공간과 국가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로 아직까지 폐기되지 않았다. 영역과 관련하여 가장 큰 규모는 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문제였다. 더 작은 규모는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났으며, 인간의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적·경제적·지리적 공간으로 이루어졌다.[6]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영토 보존이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러시아는 디지털 기술의 차이로 인한 서방 미디어의 장악력에 대한 우려와 인터넷을 활용한 서방의 내정 개입 가능성을 위협 요소로 간주했다. 2010년대

---

4 Halford J. Mackinder, 이병희 역,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공주대출판부, 2004, 216쪽.

5 이진일, 「해양과 '공간혁명'」, 『사림』 63호, 2018, 72-73, 97쪽.

6 J. Stoltman, "Geography, Territory and Connection", 『제7회 지명과 지리교육에 대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2016. 6. 24, 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들어서 러시아 정부는 엄격한 인터넷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공공질서 유지 및 유해 콘텐츠 방지 등 인터넷 환경에서의 질서 형성을 우선으로 하는 러시아 정부의 디지털 전략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다.[7]

오리엔탈리즘과 제국주의와 공간혁명으로 영역(공간)과 국가를 설명하는 경향도 있었다. 오리엔탈리즘이란 서양이 동양에 관계하는 방식으로서, 유럽 서양인의 경험 속에 동양이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근거했다. 동양은 유럽 문화의 적수였고, 유럽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반복되어 나타난 타자의 모습이었다.[8]

영토와 소유는 지리와 권력과 연관되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은 땅에 근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거주의 문제와 연결되었다. 제국주의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살고 있는 지역을 조종하고 거기에 정착했다.[9]

서양은 자기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오리엔트 및 이슬람을 이용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사학자는 근대 종교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일본의 개별성과 유일성을 부각시키면서 민족성을 강화했다. 근대 일본에서도 오리엔탈리즘이 작동했다. 일본의 오리엔탈리즘은 아시아에서 탈피하고 서양과 같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은 근대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자국의 특수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었고, 그 때문에 주체를 위한 타자가 필요했다. 근대 일본은 자신을 주체로 형성하는 한편 아시아, 특히 청국을 타자화했다.[10] 그 과정에서 일본은 근대 역사학의 연구와 방법을 발전시키면서 '동양학'과 '지나'를 발명했다.

1870년대 유럽의 불황이 확대되자 영국과 독일은 상업적 경쟁자들이 영토를 대규모로 병합함으로써 그동안 개방되어온 시장들이 폐쇄될 것을 우려했다. 1880년대

---

7 신보람, 「루넷과 유라시아 인터넷 공간」, 『유라시아 역사·문화: 제국, 권력과 경계. APRC Proceeding Series』, 한양대학교, 2018. 11. 23, 81쪽.

8 Edward W. Said,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7, 15쪽.

9 Edward W. Said, 김성곤 역, 『문화와 제국주의』, 창, 1995, 52쪽.

10 Stefan Tanaka,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p.12-1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국주의자는 아프리카와 청국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그 과정에서 서양이 조선에 진출하면서 1880년대 열강과 조선은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그 당시 서양인(서구인)은 조선에 진출하면서 조선의 정치와 지리 등의 상황을 조사했다. 서양인이 남긴 기록에 집약된 관심은 자화상에 대한 갈증과 연결되었다.[11] 그것은 곧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의미했다. 근대 서양인의 조선 여행은 일차적으로 탐사와 원정의 과정이었다. 그 배후에는 근본적으로 정복이나 동질화의 욕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서양인의 여행 기록은 방문국인 조선의 초상인 동시에 방문자 자신과 그 사회의 자화상일 수밖에 없었다.

인문학자는 제국주의자가 제국의 끝없는 확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고 그 과정의 법칙에 복종하게 되며, 이름 없는 권력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부르크하르트(J.C. Burckhardt)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연구하면서 인간과 권력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신중한 역사가는 여러 차례 일어난 놀랍고도 끔찍한 사건들의 원인이 기억될 만한 어떤 일을 이루려는 강한 욕구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애초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극단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누구에게나 있는 허영심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참된 악마성의 발로였다.[12]

노르베르트 엘리아스(Norbert Elias)는 국가의 폭력과 인간의 의미를 고민했다. 엘리아스에 따르면 세계대전의 경험과 강제수용소의 경험은 살상을 금지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는 도덕의식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개인의 양심 구조가 국가의 강제에 여전히 의존했다.[13]

---

11 신복룡, 『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읽기』, 풀빛, 2002, 6쪽.

12 J.C. Burckhardt, 이상신 역, 『세계사적 성찰』, 신서원, 2001, 123쪽.

13 Norbert Elias, 김수정 역, 『죽어가는 자의 고독』, 문학동네, 1996, 6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럼에도 모든 인간 존재는 외부의 식물과 동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며 외부의 공기를 마시고 외부의 빛과 색깔을 본다. 인간은 외부라는 지리적 영역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한다. 친절한 사람은 세계의 한 곳에만 애정을 고정시켰고, 강인한 사람은 모든 장소들에 애정을 확장했으며, 완전한 사람은 자신의 고향을 소멸시켰다.[14]

영역과 국가를 연결하는 지정학과 오리엔탈리즘은 주체와 객체를 구별하는 제국주의의 본질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서양인에 비친 조선의 자화상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15] 정체성은 공간과 국가를 해체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동한다.

서양인은 19세기 제국주의의 식민지 확장 시기에 지도뿐만 아니라 조선 견문록을 작성하면서 자연과 지리적 특징 및 영토와 국경 문제를 기록했다.[16] 조선의 자연환경적 특징을 거론하면서 조선이 반도이기 때문에 청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쪽 국경선에 관해 기록했다. 일부 서양인은 동해와 울릉도, 독도까지 언급했다.

일본과 청국은 19세기 서양을 모방하여 국민국가로 가는 과정이었다. 근대 서양과 동양에서 지정학, 오리엔탈리즘, 제국주의는 자국의 이념을 강화하기 위한 신화의 창조, 주변국 침략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한국을 둘러싼 주변 국가는 창조된 신화를 바탕으로 자국 중심의 국가주의를 내세우며 동북아 지역인의 인간성 회복을 방해했다.

최근 일본 학자는 국제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주권 개념의 연성화(Softening of Sovereignty)' 이론을 제기했다. '주권 개념의 연성화'란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 이

---

14 Edward W. Said, 김성곤 역, 『문화와 제국주의』, 창, 1955, 77 · 117, · 564쪽.

15 "정체성이란 고정된 장소나 붙박이인 어떤 물체가 아니라 끝없이 흐르는 것, 물처럼 흐르는 조수와 같기 때문이다." (Edward W. Said, 장영준 역, 『평행과 역설』, 생각의 나무, 2003, 27쪽)

16 19세기 후반 서양인이 조선에 도착하는 경로는 대략 다음과 같다. 밴쿠버(Vancouver), 타코마(Tacoma), 시애틀(Seattle),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등의 항구에서 출발하여 12–18일 정도 항해하면 일본 요코하마(橫浜) 항구에 도착한다. 그다음 요코하마에서 인천이나 부산에 도착한다(George William Gilmore, 신복룡 역, 『서울풍물지』, 집문당, 1997, 15쪽; Horace Grant Underwood, 한동수 역, 『와서 우릴 도우라: 한국교회 초기 선교역사』,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후 확립된 근대적 주권 개념을 반대하고 약화된 주권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 2000년대 중반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기존의 근대주권은 영토 내부에서 유일하고 불가분의 권력으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주권의 일부를 유럽연합에 넘겨주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국가주권이 초국가적 존재와 권력을 나누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일부 국가는 개인의 인권문제로 인해 유엔과 국제인권기구의 개입을 허용했다.

일본 학자는 '주권 개념의 연성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올란드(Aland Islands) 모델'을 제시했다. 올란드는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에 있는 섬이다. '올란드 모델'이란 핀란드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편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주민의 자결권을 인정한 사례를 의미한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올란드섬의 자치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발달해서 국가주권 개념을 더 이상 흑백논리로 규정할 수 없다. 둘째, 주권이 많은 권한들의 집합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셋째, 주권이 여러 주체들 사이에 실용적으로 분배되고 관리되고 있다.[17]

지금까지 국가 영토는 국제관계에서 항상 중심적인 문제였다. 전통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영토에 근거하여 '주권 행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었다.[18] 국제법학자 브라운리(Ian Brownlie)는 국제 공공질서로서 국제법 입장에서 국경선 문제를 설명하면서 "국가라는 개념을 영토에 대한 권원이란 개념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영토에 대한 권리에 대해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나 중재재판소는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

---

17 New Initiatives for Solving the Northern Territories Issue between Japan and Russia: An Inspiration from the Aland Islands, Conference Mariehamn/Aland, 18–20 August 2006 Organized by Kimie Hara & Masako Ikegami, *Issues & Insights*, Vol.7 No.4, April 2007; 김경신, 『일본 러시아 북방영토 분쟁–Aland Islands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109–110쪽.

18 R. Y. Jennings,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63, p.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 분쟁에서 영토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었다. 국가 관할권의 연장선상에서 도서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도 국제 사법기관들이 처리해야 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되었다.[19]

올란드 모델을 동북아의 분쟁 지역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더구나 국제사법재판소가 80여 건의 분쟁에 관한 판결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학자라면 과거 영토·영해 관련 국제법 판례 중 분쟁 해결의 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박기갑은 기존의 국제법 판례를 살펴보면 역사적 권원, 국가권력 행사를 통한 '실효적 지배', 현상유지의 법리(Uti possidetis juris) 등이 영유권 분쟁 해결의 주요 원칙으로 작용되었다고 주장했다.[20]

제성호는 국제재판에서 영유권의 존부를 판가름할 경우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 혹은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 주장뿐만 아니라 '실효적 지배' 혹은 통치권의 현실적인 행사가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된다고 주장했다.[21]

이석용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기존 판결을 분석하면서 도서영유권 관련 분쟁 해결에서는 "국가에 의한 실효적 지배"가 중시되었다고 주장했다.[22] 그리고 해양경계

---

19 Ian Brownlie, *Boundary Problems and The Formation of New States*, University of Hull Press, 1996, pp.3–4; 이석용(Lee Seok Yong),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해결」, 『국제법학회논총』 51–1, 2006, 124–125쪽.

20 박기갑, 「도서영유권 분쟁관련 국제판례에서 나타난 實效的 支配 내지 占有개념과 독도영유권문제」, 『국제법학회논총』 45–2, 2000, 104–105쪽. 박기갑에 따르면 재판소는 분쟁 대상의 섬이 무주지라면 최초 발견 및 객관적인 기록을 중시하지만, 분쟁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권력의 실효적 행사'에 관한 제반증거를 검토한 후 상대적 우월성 여부를 확정한다(박기갑, 「도서 영유권 분쟁관련 국제판례에서 나타난 實效的 支配 내지 占有개념과 독도영유권문제」, 『국제법학회논총』, 45–2, 2000, 104쪽).

21 제성호(Jhe Seong-Ho),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방안과 국제법」, 『저스티스』 93, 2006, 181쪽.

22 이석용,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해결」, 『국제법학회논총』 51–1, 2006, 143쪽.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는 공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상이한 무게를 부여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간의 국경영토사건에서 재판소는 네덜란드 공무원에 의한 "대부분 일상적이고 행정적인 성격의 행위들은 국경조약에 따라 벨기에가 이전에 획득한 권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다(Sovereignty over Certain Frontier Land(Belgium/Netherlands), Judgement, I.C.J. Reports 1959, p.229; 이석용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해결」, 『국제법학회논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획정 관련 분쟁 해결에서는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규칙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23]

김용환은 페드란 브랑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면서 영유권 분쟁 해결의 주요 원칙을 살펴보았다. 김용환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영유권 관련 판결에서 역사적 추론보다는 식민지 전후에 행사되었던 국가관할권의 실질적인 행사와 묵인의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24]

서구 학자 존 반 다이크(John M. Van Dyke)도 기본적으로 주권의 범위를 고민하면서 독도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다.[25] 독도를 한국의 주권 범위라고 인정한 것이다.

박현진에 따르면 영유권에 관한 당사국의 일방적 의사의 표시와 현실적·계속적·평화적 점유행위 같은 국가기능의 행사는 '실효적 지배'의 요건을 충족, 영토권원을 창설할 수 있다.[26]

기존 한국의 국제법학자 대부분은 영토·영해 분쟁 관련 국제법 판례 중 '실효적 지배'가 영유권의 핵심 사항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1928년 팔마스섬(The Island of Palmas) 중재사건, 1933년 동부 그린란드 등 20세기의 다양한 영토·영해 분쟁 관련

51-1, 2006, 133쪽).

23 이석용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모든 해양관할권은 해변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해양관할권을 근거로 일정한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규칙이 나온다(이석용,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해결」, 『국제법학회논총』 51-1, 2006, 133쪽).

24 김용환, 「페드란 브랑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의 영유권에 관한 ICJ 판례 분석」, 『국제법학회논총』 53-2, 2008, 26쪽.

25 John M. Van Dyke, 「독도문제의 제기와 해결」, 『독도: 역사적 인식과 국제법적 정의』, 2008년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국제학술대회, 2018, 48쪽.

26 박현진, 『독도 영토주권 연구』, 경인문화사, 2016, 434쪽. 인접성의 원칙 내지 부속도서의 법리는 국제판례 및 학설상 권원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으나, 주권 추정의 방식 또는 실효지배에 관한 사법적 논증으로 원용되며, 그러한 한도 내에서 여전히 독도주권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법리다(박현진, 『독도 영토주권 연구』, 경인문화사, 2016, 18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주요 국제법 판결을 살펴보면 '실효적 지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 국제재판 결정에서 국가행정 관할의 '실효적 지배'가 적용된 국제재판 과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28년 미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벌어진 필리핀 군도 팔마스섬 분쟁에 대한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판관(Arbitrator) 후버(M. Huber)는 "팔마스섬에 대한 스페인의 권원이 1898년에 미성숙인 채로 존재했고, 파리조약 3조에 의한 할양 대상에 팔마스섬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미성숙 권원은 타국에 의한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의 표명에 우선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27] 후버 재판관은 주권의 확립에서 '실효적 지배'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네덜란드의 팔마스섬 영유권을 인정했다.[28] 팔마스섬의 사례는 영유권 관련 국제분쟁의 해결에서 주권의 계속적 및 평화적 행사(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즉 '실효적 지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판례였다.[29]

1933년 동부 그린란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분쟁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동부 그린란드 사건 판결은 영토영유권 분쟁 관련 국제법 판결에서 1928년 팔마스섬 중재사건, 1932년 클리퍼튼섬 중재사건에 이은 세 번째 주요 판결이었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동부 그린란드의 법적 지위사건(The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Case)에 대한 판결에서 '주권자로서 행동하려는 의사와 의지'라는 요소를 특히 강조했다. 이것은 '실효적 지배'의 주체로서 국가의 요건과

---

27 "It may suffice that such display existed in 1898, and had already existed as continuous and peaceful before that date long enough to enable any Power who might have considered herself as possessing sovereignty over the island, or having a claim to sovereignty, to have, according to local conditions, a reasonable possibility for ascertaining the existence of a state of things contrary to her real or alleged rights."(Island of Palmas Arbitration, PCA(U.S.A v. The Netherlands), Ⅴ Conclusions, 4 April 1928, p.867)

28 "It is quite natural that the establishment of sovereignty may be the outcome of a slow evolution, of a progressive intensification of State control."(Island of Palmas Arbitration, PCA(U.S.A v. The Netherlands), Ⅴ Conclusions, 4 April 1928, p.867).

29 이병조, 『국제법신강』, 일조각, 1993, 46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함께 국가적 지배 의사의 존재를 포괄하는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해석되었다.[30]

영유권 분쟁 관련 국제법적 관점에서 볼 때 동부 그린란드 사건 판결은 첫째, 분쟁 당사자 일방의 문제의 영토에 관한 일방 선언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금반언의 원칙을 확립한 선례였다. 둘째, 이 판결은 후버 재판관이 팔마스섬 영유권 분쟁사건에서 정립한 '실효적 지배'의 법리를 확인했다. 동부 그린란드는 기후조건이 가혹하고, 유빙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었다. 또한 동부 그린란드는 비교적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정주가 어려워 정착촌이 산재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다. '실효적 지배'의 법리가 열악한 환경을 가진 동부 그린란드의 영유권 분쟁에 적용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높았다. 재판관의 다수 의견은 팔마스섬 중재사건의 선례를 따라 '실효적 지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서 경쟁하는 영유권 주장의 '상대적 우월성'을 제시했다.

재판소는 주권 주장이 할양조약 등 어떤 특정 행위나 권원에 입각하지 않고, 단지 계속적 권능행사에 입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실효적 지배'의 요소 내지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첫째, 주권자로서 행동하려는 의사와 의지, 둘째, 그러한 권능의 현실적 행사 또는 현시 등 두 가지 요소의 존재를 각각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국가행정 관할을 검토했다. 재판소는 덴마크가 1721–1931년까지 주권적 권리를 그린란드 서부지역뿐만 아니라 그린란드 전역에 대해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대한 각종 독점 사업권 행사 또는 부여 등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적 권능의 현실적·평화적 행사를 수행했다. 덴마크는 200여 년간 '실효적 지배'에 입각하여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을 확립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1931년 노르웨이가 행한 동부 그린란드의 일부 지역에 대한 무주지 선점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판결했다.[31]

---

30 제성호(Jhe Seong-Ho),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방안과 국제법」, 『저스티스』 93, 2006, 182쪽.

31 Case the Legal Status of Greenland Case(Denmark/Norway), PCIJ Ser. A/B, No.53, 1933, pp.62–65; 朴玄鎭(Hyun-jin Park), 「獨島 問題와 國際司法爭訟」, 『국제법학회논총』, 50-2, 2005, 14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53년 프랑스와 영국의 멩끼에 및 에크레오(The Minquiers and Ecrehos) 사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소의 입장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세에 있었던 사태들로부터 추론되는 간접적인 추정이 아니라 멩끼에 및 에크레오 도서군의 점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다"라며 국가 소유의 직접적인 관련 증거를 중시했다.[32] 이 사건은 국가기능이 작용하는 '실효적' 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33]

1999년 에리트레아와 예멘의 섬 영유권 및 해양경계에 대한 중재재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재재판소의 증거조사는 주로 국가의 '실효적 지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중 비중 있게 조사한 증거는 홍해에서의 등대 건립과 유지, 전통적인 어업제도, 석유 관련 활동 등이었다. 무엇보다도 상설중재재판소는 홍해 어업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어업제도의 유지" 및 "전통적인 어업의 활동" 등을 강조하여 국제법 판결에서 '실효적 지배' 원칙의 중요성을 계승했다.[34]

2005년 국경분쟁에 관한 베냉과 니제르 판결에서도 "실효성은 법적 권원이 의심스럽거나 결여된 것을 완전하게 만들고 보충하기 위한 경우에만 관심의 대상이 되지

---

32 "What is of decisive importance, in the opinion of the Court, is not indirect presumptions deduced from events in the Middle Ages, but the evidence which relates directly to the possession of the Ecrehos and Minquiers groups."(The Minquiers and Ecrehos(France/United Kingdom), Judgement, I.C.J. Reports 1953, p.57.)

33 全淳信,「멩끼에 및 에크레호島 事件(A Legal Study of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東亞論叢』Vol.25 No.1, 1989, p.159.

34 "Again, this conclusion is implicit in the Tribunal''s concern for maintenance of the traditional fishing regime 'in the region' as a whole."(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Second Stage – Maritime Delimitation, PCA (ERITREA/YEMEN), II The General Question of Fishing in the Red Sea, December 17, 1999, para. 68) "Moreover, the whole point of the Tribunal holding in paragraph vi of its Dispositif in the Award on Sovereignty – that this traditional fishing regime shall be perpetuated so as to include free access and enjoyment for the fishermen of both Eritrea and Yemen.–is that such traditional fishing activity has already been adjudged by the Tribunal to be important to each Party and to their nationals on both sides of the Red Sea. It thus suffices to say that fishing, fishermen, and fisheries are, and remain, of importance to each Party in the present case."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Second Stage–Maritime Delimitation, PCA(ERITREA/YEMEN), II The General Question of Fishing in the Red Sea(December 17, 1999), para.6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만 실효성과 저촉되는 권원보다 결코 우월할 수는 없다"라며 '실효적 지배'의 우월성을 강조했다.[35]

2005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리기탄(Ligitan)과 시파단(Sipadan) 도서의 주권에 대한 사건에서도 '실효적' 주권 행사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당사국 모두 분쟁 도서인 리기탄과 시파단에 대해 조약에 근거한 권원을 향유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말레이시아는 북부 보르네오의 식민지 당국이 1962년 시파단, 1963년 리기탄에 각각 등대를 설치했고, 말레이시아의 독립 이후 말레이시아가 유지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말레이시아의 입법, 행정, 사법적인 행위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행사되었다고 인정했다.[36] 국제사법재판소는 주권의 효율적인 행사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의 분쟁 도서인 리기탄과 시파단에 대한 주권을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도 '실효성' 문제가 영유권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37]

2007년 카리브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의 영토 및 해양 분쟁 사건 판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니카라과는 분쟁 도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1821년 당시 어느 국가에도 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접성의 원칙(principle of adjacency)에 따라 자국이 고유한 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두라스는 현상유지의 법리 원칙에 입각하여 분쟁 도서에 대한 고유한 권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효성(effectivites)'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들이 주장한 증거를 고려한 후 온두라스가 주장하는 '실효성'을 주목했다. 온두라스는 주권자로

---

35 "effectivites … but can never prevail over titles with which they are at variance."(Frontier Dispute (Benin/Niger),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d hoc Bennouna, Judgment of 7 December 2005, p.149)

36 Sovereignty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Indonesia/Malaysia), Judgment of 17 December 2005, para.132, 148.

37 김현수,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간 Ligitan/Sipadan 도서사건」,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 Ⅲ, 해양수산부, 2004, 442-450쪽; 이석용,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해결」, 『국제법학회논총』 51-1, 2006, 13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 행동할 의사와 의지(intention and will)를 증명했고, 4개 섬에 대한 실제적인 권한의 행사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38]

과거 영토 · 영해 관련 국제법 판례 중 분쟁 해결에서 나타난 원칙 중 역사적 권원, 국가행정 관할의 증거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대 독도를 둘러싼 한국, 일본, 러시아 관련 역사적 사실을 추적하는 것이 그 해결의 비밀 열쇠가 될 수 있다. 과거 역사를 알아야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

38 Case concerning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Nicaragua v. Honduras), judgment of October 8 2007, pp.26–27, 56–57; 박찬호(Park Chan-Ho),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사건(A study on the Case Concerning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법학연구』 Vol.49 No.1, 2008, 37–4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Ⅰ. 들어가며

한국은 해방 이후 1947년 8월 독도에 대한 본격적인 1차 학술조사를 실시했는데, 역사학자로 당시 국사관 부관장 신석호(申奭鎬) 등이 참여했다. 그 후 추가적으로 독도에 관한 다양한 학술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학술 연구는 1965년 역사적·국제법적·지리적 분야의 독도 관련 연구를 편찬한 『독도(獨島)』라는 책에 수록되었다. 이 책의 간행사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몇 편의 글을 모아 전근대적인 망상에서 깨어날 줄 모르고 있는 일본에 대한 경고로 삼는다"라고 기록되었다.[1] 당시 한국 학계는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학술적으로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1950년대 일본 외무성 관료인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를 비롯한 일본 정부는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가 일본의 한국 침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며 "독도가 근세 초엽 이래 일관되게 일본 영토였다"는 논리로 역사적·지리적 근거 자료를 수집했다.[2]

---

1 元容奭, 「刊行辭」, 『獨島』, 大韓公論社, 1965, 5쪽. 이 책에서 표기한 죽도(竹島), 송도(松島)는 기본적으로 원 저자가 논문에서 표기한 대로임을 밝힌다. 필자는 예외적으로 일본 학자가 '竹島'라고 표기했을 경우에는 '다케시마'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 川上健三, 『竹島の歷史地理學的 硏究』, 古今書院, 1966; 田村清三郎, 『島根縣竹島の新硏究』, 報光社, 196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이 독도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를 수행하자 한국 학계는 1978년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를 설립했다. 그 결과 1985년 새로운 사료 지평에서 독도 관련 종합적 연구 성과인 『독도연구(獨島硏究)』가 발간되었다. 당시 책 발간에 참여한 한국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첫째, 독도를 어느 나라가 먼저 인지하고 경영했을까? 또 그 경영의 실체는 어떠했을까? 둘째, 일본 측이 제시하는 입증사료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셋째, 일본의 소위 '시마네현 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가 과연 국제법상 유효한 것인가?" 등이다.[3]

21세기인 지금 당시의 고민으로부터 한국은 학술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

세 가지 문제의식 중 독도에 관한 '인식'과 '경영'에 관한 한국의 학술적인 성과가 바로 송병기의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이었다.[4] 송병기는 1978년에 결성된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의 일원으로 독도 연구를 시작하여 그 후 30년 이상 독도 연구에 매진했다. 필자는 『울릉도와 독도』(1999), 『고쳐 쓴 울릉도와 독도』(2005), 『개정판 울릉도와 독도』(2007) 등의 연구서를 출판하면서 독도 관련 저작의 내용을 꾸준히 수정·보완했다. 또한 필자는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리해 『독도영유권자료선』(2004)이라는 자료집도 출판했다. 필자는 청동기시대부터 대한제국 시기에 이르기까지 독도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청동기 시대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했고, 한국이 독도를 오래전부터 인식했으며, 한국이 영유권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필자는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편입 과정, 심흥택 보고서의 경위 등을 분석했다.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국제법상 불법성을 역사적으로 접근한 성과는 신용하의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다. 신용하는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1998-2001)』라는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독도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신용하는 독도가 일

---

3 韓國近代史資料硏究協議會 編, 『獨島硏究』, 文光社, 1985, 3쪽.

4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김영수, 「과거를 현재로 끌어낸 역사자료의 힘」, 『한국근현대사연구』 53, 2010, 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본의 고유 영토였다면 일본 정부가 1905년 2월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고 하면서 새로이 '영토편입'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용하는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사업경영개요(事業經營槪要)」 등의 자료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제기했다.[5]

그럼에도 송병기와 신용하는 근대 시기 독도를 한국과 일본만의 시선으로 파악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도 근대 시기 독도 관련 열강과 한국의 국제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보였다.[6]

필자는 근대 시기 독도를 포함한 해양 관련 역사 분야의 주요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독도와 동해를 포함한 러시아의 한국 해양탐사, 울릉도·독도에 대한 일본의 해양탐사, 울릉도 개척·삼림·어업을 둘러싼 한국·일본·러시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의 독도 관련 연구동향과 주요 논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Ⅱ. 서양의 독도 발견 및 러시아의 한국 해양탐사

기존 연구는 서구 열강 중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독도 발견 과정을 조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서구 열강의 독도와 울릉도 관련 내용을 최초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최석우는 영국수로지를 분석하여 영국의 독도 발견 내용을 정리했다. 최석우에 따르면 영국 군함 호네트(Hornet)호는 1855년 4월 25일 독도를 발견하고 호네트 암

---

5 신용하,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2006, 200-207쪽.

6 근대사는 아니지만 현대사에서 정병준은 『독도 1947』이라는 저서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미·일의 국제관계를 새롭게 주목했다(김영수, 「국제관계가 한반도에 남긴 어두운 그림자」, 『영토해양연구』 1, 2011, 27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초로 명명했다. 영국수로지는 1858년 판에서 영국 군함이 발견한 독도를 호네트라고 기록했고, 1861년 판에서 1849년 프랑스, 1854년 러시아에 의한 독도 발견 사실을 기록하면서 독도를 리앙쿠르로 수정했다.[7]

이진명은 프랑스의 지도와 자료를 추적하여 프랑스의 독도 발견 내용을 규명했다. 이진명에 따르면 서양에 독도 발견을 최초로 알린 것은 1849년 1월 27일 프랑스 르아브르(Le Havre)항에 소재하던 윈슬로(Winslow) 회사 소속의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호다. 프랑스 해군성은 리앙쿠르호의 로페즈(J.P. Lopes) 선장의 항해 보고서 중 독도 발견 내용을 파악하여 1851년에 발간한 수로지와 해도에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으로 표기했다.[8] 서양의 독도 발견을 조명한 최석우와 이진명의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영국과 프랑스의 한국 해군정책까지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명복은 러시아 해군함대문서보관소 소장 자료 및 러시아 해군부 수로지 등에 실린 독도 관련 내용을 최초로 국내에 소개했다. 최명복에 따르면 팔라다(Паллада)호는 1852년 10월 7일 끄론쉬따트(Кронштадт)를 출항하여 영국에서 구입한 보스톡(Восток)호와 함께 극동으로 항해했다. 이들은 1851년 극동에 파견된 올리부차(Олибуца)호 및 공작 멘쉬꼬프(Князь меншков)호와 합류하여 1853년 8월 10일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입항했다. 올리부차호는 1854년 4월 2일 대한해협을 지나서 북쪽의 타타르(Татарский)해협으로 항해하던 도중 4월 6일 러시아에서 최초로 독도를 발견했다.[9]

심헌용은 러시아의 1880년 이후 해양탐사의 배경과 내용 등을 최초로 국내에 소

---

7 China Pilot, London 1861, p.379; 최석우, 「구미측 문헌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 文光社, 1985, 350·353쪽.

8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1998, 45쪽. 이상균은 일본이 19세기 중엽 영국의 지도를 모사하는 과정에서 동해상의 섬들에 관한 기술적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17-19세기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나 고문서를 보면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기록이 일관되게 나타난다(이상균, 『19세기 일본 지도에 독도는 없다』, 북스타, 2016, 124-125쪽).

9 최명복, 「독도와 러시아」, 『해양전략』 제102호, 1999, 21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개했다. 심헌용에 따르면 러시아의 탐사 목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러시아는 동아시아 국가와의 통상교섭을 수립할 목적으로 항해했다. 러시아는 동아시아 국가와 수교를 맺기 이전에 집중했던 활동으로서 동아시아 각국과의 통상교섭 내지 식민지 영토확장이라는 목표에 따라 해양탐사를 실시했다. 둘째, 러시아 해군 또는 해군부 수로국은 새로이 획득한 연해주 연안 및 동방 해안 일대의 군사지리 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탐사했다. 러시아는 연해주를 획득하여 동해 북부 지역의 제해권을 확보한 이후 자국의 해안선과 주변 해역에 대한 탐사활동에 집중했다.[10]

최덕규는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 해군부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조명했다. 최덕규에 따르면 청일전쟁–러일전쟁 때까지 추진되었던 러시아 해군부의 마산포 획득 정책은 태평양의 해양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한 원대한 계획의 산물이었다. 러시아 해군부는 이 계획을 통해 태평양 연안의 부동항을 해군기지로 확보하고 이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함으로써 러시아를 동아시아에서의 해양강국으로 부상시키고자 했다.[11]

박종효는 근현대 시기 1856–1859년 러시아 해군선집과 조선동해안도, 1905년 러일해전도, 1962년과 2001년 소련 해군 수로지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독도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박종효는 러시아가 1854년 처음 발견 당시부터 현재까지 입장의 변화 없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12]

심헌용과 최덕규는 러시아의 해양탐사 목적 및 러시아 해군부의 정책을 조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1850년대 팔라다호의 한국 해양탐사 이후 러시아 해군부의 한국 해양탐사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10 심헌용, 「러일전쟁기 러시아의 동아시아 해양군사전략과 독도의 위상」, 『국가전략』 14–2, 2008, 183쪽.

11 최덕규, 『제정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경인문화사, 2008, 49쪽. 필자는 동아시아 근대의 기점을 잠정적으로 아편전쟁이 발생한 1840년으로 설정했다.

12 박종효, 「한러 관계사에서 본 러시아와 독도」, 『군사』 96, 2015, 391–39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향후 이 분야는 러시아 해군함대문서보관소(РГАВМФ)에 보관된 문서들의 발굴 작업이 필요하다. 해군함대문서보관소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의 한국 정책, 특히 부동항 획득 정책과 관련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러시아의 해양탐사 과정에서 독도와 울릉도를 어떻게 파악했는가를 살펴보면서 러시아의 해군부 정책 과정에서 독도와 울릉도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Ⅲ. 1870년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해양탐사

19세기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은 17세기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 정태만은 1690년대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이 메이지 시대까지 지속되어 1877년 '태정관지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정태만에 따르면 에도 막부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독도 조선령'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어부의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다. 메이지 정부는 영토 담당 정부기관인 내무성의 주관하에 외무성 등 일본 정부의 4개 부처가 참여하여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공식적으로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확인하고 공시했다.[13]

그런데 일본 외무성의 지시를 받아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가 작성한 『죽도고증(竹島考證)』은 6세기부터 19세기 후반(1881년)까지의 죽도(竹島)와 송도(松島)에 관한 기록을 집성했다.[14] 『죽도고증』은 일본 외무성의 필요에 의해 1881년 8월에 작성되었다. 그동안 『죽도고증』은 일본 외무성의 외교 사료이기 때문에 역사

---

13 '양코발견설'은 1901년 3월 흑룡회의 기관지 『회보』에서 시작되어 각 언론에 보도되었다. 지학전문지 『지학잡지』(1901. 5)가 양코발견설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히자, '미발견의 섬'이라는 주장만 삭제하고, 흑룡회의 새로운 기관지 『흑룡』(1901. 6)에 이 섬에 대한 내용이 다시 게재되었다. 이는 양코도 무주지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유포시켰음을 의미한다(정태만,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172-174쪽).

14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52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강만길은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 도다 다카요시(戶田敬義), 사이토 시치로베(齊藤七郎兵衛) 등의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서 『죽도고증』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했다. 강만길에 따르면 아마기함(天城艦)이 현지에 다녀온 후 송도(松島)가 일본에서 울릉도의 공식 명칭이 되었고, 죽도는 그 별칭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곧 독도가 메이지 정부당국에게는 전혀 인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15]

구양근은 블라디보스톡 무역사무관 세와키 히사토(瀨脇壽人)와 조선인 김인승(金麟昇)의 활동을 추적했다. 그는 김인승의 친일활동 과정을 고찰하면서 세와키의 영향력을 주목했다. 그 과정에서 세와키와 김인승의 조선 인식을 추적하면서 인물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16]

송병기도 기타자와 마사나리의 『죽도고증』 출판 과정을 살펴보면서 아마기함의 현지조사 결과 및 「죽도판도소속고(竹島版圖所屬考)」를 주목했다.[17] 송병기는 일본 외무성의 '일본 판도 밖의 땅'이라는 결론을 松島(울릉도)뿐만 아니라 량고도(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18]

한철호는 『죽도고증』 문서 작성 과정에 참여한 일본 외무성의 공신국장(公信局長)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의 외교활동을 살펴보면서 죽도와 송도에 관한 영토 인식을 살펴보았다. 한철호에 따르면 다나베는 막부 당국이 오가사와라(小笠原)섬의 일본인을 퇴거시키고 공도정책을 펼쳐 일본 영토를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오가사와라섬에 대한 공도정책으로 말미암아 영토를 상실할 뻔했던 유사한 사례로서 울릉도와 독도가 아니라 사할린(樺太)의 경계담판을 들었다.[19]

---

15 강만길, 「외국의 문헌상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 1985, 323쪽.

16 具良根, 「日本外務省 七等出仕 瀨脇壽人과 外國人顧問 金麟昇」, 『韓日關係史硏究』 7, 1997, 126-137쪽.

17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93-94쪽.

18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158쪽.

19 한철호, 「메이지 초기 일본 외무성 관리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의 울릉도·독도 인식」, 『동북아역사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호동은『죽도고증』상권을 중심으로 일본의『고려사』,『동국여지승람』의 왜곡을 주목했다. 김호동에 따르면 기타자와 마사나리는 송도(松島)가 원록(元祿) 12년 죽도(竹島)라고 불렸던 섬으로 옛날부터 일본 영역 밖에 있었던 땅이라며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 그렇지만 그는 당시 조선의 수토정책을 공도제(空島制)라 명명하고 빈섬, 버려진 섬이라는 것을『죽도고증』에서 부각하기 위해 한국 사료를 왜곡했다.[20] 김호동은 기타자와의 공도제가 1905년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과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김호동은 일본 외무성이 죽도(竹島)에 소속이 모호한 송도(松島)란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김호동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송도(松島)가 곧 죽도(竹島, 울릉도)임을 인지했지만 일도이명설(一島二名說) 등의 논란을 벌이면서 송도란 이름에 집착했다. 죽도(竹島, 울릉도)를 죽도라 하지 않고 송도라고 한 것은 울릉도쟁계로 인해 죽도를 조선 땅이라고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21]

정영미는『죽도고증』의 전체적인 개략을 살펴본 다음 죽도에 대한 일본의 견해를 정리했다. 정영미에 따르면 '다케시마'는 울릉도 부속섬인 죽도(대섬)다. 와타나베의 이도이명은 부정되고 다나베 다이치의 일도이명이 재확인된 것이다. 정영미는 메이지 시대 정부 차원의 마쓰시마=독도 인식이 '마쓰시마 개척 논란'을 거치면서 단절된 것으로 파악했다.[22]

김수희에 따르면 세와키 히사토는 1875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송도개척론'을 구상했고, 자신이 고용한 무토 헤이가쿠를 이용해 외무성에 '송도개척원'을 제출하도록 했다. 세와키는 서양지도에 그려진 송도라는 명칭을 차용해 '일본 땅' 송도라는

총』19, 2008, 226쪽.

20 김호동,「『竹島考證』의 사료 왜곡」,『일본문화학보』40, 2009, 346쪽.

21 김호동,「메이지시대 일본의 울릉도·독도 정책」,『일본문화학보』46, 2010, 86쪽.

22 정영미,「죽도고증의 마쓰시마 개척원과 아마기함의 울릉도 조사」,『한일관계사연구』43, 2012, 50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름으로 1도 2명의 불명확한 이름을 붙여 울릉도 선점을 도모했다.[23]

그럼에도 세와키, 무토, 기타자와 등의 인물이 『죽도고증』의 주요한 보고자와 청원자와 작성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행연구는 일본 외무성의 죽도와 송도 명칭의 확인과 변경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더구나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죽도고증』이라는 보고서에 '송도개척'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향후 무역사무관 세와키의 죽도와 송도에 대한 인식을 시작으로 『죽도고증』에 나타난 다양한 논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1870년대 일본의 송도개척 요구의 배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24]

IV. 울릉도 개척 · 삼림 · 어업을 둘러싼 조선, 일본, 러시아의 활동

기존 연구는 1882년 4월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사 활동 전후 일본의 울릉도 불법벌목과 조선의 울릉도 개척이라는 부분에 주목했다. 또한 조선 정부가 울릉도 정책을 수토에서 개척으로 전환한 이유를 추적했다. 더 나아가 울릉도 주변 죽서의 위치, 김옥균의 동남제도개척사겸관포경사(東南諸島開拓使兼管捕鯨事) 임명 과정, 울릉도 개척 이후의 상황, 조일 어업협정 체결과 울릉도의 관계, 울릉도 불법벌목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 울릉도 삼림권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 등에 관한 연구가 진척되었다.

1960년대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가 일찍이 소개됐지만 다

---

23 김수희, 「19세기 일본 산음지방의 울릉도 독도 기록과 '송도개척론'」, 『독도연구』 19, 2015, 75쪽.

24 이케우치는 1877년 태정관 관련 문서를 분석한 다음 '다케시마(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메이지 10년의 일본 정부 중앙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는 일본의 판도 외라고 공식 문서에 표명하고 있다. 이 사실은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 보아 일본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싶은 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역사적 사실이다."(池內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2, 14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양한 자료에 기초한 본격적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이규원의 「계초본(啓草本)」, 「유사(遺事)」, 「비문(碑文)」 등의 다양한 자료가 2000년대에 정리되었기 때문이다.[25]

기존 연구는 이규원의 검찰활동과 관련하여 울릉도, 우산도, 죽도, 송도, 도항 등의 명칭을 정리하면서, 고종 시기 울릉도 개척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은 이규원의 검찰일기에 나오는 죽도(竹島)는 울릉도 바로 옆의 죽서도(竹嶼島)이고 도항(島項)은 관음도(觀音島)라고 주장했다.[26] 김호동에 따르면 고종과 이규원이 송죽도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 것은 일본이 울릉도를 죽도로

---

25 이선근, 「울릉도 및 독도 탐험 소고」, 『독도』, 대한공론사, 1965; 신용하 편저,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3권, 독도연구보전협회, 2000; 이혜은, 『만은(晩隱)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26 이한기,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250-251쪽; 신용하, 『일본의 한국침략과 주권침탈』, 경인출판사, 2005, 287-292쪽; 김호동, 『독도 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2007, 170쪽. 이규원의 검찰일기에 기록된 명칭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선우영준도 이규원이 竹島(竹嶼)에 대해서 기술했지만, 우산도를 울릉도의 다른 이름으로 보았으며 현재의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선우영준, 「독도 영토권원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264쪽). 신용하에 따르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죽도는 울릉도 바로 옆 竹嶼島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규원의 검찰일기에서 확인되었다(신용하,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2006, 32쪽). 박은숙은 고종의 송죽도와 우산도 명칭에 대해서 주목했다. 박은숙에 따르면 고종은 울릉도 곁에 있는 '송도, 죽도와 우산도는 3개의 섬으로 울릉도라고 통칭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울릉도라는 명칭에는 울릉도와 그 주변의 송죽도 및 독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박은숙,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활동과 영토 영해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36, 2012, 100쪽).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이규원 '울릉도검찰사일기'의 '울릉도외도'에 근거하여 竹島와 島項의 위치를 추정했다. 시모조는 竹島는 금일의 竹嶼에 해당하고, 島項은 觀音島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于山島는 울릉도에 근접한 竹島, 즉 竹嶼이다. 시모조에 따르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나오는 竹島는 이규원의 조사에도 죽도라고 불린 울릉도 근방의 竹嶼로 판단되고, 石島는 어디를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다(下條正男,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東京: 文春文庫, 2004, 110-113쪽). 후나스기 리키노부(舩杉力修)는 이규원이 오늘날의 '죽도(독도)'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후나스기에 따르면 이규원의 '울릉도외도'의 속도는 동측의 도항(島項)과 죽도(竹嶼)뿐이다. 즉 도항은 관음도(觀音島), 죽도는 죽서(竹嶼)이다(舩杉力修(平成20年7月), 「絵図・地図からみる竹島(Ⅲ)」,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1940년에 발간된 『한국근대도지(韓國近代道誌)』는 울릉도(鬱陵, 武陵, 羽陵, 蔚陵)를 우산국(于山國)이라고 기록했다. "鬱陵島(沿革) 本于山國 一云武陵 或云羽陵 又稱蔚陵." (道誌刊行委員會, 「江原道誌 卷之十一 附錄 鬱陵島」, 『韓國近代道誌』 23, 1940, 464쪽; 李相泰編, 『韓國近代道誌』 23, 서울: 韓國人文科學院, 1991再刊行) "舊島名 于山 羽陵 武陵 蔚陵 鬱陵."(道誌刊行委員會, 「江原道誌 卷之十一 附錄 鬱陵島」, 『韓國近代道誌』 23, 1940, 466쪽; 李相泰編, 『韓國近代道誌』 23, 韓國人文科學院, 1991再刊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호칭하고 우산도, 즉 독도를 송도라고 호칭한 데서 비롯한 혼동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호동은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과 관련하여 고종 시대의 정책과 명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김호동은 일본인의 불법벌목이 조선의 울릉도 수토정책의 전환 때문이라고 파악했다.[27] 김호동에 따르면 조선은 1883년 3월 16일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로 임명하고, 강원도 관찰사–평해군수–도장의 체제를 구축하여 울릉도 개척사업을 추진했다.[28] 김호동은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활동을 비판했다. 김호동에 따르면 이규원은 독도를 검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흔적도 검찰일기에 보이지 않는다. 이규원의 검찰일기에는 우산도에 관한 언급이 없고, 울릉도 검찰 이후 고종과 이규원은 우산도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29]

송병기는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 전후 조선 정부의 울릉도 정책 변화와 개척 과정, 울릉도를 둘러싼 조일관계를 상세히 고찰했다. 송병기는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을 조선의 울릉도 개척의 결정과 이민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송병기는 개척 이후 울릉도 지방제도의 변화를 설명했다. 1884년 3월 울릉도첨사(僉使)가 신설되어 삼척영장이 겸직했고, 6월 울릉도첨사를 평해군수가 겸직했으며, 첨사제는 다시 도장(島長)제로 바뀌어 삼척포진관 월송포수군만호가 도장을 겸직했고, 1895년 2월 울릉도 전임도장을 두었으며, 1895년 8월 울릉도감으로 호칭을 바꾸었다. 송병기에 따르면 이규원은 조선인 약 140명의 거주, 일본인 78명의 무단벌목, '대일본국송도규곡(大日本國松島槻谷)' 표목 발견, 경작지와 해산물 등을 보고했다. 조선 정부는 1882년 6월 일본인의 쇄환을 일본 외무성에 요청했고, 일본 외무성은 1883년 1월 주한 일

27 김호동,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활동의 허와 실」, 『대구사학』 71, 2003, 4–7쪽.

28 김호동, 『독도 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2007, 141쪽.

29 김호동,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활동의 허와 실」, 『대구사학』 71, 2003, 12쪽. 일본학자들은 당시 이규원의 이러한 인식을 들면서 조선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본격적인 비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호사카 유지, 『일본고지도에도 독도 없다』, 자음과모음, 2005, 34–35쪽; 김호동, 『독도 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2007, 13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본공사를 통해서 도해금지령을 내렸다.[30]

신용하는 이규원 검찰사 파견 이후 조선 정부의 울릉도와 독도의 재개척에 주목하면서 동남제도개척사의 의미를 파악했다. 조선은 1882년 4월 이규원을 검찰사로 파견하여 울릉도의 실태를 파악하게 했다. 조선 정부는 1882년 6월 일본 외무성에 대해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침입과 삼림벌채의 금지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1883년 3월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겸관포경사(東南諸島開拓使兼管捕鯨事)'에 임명했으며, 쇄환공도정책을 폐기하여 울릉도·독도 재개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31]

기존 연구는 2010년대 조선의 영토와 해양 인식, 김옥균 관련 인물 연구, 1880년대 울릉도 벌목과 어업 연구로 발전했다.

박은숙은 1882년 조선의 울릉도 개척 과정 및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활동을 상세히 추적하고, 고종과 박영효 등이 울릉도 개척을 포함한 조선의 영토수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은숙은 고종이 이규원의 검찰사 파견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탈을 막으면서 읍을 설치하여 실효지배할 계획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산 개항에 대비하여 국토를 수호하고 일본인의 울릉도 침투를 막기 위한 조선 정부의 정책이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강원도관찰사 등을 통해 울릉도민을 이주시키고 농지를 개간함으로써 실효지배를 확실히 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동남제도개척사를 신설하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개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32]

박성준은 1880년대 울릉도 벌목사업 체결을 통해서 조선의 해양정책의 근거를 살펴보았다. 박성준은 1880년 조선의 달라진 울릉도 정책을 만국공법에 대한 인식

30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87, 2005, 121-123쪽.

31 신용하,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2006, 30쪽.

32 박은숙,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활동과 영토 영해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36, 2012, 99-10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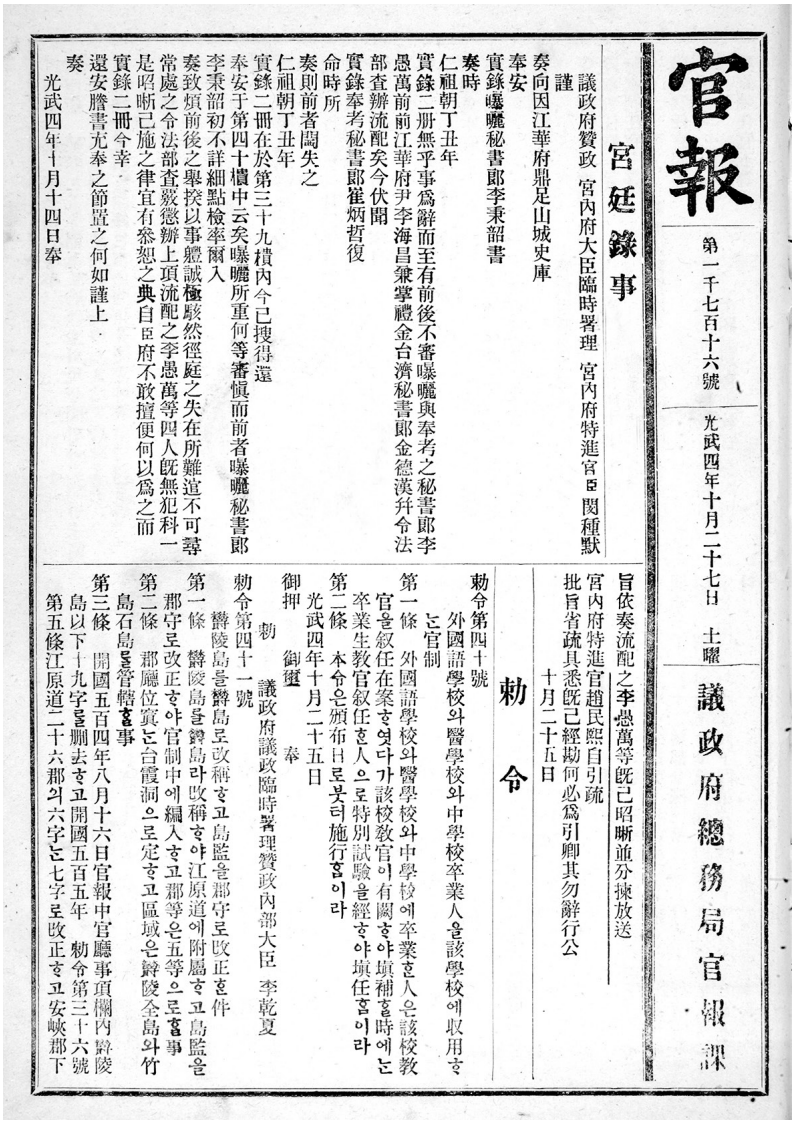

官報

第一千七百十六號

光武四年十月二十七日 土曜

議政府總務局官報課

宮廷錄事

議政府贊政 宮內府大臣臨時署理 宮內府特進官臣 閔種默
謹
奏向因江華府鼎足山城史庫
奉安
實錄曬曨秘書郎李秉韶書
奏時
仁祖朝丁丑年
實錄二册無乎事爲辭而至有前後不審曝曨與奉考之秘書郎李
愚萬前前江華府尹李海昌兼掌禮金台濟秘書郎金德漢幷令法
部査辦流配矣今伏聞
實錄奉考秘書郎崔炳哲復
命時所
奏則前者闕失之
仁祖朝丁丑年
實錄二册在於第三十九櫃內今已搜得還
奉安于第四十櫃中云矣曝曨所重何等審愼而前者曝曨秘書郎
李秉韶初不詳細點檢率爾入
奏致煩前後之擧挩以事體誠極駭然徑庭之失在所難逭不可尋
常處之令法部査叅懲辦上項流配之李愚萬等四人旣無犯科一
是昭晰已施之律宜有叅恕之典自臣府不敢擅便何以爲之而
實錄二册今幸
還安謄書充奉之節置之何如謹上
奏
光武四年十月十四日奉
旨依奏流配之李愚萬等旣已昭晰並分揀放送

宮內府特進官趙民熙自引疏
批旨省疏具悉旣已經勘何必爲引卿其勿辭行公
十月二十五日

勅令

勅令第四十號
外國語學校와醫學校와中學校卒業人을該學校에收用ᄒᆞᄂᆞᆫ官制
第一條 外國語學校와醫學校와中學校에卒業ᄒᆞᆫ人은該校教官을敍任在案ᄒᆞ엿다가該校教官이有闕ᄒᆞ야塡補ᄒᆞᆯ時에ᄂᆞᆫ卒業生敎官敍任ᄒᆞᆫ人으로特別試驗을經ᄒᆞ야塡任ᄒᆞᆷ이라
第二條 本令은頒布日로붓터施行ᄒᆞᆷ이라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
御押 御璽
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李乾夏
奉
勅令第四十一號
蘐陵島를鬱島로改稱ᄒᆞ고島監을郡守로改正ᄒᆞᆫ件
第一條 蘐陵島를鬱島라改稱ᄒᆞ야江原道에附屬ᄒᆞ고島監을郡守로改正ᄒᆞ야官制中에編入ᄒᆞ고郡等은五等으로ᄒᆞᆷ事
第二條 郡廳位置ᄂᆞᆫ台霞洞으로定ᄒᆞ고區域은蘐陵全島와竹島石島를管轄ᄒᆞᆷ事
第三條 開國五百四年八月十六日官報中官廳事項欄內蘐陵島以下十九字를刪去ᄒᆞ고開國五百五年 勅令第三十六號第五條江原道二十六郡의六字ᄂᆞᆫ七字로改正ᄒᆞ고安峽郡下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관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확대로 파악했다. 박성준에 따르면 동남제도개척의 임무를 부여받은 김옥균은 외국 회사와 울릉도 벌목 계약을 체결했다.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이 외국 회사와 체결한 벌목 계약은 만국공법에 기초한 조약체제를 활용해 울릉도에서 발생하는 무단 벌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33] 조선과 일본은 1880년대 울릉도 개척과 삼림채벌뿐만 아니라 울릉도 어업과 관련하여 서로 대립했다.[34]

최근 연구는 울릉도 관련 어업과 벌목을 둘러싼 조일관계에서 러일관계까지 확장되었다. 이규태는 1881–1903년까지 울릉도에서 이루어진 일본인의 불법벌목과 어업활동, 러시아의 울릉도 조사를 정리했다. 이규태는 러시아와 일본이 해상 전략적인 측면에서 울릉도를 설정했다고 판단했다. 이규태는 한국과 일본 자료를 근거로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원산–부산–마산으로 이어지는 동해 항로를 방어하고,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중간 거점으로 울릉도를 상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35]

기존 연구는 대체로 조선의 울릉도 정책과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울릉도 불법벌목과 어채 연구가 일본 자료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박병섭은 1878–1883년까지 울릉도에서 이루어진 일본 해군과 일본인 등의 불법벌목과 어렵을 추적했다. 박병섭은 1884년 야마구치현(山口縣) 관리 야마모토 오사미(山本修身)의 문서를 발굴하여 일본의 울릉도 불법벌목을 기록했다.[36]

기존 연구는 울릉도 검찰사 활동 전후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벌목, 조선의 울릉도 개척 이유, 울릉도 내 불법벌목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 등을 주목했다.

하지만 정작 울릉도 조사 전후 이규원의 행적,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활동 등을 꼼

---

33 박성준, 「1880년대 조선의 울릉도 벌목 계약 체결과 벌목권을 둘러싼 각국과의 갈등」, 『동북아역사논총』 43, 2014, 125 · 144쪽. 최근 연구는 울릉도 관련 어업과 벌목을 둘러싼 조일관계에서 러일관계까지 확장되었다(이규태,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둘러싼 러일의 정책」, 『사총』 79, 2013, 203쪽).

34 김수희, 『근대 일본어민의 한국진출과 어업경영』, 경인문화사, 2010, 19쪽; 이영학, 「개항 이후 일제의 어업 침투와 조선 어민의 대응」, 『역사와 현실』 18, 1995.

35 이규태,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둘러싼 러일의 정책」, 『사총』 79, 2013, 203쪽.

36 박병섭, 「한말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연구』 35, 2010, 20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꼼하게 고찰하지 못했다. 또한 고종과 이규원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철저한 사료에 기초하여 판단하지 못했다. 더구나 러시아와 일본의 울릉도 삼림권을 둘러싼 대립에 대해서 러시아와 일본의 사료에 기초한 연구도 진척되지 못했다. 이 분야는 향후 이규원과 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사료 발굴을 진행하면서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을 주목해야 한다.

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현재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보강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즉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석도(石島)가 독도이다"라는 부분이다. 1900년 10월에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할 것'을 공포했는데 2조에서 울도의 관할 범위를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독도가 울도의 관할권에 들어갔는가, 그리고 칙령에 나오는 석도(石島)가 독도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37]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나오는 석도가 독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38] 왜냐하면 칙령 제41호의 석도 명칭은 한국의 고유영토론을 강화하는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39]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독도(獨島)라는 명칭은 1904년 일본 군함 니이타카호(新高號)가 작성한 일지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조선인들이 리앙쿠르라는 바위섬을 독도로 표기한다는 사실이 기록되었다. 현재까지 한국 문헌 중에

---

37 허영란, 「독도 영유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학영사, 2004, 31쪽.

38 한철호,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40, 2007, 219쪽.

39 허영란, 「독도 영유권 문제의 주요 논점과 '고유영토론'의 딜레마」, 『이화사학』 36, 2008, 122쪽.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석도와 독도라는 근대적 명칭은 근대 민족국가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그 명칭의 유래와 출현 조건 등이 해명되어야 한다(배성준, 「울릉도 독도 명칭 변화를 통해서 본 독도 인식의 변천」, 『진단학보』 94, 2002, 5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이 강원도관찰사에게 보낸 '본군 소속 독도(本郡所屬獨島)'라는 구절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독도의 명칭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 고문헌에 등장하는 우산도(于山島)나 삼봉도(三峰島), 가지도(可支島) 등의 명칭, 일본 고문헌의 송도(松島)나 죽도(竹島)가 각각 무엇을 지칭하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40] 또한 독도가 울릉도인들의 인식과 중앙의 인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울릉도인의 생활반경 속에 독도가 얼마나 밀접하게 들어가는가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41]

한국과 일본의 석도 논쟁에서 두 가지가 주목된다. 일본이 한국의 독도 인식 시기가 자국보다 늦었다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울릉도에서 의도적으로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근대 석도를 둘러싼 양국의 논쟁이 명칭 규정에서 인식 차원과 행정 관할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요한 자료다. 이 분야는 향후 1900년 울릉도에 관한 우용정(禹用鼎), 라포르테(E. Laporte), 아카쓰카(赤塚正輔) 현지보고서를 교차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복원해야 한다.[42]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울릉도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고,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에 대한 인식 과정도 추적해야 한다.

---

40 허영란, 「독도 영유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학영사, 2004, 28쪽.

41 이병도, 「우산 죽도의 명칭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김정숙, 「독도에 대한 역사 지리적 인식」, 『독도연구』 1, 2005, 3쪽. 우산도와 석도의 명칭에 관한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方鍾鉉, 「獨島의 하루」, 『경성대학 예과 신문』 13, 1947; 申奭鎬, 「獨島 所屬에 대하여」, 『史海』 1, 1948; 申奭鎬, 「獨島의 來歷」, 『思想界』 8, 1960; 이병도, 「독도의 명칭에 대한 사적고찰」, 『趙明基博士華甲記念佛敎史學論叢』1965; 이병도, 「독도의 명칭에 대한 사적고찰」, 『獨島』, 大韓公論社, 1965; 申奭鎬, 「獨島의 來歷」, 『獨島』, 大韓公論社, 1965;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1998; 배성준, 「울릉도 독도 명칭 변화를 통해서 본 독도 인식의 변천」, 『진단학보』 94, 2002; 서종학, 「독도 석도의 지명 표기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36-3, 2008; 유미림, 「일본의 석도=독도설 부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해양정책연구』 23-1, 2008; 오상학, 「일본측 독도영유권 주장의 비판적 검토」, 『독도연구』 6, 2009.

42 최근 1899년 라포르테 관련 울릉도 조사 보고서가 발굴되었다(홍성근, 「라포르트의 울릉도 조사 보고서와 1899년 울릉도 현황」, 『영토해양연구』 6, 20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둘러싼 연구는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 불법편입 및 어업활동과 맞물려 연구가 진행되었다.

허영란은 나카이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독도 어업의 전개 과정을 포괄적으로 연구했다. 허영란은 나카이의 대하원(貸下願)을 일본의 영토 편입의 과정으로 파악했다. 허영란에 따르면 일본은 제국주의적 팽창 과정에서 독도를 울릉도에서 분리하여 영유의 대상으로 관념화한 다음 그 역사적 근거를 억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영유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관념화된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일제 식민주의의 연장이라는 의미까지 내포했다.[43]

김수희는 나카이 요자부로의 '죽도어렵합자회사(竹島漁獵合資會社)' 설립 전후에 관한 연구를 시마네현 어업사료에 기초했다. 김수희의 연구는 나카이 요자부로의 활동과 강치 포획 내용에 중심을 두었다. 김수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나카이의 공로를 인정하여 나카이를 사장으로 한 '죽도어렵합자회사'를 설립했다. 나카이는 독도 어업권을 소유한 사장이 되었고, 공동어업을 약속한 어민들은 회사 사원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나카이는 권력을 배경으로 어업권을 소유했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 선두에 서서 국가정책을 이용하는 제국주의자였다.[44]

유미림은 1903–1905년까지 나카이의 강치 어업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유미림은 일본인에게 독도 강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품목이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무엇보다도 유미림은 일본 자료에 근거한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변화에 주목했다. 유미림에 따르면 지리지에서 독도 호칭은 1890년대 초까지도 송도(松島), 즉 '마쓰시마'로 호칭된 경우가 많았고, '양코도'라는 명칭은 수로지보다 훨씬 늦은 1903년에 등장한다. 민간에서는 여전히 '양코도' 명칭이 잔존해 있었다.[45]

---

43 허영란,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13, 2006, 253–254쪽.

44 김수희, 「나카이 요자부로와 독도어업」, 『인문연구』 58, 2010, 152쪽.

45 유미림,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3, 264쪽. 유미림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채취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런데 러일전쟁 중이던 1905년 무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일본의 독도 불법 비밀 편입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 패망으로 불법편입 시점에 소급하여 당연히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이다.[46]

이 분야는 향후 일본의 1904년 2월 러일전쟁과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 불법편입의 연관성을 주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의 편입 의도와 이유를 고찰해야 한다.

VI. 나오며

일본은 그동안 독도에 대해 자기부정의 논리를 전개했다. 일본은 1905년 1월 28일의 각의결정에서 "이 무인도(독도)는 다른 나라가 점유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다"라고 하며 무주지 선점론을 근거로 독도의 영토 편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독도는 이전부터 주인이 없는 땅, 즉 무주지(terra nullius)로서 1905년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등을 통해 비로소 합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877년 일본 메이지 시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의 지령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조선)의 독도 영유권은 일본 정부(도쿠가와 막부와 메이지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던 사실이다. 특히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나오기 5년 전인 1900년에

해산물에 대해 울도군수가 수출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당시 울도군수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김병렬, 「서평: 일본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영토해양연구』 10호, 2015, 218쪽).

46 박현진,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교환공문'의 증명력」, 『국제법학회논총』 58-3, 2013, 162쪽. 박현진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인접성과 통일성에 따른 독도주권과 부속도서론, 17세기 울릉도쟁계 관련 교환공문의 증명력, 독도 관련 지도와 해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등을 역사·지리·국제정치적 관점을 수용하여 분석했다(박현진, 『독도 영토주권 연구』, 경인문화사, 2016, 10-11쪽). 유하영은 1910년 일본의 한국강점조약에 의한 대한제국의 소멸 여부와 일본 제국헌법의 한국 적용 여부 등 법적 쟁점들이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사 청산 현안문제와 더불어 미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유하영, 「근대 한국법체제에서의 영토」, 『독도와 한일관계』, 2009, 8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를 밟았다. 당시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군수가 울릉도뿐만 아니라, 죽도(대섬) 그리고 석도(독도)를 관할하도록 했다. 적어도 1905년 1월까지, 내각결정이 있었던 그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국(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다.

일본은 1905년 대한제국이 사실상 일본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무주지 선점론', 즉 주인 없는 땅이라는 것을 근거로 독도 영토 편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1905년 조치는 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1905년에 이루어진 불법적인 독도 편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시 말을 바꾸어 고대부터 자국의 고유영토였다며 모순된 논리를 만들었다. 하나는 주인 없는 땅(무주지)이어서 편입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옛날부터 자국의 영토였다는 것이다. 일본은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주장을 억지로 결합시켜 놓고도 아직까지 타당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제국주의적 영토 침탈의 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등을 통해서 자기소모적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2005년 3월 시마네현 의회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으로 표면화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이 독립을 쟁취했다는 역사적 · 법률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1905년 전후 일본 주도의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이 어떻게 독도를 둘러싼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1900년 전후 타타르해협부터 대한해협까지의 일본과 러시아 해양정책과 독도 · 울릉도에 관한 상호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1900년 전후 러시아의 한반도 해양정책 중 독도 · 울릉도 · 동해의 의미를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1900년 전후 러시아가 울릉도를 조사한 기록을 발굴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근대 한국 · 일본 · 러시아의 영토 · 해양정책을 함께 분석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대략 30년 간격으로 1947년과 1978년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후 30년 동안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자연과 연구 환경 등이 변화했다. 향후 울릉도와 독도의 변화된 환경을 수용하여 울릉도·독도에 대한 역사, 국제, 지리 등의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독도와 관련한 일본, 미국과 유럽, 러시아, 한문 등의 새로운 사료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료 발굴에 기초하여 향후 독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 강화 및 국제법과 역사학을 결합시키는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종과 이규원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과 판단, 러시아의 해양탐사 과정에 담긴 독도와 울릉도의 의미, 일본 외무성의 죽도와 송도 명칭 확인과 변경의 구체적인 이유, 일본의 1904년 2월 러일전쟁과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 불법편입의 연관성 등에 관한 새로운 사료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부

러·일의 해양탐사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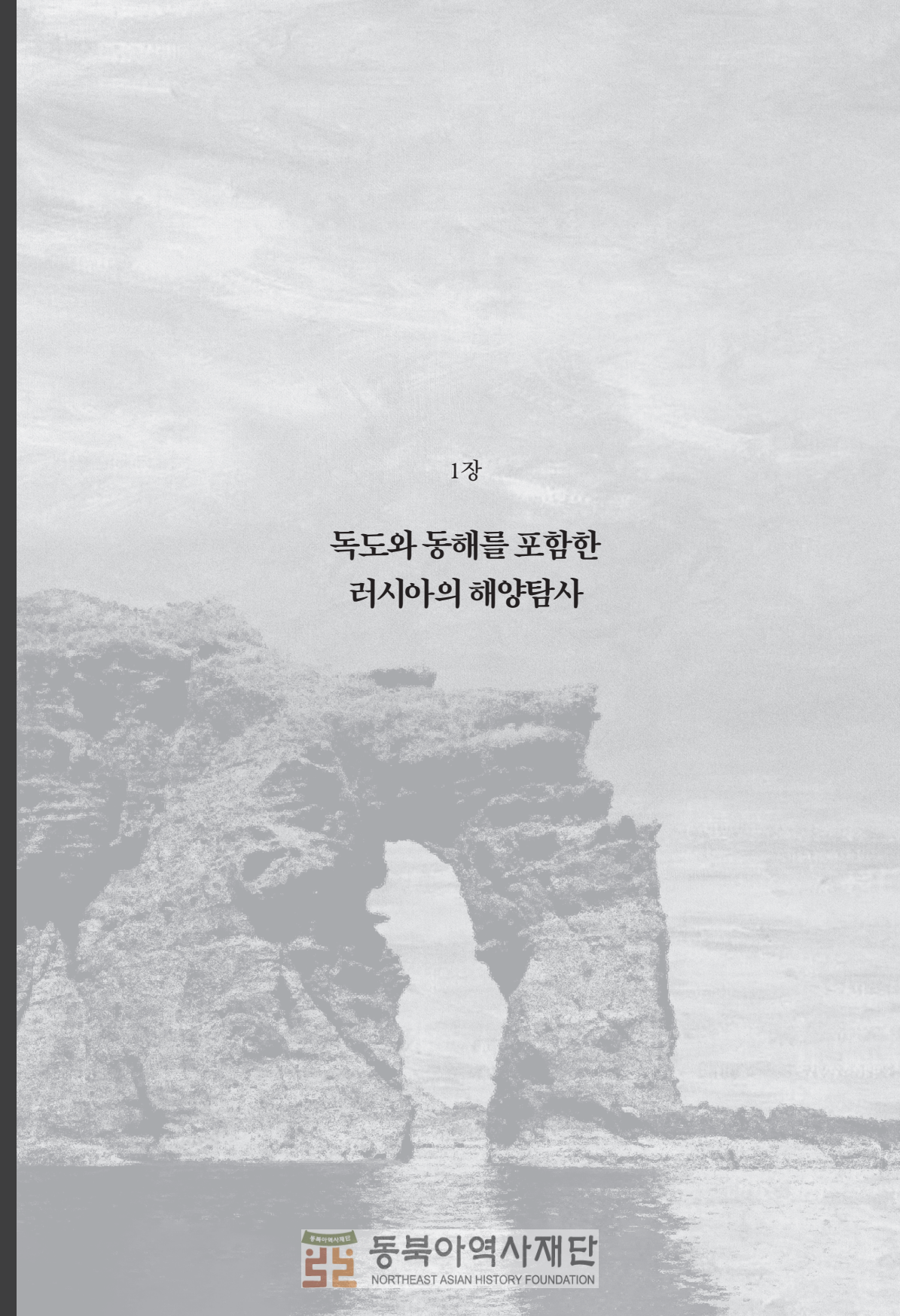

1장

독도와 동해를 포함한 러시아의 해양탐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팔라다호의 해양탐사와 러시아의 울릉도·독도 발견

Ⅰ. 들어가며

곤차로프의 『전함 팔라다호』는 19세기 중엽 세계여행기라는 측면에서 문학적으로 주목받았다. 팔라다호는 젊은 시절 안톤 체홉(А.П. Чехов)을 비롯하여 여행을 동경하는 당대 사람들의 베스트셀러였다. 팔라다호는 영국, 일본 등의 식탁을 소개하는 '식유기(食遊記)'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1]

곤차로프(И.А. Гончаров)는 1812년 6월 6일(러시아력) 심비르스크(Симбирск)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1820년 사제 트로이츠키가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들어가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배웠다. 1822년 모스크바 상업학교에 입학했고, 1831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문학부에 입학했다. 당시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는 게르첸, 레르몬또프, 뚜르게네프 등이 다녔고, 곤차로프는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뿌쉬킨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곤차로프는 1834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심비르스크현의 관리로 임명되었다. 곤차로프는 1847년 장편소설 『평범한 이야기』를 발표했다. 1849년에는 잡지 『현대인』

1 Лотман Ю. и Погосян Е. Великосветские обеды. Спб. 1996. С.37; 석영중, 「오블로모프의 맛없는 음식」, 『러시아문학연구논집』 35, 2010, 6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오블로모프의 꿈」을 발표했다. 곤차로프는 제독 뿌쨔찐(Е.В. Путятин)의 비서(секретарь)로 전함 팔라다호에 승선했고, 1852년 10월 7일 러시아를 출발하여 1855년 2월 13일 뻬쩨르부르크로 돌아왔다.

곤차로프(1812–1891)

곤차로프는 항해 일지를 작성하고 편지를 보냈다. 여행기는 1855–1857년 사이 『전함 팔라다호』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고, 1858년에 2권의 책으로 발간되었다. 곤차로프는 1855년 12월 검열관이 되었지만 1860년 2월에 사직했다. 곤차로프는 1859년 10년 전부터 준비해오던 『오블로모프』를 완성했다. 곤차로프는 1862년 7월 신문 『북방우편』의 편집장을 지냈고, 1863–1867년 사이 출판과 관련된 위원직을 맡았다.

곤차로프는 1869년 소설 『절벽(단애)』을 20년 만에 완성했다. 1870–1880년대에는 「안 하는 것보다는 늦는 것이 낫다」, 「백만의 고통」, 「벨린스키라는 인물에 대한 단상」 등의 몇몇 비평만 썼다. 곤차로프는 1891년 말년에 쓴 모든 작품, 편지, 단상을 소각했고, 1891년 9월 15일 8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2]

전함 팔라다호(Фрегат Паллада)는 한러관계사의 연구자가 제일 먼저 주목했다.

박보리스(Б.Д. Пак)는 팔라다호의 주요 인물과 함대 구성, 조선 항해 이유, 조선 동해안 조사 일정 등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박보리스는 팔라다호가 거

2 Русские писатели. 1800–1917: биограф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1. М. 1989. С.628; 최윤락, 「곤차로프와 그의 장편소설 오블로모프」, 『오블로모프』 2권, 문학과지성사, 2002, 351–35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문도에서 만난 김유(金瀏)의 『해상기문』 정보, 1854년 5월 8일 뿌쨔찐이 조선 정부에 보낸 문서까지 조사했다. 박보리스의 연구는 팔라다호의 조선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박보리스에 따르면 팔라다호는 1854년 2월 크림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안전한 장소로 거문도를 선택했다.[3]

크림전쟁은 니꼴라이 1세(Николай Ⅰ) 오스만제국 내부 그리스 정교도의 보호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1853년 10월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러시아가 1853년 11월 시노페(Sinope) 해상에서 터키 함대를 격파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1854년 3월 터키와 동맹을 체결해 러시아에 대항했다. 영국, 프랑스, 오스만제국 등의 연합군은 1854년 10월 러시아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을 공격했고, 1855년 9월 러시아 흑해함대 기지인 세바스토폴을 함락했다. 연합군은 바다를 장악하여 흑해, 발트해, 백해, 베링해 등에서 소규모 공격을 실행했다. 크림전쟁 당시 동해와 오호츠크해에서 활동하던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함대는 깜차뜨카반도의 뻬뜨로빠블롭스크 요새에 함포사격을 전개했다. 결국 1856년 3월 파리조약(Treaty of Paris)이 체결되었는데, 러시아는 왈라키아(Walachia)와 몰도바(Moldova)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고, 베사라비아(Bessarabia)를 터키에 양보하면서 흑해의 중립화를 인정했다. 러시아는 흑해에서 해군이나 해안요새를 유지할 수 없었고, 오스만제국에서 그리스 정교도의 보호권 주장을 포기했다.[4]

박태근은 팔라다호의 출발 배경, 청국과 일본의 교섭 과정, 거문도와 동해안의 구체적인 탐사 일정과 지명에 대해서 러시아와 한국의 사료를 교차하며 조사했다. 박태근에 따르면 팔라다호는 청국 5개항의 통상권 교섭과 일본과의 수교를 위해서 출발했다. 하지만 청국 양광총독(兩廣總督) 예밍천(葉名琛)은 1853년 6월 18일 팔라다호의 5개항 무역교섭을 거절했다. 팔라다호는 1853년 8월 10일 일본 나가사키에

3 박보리스,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2010, 124–144쪽.

4 랴자노프스키, 김현택 역, 『러시아의 역사』 Ⅱ, 까치, 1982, 52–55쪽; 이정하, 「크림전쟁 직후 러시아제국의 캅차스 경략」, 『사총』 87, 2016, 246–25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착했지만 일본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협상을 지연시켰다.

박태근은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탐사 일정과 지명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강원도 초산만(울산만)부터 함경도 두만강까지 실측했다. 1854년 4월 21일 북위 36도 영일만 상륙, 4월 24일 강원도 초진 통과, 4월 26일 강원도 금란진 정박, 4월 27일(러시아력, 음력 4월 13일) 함경도와 강원도 사이 송전만(라자레프항)에 정박했다. 박태근은 1854년 4월 29일(러시아력, 음력 4월 15일) 뿌쨔찐이 고원군수(高原郡守) 오경진(吳競鎭)에게 조선의 개항을 요청한 한문 문서를 처음으로 발굴했다.[5] 이 회견 장면은 뿌쨔찐의 전속 부관 소령 뽀시예트(К.Н. Посьет)도 기록했다. 오경진은 이방인의 복장과 이양선의 형태를 묘사하면서도 중요한 대화 내용을 의사소통의 장애라는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6]

박보리스와 박태근의 연구는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조사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조선만 주목했기 때문에 팔라다호의 전체적인 항해 과정과 기록자인 곤차로프의 시선에 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

선행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팔라다호 소속 장교의 인명, 팔라다호의 출발부터 도착까지의 항해 과정, 곤차로프의 출발 이유 등에 관한 연구는 초보적인 상황이다. 그 이유는 선행 연구가 대체로 조선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팔라다호 제독 뿌쨔찐의 항해와 관련한 공식적인 정부의 기록을 토대로, 뿌쨔찐의 비서로 참여한 곤차로프의 항해 관련 개인적인 여행기를 상호 보완하여 팔라다호 함대의 전체적인 항해와 탐사 과정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할 것이다. 그것은 국가와 개인의 목표에 대한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

---

5 박태근, 「러시아의 동방경략과 수교 이전의 한러교섭」, 『한러관계100년사』,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34-37쪽.

6 『日省錄』, 哲宗, 甲寅, 4月 23日; 박태근, 「러시아의 동방경략과 수교 이전의 한러교섭」, 『한러관계100년사』,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3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공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필자는 팔라다호 함대의 독도 발견 이후 러시아가 어떻게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19세기 후반 러시아 함대의 독도와 울릉도 관련 기록도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 갈등인 독도를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II. 팔라다호의 구성과 운영 및 곤차로프의 항해 이유

러시아 황제 니꼴라이 1세는 1852년 청국과 일본과의 개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러시아 제독 뿌쨔찐을 특사로 임명했다. 뿌쨔찐은 1852년 8월 스쿠너 범선을 구매하기 위해서 민간 증기선을 타고 영국으로 출발했다. 팔라다호는 1852년 10월 7일 끄론쉬따트를 출항하여 영국에서 구입한 스쿠너 범선 '보스톡(Восток)'호와 함께 극동으로 항해했다.[7] 이들은 1851년 극동함대 소속 코르벳함(군함) '올리부차'호 및 수송선 '공작 멘쉬꼬프'호와 합류하여 1853년 8월 10일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다.[8]

제독 뿌쨔찐은 1852년 함대를 구성했다. 전함 팔라다호, 깜차뜨카 함대 소속 코르벳함(군함) 올리부차호,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 수송선 공작 멘쉬꼬프호 등이다. 제독은 소령 꼬르사꼬프(Корсаков)를 추천하여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의 함장으로 임명했다. 팔라다호는 함장 소령 운꼽스키(Унковский)를 비롯하여 장교 22명과 승무원 439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보스톡호에 승선할 장교 6명과 수병 37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알렉산드르 넵스끼 수도원(Alexander Nevsky Lavra)의 아

7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ХХⅣ. No.10. Спб. 1856. СС.1–2.

8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ХХⅣ. No.10. Спб. 1856. С.2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바꿈(Аввакум) 신부는 중국어 통역을 맡았다.[9] 소령(капитан-лейтенант) 운꼽스끼(И.С. Унковский)는 함장으로 전함 팔라다호를 지휘했다. 소령 뽀시예트(К.Н. Посьет)는 제독 뿌쨔찐의 전속 부관이었다.[10]

팔라다호에 승선한 장교와 수병은 러시아정교도로서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수행했다. 뿌쨔찐에 따르면 장교와 수병은 영국에서 시작하여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일요일과 명절에 예배 시간을 가졌다.

팔라다호의 장교는 탐험과 항해 관련 서적을 보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승선한 장교를 통해서 과목을 이수하면서 영국에서 구입한 육각기를 이용해 천문을 관측했다. 러시아 정부는 천문 관측 도구와 다양한 교과서 등을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제공했다.[11]

팔라다호의 장교와 수병은 대포와 무기를 이용한 훈련을 매일 실시했다. 팔라다호는 장교를 위한 공동 도서실을 갖추고 있었고, 모든 수병은 각자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다.

팔라다호는 장거리 항해를 위한 식량을 준비했다. 러시아 해군부는 소금에 절인 돼지비계, 건빵 등 빨리 상하지 않는 식품을 제공했다. 나머지 식품은 기회가 있을 때

---

9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2.

10 전함 팔라다호에 승선한 인원은 다음과 같다. 대위 꼬르사꼬프(В.А. Римский-Корсаков), 부따꼬프(И.И. Бутаков), 찌흐멘예프(П.А. Тихменев), 끄리드네르(Н. Криднер), 띄르꼬프(С. Тырков), 사비치(Н.Н. Савич), 쉬바르츠(С.П. Шварц), 벨라브네츠(И. Белавнец), 쉴리뻰바흐(А.Е. Шлипенбах) 등이 승선했다. 또한 소위 안주(П. Анжу), 볼찐(А.А. Болтин), 꼴로꼴리쩨프(А.А. Колокольцев), 질료뉘이(П. Зеленый) 등이 참가했다. 포병 대위 로세프(К.И. Лосев)와 하레조프(А.А. Халезов), 중위 뽀뽀프(Л. Попов)와 이스또민(Я. Истомин), 소위 모이세예프(И. Моисеев), 의사 아레피예프(А. Арефьев)와 베이리흐(Вейрих), 통역관 고쉬께비치(О.А. Гошкевич) 등이 승선했다. 또한 4명의 해군소위 후보생(Гардемарины), 1명의 육군사관학교 생도(юнкер), 32명의 하사관(унтер-офицеры), 365명의 수병(рядовые), 30명의 비전투 장병(нестроевые), 26명의 군악대(музыканты) 등이 승선했다(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627).

11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마다 보충되었다. 대부분의 식품은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통조림이었다. 팔라다호의 장교와 수병은 육지에서 먹던 음식을 바다에서도 먹을 수 있어서 괴혈병을 피할 수 있었다.[12]

곤차로프는 1852년 10월 7일 항해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제독 뿌쨔찐의 비서로 전함 팔라다호를 타고 출발했다.[13] 그는 공식적으로 항해 기록을 위한 비서 신분이었지만 비공식적인 목적도 갖고 있었다.

곤차로프는 "아주 필요할 때가 아니면 자신의 편안한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곤차로프는 도시 생활과 습관을 버리고 '출렁이는 대양의 수면으로 돌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곤차로프는 항상 여행을 꿈꿔왔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적도와 극지방, 열대지방을 직접 가보고 싶었다. 그는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이 술기운처럼 내 머리를 흐리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했다.

곤차로프는 자신의 삶은 둘로 나뉘었다고 말했다.

하나는 제복을 입은 평범한 관리로서의 삶이었다.

"나는 상관의 시선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감기 걸리는 걸 두려워하고, 수십 명의 제복들과 함께 사방의 벽에 갇혔다. 보고서와 통보서, 명령서 등을 손질하고 있다."

또 하나는 미지의 탐험에 나선 모험 여행자로서의 삶이었다.

"나는 밀짚모자에 하얀 외투를 걸치고 입에는 껌을 씹으면서 그루지야의 심연을 따라 금빛 양털을 찾으러 간다. 매달 기후와 하늘과 바다와 나라를 바꾸어 가며 여행한다. 항해를 노래한다."

곤차로프는 여행을 떠나기 직전의 고민도 토로했다.

---

12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7.

13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С.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어떻게 이런 다른 삶을 견뎌낼 수 있을까, 다른 세계의 시민이 될까?"

몰입하면 할수록 위협적인 환영까지 나타났다.

"과연 나 같은 식견을 지닌 여행자가 나의 동포들과 사회에 지게 될 의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다."

"지금 나에게 부과된 일은 세계일주를 하고, 그것을 지루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게 이야기를 경청하게끔 말해주는 것이다."[14]

제독 뿌쨔찐이 청국과 일본의 개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450명이 넘는 인원을 조직하고 함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이에, 작가 곤차로프는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의무와 작가적 능력을 고민하면서 팔라다호에 승선했다. 곤차로프는 모든 장소들에 애정을 확장하는 강인한 사람을 꿈꾸었다.

Ⅲ. 발트해 – 보닌제도 및 나가사키 – 시베리아 항해 과정

곤차로프는 1852년 10월 7일에 전함 팔라다호가 러시아 끄론쉬따트를 출항하는 순간을 기록했다.

"출발과 함께 매 순간의 움직임과 걸음들, 인상들이 이전과 다르게 시작되었다."

곤차로프는 스웨덴 동쪽의 발트해에 위치한 고틀란드(Gotland)를 통과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거기서 나는 바다의 미신 이야기 하나를 들었다. 이 섬을 통과하는 배는 이 섬을 지키는 영혼에게 폭풍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 동전을 던진다."

하지만 팔라다호가 덴마크에 도착하기도 전에 콜레라가 발생했고, 3명의 장례식을 치렀다.

---

14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 11–35. Ⅰ. От Кронштадта до мыса Лизард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팔라다호는 스웨덴과 덴마크의 젤란드섬 사이에 있는 순드(Sund)해협, 덴마크 남쪽 카테가트(Kattegatt)해협, 노르웨이 남쪽 스카게라크(Skagerrak)해협을 항해했다.

팔라다호는 1852년 10월 20일경 영국 남부 포츠머스(Portsmouth)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맞바람이 부는 바람에 열흘 동안이나 영국해협(English Channel)으로 들어설 수가 없었다.

팔라다호는 영국 동남부 항구도시 도버(Dover)를 지났고, 곤차로프는 '흐릿한 회청색을 띤, 울퉁불퉁하고 가파른' 프랑스의 해안을 보았다. 팔라다호는 와이트섬(Isle of Wight)과 포츠머스 요새 사이에 있는 스피트헤드(Spithead) 정박지에 닻을 내렸다.[15] 제독 뿌쨔찐은 전함 팔라다호의 정비,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 건조, 그리고 강력하고 거친 바람 때문에 1853년 1월 6일까지 영국에서 머물렀다고 기록했다.[16]

1852년 11월 20일 곤차로프는 장기간 체류한 영국에 대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자선이 사회적 의무의 수준으로 승화되었다. 이 도덕적인 국민은 일요일마다 딱딱한 빵을 먹는다. 당신이 포르테피아노를 방에서 연주하거나 거리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현명하고 실무적이고 종교적이며 도덕적이고 자유로운 영국의 평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시길!"[17]

곤차로프는 '동물을 사랑한다'는 영국인이 '아프리카에서 총과 화약을 수출한다'며 영국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총과 화약이 아프리카에 없다면 영국인은 한 번의 전쟁으로 아프리카의 약탈을 멈출 수 있다. 영국인은 자국을 위해 화약을 아프리카에 실어 날랐다. 정말 끔찍이도

---

15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1–35. Ⅰ. От Конштадта до мыса Лизарда.

16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4.

17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1–35. Ⅰ. От Конштадта до мыса Лизард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나쁜 상업적 민족이다."[18]

팔라다호는 1853년 1월 6일 아바꿈 수도원장이 진행한 예배를 마친 후 포츠머스를 출항했다. 영국해협에서 폭풍우를 만나 1월 11일 겨우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었다.[19] 팔라다호는 1월 12일과 13일에 거친 바람을 만났다. 그 후 스페인 북서부 해안 비스케이만(Bay of Biscay)을 통과했고, 스페인 서쪽 끝에 위치한 피니스테레(Finisterre) 곶에 도달했다. 1월 18일, 영국을 출발한 지 8일째 되는 날 아침 9시에 대서양 북쪽 포르투갈령 마데이라(Madeira)섬을 지나갔다.[20] 1월 22일 팔라다호는 북회귀선을 지났다.

곤차로프는 1853년 2월 3일 적도를 통과하는 그 순간을 기록했다.

"우리는 모두 갑판 위로 쏟아져 나와서 의심스럽다는 듯이 사방을 둘러보았다. 마치 지구의 허리를 둘러싼 적도라는 이름의 나무 테두리를 보기라도 할 듯 말이다."[21]

팔라다호는 1853년 3월 9일 남아프리카 희망봉 동쪽 폴스만(False Bay)을 지나갔다. 일부 승무원은 케이프타운인 카프스타드(Kaapstad)로 떠났다. 하지만 곤차로프는 배에 머무른 채 갑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책을 읽으려 했으나 읽지 못했고, 뭘 쓰고 싶었으나 쓸 수가 없었다. 사흘, 나흘 그렇게 날들이 지나갔고, 타성은 계속되었다."[22]

---

18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49–166. Ⅹ. Шанхай.

19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4.

20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35–47. Ⅱ. Атлантический океан и остров Мадера. 영국에서 마데이라까지 거센 북풍이 불어서 7일이 걸렸다. 뿌쨔찐은 보스톡호에 식량을 확보할 것을 명령했다(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4).

21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47–53. Ⅲ. Плавание в Атлантических тропиках.

22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53–55. Ⅳ. На мысе Доброй Надежды. 팔라다호는 1853년 3월 10일 폴즈만에 닻을 내렸다. 팔라다호는 영국에서 6천 마일을 항해했고, 59일 걸렸다. 보스톡호는 3월 15일에 폴즈만에 도착했다. 보스톡호는 장거리 항해에 적합했으며 파도도 잘 견뎠다(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독 뿌쨔찐은 희망봉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도록 보스톡호에 지시했다. 뿌쨔찐에 따르면 홍콩은 필요한 모든 시설과 보급품을 갖추고 있어 정박지로 편리한 데다, 동인도와 홍해를 통해 유럽과 연락할 수 있었다.

뿌쨔찐은 희망봉에서 영국의 우편선으로부터 뻬쩨르부르크에서 보낸 지시서를 받았다. 지시서는 러시아 외무부에서 전령 2명을 미국을 경유해 파견했다는 내용이었다. 뿌쨔찐은 새로운 임무를 전달할 전령과 만날 장소로 일본 인근에 위치한 보닌 제도를 지정했다. 그와 동시에 뿌쨔찐은 올리부차호와 공작 멘쉬꼬프호 측에 보닌제도로 입항할 것을 통보했다.[23]

곤차로프는 1853년 4월 12일 남아프리카 폴스만을 출발한 이후 항해의 어려움을 기록했다.

"인도양은 대서양보다도 더 나쁘게 우리를 맞아주었다. 대서양에서는 바람이 거셌지만 그래도 순풍이었는데, 여기는 바람도 거세고 또 역풍이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폭풍으로 변했다."

팔라다호는 1853년 5월 17일 자카르타의 인근 마을 안예르(Anyer)의 정박장에 도착했다. 곤차로프는 정박 직후 마닐라로 병력을 실어 나르는 스페인의 수송선을 목격했다.[24]

뿌쨔찐은 인도양을 지날 때 팔라다호가 장거리 항해에 취약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했다. 뿌쨔찐에 따르면 갑판 위로 물이 올라왔고, 상부의 고정장치에서 흔들림이 발견되었다. 뿌쨔찐은 팔라다호 대신에 아르한겔스크(Архангельск)에서 새로 건조한 프리깃함 디아나(Диана)호로 교체해줄 것을 해군부에 요청했다.[25]

---

23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11.

24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55–59 Ⅴ. От мыса Доброй Надежды до острова Явы.

25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팔라다호는 유럽과 정기 우편선이 있는 싱가포르로 항로를 결정했다. 이 항로는 청국 해안을 향해 가는 직선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팔라다호는 1853년 5월 21일 시속 3마일까지 빨라지는 해류를 만났고, 5월 25일 싱가포르 항구에 입항했다.[26]

곤차로프는 싱가포르에 도착한 선원의 기쁨과 싱가포르의 자연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늘 전함에 감돌던 긴장과 그 지역에 대한 세밀한 조사, 선원들의 부산한 움직임은 태평한 휴식으로 바뀌었다."

"여기의 하늘은 아무리 읽어도 지겹지 않은 책과 같다. 이곳의 하늘은 마치 땅과 더 가까운 듯이 더 열려 있고 더 선명하다. 밤마다 밝게 빛나는 샛별, 특히 불꽃처럼 빛을 내며 가끔씩 온갖 방향으로 하늘에 지나간 자국을 내는 혜성들을 감상했다. 나는 대위 끄리드네르(Лейтенант Н. Криднер)와 오랫동안 당직용 긴의자 위에 함께 서 있었다."[27]

뿌짜찐은 싱가포르에서 부따꼬프 대위가 영국의 우편선을 타고 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부따꼬프 대위를 통해서 본국 정부에 보고서를 보내려 했기 때문이다. 팔라다호는 보급품을 보충한 후 1853년 6월 1일 싱가포르를 출항하여 홍콩으로 향했다. 팔라다호는 12일 동안 순항한 끝에 홍콩에 입항해서 하루 반 전에 도착한 보스톡호를 만났다.[28]

곤차로프는 팔라다호가 홍콩에 도착한 이후의 단상을 적었다.

"해는 천정(天頂)에 걸려 있었고, 햇볕은 직선으로 내리쬐었다."

---

26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13–14.

27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59–61. Ⅵ. Сингапур.

28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1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영국이 홍콩에 돌을 다듬어 벽을 쌓고 흉벽(胸壁)을 만들어 대포를 설치했다."[29]

뿌쨔찐은 페리(Matthew Calbraith Perry) 제독이 미국 함대를 이끌고 류큐제도에서 일본 해안을 향해 출항했다는 소식을 듣고 출발을 서둘렀다.[30] 팔라다호는 1853년 6월 26일 홍콩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역동풍(逆東風)을 만나 7월 5일까지 겨우 300마일 정도만 항해했다. 곤차로프는 홍콩에서 서태평양 보닌(오가사와라)제도까지 총 1600마일이고 순풍을 만나면 7-8일 정도 걸린다고 기록했다.

팔라다호는 1853년 7월 7일 인도네시아 바탄(Bataan)섬으로 접근했다. 곤차로프에 따르면 팔라다호는 영국 해군장교 벨처(Edward Belcher)의 표시처럼 닻을 내릴 장소가 있어야 했지만 거대한 절벽과 사방에서 해안을 때리는 물결의 하얀 테두리만 보았다.

팔라다호는 태평양으로 출발했다. 곤차로프는 태평양의 바람과 파도 때문에 항해가 지체되었다고 기록했다.

"저녁 무렵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써보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잉크병도 촛불도 탁자에 서 있질 못했고, 종이는 손아래에서 미끄러 떨어졌다. 몇 자 쓴다고 해도, 뒤로 자빠지지 않으려면 바로 손을 뒤로 뻗쳐 벽에 기대야 했다."

"바람은 울부짖고 있었다. 파도는 꼭대기 부분을 편평하게 만들고, 그 파도를 마치 채를 통해 뿌리듯이 대양에 뿌리고 있었다. 파도 위에는 물 분말이 구름을 이루었다. 광란에 싸여 서로를 갈기갈기 찢고 있는 사자와 호랑이 등의 야생동물 같았다."

곤차로프는 1853년 7월 16일 보닌(오가사와라)제도까지 여전히 500마일 정도 남았다며 항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29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61-63. Ⅶ. Гон-Конг.

30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17. 미일화친조약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정하미, 「미국 표류민 학대 문제와 맥도널드의 경험: 미일화친조약의 전야」, 『일본연구』 17, 20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주일 내내 70마일 정도만 갔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무풍이 왔다. 이게 무슨 농담이란 말인가? 태평양은 우리를 결정적으로 우롱했다. 이제 태평양은 그가 정말로 태평하다는 걸 증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거대한 구름 덩어리들이 움직이면서 수평선을 보여주었지만, 우리에게 속도를 붙여주지는 않았다. 무더웠고, 대기에 움직임은 없었다."[31]

팔라다호는 30일이 넘는 항해 끝에 1853년 7월 26일 보닌(오가사와라)제도 로이드 항구(Port Lloyd)에 정박했다. 팔라다호는 보닌제도에서 올리부차호, 홍콩에서 하루 전날 출항한 보스톡호, 그리고 전령을 태워 하와이제도를 경유한 공작 멘쉬꼬프호를 만났다. 끄로운(Кроун) 대위와 보디스꼬(Бодиско) 비서는 공작 멘쉬꼬프호를 타고 왔으며, 일본에서 지켜야 할 추가 명령서를 가져왔다. 공작 멘쉬꼬프호는 팔라다호에 공급할 양식을 실어왔다. 팔라다호는 8월 4일 3척의 함정과 함께 나가사키로 출항했다.[32] 곤차로프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보닌제도는 청국어나 일본어로 '사람이 살지 않는 섬들'이다. 여러 국가의 포경선들이 끊임없이 출몰한다. 그중 제일 많은 것은 미국 포경선이다."[33]

추가 명령서를 전달받은 뿌짜찐은 일본과의 협상 원칙을 정했다. 그는 일본과의 교류에서 친절과 우정을 우선시하고, 러시아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본의 법규와 풍습을 최대한 수용하며, 침착한 자세로 러일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34]

팔라다호는 10개월의 항해 끝에 1853년 8월 9–10일 사이 나가사키 항구에 정박

---

31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63–71. Ⅷ. Острова Бонин–Сима.

32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19.

33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63–71. Ⅷ. Острова Бонин–Сима.

34 그 후 뿌짜찐은 일본 정부와 장기적이고 두터운 관계를 구축하여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2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1차 일본 방문). 뿌쨔찐은 신비한 미지의 땅인 일본의 해안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뿌쨔찐에 따르면 일본의 관료는 나가사키에 입항하기 전에 항구에서 수 마일 밖으로 마중 나와 국적을 확인했고, 항구 입구에 정박할 것을 요구했다.[35]

뿌쨔찐은 나가사키 정박 이후의 보고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공작 멘쉬꼬프호를 상하이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사할린섬과 아무르강 인근에서 러시아의 소식을 입수할 목적으로 보스톡호를 타타르해협으로 보냈다.[36]

곤차로프는 일본의 첫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바로 여기가 열쇠를 잃어버리고 굳게 닫혀 있는 보석함이다. 이제껏 한 번 들여다보기 위해 보람 없는 노력을 들인 그 나라. 황금이나 또는 무력으로 또는 간교한 정치로 서로의 만남을 이끌어내려는 나라다."

팔라다호는 한 달간의 협상 끝에 1853년 9월 9일 나가사키 영주를 접견했다. 팔라다호는 일본의 협상 지연 때문에 11월 5일 식료품 등을 보충하기 위해 상하이로 떠나기로 결정했으며, 11월 11일에 출발했다.[37]

사실 1853년 9월 14일 공작 멘쉬꼬프호는 터키, 프랑스, 영국과의 관계 단절에 관한 소식을 입수했다.[38] 그럼에도 공작 멘쉬꼬프호는 아직 상하이 입항이 위험하지 않으며, 상하이에 주둔하고 있는 적군의 군사력이 러시아의 선단보다 우월하지 않았다

---

35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20. 나가사키에 도착한 날짜에 대해 곤차로프는 8월 10일, 뿌쨔찐은 8월 9일이라고 기록했다.

36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22.

37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149–166 Ⅸ. Русские в Японии. 뿌쨔찐에 따르면 일본인은 교활하고 미꾸라지 같은 자신들의 성격을 이용하여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권리와 풍습을 지키려고 노력했다(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21).

38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2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보고했다. 팔라다호는 상하이에서 신용장을 현금화하고 석탄, 항해 물품, 양식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었다.[39]

곤차로프는 상하이로 출발하는 순간 또다시 항해하는 심정을 표현했다.

"물에 떠다니는 삶, 또다시 바람의 의지대로 움직이거나 바람의 자비에 따라 평온해지겠지. 지금 바람은 얼마나 울부짖고 또 얼마나 차가운지! 나는 석 달 동안 바다가 낯설었다."

팔라다호는 1853년 11월 14일 450마일가량을 항해하여 상하이 인근의 새들군도(Saddle Islands)에 정박했다. 뿌쨔찐은 보스톡호의 손상된 부분(잠수 부위 도장 등)을 정비하게 하고, 유럽과 청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항해 준비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새들군도에서 동인도 우편으로 보내온 해군부의 통지서를 받았다. 그 통지서는 디아나호가 팔라다호를 대체하기 위해 1853년 10월 끄론쉬따트에서 출항했고, 미국을 경유하여 하와이제도로 항해했다는 내용이었다.[40]

곤차로프는 1853년 11월 23일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를 만났던 순간을 기록했다.

"보스톡호는 상하이에서 채소, 살아 있는 황소들, 닭, 오리들, 말 그대로 신선한 식료품과 새로운 소식들. 하지만 신선하지 않은, 즉 지금은 11월인데 8월자 소식들을 가지고 왔다."

팔라다호는 새들군도를 출발한 지 4일 후인 1853년 12월 24일에 나가사키에 정박했다(2차 일본 방문). 곤차로프는 다시 도착한 나가사키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런 날을 잊기는 힘들다. 하늘과 바다는 하나의 푸른 덩어리가 되었다. 공기는 따뜻했고 움직임이 없었다. 나가사키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햇볕을 듬뿍 받은 무언가 훌륭해 보였다. 갈색의 언덕들 사이 어딘가에서 쌀, 밀, 채소가 새롭게 파종되

---

39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31.

40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31–3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새싹이 올라와서 선명한 파란색을 띠고 있다. 바다를 쳐다보면 그것은 끝없이 펼쳐진 감청색 휘장이었다."[41]

뿌쨔찐은 1853년 12월 초 끄로운 대위를 전령으로 홍콩과 동인도를 거쳐 보고서를 본국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뿌쨔찐은 탐사 관련 자료와 지도, 사할린섬의 석탄 매장지 발견 등을 보고서로 작성했고, 청국 물품 등을 견본으로 보냈다.[42]

곤차로프는 1854년 1월 1일 나가사키에 도착한 일본 전권대표를 만났다. 이 특별한 날의 감정을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월 1일입니다. 항상 그렇듯 모여서 늘 했던 대로 춤을 추고 떠들고 카드놀이를 하고 자정에 싸움을 기다리면서 여러 번 하품을 하고 결국 고대했던 순간을 맞이해서 잔을 잡았다. 생애 처음으로 나는 지난해의 마지막 날을 다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나는 이날 일본 귀족 집에서 식사를 했다."[43]

이날 곤차로프와 함께 소령 운콥스끼(И.С. Унковский)와 나지모프(Н.Н. Назимов), 대위 꼬르사꼬프와 끄리드네르, 소령 푸루겔름(И.В. Фуругельм), 청국어 통역관 고쉬께비치(О.А. Гошкевич) 등이 참석했다.[44]

일본 전권대표는 1854년 1월 4일 답방으로 팔라다호를 방문했다.[45]

뿌쨔찐은 1854년 1월 말 나가사키와 팔라다호에서 일본 전권대표와 함께 고별오찬 및 우호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뿌쨔찐은 봄에 사할린섬 남단 아니바

---

41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149–166. Х. Шанхай.

42 뿌쨔찐은 12월 17일 네 척의 함정을 이끌고 나가사키를 향해 출발했다(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 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ХХIV. No.10. Спб. 1856. С.35).

43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166–210. XI. 1854 год.

44 "И.С. Уньковский, капитан–лейтенант Римский–Корсаков, Назимов и Фуругельм, лейтенант барон Криднер, переводчик с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а О.А. Гошкевич."(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401. XI. Русские в Японии).

45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166–210. XI. 1854 го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Анива)해협에서 러일 협상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46]

팔라다호는 러시아와 일본의 수교 협상이 지연되자 1854년 2월 15일 마닐라만에 도착했다. 곤차로프는 마닐라에 도착한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우리는 항로로 조용히,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며 바람은 잠잠했다. 밤이 왔다. 당신은 빛이 없이도 밝고 따뜻하며 짧고 고요한 열대의 밤을 모를 것이다. 바람 한 점, 소리 하나 없이 별들이 떨고 있다. 나는 도시의 불빛을 쳐다보았다. 주위의 모든 것은 저녁노을 속으로 사라졌다. 나의 머릿속에서 호기심이란 즐거운 감정이 피어올랐다. 가톨릭을 믿는 남쪽의 그림과 형상들이 망각의 잔해들에서 떠올랐다."[47]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일부터 7일까지 거문도에 정박했다(1차 한국 방문). 곤차로프는 거문도의 첫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여기저기 조선인의 농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보이는 것은 초가지붕뿐이었고, 드물게 주민이 보였다. 모두들 마치 수의를 입은 것처럼 흰옷을 입고 있었다."

곤차로프는 거문도를 직접 답사했고, 필담으로 조선 주민과 대화했다.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9일 나가사키에 정박했다. 곤차로프는 그 순간을 기록했다(일본 3차 방문).

"나가사키까지의 이동은 마치 강에서 배를 항해하듯 훌륭했고 정숙했다. 일본인은 우리가 그렇게 빨리 도착한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48]

제독 뿌쨔찐은 일본 전권대표와 면담을 요청하는 문서를 나가사키 영주에게 전달한 다음 조선 동해안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49]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18일 쓰시마

---

46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39.

47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210–230. Ⅻ. Манилла.

48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505–539.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49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통과했다.[50]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0일 조선 연안에 도착해서 동해안 조사를 시작했다(2차 한국 방문). 4월 25일 위도 39도의 조선 동해안을 측량했고, 5월 5일 위도 41도의 동해안을 측량했다. 팔라다호는 5월 9일 두만강에서 6마일 거리에 정박했다. 팔라다호는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22일간 초산만(울산만)에서 북위 42도 31분(두만강 하구) 지점에 이르는 동해안 전역을 실측했다.

팔라다호는 1854년 5월 17일 보스톡호를 만났다. 보스톡호는 유럽의 소식과 편지를 가져왔는데, 프랑스와 영국이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단절했다는 비공식적인 정보를 전달했다. 팔라다호는 5월 18일 시베리아와 사할린을 가르는 타타르해협에 들어섰다.

팔라다호는 1854년 5월 20일 만주 해안에 배를 정박했다. 곤차로프는 시베리아 퉁구스족을 만났고 길랴크(Gilyak, Nivkh)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길랴크족은 바람에 부러져 떨어진 나뭇가지 무더기 아래서 영하 36도에도 살아간다고 한다. 심지어는 젖먹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도 그렇게 산다고 한다. 몸을 녹이고 싶으면 모닥불을 피우고, 송어와 곰마늘(마늘의 한 종류)을 먹는다."[51]

팔라다호는 북위 42도 34분 포시에트(Посьет)만까지 탐사했다. 팔라다호는 1854년 5월 22일 시베리아 동해안에서 공작 멘쉬꼬프호를 만났다. 뿌쨔찐은 데카스트리해협(залив де-Кастри)에 팔라다호를 정박시키고, 동시베리아 총독 무라비요프(Муравьев)의 지시를 받으라는 러시아 황제의 명령을 받았다. 총독 무라비요프는 1854년 6월 22일 팔라다호의 정박지에 도착하여, 팔라다호가 임무를 마쳤기 때문에 타타르해협을 경유하여 북쪽으로 항해할 것을 지시했다. 뿌쨔찐은 북쪽에 가서 팔라다호를 아무르강으로 끌어들여 빙하와 적군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작전을

---

50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505-539.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51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39. ⅩⅣ.Обратный путь через Сибир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세웠다. 팔라다호는 아무르강의 하구에서 40마일 떨어진 라자레프 곶까지 이동했다. 마침내 팔라다호는 1854년 8월 시베리아 연안에 닻을 내렸다.[52]

곤차로프는 바다에서 육지에 내릴 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사람은 참으로 이상하다. 육지에 가고 싶지만, 전함을 떠나는 것도 아쉽다! 하지만 이 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한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내가 억지로 팔라다호를 떠난다는 것에 놀라지 않으실 것이다."[53]

팔라다호의 장교와 수병은 1854년 9월 니꼴라예프 검문소로 파견되었다. 1854년 9월 26일 팔라다호의 무장 해체가 진행되었다. 제독 뿌쨔찐은 1854년 10월 3일 러일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함 디아나호를 타고 다시 일본으로 출항했다.[54]

그 후 전함 디아나호는 1854년 12월 나가사키에서 지진의 여파로 난파당했다. 디아나호의 난파에도 불구하고 뿌쨔찐은 1855년 1월 26일 일본 정부와 시모다조약(Treaty of Shimoda, 下田條約)[55]을 체결했다. 뿌쨔찐은 1855년 4월 26일 가벼운 남서풍이 불자 새로 건조한 범선 헤다호(Хеда)를 타고 시즈오카 건너편 헤다 항구를 출발했다. 헤다호에는 뽀시예트 중령과 로세프 중령, 뻬슈로프 준위, 꼴로꼴리쩨프 대위, 세묘노프 준위, 사관생도 2명과 수병 40명 등이 승선했다. 뿌쨔찐은 1855년 6월 5일 아무르 석호로 들어가서 라자레프 곶에 도착했다.[56]

한편 곤차로프는 오호츠크 연안 아얀(Аян)에 상륙했고, 야쿠츠크(Якутск)와 이

---

52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ХХⅣ. No.10. Спб. 1856. С.47–48.

53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 505–539.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54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ХХⅣ. No.10. Спб. 1856. С.50.

55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between Japan and Russian(日露和親條約).

56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ХХⅣ. No.10. Спб. 1856. С.71, 75, 7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르쿠츠크(Иркутск)를 거쳐 1855년 2월 13일 뻬쩨르부르크에 돌아왔다.

제독 뿌쨔찐은 팔라다호가 일본과의 외교관계 수립, 해군부의 탐사 지시에 따른 실행 등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다만 뿌쨔찐은 1854년 3월 발발한 크림전쟁의 여파로 서방 국가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러시아 식민지를 방문하지 못했고, 오호츠크해 해안을 조사하지 못한 한계를 기록했다.[57] 그런데 작가 곤차로프는 항해 과정에서 도착한 나라의 자연과 풍경 및 그곳 사람들과 민족의 특징을 포착하여, 대양과 대륙을 넘나들며 인간의 삶과 죽음의 공존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그는 대양에 있는 단단한 범선보다 도시의 소란스러운 거리가 오히려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IV. 러시아 함대의 울릉도·독도 발견

서양에서 울릉도를 최초로 발견한 것은, 1787년 5월 27일 프랑스의 장-프랑수아 드 갈로 라페루즈(Jean-Francois de Galaup Laperouse, 1741-1788) 탐험대에 의해서이다. 울릉도를 가장 먼저 목격한 천문학자 다줄레(Dagelet)의 이름을 따서 '다줄레'라고 명명했다. 당시 함대는 새로 건조한 2척의 호위함인 부솔(Boussole)과 아스트롤라베(Astrolabe)로 구성되었다.[58]

---

57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84.

58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1998, 27, 32쪽. "1787년 5월 27일. 북북동에 어떤 지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섬 하나를 발견했다. 이 섬은 조선의 해안으로부터 약 110km 떨어진 것으로 보였다. 나는 이 섬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섬은 바람의 방향과 꼭 같은 방향에 있어 어려웠다. 다행히도 밤 사이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1787년 5월 28일. 해가 뜰 무렵 섬을 측정하기 위해 섬 쪽으로 향했다. 나는 이 섬을 제일 먼저 발견한 천문학자 다줄레의 이름을 따서 '다줄레'라 명명했다. 섬의 둘레는 17km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섬에서 1.9km 떨어져서 섬을 거의 한 바퀴 돌았지만 깊은 곳을 찾지 못했다. 섬의 북동 첨단부는 북위 37도 25분, 동경 129도 2분이었다."(La Pérouse, *Voyage autour du monde*, Vol. 2, Paris, 1797, pp.390-39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러시아 함대도 동해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하여 기록했다.

뿌쨔찐 제독은 1854년 4월 타타르해협에서 빙하와 안개를 만날 가능성을 예상하고 한국의 동해안 탐사를 결정했다. 그래서 팔라다호는 "한반도 동해안 남동쪽부터 만주와 국경을 접하는 두만강까지, 그리고 만주 연안을 따라 몇 십 마일 더 먼 곳에 이르기까지 등의 동해안 지역을 조사하고 사진을 찍었다"라고 기록했다. 팔라다호는 라자레프만(송전만) 등을 측량했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잠수 도구를 이용하여 수중 지형까지 조사했다.[59]

팔라다호의 소속 함정 중 하나인 올리부차호는 1854년 4월 6일 대한해협을 지나 북쪽의 타타르해협으로 항해하던 도중 독도를 발견하고, 서도를 '올리부차', 동도를 '메넬라이(Менелай)'라고 명명했다.

"아침에 발견한 2개의 높은 바위는 반나절 동안 시야에 있었으며, 이제 명확해졌다. 2개의 제법 높고 예각의 발가벗은 바위는 약 300사젠(642미터) 떨어져 있었다. 이들 중 서쪽 섬은 북위 37-13도, 동경 131-55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중 더 높은 서쪽 섬을 '올리부차'라 명명했다. 동쪽 섬을 현재는 발틱함대 그 후에 깜차뜨카 전단으로 소속되기 전에 1846년까지 흑해 함대 소속이었을 때 함정의 최초 이름을 기념하여 '메넬라이'라고 불렀다. 올리부차에서 북서쪽으로 2마일가량 물위에 나타난 암초였다. 올리부차 및 메넬라이섬을 청명한 날 30마일 거리에서 발견했다. 1854년 4월 6일(양력 4월 18일) 우리 함정은 올리부차 서쪽 4마일 해상에서 반나절 동안 머물렀다."[60]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한국 동해안의 북위 35-30도 지역에서부터 북위 42-30도, 동경 131-10도 지역까지 약 600마일의 해안을 조사했다. 그 결과를 러시아 해군지 1855년 1월호에 게재했다.

---

59 РГАВМФ. Ф.296. Оп.1. Д.75. ЛЛ.219-223. 1854.5.25./6.6.

60 РГАВМФ. Ф.870. Оп.1. Д.7208. ЛЛ.87-88. Шханечный Журнал Корвета Олибуца(1854년 올리부차호의 항해일지; 최명복, 「독도와 러시아」, 『해양전략』 102, 1999, 21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젤레트(Дажелет)는 보스톡호가 북위 37–22도, 동경 130–56도에서 관측했는데 둘레 20마일의 원형 모양이고, 해안은 협소하며 거의 접근할 수가 없었다. 다젤레트 최고봉의 높이는 2,100피트다.

아르고노트섬은 존재하고 있었는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 섬은 보이지가 않는다.

해조 배설물로 뒤덮여 있으며, 서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섬은 올리부차호가 북위 37–14도, 동경 131–57도에서 발견했으며, 메넬라이 및 올리부차도라 불렀다. 이 섬의 발견은 항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이들 섬은 근접한 섬들로부터 분리된 채 떨어져 있어서 동해 북방으로 항해하는 선박의 십자로에 위치하고 있다."[61]

그 후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은 1857년 '조선 동해안 지도'를 발간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공식 인정했다. 현재까지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의 '조선 동해안 지도'는 1857년 판본, 1868년 판본, 1882년 판본이 국내에 알려졌다. 1857년 판본에는 1854년 올리부차호가 메넬라이와 올리부차를 처음 발견했다고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1860년 러시아 해군 항해부대 소속 지휘관 세르게예프 중령(Подполковник Сергеев)은 독도 지형을 측량했다. 1868년 판본은 세르게예프의 독도 측량을 지도에 소개하면서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본 세르게예프의 독도 측량 그림을 포함시켰다. 1882년 판본은 1861–1880년까지의 러시아 조사에 기초하여, 올리부차호의 독도 발견 및 세르게예프의 독도 측량을 동일하게 수록했다.[62] 이것은 팔라다호 함대 소속 올리부차호의 독도 발견이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을 통해 러시아 정부의 공식 지도에

---

61 Описание Восточно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해양선집), T.14. N.1, 1855, CC.34–35.

62 Карта восточно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 сост. с описи, произвед. офицерами на фрегате Паллада. Грав. В. Поляков. Вырез. слова Д. Комов. [СПб.] Гидрогр. Деп. Мор. М–ва. 1857.(РНБ К3–ВАз/4–51). 일본 해군성 수로국은 1876년 '조선동해안도'를 발간했는데, 여기에 독도의 명칭으로 러시아 해군이 명명한 '오리우츠(올리부차)'와 '메네라이(메넬라이)'를 채택했다(김영수, 「근대 독도와 울릉도 명칭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독도와 한일관계』, 2009, 180쪽). 한철호에 따르면 일본 해군성 수로국의 '조선동해안도'는 1875년에 초판이 발간되었다(Han Cheol-Ho, "The Japanese Hydrographic office`s publication, revision, and Chart of East Coast of Korea and Recognition of Dokdo", *Korea Journal*, Vol.57–1,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7, pp.36–4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국 러시아 정부는 19세기 후반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의 지속적인 지도 발간을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역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었다.

그 후 러시아 함대는 울릉도를 경유하면서 기록을 남겼다.

1886년 8월 포함 시부치(Сивуч)호는 진해(Bate Crichton 북위 34.2, 동경 128.18) 군도를 탐사하면서 군사적 방어시설 및 저탄소의 기능을 관찰했다.[63] 그 후 시부치호는 1887년 4–5월에 두만강을 정밀하게 측량했다. 시부치호는 1887년 4월 나가사키–히케–타케–울릉도 등을 경유하여 두만강에 도착했다.

"4월 7일 오전 8시 3개의 증기기관을 보유한 시부치호는 나가사키 정박지에서 닻을 올렸다. 이오시마(Иво–Сима) 등대를 벗어나면서 나침반으로 항로를 결정했으며, 그 후 북서쪽 65도 방향으로 항로를 잡고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했다.

오전 11시 30분 히케(остров Хике, 이키)섬 옆을 지나면서 항로를 북서쪽 29도 방향으로 설정했다. 정오가 지나면서 초속 3–4미터의 북풍이 불기 시작했다. 오후 3시 10분 타케(камень Таке, 다케시마) 암초를 지나면서 북서쪽 15도 방향으로 나아갔다. 오후 8시 동쪽의 조선해협(Восточный Корейский пролив, 대한해협)에 도달하여 항로를 북쪽 27도 방향으로 변경했다.

4월 8일 오전 6시에는 북쪽 11도 방향으로 항로를 설정했다. 이 항로는 다젤레트섬 서쪽 6마일을 지나는 것이었다. 그곳으로부터 북서쪽 15도 방향으로 항로를 변경하여 볼틴(Болтин) 곶 방향으로 향했다."[64]

여기서 주목할 점은 타케(камень Таке, 타케암초)라는 명칭이다. 히케는 이키(壹岐)로 대한해협과 나가사키 중간에 위치한다. 시부치호의 항해 기록에 나오는 '타케'는 독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타케'를 거쳐 대한해협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시부치호 함장은 울릉도 '다젤레트'를 항로로 이용하면서 동해를 탐사했다.

---

63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6. ЛЛ.64а–64б. 1886. 8. 29.

64 РГАВМФ. Ф.417. Оп.1. Д.257. ЛЛ.57–79. 1887. 5. 2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태평양함대 사령관 알렉세예프(Е.И. Алексеев)는 1896년 1월 한국의 주요 항구를 조사하면서 전략적 가치에 관한 탐사 보고서를 러시아 해군부에 제출했다. 그는 거제도를 기점으로 한국의 주요 항구 중 제물포–부산–원산–울릉도까지의 거리를 표시했다. 그는 동해안의 전략적인 거점으로 울릉도를 주목했다.[65]

태평양함대 사령관 길뎨브란트(Я.А. Гильдебрандт)는 1899년 11월 20일 블라디보스톡 소속 러시아호, 류릭호(Рюрик), 빠먀찌 아조프호(Память Азов),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 등의 순서로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했다. 태평양함대는 울릉도(Остров Дажелет) 서쪽으로 5마일 지점부터 시작되는 나가사키로 항로를 잡았다.[66]

결국 러시아 함대도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하고 전략적 가치를 파악했다. 올리부차호는 독도를 관찰하면서 서도를 올리부차, 동도를 메넬라이로 명명하면서, 실측에 기초하여 최초로 정확하게 좌표에 기입했다. 태평양함대는 동해에서 울릉도를 경유하며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태평양함대 사령관 알렉세예프는 동해에서 전략적인 거점으로 울릉도를 주목했다. 이것은 러시아가 1896년 9월 두만강·압록강·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획득하여 한국에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Ⅴ. 나오며

러시아 차르 니꼴라이 1세는 1852년 청국 및 일본과의 개항을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 제독 뿌쨔찐을 특사로 임명했다. 팔라다호는 1852년 10월 7일 끄론쉬따트를 출항했고, 1853년 8월 10일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

65 РГАВМФ. Ф.417. Оп.1. Д.1340. ЛЛ.375–392, 1896. 1. 21.

66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11. Л.22–72об. 1900. 7. 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독 뿌쨔찐은 전함 팔라다호, 깜차뜨카 함대 소속 코르벳함(군함) 올리부차호,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 수송선 공작 멘쉬꼬프호로 함대를 구성했다. 뿌쨔찐은 소령 꼬르사꼬프를 추천하여 보스톡호의 함장으로 임명했다. 팔라다호는 함장 소령 운꼽스키를 비롯하여 장교 22명과 승무원 43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는 보스톡호에 승선할 장교 6명과 수병 37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알렉산드르 넵스끼 수도원의 아바꿈 신부는 중국어 통역을 맡았다.

작가 곤차로프는 1852년 10월 7일 항해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제독 뿌쨔찐의 비서로 전함 팔라다호를 타고 함께 출발했다. 곤차로프는 항해 중 도착한 나라의 자연과 풍경 및 그곳 사람들과 민족의 특징을 포착하면서 대양과 대륙을 넘나들며 인간의 삶과 죽음의 공존을 생생히 기록했다. 그는 발의 청결과 절의 풍습에 관한 동양 문화를 설명했고, 속담을 통해 동양과 서양의 문화 교류도 인정했다. 그만큼 곤차로프는 동양을 이해하려는 학습과 노력이 남달랐다. 곤차로프는 공식적으로 항해 기록을 위한 비서 신분이었지만 개인적인 목표도 갖고 있었다. 그는 지식인으로 사회적 의무와 작가적 능력을 고민하면서 팔라다호에 승선했으며, 모든 장소들에 애정을 확장하는 강인한 사람을 꿈꾸었다. 그는 대양에 있는 단단한 범선보다 도시의 소란스러운 거리가 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67] 그것은 국가의 목표와 달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인간성 회복을 꿈꾸는 개인의 표상을 보여주었다.

결국 뿌쨔찐은 1855년 1월 26일 일본 정부와 시모다조약을 체결했다. 팔라다호는 일본과의 외교 수립, 해군부의 탐사 지시에 따른 실행 등 주어진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팔라다호는 1854년 3월 발발한 크림전쟁의 여파로 서방 국가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러시아 식민지를 방문하지 못했고, 오호츠크해 해안

---

67 먼 여행에서 돌아온 곤차로프는 『전함 팔라다호』에 자신이 깨달은 진실들을 쏟아부었다. 예를 들면, 그는 절대 악의 비판과 처벌에 관한 이중성을 꼬집었다. "천개의 돌을 던져보아야 소용없던 악에 또 하나의 작은 돌을 쓸데없이 던져야 할까? 일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 비난받는 쪽은 죄를 인정하면서 침묵한다. 재판은 선고를 내렸지만 선고를 이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49-166. Х. Шанха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조사하지 못했다.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일부터 7일까지 거문도에 정박했고, 4월 20일 조선 연안에 도착해서 5월 11일까지 동해안 조사를 시작했다. 곤차로프는 거문도를 직접 답사했다. 그 과정에서 서양 최초로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명명한 국가는 러시아였다. 올리부차호는 독도를 발견한 후 서도를 올리부차, 동도를 메넬라이로 명명하면서, 실측에 기초하여 최초로 정확하게 좌표에 기입했다. 일본 해군성 수로국은 러시아의 '조선 동해안 지도'를 참고하여 1876년 '조선동해안도'를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독도의 명칭으로 러시아 해군이 명명한 '오리우츠(올리부차)'와 '메네라이(메넬라이)'를 채택했다.

그 후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은 1857년 '조선 동해안 지도'를 발간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공식 인정했다. 현재까지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의 '조선 동해안 지도'는 1857년 판본, 1868년 판본, 1882년 판본이 국내에 알려졌다. 1857년 판본은 1854년 올리부차호가 메넬라이와 올리부차를 처음 발견했다고 소개되었다. 그런데 1860년 러시아 해군 항해부대 소속 지휘관 세르게예프 중령은 독도 지형을 측량했다. 1868년 판본은 세르게예프의 독도 측량을 지도에 소개하면서,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본 세르게예프의 독도 측량 그림을 실었다. 1882년 판본은 1861년부터 1880년까지 이루어진 러시아 조사에 기초하여, 올리부차호의 독도 발견 및 세르게예프의 독도 측량을 동일하게 수록했다. 이것은 팔라다호 함대 소속 올리부차호의 독도 발견이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을 통해서 러시아 정부의 공식 지도에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국 러시아 정부는 19세기 후반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의 지속적인 지도 발간을 통해서, 독도가 한국의 영역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었다.

그 후 러시아의 태평양함대는 동해에서 울릉도를 경유하며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태평양함대 사령관 알렉세예프는 동해에서 전략적인 거점으로 울릉도를 주목했다. 이것은 러시아가 1896년 9월 두만강·압록강·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획득하여 한국에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탐사와 곤차로프의 조선 · 일본 · 중국 인식

Ⅰ. 들어가며

러시아 사실주의 대문호 곤차로프(И.А. Гончаров, 1812–1891)는 1852년 10월 7일 제독 뿌쨔찐(Е.В. Путятин)의 비서로 전함 팔라다호를 탔고, 1855년 2월 13일 뻬쩨르부르크로 돌아왔다. 곤차로프는 비서라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항해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승선했다. 니꼴라이 1세(Николай Ⅰ)는 1852년 중국 및 일본과의 개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뿌쨔찐을 특사로 임명했다.

전함 팔라다호(Фрегат Паллада)는 1852년 10월 7일 끄론쉬따트(Кронштат)를 출항하여, 영국에서 구입한 스쿠너 범선 보스톡(Восток)호와 함께 극동으로 항해했다.[1] 제독 뿌쨔찐은 팔라다호와 보스톡호와 함께 극동함대 소속 코르벳함(군함) '올리부차(Олибуца)'호, 수송선 '공작 멘쉬꼬프(Князь меншков)'호로 함대를 구성했

1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С.1–2. 동부시베리아 총독 무라비요프는 1852년 2월 미국의 무장함대가 일본에 파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일본 등이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가 될 것을 우려하는 공문을 해군제독 꼰스딴틴 대공에게 보냈다. 러시아 정부는 1852년 4월 태평양 연안지역에 설치된 러시아 진지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개항시킬 것을 결의했다(심헌용,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2002, 135–13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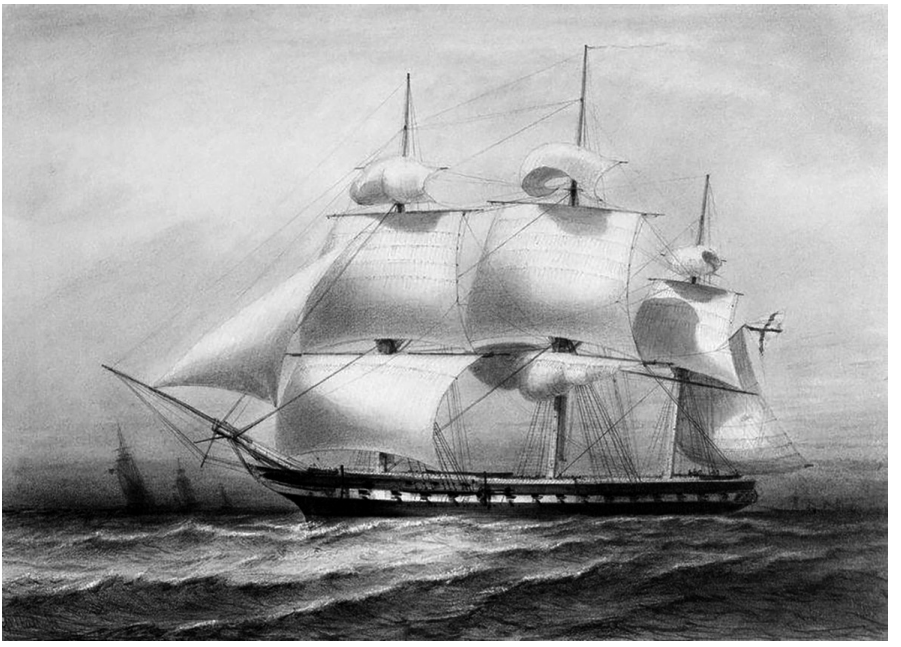

팔라다호(1847)

다.[2] 팔라다호는 발트해와 대서양 및 인도양과 보닌(오가사와라)제도를 거쳐 1853년 8월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고, 1854년 8월 시베리아 연안에 닻을 내렸다. 곤차로프는 항해 일지를 작성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곤차로프의 여행기는 1855–1857년 사이 『전함 팔라다호』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곤차로프의 팔라다호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러시아인의 조선에 관한 시선이라는 주제로 이영은, 이희수, 정은상 등이 주도했다. 기존에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사라는 측면에서 팔라다호가 주목받았다면 이번에는 팔라다호에 비친 조선의 모습

2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2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 사람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었다.

이영은은 러시아의 조선 탐사와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곤차로프의 팔라다호를 살펴보았다. 특히 조선에 대한 곤차로프의 개인적인 설명과 관찰을 상세히 설명했다.[3] 이희수는 곤차로프가 조선인을 '대식가에 게으르며 거친 성격'이고 '침묵하며 척박한 환경과 궁핍한 생활에 순응하는 모습' 등으로 묘사한 내용을 파악했다. 이희수는 곤차로프의 팔라다호에 관한 러시아의 텍스트 분석도 소개했다. 이희수에 따르면 곤차로프는 실제 항해 과정의 탐사활동과 외교협상에 관한 내용은 누락했다.[4]

정은상에 따르면 곤차로프는 조선인을 야만적이거나 미개하다고 비하하고 열등하다는 부정적인 기록을 남겼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조선이 문명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빠르고 쉽게 탈바꿈될 것이라는 잠재성을 예측했다. 정은상은 곤차로프가 인종주의적 편견을 가지고 '자문화 중심적'으로 조선과 조선인에 대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5]

최근 필자는 팔라다호 소속 장교의 인명, 팔라다호의 출발과 도착 등 항해 과정을 파악하면서 독도의 발견 과정을 추적했다. 제독 뿌짜찐은 1855년 1월 26일 일본 정부와 시모다조약(Treaty of Shimoda, 下田條約)을 체결했다. 팔라다호는 일본과의 외교 수립, 해군부의 탐사 지시 등 주어진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팔라다호는 1854년 3월 크림전쟁의 여파로 서방 국가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미국에 있는 러시아 식민지를 방문하지 못했고, 오호츠크해 해안을 조사하지 못했다.[6]

곤차로프의 『전함 팔라다호』는 1858년에 2권으로 최초 발간되었는데, 이 논문은 1940년에 발간된 전함 팔라다호의 축약본에 기초했고, 13장 '마닐라부터 시베리아'

---

3 이영은, 「근대전환기 러시아인의 조선인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4 Тюнькин. К. Примечание//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И.А. Гончарова в 6 Томах. М. 1956. Т. 3. С. 371; Энгельгардт Б.М. Фрегат Паллада//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Спб. 1995. СС. 225–269; 이희수, 「교류 초기 러시아인의 한국인식」, 『대동문화연구』 61집, 2008, 20–21쪽.

5 정은상, 「곤차로프의 '전함 빨라다'에서 본 조선의 시대상 연구」, 『국제지역연구』 18–2, 2014, 325쪽.

6 김영수, 「근대 러시아의 해양탐사와 울릉도 독도 발견」, 『독도연구』 22, 2017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분만 1957년에 발간된 완역본에 기초했다.[7] 필자는 뿌쨔찐의 비서로 참여한 곤차로프의 항해 관련 여행기를 토대로, 제독 뿌쨔찐의 항해와 관련한 공식적인 정부 기록을 상호 보완할 것이다.

기존 연구는 주로 조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팔라다호의 동해안 탐사를 살펴보면서 곤차로프의 시선에 비친 조선, 중국, 일본 인식을 주목할 것이다. 작가 곤차로프가 조선, 중국, 일본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그가 깨달은 진실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것이다.

II. 팔라다호의 조선 방문과 곤차로프의 조선 인식

전함 팔라다호는 1854년 2월 27일에 마닐라를 출발해서 5월 22일에 시베리아 해안에 진출했다. 그 과정에서 팔라다호는 돛대를 수리한 이후 중간 기착지 및 조선 지도 보완 등을 이유로 거문도와 동해안을 방문해 조사했다.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일부터 7일까지 거문도에 정박했고,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조선의 동해안 전역을 조사했다.

곤차로프는 1854년 2월 수송선 공작 멘쉬꼬프호와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 등의 출발 이유를 기록했다. 제독 뿌쨔찐은 함정을 파견했다. 멘쉬꼬프호를 정보 파악을 위해서 상하이로 보냈고, 보스톡호가 정박할 장소와 식료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바탄(Bataan)섬으로 보냈으며, 코르벳함(군함) 올리부차호를 뻬뜨로빠블롭스크로 보냈다.[8] 제독은 조선의 연안에 있는 거문도(해밀턴)로 가서 수송선을 기다릴

---

7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8 뿌쨔찐 제독은 깜차뜨카의 방어를 위해서 군함 올리부차호를 뻬뜨로빠블롭스크(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항으로 보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예정이었다.[9]

제독 뿌쨔찐은 전함 팔라다호의 돛대 수리 이후 중간 기착지로 거문도를 선택했다.[10] 뿌쨔찐은 조선 동해안을 측량하는 이유에 대해서 "북쪽에서 빙하를 만날 것이 우려되어 봄이 올 때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조선 동해안에 관한 부정확한 지도를 보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11]

1854년 2월 27일(양력 3월 9일) 뿌쨔찐 제독은 멘쉬꼬프호, 보스톡호, 올리부차호 등에 다음과 같은 해양탐사 명령을 내렸다.

"수송선 공작 멘쉬꼬프호는 상하이에 기항해서 그곳 우체국에서 발송된 문서들을 수거한 후, 거문도에서 전함 팔라다호와 합류한다.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는 류큐열도에 있는 나파키아네 항구에 기항하여 석탄저장고를 보유한 페리 함대의 일본 활동을 조사한 뒤 거문도로 항해한다.

코르벳함 올리부차호는 상부로부터 다른 지시 사항이 네벨스끼(Невелский) 대령에게 지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타타르해협으로 항해한다. 만약 지시 사항이 없을 경우 올리부차호는 깜차뜨카로 출발한다."

뿌쨔찐 제독은 전함 팔라다호의 돛대를 수리할 곳으로 필리핀 카미긴섬(CamiguinIsland)의 피오퀸토(Pio-Quinto) 항구를 선택했다. 팔라다호는 카미긴섬에서 열흘간 체류하면서, 상세한 조선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준비했다.[12] 팔라다호는 마닐라를 출발해서 바탄섬에서 식료품을 실었고, 카미긴섬에서 돛대를 수했다.[13]

팔라다호는 1854년 3월 11일 필리핀 피오퀸토 항구에 정박했다. 그 후 팔라다호

---

9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05-506.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10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42.

11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44.

12 РГАВМФ. Ф.296. Оп.1. Д.75. ЛЛ.219-223.

13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07.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피오퀸토 항구를 출항한 이후 "해안에 세워둔 표적을 향해 포환, 폭탄 그리고 화염탄을 발사했다." 곤차로프는 영국 군함과 만날 경우를 대비해서 포탄의 효력을 실험했다고 기록했다.[14]

곤차로프는 1854년 3월 25일 포경선을 목격했다. "포획한 고래에서 기름을 뽑아내기 위해 난로를 때고 있었다. 불꽃과 연기가 화재 현장처럼 멀리서도 잘 보였다." 팔라다호는 1854년 3월 29일 거문도 근처 300마일에 도착했다. 곤차로프는 팔라다호가 적합한 항구를 갖춘 거문도에서 보스톡호를 만날 예정이라고 기록했다.[15]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일부터 7일까지 거문도를 방문했다. 팔라다호는 4월 7일에 거문도를 출항하여 다음 날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그리고 4월 14일 나가사키를 출항한 이후 조선 동해안을 탐사했다. 팔라다호는 4월 20일(음력 4월 6일)부터 5월 11일(음력 4월 27일)까지 20일 이상 초산만(울산만)에서 두만강 하구까지 동해안 전역을 실측했다.

팔라다호가 1854년 4월 2일 거문도에 도착했을 때, 보스톡호는 이미 정박하고 있었다. 수송선 공작 멘쉬꼬프호는 4월 2일 팔라다호보다 조금 늦게 도착해서 새로운 소식을 전달했다. 곤차로프에 따르면 "유럽에서 온 소식은 마닐라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고, 대신 상하이에서 온 새로운 소식들이 많았다."

곤차로프는 거문도의 첫인상으로 '초가지붕과 흰옷 입은 주민'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 "섬의 크기가 3마일 정도이고, 절벽 투성이 암석들이었고, 군데군데 동백나무가 보였다. 자그마한 만의 생기 없는 바닷물 위로 조선인의 농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보이는 것은 초가지붕뿐이었고 드물게 주민이 보였다. 모두들 마치 수의를 입은 것처럼 흰옷을 입고 있었다."[16]

---

14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12.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15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516–517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16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17–518.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곤차로프는 조선의 해안을 직접 밟아보고 거문도 주민과 필담도 나누었다. 팔라다호를 직접 방문한 두 노인은 아바꿈(Аввакум) 신부와 통역관 고쉬께비치(О.А. Гошкевич)를 통해서 한문으로 필담을 진행했다.

곤차로프 일행은 "당신들은 몇 살입니까?"라고 묻자, 두 노인은 "서른에서 마흔 정도입니다"라고 답변했다. 곤차로프 일행은 "우리는 당신들이 예순이나 일흔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곤차로프는 이는 아첨이 아니라 동양적인 칭찬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인은 곤차로프의 장화를 벗기고 양말과 군모 등을 섬세하게 살펴보았다.[17]

팔라다호 장교는 손님들을 식탁에 앉히고 차와 흑빵, 건빵과 럼주를 대접했다. 곤차로프는 "손님과 중국어로 생생한 필담을 시작했다. 그들은 눈이 붓을 좇아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썼다"[18]라고 했다.

팔라다호 소속 러시아인 3명이 1854년 4월 5일 거문도 해안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조선인이 러시아 일행을 위협하고 심지어 구덩이에 밀어 넣으려 했다. 이 후 두 노인 중 한 명이 다시 찾아와서 긴 사죄의 글을 썼다. 곤차로프는 노인들에게 차와 보드카, 건빵을 대접했다고 기록했다.[19]

두 노인은 만회(晩悔) 김양록(金陽祿)과 귤은(橘隱) 김유(金瀏)로 추정되었다. 김유는 러시아인과 서면으로 나눈 대화를 묶어 『해상기문』이라는 기록을 남겼다.[20]

팔라다호는 4월 7일 오후 3시 거문도를 출발해서 일본 나가사키로 향했다. 곤차

---

17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22.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18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19.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19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22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20 이희수, 「교류 초기 러시아인의 한국인식」, 『대동문화연구』 61집, 2008, 16쪽; 박보리스,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2010, 130쪽. 거문도 주민들로부터 이양선이 기항했다는 급보를 받은 발포만호(鉢浦萬戶) 이재호, 흥양겸 임실성 군수 윤규석, 흥양현감 윤치성 등 행정과 군사의 관리가 현지로 급파되었으나 러시아 함대는 이미 출항한 뒤였다. 해당 군사책임자인 발포만호 이재호는 처벌되었다(『日省錄』, 哲宗 甲寅 6月 4日; 박태근, 「러시아의 동방경략과 수교 이전의 한러교섭」, 『한러관계100년사』,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3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프는 일주일 예정으로 나가사키에 머물면서 그다음 조선 해안을 지나 사할린 쪽으로 갈 예정이라고 기록했다.[21]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0일과 21일 사이 위도 36도 조선 해안의 2베르스타(1верста=1.0668km) 정도에 도착했다. 팔라다호의 단정(端艇) 중 하나가 해안에 접안했고, 조선인과 한문으로 대화를 시도했다.[22]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5일 위도 39도 강원도 해안을 계속 측량했다. 곤차로프는 "위도 37도부터 조선 해안에 산이 많았고, 저 멀리 뾰족한 산봉우리가 많았다. 하나하나가 다 높았고, 주름진 이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보고 있으니 마음이 쓸쓸했다. 산봉우리마다 군데군데 눈인지 모래인지 하얗게 보였다. 해안은 지대가 낮고, 모래로 덮여 있으며 텅 비어 있었다. 초목이라고는 빈약한 풀들과 여기저기에 관목들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팔라다호는 브로튼(William Robert Broughton, 1761–1821)의 지도를 자세히 확인했다. 그러나 브로튼의 지도가 정확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수정해야 했다. 곤차로프는 위도 39도 조선의 만(灣)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군함대나 상선단 전체가 정박해도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곤차로프는 팔라다호의 단정을 타고 기슭에 도착하면서 봄의 신록을 "아름다웠지만 기이했다. 볼에 빨갛게 연지를 바르고 곱게 차려입은 노파처럼 부자연스러웠고 과장스러웠다"라고 표현했다.

곤차로프 일행은 마을 주민을 훑어보고 고개를 숙여주고 지나쳐서 해안을 따라 마을 쪽으로 걸어갔다. 곤차로프는 조선인에 대해 "키 크고 건장한 운동선수 같다, 거칠고 검붉은 얼굴과 손을 가졌다. 조선인은 일본인처럼 행동거지가 나약하거나 꾸미거나 간교하지 않고, 유구인처럼 겁이 많지도 않으며, 중국인처럼 이해관계가 빠

---

21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23.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22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27–528.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르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했다. 또한 "조선인이 건장한 군인을 배출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중국의 학문에 영향을 받아 시를 썼다"라고 하였다.

조선인은 곤차로프 일행이 멈춰 서자 에워싸며 호기심을 보였다. 곤차로프에 따르면 조선인은 "우리 옷을 살펴보고, 손과 머리와 다리를 만져보며 자기들끼리 속삭였다." 곤차로프는 초원에서 방목하는 말들을 보면서 조선인의 생활을 상상했으며 "우리는 뿔 있는 가축의 흔적과 수레바퀴 자국을 보았다. 아마도 조선인은 살림을 잘 돌보는 사람들인 것 같았다"고 하였다.

중국어 통역관 고쉬께비치는 꽃과 풀과 뱀 등을 수집해서 가방에 보관했다. 곤차로프는 단정을 타고 팔라다호로 출발하면서 멀어지는 조선 해안을 "우리는 구름 속을 항해했다. 그 구름은 산과 언덕, 바닷물, 마침내 하늘과 달까지 가리면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퍼지고 있었다"라고 묘사했다. 4월 28일에는 안개 때문에 측량을 할 수 없었다. 대신 조선인이 찾아와서 팔라다호 선실을 구경했고, 포르테피아노 소리에 놀라서 바닥에 넘어졌다.[23]

팔라다호의 승무원은 1854년 5월 1일 함경도와 강원도 사이 송전만의 수심을 계속 측량하면서 강의 내륙을 따라 올라갔다.

곤차로프는 조선의 모습이 중국보다 새롭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선 지방의 한두 마을을 보고, 한두 무리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곤차로프에 따르면 "어디나 똑같은 다닥다닥 붙어 있는 농가들, 농가 주위의 갈아놓은 밭들. 모두들 입고 있는 흰 가운, 넓은 광대뼈, 클로버 카드의 A를 닮은 코, 턱수염 대신 말갈기 같은 묶음, 벌어진 입과 멍청한 시선. 시로 글을 쓰고 읽을 때 노래 부르듯 말끝을 길게 뺀다. 도대체 길게 주의를 기울일 데가 이곳에서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곤차로프는 지방이 아닌 도시를 자유롭게 들어가서 조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

---

23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28–530. Ⅹ 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력했다.[24]

곤차로프는 1854년 5월 3일 저녁 영흥 인근에서 러시아인과 조선인의 충돌을 기록하면서 조선인의 외부인에 대한 적대감을 포착했다. 곤차로프는 "아직 야만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자연의 아이들인 조선인은 새로운 외부인을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였다. 팔라다호가 함경도와 강원도 사이 송전만 근처에 정박했을 때 승무원은 절벽 근처에서 수심을 측정했다. 그때 조선인이 팔라다호의 단정에 돌을 던졌다. 또한 조선인과 러시아인이 강변에서 충돌했다. 조선인이 돌과 어망추를 단정에 던지자, 러시아 수병은 산탄총을 발사했다. 조선인 중에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무장을 한 러시아 수병은 항의의 표시로 인근 마을을 찾아갔지만 젊은이는 모두 도망가고 노인들만 남아 있었다. 마을 노인들은 해명하기에 급급했다.[25]

곤차로프는 1854년 5월 4일(음력 4월 20일) 뿌쨔찐이 조선 지방관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기록했다.[26] 5월 4일 뿌쨔찐의 문서를 살펴보면 "이곳에 온

---

24 "여행은 책과 같다. 책은 제일 마음에 드는 페이지에서는 멈추고 다른 페이지들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대충 읽는다."(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31.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25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33.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45. 박태근에 따르면 러시아력 4월 30일(음력 4월 16일) 조선인과 러시아인이 영흥부와 덕원진에서 충돌했다. 러시아의 발포로 주민 이춘항(李春恒), 이치모(李致模) 등이 죽고 이흥순(李興淳), 신여빈(申汝彬), 정상권(鄭尙權) 등이 부상당했다(『日省錄』, 哲宗 甲寅(1854) 4月 26日; 박태근, 「러시아의 동방경략과 수교 이전의 한러교섭」, 『한러관계 100년사』,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37–40쪽). 그런데 곤차로프는 1854년 5월 3일 고원군수를 만났고, 5월 3일 그날 저녁 조선인과 러시아인이 충돌했다고 기록했다. 팔라다호는 1854년 5월 4일 오후 1시에 출발했고, 5월 5일에 위도 41도에 진출했다. 그런데 박태근은 『日省錄』에 근거하여 러시아인이 러시아력 4월 29일(음력 4월 15일) 고원군수를 만났고, 러시아력 4월 30일(음력 4월 16일) 조선인과 러시아인이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日省錄』을 살펴보면 고원군수 오경진은 4월 29일(음력 4월 15일) 보고서를 작성했고, 영흥부사(永興府使) 임백수(任百秀)는 5월 1일(음력 4월 17일) 보고서를 작성했다(『日省錄』, 哲宗 甲寅(1854) 4月 23日; 『日省錄』, 哲宗 甲寅(1854) 4月 26日). 한국과 러시아의 문서 날짜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필자는 곤차로프의 이동에 따른 서술을 진행했기 때문에 곤차로프가 기록한 날짜를 채택했다.

26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533–534.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것은 러시아의 병선이며, 배 위에는 대포 50문과 병정 500명이 있습니다. 병선은 러시아 땅으로 가는 도중 잠시 정박했고, 조금도 해를 끼칠 뜻을 품지 않고 인심을 동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간민(奸民)이 사람을 해칠 뜻을 보여, 어제 우리가 이곳에 당도하자, 돌을 던져 우리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병선은 곧 형벌을 써서 엄히 책했습니다. 이 마을의 두목이 어디에 있는지 이를 고시(告示)합니다."[27]

그 후 뿌쨔찐은 1854년 5월 8일(음력 4월 24일, 양력 5월 20일) 러시아인과 조선인의 충돌에 관한 해명 서한을 작성하여, 5월 20일 두만강 하구 조선의 안변 관리에게 전달했다.[28] 뿌쨔찐에 따르면 조선인은 러시아 장교와 선원에게 돌진하여 돌을 던졌고, 미처 배로 피신하지 못한 선원을 공격했다. 그 결과 3명의 러시아 선원이 다쳤다. 러시아 장교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총을 네 차례 발포했다. 당시 러시아 장교와 선원은 모두 24명이었고, 조선인은 200-300명 정도였다. 뿌쨔찐은 이 사건은 전적으로 조선인의 악의적인 행동 때문이라며 사건에 대한 해명을 조선 정부에 요구했다.[29]

한편 곤차로프는 1854년 5월 3일(음력 4월 19일, 양력 5월 15일) 함경도 지방 관리를 만났다. 관리는 말을 타고 있었고, 악사들과 함께 있었다. 러시아인은 관리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관리는 러시아인의 나사(羅紗)천 선물을 거절했다.[30] 곤차로프가 접촉한 관리는 함경남도 고원군수(高原郡守) 오경진(吳兢鎭)이었다. 오경진은 이방인의 복장과 이양선의 형태를 기록하여 정부에 보고했다.[31] 이 대

---

27 大羅西亞國 東海水師將軍→大朝鮮國 地方官台下, 甲寅 四月; 김유, 『해상기문』, 세종대학교출판부, 1988, 25쪽.

28 박보리스,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2010, 130쪽

29 "В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исьмо Путятина, переданное в селении близ устья реки Туманган для доставления в корей скую столицу, 8(20) мая 1854 г."(АВПРИ. Фонд Спб. Главный архив, 1-9. 1852-1856, Дело 17, Часть 2, ЛЛ.258-259; 박보리스,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2010, 140-142쪽)

30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33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31 『日省錄』, 哲宗 甲寅 4月 23日; 박태근, 「러시아의 동방경략과 수교 이전의 한러교섭」, 『한러관계 100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화는 뿌쨔찐의 전속 부관 뽀시예트가 기록했다.

뿌쨔찐은 조선의 개항을 다음과 같이 고원군수 오경진에게 요구했다.

"동서(東西)의 교섭이 없기 때문에 조선(東國)은 원래 서쪽 나라와 통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중국은 이미 5개 항구를 개항하고, 교역(互市)의 장정(章程)을 체결하여, 열강(列國)이 내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향에 따라 바다를 건너기 때문에 조선의 주변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영토가 매우 광활하여 중국과 교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관리가 중국의 베이징에 체류하고 있는 사실을 조선의 관원과 상인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조선의 북계(北界)는 러시아의 동남쪽 경계로서 바다로 3일 거리에 불과하므로 러시아 선박이 조선의 항구에 이르러서 손상(損傷)을 수리하거나 물자(物資)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이 수요(需要)의 물자를 공급해준다면 러시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러시아는 청국을 통해서 조선의 국왕(大憲令)에게 전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이 이미 여러 항구를 개항하여 러시아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데, 조선은 어찌하여 본받지 않고 어렵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는 이미 호의(好意)가 있어, 조선과 러시아의 우호(和好)를 오래도록 굳게 하려는 것이므로 조선의 국왕은 물리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32]

뿌쨔찐은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면서 조선과 러시아의 우호에 관한 협정을 조선 정부에 요청했다. 뿌쨔찐은 청국과 일본이 이미 개항했기 때문에 조선도 러시아의 선박이 조선의 항구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선 정부에 요청했다. 뿌쨔찐은 조선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러시아에서 바다로 3일이면 조선에 도착하고, 러시아 선박이 수리와 물자 보충 때문에 조선의 개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팔라다호는 1854년 5월 5일 위도 41도 조선 해안을 측량했다. 위도 43도 지

사』,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38쪽.

32 大羅西亞國 東海水師將軍→大朝鮮國 地方官台下, 甲寅 四月; 김유, 『해상기문』, 세종대학교출판부, 1988, 24쪽. 박태근은 이 문서가 전달된 날짜는 러시아력 4월 29일이라고 주장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점에서 조선 해안은 끝나고 만주 해안이 시작되었다. 곤차로프는 두만강을 '타만(Taman)', '튜이멘(Tjujmen)', '타이-멘(Taj-men)'이라고 불렀다. 팔라다호는 1854년 5월 9일 두만강 6마일 거리에 정박하여 측량을 진행했다. 곤차로프에 따르면 "두만강은 2.5베르스타 정도 되는 넓은 강이며 수로가 편리했다."

곤차로프는 자신의 옆방에 있는 삐수로프(мичман А. А. Пещуров)가 측량을 주도했다고 기록했다. 곤차로프는 "향후 모든 조선의 해안과 강들에 대한 상세하고 전문적인 기록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팔라다호가 5월 11일 두만강을 출발해 만주 연안으로 향했는데, 라페루즈(comte de La Pérouse, 1741-1788)는 이미 만주 연안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33]

제독 뿌쨔찐은 조선 동해안을 조사하는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뿌쨔찐은 북쪽에서 빙하를 만날 것을 우려하여 봄이 올 때까지 한 달 동안 조선의 동해안을 관측하여 부정확한 조선의 지도를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뿌쨔찐에 따르면 팔라다호는 좋은 날씨 덕분에 해안에서 0.5-4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동해안 전체를 관측할 수 있었다. 팔라다호의 관측과 측량의 결과 끄루젠쉬떼른(И.Ф. Крузенштерн) 제독의 지도나 영국 해군성의 지도는 한반도에 대한 경도 측정에서 오차를 보이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뿌쨔찐은 브로튼만(송전만, Броутон, Broughton)에서 항구를 발견하고, 라자레프 제독(Адмирал Лазарев)의 이름을 따서 '라자레프' 항구라고 명명했다. 뿌쨔찐은 조선의 지도와 기록 자료를 러시아 해군 총사령부 제독에게 보냈다고 기록했다.[34]

곤차로프는 조선과 중국의 관계, 조선인과 유구인(琉球人)의 문화, 조선인의 특징 등을 기록했다.

우선 곤차로프는 조선의 정치·경제·풍습·관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

---

33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33-534.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34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4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 곤차로프는 러시아정교회 이아킨프(Иакинф, 1777–1853) 신부의 조선 관련 논문을 바탕으로 조선의 역사를 서술했다. 곤차로프는 "조선에 대한 단편적 지식을 이아킨프 신부로부터 훔쳤는데, 이아킨프의 맹렬한 지식욕과 거대한 인내심 앞에 경건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기록했다.

곤차로프는 조선과 중국의 관계에 주목했다. 조선은 정치적으로 독립국이었는데 군주가 스스로 결정하여 통치하며 자국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곤차로프는 조선이 중국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 점을 지적했다. 조선 군주는 왕위에 오를 때 중국 황제의 승인을 받았으며, 중국 황제에게 매년 새해에 사절단을 보냈다.

곤차로프는 조선 군주의 왕위 승인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 조선 군주는 중국 황제에게 왕위를 승인받는 관습을 지키고 있었다. 조선 사절은 선물과 함께 왕위 승인을 베이징(北京)에 요청했다. 중국 황제는 통상적으로 승인했다. 중국 황제는 조선 사절들에게 더 융숭한 선물을 내렸다. 중국 황제는 조선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35] 곤차로프는 조선과 중국을 조공관계로 파악하고 조선 왕위의 '통상적 승인'을 주목했다. 결국 곤차로프는 조선이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곤차로프는 조선인이 사냥과 시에 탁월한 민족이라고 기록했다. 곤차로프에 따르면 "타고난 사냥꾼인 조선인은 시를 썼다. 어떤 여왕은 이웃 영토를 정복하고는 직접 그 사건에 대한 송가를 지어 중국 황제의 궁궐로 보냈다."[36]

곤차로프는 거문도에 정박하면서 백성과 마을의 모습을 관찰했다.

그는 거문도 마을의 허술한 담장을 보고 실망했다. 곤차로프는 고르지 못한 돌로

---

35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18.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36 "이아킨프 신부에 따르면 조선(차오-샨)은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최초 주민은 만주족의 한 종족으로 '퉁구스인'이라고 불렸다. 그 후 중국인과 퉁구스인이 결합되었다. 기원 이후 퉁구스인은 고구려(가오-리, Gao-li)를 건설했다. 유럽인은 '가오-리'를 '코레야'로 불렀다."(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34; 곤차로프, 『전함 팔라다』, 동북아역사재단, 2014, 442-44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거칠게 쌓은 담장 사이를 걸어갔는데 담장 너머로 초가지붕만 보았다. 곤차로프는 "유구인이 담 쌓는 것과 비교하면 엉성했다. 게으름, 무성의, 솜씨 부족 등이 엿보였다"라고 하였다.

곤차로프가 집 담장 안에 들어서자 조선인이 거칠게 저항했다. 그런데 섬 마을을 벗어나자 조선인이 친절해졌는데, 곤차로프는 "마을 주민이 편리한 오솔길을 가르쳐주었고, 꽃을 꺾어 주기도 했으며 좋은 풍경을 보여주었다"라고 기록했다.

곤차로프는 자신들의 물물교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던 거문도 주민들의 궁핍한 삶을 포착했다. 곤차로프에 따르면 "모든 것이 벌거벗고 있었고, 궁핍하고 서글프게 보였다. 주민들은 우리에게 식료품을 줄 수 없었다. 그들은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만 가지고 있었다."[37]

곤차로프는 담장, 체격, 모자 등에 대해 조선인과 유구인을 비교했다. 곤차로프는 조선인과 유구인의 모습과 문화에서 많은 유사점을 포착했다. "조선인은 오키나와 유구인과 닮았다. 유구인은 체구가 작은 데 비해 조선인은 체격이 매우 큰 종족이었다. 조선인은 머리를 유구인처럼 위로 빗어 올려 하나로 묶어 그 위에 모자를 썼다."

곤차로프는 조선인의 수염, 상투와 모자, 평민 옷과 양반 옷의 특징을 기록했다. "조선인은 수염을 기른다. 수염의 대부분이 길고 뻣뻣해서 마치 말총 같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모자 종류였다. 모자는 너무 좁아서 하나로 묶은 머리채를 겨우 가릴 뿐인 데 반해서, 챙은 마치 우산처럼 넓었다. 조선인 모두 똑같은 재질로 만든 가운과 바지를 입었다. 고위층은 옷이 하얗고 깨끗했고, 하층민은 하얗지만 더러웠다."[38]

곤차로프는 조선인의 특징 중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변화의 욕망'을 포착한 인물이었다. 그는 조선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빨리 서양을 수용하여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호기심'과 '변화'라고 지목했다.

---

37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21.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38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19.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곤차로프는 조선인이 대외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자국의 정책을 만들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곤차로프에 따르면 "(정책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면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조선은 유럽과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의 발걸음을 더 빠르고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조선인은 도시의 상황을 묻는 우리의 질문에 정말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들이 무얼 하는지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기꺼이 말해주었다. 조선인은 팔라다호가 정박한 만, 해안, 곶, 섬, 마을의 이름까지 알려주었다."

곤차로프는 현지 조선인은 러시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조선 정부가 러시아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곤차로프에 따르면 아바꿈 신부와 통역관 고쉬께비치가 중국 베이징에서 조선인을 만났는데, 조선인은 러시아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 조선은 현재 유럽인에 대한 불신이 적으며, 외국인과 통상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곤차로프는 "조선의 백성이 변화에 목말라 있다"라고 주장했다. 곤차로프에 따르면 조선인은 유리병, 단추, 도자기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조선인은 나사(羅紗)천으로 만든 러시아인의 프록코트를 보고 호기심에 가득 찼다.[39]

한편 제독 뿌짜찐은 육류나 채소를 팔라고 조선인에게 요청했지만, 육류 등의 식품 부족 때문에 구매할 수 없었다. 조선 정부는 극동지역의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의 접촉을 제한했지만, 러시아인과 조선인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40] 뿌짜찐은 조선의 식품 부족을 파악하면서 조선인이 서양인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포착했다.

결국 제독 뿌짜찐은 공식적으로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면서 조선과 러시아의 상호우호에 관한 협정을 조선 정부에 요청했다. 작가 곤차로프는 조선이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했지만, 중국이 조선 왕위를 통상적으로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곤차로프

---

39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31–532. Ⅹ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40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4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조선인과 유구인의 모습과 문화의 유사점을 주목했다. 무엇보다도 조선인이 중국인과 일본인보다 빨리 서양을 수용하여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변화의 욕망'이라고 파악했다.

Ⅲ. 팔라다호의 일본 방문 및 곤차로프의 일본과 중국에 대한 시선

팔라다호는 1853년 8월 9일과 10일 사이 나가사키 항구에 정박하여 일본을 1차로 방문했다.[41] 팔라다호가 석 달 이상 나가사키 항구에 정박하면서 제독 뿌쨔찐은 나가사키 영주와 관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뿌쨔찐은 팔라다호에 일본 관료를 초청했고, 그 결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42]

뿌쨔찐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친절과 우정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고, 러시아와 자신의 지위에 부정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본의 법과 풍습을 너그럽게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했다. 뿌쨔찐은 최대한 침착한 자세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43]

곤차로프는 제독 뿌쨔찐이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온순함, 정중함, 굳건함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하였다. 모든 논의가 사소한 것이었지만 이후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곤차로프는 사소한 것을 양보하면 중요한 것도 양보를 강요당하게 된다고 파악했다.

---

41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20. 나가사키에 도착한 날짜에 대해 곤차로프는 8월 10일, 뿌쨔찐은 8월 9일이라고 기록했다.

42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25.

43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ⅩⅩⅣ. No.10. Спб. 1856. С.2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곤차로프는 일본의 첫인상을 "열쇠를 잃어버리고 굳게 닫혀 있는 보석이다"라고 기록했다. "나가사키 항구는 수많은 작은 배들이 있는 만, 회색빛 집들의 이상스러운 도시의 풍경, 구릉이 있는 해협, 먼 언덕에서 희미한 녹음이 있었다. 이 모두는 너무도 조화롭고 그림 같아서 현실의 한 장면 같지가 않았다."[44]

제독 뿌쨔찐은 나가사키 영주와 일본 정부 앞으로 보내는 러시아 외무대신 네셀리로제(К.В. Нессельроде) 백작의 친서 각 1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가사키 영주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나가사키 영주는 일본 정부의 명령 없이는 만날 수 없다며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서 영주 앞으로 온 친서를 수령했다. 또 나가사키 영주는 일본 정부 앞으로 보낸 친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전달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막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기다려줄 것을 요구했다.[45]

뿌쨔찐은 1853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 일본 영주와의 접견 의례에 대해 협의했다. 곤차로프는 양국의 의례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에 권태를 느꼈으며 "여러분이 유럽에서 이 시각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온종일 앉느냐 앉지 않느냐, 서느냐 서지 않느냐, 어디에 어떻게 앉느냐 등의 문제로 애를 쓰고 있었다"[46]라고 하였다.

뿌쨔찐은 9월 초 나가사키 영주로부터 러시아 외무대신의 친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막부의 허가를 통보받았다. 나가사키 영주와의 면담을 확정한 뿌쨔찐은 9월 9일 일본 정부에 보내는 외무대신의 친서를 전달했다.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 기간이 길어지자, 팔라다호의 장교와 사관생도는 나가사키 항구의 지도 작성, 외국 원서의 번역, 노 젓는 훈련 등을 수행했다.[47] 결국 뿌쨔찐 제

---

44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295–300. IX. Русские в Японии.

45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ХХⅣ. No.10. Спб. 1856. С.24.

46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316 IX. Русские в Японии.

47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ХХⅣ. No.10. Спб. 1856. СС.26–2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독 일행은 한 달간의 협상 끝에 1853년 9월 9일 나가사키 영주를 접견했다. 그럼에도 팔라다호는 일본 정부와의 수교 협상이 지연되자, 11월 5일 식료품을 보충하기 위해 상하이로 떠나기로 결정하고 11월 11일에 출발했다.[48]

곤차로프는 상하이로 출발하는 순간 또다시 항해하는 심정을 표현했다. "물에 떠다니는 삶, 또다시 바람의 의지대로 움직이거나 바람의 자비에 따라 평온해지겠지. 지금 바람은 얼마나 울부짖고 또 얼마나 차가운지! 나는 석 달 동안 바다가 낯설었다."

팔라다호는 1853년 11월 14일 450마일가량을 항해해서 상하이 인근 새들군도(Saddle Islands)에 도착했고, 11월 16일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만 상하이로 출발했다. 팔라다호는 11월 23일 다시 보스톡호를 만났는데, 보스톡호는 상하이에서 황소, 닭, 오리 등의 신선한 재료를 운송했다.[49]

뿌쨔찐은 총독과의 면담, 군함과 상선의 입항 등을 요청하는 문서를 상하이 총독에게 보냈지만 거절당했다. 상하이 총독은 러시아가 청국 북부에서 육상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항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뿌쨔찐은 향후 청국과의 해상무역 논의를 베이징에서 진행할 것을 러시아 정부에 제의했다.[50]

팔라다호는 상하이 근처 새들군도를 출발해 4일 동안 항해한 이후 1853년 12월 24일 나가사키에 정박하여 일본을 2차로 방문했다.[51]

곤차로프는 1854년 1월 1일 나가사키에 도착한 일본 전권대표를 만날 수 있었다.[52] 이날 곤차로프와 함께 소령 운꼽스키(И.С. Унковский)와 나지모프(Н.Н. Назимов), 대위 꼬르사꼬프(В.А. Римский-Корсаков)와 끄리드네르(Н. Криднер), 소령 푸루겔름(И.В. Фуругельм), 중국어 통역관 고쉬께비치 등이 참석

48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353 IX. Русские в Японии.

49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149-166. X. Шанхай.

50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XXIV. No.10. Спб. 1856. С.85.

51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393,397. XI. Русские в Японии. 1854 год.

52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400. XI. Русские в Японии. 1854 го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53] 일본 전권대표는 일본 장검, 비단, 도자기, 쌀, 간장, 돼지 등을 선물했다. 뿌쨔찐은 쇼군(將軍)을 위한 금란(金襴), 거울, 시계, 화병, 카펫 등을 선물했다.[54]

일본 전권대표는 1854년 1월 4일 답방으로 팔라다호를 방문했다.[55] 뿌쨔찐은 1월 말 나가사키와 팔라다호에서 일본 전권대표와 함께 고별 오찬 및 우호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와 일본 대표는 봄에 사할린섬 남단 아니바해협에서 러일 협상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56]

팔라다호는 러시아와 일본의 수교 협상이 계속 지연되자 1854년 2월 15일과 16일 사이 마닐라만에 도착했다.[57] 그 후 팔라다호는 4월 2일부터 7일까지 거문도에 정박했고, 4월 9일 나가사키 항구에 정박하여 일본을 3차로 방문했다. 제독 뿌쨔찐은 봄에 일본 전권대표와 면담을 요청하는 공식문서를 나가사키 영주에게 전달한 다음 조선 동해안의 조사를 결정했다.[58] 팔라다호는 4월 18일 쓰시마를 통과했다.[59] 결국 뿌쨔찐은 1855년 1월 26일 일본 정부와 시모다조약을 체결했다.

곤차로프는 일본에 대한 첫인상과 마지막 인상을 자연 풍경과 함께 다르게 묘사했다. 나가사키 항구의 1차 방문은 '이상함', 2차 방문은 '즐거움', 3차 방문은 '우울함'으로 바뀌었다. 곤차로프는 자연 묘사와 함께 일본에 대한 환상이 깨졌음을 암시했다. 곤차로프는 3차 방문에서 "이번에는 나가사키가 어쩐지 슬프게 보였고 언덕들

---

53 "И.С. Уньковский, капитан-лейтенант Римский-Корсаков, Назимов и Фуругельм, лейтенант барон Криднер, переводчик с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а О.А. Гошкевич."(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401. XI. Русские в Японии. 1854 год.)

54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XXIV. No.10. Спб. 1856. С.38-39.

55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414. XI. Русские в Японии. 1854 год.

56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XXIV. No.10. Спб. 1856. С.39.

57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459. XII. Манилла.

58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XXIV. No.10. Спб. 1856. С.3.

59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527. XIII.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서의 녹음은 희미했고, 나무들의 녹음은 빈약하였다"라고 기록했다.[60]

곤차로프는 일본의 계층 사회로 이뤄진 관료주의, 일본인의 권력에 대한 이중성과 공포심 등을 포착했다.

곤차로프는 일본인이 깨끗하고 예의가 바르다고 파악했지만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인은 일을 천천히 미루고, 꾀를 부리고, 속이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거절을 한다"[61]라고 했다. 하나의 외교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외교 관료는 영주에게 물어보고, 영주는 쇼군에게 물어보고, 쇼군은 덴노에게 물어보았다. 일본인은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차라리 스스로 풀도록 하시오"라며 상대편이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62] 곤차로프는 유럽의 신념과 방법도 '소심한' 일본과의 협상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교한 일본의 국가체제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며 일본이 대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만 일본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다.[63] 곤차로프는 일본인의 권력에 대한 공포심을 주목했다. "일본의 최고 권력은 일본인의 의식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았다. 이것은 공포와 연결되었다. 일본인은 국가체제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64]

곤차로프는 중국인과 일본인의 차이를 기록하면서 중국인의 개인주의를 비판했다. 곤차로프에 따르면 일본인은 활달하고 현실적이었다. 만약 일본인이 '옛것'을 지킨다면 그것은 '새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중국인은 현학적이고 박학다식하

---

60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523–524. Ⅹ Ⅲ.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61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323 Ⅸ. Русские в Японии.

62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301. Ⅸ. Русские в Японии.

63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399. Ⅺ. Русские в Японии. 1854 год.; 곤차로프, 『전함 팔라다』, 동북아역사재단, 2014, 279쪽.

64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22–523.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곤차로프, 『전함 팔라다』, 동북아역사재단, 2014, 409–41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며 불합리성을 갖고 있었다.[65]

곤차로프는 중국이 경련하듯 숨만 쉬고 있으며 민족성을 상실했다고 혹평했다. 개인주의로 팽배한 중국이 뇌물로 부패했고,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중국인은 더 이상 발전을 꿈꾸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단일성과 전체성이 없다. 거대한 전체를 움직이는 필수적인 국가적 생명을 위한 여건들이 없다. 중국에는 국가를 움직이는 필수적인 요소인 민족성, 애국심, 종교가 없다. 중국인은 있으나 중국 민족은 없다."

곤차로프는 중국의 개인주의와 침체 상황을 비판했다. 중국인은 개인과 가족의 원칙을 발전시키고 뿌리내렸지만 사회적·국가적 삶이 성숙하지 못했다. 중국인은 개인적인 일에만 몰두했다. 중국의 법률은 오래전에 죽었고 뇌물이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로 대신했다. 중국인은 모든 것에 무관심했으며, 일상의 자질구레한 걱정만 했다.[66]

IV. 나오며

전함 팔라다호는 1853년 8월 9일과 10일 사이 나가사키 항구에 정박하여 일본을 1차로 방문했다. 팔라다호는 일본 정부와의 수교 협상이 지연되자, 11월 5일 식료품을 보충하기 위해 상하이로 떠날 것을 결정하고 11월 11일 출발했다. 그 후 팔라다호는 상하이 근처 새들군도를 출발하여 12월 24일 나가사키에 정박하여 일본을 2차로 방문했다. 팔라다호는 1854년 2월 27일 마닐라를 출발해서, 5월 22일 시베리아 해안에 진출했다.

---

65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 324–327. IX. Русские в Японии; 곤차로프, 『전함 팔라다』, 동북아역사재단, 2014, 195–196쪽.

66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22–523; 곤차로프, 『전함 팔라다』, 동북아역사재단, 2014, 409–41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 사이 팔라다호는 4월 2일부터 7일까지 거문도에 정박했고, 9일 나가사키 항구에 정박하여 일본을 3차로 방문했다. 팔라다호는 조선의 지도 보완 등을 이유로 거문도와 동해안을 방문하고 조사했는데,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조선의 동해안 전역을 실측했다.

곤차로프는 항해 체험을 통해 바다와 인간에 대한 다양한 진리를 깨달았다. 그는 팔라다호에서 '난파선의 역사'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항해자의 운명을 예측했다. "모든 선원을 잃어도 배는 뼈대만 남은 상태라도 천 마일을 더 갈 수 있다"며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았다. 곤차로프는 인간의 의지보다 자연의 질서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절감했다.

곤차로프는 유럽과 동양의 문명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문명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곤차로프는 유럽 문명 초기 추악한 사건들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고립정책을 이해했다. 유럽은 새로운 문명을 발견하면서 의사를 불태워 죽였고, 물리학자와 천문학자를 박해했다. 곤차로프는 일본이 외국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고집스러운 희망을 이해했다. 일본인은 유럽인을 통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많이 경험했다. 포르투갈 선교사는 일본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자신들의 욕망도 전파했는데, 금과 은과 구리를 가져가면서 오만과 권력을 전파했다.

곤차로프는 중국, 일본, 조선 등의 과거와 현재를 세밀하게 관찰했다. 곤차로프는 계층 사회로 이뤄진 일본의 관료주의, 일본인의 권력에 대한 공포심 등을 비판했다. 개인주의로 팽배한 중국이 뇌물로 부패했고,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중국인은 더 이상 발전을 꿈꾸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중국이 단일성과 전체성을 상실하여 개인주의와 불합리성에 빠져들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곤차로프는 조선인이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빨리 서양을 수용하여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변화의 욕망'이라고 파악했다.

곤차로프는 중국, 일본, 유구, 조선 등의 민족을 하나의 가계로 인식했다. 4개 민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모두가 외모, 성격, 사고방식 등 공통되는 정신적 삶을 형성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그런데 그는 '황폐한 문명'이라는 시각에서 4개 민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곤차로프는 기본적으로 조선, 중국, 일본의 인접성 때문에 유럽과 동북아의 상업적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판단했다. 일본과 조선이 가깝고, 두 나라는 상하이와 가깝다. 곤차로프는 삼국이 유럽의 무역과 항해를 위해 자유로운 공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21세기 한국, 일본, 중국의 무서운 경제적 성장의 잠재력을 꿰뚫어보았던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세기 후반 러시아 함대의 조선 해양탐사

Ⅰ. 들어가며

러시아 뻬쩨르부르크에 소재한 해군함대문서보관소(РГАВМФ)는 명칭 그대로 러시아 해군부의 문서를 총체적으로 보관하는 곳이다. 해군함대문서보관소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의 한국 정책, 특히 부동항 획득정책과 관련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다. 러일전쟁 시기의 문서군을 집중적으로 소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조선 동해안 관련 해양선집과 독도 관련 올리부차호의 항해 일지를 소장하고 있다.

1724년 1월 러시아 황제 뾰뜨르 대제(Петр 1)는 해군사령부 기구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해군사령부 문서보관소(Архив Адмиралтейств-коллегии)가 설치되어 러시아 해군함대의 조직과 기구에 관한 문서를 총괄하여 수집했다. 이후 1827년 해군부 문서보관소라는 명칭으로 개편되어 문서의 보존과 정리를 위한 내규가 정비되었다. 그 후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해군부와 함대의 중앙문서보관소(Центральный архив флота и морского ведомства)로 개칭되었다. 단일국가문서보관소(ЕГАФ)가 출범하면서 1926년 군대와 함대의 문서보관소 3국에 편재되었다가 1934년 해군역사문서보관소(Морский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로 독립했다. 1937년에 소비에트연방 국립중앙 해군함대문서보관소(Цент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Военн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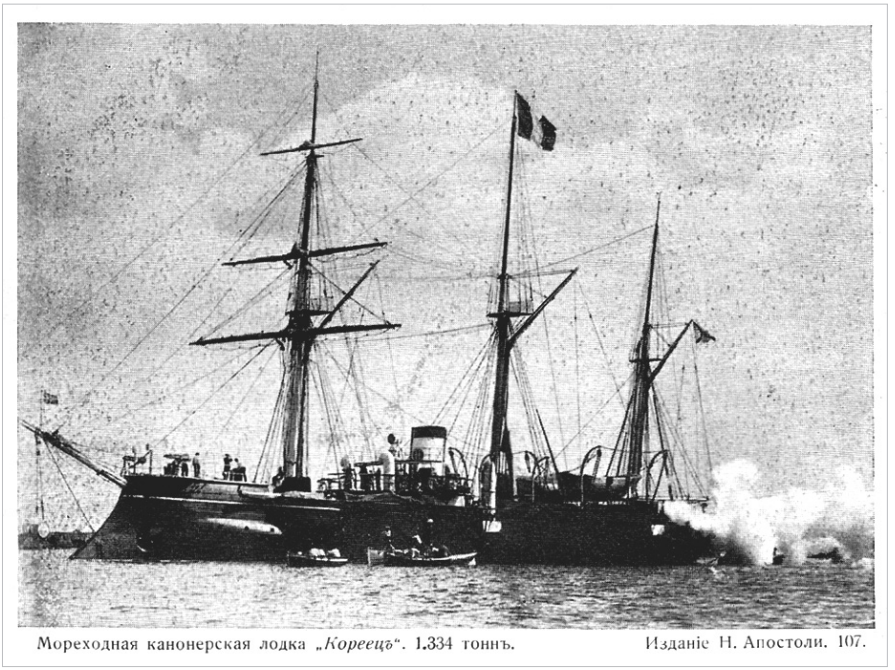

포함 까레예쯔호

Морского флота)로 명칭이 바뀌었다.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된 이후 1992년 6월 러시아국립해군함대문서보관소로 개칭되면서 러시아연방기록청에 편재되었다.[1]

해군함대문서보관소에 있는 한국을 포함한 극동 관련 주요 문서군은 다음과 같다.[2]

첫째 극동총독 알렉세예프 문서군(Алексеев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1843–1918), Адмирал, 1871–1917 гг, Оп.1, 511 ед.хр.)은 1899년 관동주(關東州) 총독 겸 태평양함대 제독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 1903년 극동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극동총독

1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Аннотировнанный реестр описей фондов(1696-1917). СПБ. 1996. СС.5-7.

2 김영수,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재 근대 독도를 포함한 한국관련 자료 현황」,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284-28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가 신설되어 알렉세예프가 극동총독에 임명되었다. 19세기 후반 두 차례 조선을 방문한 알렉세예프는 한반도의 지형과 지리의 조사를 지휘했다. 특히 그는 20세기 초 일본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군대가 만주에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었다.[3]

둘째, 해군참모본부 문서군(Главный морской штаб(1884–1918). Петроград, 1884–1918 гг, Оп.1–6, 25256 ед.хр.)은 1905년까지 러시아 해군의 핵심 문서군이다. 여기에는 조선의 정치·군사·지형·지리와 관련한 문서가 소장되었다. 1896년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해군의 활동, 1897년 뿌짜따 대령 주도하의 조선 군대 훈련에 관한 정보, 1899년 마산포 개항을 둘러싼 러시아 해군의 정보, 1903년 한국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 정부의 전략 보고서와 러시아 해군부의 마산포 저탄소 건립계획에 관한 보고서 등이 소장되었다.[4]

셋째, 해군총참모부 문서군(Морской генеральный штаб(1906–1918). Петроград, 1891–1918 гг, Оп.1–2, 6442 ед.хр.)은 1906년 이후 러시아 해군의 핵심 문서군이다. 여기에는 주일 러시아공사 말렙스키-말레비치가 한국에서의 일본 군사활동에 관한 보고서, 주한 러시아총영사 소모프가 일본 정부의 진해만 군사항구 건설사업에 관한 보고서,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 연흑룡 총독부의 극동지역 전략에 관한 보고서, 1907년 한국 해안에 관한 정보 등이 소장되었다.[5]

넷째, 지도 컬렉션(Атласы, карты и планы архива центрального картографиче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МФ, 1550–1920 гг, Оп.1–13, 9435 ед.хр.)은 태평양과 극동 관련 지도만 대략 1,000개의 상자가 소장되었는데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제작된 다수의 한국 해안지도가 소장되었다. 한국 주요 항

3 Ф.32 Алексеев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1843–1918), Адмирал, 1871–1917 гг, Оп.1, 511 ед.хр.

4 Ф.417 Главный морской штаб(1884–1918). Петроград, 1884–1918 гг, Оп.1–6, 25256 ед.хр.

5 Ф.418 Морской генеральный штаб(1906–1918). Петроград, 1891–1918 гг, Оп.1–2, 6442 ед.х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의 정박지, 해로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1898년 레쁘꼬 중위가 제작한 '동부해양 해안지도첩' 가운데 제1부에 해당하는 '한국 해안 주요 지대의 단면도'를 주목해야 한다.[6] 특히 지도 컬렉션은 19세기 후반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의 지도와 해도를 살펴볼 수 있다.

필자는 해군함대문서보관소에 소장된 극동 관련 지도파일 목록을 직접 확인했다. 해군함대문서보관소는 한국을 포함한 극동 관련 항구도시에 관한 모든 지도를 갖추고 있었다.

당시 필자는 "러시아가 무엇 때문에 극동 관련 해양탐사를 이렇게 치밀하게 조사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다. 이러한 의문은 "러시아의 한국 탐사가 러시아 해군부의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라는 문제와 이어진다. 이 문제는 러시아에 있어서 한국의 가치를 의미한다. 러시아의 한국 해군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러시아의 해양탐사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필자는 러시아의 한국 탐사 과정을 규명하면서 러시아 해군부의 한국 정책을 조명할 것이다. 또한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해양탐사 과정에서 러시아 해군부의 정책 및 러시아 정부의 극동정책을 주목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해양탐사 과정에서 독도와 울릉도를 어떻게 파악했는가를 살펴보면서, 러시아의 해군부 정책 과정에서 독도와 울릉도의 의미도 유의할 것이다.

---

6 Ф.1331 Атласы, карты и планы архива центрального картографиче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МФ, 1550–1920 гг, Оп.1–13, 9435 ед.х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I. 한러수교 이전 러시아의 해양탐사

영국, 일본, 러시아 등의 열강은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를 주도했다. 이들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했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은 전략적 목적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도 동시에 추구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국의 해양을 탐사했다.

일본 정부는 1880년 9월 해군소위 미우라(三浦重郷) 등이 아마기함(天城艦)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탐사하려고 시도했다.[7] 이후 일본 정부는 독자적으로 수로 연구에 적합한 특별한 선박을 소유했고, 1896년 이미 한국과 관련한 상세한 지도를 비밀리에 소장했다.[8]

그렇다면 러시아는 언제부터 한반도 동해를 탐사했고,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어떤 임무와 탐사를 수행했을까?

러시아 해군제독 끄루젠쉬떼른(И.Ф. Крузенштерн)은 1804년 조선 동해를 탐사하고 '1803-1806년 세계여행'을 1810년 뻬쩨르부르크에서 발간했다. 끄루젠쉬떼른은 일본과의 수교 협상을 위해서 나제즈다(надежда)호를 타고 1803년 7월 26일 극동으로 출발해, 1804년 7월 깜차뜨카의 뻬뜨로빠블롭스크에 도착했다.[9]

서양에서 최초로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명명한 나라는 러시아였다. 1854년 한국의 동해안을 조사한 함대는 러시아 제독 뿌짜찐이 이끄는 팔라다호였고, 독도를 발견한 함정은 올리부차호였다. 팔라다호의 소속 함정인 올리부차호는 1854년 4월 6일 대한해협을 지나 북쪽의 타타르해협으로 항해하던 도중 독도를 발견하고, 서도를 '올리부차', 동도를 '메넬라이'라고 명명했다.[10]

---

7 川上健三, 『竹島の歷史地理學的 硏究』, 古今書院, 1966, 46쪽.

8 РГАВМФ(러시아해군함대문서보관소). Ф.417. Оп.1. Д.1340. ЛЛ.375-392. 1896. 1. 21.

9 Крузенштерн И.Ф. Путешествие вокруг света в 1803-06 годах. Ч.2. СПБ. 1810.

10 Описание Восточно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해양선집), Т.14. N.1, 1855, СС.34-3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 후 러시아는 1860년 범선 '가이다막(Гайдамак)', 돛단배 '보예보다(Воевода)' 등을 이용해 한국의 해양을 탐사했다.

가이다막호는 "첫째, 수도와 가장 근접한 곳에 위치한 한국의 항구에 기항하여, 교류를 위해 한국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한국의) 고립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시도를 (러시아가) 최초로 수행했다는 명예를 남긴다. 둘째, 도착한 시점부터 1861년 여름 내내 동해안(Восточной океан)에 머문다" 등의 주요 임무를 부여받았다.[11]

보예보다호는 러시아와 한국의 접경지역인 두만강 하구를 본격적으로 탐사했다. 보예보다호는 뽀시예트(Посьет)만–부따꼬프(Бутаков) 절벽–시스드로(Сисдро) 반도–가슈케비치(Гашкевич)만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지역을 직접 탐사했던 해군중위 나지모프(Н. Назимов)는 "해안지역 주민들이 주로 수수, 미역, 바다표범 등을 주식으로 삼아 생활한다"라고 기록했다.[12]

러시아는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점령했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1869년 4월 스크루 추진식 소볼(Соболь)호에 한국의 서해안을 따라 항해하면서 확인할 것을 명령했다. 소볼호는 1866년 프랑스 탐사대의 지도를 참고해 강화도 지역을 관찰했다. 그런데 4월 17일 소볼호 소속 말쪼프(Мальцов) 대위가 해안에 상륙하자 한국 군인이 소총사격을 가했다. 소볼호는 말쪼프 소위의 귀환에도 불구하고 해안에 있는 한국 요새에 60발 이상의 함포사격을 가한 후 러시아로 돌아갔다.[13]

이러한 해양탐사 과정에서 러시아는 동해, 대한해협, 쓰시마,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했다. 1860년 극동 분함대 지휘관 리하체프(И.Ф. Лихачев)는 유럽지역 중

---

11 РГАВМФ. Ф.240. Оп.1. Д.4. ЛЛ.120–122. 1860. 10. 22.

12 РГАВМФ. Ф.240. Оп.1. Д.6. ЛЛ.9об–13. 1860. 4.

13 당시 주청 러시아공사 뷰쪼프(Е.К. Бюцов)는 한국이 이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할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그는 한국 정부에 사건에 관한 해명의 문서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РГАВМФ. Ф.410. Оп.2. Д.3088. ЛЛ.4–7. 1869. 5. 1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준트(Зунд, 발트해와 대서양 사이)해협과 보스포루스(Босфор, 흑해와 지중해 사이) 해협이 다른 나라의 소유인 상황에서, 타타르해협(사할린과 연해주 사이)과 대한해협(Корейский)을 연결하는 태평양을 주목했다.

해군 소장 리하체프는 한국과 연해주에서 태평양으로 향하는 통로인 3개의 해협을 주목했다. 즉 사할린(Сахалин)과 홋카이도(Матемай, Хоккайдо, 北海道) 사이의 라페루즈(Лаперуз)해협, 홋카이도와 일본 사이의 쓰가루(Сангарский, 津輕)해협, 일본과 조선 사이의 대한해협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중 리하체프는 "중국과 일본의 주요 항구들을 지나가는 직선로가 바로 대한해협이다"라며 대한해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하체프는 "러시아가 자국에 적대적인 국가에게 3개의 해협이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중 가장 중요한 출구 하나만이라도 러시아가 소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리하체프는 쓰시마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는 쓰시마가 러시아 군함의 휴식 장소 및 집결지로 최적의 장소이고, 저탄소의 기능으로도 상당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리하체프는 영국인을 비롯한 서구열강이 먼저 쓰시마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쓰시마에 대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러시아가 섬 전체 또는 일부분을 영토로 획득한다. 둘째, 러시아가 최소한 창고와 병원 등의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안에 있는 일부 장소를 할양받은 후 러시아 선박과 함대가 왕래하도록 한다. 셋째, 섬이 모든 유럽인들에게 개방되지 않도록 한다."[14]

리하체프는 1861년 쓰시마가 지중해 몰타섬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쓰시마는 광범위한 정박지로 천혜의 조건을 갖췄다. 이 섬은 군사작전 기지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한국, 일본, 중국을 연결하

14 РГАВМФ. Ф.410. Оп.2. Д.2385. ЛЛ.1–6. 1860. 5. 21/6. 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해양 거점이었다. 그래서 리하체프는 러시아가 1861년 쓰시마의 일부 지역을 사용했지만 영국과의 관계 때문에 1862년에 철수했다고 보고했다.

결국 리하체프는 블라디보스톡의 강화 및 동해의 자유로운 출구를 확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다. 리하체프는 부동항이 되지 못한 블라디보스톡의 취약성을 한국의 항구를 차지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먼저 한국을 점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공식적인 협정을 체결해 한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15]

19세기 후반 해양탐사 과정에서 러시아는 한국의 중요성을 한층 더 인식하면서 한국과의 교섭 필요성을 깨달았다. 한국은 러시아의 연해주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우월한 영향력 확보 및 블라디보스톡의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원산항은 부동항으로서 러시아 해군에게 전략적으로 매력적이었다.[16] 1884년 러시아 신문에서 "지도를 살펴보면 한국이 '동해의 열쇠'라고 표현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중립적인 한국은 중립적인 터키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도할 정도였다.[17]

해군대신 사무대리 해군대장 쉐스따꼬프(И.А. Шестаков)는 1882년 5월 외무대신 기르스(Н.К. Гирс)에게 "주청 러시아공사가 러시아의 군사항로를 위한 한국 항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18]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한러수교의 필요성으로 연결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1884년 한러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1880년대 초반 한국이 미국,

---

15 РГАВМФ. Ф.16. Оп.1. Д.244/229. ЛЛ.1–3об. "쓰시마 요새에 관한 작업은 1885년 시작되었고, 이 아비티 소령의 지휘하에 진행되었다. 마쿠케 중대, 오슈라 중대, 이모사키 중대, 오이시 중대로 구성." (РГАВМФ. Ф.574. Оп.1. Д.3. ЛЛ.32–33)

16 РГАВМФ. Ф.410. Оп.2. Д.4122. ЛЛ.2–3. 1881. 4. 7/19.

17 Московская ведомость, 1884.12.29: РГАВМФ. Ф.23. Оп.1. Д.52. ЛЛ.30–34об.

18 РГАВМФ. Ф.410. Оп.2. Д.4122. Л.17. 1882. 5. 2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영국, 독일과 맺은 조약을 참고했다.[19] 텐진(天津) 주재 러시아영사 베베르(К.И. Вебер)는 1884년 5월 도쿄에 도착했고, 이후 러시아 군함을 타고 서울로 출발했다.[20] 6월 25일(음력 윤5월 15일, 양력 7월 7일) 한국 전권공사 외무독판(外務督辦) 김병시(金炳始)와 러시아 전권공사 5등관 베베르 사이에 "상대국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협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조러수호통상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을 체결했다. 이는 전문 13조의 조러수호통상조약, 부속통상장정(附屬通商章程), 세칙(稅則)과 세칙장정(稅則章程), 선후속약(善後續約) 등으로 구성되었다.[21]

Ⅲ. 아관파천 이전 러시아의 해양탐사

1880년대 러시아 해군은 한국 연안에 대한 세부적인 탐사를 실시했다. 1882년 8월 17일 '공작 에딘부르그스끼(Герцог Эдинбургский)'호는 블라디보스톡을 출항해서 8월 19일 라자레프(원산의 송전만)를 탐사했고, 20일까지 한국 해안을 항해했다.[22]

1886년 3-5월 사이 쾌속선 '끄레이세르(Крейсер)호'의 중령 오스똘로뽀프(Остолопов)는 한국 해양에 관한 수로탐사를 실시하면서 서울-원산-홍원-북청 등을 방문했다.[23] 끄레이세르호는 함경도 지역 중 곤차로프(Гончаров, 마양도)를 본격적으로 탐사하면서 "섬과 본토의 해안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니 해협의 안전성을

---

19 РГАВМФ. Ф.410. Оп.2. Д.4122. Л.13 с об. 1882. 4. 15; РГАВМФ. Ф.410. Оп.2. Д.4122. ЛЛ.67-68. 1884. 10. 8.

20 РГАВМФ. Ф.410. Оп.2. Д.4122. ЛЛ.47-48 с об. 1884. 5. 4.

21 РГАВМФ. Ф.410. Оп.2. Д.4122. ЛЛ.70-86.

22 РГАВМФ. Ф.12. Оп.1. Д.202. ЛЛ.103-104об. 레솝스키(С.С. Лесовский) 제독은 1880년 7월부터 1881년 6월까지 러청이리분쟁(露淸伊犁紛爭) 때문에 배 23척을 이끌고 블라디보스톡 등의 극동지역에 파견되었다(최덕규, 「朝鮮策略과 고종정부의 북방정책: 러시아 레솝스키 함대의 극동원정(1880-1881)을 중심으로」, 『군사』 108, 2018, 271-272쪽).

23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6. Л.62-63. 1886. 7. 2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했다.[24] 함장 오스똘로뽀프는 북청부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함을 정박시킬 수 있는 장소를 사전에 미리 탐색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끄레이세르호의 선원은 홍원수령에게 가축과 석탄을 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선박이 편리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수심이 깊은지 얕은지 알아보기 위하여 해안을 측량하고 지형을 관측했다"라고 밝혔다.[25] 이러한 사실은 조러조약 체결 이후 본격적인 러시아의 한국 탐사가 진행되었고, 러시아 해군이 한국에서 영국 해군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1886년 8월 포함 '시부치(Сивуч)호'는 진해(Bate Crichton 북위 34.2, 동경 128.18)군도를 탐사하면서 군사적 방어시설 및 저탄소의 기능을 관찰했다.[26] 그 후 시부치호는 1887년 4-5월 사이 두만강을 정밀하게 측량했다.

해군대장 쉐스따꼬프는 1886년 6월 21일 거문도에 입항하여 탐사했다. 그 과정에서 거문도에 주둔한 영국 함대를 방문했다. 그는 감시초소가 있는 영국 해군의 숙영지를 살펴보면서 "영국인이 수뢰 창고와 석조로 된 선창을 건설했으며 돌로 연안을 보강하였다"라고 기록했다.[27]

쉐스따꼬프는 1886년 8월 도쿄에 머물면서 2차 한러밀약 내용을 기록했다. 한국 외부고문관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 穆麟德)는 청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보호를 원하며, 그 대가로 러시아에 한국 항구를 제공하겠다"라는 고종의 의사를 전달했다. 묄렌도르프는 "원산 대신에 영일만(Унковский)을 한국에 양보할 수 있다"며 한국의 항구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주

---

24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6. Л.20. 1886. 3.

25 РГАВМФ. Ф.417. Оп.1. Д.122. ЛЛ.57-60. 1886. 10. 18.

26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6. ЛЛ.64а-64б. 1886. 8. 29.

27 РГАВМФ. Ф.26. Оп.1. Д.4. ЛЛ.53об-55. 1886. 6. 쉐스따꼬프 제독은 모스크바(Москва)호를 타고 1886년 5월 오데사를 출발하여, 7월 거문도와 영흥만에 정박했고, 순방을 마치고 1886년 11월 12일 알렉산드르 3세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최덕규, 「러시아 해군상 쉐스타코프와 거문도 사건(1885-1887)」, 『서양사학연구』 37, 2015, 72-7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 러시아공사 다비도프(Давыдов)는 한러밀약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주일 러시아영사 쉬뻬이에르(А.Н. шпейер)를 한국에 파견했다. 고종은 쉬뻬이에르를 접견한 다음 그날 저녁 비밀리에 밀사를 파견하여 "러시아의 보호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전달했다. 하지만 주한 청국공사 위안스카이(袁世凱)는 한국 관료까지 동원하여 한러밀약 체결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결국 한러밀약은 체결되지 못했다.[28]

2차 한러밀약설 이후 청국 정부는 고종 폐위, 한국 점령, 민비 유형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했다. 당시 주청 영국공사는 청국이 즉각 한국을 점령할 것을 제안했고, 주청 일본공사는 청국과 일본이 한국의 북부와 남부지역을 분할할 것을 제안했다.

북양대신 리훙장(李鴻章)은 한국 문제를 자신에게 일임할 것을 청국 정부에 요청하여 협상의 전권을 행사했다. 리훙장은 고종을 폐위시키려는 청국 정부의 의도를 단념하도록 노력했고, 주청 러시아 대리공사 라듸젠스끼(Н.Ф. Ладыженский)와 톈진에서 협상을 진행했다.[29]

그 결과 1886년 8월 주청 러시아 대리공사 라듸젠스끼는 러시아 외무부의 훈령에 따라 "한국의 현상유지에 대한 불가침성을 상호 보장"하는 협약을 리훙장과 체결했다. 외무대신 기르스는 "서구열강이 한국 영토의 불가침성을 도모할 수 있는 협약이다"라고 평가했다.[30] 그렇지만 라듸젠스끼와 이훙장은 "한국이 청국에 종속된 관계이며 청국이 한국에 대해 특별한 책임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다.[31]

그 후 러시아 외무대신 기르스는 1887년 1월 "고종이 러시아의 보호에 힘입어 청국과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라고 기록했다. 그런데 기르스는 "고종의

---

28 РГАВМФ. Ф.26. Оп.1. Д.6 ЛЛ.3об–5об. 1886. 8.

29 РГАВМФ. Ф.417. Оп.1. Д.312. ЛЛ.7–10. 1886. 10. 26.

30 РГАВМФ. Ф.417. Оп.1. Д.312. ЛЛ.1–5. 1887. 1. 8.

31 РГАВМФ. Ф.417. Оп.1. Д.312. ЛЛ.10–11об. 1886. 10. 2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안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지만 분명하게 거절할 필요도 없다"라고 판단했다.[32]

러시아 외무대신 기르스는 1887년 5월 러시아 군함이 한국을 자주 방문할 것을 해군부에 요청했다. "첫째, 태평양함대의 주요 임무가 한국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의미를 강화시킨다. 둘째, 한국 정부에게 러시아가 청국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러시아 해군부는 태평양 함대 지휘관 까르닐로프(Корнилров) 해군소장에게 제물포에 군함 파견을 지시했다.[33]

1887년 5월 초 쾌속선 베스닉(Вестник)은 제물포를 방문했고, 5월 말 포함 보브르(Бобр)호는 부산과 원산을 방문했다.[34] 1887년 7월 군함 안나(Анна)호 함장 프리돌프 겍(фридольф Гек)은 한국 동해안을 탐사했다. 함장은 시종무관장 꼬르프(А.Н. Корф) 남작으로부터 "한국의 동해안을 따라 항해할 때, 한국의 항구 중 정박지 및 함선의 은폐지로 적합한 장소를 탐색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함장은 한국의 동해안(Восточная берега Кореи)에 위치한 안나항(Набросκий Гавани Анна)과 뽀꼬치만(Бухты Покочи)의 스케치 복사본을 동봉해서 보고했다. 함장은 "러시아가 뽀시예트만을 점령하면 청국이 만주에서 바다로 통하는 출구를 잃게 됨으로써 러시아가 청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35]

1888년 3월 18일 태평양함대 사령관 슈미트(Шмидт)는 드미뜨리 돈스꼬이(Дмитрий Донской)호와 보브르호 등과 함께 제물포에 도착했다. 제물포에서 출발한 슈미트는 서울의 강가에 도착했고, "강의 지도 및 그 제작에 관한 기록" 등을 작성하여 러시아 수로국(Главное Гидрограф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에 송부했다. 그는 3월 22일 드미뜨리 돈스꼬이, 나예즈닉(Наездник), 보브르 함장 및 수행 장교를 대동하여 대궐에서 고종을 알현했다. 그는 "한국의 이익을 유럽적인 의미에서 이해하는 유

32 РГАВМФ. Ф.417. Оп.1. Д.312. ЛЛ.1–5.1887. 1. 8.

33 РГАВМФ. Ф.417. Оп.1. Д.312. ЛЛ.13–15.1887. 6. 8.

34 РГАВМФ. Ф.417. Оп.1. Д.312. Л.17 с об. 1887. 6. 23.

35 РГАВМФ. Ф.417. Оп.1. Д.312. ЛЛ.22 с об. 1887. 7. 1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한 사람"이라며 고종을 평가했다.[36]

1887년 세계일주 중 러시아 군함 비쨔지(Витязь)호는 울릉도를 방문했다. 함장은 마까로프(С.О. Макаров)였는데, 그는 나중에 러시아 해군의 제독이 된 인물이다. 울릉도 방문 기간에 코르벳 함정의 장교들이 섬의 목록과 지형을 측량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도를 발간했다.[37]

1894년 7월 주한 러시아공사 베베르는 태평양함대 사령관 띄르또프(Тыртов)에게 제물포항에 예비 경비선을 보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 이유에 대해 "첫째, 교대로 가까운 항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을 교체하고 예비물품을 보충하기에 편리하다. 둘째, 긴급한 상황에서 주한 러시아공사관을 상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베베르는 주장했다.[38]

1895년 5-7월까지 시부치호는 한국 북부를 집중적으로 탐사했다. 시부치호는 두만강 유역 중 가슈께비치(Гашкевич)-꾸린가이(Курингай)-소뽄크(Сопонг)-찐자니(Цинзани)-호꼬르뿐가(Хокорпунга)-꼬가이(Когай)-엑스뻬지찌야(Экспедиция)-까르닐로프(Корнилов) 등을 탐사했다. 시부치호 함장 유리예프(Юриев)는 "전쟁이 발발하면 러시아 해군의 강력한 은신처로 까르닐로프만"을 주목했다.

시부치호 함장은 1895년 7월 14일에 고종을 알현했다. 그 자리에서 고종은 러시아가 한국의 동해안을 촬영하고 측량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해양탐사 작업의 결과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러한 사실은 고종이 러시아의 동해안 측량에 관심을 보였고, 러시아의 측량 결과를 확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것은 '유럽적인 의미를 이해한' 고종이 통치권자로서 동해에 관한 영해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

36 РГАВМФ. Ф.417. Оп.1. Д.382. ЛЛ.3-8об. 1888. 4. 16.

37 Глушков В.В. История военной картографии в России(XVIII -начало XX в.). М., 2007. С.373.

38 РГАВМФ. Ф.417. Оп.1. Д.1261. ЛЛ.47 с об. 1894. 7. 20. 아관파천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실제 러시아 군함 2척이 교대로 제물포에 정박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것을 보여준다.

1895년 8월 15일 시부치호는 나가사키에서 보브르호를 만났는데, 제물포 정박장에 대한 정보 및 페리제도(Ferieres)에서 제물포까지 항해를 위한 최신 지도를 보브르호 함장에게 전달했다.[39]

1895년 11월 까레예쯔(Кореец)호는 한국의 동해안 지도를 탐사하면서 그 전략적 가치를 상세하게 보고했다. 까레예쯔호는 신포–원산–마산포–거제도–쓰시마 등을 탐사하면서 러시아 해군의 전략적 거점 건설을 위한 항만 상황을 조사했다.

그중 까레예쯔호는 "신포(Шинпо)항이 육지와 마양도 사이의 해협으로 3개의 만으로 이루어진다. 꼬르닐로프만, 나히모프만, 이스토민만이 그것이다"라고 보고했다. 또한 "섬 서부는 동부보다 더 높아서 이스토민만과 나히모프만은 꼬르닐로프만보다 적의 포격으로부터 방어하기가 더 수월하다"라고 기록했다.

까레예쯔호는 원산항에 대해서 "나히모프 반도의 동부 해안은 산이 많고 몇 개의 구릉으로 연결되어 있다. 브로튼 해협의 남쪽 연안은 일본인이 거주와 교역을 목적으로 선택했다. 남쪽 연안은 일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기록했다. 함대의 물자 보급에 대해서 원산항은 "부산과 비교하여 육류의 질과 가격이 더 좋고 저렴하며, 하루 300파운드까지 빵을 보급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다.

까레예쯔호는 원산항에 대해서 "블라디보스톡과의 인접성을 고려하면 전략적·상업적 관계에서 중요하다. 측도와 측량을 보충하여 자세한 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향후 2년 동안 기상관측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기록했다. 이러한 작업은 "1854년 소형구축함 팔라다호의 단편적인 지리적 작업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가 19세기 중반 팔라다호의 동해안 탐사 이후 한국의 지형과 해안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러시

---

39 РГАВМФ. Ф.417. Оп.1. Д.257. ЛЛ.94–126об. 1887. 8. 2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는 원산항을 더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기선회사 셰벨료프(Шевелёв) 사의 대리인 그레이(Грей)에게 원산의 기상관측 관리를 맡겼다. 그리고 전함 만주(Маньчжур)호 함장은 그레이에게 기압계, 온도계, 노트 등을 제공했다.

까레예쯔호는 부산항에 대해서 "홀수 28피트의 함선을 4대까지 수용할 수 있고, 북서풍과 북풍이 부는 겨울철에 함선이 정박하기 좋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군대를 위한 신선한 식료품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고기는 질이 나쁘고 비싸다. 빵은 도시의 유일한 제빵소에서 하루 총 250푼트만 생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까레예쯔호는 거제도에 대해서 "거제도를 서쪽에서 휘감고 있는 커다란 진해만이 거제도와 육지 사이의 주요 분수령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대규모 함대 정박과 해양기지를 건설하기에는 항구가 좁은 편이다. 거기다 진해만은 겨울철에 폭풍을 동반하여 자주 불어오는 바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보고했다.

까레예쯔호는 마산포에 대해서 "길이 8.5 최대 폭 3마일에 5-7사젠의 고른 깊이를 갖고 있어서 해리 파크스 만은 훌륭한 정박장을 제공한다"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도 "마산포는 한국 남부에서 서울로 가는 좋은 도로가 있다. 그 때문에 마산포가 상업과 군대의 이동 거점으로 중요하다"라고 보고했다.[40]

까레예쯔호 함장 린데스뜨람(Линдестрам) 중령은 한국 북부의 무역 집결지이자 한국 해로의 거점지로 원산을 지목했다. 그는 "원산항은 한국 북부의 대내외 무역 집결지이자 육로를 통해서 평양, 서울 그리고 러시아 국경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또한 원산 지역 중 "라자레프를 포함하는 브로튼만이 뽀시예트부터 부산까지의 전체 해안에서 중요한 거점"이라고 평가했다.

린데스뜨람 중령은 브로튼만의 측량 등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원산에 러시아영사를 임명한다. 둘째, 뽀시예트-원산-서울-부산을 연결

---

40 РГАВМФ. Ф.417. Оп.1. Д.1341. ЛЛ.4-27. 1895. 12. 4. 러시아 해군에 따르면 원산의 세관 정박소는 겨울에도 결빙되지 않았다. 상인 셰벨료프 요원와 그레이는 1895년 11월 1일부터 1896년 2월 29일까지 원산의 기상관찰 결과를 보고했다(РГАВМФ. Ф.417. Оп.1. Д.1372. ЛЛ.192об-196. 1896. 3. 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는 전신선을 가설한다. 셋째,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원산과 평양을 연결하는 철도 시설 설치를 위한 준비 탐사를 시행한다. 넷째, 최소 월 3회 이상 한국과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쾌속선 노선을 개설한다.

린데스뜨람 중령은 "세벨료프 선박회사를 활용하여 부산과 원산에 러시아의 석탄 저장소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산을 거점으로 활용하고 블라디보스톡에 강력한 요새이자 해군 병기고를 마련한다. 원산과 평양 이북의 지역을 러시아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권 아래에 두어야 한다. 신포항 역시 중요한 군사적 거점으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41] 까레예쯔호 함장은 신포–원산–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여 동해에서 러시아까지의 해양 영역을 구축하는 구상을 러시아 해군부에 제안했다.[42]

IV. 나오며

19세기 후반 러시아는 해양탐사를 통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1894년 청일전쟁 이후 한국에 대한 해상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했다.

19세기 후반까지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현상유지 정책을 지지했다. 그런데 청일전쟁 이후 극동지역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한국 정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청일전쟁 직후 1894년 8월 21일 러시아 정부는 황제 알렉산드

---

41 РГАВМФ. Ф.417. Оп.1. Д.1341. ЛЛ.28–32об. 1895. 12. 9.

42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 함대는 주한 러시아공사관의 수비 등을 이유로 조선에 자주 입항했다. 주한 일본대리공사 가토(加藤)에 따르면 1896년 11월 12일 러시아 군함 '류릭크', '애드미랄 나히모우', '자비아카', '가이다마크', '후사쓰니크', '카레쓰'의 6척이 인천에 입항했다. 주한 러시아공사 베베르와 대령 스뜨렐리비츠끼는 1896년 11월 13일에 태평양 함대사령관 알렉세예프 중장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으로 내려갔다. 여기에는 궁내부 비서원승 김홍륙(金鴻陸)이 총순(總巡) 1명과 순사(巡檢) 2명을 이끌고 베베르와 동반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11)』, 1896년 11월 18일, 報告第15號「施政一班 등 보고」, 加藤 臨時代理公使→大隈 外務大臣, 9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르 3세의 지시로 특별회의를 개최했다. 특별회의에서는 "러시아가 청일전쟁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교전 국가 중 하나가 조선의 영토를 침범했을 때 러시아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외무대신 기르스는 회의를 주도하면서 러시아의 대응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군부대신 반놉스키(П. С. Ванновский), 해군대신 사무대리 치하체프(Н. М. Чихачев), 재무대신 비테(С.Ю. Витте)는 외무대신의 대응전략을 군사적 · 재정적 측면에서 보강하려고 노력했다.

이날 외무대신 기르스는 청일전쟁 직후 상황에서 "조선의 현상유지(status quo)"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일본이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항구에서 해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대한해협까지 손에 넣는다면 러시아는 동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르스는 "조선에서의 현상유지가 본질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러시아는 조선의 영토 불가침권이 파괴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43]

이날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열강과의 외교적 협조를 통해 "조선의 현상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전쟁에 대비한 러시아 군대의 강화를 결정했다.[44]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가 최대한 외교적인 노력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하지만 유사시 전쟁에도 대비한다는 러시아 정부의 이중적인 대응방식을 보여준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청일전쟁 이후 대한해협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45] 결국 러시아는 한국의 동해와 대한해협을 연결하는 해양전략적 가치를 중시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점차 확실해지자 1895년 2월 1일 러시아 정부는 황제 니꼴라이 2세의 지시로 특별회의를 개최했다. 특별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열강들과 함께 한국의 현상유지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가 독자적인 정

---

43 РГВИА(군사문서보관소). Ф.846. Оп.1. Д.134. ЛЛ.34–35.

44 РГВИА. Ф.846. Оп.1. Д.134. ЛЛ.39об–40.

45 김영수, 『미쩰의 시기: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경인문화사, 2012, 27–2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책을 추진할 것인가"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한국 문제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청일강화를 위한 일본의 요구 조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여전히 포괄적인 대응방안만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도한 재무대신 비테는 "러시아가 청일전쟁에서 불간섭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기 위해 태평양에서 해군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무엇보다도 비테는 "러시아가 최후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간섭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극동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함대의 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인식했다. 그는 "특별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하지만 해군대신과 재무대신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46]

이날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1894년 8월 21일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열강에 의한 외교적인 협조를 유지하는 기조였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공조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태평양함대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47] 태평양함대 강화, 그것은 러시아가 열강과의 공조 실패를 예견하고 영국과 일본을 자극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 기르스 외무대신의 정책건의서에는 러시아가 일본의 승전에 대비해 대한해협의 자유항행권을 보장받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제시되었다. 첫째, 만일 청일 간의 종전 협상 시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이해가 손상될 경우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대한해협의 자유항행을 보장받기 위해 한국 남단의 항구 중, 예를 들어 거제도를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 둘째, 그곳에 영국의 홍콩기지와 유사한 러시아의 조차지를 건설해야 한다.[48]

---

46 Красный архив, T.52, 1933. CC.67–73.

47 "러시아 해군은 태평양에서 일본의 해군력을 능가할 수 있도록 러시아 함대를 보강한다. 해군대신 사무대리는 함대 증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재무대신과 협의한다."(Красный архив, T.52, CC.73–74쪽)

48 Красныйархив. T. 52. 1933. C.67–74; 최덕규, 『제정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경인문화사, 2008, 5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랴오둥반도를 할양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파악한 러시아 정부는 1895년 4월 11일 황제 니꼴라이 2세의 지시로 특별회의를 개최했다. 특별회의에서는 "만주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타협하는가, 아니면 일본과 대립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핵심이었다. 즉 조선의 현상유지를 논의하던 상황에서 만주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대립이었다.

1895년 4월 11일 특별회의에서 비테는 해군력의 강화를 주장했다. 비테는 "만일 러시아가 일본의 만주 진출을 허용한다면 우리의 영토와 시베리아 철도를 방위하기 위해서 10만 명의 병력이 요구된다"라고 인식했다. 비테는 러시아의 해군 증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러시아 정부는 일본의 만주 점령을 부정하고 군사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단기적으로 만주지역에 대한 방어를 계획했고, 장기적으로 조선에 대한 현상유지 정책을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49] 회의 결과 극동지역의 러시아 해군력 증강이 시작되었다. 19세기 해양탐사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청일전쟁 이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고, 극동지역에 대한 러시아 해군력 증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말이 아닌 행동을 실행했다.

---

49 АВПРИ. ф.143. Оп.491. Д.1126. ЛЛ.6–7; Красный архив, Т.52, С.8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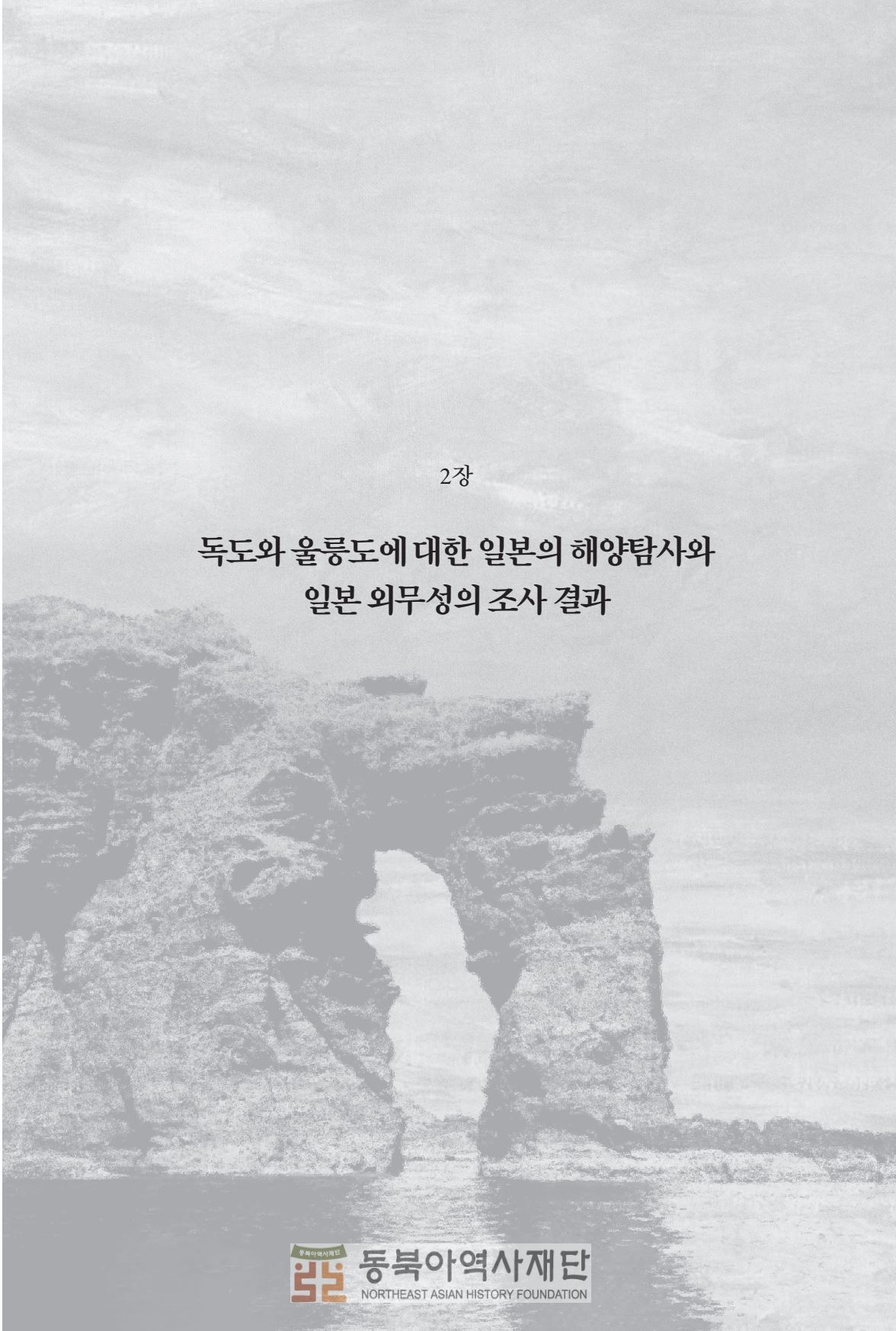

2장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해양탐사와 일본 외무성의 조사 결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Ⅰ. 들어가며

『죽도고증(竹島考證)』은 일본 외무성의 지시를 받아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가 작성한 6-19세기 후반(1881년)까지의 '죽도'와 '송도'에 관한 기록이다.[1] 『죽도고증』은 1881년 8월 일본 외무성의 필요에 따라 작성되었다.

『죽도고증』의 구성을 살펴보면 상권은 죽도의 영유권에 대해 일본, 조선, 명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문헌을 참고로 기술되었다. 일본 문헌은 「죽도고(竹島考)」, 「죽도잡지(竹島雜誌)」, 「죽도도설(竹島圖說)」을 인용했다. 중권은 겐로쿠(元祿) 6년(1693) 9월 쓰시마 도주(對馬島主)가 안용복 일행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시작하여 겐로쿠 12년(1699) 1월 '죽도일건(竹島一件)'까지의 쓰시마 도주와 동래왜관에서 주고받은 20여 통의 서신으로 구성되었다.[2] 하권은 텐보(天保) 1년(1830) 일본인의 '죽도'도해 사건 및 메이지(明治) 10년(1877) '송도'개척원을 둘러싼 사건의 경과를 기술하고 아마기함(天城艦)의 조사에 따라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이고 '죽도'는 '송도' 북쪽에 있는 작은 암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3]

편찬자 기타자와 마사나리는 일본 외무성 직원으로 1880년에 발족한 흥아회(興亞會, 1900년 동아동문회로 합병) 회원이었다. 그는 일본의 중국 진출을 위해 대륙낭인(大陸浪人)을 적극 지지한 인물이었다. 1879년 동경지학협회(東京地學協會) 설립에 참가하여 간사로 활동했다.[4]

그동안 『죽도고증』은 일본 외무성의 관찬 사료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주목했다. 강만길, 구양근, 송병기, 한철호, 김호동, 정영미 등은 『죽도고증』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무역사무관 세와키 히사토(瀨脇壽人)와 공신국장(公信局長) 다나베 다이치

---

1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523쪽).

2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525쪽).

3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527쪽).

4 최혜주, 「일본 東京地學協會의 조사활동과 조선인식」, 『한국사연구』 151, 2010, 233-234·26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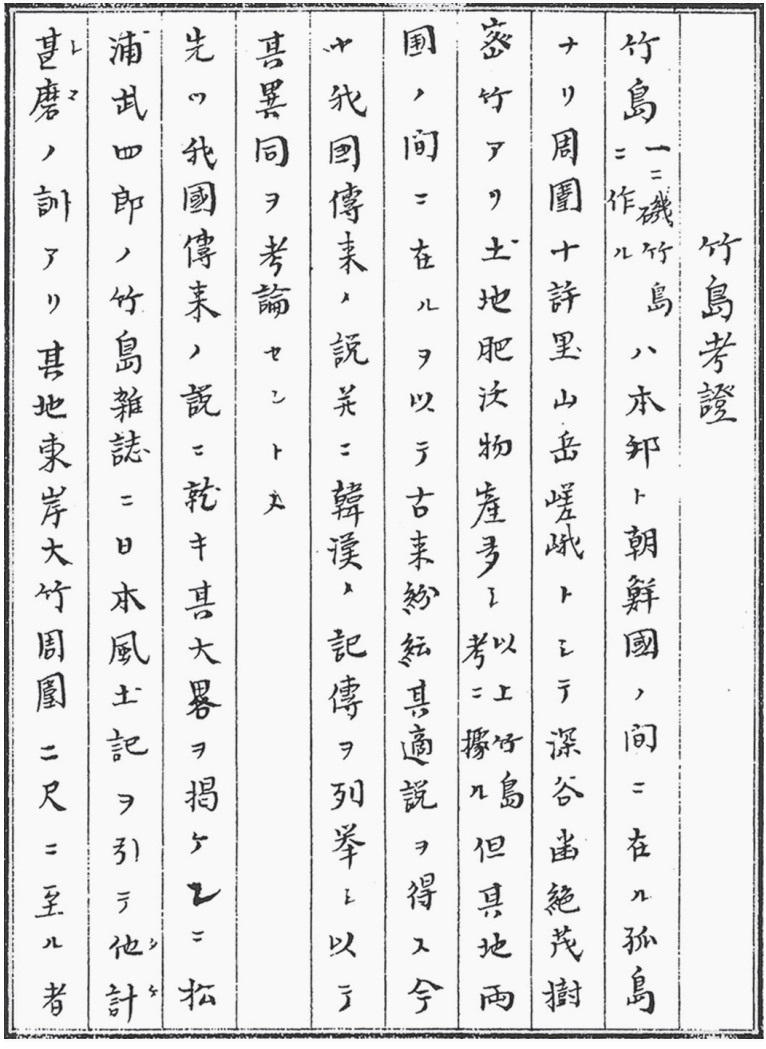

竹島考證

竹島一ニ磯竹島ニ作ル 八本邦ト朝鮮國ノ間ニ在ル孤島ナリ周圍十許里山岳嵯峨トシテ深谷幽絶茂樹叢竹アリ土地肥沃物産多シ以上竹島ニ據ル但其地兩國ノ間ニ在ルヲ以テ古來紛紜其適說ヲ得ス今ヤ我國傳來ノ說并ニ韓漢ノ記傳ヲ列擧シ以テ其異同ヲ考論セントス

先ツ我國傳來ノ說ニ乾キ其大畧ヲ揭ケンニ松浦武四郎ノ竹島雜誌ニ日本風土記ヲ引テ他ノ計ラ甚麼ノ訓アリ其地東岸大竹周圍二尺ニ至ル者

『죽도고증』(188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田邊太一)의 활동과 조사, 죽도(竹島)와 송도(松島)의 명칭과 위치 등을 추적했다.[5]

한철호는 1878년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에 대한 실측 기록을 발굴하였다. 한철호에 따르면 1878년 6월 아마기함은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최초로 조선의 죽도(竹島=아르고노트섬)와 송도(松島=울릉도)를 측량하였다. 아마기함은 1878년 6월 28일 '죽도'의 유무를 살펴보기 위해서 '죽도'로 향했으나 찾지 못했다. 아마기함은 일본에서는 최초로 아르고노트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직접 판정하였다. 1878년 아마기함의 울릉도 측량과 독도 인식은 그 후 일본 수로부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모자 관계로 파악하고 조선 영토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6]

김수희는 세와키의 '송도개척론'을 통해서 1878년 일본군함 아마기호의 울릉도 조사가 진행된 연관성을 추적하였다. 김수희는 세와키는 1875년 블라디보스톡 출장에서 '송도개척론'을 구상하였고, 자신이 고용한 무토 헤이가쿠를 이용해 외무성에 '송도개척원'을 제출토록 했다. 세와키 히사토는 서양 지도에 그려진 송도라는 명칭을 차용해 '일본 땅' 송도라는 이름으로 1도 2명의 불명확한 이름을 붙여 울릉도 선점을 도모했다. 소속이 불명확한 1도 2명을 이용한 울릉도 침탈은 일본의 전통적인

---

5 강만길, 「외국의 문헌상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 1985, 323쪽; 具良根, 「日本外務省 七等出仕 瀨脇壽人과 外國人顧問 金麟昇」, 『韓日關係史硏究』 7, 1997, 126-137쪽;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93-94쪽;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158쪽; 한철호, 「메이지 초기 일본 외무성 관리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의 울릉도·독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9, 2008, 226쪽; 김호동, 「竹島考證의 사료 왜곡」, 『일본문화학보』 40, 2009, 346쪽; 김호동, 「메이지시대 일본의 울릉도 · 독도 정책」, 『일본문화학보』 46, 2010, 86쪽; 정영미, 「죽도고증의 마쓰시마 개척원과 아마기함의 울릉도 조사」, 『韓日關係史硏究』 43, 2012, 504쪽.

6 한철호,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인식」, 『동북아역사논총』 50, 2015, 36-39쪽. 1872년 2월 해군성이 설치되고 해군성 수로국이 활동하였다. 일본 최초의 수로지로는 해군의 작전용으로 1883년 4월 『환영수로지(瀛瀛水路誌)』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조선 연안에 관한 최초의 수로지였다. 1886년 12월 『환영수로지』 2판이 발간되었는데 2권 5편 '조선동안'의 부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다루었다. 그 후 『환영수로지』는 주요 국가별로 분리되었는데, 1894년 『조선수로지』가 편찬되었고 1897년 『일본수로지』가 편찬되었다(송휘영, 「근대 일본의 수로지에 나타난 울릉도 독도 인식」, 『대구사학』 106, 2012, 5-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영토 침탈 수법이었다.[7]

그럼에도 선행연구는 청원자인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 보고자인 무역사무관(貿易事務官) 세와키 히사토, 평가자인 외무성 기록국장 와타나베 히로모토(渡邊洪基)의 논의 과정과 결정 등을 연결시키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일본 외무성의 '죽도'와 '송도' 의 명칭 확인과 변경의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다. 필자는 무역사무관 세와키의 '죽도'와 '송도'에 대한 인식과 조사를 시작으로, 세와키의 조선에 대한 정책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필자는 『죽도고증』에 나타난 논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일본의 '송도'개척 요구의 배경도 파악할 것이다.[8]

Ⅱ. 세와키 히사토의 블라디보스톡 출장과 '죽도'와 '송도' 인식

1. 출장 이유와 과정

일본 외무성은 1875년 블라디보스톡을 시찰할 것을 7등출사(七等出仕) 세와키 히사토에게 지시했다. 그 후 세와키는 1876년 블라디보스톡 무역사무관에 임명되어 매

---

7 김수희, 「19세기 일본 산음지방의 울릉도·독도 기록과 '송도개척론(松島開拓論)'」, 『독도연구』 19, 2015, 75-76쪽.

8 이케우치는 1877년 태정관 관련 문서를 분석한 다음 죽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메이지 10년의 일본 정부 중앙은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일본의 판도 외라고 공식 문서로 표명하고 있다. 이 사실은 죽도가 역사적으로 보아 일본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싶은 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역사적 사실이다."(池內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2, 149쪽) 박병섭은 1877년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의 문서를 둘러싼 일본 학계의 해석과 내무성과 태정관의 관계를 주목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내무성 및 태정관이 다케시마 마쓰시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즉 내무성 혹은 태정관이 작성한 자료에 '이소다케사마 각서', '일본지지제요'가 있으며, 이들은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를 일본 영토 밖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 자료와 내무성 혹은 태정관과의 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박병섭, 「2000년 이후 독도 관련 일본학계의 역사학 연구」, 『일본의 독도연구 동향과 분석』, 지성人, 2014, 7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년 4–10월까지 무역사무를 보았는데, 1878년 11월 귀국 도중 선상에서 사망했다.[9]

세와키는 일본의 조선과 청국 진출을 지지했다. 그는 조선이 일본에 부속되었고, 대만이 일본의 속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세와키는 정한론자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과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등과도 교류한 적이 있는 인물이었다.[10]

그동안 일본의 조선과 청국 진출을 위한 역사는 뿌리가 깊었다. 일본 존왕양이 사상가인 요시다 쇼인은 1858년 조슈(長州)번 출신으로 메이지 유신의 핵심인물인 기도 다카요시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 번이 조선과 만주를 지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조선, 만주를 지배하려면 '죽도(울릉도)'는 제일의 대기실이다."[11]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핵심은 조선과 만주 진출의 의도를 포함한 것이었다.

세와키의 조선과 청국 진출은 '아시아주의' 세력으로 연결되었다. 1880년대 육군참모본부 소속 아라오 세이(荒尾精)는 '아시아주의'를 적극 주장했다. "청국을 본받아 옳은 통치를 행하고 그렇게 해서 아시아를 부흥시키고 싶다." '아시아주의'에 적극 참여한 일본 세력은 조선, 청국, 일본 동양 3국을 크게 하나의 범위로 설정했다. 아시아주의는 혈통적·문명적·지정학적 차원에서 조선과 일본의 일체성을 강조했다. 동양의 혁신이란 일본을 맹주로 한 아시아 신질서의 구축 및 '신문명'에 입각한

---

9 세와키 히사토(瀨脇壽人, 1822–1878)는 스오국(周防國, 현재 山口縣 光市)에서 태어나 원명이 테즈카 리쓰죠(手塚律藏)였다. 1838–1842년까지 나가사키에 유학하여 지볼트 등에게 난학(蘭學)을 배웠다. 그 후 에도(江戶)에 가서 영학(英學), 물리, 화학을 배웠으며, 사쿠라(佐倉) 후(侯)의 초청을 받아 영학을 강의했다. 세와키는 다시 1850년까지 나가사키에 유학하여 처음으로 종두(種痘)를 실행했다. 세와키는 요시다 쇼인으로부터 서양학의 조예를 인정받고 코가 킨이치로(古賀謹一郎)로부터 난학자의 상등(上等)이란 평판을 얻었다. 그는 1862년 12월 28일 습격을 받고서 모친의 성(姓)인 세와키(瀨脇)로 바꾸었다. 1869년 도쿄에서 사숙을 차리고, 1870년 외무성 7등출사가 되었다. 1873년 외무대승 코야스 타카시(子安峻) 등과 함께 출자하여 요미우리(読売)신문을 창간하기도 했다(具良根, 「日本外務省 七等出仕 瀨脇壽人과 外國人顧問 金麟昇」, 『韓日關係史研究』 7, 1997, 125–126쪽). 세와키는 1875년 블라디보스톡 시찰의 명령을 받아 파견되었고, 1876년 블라디보스톡 무역사무관으로 임명되었다.

10 "원래 조선은 고래로 일본에 부속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내조(來朝)하여왔습니다. 대만은 1,500년 동안 일본의 군함이 그 섬에 드나들고 있어서 일단 일본의 속도가 되었습니다."(瀨脇壽人, 1875. 4. 28, 「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 『鳥剌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韓日關係史研究』 9, 1998, 232쪽)).

11 금병동, 『일본인의 조선관』, 논형, 2008, 4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시아의 문명화였다. 그 배경에는 일본은 문명국이고 조선과 청국은 반개화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12]

7등출사 세와키는 1876-1877년 사이 블라디보스톡의 송도개척 요구를 일본 외무성에 보고하고 요청한 핵심인물이었다. 일본 외무성은 세와키의 송도개척 보고를 받고 '죽도(竹島)'와 '송도(松島)'에 관한 문서를 정리한 『죽도고증』을 작성했다. 이미 세와키는 1875년 나가사키와 블라디보스톡을 왕복하며 항해 중 송도(松島=竹島)를 관찰한 인물이었다.

세와키의 블라디보스톡 출장 이유와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와키가 1875년 블라디보스톡 시찰에 나선 표면적인 이유는 일본의 무역사무소 개설이었다. 일본 외무성은 1875년 4월 4일 세와키의 블라디보스톡 출장 당시 조선 관련 명령을 지시했다. 일본 외무성은 세와키의 블라디보스톡 출장을 통해서 러시아와 조선의 국경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했다.

"조선 북부의 러시아령(領)에 근접한 지방을 들어갈 때는 양항(良港)을 검출(檢出)한다. 뽀시예트(Посьет, 포시예트)에 도착하여 상황을 보아, 현지인을 고용해 조선 땅으로 들어가서 토지, 풍속 등을 탐색한다. 그곳의 조선인을 고용해 향도(嚮導)하고 사정을 정탐한다."[13]

세와키는 1875년 4월 7일 요코하마 주재 러시아영사 스뜨루베(К. В. Струве)를 면회하면서 블라디보스톡과 뽀시예트 등의 시찰 이유를 설명했다. 세와키는 러시아

---

12 竹內好, 『일본과 아시아』, 소명출판, 2004; 김영수, 『명성황후 최후의 날』, 말글빛냄, 2014, 134-135쪽.

13 그 밖에 일본 외무성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각 항구의 형태, 축항(築港) 착수의 순서를 조사한다. 무역상황, 당지의 산물, 수출입의 다과 및 매해 산물의 증가 여부를 조사한다. 각 항구 백성의 풍습, 토지의 험조(險阻), 인구 정도, 기후의 한난, 상선의 다과 및 교육 여하를 정탐한다. 뽀시예트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는, 포셋 주재 러시아 진태(鎭台), 총독(總督)을 개인적으로 면회하여 청원한다."(寺島宗則-瀨脇壽人, 1875. 4. 4, 「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 「日本外務省 七等出仕 瀨脇壽人과 外國人顧問 金麟昇」, 『韓日關係史硏究』 7, 1997, 136-137쪽)) 김수희는 1875년 세와키의 블라디보스톡 시찰의 가장 큰 목적은 조선사항과 조선인 정탐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김수희, 「19세기 일본 산인지방의 울릉도·독도 기록과 '송도개척론(松島開拓論)'」, 『독도연구』 19, 2015, 6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블라디보스톡 및 뽀시예트 주위의 지형, 한난의 차, 상품의 다과, 인구 밀도, 물산의 종류 등을 시찰하기 위해 도해한다고 기록했다.[14]

그 후 세와키는 4박 4일 동안 미국 우편선 코스타리아(Costaria)호를 타고 나가사키에 도착했다.[15] 세와키는 1875년 4월 16일 이뽀네츠호(Японец, 야포넷호)를 타고 나가사키를 출발해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다.[16]

세와키는 1875년 4월 21일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고 22일 진대대리(鎭台代理) 아파나시예프(Афанасьев)를 예방한 뒤 본격적인 시찰에 나섰다.[17] 아파나시예프는 러시아인이 블라디보스톡에 5천여 명 정도 살고 있으며, 만주인 4-5천여 명, 조선

---

14 瀨脇壽人, 1875. 4. 7,「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鳥剌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韓日關係史硏究』9, 1998, 216쪽).

15 瀨脇壽人, 1875. 4. 7,「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鳥剌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韓日關係史硏究』9, 1998, 217쪽).

16 "이뽀네츠호(Японец, 야포넷호)는 1875년 4월 16일 오후 2시 반부터 닻을 올리고 나가사키항을 출발했다. 서쪽을 향하여 고지마(五島) 앞바다까지 와서 뱃머리를 우회전하여 정북(正北)으로 2부(分) 5리(厘) 정도 동쪽으로 몰았다. 석양이 서해에 지자 저녁식사를 하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瀨脇壽人, 1875. 4. 16,「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鳥剌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韓日關係史硏究』9, 1998, 220쪽)) "함장 오스또로뽀프(A.A. Остолопов). 1등 사관은 스뜨렐린꼬프(Стрельников), 2등 사관 위계가 로이테난트이고 이름은 챠첸코라 한다. 3등 사관도 이름은 겐바위치라 했다. 회계사는 위시네베스키라 하며, 측량사는 와니야시, 기관사는 마카로프, 의사는 아라포프, 화물운송책은 체루노프라 한다."(瀨脇壽人, 1875. 4. 17,「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鳥剌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韓日關係史硏究』9, 1998, 220쪽))

17 "오후 1시가 되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근시안인 내 눈에도 바다 위에 우뚝 산이 보이더니, 금방 블라디보스톡의 항구가 보인다. 좌우에는 작은 섬들이 있는데, 곳곳마다 울창한 숲이 들어차 있다. 점점 항구로 들어서자 3면이 높은 산이고 1면만 바다에 접해 있고, 입구에는 조그만 섬이 하나 있었다. 그 섬은 마치 주머니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참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는 항구로, 나가사키 항구와 흡사했다. 항구를 향해서 정면 안쪽으로 300-400호의 크고 작은 인가(人家)가 보였고, 우측에는 인가는 전혀 없고 다만 구릉지대로서 고목 같은 잡목이 있을 뿐이다. 이 항구는 길이가 1리(里) 남짓, 폭이 13-20정(丁) 정도쯤 되었다."(瀨脇壽人, 1875. 4. 21,「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鳥剌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韓日關係史硏究』9, 1998, 223쪽)) * 일본에서 1里는 한국의 10里이고, 1丁(町)은 109m. 일본 1里 = 3.927k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 5-6천여 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18] 지방관 휘리포비치(당시 연해주 군사총독 표도로비치(Э.Г. Федорович))는 러시아 군대가 뽀시예트에 포병과 보병을 합쳐서 1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조선은 뽀시예트를 무허위(無墟葳 또는 崴)라고 불렀는데, 지신허(地信墟 또는 滿豆河)강은 뽀시예트와 함경도의 경계에 있었다.[19] 세와키에 따르면 조선인 남녀 1만여 명은 블라디보스톡과 뽀시예트 근처에서 13개의 촌락을 형성했는데, 관리들을 원망하면서 조선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이었다.[20]

세와키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일본인 무토 헤이가쿠와 조선인 김인승(金麟昇)을 만나 '죽도(竹島)'와 '송도(松島)'의 위치와 소속에 관해서 대화했다. 무토와 김인승은 의형제를 맺은 사이였다. 그 후 무토는 1876-1877년 송도개척 청원을 시작한 인물이었고, 김인승은 1876년 일본 비밀요원으로 조일수호통상조규 체결에 참여한 인물이었다.[21]

무토는 1868년 보신전쟁(戊辰戰爭) 당시 막부의 편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했다. 그는 양학(洋學)에 뜻을 두고 하코다테(函館)로 갔다가 독일의 포경선을 타고 사할

---

18 瀨脇壽人, 1875. 4. 22,「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鳥剌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韓日關係史研究』9, 1998, 225쪽).

19 瀨脇壽人, 1875. 4. 28,「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鳥剌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韓日關係史研究』9, 1998, 236쪽).

20 "소성(蘇城), 치무허(治撫墟), 뇌풍허(雷風墟), 도빙하(刀氷河), 홍토영(紅土營), 한거우(閑居隅), 허거우(許居隅), 육성(六城), 자지미(紫枝尾), 지신허(地信墟), 희지장(希之場), 사말(砂末), 연추허(煙秋墟)."(瀨脇壽人, 1875. 5. 7,「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鳥剌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韓日關係史研究』9, 1998, 246쪽)) 속담에 배우는 것은 친숙한 것만 못하다.

21 "일본은 함대와 함께 육군 중장 구로다 기요다카(黑田淸隆)를 한강에 파견하여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통상을 맺도록 했다. 일본 외무성 관료 부판리대신(副辦理大臣)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조선의 진보주의자 김인승과 함께 조선을 향해 출발했다. 일본 전권대표는 1876년 2월 6일 강화도에 도착했고, 조일수호조규는 2월 27일에 체결되었다." (W.E.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London, 1907, p.42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린으로 갔다. 그곳에서 일용품팔이를 하다가 블라디보스톡으로 건너가서 러시아어와 조선어를 익히면서 김인승과 의형제를 맺었다. 무토는 1875년 러시아 선박을 빌려 운송도 하고 소규모의 일러 무역을 하는 일본인 가사노(笠野)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했다. 무토는 1877년 8월 블라디보스톡 무역사무관 일을 세와키로부터 위임받았다.[22]

세와키는 1875년 4월 23일 자신의 부하 모로오카(諸岡)와 함께 블라디보스톡에 거주하던 나가사키 출신의 야마모토 도요키치(山本豊吉)와 오슈(奥州) 시라카와(白川) 출신의 무토 헤이가쿠를 면담했다.[23] 세와키는 무토와 야마모토를 자주 방문하여 블라디보스톡의 다양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24]

2. '송도(松島)' 발견과 인식

세와키가 블라디보스톡으로 항해하던 중 '송도(松島)'를 발견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

22 具良根,「日本外務省 七等出仕 瀨脇壽人과 外國人顧問 金麟昇」,『韓日關係史研究』7, 1997, 131-133쪽; 瀨脇壽人, 1875. 4. 28,「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鳥剌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韓日關係史研究』9, 1988, 234쪽). 러시아 중령 부딜롭스키(Будиловский)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블라디보스톡 등의 대러 첩보 파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기록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불교로 개종하거나 러시아정교에 무관심해진 일본인을 일본 외무성 산하로 특채하여 스파이로 만들었다. 일본인 스파이는 블라디보스톡으로 잠입하여 러시아인과 러시아 군인의 특징을 작성했다. 일본인 스파이는 러시아어 입문서를 만들었고, 1896년 저자가 서로 다른 러시아 입문서 10종을 만들었다."(ГАРФ. Ф.543. Оп.1.Д.174.Л.1-11об) 부딜롭스키가 1897년「회상, 논평, 자료에 따른 1895-1897년 일본의 대러 군사계획 기록 및 일본 민족성의 몇 가지 특징」이라는 자료를 작성했는데, 블라디보스톡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일본 외무성 산하의 스파이일 가능성이 높다.

23 瀨脇壽人, 1875. 4. 23,「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鳥剌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韓日關係史研究』9, 1988, 227쪽).

24 瀨脇壽人, 1875. 4. 25,「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鳥剌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韓日關係史研究』9, 1988, 22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러시아 군사 수송선 이뽀네츠호(Во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Японец)[25] 1등 사관 스뜨렐린꼬프(Стрельников)는 1875년 4월 17일 지도를 펼쳐 쓰시마를 가리키자 잠시 후 쓰시마가 나타났다.[26] 스뜨렐린꼬프는 1875년 4월 19일 항해 중 '송도'라는 섬을 세와키에게 가리켰다. 세와키는 갑판에서 좌측을 바라보니 상당히 큰 섬이 하나 나타났고, 섬의 이름과 소속을 러시아 사관에서 물어보았다. 러시아 사관은 프랑스 사람도 들른 적이 있는 인가(人家)가 없는 '송도'를 '일본의 속도'라고 대답했다. 세와키는 송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그런데 세와키는 황혼 무렵이라 송도라는 섬을 정확하게 관측할 수 없었다.[27] 세와키의 기록에서는 이뽀네츠호에서 바라본 송도가 울릉도인지 아니면 독도인지가 불분명하게 기술되었다. 세와키가 황혼 무렵 섬을 정확하게 관측할 수 없었다는 '송도'는 울릉도일까, 아니면 독도였을까?

그런데 세와키는 1875년 5월 13일 독일인 선장을 만났을 때 송도에 대해서 탐문했다. 세와키가 묻고 독일인 선장이 답변했다.

"송도(松島)는 조선에 가까운가, 일본에 가까운가?"

"조선 쪽에 가깝습니다."

---

25 이뽀네츠호(이뽀네츠 Японец, транспортное судно, 1859–1892)는 1,379톤이고 가로와 세로는 14.4미터와 85.6미터였다. 1873년부터 해군대위 오스똘로뽀프(А.А. Остолопов)는 이뽀네츠호의 함장이었다. 1875년까지 이뽀네츠호는 중위 마이젤리(Э.В. Майдель)의 주도로 동해와 타타르해협을 탐사했다(Степанов А. И. Русский берег: Морской топоним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Владивосток. 1976; Коршунов Ю. Л. Генерал–адмиралы Российского императорского флота. СПб., 2003. С.253).

26 "오후 3시쯤 되자 1등 사관 스뜨렐린꼬프가 나를 부르더니, 지도를 펴고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바로 일본의 속도 쓰시마의 남쪽에 배가 와 있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쓰시마의 동남쪽에 이를 것이란다. 잠시 후에 사관의 말처럼 좌측에 갑자기 쓰시마가 나타났다. 오후 6시가 지나자, 새하얀 밝은 달이 드높이 중천에 걸리고 도도한 파도의 물결이 달빛을 받아 출렁거리는 것이 실로 만층이나 되는 빌딩에 휘황한 은촉을 밝혀놓은 것 같았고, 억장도 더 되는 방석에 눈부시게 고운 금수를 쓰워놓은 것 같았다."(瀬脇壽人, 1875. 4. 17, 「外務省七等出仕瀬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 『鳥刺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韓日關係史硏究』 9, 1998, 221쪽))

27 "나는 쌍안경을 꺼내 조명하여 보았으나 황혼녘인 데다가 앞이 묘연하여 잘 보이지 않았다."(瀬脇壽人 1875. 4. 19, 「外務省七等出仕瀬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 『鳥刺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韓日關係史硏究』 9, 1998, 22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 섬에 인가가 있는가?"

"인가는 없지만 수목이 울창한 섬이라서 조선인이 때때로 와서 수목을 베어 배에 싣고 돌아갑니다."[28]

세와키는 러시아가 사할린을 식민화하며 경계를 넓히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일본도 고래(古來)로 부속된 송도(松島) 정도라도 열어 교역의 이익을 챙겼으면 한다"라고 생각했다.[29] 세와키는 일본이 송도를 활용하여 무역 이익을 확장하기를 희망했다. 세와키와 독일인 선장과의 대화에서 '수목이 울창한 섬'으로 표현된 '송도'는 울릉도일 가능성이 높다.

세와키는 블라디보스톡과 뽀시예트 등을 조사한 뒤 1875년 6월 7일 김인승을 동반하여 러시아 상선 꾸리엘호(Куриэль, 쿠리엘호)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했다.[30] 세와키는 1875년 6월 11일 조선의 울산과 동래를 목격했고, 6월 12일 나가사키항의 이오지마(硫黃島)에 도착했다.[31]

---

28 독일인 선장은 일본 이키(壹岐)에 광산이 있다고 말했다. 세와키는 이키에 광산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독일인 선장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瀨脇壽人, 1875. 5. 13, 「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 『鳥刺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韓日關係史研究』 9, 1998, 254쪽)).

29 "전번 鎭臺 아후나세프는 러시아가 올해부터 죄인을 사할린섬으로 식민시킨다고 했다. 러시아는 점차 경계를 넓히고 국위를 국외에 펼칠 뜻이 있다. 당당한 대국으로서 선박, 병대, 기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못할 일도 없을 것이다. 일본도 고래로 부속된 松島 정도라도 열어 교역의 이를 챙겼으면 한다."(瀨脇壽人, 1875. 5. 13, 「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 『鳥刺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韓日關係史研究』 9, 1998, 254쪽))

30 "소선을 타고 러시아 상선 꾸리엘호에 탑승하니, 무토와 김인승 두 사람이 배 안에 있었다. 무토는 원래부터 귀국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선했다. 김인승은 모로오카와 상의했다고 한다."(瀨脇壽人, 1875. 6. 6, 「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 『鳥刺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韓日關係史研究』 9, 1998, 280쪽))

31 "배에서 겨우 2-3리 떨어진 곳에 울산, 동래부의 민둥산이 보였다. 오후 3시에 쓰시마가 뱃머리에 나타났다."(瀨脇壽人, 1875. 6. 11, 「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 『鳥刺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韓日關係史研究』 9, 1998, 282쪽)) "이키(壹岐, 오키섬)까지 구름인지 산인지 분간키 어렵게 아른거렸고, 일본의 대소 선박들이 흰 돛을 올리고 왕래하는 것이 보인다. 잠시 후 나가사키항의 이오가 멀리 해상에 보였다."(瀨脇壽人, 1875. 6. 12, 「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 『鳥刺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韓日關係史研究』 9, 1998, 28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런데 세와키는 1875년 6월 9일 나가사키로 가는 과정에서 꾸리엘호 선장이 언급한 송도라는 섬을 목격했다.

세와키에 따르면 오전 10시경 남쪽으로 섬 하나가 나타났고, 13-14리(里) 떨어져 있어 쌍안경으로 보니, 남북으로는 길고 동서로는 짧은데 상당히 큰 섬이었다. 점점 가까이 가서 보니 위용 있는 산맥이 남북으로 가로질러 있었고, 수백 개의 계곡이 서쪽과 북쪽으로 이어졌고, 소나무가 울창하고 잡목도 있었다. 산허리에는 폭포라고 생각되는 두 줄기 흰 비단 같은 물체가 멀리서 보였다. 그 폭은 20간(間)쯤 되고, 높이는 40간(間)은 될 것 같았다. 광산가들이 말하는 소위 원산(原山)과 차산(次山)을 모두 갖추고 있어 틀림없이 금속이 나올 것 같았다.

세와키는 송도(松島)의 규모와 항구에 대해서 꾸리엘호 선장에게 물었다. 선장에 따르면 송도는 사방이 3리(里) 반(半) 정도이고, 큰 선박이 정박할 수 없지만 2-3곳의 항구도 있었고, 조선까지 34-35리(里), 쓰시마까지 80리(里) 거리였다.[32]

세와키가 목격한 섬은 규모와 항구를 고려하면 울릉도였다. 꾸리엘호 선장은 울릉도를 송도라고 불렀다. 세와키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도중에 울릉도의 규모와 항구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그는 울릉도의 계곡, 소나무, 폭포 등을 관찰하면서 울릉도에 금속이 묻혀 있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이때 세와키는 울릉도 개척을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와키는 독일인 선장, 러시아 선장 등이 송도라는 섬을 지칭했다고 기록했다. 세와키는 당시 일본 지도와 문서를 조금만 찾아보면 울릉도가 송도가 아닌 죽도(竹島)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왜 서양인이 주장한 송도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을까?

---

32 瀨脇壽人, 1875. 6. 9,「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鳥剌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韓日關係史研究』9, 1998, 28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김인승과 '죽도(竹島)'와 '송도(松島)' 조사

김인승은 무토와 의형제를 맺은 인물로 1875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세와키를 만나 조선과 러시아 국경에 관련한 정보를 전달했던 인물이다. 김인승은 1875년 6월 9일 세와키와 함께 러시아 상선 꾸리엘호를 타고 나가사키로 가던 중 조선 동해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세와키는 무토를 시켜 김인승에게 조선 해변의 지명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김인승은 조선 동해안의 대항과 소항 수십 개를 썼다. 세와키는 배 안에서 지도를 만드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나가사키에 도착해서 김인승에게 호수와 인구 등을 지도 안에 정확히 그려 넣도록 지시하기로 결심했다.[33] 그 후 김인승은 세와키를 비롯한 일본 관리에게 실제 조선의 지도를 작성하는 데 협조했다.

동양학자 그리피스(W.E. Griffis, 1843–1928)는 『은자의 나라 조선(Corea: The Hermit Nation)』이라는 책의 초판을 1882년에 내고 1907년에 8판을 출판했다. 그리피스는 1872–1874년까지 도쿄카이세이학교(東京開成學校)에서 화학과 물리를 강의했다.

그런데 그리피스는 자신의 책에서 김인승의 활동을 기록했다. 그리피스는 조선의 지도를 그리는 데 김인승의 도움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그리피스는 김인승의 일본 망명과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러시아령을 통해 조선의 자유주의자 김인승(Kim Rinshio)이 망명했다. 일본 관리들은 김인승을 통해 조선의 현 정세를 많이 파악했다. 일본 군부 관리들은 김인승의 도움을 받아 매우 값진 조선 지도를 작성하고 출판했다. 그 지도가 너무도 정확해서 그의 동포들을 놀라게 했다."[34]

---

33 瀨脇壽人, 1875. 6. 9, 「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 『鳥剌細亞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韓日關係史硏究』 9, 1998, 282쪽).

34 W.E.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London, 1907, p.2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리피스의 한국 관련 저서에는 조선지도(Map of Corea)가 첨부되었는데, 이 책에서 김인승의 행적이 드러난다.

"조선 지도. 1877년 도쿄 발간 일본 육군성 제작 지도를 축소한 것이다. 이 지도는 조선 지도 및 일본, 미국, 유럽 조사에 기초한 것이었다. 조선인 학자 김인승이 교정했다."[35]

그리피스는 조선인 김인승이 조선의 정보와 지리에 관한 지식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인승이 조선의 지리 정보를 제공해준 덕에 일본 육군성은 비교적 정확하게 조선의 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고 기록했다.[36]

그런데 그리피스의 조선 지도(Map of Corea)에는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Argonaut)가 없었다. 또한 동해에는 '다줄레섬(Dagelet, 울릉도)'만 기록되었다. 이것은 세와키가 김인승을 통해 죽도와 송도의 정보를 파악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반전이 있었다.

세와키는 1875년 4월 28일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직후 일본의 지도를 통해 죽도와 송도의 위치를 스스로 검토했다.

"지도를 펴고 보니 (송도는) 일본 운슈(雲州)의 북쪽에 해당하는 죽도(竹島)의 인도(隣島)였다."[37]

---

35 W. E.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London, 1907; 그리피스, 『은자의 나라 한국』, 집문당, 1999, 638쪽. 초판은 1882년 발간. 번역본은 1907년 출판에 기초함.

36 일본 육군성 참모국은 1875년 '조선전도(朝鮮全圖)'(1876년 개정판)를 간행했다. '조선팔도전도(朝鮮八道全圖)', '대청일통여도(大淸一統輿圖)' 등의 지도와 해안선이 실측된 영국과 미국 등의 해도들을 종합하고, 조선의 함경도 출신 김인승의 협조를 받아 제작된 것이다. 이 지도의 해안지역에서 서구어의 타카나(片仮名) 표기의 지명이 쓰인 것은 해안선과 경위법이 영국과 미국의 해도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조선전도에는 울릉도를 '松島'로 표기하고, 울릉도의 서북쪽에 '竹島'가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두 섬이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라는 일본 고래의 인식이 담겨 있었다(남영우, 『일제의 한반도 측량 침략사』, 법문사, 2011, 26-28쪽; 한철호,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인식」, 『동북아역사논총』 50, 2015, 27-28쪽). '조선전도'만을 고려하면 세와키는 '죽도'(아르고노트)와 '송도'(울릉도)로 파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37 "전에 나가사키에서 이곳에 오는 해상에 松島라는 섬이 있었는데, 일본의 屬島라고는 하지만 좀 이상했었다.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해서 지도를 펴 보니 일본 운슈의 북쪽에 해당하는 竹島의 隣島였다."(瀨脇壽人,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기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 또는 '송도(울릉도)'와 '죽도(독도)'이다.

첫째, 세와키는 "일본 운슈의 북쪽에 해당하는 죽도(竹島)"라는 사실을 통해서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를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세와키는 죽도(竹島)의 인도(隣島)"라는 사실을 통해서 적어도 '죽도(竹島)'와 '송도(松島)' 두 섬을 구별했고, 두 섬을 인접한 하나의 세트로 파악했다. 셋째, 세와키는 죽도를 중심으로 송도를 파악했다. 무엇보다도 1870년 4월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도 "송도(松島)는 죽도(竹島)의 인도(隣島)"라고 기록되었다.[38]

결국 세와키는 죽도와 송도를 구별했고, 죽도의 이웃 섬으로 송도를 파악했다. 세와키는 사전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음 사실은 세와키가 울릉도를 죽도로 파악했다는 점을 좀 더 확실히 알려준다.

1875. 4. 28, 「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 『鳥刺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韓日關係史研究』 9, 1998, 235쪽)) 블라디보스톡 거주 미국인 코펠은 송도를 5년간 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인 코펠이란 자가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살고 있는 무토의 옆집에 큰 점방을 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곳에 왔다는 말을 듣고 무토에게 말하더란다. '이번 일본에서 영사를 보내 왔지요? 당신이 영사에게 잘 좀 말해서 松島를 5년간만 나에게 대여해주도록 주선해주십시오.'"(瀨脇壽人, 1875. 4. 28, 「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 『鳥刺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韓日關係史研究』 9, 1998, 235쪽)) "이 주인은 필시 광산학을 하는 자로서, 전일에 일본이 松島를 빌려주면 세금은 내겠다고 한 것도 그곳의 금은 등을 두고 한 말임에 분명했다."(瀨脇壽人, 1875. 5. 3, 「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 『鳥刺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韓日關係史研究』 9, 1998, 242쪽)) 미국인 코펠은 '송도(松島)'를 울릉도로 파악했다. 지볼트의 지도에 따르면 Argonaut : 竹島, 울릉도 Dagelet : 松島, 독도 : Hornet였다.

38 "一. 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 이 건의 松島는 竹島의 隣島(부속섬)로서 松島의 건에 付해서는 이제까지 게재된 書留도 없다. 竹島의 건에 付해서는 元祿度後(1688-1704)는 잠시 朝鮮으로부터 居留를 위해 差遣(파견)한 바 있다. 당시는 이전과 같이 無人으로 되어 있다. 竹木 또는 竹으로부터 큰 갈대가 자라며 人蔘 등이 자연으로 난다. 그 밖에 漁産도 相應하여 있다고 들었다."(外務省出仕 佐田白茅 森山茂 齋藤榮, 明治3年(1870)4月, 「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国立公文書館. 内閣, 公文別録・朝鮮事件・明治元年-明治四年・第一巻; https://www.digital.archives.go.jp)) 박병섭에 따르면 1877년 내무성 및 태정관은 '죽도'와 '송도'의 소속에 관해서 판단을 내려야 했다. 이것은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를 비롯하여 참의 겸 외무경(外務卿)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 등이 날인함으로써 승인되어 태정관으로부터 내무성에 하달되었다(박병섭, 「한말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韓日關係史研究』 35, 2010, 20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세와키는 1875년 5월 19일 자신을 방문한 김인승과 필담을 나눴다.[39] 그 자리에서 세와키는 김인승에게 질문했다.

"죽도는 조선에서 몇 리나 떨어져 있고, 일본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죽도는 강원도 삼척부 소속이며 섬의 주위는 천 리나 된다고 합니다. 땅은 비옥하고 산물이 많은데도 나라에서는 금도(禁島)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혹 가서 살고 싶어도 삼척영장(營將)이나 월송(月松)만호(萬戶)의 춘추적간(春秋摘奸) 때 적발될까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몇 리인 줄도 알 수가 없습니다."[40]

세와키는 통역자가 없어서 김인승과 필담으로 대화했다고 기록했다. 이것은 세와키가 이미 죽도라는 명칭을 문자로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무엇보다도 세와키는 김인승을 통해서 '죽도'가 강원도 삼척 소속의 조선 영토라는 사실, 조선이 '죽도'에 대해 수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다. '죽도'는 다름 아닌 울릉도였다. 이것은 세와키가 '죽도'를 조선의 영토 울릉도로 파악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필담은 중요했다. 세와키는 죽도가 조선의 영토 울릉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서양인이 부르는 송도라는 명칭을 울릉도로 표기했다. 그것은 세와키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조선의 영토 울릉도의 소속을 불확실하게 만들어서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세와키는 '죽도'가 울릉도, '송도'가 독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세와키가 이뽀네츠호를 타고 황혼 무렵이라 정확하게 관측할 수 없다고 기록한 '송도'는 독도

---

39 "오전 10시쯤 김인승이 갑자기 들어선다. 무토가 외출 중이라서 말이 통하지 않아 붓을 들었다."(瀨脇壽人, 1875. 5. 19,「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鳥剌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韓日關係史硏究』9, 1998, 264쪽))

40 瀨脇壽人, 1875. 5. 19,「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鳥剌細窓斯社屈見聞雜誌』(外務省外交史料館, 6門1類6項3號; 具良根,「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韓日關係史硏究』9, 1998, 26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에 틀림없었다. 세와키에게 '독도'라는 신기루가 나타났다 사라졌고, 그 후 세와키는 울릉도를 독도로 가장하여 울릉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Ⅲ. 도다와 무토의 '죽도'와 '송도'개척 요구와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

시마네현(島根縣)의 사족(士族)인 도다 다카요시(戶田敬義)는 1877년 1월 27일 '죽도(竹島)'에서 어렵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도쿄부지사(東京府知事) 구스모토(楠本正陸)에게 제출했다.[41]

도다 다카요시는 울릉도를 죽도라고 부르면서 죽도의 위치와 특징을 기록했다. 오키국(隱岐國)에서 약 70리 정도 떨어진 서북쪽의 바다에 황막한 불모의 고도가 하나 있는데, 이를 '죽도'라고 부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42] 도다에 따르면 산물도 좋고 기이하다고 바닷가 어민들이 서로 말하고 있었다.[43]

도다 다카요시는 일본의 오가사와라섬(小笠原島)의 진사관(鎭事官) 파견 이후 죽도를 개척하는 도해면허(渡海免許) 관련 청원서를 제출했다.

도다는 1876년 오가사와라섬에 진사관을 파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 정부가 개간사업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도다는 이번에 죽도로 건너가서 직접 살펴보고, 국가경영의 일단을 마련할 것을 희망한다며 도해면

---

41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293쪽).

42 戶田敬義-東京府知事 楠本正陸, 1877. 1. 27, 4號 「竹島渡海之願」;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295쪽).

43 戶田敬義-東京府知事 楠本正陸, 1877. 1. 27, 4號 「竹島渡海之願」: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303쪽). 그는 지금은 소실된 죽도도해기와 죽도지도에 근거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허의 허가를 요청했다. 도다는 죽도도해 계절로 중춘(中春, 음력 2월경)이 좋다고 주장했다.[44]

도다 다카요시는 1877년 3월 13일 도쿄부에서 논의를 오래 끌자 국익을 주장하며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를 또다시 청원했다. "이 일이 실현되면 황국의 토지가 크게 확장되어 국가의 이익이며, 국내의 무산자들을 만분의 일이라도 도울 수 있습니다. 도쿄부청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관계 부서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합니다."[45]

도다 다카요시는 1877년 4월 도해 시기를 놓쳤다며 다음 해로 연기하는 것을 신고했다.[46] 그러나 도쿄부지사 구스모토는 1877년 6월 8일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도해를 거절하는 통지를 보냈다.[47]

그런데 미치노쿠(陸奥)의 사족(士族) 무토 헤이가쿠는 블라디보스톡으로 항해하던 중 송도를 발견했는데, 1876년 7월 외무성에 그 섬을 개척할 것을 건의했다.[48] 무토 헤이가쿠는 도다 다카요시와 달리 죽도라고 하지 않고 송도라고 불렀다.

무토 헤이가쿠는 블라디보스톡 항해 중 송도의 발견과 벌목 소문을 보고했다. 무토는 "일본 서북지방에 있는 송도(松島)라는 섬은 2-3년 전부터 블라디보스톡으로 3-4차례 왕복할 때마다 멀리서 보았는데, 집 한 채 없고 한 필지의 경작지도 없었

---

44 戶田敬義-東京府知事 楠本正陸, 1877. 1. 27, 4號「竹島渡海之願」;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05-306쪽).

45 戶田敬義-東京府知事 楠本正陸, 1877. 3. 13, 5號「竹島渡海之願」;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13-314쪽).

46 戶田敬義-東京府知事 楠本正陸, 1877. 4, 6號「竹島渡海之願」;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17쪽).

47 "서면의 죽도도해 청원에 대한 건은 허가할 수 없음(難聞届候事, 듣기 어려우니 후사를 도모하라)."(東京府知事 楠本正陸, 1877. 6. 8, 18675號;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23쪽))

48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23쪽). 블라디보스톡에 거주하는 미국인 코펠의 충동을 받아 조선 영토인 울릉도를 무주무인도로 잘못 알고 황국의 이익을 내세워 삼림채벌로 일확천금을 노린 것이 무토(武藤平學)의 소위 송도개척지의(松島開拓之議)였다(강만길,「외국의 문헌상에 나타난 독도」,『독도연구』, 1985, 29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라고 적었다. 무토는 "이미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벌목하여 선박에 싣고 간 일도 여러 차례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라고 기록했다.[49]

무토 헤이가쿠는 송도의 위치와 특징에 대해서도 묘사했다.

무토에 따르면 일본 오키 북쪽에 있는 송도는 대략 남북으로 5-6리, 동서로 2-3리 정도였다. 하나의 고도로서 해상에서 본 바로는 인가가 한 채도 없었다.[50] 송도는 서북쪽 해안이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즐비하므로 나는 새가 아니면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었다. 남쪽 해안은 산맥이 바다 쪽으로 향할수록 점차 낮아져서 평탄한 곳을 이루었다. 산꼭대기 조금 밑에서부터 폭이 수백 간(間)이 되는 폭포수가 떨어져서 평지에 전답을 만들어 경작하기에 편리했다. 해변 여기저기에 작은 만이 있으므로 배를 댈 수 있었다. 그 섬은 소나무가 울창하며 늘 검푸른색을 띠었다.[51]

무토 헤이가쿠는 블라디보스톡에 거주하던 미국인 상인 코펠(Coppell)의 송도 관련 증언을 기록했다. 무토에 따르면 코펠은 늘 광산에만 마음이 있어서 많은 만주인을 고용하여 광산 일에 전념했다.[52] 코펠은 일본에 속한 섬 중에 '송도'라는 섬 하나가 있는데 아직 일본이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토에 따르면 '송도'는 광산이 있고 거목이 있으며, 물고기를 잡아서 얻는 이익과 땔나무에서 얻는 이익도 적지 않았다.[53]

---

49 武藤平學, 1876. 7, 8號「松島開拓之議」;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25-327쪽).

50 武藤平學, 1876. 7, 8號「松島開拓之議」;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28쪽).

51 武藤平學, 1876. 7, 8號「松島開拓之議」;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29쪽).

52 武藤平學, 1876. 7, 8號「松島開拓之議」;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33쪽).

53 武藤平學, 1876. 7, 8號「松島開拓之議」;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3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무토 헤이가쿠는 송도의 산림, 뱃길, 정박 등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무토는 '송도'의 큰 나무를 벌목하여 좋은 재목을 블라디보스톡으로 수출하거나 시모노세키로 보내 매각하여 이익을 얻게 되기를 희망했다. 무토는 만일 광산이 있을 경우 광산도 개발하고, 어민과 농민을 이주시켜 땅을 개척해 일본의 소유로 만든다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54]이라고 하였다. 이미 조선과 조약을 맺은 이상 함경도 부근도 개항시킨다면 송도는 항로에서 중요한 섬이 될 것이다. 일본 선박이 항해 중 폭풍을 만나 표류하여 땔나무와 물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송도'는 정박할 수 있는 편리한 섬이었다.[55] 일본과 조선 양국에서 매년 표류하는 사람이 매우 많으므로 송도에 항구를 만들고 등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6] 무토는 1875년 11월 블라디보스톡에 도해했을 때 송도 남쪽에서 폭풍을 만났는데, 송도와 충돌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던 경험이 있었다.[57]

무토는 '송도'와 '죽도'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 "송도(松島)와 죽도(竹島)는 모두 일본과 조선 사이에 있는 섬들인데, 죽도는 조선에 가깝고 송도는 일본에 가깝다"라고 기록했다.[58] 결국 무토가 기록한 '송도'의 위치와 특징을 살펴보면 '송도'는 울릉도를 가리켰다.

외무성 기록국장 와타나베 히로모토(渡邊洪基)는 1877년 도다 다카요시와 무토 헤이가쿠의 청원서를 살펴보면서 죽도와 송도를 검토하는 11호 보고서를 작성했다.

---

54 武藤平學, 1876. 7, 8號「松島開拓之議」;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35쪽).

55 武藤平學, 1876. 7, 8號「松島開拓之議」;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35쪽).

56 武藤平學, 1876. 7, 8號「松島開拓之議」;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37쪽).

57 武藤平學, 1876. 7, 8號「松島開拓之議」;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39쪽).

58 武藤平學, 1876. 7, 8號「松島開拓之議」;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2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와타나베는 죽도와 송도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따라서 "2섬이 1도양명(一島兩名) 또는 2개의 섬이라고 분분하나, 조정에서도 민간에서도 그 시비를 가린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라고 기록했다.[59]

그럼에도 와타나베는 '죽도'는 울릉도이고 조선의 영토라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죽도는 조선의 울릉도로서 막부가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안일만을 도모하여 결국엔 조선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했다.[60]

와타나베 히로모토는 오키와 원산을 항해하던 중 송도의 중요성을 기록했다. 와타나베는 송도가 일본과 조선 사이에 있어서 나가사키에서 블라디보스톡항(浦潮港)까지 가는 뱃길, 시모노세키에서 이와미(石州)·이바나(因州)·호키(伯州)·오키(隱岐)를 지나 원산항으로 가는 뱃길에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판단했다.[61]

와타나베 히로모토는 아르고노트섬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송도'가 다줄레(데라세)섬인 '죽도'이자 울릉도라고 판단했다. 그는 '죽도=다줄레=울릉도'를 동일한 섬으로 파악했고, '송도'가 호넷록스(Hornet Rocks)라고 추측했다.

와타나베는 "여러 문서를 살펴보면 '죽도'의 서양 이름인 아르고노트(Argonaut)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송도'라고 가리키는 다줄레(デラセ, 데라세)는 본래의 '죽도', 즉 울릉도였다. 일본이 말하는 '송도'의 서양 이름은 호넷록스가 된다"[62]고 했다.

---

59 渡邊洪基, 1877, 11號「松島之議一」;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356쪽). 두 문서가 1876-1877년에 걸친 문서다. 이 문서의 끝에 "같은 해 11월, 블라디보스톡항 무역사무관 瀨脇壽人이 러시아로 가게 되었는데 송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377쪽). 결국 이 문서가 작성된 시기는 1877년으로 파악된다.

60 渡邊洪基, 1877, 11號「松島之議一」;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357쪽).

61 渡邊洪基, 1877, 11號「松島之議一」;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358쪽).

62 渡邊洪基, 1877, 11號「松島之議一」;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359쪽). 지볼트는 죽도(竹島)=아르고노트(브로튼 발견), '송도(松島)=다줄레'라고 기록했다(김영수, 『독도와 한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2009, 18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와타나베 히로모토는 '송도'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시마네현에 조회하고, 함정을 파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와타나베는 스스로 '송도'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했다.

와타나베는 "실로 그 땅의 형세를 살펴보고 어디에 소속되는지를 정하고 어느 곳에 책임을 지울 것인지를 양국 간에 결정해야 한다. 먼저 시마네현에 조회하여 종래의 예(例)를 조사하고, 그와 함께 함선(艦船)을 보내어 지세를 살피고 만약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한 이후 그에 대한 방책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제안했다.[63]

외무성 기록국장 와타나베 히로모토는 1877년 '죽도'와 '송도'의 증언과 문헌을 보완하는 12호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와타나베 히로모토는 '죽도'와 '송도' 두 섬을 인정하면서 "송도와 죽도, 즉 한국에서 울릉도라 부르는 죽도"라고 기록했다.

와타나베는 "구 돗토리현(島取縣) 현령에게 들으니 정말로 두 섬이라고 합니다. 도다(戶田敬義), 가토(加藤), 김삼겸(金森謙)이 쓴 책을 살펴보면, 오키국 송도(松島)의 서도(西島: 송도에 속하는 한 작은 섬이며 섬 사람들은 차도(次島)라고 부른다)에서 바닷길로 40리쯤 되는 북쪽에 섬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죽도(竹島)라고 합니다. 호키(伯州)의 요나고(米子)에서 죽도까지는 바닷길로 약 140리 정도라고 합니다. 요나고에서 이즈모로 가서 오키의 송도를 지나면 죽도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라고 기록했다.[64] 결국 그는 "2개의 섬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고 기록했다.[65] 외무성 기록국장 와타나베는 송도의 서도에서 40리쯤 가면 '죽도'라고 파악했다. 그는

---

63 渡邊洪基, 1877, 11號「松島之議一」;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61쪽).

64 渡邊洪基, 1877, 12號「松島之議一」;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61쪽). '隱岐國(오키국) 松島'라고 표기하여 일본 영토라는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65 渡邊洪基, 1877, 12號「松島之議一」;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6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송도’와 ‘죽도’의 거리와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했다. “호키의 요나고에서 죽도까지 바닷길로 약 140리”라고 표현하여 ‘죽도’가 울릉도라고 이해했다. 결국 와타나베의 기록에 나오는 ‘송도’는 현재의 독도이고, ‘죽도’는 울릉도다.

와타나베는 영국 지명사전과 해군측량 지도를 통해서 다줄레(울릉도)의 위치를 추적했다. 와타나베는 다줄레와 송도의 위치가 일치한다면서 다줄레를 송도라고 판단했다.

와타나베에 따르면 “영국의 대영제국 지명사전에 따르면 다케레츠(ダケレツ)섬, 즉 송도는 ‘일본해’에 있는 하나의 섬으로서 일본열도와 조선반도 사이의 서북쪽 137도 25분 동경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 130도 56분 지점에 있다. 1787년 라페루즈가 명명한 섬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된 해안이 9리 정도 펼쳐져 있고, 가장 높은 곳까지 수목이 우거져 있다. 영국 해군측량 지도에 따르면 다줄레, 즉 송도라는 이름이 붙은 섬의 위치가 책에서 말하는 위치와 같다.”[66]

와타나베는 지도 측량법을 살펴보면서 ‘죽도’와 ‘송도’ 2개의 섬으로 판단했다. 그는 ‘죽도’가 규모와 산물 때문에 ‘송도’보다 부각되었다고 주장했다. 와타나베는 “지도 측량법으로 측량해보면 오키도와 ‘송도’, ‘죽도’, 조선의 거리가 대체로 부합하므로 2개의 섬 ‘송도’와 ‘죽도’가 거의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와타나베에 따르면 일본 책에는 ‘죽도’만 많이 쓰여 있고, ‘송도’에 대해서는 없는데 이것은 죽도가 더 크고 산물이 많아서 죽도만 왕래했고, 역시 조선과의 논쟁도 죽도 문제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67] 그는 조선과의 논쟁도 죽도 문제에 한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도 송도의 가치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와타나베 히로모토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지도를 살펴보면서 ‘죽도’와 ‘송도’

---

66 渡邊洪基, 1877, 12號「松島之議一」;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365-367쪽).

67 渡邊洪基, 1877, 12號「松島之議一」;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37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 조선 영토로 인식되었다고 기록했다. 와타나베에 따르면 영국 지도는 쓰시마와 함께 조선을 나타내는 색으로 칠해져 있고, 프랑스 지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바이마르공화국 지리국 지도에서만 쓰시마가 일본을 나타내는 색으로, '송도'와 '죽도'가 조선을 나타내는 색으로 칠해져 있었다.[68]

그럼에도 와타나베는 송도가 지리적으로 일본에 가깝다면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펼쳤다. 와타나베에 따르면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살펴보면 구막부(舊幕府)는 일이 시끄럽게 되는 것이 싫어서, 단지 지리적 원근만을 따져서 조선의 지도에 있는 울릉도인 '죽도'를 조선에게 주었다. '송도'와 '죽도'는 2개의 섬이었다. 와타나베는 '송도'가 '죽도'보다 일본에서 가까우므로 일본에 속한다고 주장했다.[69] 그는 울릉도가 일본보다 한국에 가깝기 때문에 막부가 울릉도를 한국에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70]

와타나베 히로모토는 송도(松島, 독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 섬의 긴요함을 논하자면 '송도'는 거의 일본과 조선의 중간에 위치하고, 산인(山陰) 지방에서 함경도 영흥부와 원산까지 가는 항로에 있으며, 나가사키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항해할 때 반드시 지나쳐 가는 곳이므로 그 긴요함이 죽도보다 몇 배 더하며, 지금 영국과 러시아가 자주 주목하는 곳입니다."[71]

그럼에도 와타나베는 '송도'와 '죽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일본은 송도와 죽도가 2개의 섬인지 하나의 섬인지도 알지 못하며, 조선에 속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도 알지 못한다. 외국으로부터 질문을 받아도 역시

---

68 渡邊洪基, 1877, 12號「松島之議二」;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373쪽).

69 渡邊洪基, 1877, 12號「松島之議二」;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375쪽).

70 현재 일본 외무성 및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은 독도가 일본에서 가깝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일본은 독도가 자국과 가깝다는 논리를 이미 1870년대에도 하고 있었다.

71 渡邊洪基, 1877, 12號「松島之議二」;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37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답할 바를 알지 못한다. 만약 일본 소유라면 그 섬에 대한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72]

와타나베는 송도(松島, 독도)의 지리적 위치를 중시했다. 그는 '송도'가 첫째, 조선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하고, 둘째, 나가사키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항해할 때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고, 셋째, 산인 지방에서 조선 함경도 영흥부와 원산항까지 가는 항로에 위치한다고 파악했다.

IV. 사이토 시치로베에와 무토 헤이가쿠의 송도개척 요구와 일본 정부의 조사

일본 외무성 관료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는 1881년 상인 사이토 시치로베에(齊藤七郎兵衛)가 블라디보스톡 무역사무관 세와키 히사토에게 보낸 '송도개도원서(松島開島願書)'의 제출 과정을 기록했다.

기타자와에 따르면 1876년 11월 세와키 히사토는 러시아에 가게 되었는데, '송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전에 치바현(千葉縣) 시모사국(下總國) 사쿠라다정(町)의 상인 사이토 시치로베에는 사업차 블라디보스톡을 왕래하던 도중 송도에 접근하여 지형을 대략 파악하고, 송도를 개척하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무역사무관 세와키에게 제출했다.[73]

사이토 시치로베에는 1876년 12월 19일 블라디보스톡의 주변 상황을 세와키에게 보고했다.

사이토는 1976년 11월 사업차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여 시가지를 둘러보았다.

---

72 渡邊洪基, 1877, 12號「松島之議二」;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377쪽).

73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37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는 2-3년 전부터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 2-3명에게 항구의 형태 등을 물어보았다. 사이토는 블라디보스톡의 인가가 매년 200채, 300채씩 늘었고, 큰 재목을 나가사키나 몽골지방에서 운송해오고 있으므로 목재 가격이 비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74]

사이토는 1876년 12월 19일 "예전부터 알고 있는 황국의 속도"인 송도(松島)를 직접 살펴보고 위치와 자원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개척을 허락해줄 것을 청원했다. 사이토에 따르면 송도는 작은 섬이긴 하나 크고 작은 푸른 나무들이 동남쪽으로 무성했다.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많고 전복도 많아 보였다. 사이토는 광물도 있다고 들었다.[75]

사이토는 1876년 12월 19일 송도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사이토는 일본인 표류자 또는 조선인이 해안가에 움막 두 채를 만들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연기가 피어났다고 전해 들었다. 사이토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서둘러 단속할 것을 주장했다.[76] 그는 송도만 언급하면서 나무와 광물이 있고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파악했다. 그가 언급한 송도는 위치와 형세를 고려하면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사이토는 1876년 12월 19일 송도의 벌목 허가를 요구하면서 블라디보스톡 및 상하이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이토는 개척 허가를 받게 되면 일본인 몇 명과 함께 나무를 벌목하고 전복을 채

---

74 齊藤七郎兵衛-領事 瀨脇壽人, 1876. 12. 19, 13號「松島開島願書幷建言」;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81쪽). 일본 정부 내에 송도를 확인하기 위한 '송도 순시 논의'가 일어났는데 공신국장 田邊太一이 요약한 이 논의의 내용은 세 가지였다. ① 송도는 곧 울릉도이므로 조사하는 일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의견, ② 서남전쟁이 아직 완전히 진압되기 전이므로 조사를 후일로 미루자는 의견, ③ 노국과 영국 등이 선점할지도 모르므로 빨리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들 3론이 송도를 울릉도로 보았거나 아니면 어떤 도서인지 확실히 모르고 있었을 뿐 그것이 독도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 하겠다(강만길,「외국의 문헌상에 나타난 독도」,『독도연구』, 1985, 317쪽).

75 齊藤七郎兵衛-領事 瀨脇壽人, 1876. 12. 19, 13號「松島開島願書幷建言」;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83쪽).

76 齊藤七郎兵衛-領事 瀨脇壽人, 1876. 12. 19, 13號「松島開島願書幷建言」;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8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집할 계획이었다. 사이토는 블라디보스톡 및 중국 상하이 등에서 벌목한 나무를 판매할 계획을 수립했다.[77]

사이토는 러시아 함선이 1876년 4월에 송도를 측량했다고 보고했다. 영국과 러시아의 선박이 일본을 왕래할 때 때때로 송도를 선회했는데, 1876년 4월 중 러시아 선박이 송도 주위를 빠짐없이 측량했다는 소식도 기록했다.[78]

사이토는 1876년 12월 19일 송도를 러시아와 조선 등이 주목하는 섬이라고 파악했다. 그는 지리적으로 송도에 가까운 조선과 러시아가 송도를 주목하고 있으므로 일본이 먼저 송도를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9] 송도의 벌목과 광물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자원과 해양 부분에서 송도의 중요성을 파악했다.

블라디보스톡 무역사무관 세와키 히사토는 1877년 4월 25일에 사이토 시치로베에의 청원서를 검토한 뒤 '송도개도원서병건언(松島開島願書幷建言)' 제14호를 작성하여 외무경(外務卿) 데리지미 무네노라(寺嶋宗則)에게 보고했다.[80]

세와키는 지역 정세를 살펴보면서 조선의 북쪽 지역에 대해 러시아와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조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본은 조선의 북쪽 땅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81] 세와키는 송도개척

---

77 齊藤七郎兵衛-領事 瀨脇壽人, 1876. 12. 19, 13號「松島開島願書幷建言」;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85쪽).

78 齊藤七郎兵衛-領事 瀨脇壽人, 1876. 12. 19, 13號「松島開島願書幷建言」;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85쪽).

79 齊藤七郎兵衛-領事 瀨脇壽人, 1876. 12. 19, 13號「松島開島願書幷建言」;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87쪽).

80 北澤正誠에 따르면 "청원서를 받은 領事 瀨脇壽人은 별지 제14호와 제15호로써 상부에 보고했다." "이제 '블라디보스톡항 일기'에 보이는 송도에 대한 것을 여기에 옮겨 써서 참고로 삼는다."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89쪽)) '블라디보스톡항 일기'는 領事 瀨脇壽人이 작성한 문서였다.

81 貿易事務官 瀨脇壽人-外務卿 寺嶋宗則 外務大輔(외무차관) 鮫島尙信(1877. 4. 25), 14號「松島開島願書幷建言」,『明治十年平信第一』;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9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통해서 조선 북부로의 경제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2]

세와키 히사토는 1877년 '송도개도원서병건언' 제14호의 추신으로 '블라디보스톡항 일기'를 작성하여 외무경 데리지미 무네노라에게 송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했다.[83]

1876년 12월 18일 12시 사이토는 세와키를 찾아와서 송도와 관련하여 일본인 젠조오(善臧)와 외국인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고했다. 사이토에 따르면 프랑스인도 1876년에 송도를 조사했고, 일본 어부는 태풍을 만나 송도로 표류했다. 일본인 젠조오는 검은 연기뿐 아니라 멀리 나무 사이로 초가집 두 채를 보았는데, 그 모양이 일본인 혹은 조선인이 지은 집처럼 보였다. 2-3년 전에는 일본 어부 2명이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송도에 3년 동안 거주하다가 2명이 돌아왔다.[84]

일본 외무성 공신국장(公信局長)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는 1877년 4월 상인 사이토 시치로베에의 송도개척 청원에 대해서 답변했다.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로 일본 영역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사이토의 청원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85]라는 답변이었다. 다나베는 '송도'가 조선의 울릉도이기 때문에 일본 영역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

82 貿易事務官 瀨脇壽人-外務卿 寺嶋宗則 外務大輔 鮫島尙信, 1877. 4. 25, 14號「松島開島願書幷建言」,『明治十年平信第一』;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93쪽). 세와키 히사토(瀨脇壽人)는 "별지와 같이 武藤平學과 齊藤七郎兵衛 2명도 송도개척원을 내었으니 속히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록했다(貿易事務官 瀨脇壽人-外務卿 寺嶋宗則 外務大輔 鮫島尙信, 1877. 4. 25, 14號「松島開島願書幷建言」,『明治十年平信第一』;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95쪽)).

83 "추신: 송도 일건은 이미 일본인인 듯한 사람이 거주한다는 것을 제 일기에 자세히 써두었으므로 두 분께서 한 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貿易事務官 瀨脇壽人-外務卿 寺嶋宗則 外務大輔(외무차관) 鮫島尙信, 1877. 4. 25, 14號「松島開島願書幷建言」,『明治十年平信第一』;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95쪽)).

84 瀨脇壽人, 1877, 14號 附「松島開島願書幷建言」,『浦潮港日記抄』;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401쪽).

85 田邊太一, 1877. 4. 25,「松島開島願書幷建言」;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39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외무성의 공식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세와키 히사토는 1877년 5월에 연해주 거주 조선인과 송도개척에 관한 제15호 보고서를 제출했다.

세와키는 만주지역의 역사적 변천을 기록했다. 세와키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끼고 있는 400–500리에 달하는 지역은 숙진 혹은 여진이라고 불렸다. 지나(支那, 중국)의 영역이었다가 10여 년 전부터 러시아령이 되었다.

세와키는 만주인의 반러정서와 러시아인의 친한정서를 주장했다. 만주인은 러시아의 명령에 저항하고 도당을 결성하여 여러 차례 봉기했다. 1876년 겨울 항구 부근에서도 두 차례 봉기가 있었다.[86] 러시아인은 한국인(韓人)을 매우 좋아하는데, 만주인과 한국인이 다투어 하소연하러 오면 반드시 한국인 편을 들어주고 만주인을 처벌했다. 그럼에도 한국인은 러시아 정부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복종하지 않았다.[87]

세와키는 조선인들이 연해주로 이주한 이유로 조세, 폭정, 기근 등을 들었다. 한인은 조선에서 각종 조세와 폭정에 시달렸다. 더욱이 최근 2년 동안 기근이 심해지자 육로를 통해 연해주로 이주했다. 한국인은 러시아령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도 경작과 벌목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인은 러시아에 지배받기를 원하거나 마음으로부터 복종해서 이주한 것이 아니었다.[88]

세와키는 일본이 송도(울릉도)를 개척하면 한국의 북쪽 지역에서 쌀과 소금 등을 판매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제품 판매를 통한 경제적 침투를 시작으로 한국과 만주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실현하려는 구상이었다. 세와키는 "한국인과 만주인을 애정으로써 대하면 반드시 일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송도를 개척하

---

86 瀨脇壽人, 1877. 5, 15號「番外甲號」,『明治十年平信第二』;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409쪽).

87 瀨脇壽人, 1877. 5, 15號「番外甲號」,『明治十年平信第二』;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413쪽).

88 瀨脇壽人, 1877. 5, 15號「番外甲號」,『明治十年平信第二』;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41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 금전 거래를 통해 후일의 원대한 책략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입니다"[89]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을 포섭하고, 울릉도를 개척한 다음 조선과 만주에 진출하려는 '아시아주의'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세와키는 일본이 울릉도를 거점으로 조선 북부와 만주지역의 경제를 장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토 헤이가쿠는 1877년 5월 6일 무역사무관 세와키에게 송도개척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다시 올렸다.[90]

무토는 조선인들에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송도의 위치와 자원을 기록했다.

조선인들에 따르면 송도는 동서로 3-4리 정도 되고 남북으로 5-6리 정도 되는 작은 섬이지만 큰 이익이 나는 유용한 섬이었다. 송도는 나무를 수출할 수 있고, 벌목하여 배를 건조할 수 있으며, 어업에서도 이익이 있었다.[91]

무토는 송도가 조선 진출의 군사적 요충지라고 파악했다. 송도 서쪽에 있는 조선은 북쪽으로 러시아 및 만주 지방과 인접하므로 사변이 발생하면 다른 나라 사람이 송도에 머물 수 있었다. 따라서 하루빨리 송도에 일본인을 이주시켜 개간하고 벌채와 어렵으로 이익을 얻어서 국가를 부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2]

무토는 1876년 4월 러시아가 송도를 측량했다며 러시아의 아시아 병탄과 송도개척 의도를 주장했다. 무토에 따르면 러시아는 송도를 주목하면서 제일 먼저 개척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러시아는 나라를 넓히고 아시아를 병탄하고자 하는 원대

---

89 瀨脇壽人, 1877. 5, 15號「番外甲號」,『明治十年平信第二』;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417쪽).

90 "지난해에 도쿄에서 건의하려고 했지만, 다시 그 섬의 여러 산물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세밀하게 기록한 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武藤平學, 1877. 5. 6, 16號「松島開拓之建白」;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419쪽))

91 武藤平學, 1877. 5. 6, 16號「松島開拓之建白」;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423쪽). 조선인은 김인승이었다.

92 武藤平學, 1877. 5. 6, 16號「松島開拓之建白」;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43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93] 무토는 송도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송도'의 목재 수출 및 광산 개발을 주목했다.[94] 무토는 조일수호통상조규 이후 함경도가 개항될 것을 예상하면서 송도에 등대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95]

무토의 청원서에 기초하여 무역사무관 세와키 히사토는 1877년 6월 25일 송도개척을 또다시 요구하는 문서를 일본 외무경 데리지미 무네노라에게 보냈다.

세와키는 송도를 조사한 이후 목재를 상하이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세와키는 일본 정부가 송도개척을 허가하면 '송도'에 상륙하여 지형, 목재의 종류와 크기, 어렵 형태, 항구 상태를 살펴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세와키는 상하이로 가서 재목의 굵기 및 길이, 판재의 길이 및 두께 등에 대해서 듣고, 중국인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96]

세와키 히사토는 무토를 블라디보스톡 주재 일등서기 견습자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세와키에 따르면 무토는 오랫동안 블라디보스톡에서 체류했기 때문에 조선과 러시아의 사정에 능통하다며, 겨울이 되어 사람이 많이 부족해도 "무토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고했다.[97] 이처럼 세와키는 무토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표현했다.

세와키는 송도의 목재와 포경사업을 주목했다. 송도에 큰 나무가 많으니 중국과 다른 나라로 수출할 계획이었다.[98] 세와키에 따르면 독일 배와 미국 배가 송도 근처

---

93 武藤平學, 1877. 5. 6, 16號「松島開拓之建白」;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433쪽).

94 武藤平學, 1877. 5. 6, 16號「松島開拓之建白」;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441쪽).

95 武藤平學, 1877. 5. 6, 16號「松島開拓之建白」;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443쪽).

96 瀨脇壽人-外務卿 寺嶋宗則 外務大輔 鮫島尙信, 1877. 6. 25, 17號「公信第三號」;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445쪽).

97 瀨脇壽人-外務卿 寺嶋宗則 外務大輔 鮫島尙信, 1877. 6. 25, 17號「公信第三號」;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447쪽).

98 瀨脇壽人-外務卿 寺嶋宗則 外務大輔 鮫島尙信, 1877. 6. 25, 17號「公信第三號」;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44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서 매년 고래를 잡고 있었고, 독일과 미국 배에 고용된 일본인이 최근 2-3년 동안 송도에 체류했다.[99] 세와키는 1877년 9월까지 블라디보스톡에 근무한 다음 자신이 직접 송도를 시찰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100]

세와키 히사토는 1877년 7월 2일 러시아 군함의 송도 탐사를 보고하며 일본 외무성에 송도개척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세와키는 러시아가 송도를 개척하기 전에 일본이 먼저 개척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세와키에 따르면 러시아 군함 7-8척은 1876년 겨울부터 송도에 입항했다. 세와키는 러시아 군함이 조선 해안부터 송도 근처까지 측량하면서 조선을 정탐하려는 계획을 전해 들었다고 보고했다.[101]

그럼에도 일본 외무성 공신국장 다나베 다이치는 1877년 블라디보스톡 주재 무역사무관 세와키의 송도개척에 대해서 송도가 조선의 울릉도이며 개간도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송도(松島)는 조선의 울릉도(鬱陵島)로서 일본의 영역에 있는 섬이 아니었다. 분카연간(文化年間, 1804-1817)에 이미 서신을 조선 정부와 주고받았다. 일본의 개간 착수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102]라고 했다.

외무성 기록국(記錄局)의 사카다 모로도오(坂田諸遠)는 1877년 8월 6일에 죽도와 송도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일본 외무성에 제출했다.[103]

사카다 모로도오는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 기초하여 죽도와 송도를 구별했다. 사카다는 동해를 '조선해'라고 인정하면서 '죽도'를 울릉도라고 판단했다.

---

99 瀨脇壽人-外務卿 寺嶋宗則 外務大輔 鮫島尙信, 1877. 6. 25, 17號「公信第三號」;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451쪽).

100 瀨脇壽人-外務卿 寺嶋宗則 外務大輔 鮫島尙信, 1877. 6. 25, 17號「公信第三號」;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449쪽).

101 瀨脇壽人-外務卿代理森, 1877. 7. 2, 18號「明治十年第八號」;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457쪽).

102 外務省 公信局長 田邊太一,「籤紙」;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453쪽).

103 北澤正誠에 따르면 "송도와 관련하여 각 관리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 의견서를 여기에 다 싣지 못하고 기록국 坂田諸遠의 의견서 한 통만을 싣는다. 19호가 그것이다."(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46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북서쪽으로 1박 2일을 가면 송도가 있고, 또 하루 정도의 거리에 죽도가 있다. 속칭 기죽도라고 한다. 대나무, 어류, 해조류가 많다. 이 두 섬은 무인도로서 고려를 보는 것이 이즈모(雲州)에서 온슈(隱州)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북서쪽 한계는 이 주(오키)로 보인다."[104] 사카다는 『은주시청합기』에 근거하여 "송도와 죽도 두 섬이 존재한다"라고 인정했다.[105]

사카다는 '대어국환해사도(大御國環海私圖)'에 근거하여 "오키와 조선 사이에 송도와 죽도 두 섬을 그려놓았다"라며 죽도와 송도를 구별했다. 사카다에 따르면 '대어국환해사도'의 주석에는 "해상운송업자 다카다야 가헤이(高田屋嘉兵衛)의 상선이 조선해(朝鮮海)로 나가 홋카이도로 항해할 때 시모노세키를 출발하여 북서쪽 18리를 가서 송도와 죽도 두 섬 사이에서 방향을 바꿔 북동쪽을 향해 항해"했다고 기록되었다.[106]

Ⅴ. 송도개척 재요구와 일본 외무성의 결정

1. 사이토 시치로베에와 시모무라 린하치로의 송도개척 재요구와 일본 외무성의 논의

사이토 시치로베에와 시모무라 린하치로(下村輪八郎)는 1878년 8월 15일에 '송도개척원(松島開島願)'을 블라디보스톡 주재 무역사무관인 세와키에게 공동으로 제출

104 外務省 記錄局 坂田諸遠, 1877. 8. 6, 19號「松島異見」;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463쪽).

105 務省 記錄局 坂田諸遠, 1877. 8. 6, 19號「松島異見」;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467쪽).

106 外務省 記錄局 坂田諸遠, 1877. 8. 6, 19號「松島異見」;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465쪽). 하마다번(浜田藩)의 유학자인 나카가와 아키스케(中川顯允)는 분세이연간(文政年間, 1818-1829)에 작성한 『이와미외기(石見外記)』의 「대어국환해사도(大御國環海私圖)」에서 다카다야 가헤이를 기록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107]

시모무라는 1878년 6월 나가사키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항해하던 중 1-2정(丁) 떨어진 해상에서 송도를 관찰했다. 시모무라에 따르면 거목이 무성하고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작은 항구도 있었고, 어획의 이익도 기대되었다.[108]

외무성 공신국장 다나베 다이치는 1878년 송도개척과 관련한 일본 외무성의 논의를 정리했다.[109] 일본 외무성 관리들은 송도 시찰이 필요한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외무성 관리 중 갑(甲)은 송도가 조선의 땅이므로 조사 불가론을 주장했고, 을(乙)과 병(丙)은 송도에 대한 조사의 실시를 주장했다.

외무성 관리 갑(甲)은 울릉도가 구별되며 송도가 울릉도의 속도라고 파악했다. 그는 송도가 조선의 영토인 '우산'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구정부에서 울릉도가 조선에 속한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갑에 따르면 "송도는 일본 사람이 지은 이름이지만 실제 조선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于山)입니다. 울릉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것은, 구정부 당시에 한 차례 갈등을 빚어 서로 문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영구히 일본의 것이 아니라고 약속한 사실이 양국 역사서에 남아 있습니다"[110]라고 했다.

외무성 관리 갑(甲)은 조선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면서 외국 배를 통한 송도

---

107 "저는 1876년 12월 중에 송도개척에 대해 건의했으나, 허락받지 못하고 그 후에 다시 청원했습니다."(齊藤七郎兵衛 下村輪八郎-貿易事務官 瀨脇壽人, 1878. 8. 15, 20號「松島開島願」; 北澤正誠, 1881,『竹島考證』(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471쪽). 齊藤七郎兵衛(치바현 거주, 千葉縣), 下村輪八郎(나가사키현 거주, 長崎縣))

108 藤七郎兵衛 下村輪八郎-貿易事務官 瀨脇壽人, 1878. 8. 15, 20號「松島開島願」;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471쪽).

109 1878년 8월 齊藤七郎兵衛와 下村輪八郎의 송도개척원 이후, 송도를 조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는데 찬반이 분분하여 결정할 수 없었다. 별지 제21호가 그에 대한 것이다(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475쪽)). 이 문서는 사이토(齊藤七郎兵衛)와 시모무라(下村輪八郎)가 1878년 8월 청원 이후 작성되었고, 아마기함의 조사가 1880년이므로 1878년 하반기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 갑을병이 인물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외무성 실무자들이 논의 내용을 가지고 기록국장과 공신국장이 자신의 견해를 남겼을 가능성이다. 둘째, 기록국장, 공신국장, 기록국원 3명이 논의한 뒤 기록국장과 공신국장이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이다.

110 外務省 公信局長 田邊太一, 1878, 21號「松島巡視要否ノ議」; 北澤正誠,『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47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울릉도) 조사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韓)의 교류가 이제 겨우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일본을 싫어하고 의심한다. 조선을 들볶아 근심케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송도를 개척할 수도 없고 개척해서도 안 되는 섬"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111]

외무성 관리 을(乙)은 송도와 죽도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세와키의 서양 배를 통한 부분적인 조사를 반대했다. 그는 송도에 해군사관과 정부 관리를 파견하여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을(乙)에 따르면 "책과 지도나 옛날 문서와 맞추어 보아야 비로소 송도가 울릉도의 일부인지 아니면 과연 우산인지, 주인 없는 땅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112]라고 했다.

외무성 관리 병(丙)은 세와키가 제기한 서양 배로 조사와 정박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영국이 송도를 주목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송도 조사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누구라도 송도를 조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어떤 배로도 그곳에 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113] 외무성 관리 병(丙)은 송도가 한국 영토(韓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서양 배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병(丙)은 "일본 사람이 외국의 배로 한국 영토(韓地)에 이르면 그 섬에 있는 한국인(韓民)은 일본 사람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못할 터이므로 결단코 교린(交隣)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114]라고 주장했다.

---

111 外務省 公信局長 田邊太一, 1878, 21號「松島巡視要否ノ議」;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 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479쪽).

112 外務省 公信局長 田邊太一, 1878, 21號「松島巡視要否ノ議」;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 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483쪽), 서남(西南)전쟁은 1877년 2-9월 사이에 있었고 다카모리(西鄕隆盛)가 불만을 품고 메이지 정부에 대항한 사건이다. 서남전쟁 이후 메이지 정부는 체제가 안정되어 해양 영토 확장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113 外務省 公信局長 田邊太一, 1878, 21號「松島巡視要否ノ議」;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 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487쪽).

114 外務省 公信局長 田邊太一, 1878, 21號「松島巡視要否ノ議」;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 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489쪽). 일본 외무성 문서는 조선과 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한(韓)이 조선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 송도개척에 관해 논의한 뒤 외무성 기록국장 와타나베 히로모토와 공신국장 다나베 다이치는 자신들의 견해를 공식적인 문서로 남겼다.[115]

와타나베 히로모토는 1878년 송도개척과 관련하여 별지 제22호에서 자신의 견해를 정리했다.[116]

와타나베는 울릉도와 죽도가 동일하고 송도는 죽도의 속도(屬島)로 추정했다. "울릉도와 죽도가 동도 2명(同島二名)인 것이 명확하고, 송도 역시 죽도와 동도 2명(同島二名)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죽도의 속도인 것 같습니다"[117]라고 적었다. 와타나베는 이나바(因)와 오키(隱), 이와미(石) 지역에 죽도와 송도에 관한 문의를 제안했다. 그는 '송도'가 '죽도'의 속도가 아니라면 일본에 속한 지역이라고 판단했다.[118]

외무성 공신국장 다나베 다이치는 1878년에 송도개척과 관련하여 별지 제23호에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했다.

다나베는 송도가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죽도가 울릉도이고, 송도는 우산이자 울릉도의 속도라고 인정했다. 이것은 조선·한국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었다.

다나베는 "송도(松島)는 일본 사람이 지은 이름이며 사실은 조선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이라고 합니다. 울릉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것은, 구정부 때에 한 차례 갈등을 빚

---

115 1877년 송도개척 관련 문서 중 기록국장 와타나베 히로모토는 두 섬의 존재, 송도는 일본 땅, 조사 필요. 공신국장 다나베 다이치는 송도가 죽도, 죽도는 조선 땅, 조사 불필요.

116 "이 글은 갑을병(甲乙丙)의 논의를 다시 고찰해본 것입니다. 그 논의들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의견입니다."(外務省 記錄局長 渡邊洪基, 1878, 22號;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491쪽))

117 外務省 記錄局長 渡邊洪基, 1878, 22號;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495쪽).

118 "그러한 사실을 이들 縣이 알지 않으면 안 되므로 위의 현들에 松島가 竹島에 속한 섬인지 아닌지, 죽도와 송도가 같은 섬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 물어보아 알아두어야만 합니다."(外務省 記錄局長 渡邊洪基, 1878, 22號;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495쪽)) 기록국장 渡邊洪基는 재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乙의 의견과 유사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어 문서가 오고 간 끝에 영구히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하며 일본 것이 아니라고 약속한 기록이 양국의 역사서에 실려 있습니다"[119]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나베는 현재 송도를 개척하면 조선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조선에 사신을 보낼 때 송도에 해군 함대를 파견하여 송도를 무주지로 만들어 일본 영토로 개척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나베는 세와키의 건의안을 반대했다. 다나베는 "송도가 아직 무인도인지 분명하지 않고 소속이 애매합니다. 일본이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여 해군성이 배 1척을 보낼 때, 측량 제도하는 사람, 생산과 개발하는 사람을 동반시켜[120] 주인 없는 땅임을 밝혀내고 이익의 유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후 차차 기회를 보아 비록 하나의 작은 섬이라도 일본의 북쪽 관문이 되는 곳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됨을 보고한 후 그곳을 개척하면 됩니다"[121]라고 주장했다.

2. 아마기함의 '송도' 시찰과 일본 외무성의 결정

일본 외무성 관료 기타자와는 외무성 내부의 논의가 다양한 상황에서 1881년 아마기함 해군소위 미우라 시게사토(三浦重郷)의 송도 현장시찰을 제한했다.

기타자와는 외무성 내부의 논의가 분분하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사도 중단된 상태라고 기록했다.

그런데 기타자와는 1880년 9월 아마기함의 승무원 해군소위 미우라 시게사토 등이 회항할 때 송도에 가서 측량하는데 "그 땅은 옛날부터 울릉도였다"라고 보고했

---

119 "聞ク松島ハ我邦人ノ命セル名ニシテ其實ハ朝鮮蔚陵島ニ屬スル于山ナリト. 蔚陵島ノ朝鮮ニ屬スルハ舊政府ノ時一葛藤ヲ生シ文書往復ノ末永ク認テ我有トセサルヲ約シ載テ兩國ノ史ニ在リ." 外務省 公信局長 田邊太一, 1878, 23號「丁」;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497쪽). 공신국장 다나베 다이치는 전체적으로 외무성 관리 갑(甲)의 의견과 거의 비슷했다.

120 外務省 公信局長 田邊太一, 1878, 23號「丁」;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499쪽).

121 外務省 公信局長 田邊太一, 1878, 23號「丁」;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50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122] 기타자와는 "북쪽에 있는 작은 섬을 죽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의 암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송도'는 '울릉도'이고, '죽도'는 '하나의 암석'이라고 판단했다.[123]

아마기함 해군소위 미우라 시게사토는 1880년 9월 13일에 '송도'가 울릉도임을 확인하는 "일본해(日本海) 송도(松島, 韓人은 이것을 鬱陵島라고 한다)에서 정박지 발견"이라는 내용을 수로국장(水路局長) 해군소장 야나기 나라요시(柳楢悦)에게 보고했다.[124] 미우라에 따르면 "송도는 일본 오키(隱岐國)에서 북서쪽으로 140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125] 미우라는 송도를 측량하면서 지도(第24號附)를 일본 수로국에 제출했다. 그 지도에는 '송도' 바로 옆의 북쪽에 '죽서(竹嶼, Boussole R.k)'가 표시되어 있었다.[126] 즉 기타자와가 언급한 북쪽의 '하나의 암석'은 '죽서'였다. 일본 외무성 관료 기타자와는 1881년 8월에 '송도' 관련 최종 보고서인 '메이지 14년 8월 취조(明治十四年八月取調)'를 작성하여 보고했다.[127]

기타자와는 1699년 '죽도'가 조선의 땅으로 결정되었다고 파악했다. 기타자와에 따르면 "겐로쿠 12년(1699) 죽도가 조선의 것이라고 정해진 이후 일본 사람 중 그 땅

---

122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501쪽).

123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503쪽).

124 天城艦 海軍少尉 三浦重郷-水路局長 海軍小將 柳楢悦, 1880. 9. 13, 24號 「水路報告第三十三號」;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503쪽).

125 "그 섬은 종래에는 바닷사람이 찾아가는 곳이 아니었으므로 정박지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우리 아마기함(天城艦)이 조선(朝鮮)에 갔을 때 그 섬에 들러서 그 섬의 동쪽 해안에 정박지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의 도면(圖面)이 즉 그곳입니다."(天城艦 海軍少尉 三浦重郷-水路局長 海軍小將 柳楢悦, 1880. 9. 13, 24號 「水路報告第三十三號」;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505쪽)) 많은 논의 끝에 현지에 파견된 아마기함은 독도는 전혀 알지 못했고, '송도'가 곧 울릉도이며 죽도는 지금도 '죽도'로 불리고 있는 울릉도 바로 곁의 부속도임을 확인했다(강만길, 「외국의 문헌상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 1985, 321쪽).

126 天城艦 海軍少尉 三浦重郷-水路局長 海軍小將 柳楢悦, 1880. 9. 13, 24號附 「松島一名鬱陵島」, 『水路報告第三十三號』; 北澤正誠, 『竹島考證』, 1881(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506쪽).

127 北澤正誠은 天城艦 海軍少尉 三浦重郷의 24호 등을 조사한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상의 24호를 읽어본 결과는 이하와 같다."(北澤正誠, 1881. 4, 「明治十四年八月取調」, 『竹島考證』(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 Ⅱ, 2006, 50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넘보는 자가 없었다"[128]라고 한다.

기타자와는 1877년 1월 도다 다카요시의 '죽도도해원서(竹島渡海願書)'를 제출했지만 1877년 6월 거부당했다고 기록했다.[129]

그 후 기타자와는 무토 헤이가쿠와 사이토 시치로베에가 죽도도해 허가를 요청하여 외무성에서 죽도와 송도에 대해 논의했다고 기록했다.

기타자와에 따르면 무쓰(奥州) 사람 무토와 시모사(下總) 사람 사이토 등은 블라디보스톡을 왕래하면서 '죽도' 이외에 따로 '송도'라는 섬이 있다고 주장하며 세와키를 통해 도해 허가 청원을 요청했다. 기타자와는 "죽도와 송도가 1도2명인지, 아니면 2개의 서로 다른 섬인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송도를 순시해보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라고 기록했다.

기타자와는 1880년 아마기함의 현장조사에 따라 송도가 울릉도, 죽도가 '하나의 암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으로 송도는 울릉도이며, '죽도'는 하나의 암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다.[130]

기타자와는 죽도를 하나의 암석으로 기록했지만 앞의 문서와 지도(第24號附)를 연결하면 울릉도 바로 근처 죽서(竹嶼)였다. 결국 그는 1881년 아마기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송도'를 울릉도로 파악하고 죽서를 '죽도(독도)'로 결론지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이 『죽도고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불법 침입한 일본인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 문서를 작성하여 일본 외무성에 보냈다. 1881년 5월 22일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은 일본인이 울릉도에서 나무를 벌목

---

128 北澤正誠, 1881. 4,「明治十四年八月取調」,『竹島考證』(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509쪽).

129 "(1877년) 6월에 이르러 허가할 수 없다는 지령이 있었다(六月ニ及ヒ難聞届旨指令アリ)."(北澤正誠, 1881. 4,「明治十四年八月取調」,『竹島考證』(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509-511쪽))

130 北澤正誠, 1881. 8,「明治十四年八月取調」,『竹島考證』(바른역사정립기획단,『독도자료집』Ⅱ, 2006, 51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여 원산과 부산으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항의 서계(書契)를 작성하여 동래부(東萊府) 왜관(倭館)에 보내서 일본 외무성에 전달할 것을 요청하고 승인받았다. 동시에 통리기무아문은 일본 선박이 울릉도를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며, 부호군(副護軍) 이규원(李奎遠)을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여 승인받았다.[131]

기타자와의 보고서는 일본 외무성에서 1881년 8월에 채택되었고, 10월에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에게 보고되었다. 조선 정부의 항의 서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회답 문안은 1881년 8월 27일(윤7월 3일)에야 결정되었다.[132]

3. 기타자와의 「죽도판도소속고」(1881)

일본 외무성 관료 기타자와 마사나리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상세한 『죽도고증』을 먼저 서술하고, 1881년 8월 20일(음력 7월 26일)에 요약된 최종 보고서를 「죽도판도소속고(竹島版圖所屬考)」라는 제목으로 일본 외무성에 제출했다.

기타자와는 기본적으로 '죽도'와 '송도'가 모두 울릉도이고, 울릉도 북쪽의 '하나의 암석'인 '죽서(竹嶼, Boussole R.k)'를 울릉도의 부속섬 죽도라고 판단했다.

외무성 관료 기타자와는 '죽도'의 명칭에 대해 "죽도를 일명(一名) 기죽도(磯竹島) 또는 송도(松島)라고 칭한다. 한국 명칭으로 울릉도(鬱陵島) 또는 우릉도(芋陵島)라고 칭한다"라고 기록했다. 기타자와는 일본에서는 죽도=기죽도=송도이며, 한국에서는 울릉도=우릉도라고 판단했다.[133]

---

131 『高宗實錄』, 高宗 18年(1881) 5月 22日.

132 『日本外交文書 14』, 「日案」 1, 文書番號 160;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158쪽.

133 『日本外交文書』(14), 10事項, 161號, 明治14年(1881) 10月 7日, 朝鮮國蔚陵島ノ儀ニ付朝鮮政府ヘ送翰ノ儀上申ノ件 附屬書 二 北澤正誠稿 竹島版圖所屬考 明治14年(1881) 8月 20日, 井上外務卿→三條太政大臣宛; 송병기,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 2004, 16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외무성 관료 기타자와는 『동국통감(東國通鑑)』, 『고려사(高麗史)』,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기초하여 죽도=울릉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했다.[134] 기타자와에 따르면 1699년 조선과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의 판도임을 결정하여 일본인의 죽도도해를 금지했다.[135]

기타자와에 따르면 「죽도서류잡찬(竹島書類雜纂)」에 근거하여 1877년 시마네현 사족 도다 다카요시는 '죽도도해'의 원서(願書)를 도쿄부에 제출했지만, 도쿄부청은 1877년 6월 허락할 수 없다는 지령을 내렸다.[136]

기타자와에 따르면 「송도관계서류포호사덕공신(松島關係書類浦湖斯德公信)」에 근거해 무쓰 출신 무토 헤이가쿠와 시모사 출신 사이토 시치로베에 등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왕래하다가 죽도 이외에 별도로 송도라는 섬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사무관 세와키 히사토에게 도해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외무성 내에서 죽도와 송도가 1도2명인지 아니면 별개의 섬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 결과 송도 순시(巡視)의 의론이 일어났지만 실행되지 않았다.[137]

기타자와에 따르면 해군수로국의 수로잡지(水路雜誌)에 근거하여 1878년 6월 아미기함 해군소좌 마쓰무라 야스타네(松村安種)는 "조선해(朝鮮海)에 회항(回航)할 때에 송도에 갔고 승무원 요시다(吉田) 중위가 정오에 본함(本艦)의 소재를 실측하

---

134 『日本外交文書』(14), 10事項, 161號, 明治14年(1881) 10月 7日, 朝鮮國蔚陵島ノ儀ニ付朝鮮政府ヘ送翰ノ儀上申ノ件 附屬書 二 北澤正誠稿 竹島版圖所屬考 明治14年(1881) 8月 20日, 井上外務卿→三條太政大臣宛; 송병기,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 2004, 174-176쪽.

135 日本外交文書』(14), 10事項, 161號, 明治14年(1881) 10月 7日, 朝鮮國蔚陵島ノ儀ニ付朝鮮政府ヘ送翰ノ儀上申ノ件 附屬書 二 北澤正誠稿 竹島版圖所屬考 明治14年(1881) 8月 20日, 井上外務卿→三條太政大臣宛; 송병기,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 2004, 180쪽.

136 日本外交文書』(14), 10事項, 161號, 明治14年(1881) 10月 7日, 朝鮮國蔚陵島ノ儀ニ付朝鮮政府ヘ送翰ノ儀上申ノ件 附屬書 二 北澤正誠稿 竹島版圖所屬考 明治14年(1881) 8月 20日, 井上外務卿→三條太政大臣宛; 송병기,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 2004, 166쪽.

137 日本外交文書』(14), 10事項, 161號, 明治14年(1881) 10月 7日, 朝鮮國蔚陵島ノ儀ニ付朝鮮政府ヘ送翰ノ儀上申ノ件 附屬書 二 北澤正誠稿 竹島版圖所屬考 明治14年(1881) 8月 20日, 井上外務卿→三條太政大臣宛; 송병기,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 2004, 16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니 북위 37도 48분이었다"라고 기록했다.[138] 1880년 9월 아마기함은 다시 송도로 항해했는데, 해군소위 미우라 시게사토 등은 실지측량을 실행하고 동안(東岸)에 임시 정박할 곳을 발견했다.[139]

기타자와는 1699년 조선과 막부가 조선의 영토로 합의한 죽도는 송도이며, 송도는 울릉도라는 결론을 내렸다. 기타자와는 만약 '죽도'라고 칭하는 섬이 있을지라도 아주 작은 '소도(小島)'라고 판단했다.

기타자와는 "송도(松島)는 고대 한인(韓人)이 울릉도(鬱陵島)라 칭한 곳이다. 달리 죽도(竹島)라 칭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아주 작은 소도(小島)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어 사정이 더욱 명료해졌다", "오늘의 송도는 즉 겐로쿠 12년(1699)에 칭한 바의 죽도로서 옛날부터 일본 판도(版圖) 밖의 땅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140]

결국 기타자와는 기본적으로 송도=죽도=울릉도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만약 '죽도'라는 섬이 따로 있다면 울릉도 인근의 '죽서(대섬)'라고 생각했다. 기타자와는 아마기함의 보고서와 지도에 근거하여 공신국장 다나베와는 달리 독도를 '죽서'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했다.

---

138 日本外交文書』(14), 10事項, 161號, 明治14年(1881) 10月 7日, 朝鮮國蔚陵島ノ儀ニ付朝鮮政府へ送翰ノ儀上申ノ件 附屬書 二 北澤正誠稿 竹島版圖所屬考 明治14年(1881) 8月 20日, 井上外務卿→三條太政大臣宛; 송병기,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 2004, 166쪽.

139 日本外交文書』(14), 10事項, 161號, 明治14年(1881) 10月 7日, 朝鮮國蔚陵島ノ儀ニ付朝鮮政府へ送翰ノ儀上申ノ件 附屬書 二 北澤正誠稿 竹島版圖所屬考 明治14年(1881) 8月 20日, 井上外務卿→三條太政大臣宛; 송병기,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 2004, 167쪽.

140 "他ニ竹島ト稱スル者アルモ蕞爾タル小島ニ過キサルヲ知リ事情愈明了ナリ."(日本外交文書』(14), 10事項, 161號, 明治14年(1881) 10月 7日, 朝鮮國蔚陵島ノ儀ニ付朝鮮政府へ送翰ノ儀上申ノ件 附屬書 二 北澤正誠稿 竹島版圖所屬考 明治14年(1881) 8月 20日, 井上外務卿→三條太政大臣宛; 송병기,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 2004, 16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VI. 나오며

현재 일본 외무성은 1877년 '송도개척원(松島開拓願)'의 논의 결과 죽도가 일본 영토로 명확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송도개척원을 통해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판단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1880년 9월 군함 아마기가 가서 실제로 이 섬을 측량한 결과로서 송도는 울릉도 그 자체이며 울릉도 부속의 섬에 죽도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심지어 "송도개척원의 심사를 했던 외무성의 요로(要路)는 죽도가 일본령에 속하며 조선도 이론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141]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송도개척원' 논의 과정에서 일본 외무관료가 울릉도와 울릉도의 부속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했다.

시마네현의 사족 도다 다카요시는 1877년 1월 죽도에서 어렵을 하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도쿄부지사 구스모토에 제출했다. 도다 다카요시는 울릉도를 '죽도'라고 부르면서 '죽도'의 위치와 특징을 기록했다. 그런데 미치노쿠(陸奥)의 사족 무토 헤이가쿠는 블라디보스톡으로 항해하던 중 '송도'를 발견했는데, 1876년 7월 외무성에 그 섬을 개척할 것을 건의했다. 그런데 무토 헤이가쿠는 도다 다카요시와는 달리 '죽도'라고 하지 않고 '송도'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일본 외무성의 '송도'개척이라는 제목이 무토 헤이가쿠의 문서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의 무역사무관 세와키 히사토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무토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무토가 제공한 정보까지 인용했다. 결국 세와키는 무토와 연결되어 '송도'개척 청원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송도가 울릉도이자 죽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송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일본 외무성에 명칭의 혼란을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송도라는 명칭으로 바꾸면서

141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244-24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울릉도를 일본의 영토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외무성 기록국장 와타나베 히로모토는 1877년 도다 다카요시와 무토 헤이가쿠의 청원서를 살펴보고 '죽도'와 '송도'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외무성 기록국장 와타나베는 송도의 서도(西島)에서 40리쯤 가면 만나는 섬이 '죽도'라고 파악했다. 그는 1877년 '송도'와 '죽도'의 거리와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했다. 와타나베는 "호키의 요나고에서 죽도까지 바닷길로 약 140리"라고 표현하여 '죽도'를 울릉도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와타나베의 기록을 살펴보면 '송도'는 현재의 독도이고, '죽도'는 울릉도다.

그 후 일본 외무성 공신국장 다나베 다이치는 1877년 4월 상인 사이토 시치로베에의 '송도'개척 청원에 대해서 답변했다. 다나베는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로 일본 영역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사이토의 청원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이었다. 다나베는 '송도'가 조선의 울릉도이기 때문에 일본 영역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외무성의 공식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보스톡의 무역사무관 세와키 히사토는 1877년 5월에 연해주 거주 조선인과 '송도'개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미 세와키는 무토 헤이가쿠의 '송도'개척 청원서를 사주한 인물이었다. 세와키는 일본이 송도(울릉도)를 개척하면 한국의 북쪽 지역에 쌀과 소금 등을 판매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세와키는 일본 제품 판매를 통한 경제적 침투를 시작으로 한국과 만주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실현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그는 "한국인과 만주인을 애정으로써 대하면 반드시 일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송도'를 개척하여 금전 거래를 통해 후일의 원대한 책략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한국인을 포섭하고, 울릉도를 개척한 다음 조선과 만주에 진출하려는 '아시아주의'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세와키는 일본이 울릉도를 거점으로 조선 북부와 만주지역의 경제를 장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일본 외무성 공신국장 다나베 다이치는 1877년 블라디보스톡 주재 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역사무관 세와키의 '송도'개척에 대해서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이며 개간도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나베는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로서 일본의 영역에 있는 섬이 아니었다. 분카연간(文化年間, 1804-1817)에 이미 서신을 조선 정부와 주고받았다. 일본의 개간 착수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후 외무성 기록국장 와타나베 히로모토와 외무성 공신국장 다나베 다이치는 1878년 '송도'개척과 관련하여 각각 자신의 견해를 기록했다.

기록국장 와타나베는 울릉도와 죽도가 동일한 섬이고, 송도는 죽도의 속도라고 추정했다. 와타나베는 "울릉도와 죽도가 동도2명(同島二名)인 것이 명확하고, 송도 역시 죽도와 동도2명(同島二名)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죽도의 속도인 것 같다"라고 적었다. 와타나베는 이나바와 오키, 이와미 지역에 '죽도'와 '송도'에 관한 문의를 제안했다. 그는 송도가 죽도의 속도가 아니라면 일본에 속한 지역이라고 판단했다.

공신국장 다나베는 송도가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죽도가 울릉도이고, 송도는 우산이자 울릉도의 속도라고 인정했다. 다나베는 "송도는 일본 사람이 지은 이름이며, 사실은 조선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이라고 한다. 울릉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것은, 구정부 때에 한 차례 갈등을 빚어 문서가 오고 간 끝에 영구히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하며 일본 것이 아니라고 약속한 기록이 양국의 역사서에 실려 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일본 외무성은 1877-1878년 '송도'개척을 둘러싼 논의 끝에 송도는 울릉도이고, 죽도는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라고 파악했다. 일본 외무성은 송도와 죽도 사이의 거리가 40리라고 파악할 정도로 지리적 정보까지 갖고 있었다. 진실은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드러나는 법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장

울릉도 이주·삼림·어업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종과 이규원의 울릉도와 독도 위치와 명칭에 관한 인식 과정

Ⅰ. 들어가며

조선 정부는 1693년 안용복(安龍福) 사건으로 울릉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빚게 되자, 1694년 삼척첨사(三陟僉使)를 특별히 임명하여 울릉도를 상세하게 조사하게 했다.

1694년 8월 14일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은 "왜인(倭人)이 (울릉도를) 점거(占據)하여 소유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구만은 고려 의종의 울릉도 경영 시도를 언급하면서 삼척첨사를 파견하여 진(鎭)의 설치에 관한 조사를 제안했다. 그 결과 숙종은 장한상(張漢相)을 삼척첨사로 임명하여 울릉도에 파견했다.

장한상은 1694년 울릉도를 조사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왜인들이 방문한 자취는 정말 있었지만 일찍이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좁고 큰 나무가 많았으며 수종(水宗, 물마루)이 평탄하지 못하여 왕복이 어려웠습니다. 토품(土品)을 파악하려고 모맥(麰麥)을 심어놓고 돌아왔으니 내년에 다시 가서 보면 확인(驗)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숙종실록』에는 장한상이 울릉도의 산천(山川)과 도리(道里)의 지도를 올렸는데 『여지승람(輿地勝覽)』의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장한상이 그려서 올린 산천과 도리가 『여지승람』의 기록과 차이 나는 것이 많으므로 혹자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장한상이 간 곳이 진짜 울릉도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이것은 직접 현장을 방문한 장한상이 울릉도와 우산도의 상세한 지도를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1]

이규원 검찰사 각석문(1882. 5)

『여지승람』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말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지도 「팔도총도(八道總圖)」(동람도)에는 삼척에서 동해 방향으로 먼저 우산도, 그리고 울릉도가 그려져 있다.[2]

그렇다면 장한상은 울릉도와 우산도를 어떻게 파악했을까?

삼척영장 장한상은 1694년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울릉도를 수토했다. 장한상은 울릉도 중봉(中峰, 사동과 남양 사이)에서 비가 개고 구름이 걷힌 날, 육안으로 섬 하나를 직접 보았다고 기록했다. "서쪽에는 구불한 대관령의 모습이 보였고, 동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니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도의 3분의 1이 안 되고 거리는 300여 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3]라고 했다.

---

1 『肅宗實錄』, 肅宗 20年(1694) 8月 14日.

2 「八道總圖」, 『新增東國輿地勝覽』, 1531年 發刊(奎章閣 古軸4709-74).

3 장한상은 1694년 9월 19일 사시(巳時)경 삼척부 남면 장오리진(莊五里鎭) 대풍소를 출발하여 20일 울릉도에 도착했다. 장한상은 울릉도로 가는 뱃길이 험하고, 울릉도의 자연환경이 열악하여 보루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張漢相, 『鬱陵島事蹟』, 1694; 의성조문박물관, 『독도와 장한상』, 2014, 23-31쪽). 김인우(金麟雨)는 1425년 10월 우산과 무릉 지역 안무사(按撫使)로 활동하고 복명한 적이 있었다. "于山, 茂陵等處按撫使金麟雨搜捕本島避役男婦二十人來復命."(『世宗實錄』, 世宗 7年(1425) 10月 20日) 장한상의 울릉도사적 발간 경위 및 필사본 2종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이원택, 「울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기록의 위치와 크기의 정보를 종합하면 장한상이 바라본 섬은 우산도(독도)임에 틀림없다. 장한상은 울릉도 중봉인 남쪽에서 동남쪽으로 우산도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따라서 장한상은 「팔도총도」의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와 달리, 울릉도 동남쪽에 우산도(독도)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조선 정부에 보고할 수 있었다.

17세기 말 장한상의 보고서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와 구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것은 조선 정부 내부에서 울릉도·우산도를 재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울릉도·우산도에 대한 인식은 조선 후기, 특히 울릉도 개척 과정에서 고종과 이규원의 울릉도·우산도에 대한 인식과 명칭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기존 연구는 울릉도 검찰사 활동 전후 일본의 울릉도 불법벌목, 조선의 울릉도 개척 이유, 울릉도 불법벌목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 등을 주목했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1882년 전후 상황만 주목하여 전근대 시기 관찬문헌에 나타난 울릉도·우산도에 대한 인식과 명칭을 근대 시기와 연결시키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기존 연구는 고종과 이규원이 울릉도·우산도에 관해 참고한 자료가 무엇인지,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와 명칭을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추적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고종과 이규원의 울릉도 개척 관련 대화를 살펴보면서 고종과 이규원이 참고한 관찬사료에 나타난 울릉도·우산도에 대한 인식과 명칭을 추적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근대와 근대의 울릉도·우산도 명칭의 연속성을 주목할 것이다. 또한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 준비 과정을 추적하면서 고종과 이규원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인식도 살펴볼 것이다.

도사적의 문헌학적 검토」, 『영토해양연구』 16, 2018, 24–2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조선시대의 울릉도 정책 및 이규원의 검찰사 임명

기존 연구는 조선시대 울릉도 정책에 관한 용어로 공도(空島), 쇄출(刷出), 쇄환(刷還), 수토(搜討) 등을 사용했다. '공도'는 울릉도 조사와 관련하여 조선 정부의 관찬사료에서 '섬을 비운다'라는 일반적인 서술에 한정되었다.[4] '쇄출'은 조선 정부의 관찬사료에서 일부 사용되었고, '쓸어서 내보내다'라는 의미였다.[5] 울릉도와 관련하여 '쇄환'은 『세종실록(世宗實錄)』에서 '데리고 돌아오다'라는 일반적인 서술로 사용되었다.[6] '수토'라는 용어는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1694년 8월 14일 영의정 남구만이 "한두 해 간격을 두고 (울릉도를) 수토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제안하고, 숙종이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7]

그 후 '수토'는 조선시대 울릉도에 관한 수토정책으로 표현되었다. '수토'란 수색과 토벌을 의미했다. 이것은 조선 정부가 울릉도를 순찰하며 관리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

4 "江原監司李晩堅馳啓, 乞停今年鬱陵島搜討, 備局覆奏以爲 近年搜討, 不過往見空島, 當此凶歲, 不可重貽民弊, 請姑令停止 上從之."(『肅宗實錄』, 肅宗 43年(1717) 3月 17日)

5 "命右議政韓尙敬六曹臺諫 議刷出于山 武陵居人便否 僉曰 武陵居人 勿令刷出 給五穀與農器 以安其業 仍遣主帥撫之 且定土貢可也 工曹判書黃喜獨不可曰 勿令安置 依速刷出 上曰 刷出之計是矣."(『太宗實錄』, 太宗 17年(1417) 2月 8日) "金麟雨 爲按撫使 刷出空其地."(「江原道 蔚珍縣 山川條」, 『新增東國輿地勝覽』 券45, 1531年 發刊, 182-184쪽) "金麟雨 爲按撫使 刷出空其地."(「地理志 144 江原道 三陟都護府 蔚珍縣」, 『世宗實錄』 卷153, 1454年, 10-11쪽) "新羅取之 後恐導倭爲寇 刷出居民 空其地."(「輿地考 13 關防 3 海防 1 東海 蔚珍」, 『東國文獻備考』 卷18, 1770年 發刊, 8-12쪽; 「輿地考 19 關防 7 海防 1 東海 蔚珍」, 『增補文獻備考』 卷31, 1908, 6-11쪽)

6 "前判長鬐縣事金麟雨爲于山武陵等處按撫使 初江原道平海人金乙之李萬金亏乙金等 曾逃居武陵島 歲丙申 國家遣麟雨盡行刷還 癸卯 乙之等男婦共二十八名 復逃入本島 今年五月 乙之等七人留其妻子於本島 乘小船潛到平海郡仇彌浦發覺 監司囚之 本郡馳報 於是復爲刷還."(『世宗實錄』, 世宗 7年(1425), 8月 8日)

7 "九萬入奏曰 不可使民入居 間一二年搜討爲宜 上從之."(『肅宗實錄』, 肅宗 20년(1694) 8月 14日)) '울릉도쟁계'라는 용어는 성호 이익의 아들 이맹휴(李孟休, 1713-1751)의 『춘관지(春官志)』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李孟休, 1745年 筆寫本, 「附錄 鬱陵島爭界」, 『春官志』 卷3(奎章閣 奎貴963); 李孟休, 『春官志』,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研究院, 2013, 48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정책과 관련한 기록을 살펴보면 1699년 월송만호(越松萬戶) 전회일(田會一)이 "울릉도를 수토(搜討)"하고 대풍소(待風所)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나온다.[8] 1705년 평해(平海) 지역 군관(軍官) 황인건(黃仁建)은 "울릉도를 수토"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망했다.[9] 1769년 조선 정부는 강원도의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지만 "울릉도 수토"를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10] 조선은 최소한 숙종–영조대까지 울릉도 수토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고, 울릉도 수토정책을 실시했다.

고종 시대 수토정책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1881년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은 강원감사(江原監司) 임한수(林翰洙)의 장계(狀啓)를 보고하면서 "울릉도 수토관(搜討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11] 조선시대 수토 책임자의 명칭으로 삼척영장과 월송만호라는 현직이 사용되었다. 다만 수토 책임자를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대체로 '수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12]

그런데 울릉도 개척 이후 1894년 경상도 위무사(慰撫使) 이중하(李重夏)는 "울릉도 수토에 따른 선격(船格)과 집물(什物)을 금지하자"라고 하여 삼척과 월송진(越松鎭)의 울릉도 수토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13] 1895년 1월 29일 내부대신(內部大臣) 박영효(朴泳孝)는 울릉도 수토제도의 폐지에 따라 울릉도의 책임자인 도장(島長) 임

---

8 "江原道 越松萬戶田會一 搜討鬱陵島 還泊待風所 圖上本島地形 兼進土産篁竹香木土石等數種."(『肅宗實錄』, 肅宗 25年(1699) 7月 15日)

9 "鬱陵島搜討回還時 平海等官軍官黃仁建等十六名 溘死 上命擧恤典."(『肅宗實錄』, 肅宗 31年(1705) 6月 13日)

10 "命停江原道今春操 鬱陵島搜討之行 三鎭勸武都試則依例設行 因道臣宋瑩中狀請也."(『英祖實錄』, 英祖 45年(1769) 1月 4日)

11 "統理機務衙門啓 卽見江原監司林翰洙狀啓 則枚擧鬱陵島搜討官所報."(『高宗實錄』, 高宗 18年(1881) 5月 22日)

12 "倭船搜討軍官李崇仁." (『中宗實錄』, 中宗 11年(1516) 8月 7日); "搜討官越松萬戶韓昌國處."(『正祖實錄』, 正祖 18年(1794) 6月 3日); "鬱陵島搜討官所報."(『高宗實錄』, 高宗 18年(1881) 5月 22日)

13 "慶尙道慰撫使李重夏別單… 鬱陵島搜討船格什物 永革事也 該島今旣開拓 左水營之分定東沿各邑 入送三陟 越松鎭者 殊甚無謂 搜討船格什物 自今永革之意 分付嶺南 關東兩道爲宜."(『高宗實錄』, 高宗 31年(1894) 12月 27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명을 제기하여 고종의 승인을 받았다.[14] 결국 조선 정부는 울릉도 정책을 '수토'라는 용어로 표기했고, '울릉도 수토관'이라고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수토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15]

이규원(李奎遠)은 1881년 5월 23일 울릉도 검찰사(檢察使)로 임명되었다.[16] 그는 배로 울릉도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놓쳐 1882년 4월에야 울릉도를 조사할 수 있었다.[17] 이규원은 울릉도 검찰사에 임명된 후 출발까지 1년 동안 울릉도에 대한 정보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

고종은 1882년 4월 7일 검찰사 이규원을 접견(召見)하며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 최근 외국인이 울릉도를 왕래하여 멋대로 점유했다. 송죽도(松竹島)와 우산도(芋山島)는 울릉도 옆에 있다. 서로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며 무엇이 있는지 아직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그대가 가게 된 것은 특별히 임명(差任)한 것이니 각별히 조사(檢察)하라. 그리고 앞으로 읍(邑)을 세울 생각이니, 반드시 지도와 함께 별단(別單)에 자세히 적어 보고하라.[18]

고종은 일본인이 불법으로 울릉도를 왕래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울릉도 옆의 송죽

---

14 "內務大臣朴泳孝奏 鬱陵島搜討ᄒᆞᄂᆞᆫ 規를 今旣永革ᄒᆞ온지라 越松萬戶의 兼ᄒᆞ바 島長을 減下ᄒᆞ고 別로 可堪者一人을 擇ᄒᆞ와 島長을 差定ᄒᆞ야 島民事務를 管領케 ᄒᆞ고 每歲에 船을 數次送ᄒᆞ와 島民疾苦를 問ᄒᆞ옴이 何如ᄒᆞ올지? 允之."(『高宗實錄』, 高宗 32年(1895) 1月 29日)

15 김호동은 일본이 대외팽창의 일환으로 울릉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에서 '공도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쇄환 혹은 수토정책'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제안했다. 김호동에 따르면 쇄환 혹은 수토정책은 울릉도에 입도한 동해안 어민들의 쇄환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김호동,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2007, 1–20쪽).

16 "臣於辛己五月二十三日 猥荷鬱陵島檢察之 命."(李奎遠, 光緒八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17 박성준, 「1880년대 조선의 울릉도 벌목 계약 체결과 벌목권을 둘러싼 각국과의 갈등」, 『동북아역사논총』 43, 2014, 120쪽.

18 『承政院日記』, 高宗 19年(1882) 4月 7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와 우산도의 위치와 거리, 읍 설치를 통한 울릉도 개척 대비 보고서 등을 지시했다. 고종은 '울릉읍'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울릉읍 설치를 위한 지도와 첨부문서를 작성할 것도 지시했다. 무엇보다도 고종은 울릉도, 송도, 죽도, 우산도 4개 섬을 따로 구별했다. 고종은 동해에서 울릉도를 중심으로 우산도를 독자적으로 구별했다.

그 자리에서 이규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우산도는 바로 울릉도이며 우산(芋山)은 옛날 도읍(國都)의 명칭입니다. 송죽도(松竹島)는 하나의 작은 섬(小島)인데 울릉도와 30리 떨어져 있습니다. 산물로는 단향(檀香)과 간죽(簡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규원은 우산도가 울릉도이며 우산을 국도, 즉 수도 명칭으로 파악했다. 이규원은 송죽도가 하나의 소도이고 울릉도에서 약 12킬로미터(30리) 떨어져 있다고 파악했다. 울릉도=우산도와 송죽도, 즉 2개 섬만 구별한 것이다.

고종과 이규원은 울릉도 주변의 섬, 즉 3개 섬에 대한 정보를 다르게 파악했다. 그러자 고종은 울릉도 주변 섬을 조사할 것을 이규원에게 지시했다. "혹은 우산도라 칭하고 혹은 송죽도라 칭하니 이는 모두 『여지승람』에 실려 있다. 또는 송도와 죽도라고도 칭하여 우산도와 함께 이 세 섬을 울릉도라고 통칭하고 있다. 그 형세를 모두 검찰하도록 하라."

고종은 이규원이 우산도가 울릉도라고 주장하자 3개 섬으로 구성되었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럼에도 고종은 울릉도라고 불리는 3개 섬을 언급하여 울릉도 부속도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종은 『여지승람』에 기초하여 우산도와 송죽도라는 명칭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울릉도가 송도, 죽도, 우산도 3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이규원에게 제기했다. 고종은 이규원이 우산도가 곧 울릉도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자 송도, 죽도, 우산도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19]

---

19 『高宗實錄』, 高宗 19年(1882) 4月 7日; 『承政院日記』, 高宗 19年(1882년) 4月 7日. 우리가 관심 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결국 고종은 1882년 4월 7일 그동안 울릉도 수토정책의 소홀함을 지적하면서 울릉도를 상세히 살필 것을 이규원에게 지시했다. 이규원은 울릉도 주변을 성실히 조사(檢察)할 것을 다짐하면서 울릉도 주변 섬 중 송도와 죽도가 2개 섬이 아니라 1개 섬인 송죽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종은 울릉도 및 '송도'와 '죽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이규원의 사실 출처를 추궁했다. 이규원은 울릉도 수검인(搜檢人)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단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고백했다.[20] 이규원은 울릉도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단지 전해 들은 내용에 기초하여 울릉도와 송죽도만 구별했다. 반면 고종은 기존 관찬문헌을 참고하여 울릉도와 우산도 및 '송도'와 '죽도'의 관계를 확정 지으려고 했다.

Ⅲ.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주요 내용 및 참고자료

고종이 참고했다는 관찬지리서 『여지승람』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가리킨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 관련 내용은 무엇일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우산도 및 울릉도와 관련하여 어떤 관찬사료에 기초했는가? 향후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우산도와 울릉도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관찬지리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은 1481년(성종 12)에 편찬되었고, 수

는 발언의 의미, 첫째, 주제를 해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며, 둘째, 이것이 동일한 주제에 연루된 다른 발언과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거나 관계되는지 결정하기 위해 그 발생의 논쟁적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켄틴 스키너, 『역사를 읽는 방법』, 돌베개, 2012, 186쪽). 이규원의 「계초본」에 '송도'가 독자적으로 기록된 사실, 신경준의 『강계고』에 '송도'를 설명한 사실 등 다양한 문헌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송도'와 '죽도'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20 『高宗實錄』, 高宗 19年(1882) 4月 7日.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는 여기까지 일치한다. 그 이후 고종과 이규원의 대화는 『승정원일기』에만 기록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과 보완을 거쳐 1531년(중종 26)에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발간되었다. 그 후 조선의 제도와 문물 등을 집대성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가 1770년(영조 46)에 발간되었다. 『동국문헌비고』는 각종 제도를 여지(輿地)·예(禮)·병(兵)·형(刑) 등으로 분류해 연대순으로 정리했다. 『증정문헌비고(增訂文獻備考)』는 1809년(순조 9) 『동국문헌비고』를 보완하고 편집하여 필사본으로 완성되었다.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에 노사신(盧思愼) 등이 왕명을 받아 50권으로 편찬한 관찬지리서다. 1487년(성종 17)에 55권으로 재편집되었다. 1531년(중종 26) 이행(李荇)과 홍언필(洪彦弼) 등이 수정에 참여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발간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전체적으로 권수(卷首), 본문 내용 55권, 권말(卷末)로 구성되었고, 본문 내용은 경부(京部), 한성부(漢城部), 개성부(開城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순서로 기록되었으며 각 도의 앞부분에 전도(全圖)가 삽입되었다.[21]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와 울릉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산도(于山島), 울릉도(鬱陵島),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2개 섬이 울진현(蔚珍縣)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세 봉우리가 높이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점점 낮다. 날씨가 맑으면 봉우리 머리의 수목과 산 아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다. 바람이 좋으면 이틀이면 갈 수 있다. 일설에는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本一島)이고 땅의 사방(地方)이 100리라고 한다.[22]

---

21 徐仁源, 「東國輿地勝覽의 編纂體裁와 特徵에 대한 一考察」, 『역사와실학』 12, 역사실학회, 1999, 222-242쪽; 박인호, 「장서각 소장 유서류의 개관과 특성」, 『장서각』 3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3-4쪽.

22 "于山島 鬱陵島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三峯岌嶪撐空 南峯稍卑 風日淸明則 峯頭樹木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則二日可到 一說于山鬱陵 本一島 地方百里."(「江原道 蔚珍縣 山川條」, 『新增東國輿地勝覽』 45券, 1531年 發刊, 12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우산도와 울릉도 2개 섬이 구별되었다. 울릉도는 3개의 봉우리로 구성되고, 수목과 모래톱이 관찰되었다.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本一島)'으로 동일한 명칭의 섬이라는 추측도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우산도와 울릉도의 명칭을 구별하고 2개 섬으로 파악했다.[23]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신라 지증왕, 고려 태조 · 의종, 조선 태종 · 세종 · 성종대의 사실에 기초하여 우산도와 울릉도를 기록했다. 이것은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 등의 관찬사료에 기초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삼국사기』의 우산국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년(512) 6월 여름, 우산국이 귀복(歸復)하여, 매년 토산물을 바치기로 했다. 우산국은 명주(溟州)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이다. 혹은 울릉도라고도 한다."[24]

『삼국사기』는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과 유사하다. 『삼국사기』는 우산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다른 이름(或名)으로 울릉도를 제시했다. 『삼국사기』에는 우산국과 울릉도의 명칭만 기록되어 있고 송죽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고려사』「지리지」의 우산도와 울릉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울진현은 본래 고구려의 우진(于珍)이라는 현(縣)이었다. 예전에는 우이군(亏伊郡)이라고도 했다.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군(郡)으로 삼았고 고려에서 현(縣)으로 격하시키고 영(令)을 두었다. 울릉도가 있다. 현(縣)의 정동(正東) 바다 가운데에 있다. 신라 때 우산국(于山國)이라 칭하고 무릉(武陵) 또는 우릉(羽陵)이라고도 했다. … 혹은 말하기를, '우산도와 무릉도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23 『肅宗實錄』, 肅宗 20년(1694) 8月 14日.

24 "十三年 夏六月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 地方一百里 恃嶮不服 伊湌異斯夫 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獅)子 分載戰船 抵其國海岸 誑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則降."(「新羅本記 4 智證麻立干 十三年 六月條」, 『三國史記』 卷4, 1145年, 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25]

『고려사』「지리지」에 따르면 하나의 설(一云)로 울릉도(무릉도)와 우산도가 각각 다른 섬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고려 의종(毅宗) 11년 기사에 "주현(州縣)을 두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고종은 예전 울릉도에 읍을 설치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지리지」에는 우산도와 울릉도 관련 명칭만 기록되었고, 송죽도에 관한 기록은 없었다. 『고려사』는 울릉도와 우산도를 2개의 섬으로 파악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도와 울릉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현의 정동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于山國), 또는 울릉도(鬱陵島)라 했다."[26]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이처럼 우산과 무릉, 우산국과 울릉도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우산도와 울릉도(무릉도)를 2개의 섬으로 구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도와 울릉도의 2도를 계승했다고

---

25 "蔚珍縣 本高勾麗于珍也縣 一云古亏伊郡 新羅景德王 改今名爲郡 高麗 降爲縣置令 有鬱陵島 在縣正東海中 新羅時稱于山國 一云武陵 一云羽陵 地方百里 智證王十二年來降 太祖十三年 其島人 使白吉土豆 獻方物 毅宗十一年 王 聞鬱陵地廣土肥 舊有州縣 可以居民 遣溟州道監倉金柔立 往視 柔立回奏云 島中有大山 從山頂 向東行至海一萬余步 向西行一萬三千余步 向南行一萬五千余步 向北行八千余步 有村落基址七所 有石佛鐵鍾石塔多生柴胡蒿本石南草, 然多岩石民不可居 遂寢其議 一云 于山武陵本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地理志 12 地理 3 東界 蔚珍縣」, 『高麗史』 卷58, 1451年)

26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鬱陵島 地方百里 恃險不服 智證王十二年 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以木造猛獸 分載戰舡 抵其國誑之曰 汝若不服則即放此獸 國人懼來降 高麗太祖十三年 其島人 使白吉土豆獻方物 毅宗十三年 審察使金柔立等回來 告島中有泰山 從山項向 東行 至海一萬餘步 向西行一萬三千餘步 向南行一萬五千餘步 向北行八千餘步 有村落基址七所 或有石佛像鐵鍾石塔 多生柴胡蒿本石南草 我太祖(*宗)時 聞流民 逃入其島者甚多 再命三陟人金麟雨 爲按撫使 刷出空其地 麟雨言 土地沃饒 竹大如柱 鼠大如猫 桃核大於升 凡物稱是."(「地理志 144 江原道 三陟都護府 蔚珍縣」, 『世宗實錄』 卷153, 1454年, 10-11쪽) *표시는 사실 오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볼 수 있다. 하지만 『세종실록』「지리지」는 우산도와 울릉도, 2개의 섬을 기록했지만 송죽도는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삼국사기』,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송죽도에 관한 기록이 없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세종실록』「지리지」를 계승하여 우산도와 울릉도를 두 섬으로 구별했지만 송죽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었다.

IV. 『동국문헌비고』의 주요 내용 및 참고자료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송죽도에 관한 기록이 없었다. 고종은 어떤 문헌을 통해 송죽도를 인식했을까?

『동국문헌비고』는 1770년(영조 46) 김치인(金致仁) 등이 왕명을 받아 중앙과 지방의 문물(文物), 제도(制度), 여지(輿地) 등을 정리하여 종합하고, 개인 소장 문집까지 수집하고 참고하여 13고(考)로 분류하고 연대순으로 정리한 관찬서(官撰書)다. 전체적으로 권수(卷首), 본문 내용 100권, 권말(卷末)로 이뤄졌고, 본문 내용은 상위고(象緯考), 여지고(輿地考), 예고(禮考), 악고(樂考), 병고(兵考), 형고(刑考), 전부고(田賦考), 재용고(財用考), 호구고(戶口考), 시적고(市糴考), 선거고(選擧考), 학교고(學校考), 직관고(職官考) 순서로 구성되었다. 권수(卷首)에는 영조가 짓고 서명응(徐命膺)이 쓴 「어제동국문헌비고서(御製東國文獻備考序)」와 「어제동국문헌비고후서(御製東國文獻備考後序)」 2수(首)를 포함하여 김치인이 지은 「진문헌비고전(進文獻備考箋)」으로 구성되었다.[27]

『동국문헌비고』 편찬 논의가 시작된 것은 1769년(영조 45) 10월 홍봉한(洪鳳漢)

---

27 玉水最, 「東國文獻備考에 대한 書誌的 고찰」, 『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2007, 238쪽; 朴光用, 「東國文獻備考 편찬의 역사적 배경」, 『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2007, 212–21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영의정을 지낼 때였다. 당시 울릉도의 산삼 문제로 왜인과의 마찰에 대비하기 위해서, 홍봉한은 울릉도 영유권에 관한 중요 문건으로 삼을 수 있는 『강역지(疆域誌)』를 편찬할 것을 건의했다. 홍봉한은 신경준(申景濬)을 천거하여 『동국문헌비고』 편찬사업에 참여시켰다. 신경준은 1756년(영조 32) 국가 단위를 중심으로 도읍과 강계를 정리하여 『강계고(疆界考)』를 저술하였고, 이는 『동국문헌비고』 「여지고(輿地考)」에 반영되었다.[28]

국가의 모든 제도를 집대성한 『동국문헌비고』는 1770년(영조 46) 왕명에 따라 편찬된 관찬문헌으로, 그중 「여지고」에 우산도와 울릉도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 우산도(于山島)는 울릉도(鬱陵島) 동쪽 350리에 있다. 울(鬱)은 울(蔚)이라고도 하고, 우(芋)라고도 하고, 우(羽)라고도 하고, 무(武)라고도 했다. 2개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芋山)이다. 울릉도는 울진에서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29]

『동국문헌비고』는 고려 태조(太祖), 현종(顯宗), 덕종(德宗), 인종(仁宗), 의종(毅宗), 고종(高宗), 원종(元宗) 등의 시대를 인용하여, 『고려사』를 참고했다. 『동국문헌비고』는 조선 태종(太宗), 세종(世宗), 성종(成宗), 광해군(光海君), 숙종(肅宗) 등의 시대를 인용하여,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동국문헌비고』는 관찬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 유형원(柳馨遠)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이

---

28 박인호, 「조선후기 역사지리학연구」, 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6; 朴光用, 「東國文獻備考편찬의 역사적 배경」, 『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2007, 213쪽. 울릉도 인삼은 18세기 중엽부터 잠상과 관원에 의해 채취되고 있었고 그 숫자는 누수십근(累數十斤)에 이르렀다. 이런 혐의로 1769년 강원감사 홍명한(洪名漢)이 탄핵되어 자리에서 물러났다(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141쪽).

29 "于山島 鬱陵島 在東三百五十里 鬱一作蔚 一作芋 一作羽 一作武 二島一卽于山 有事實錄于左 島在蔚珍正東海中."(「輿地考 13 關防 3 海防 東海」, 『東國文獻備考』 卷18, 1770年 發刊, 12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도 참고했다. 결국 『동국문헌비고』는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국문헌비고』에 따르면 울(鬱)은 울(蔚), 우(芋), 우(羽), 무(武) 등의 이칭이 있었다. 조선은 1770년 울(鬱)의 다양한 명칭에 대해 설명했다. 『동국문헌비고』는 우산도와 울릉도 2개의 섬을 구별하고 확정했다.

그런데 『동국문헌비고』는 죽도가 울릉도이고 송도가 우산도라고 기록했다. 『동국문헌비고』는 『동국여지지』에 기초하여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于山國)의 땅이며, 우산은 왜(倭)가 이르는바 송도(松島)라고 한다"라고 기록했다.[30]

그렇다면 『동국여지지』의 울릉도와 우산도 관련 내용은 무엇인가?

유형원은 병자호란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참고하고 보완하여 1656년 『동국여지지』를 완성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수정동국여지지(修正東國輿地志)』는 수정·보완된 1666년 판본이다.[31] 오상학에 따르면 송도를 우산도에 비정한 것은 유형원이 아니라 신경준이었다. 신경준은 여러 지리지와 지도를 상고하여 새로운 인식을 제시했다. 오상학은 울릉도와 우산도는 같은 섬이 아니며, 우산도는 송도이고 모두 우산국에 속했다고 하여 송도가 우산국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32]

유형원의 『동국여지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없는 울진현(蔚珍縣) 산천(山川) 중 '성유석굴(聖留石窟)'을 보강했지만, '우산도 울릉도' 부분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일하다. 이것은 『동국여지지』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초했다는 사실

30 "輿地志云 欝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輿地考 13 關防 3 海防 東海」, 『東國文獻備考』 卷18, 1770年 發刊, 8-12쪽(奎章閣 古 031-H757do))

31 양보경, 「반계 유형원의 지리사상: 동국여지지와 군현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4호, 1992, 35-36쪽.

32 오상학, 「일본측 독도영유권 주장의 비판적 검토: 역사지리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독도연구』 6, 2009, 77쪽. 이맹휴는 실학자 이익의 외아들로 『춘관지』의 안용복 관련 내용은 이미 이익의 『성호사설』에도 실려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지식일 가능성이 높다(오상학, 「일본측 독도영유권 주장의 비판적 검토: 역사지리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독도연구』 6, 2009, 79-8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알려준다.[33] 결국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우산과 울릉을 구별했고, 유형원의 『동국여지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과 울릉을 그대로 인용했고, 신경준은 우산과 울릉을 구별한 『동국여지지』에 기초하여 2개의 섬 우산국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에 신경준은 『강계고』를 저술하면서 안용복 사건을 파악하고 우산이 송도라는 사실을 『동국문헌비고』에 보강했다.

그렇다면 신경준의 『강계고』에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

송병기에 따르면 신경준은 『동국문헌비고』「여지고」를 편찬했다.[34] 그런데 기존 연구는 1756년 신경준의 『강계고(疆界考)』의 울릉도 부분「여지지(輿地志)」관련 내용을 다양하게 해석했다.

송병기는 '일설에는'부터 '우산국이다'까지 모두「여지지」의 내용으로 파악했다.

"내가 살피건대「여지지」에 이르기를, '일설에는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하나 여러 『도지(圖志)』를 상고하면 두 섬이다. 하나는 왜가 이르는바 송도(松島)인데, 대개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이다'라고 했다."[35]

오상학은 『강계고』에 대해 송병기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다'라는 부분만「여지지」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

33 "于山島 鬱陵島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三峯岌嶪撐空 南峯稍卑 風日淸明則 峯頭樹木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則二日可到 一說于山鬱陵 本一島 地方百里 新羅時 恃險不服 智證王十二年 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國人愚悍 難以威服 可以計服 乃多以木造獅子 分載戰艦 抵其國誑之曰 汝若不服 則卽放此獸踏殺之 國人恐懼來降 高麗太祖十三年 其島人 使白吉土豆 獻方物 毅宗十三年 王聞鬱陵地廣土肥 可以居民 遣溟州道監倉金柔立往視 柔立回奏云 島中有大山 從山頂向東行至海一萬餘步 向西行一萬三千餘步 向南行一萬五千餘步 向北行八千餘步 有村落基址七所 或有石佛鐵鍾石塔 多生柴胡藁本石南草 後崔忠獻獻議 以武陵土壤膏沃 多珍木海錯 遣使往觀之 有屋基破礎宛然 不知何代人居也 於是移東郡民以實之 及使還多以珍木海錯進之 後屢爲風濤 所蕩覆舟 人多物故 因還其居民 本朝太宗時 聞流民逃其島者甚多 再命三陟人金麟雨 爲按撫使 刷出空其地 麟雨言土地沃饒 竹大如杠 鼠大如猫 桃核大於升 凡物稱是 世宗二十年 遣縣人萬戶南顥 卒數百人 往搜逋民盡俘 金丸等七十餘人而還 其地遂空 成宗二年 有告別有三峯島者 乃遣朴宗元往覓之 因風濤不得泊而還 同行一船泊鬱陵島 只取大竹大鰒魚 回啓云 島中無居民矣."(柳馨遠,「江原道 蔚珍縣 山川」,『(修正)東國輿地志』7卷, 1656(奎章閣 古4790-51))

34 송병기,『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132쪽.

35 송병기,『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출판부, 2004, 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지지」를 살펴보니 거기에서 말하기를, '일설에 우산(于山)과 울릉(鬱陵)은 본래 한 섬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여러 『도지』를 살펴보니 두 섬이다. 하나는 왜인이 말하는 송도다. 대체로 두 섬이 모두 우산국에 속한다."[36]

유미림은 신경준이 「여지지」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의 견해로 만들었다고 추정했다. 유미림에 따르면 「여지지」를 유형원의 『동국여지지』로 본다면 '일즉왜소위송도(一則倭所謂松島)'도 유형원의 견해로 보아야 한다. 신경준은 「여지지」의 저자 역시 일설을 수용하지 않고 2도설을 수용하여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이다'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았다. 결국 유미림은 '일설에'부터 '우산국이다'까지 모두 「여지지」의 내용으로 추정했다.

"내가 살펴보니, 「여지지」에 이르기를,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하나 여러 『도지』를 상고해보면 두 섬이다. 하나는 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인데, 대체로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이다'라고 했다."[37]

기존 연구과 사료를 종합하면, 첫째, 『동국여지지』에는 '하나는 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인데, 대체로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이다'이라는 내용이 없다. 둘째, '그러나 『도지』를 상고하면 두 섬이다'이라는 대목은 저자가 자신의 연구를 보강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나 『도지』를 상고하면 두 섬이다. 하나는 왜가 이르는바 송도(松島)인데,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이다"라는 내용은 신경준이 자신의 견해를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다음과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

"내가 살피건대 「여지지」에 이르길, '일설에는 울릉과 우산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한다.' 그러나 『도지』를 상고하면 두 섬이다. 하나는 왜가 이르는바 송도(松島)인데,

---

36 오상학, 「일본측 독도영유권 주장의 비판적 검토: 역사지리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독도연구』 6, 2009, 77-78쪽.

37 유미림,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3, 11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이다."[38]

『동국문헌비고』의 울릉도·우산도의 체제와 내용은 『강계고』와 거의 동일하다.[39] 그런데 『강계고』는 『춘관지』의 안용복 사건의 내용 중 '선(船)', '왈(曰)', '왜(倭)' 등의 몇 개 단어를 제외하고 내용과 구조가 동일하다. 이것은 『강계고』가 『춘관지』에 기초하여 안용복 사건을 기술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결국 신경준은 안용복 사건을 『춘관지』에 기초하여 1756년 『강계고』에 기술했고 1770년에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를 완성할 수 있었다.[40]

송병기에 따르면 신경준은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에서 유형원의 『동국여지지』 중 모호했던 우산도를 송도로 매듭지었다. 송병기는 조선 후기에 우산과 울릉 2도설이 재확인되었고 우산도가 조선 영토라는 인식이 구체화되었다고 하였다. 유형원의 『동국여지지』와 신경준의 『강계고』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국문

---

38 "鬱陵島 鬱一作蔚 一作芋 一作羽 一作武 二島一卽于山 在蔚珍正東海中 與日本之隱岐州相近 三峯岌嶪撐空 南峯稍卑 日淸則峯頭樹木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二日可到 地方百里… 按輿地志云 一說于山欝陵本一島 而考諸圖志 二島也 一則倭所謂松島 而盖二島 俱是于山國也."(申景濬, 「疆界考 4 欝陵島」, 『旅菴全書』 卷7, 1756, 12-13쪽)

39 "安龍福者東萊人也 隸檜軍善日本語 … 舶自東至 龍福目諸人縛之 船人劫不發 龍福獨前憤罵曰 何故犯我境 對曰 本向松島 固當去也 龍福追至松島 又罵曰 松島 卽芋山島爾不聞芋山亦我境乎 麾杖碎其釜 大驚走 … 今不復指欝陵之爲日本地 皆龍福之功也."(申景濬, 「疆界考 4 欝陵島」, 『旅菴全書』 卷7, 1756, 14-15쪽)

40 신경준의 저서 『疆界考』는 『동국문헌비고』의 기초가 되었고, 신경준은 『동국문헌비고』 편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文獻備考 象緯考成. 上親受崇政殿, 賞編輯堂郎有差 上以備考之成, 基於申景濬 疆域志, 特命加資."(『英祖實錄』, 英祖 46年(1770) 閏5月 16日) "庚寅八月初五日辰時, 上御崇政殿月臺. 文獻備考親受入侍時, 行都承旨李潭, 左承旨李在簡, 右承旨具庠, 左副承旨徐浩修, 右副承旨李碩載, 同副承旨柳善養, 假注書金重燮·洪樂淵, 記事官吳鼎源·柳誼, 以次進伏. 上具翼善冠·袞龍袍, 乘輿出資政門, 詣月臺, 降輿殿座, 諸臣進伏. 文獻備考奉安監印堂上洪名漢·李潭, 郎廳尹養厚·洪纘海四拜訖. 上降階親審, 撫其冊曰, 多矣. 潭曰, 四十卷冊, 豈不少乎? 因命諸堂郎陪入大內, 命校書館書吏皆入月廊。書吏輩趨入. 上曰, 工匠皆待令乎? 潭曰, 待令矣. 上曰, 汝輩今番之功, 實多於此處, 受賞膰肉, 送于本院, 汝等卽往索而食之, 可也. 因命書傳敎曰, 今者一事, 此亦有志者事竟成, 三百年來, 海東豈有文獻備考? 初欲爲疆域志, 諸堂朗效誠, 諸工匠竭心, 今秋八月, 晝夜平日, 告厥成功."(『承政院日記』, 英祖 46年(1770) 8月 5日) "上以申景濬, 於文獻備考有功, 命允鈺書傳敎曰, 今番海東文獻備考, 若是成功, 卽諸臣之效功, 而其中功多者, 卽申景濬也, 人君紀功之道, 豈可訖功而遺心乎? 且輿地旣熟, 亦宜試也, 擇善地, 卽爲調用事, 分付銓曹."(『承政院日記』, 英祖 46年(1770) 8月 21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헌비고』는 우산과 울릉은 두 섬으로 하나가 우산도이며, 우산도는 일본이 부르는 송도였다. 이 책은 왕명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조선 정부의 독도 영유 의지를 보여준다.[41] 유미림은 『동국여지지』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일설만 실려 있으므로, 『여지지』가 『동국여지지』를 가리키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유미림에 따르면 신경준은 우산도가 울릉도와 함께 모두 우산국 땅에 속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신경준은 일본이 우산도를 '송도'라고 부른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나아가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우산국에 속하는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유미림에 따르면 『고려사』부터 『강계고』까지 '울릉도' 항목이 주로 '강원도 울진현'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여지고 관방 해방'에 들어가 있다. 이는 울릉도 항목이 초기에는 지리적 관점에서 분류되었다가 후대로 올수록 국방의 관점에서 분류되었음을 의미한다.[42]

그렇다면 신경준이 참고한 『춘관지(春官志)』의 울릉도와 우산도 관련 내용은 무엇인가?

조선은 성리학을 국학으로 채택하여 법치와 더불어 예치를 강조했던 국가다. 『춘관지』는 예조(禮曹)의 법례(法例)와 사례(事例)를 모은 관찬서였다. 이익(李瀷)의 아들인 예조좌랑(禮曹佐郎) 이맹휴는 1774년부터 『춘관지』 편찬에 몰두했고, 1745년(영조 21) 9월 초고를 완성했다. 그 후 이맹휴의 조카 이가환(李家煥)은 1781년(정조 5)에 증보 완성했다. 국가전례서인 『춘관지』는 1770년 『동국문헌비고』「예고(禮考)」의 편찬으로 이어졌다.[43]

대개 이 섬은 대(竹)가 나는 까닭에 죽도(竹島)라 이르고 세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삼봉도

---

41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133 · 270 · 274쪽.

42 유미림,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3, 99 · 117 · 127쪽.

43 김문식, 「춘관지 필사본의 원문 비교」, 『성호학보』 4, 2007; 이현진, 「解題」, 『春官志』,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硏究院, 2013, 7–2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라 하며, 우산(于山)이니 우릉(羽陵)이니 울릉(蔚陵)이니 무릉(武陵)이니 의죽(礒竹)이니 하는 것은 모두가 와음(訛音)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44] 그때 안용복이란 자는 동래인이었다. 전선의 노군에 예속되어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잘했다. … 왜선(倭舶)이 동쪽으로부터 오자, 안용복이 여러 사람에게 눈짓하여 결박하게 하였으나, 뱃사람들이 겁을 먹고 나서지 않았다. 안용복은 혼자 앞으로 나서서 꾸짖기를, "무슨 까닭에 우리 경계를 침범하느냐?" 하니, 왜인은 대답하기를, "본래 송도(松島)로 향하여 가던 길이니 마땅히 가겠다" 했다. 안용복은 뒤따라 송도까지 가서 또 꾸짖기를, "송도는 곧 우산도(芋山島)다. 너희는 우산도가 우리 땅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고, 막대기를 휘둘러 가마솥을 부수어버리니 왜인이 매우 놀라서 달아났다. … 왜인이 지금까지 울릉도를 가리켜 일본의 땅이라 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안용복의 공이다.[45]

결국 『춘관지』는 죽도(竹島), 삼봉도(三峰島), 우산(于山), 우릉(羽陵), 울릉(蔚陵), 무릉(武陵), 의죽(礒竹) 등을 울릉도로 파악했다. 그런데 『춘관지』의 안용복 내용은 『동국문헌비고』와 유사하다. 이것은 신경준이 『춘관지』를 참고하여 안용복 사건을 구성했지만 울릉도와 우산도를 두 섬으로 판단해 『강계고』를 저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울릉도와 우산도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영토해양 인식은 무엇이었을까?

『동국문헌비고』에는 광해군 6년(1614) 일본이 의죽도(礒竹島)의 상황(形止)을

---

44 "鬱陵島在江原道海中 屬蔚珍縣 輿地勝覽曰 一云武陵 一云羽陵 在蔚珍正東海中 三峯岌嶪撐空 南峯稍卑 風日淸明則 峯頭樹木 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則二日可到 一說于山鬱陵 本一島 … 此盖是島以其産竹也 故謂竹島有三峯也 故謂三峯島至於于山 羽陵 蔚陵 武陵 礒竹皆音號轉訛而然也."(李孟休, 「附錄 鬱陵島爭界」, 『春官志』 卷3, 1745年 筆寫本(奎章閣 奎貴963); 李孟休, 『春官志』,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硏究院, 2013, 483-485쪽)

45 "時有安龍福者東萊人也 隷戰船櫓軍自幼善倭 … 倭舶自東至 龍福目諸船人縛之 船人惙不發 龍福獨前憤罵 何故犯我境 倭對曰 本向松島 固當去也 龍福追至松島 又罵曰 松島 卽芋山島爾不聞芋山亦我境乎 摩杖碎其釜 倭大驚走 … 倭至今不復指欝陵爲日本地 皆龍福之功也."(李孟休, 「附錄 鬱陵島爭界」, 『春官志』 卷3, 1745年 筆寫本(奎章閣 奎貴 963); 李孟休, 『春官志』,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硏究院, 2013, 493-49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탐색하려고 하자, 조선 정부는 의죽도가 조선의 울릉도이므로 '경계의 한계선을 침범할 수 없다(知界限之難侵)'라고 명백히 했다.

『동국문헌비고』에 따르면 숙종 19년(1693) 조선 정부는 안용복 사건과 관련하여 "조선의 경내(境)인 울릉도"라는 확고한 영토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조선 정부는 일본이 죽도 사건이라고 한정하려고 하자 '울릉도'가 조선의 경계 안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숙종 20년(1694) 쓰시마 태수 평의신(平義信)은 조선 어민이 일본의 '죽도'에 들어와서 돌려보냈는데, 조선 회답 문서의 '울릉도'를 삭제해줄 것을 조선 정부에 요청했다. 당시 일본은 '죽도'와 '울릉도'가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동국문헌비고』에 따르면 숙종 22년(1696)에 쓰시마 관리(奉行) 평진현(平眞顯)은 '죽도'와 안용복 사건을 조선 정부에 제기했다. 그러자 영의정 남구만은 "강토(疆土)는 조종(祖宗)에서 물려받은 것이니 남에게 줄 수 없다. 울릉도는 고려가 신라에서 얻었고, 조선이 고려에서 얻었으니 원래 일본의 땅이 아니다"라며 조선의 울릉도 소유를 명백히 했다. 그 후 조선 정부는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조사하고, 법(法)으로 정하여 삼척영장과 월송만호가 3년마다 한 번씩 울릉도를 관찰(觀)하게 했다. 법에 따라 조선 정부는 도끼를 제공하여 울릉도의 대나무와 다른 나무를 베었고, 수토관은 울릉도의 토산물(土物)을 채취해서 정부에 증거로 보냈다. 조선 정부는 "조종에서 물려받은 강토"라는 인식 아래 울릉도에 관한 영토의식을 가졌고 법률을 마련하여 수토정책을 실시했다.

『동국문헌비고』에 따르면 숙종 22년(1696)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일본 선박을 만났다. 안용복이 "무슨 까닭에 우리 경계를 침범하느냐?"라고 묻자 일본인이 "본래 송도(松島)로 향하여 가던 길이니 마땅히 가겠다"라고 답했다. 안용복이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강조했고, 일본인이 송도라는 지명으로 독도를 불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안용복은 송도까지 일본인을 추적하여 "송도가 우산도이고, 우산도가 조선 땅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항의했다. 안용복은 송도(松島)가 우산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芋山島)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했다. 『동국문헌비고』는 "왜인이 지금까지 울릉도를 가리켜 일본 땅이라 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안용복의 공이다"라고 기록하여, 안용복 사건 이후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46]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관한 영토의식을 가졌고, 법률을 마련하여 수토정책을 실시했다. 무엇보다도 『동국문헌비고』에 따르면 안용복은 송도가 우산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했다. 이것은 조선이 "조종에서 물려받은 강토"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1770년 이전 이미 울릉도와 독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조선의 영토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Ⅴ. 고종 시대 울릉도와 우산도 인식과 명칭

문헌의 연속성을 살펴보면 『동국문헌비고』는 1770년에 완성되었고, 『증정문헌비고』는 1809년 『동국문헌비고』에 기초하여 '보(補)'로 보완되었고, 『증보문헌비고』는 1908년에 『증정문헌비고(增訂文獻備考)』를 '속(續)'으로 보완했다.

『증정문헌비고』는 1809년(순조 9) 『동국문헌비고』를 보완·편집한 필사본으로 완성되었는데, 『동국문헌비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補)'라는 표시로 새로운 내용이 보강되었다.[47]

---

46 『肅宗實錄』, 肅宗 20年(1694) 8月 14日.

47 "[補] 肅宗二十八年 三陟營將李浚明與倭譯崔再弘 乘船于蔚珍竹邊鎭入鬱陵島 兩晝夜而還獻其圖形及紫丹香靑竹石間朱魚皮等物 [補] 李頤命關東地圖序曰 嶺東沿海舊置浦營烽燧 今其基址尙存 中間以海路異昔寇賊難至今皆廢罷矣 去年平海人漂到日本 而異國船亦漂泊於平海 海路之昔阻 而今通飄風之一棹 而可之從可知矣 豈可以目前之無虞 久撤其藩籬也."(「輿地考 18 關防 6 海防 東海 蔚珍」, 『增訂文獻備考』 卷30, 1809年 筆寫, 14쪽) * 본문 중 蔚珍 于山島 鬱陵島 내용은 『東國文獻備考』와 동일함. ** 關東地圖(奎章閣 古4709-3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증정문헌비고』는 1782년(정조 6) 이만운(李萬運) 등이 왕명을 받아 『동국문헌비고』을 보완하고 수정한 책이다. 이만운이 1790년 1차 편집(20考 246卷)을 완성하고, 1809년 이만운의 아들 이유준(李儒準)이 수정·보완하여 필사본으로 완성했다. 『증정문헌비고』는 물이고(物異考), 궁실고(宮室考), 왕계고(王系考), 씨족고(氏族考), 조빙고(朝聘考), 시호고(諡號考), 예문고(藝文考) 등 7고를 더해 총 20고(考) 235권으로 구성되었다. 1770년(영조 46)을 기점으로, 이전 자료는 '보(補)'로 표시했고, 이후 자료는 '속(續)'으로 표시했다.[48]

『증정문헌비고』는 숙종 28년(1702) 삼척영장 이준명(李浚明)의 울릉도 수토활동, 이이명(李頤命)의 관동지도(關東地圖) 서문도 보강했다. 이것은 안용복 사건 이후 조선의 수토정책이 실시되었으며, 평해(平海)에서 일본으로 해류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대한제국은 1908년 고종 시대까지 포함된 관찬사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를 발간했다. 『증보문헌비고』는 모든 제도와 문물을 16개 분야로 나누어 연대순으로 정리한 백과사전이다.

『증보문헌비고』가 편찬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03년 2월 24일 법무국장 김석규(金錫圭)가 독립국의 위상에 걸맞은 문헌을 간행할 것을 상소하자, 홍문관 안에 '문헌비고찬집소(文獻備考纂輯所)'가 개설되었고, 1908년 7월 1일 16고(考) 250권(卷)으로 연활자로 인쇄되었다. 박용대(朴容大)·조정구(趙鼎九)·김교헌(金敎獻)·김택영(金澤榮)·장지연(張志淵) 등이 찬집을, 박제순(朴齊純) 등이 교정을, 한창수(韓昌洙) 등이 감인(監印)을, 김영한(金榮漢) 등이 인쇄를 담당했다. 1908년 『증보문헌비고』는 황제고(皇帝考)와 교빙고(交聘考)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기존의 20고(考)를 16고(考)로 재정리했다. 대한제국이 청국과 대등한 국가라는 의미에서 '동국(東國)'이라는 글자를 삭제했고, 광무 6년까지 고종 시대 내용을 보강하여 '속

48 鄭求福, 「문헌비고의 자료적 성격과 사학사적 의미」, 『진단학보』 106, 진단학회, 2008, 169–17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續)'으로 표시했다.[49]

『증보문헌비고』는 『동국문헌비고』와 『증정문헌비고』의 울진 우산도와 울릉도 관련 내용을 동일하게 계승했다.

"우산도(于山島) 울릉도(鬱陵島) 동쪽 350리에 있다. 울(鬱)은 울(蔚)이라고도 하고, 우(芋)라고도 하고, 우(羽)라고도 하고, 무(武)라고도 했다. 2개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芋山)이다. 속(續) 지금은 울도군(鬱島郡)으로 되었다."[50]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울(鬱)은 울(蔚), 우(芋), 우(羽), 무(武) 등으로도 불렸다. 대한제국도 1908년 울(鬱)의 다양한 명칭에 대해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대한제국은 우산도와 울릉도 2개의 섬을 구별하고 확정했다. 대한제국은 우산도와 울릉도가 울도군(鬱島郡)에 속한다는 행정 편입 내용까지 기록했다. '속(續)'이라는 용어는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문헌의 역사적 연속성을 보여준다. 대한제국은 우산도와 울릉도의 명칭을 설명하면서 우산도(독도)의 존재를 확정했고,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했다.

결국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증정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는 모두 우산도와 울릉도가 서로 다른 2개의 섬이라고 기록했다. 여기에 『동국문헌비고』, 『증정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는 일본의 명칭인 '죽도'가 '울릉도'이고 '송도'가 '우산도'라고 규정했다. 고종과 이규원은 1882년 4월 7일 대화에서 '울릉도', '우산도', '죽도', '송도' 등을 언급했다. 이러한 사실은 고종이 최소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문헌비고』를 참고하여 우산도와 울릉도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

49 박인호, 「장서각 소장 유서류의 개관과 특성」, 『장서각』 3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4쪽; 鄭求福, 「문헌비고의 자료적 성격과 사학사적 의미」, 『진단학보』 106, 진단학회, 2008, 172쪽.

50 "于山島 鬱陵島 在東三百五十里, 鬱一作蔚, 一作芋, 一作羽 一作武, 二島一卽芋山 '續'今爲鬱島郡."(「輿地考 19 關防 7 海防 東海 蔚珍」, 『增補文獻備考』 卷31, 6쪽) 근대 명칭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김영수, 「근대 독도와 울릉도 명칭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독도와 한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201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런데 고종과 이규원의 울릉도를 포함한 섬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었을까?

고종은 1882년 4월 7일 울릉도에 읍을 설치할 계획으로 울릉도와 주변 섬의 명칭과 위치를 파악하고 상세히 조사할 것을 이규원에게 지시했다. 이것은 이규원이 울릉도=우산도와 송죽도(松竹島)라는 두 섬만 존재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고종은 울릉도 개척을 염두에 두면서 문헌에 나타난 울릉도와 주변 섬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고종은 울릉도 검찰 일정과 준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규원에게 물었다. 이규원은 통리기무아문의 지휘 아래 포군(砲軍) 50명이 동원되어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고종은 울릉도 개척과 경영을 위해 실질적인 경작지 조사도 지시했다. "울릉도는 옛날 읍을 설치한 곳이라 한다. 이번에 읍을 설치함에 있어서 반드시 민생이 풍족한 연후에 개척과 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경작에 적합한 곳을 상세하게 살피도록 하라." 고종은 과거 울릉도의 읍 설치라는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 관찬문헌을 살펴보았음에 틀림없다. 『동국문헌비고』에는 고려 의종대 "현(縣)으로 복구(欲復爲縣)"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은 고종이 『동국문헌비고』를 통해 과거 울릉도의 행정구역 설치를 파악했다는 단서를 알려준다.

무엇보다도 고종은 이규원의 현지보고서에 기초하여 향후 울릉도 개척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서 고종은 이규원에게 울릉도 조사를 마치면 개척을 위한 보고서(書啓)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원은 울릉도가 조선의 강토(祖宗疆土)이므로 일본인을 포함한 타국인의 출입을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51]

고종은 1880년 초반 울릉도의 개척과 경영 방안을 고민했다. 고종은 최소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문헌비고』 등의 관찬문헌을 참고하여 울릉도의 연혁을 이미

51 "조종의 강토를 어찌 타국인(他國人)에게 방기하여 무상하게 왕래하도록 맡겨둘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전력하여 두루 살피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처하겠습니다."(『承政院日記』, 高宗 19年(1882) 4月 7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파악했고 민생과 경작의 연결성을 인식했다. 고종은 과거 울릉도에 읍을 설치하여 섬을 경영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고종은 울릉도 이주정책을 펼치기 위해 검찰관 파견을 지시했다. 고종은 울릉도 경작지 조사를 지시하면서 울릉도의 개척과 경영을 위한 읍의 설치를 구상했다. 그러자 이규원은 울릉도를 '조종의 강토'라고 강조하여 영토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결국 고종은 관찬문헌에 기초하여 조선의 섬을 파악했고, 이규원은 '조종의 강토' 인식을 갖고 섬 문제에 접근했다. 이것은 고종이 조선시대 문헌의 연속성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고종과 이규원이 고유의 역사성에 기초하여 울릉도를 포함한 섬에 대한 수호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VI. 나오며

조선 후기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에 대한 인식은 장한상과 이규원 등의 보고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문헌비고』 등의 관찬문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별되었다. 이규원은 우산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였지만 최소한 독도를 발견하려고 시도했다. 고종은 처음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로 구별했지만 이규원과 대화한 이후 우산도, 송도, 죽도를 구별했다. 결국 1770년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일본의 명칭인 '죽도'가 '울릉도'이고 '송도'가 '우산도'라고 규정되었고, 1908년 『증보문헌비고』에서는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이 구별되었다.

이규원은 1881년 5월 23일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1882년 4월 7일 고종을 알현하고, 4월 10일 서울을 출발했다. 1882년 4월 12일에 원주목에 도착했으며, 4월 20일에 평해군에 도착했다. 1882년 4월 27일 구산포(邱山浦)에서 순풍을 기다렸다. 이규원은 1882년 4월 29일 오전 총 3척의 배를 거느리고 구산포에서 울릉도로 출발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82년 5월 4일(양력 6월 19일) 이규원은 「계초본」과 『울릉도검찰일기』에 "맑은 날 성인봉 주변의 사면을 둘러보았지만 바다와 하늘이 아득할 뿐 한 점의 섬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했다.[52] 이것은 이규원 자신이 직접 독도를 목격하지 못하자, 처음 고종에게 답변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는 이규원이 독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규원이 자신의 기록에서 울릉도 주변 섬, 즉 독도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규원은 주변에 새로운 섬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고 그 섬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울릉도 정상 성인봉에 올라 주변을 살펴보면서 울릉도 주변의 섬, 즉 독도를 발견하려고 시도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규원의 인식과 행동을 주목한다면 결국 이규원은 독도를 찾으려 했지만 직접 관찰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882년 6월 5일 고종은 사관(史官)을 좌우에 앉게 하고 검찰사 이규원을 소견(召見)했다. 고종은 이 자리에서 이규원에게 서계(書啓)와 별단(別單) 그리고 지도(地圖)를 보았다고 말했다.[53]

이규원은 서울에 도착하여 울릉도의 계본(啓本)과 함께 그림도 제출했다. 그는 섬 지형의 험하고 평탄함, 산세의 기복은 그림으로 그렸고, 토지의 비옥함과 척박함, 백성이 살 만한 곳, 섬의 산물, 조류 등을 일일이 구별하여 기록했다.

이규원은 정박 항구의 부족, 전복과 약초 채취와 재배, 배의 건조 등 울릉도의 상황을 보고했다. 이규원은 울릉도 나리동 중심의 개척이 가능하다고 보고하면서 울릉도 개간과 토지 허용을 요청했고, 울릉도에 시장을 형성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고를 채워야 예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

52 동북아역사재단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울릉도에서 독도를 관측한 결과 독도의 모습을 55회 촬영할 수 있었다. 독도는 찬바람이 부는 9~11월 사이 가을에 잘 보였다(홍성근 편, 『독도! 울릉도에서는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2010, 16~30쪽). 이규원은 여름인 양력 6월 19일 울릉도에서 관찰했기 때문에 독도를 직접 보기가 어려웠다.

53 "6월 초4일에는 私禮로 復命하였으나 초5일에는 公禮로 복명 … 書啓與別單 … 地圖도 역시 보았는데 …."(李奎遠, 光緒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향후 이규원의 검찰 보고서와 면담을 통해서 고종은 울릉도 개척을 단계적으로 실시했다. 울릉도에서 불법벌목을 일삼는 일본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울릉도 관련 행정제도 신설, 울릉도로 이주할 백성의 모집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규원과 이명우의 울릉도 조사와 조선 정부의 울릉도 이주정책

Ⅰ. 들어가며

기존 연구 중 김호동, 송병기, 신용하 등은 이규원 검찰사의 활동을 추적하면서 고종 시기 조선의 울릉도 개척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2010년대 기존 연구는 조선의 영토와 해양 인식, 김옥균 등의 관련 인물 연구, 1880년대 울릉도 벌목과 어업 연구로 발전했다. 기존 연구는 울릉도 검찰사 활동 전후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벌목, 조선의 울릉도 개척 이유, 울릉도 불법벌목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 등을 주목했다.[1]

박은숙은 1882년 조선의 울릉도 개척 과정 및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활동을 상세히 추적했다. 고종은 1882년 6월 5일 울릉도에 읍진을 설치하고 백성들을 입주시켜 울릉도를 개척하려 했다. 이것은 울릉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확고히 함으로써 조선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려 한 것으로, 영토·영해에 대한 강력한 수호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그 후 조선 정부는 울릉도 개척 방안과 정책을 실시했다. 1882년 8월 조선 정부는 백성의 이주와 울릉도 개척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1883년 4월 울릉도에 30여 명의 주민을 이주시켰고, 그 결과 1883년 7월에는 16호 54명이

1 김영수, 「고종과 이규원의 울릉도와 독도 위치와 명칭에 관한 인식 과정」, 『사림』 63호, 2018, 37-4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울릉도에 정착했다.[2]

기존 연구는 대체로 조선의 울릉도 정책과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인을 중심으로 울릉도 불법벌목과 어업에 관한 연구가 일본 자료에 기초하여 수행되고 있다.

박병섭은 1878–1883년 울릉도에서 일본 해군 및 야마구치현(山口縣) 어민의 불법벌목과 어업활동을 추적했다. 박병섭은 1884년 야마구치 현청 관리 야마모토 오사미(山本修身)의 문서를 발굴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벌목을 기록했다. 그는 또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벌목 과정을 조사하고 이규원(李奎遠)의 심문을 받은 일본인의 명단을 조사했다.

박병섭에 따르면 1877년 주러 일본공사 해군중장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는 러시아로 도항하던 중 울릉도를 발견했다. 에노모토의 처남 하야시 신지로(林神二郎), 도쿄부 평민 치카마쓰 마쓰지로(近松松二郎) 등이 도항을 발의했다. 1878년 치카마쓰는 먼저 시험적으로 기선 다카오무라(高尾丸)에 승선하여 울릉도로 건너갔다가 일단 귀국한 뒤, 1879년에 다시 도항하여 울릉도에서 벌목·어렵에 종사했다. 야마모토 오사미에 따르면 치카마쓰는 1880년 도쿄 재벌 오쿠라 구미(大倉組)와 짜고 자금을 출자했고, 일본의 인부와 직공 등이 군함 이와키(磐城)호를 타고 울릉도로 도항했다. 해군중장 에노모토는 이와키호의 함장 다키노(瀧野)에게 군함 이용을 부탁했다. 1881년 10월 일본인의 벌목사업은 일시 중단되었고, 인부 등은 해군성의 용선 가이소마루(廻漕丸)에 벌채한 목재를 싣고 귀환했다.[3]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울릉도 조사 전후 이규원의 행적,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활

---

2 박은숙, 「동남제도 개척사 김옥균의 활동과 영토 영해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36, 2012, 102쪽.

3 山本修身, 明治十七年(1884), 「復命書」, 『蔚陵島日件錄』(山口縣文書館: 行政文書戰前A土木 25); 박병섭, 「한말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연구』 35, 2010, 203–204쪽.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는 1874년 해군중장 겸 러시아특명전권공사, 1875년 사할린 쿠릴열도 교환조약 체결, 1879년 11월 외무대보 및 의정관, 1879년 4월 지학협회 부회장, 1880년 2월 해군경을 겸임했다(박병섭, 「한말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연구』 35, 2010, 207–20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 등을 꼼꼼하게 고찰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고종이 검찰사 이규원의 임명 이후 비밀명령(密旨)을 내려서 전 흡곡현령(歙谷縣令) 이명우(李明宇)를 울릉도에 파견한 내용을 추적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이규원과 이명우의 울릉도 조사를 동시에 살펴보면서 이규원의 일본인 심문 및 송도와 죽도의 명칭 문제, 고종의 울릉도 개척과 조선의 울릉도 관할 등의 연속성을 주목할 것이다.

II. 고종의 울릉도 검찰관 파견과 활동

1. 이규원의 울릉도 조사와 활동

1880년대 초 일본인은 울릉도를 불법적으로 왕래하면서 울릉도 삼림을 벌목하고 자국의 영토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자 1881년 5월 22일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은 강원감사(江原監司) 임한수(林翰洙)의 보고서(狀啓)에 근거하여, 일본 선박이 울릉도를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일본인이 울릉도에서 나무를 벌목하여 원산과 부산으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부호군(副護軍)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檢察使)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여 승인받았다.[4]

이규원의 임명과 동시에 조선 정부는 외교적인 항의를 일본 정부에 전개했다. 예조판서(禮曹判書) 심순택(沈舜澤)은 1881년 6월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벌목에 항의하는 문서를 일본 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에게 보냈다.

심순택은 울릉도의 영토가 "숙종 19년 (1693, 癸酉)에 일본인이 섬의 이름을 착인(錯認)한 일로 여러 차례 문서가 왕복하다가 마침내 귀정(歸正)"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순택은 일본 정부가 "그 섬에 들어가서 고기잡이하는 일을 영구히 허가하지

4 『高宗實錄』, 高宗 18年(1881) 5月 22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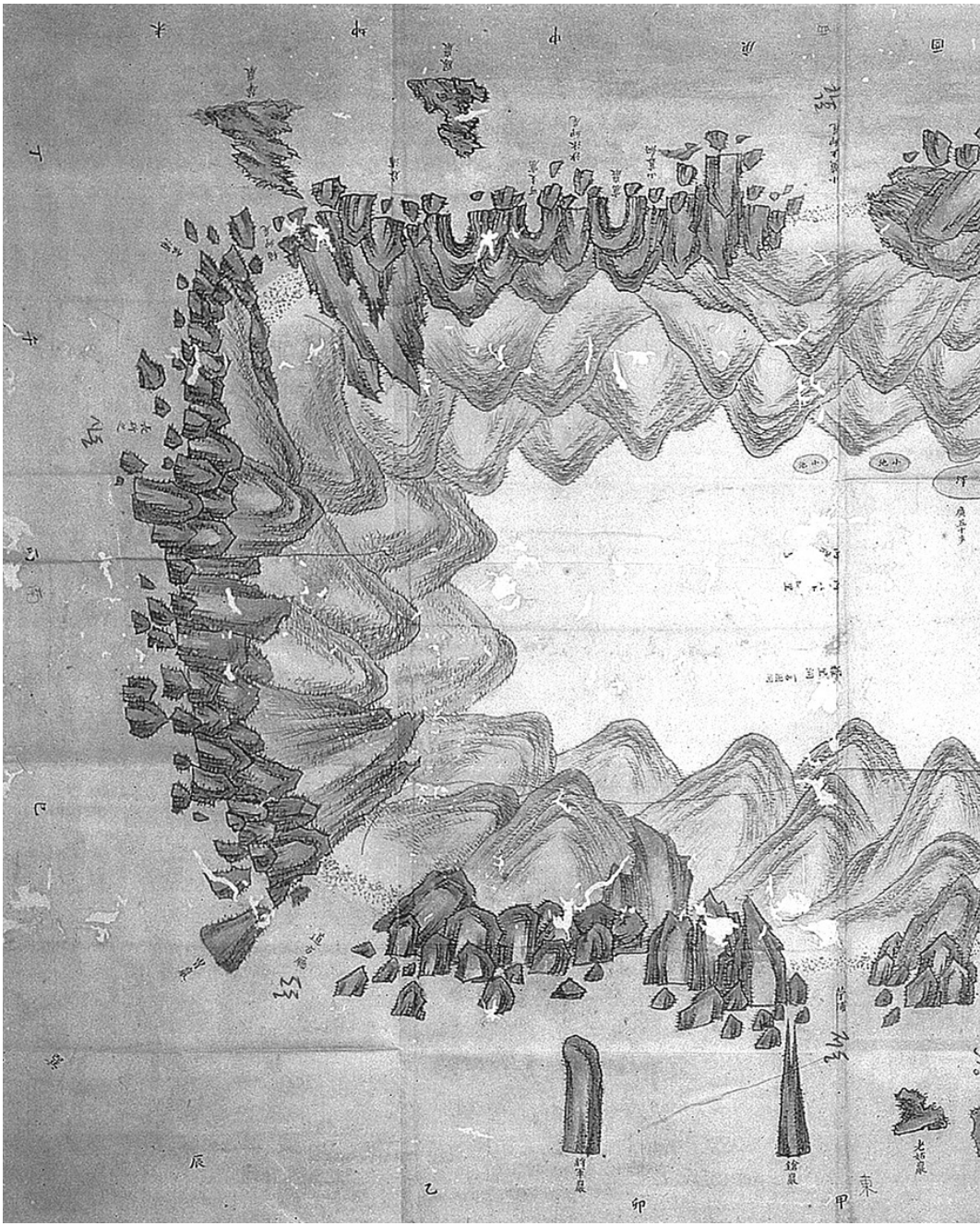

을릉도 외도(규장각 소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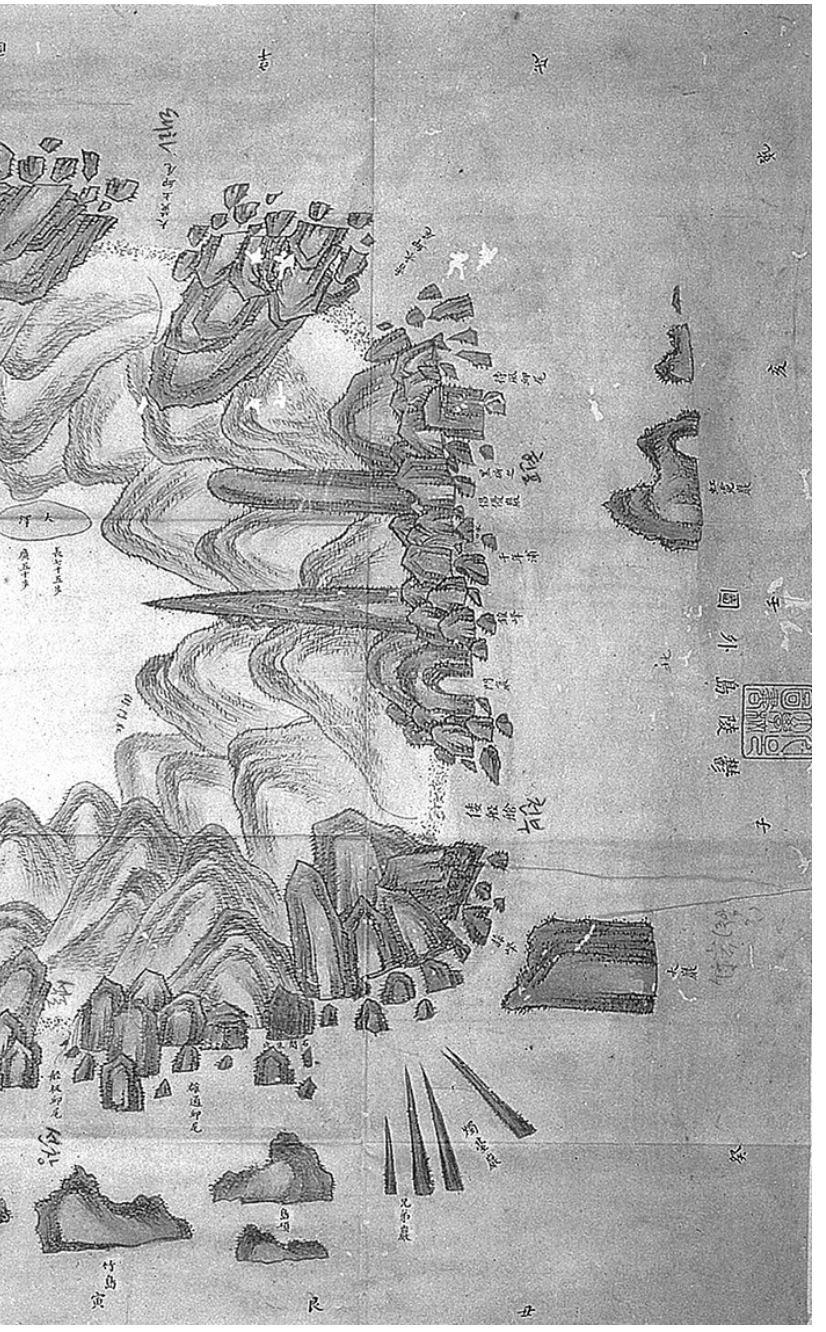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않겠다는 문서가 아직도 장고(掌故)에 실려 있다"라고 주장했다.

심순택은 울릉도가 "삼한(三韓) 때부터 본국에 소속"되었고, "토지와 물산이 본국의 여도(輿圖)에 상세히 실려 있다"라고 주장했다. 심순택은 조선에서 울릉도가 삼한부터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심순택은 조선이 수토관을 해마다 울릉도에 파견한 이유를 "옛 번폐(藩蔽, 울타리)를 중히 여기고 강계(疆界)를 튼튼하게 하는 도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린(交隣)에는 성신(誠信)이 소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가 "변금(邊禁)을 엄히 신칙"할 것을 요구했다.[5] 심순택은 일본 정부 측에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불법행동을 금지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일본 외무경대리(外務卿代理)이자 외무차관(外務大輔)인 우에노 가게노리(上野景範)는 1881년 8월 20일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예조판서 심순택에게 보냈다.

우에노는 일본이 울릉도에서 어채(魚採)하는 것은 "경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제(禁制)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도리에 어긋난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우에노는 "곧바로 사실을 조사하여 양국의 후호(厚好)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성실한 조사를 실시하여 한일 양국의 우호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6]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는 별책(別冊) 「죽도판도소속고(竹島版圖所屬考)」에 근거하여 울릉도를 파악했다. 그는 일본인이 울릉도를 "죽도(竹島), 일명 송도(松

---

5 『日本外交文書』(14), 10事項, 160號, 明治 14年(1881) 8月 27日, 「朝鮮國蔚陵島へ我國民入往魚採候儀ニ付上申ノ件」, 外務卿代理 上野景範外務大輔→三條太政大臣宛; 송병기,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 2004, 156-167쪽. 박은숙에 따르면 1881년 6월 조선 정부는 일본 외무성에 서계를 보내어 일본인의 울릉도 입경과 어채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1881년 7월 사실 조사를 약속했고, 10월에 자국민을 철귀시키고 금지하겠다는 답변 문서를 보냈다. 이로써 일본인은 울릉도 벌목과 어채의 불법성을 자인했다(박은숙,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활동과 영토 영해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36, 2012, 99쪽).

6 『日本外交文書』(14), 10事項, 160號, 明治 14年(1881) 8月 20日, 「朝鮮國蔚陵島へ我國民入往魚採候儀ニ付上申ノ件 附屬書 二」, 日本外務卿代理 上野景範 外務大輔→禮曹判書 沈舜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島)"라고 불렀다고 하면서 울릉도를 '송도'라는 용어로 사용했다. 이노우에는 일본인이 울릉도에 "도항하여 어채하는 자가 왕왕 있었지만 차차 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노우에는 "빠른 시일 안에 조선의 의심을 없애는 것이 오늘날 조선에 대한 우리의 교제 방침상 필요한 절차"라고 인식했다. 이노우에는 울릉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고, 일본인의 울릉도 어채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노우에는 일본인의 울릉도 철수를 "교제 방침상 필요한 절차"라며 한일 양국의 외교 문제로 인식했다.[7]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는 1881년 10월 7일 조선 정부에 보내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1881년 11월 조선 정부에 보냈다. 이노우에는 일본 정부가 조사한 결과 울릉도에 일본인이 거주했지만 현재는 모두 철수했다고 했다. 이노우에 가오루는 "변민이 법규에 어두워 번뜻하면 잘못을 답습하는데 이 뒤로는 다시 금령을 신칙하여 양국의 신의를 돈독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초안을 작성했다.[8] 결국 일본 정부는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답변했다.

경리사(經理事) 이재면(李載冕)은 1881년 12월 4일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을 "철수하게 돌아가게 하고 특별히 금령을 신칙하겠다"라는 일본 정부의 답변서를 받았다며 일본 외무성 2등속(外務二等屬) 소에다(副田節)에게 문서를 전달했다. 그 내용에 "울릉도에서 작벌을 금하는 것이 조선의 성전(成典)"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선 정부가 울릉도의 삼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법으로 벌목을 금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9]

---

7 『日本外交文書』(14), 10事項, 161號, 明治 14年(1881) 10月 7日, 「朝鮮國蔚陵島ノ儀ニ付朝鮮政府ヘ送翰ノ儀上申ノ件, 井上外務卿→三條太政大臣宛. 일본 외무성 직원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는 『죽도고증(竹島考證)』을 작성하면서 간단히 요약한 「죽도판도소속고(竹島版圖所屬考)」라는 제목으로 1881년(고종 18) 양력 8월 20일에 일본 외무성에 제출했다. 일본 외무성은 1881년 10월 7일 조선국 울릉도에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할 것을 상신하면서 「죽도판도소속고」를 부속서로 첨부했다(김호동, 「竹島考證의 사료 왜곡」, 『일본문화학보』 40, 2009, 329-330쪽).

8 『日本外交文書』(14), 10事項, 161號, 明治 14年(1881) 10月 7日, 「朝鮮國蔚陵島ノ儀ニ付朝鮮政府ヘ送翰ノ儀上申ノ件 附屬書 一」, 井上馨外務卿→禮曹判書 沈舜澤.

9 "울릉도에서 작벌을 금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전(成典)인데, 일본 정부가 사핵하여 철수하여 돌아가게 하고 특별히 금령을 신칙하여 신의가 득실합니다."(『日本外交文書』(14), 10事項, 161號, 辛巳(188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규원[10]은 1881년 5월 23일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되었다.[11] 그런데 이규원은 배로 울릉도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놓쳐 1882년 4월에야 울릉도를 조사할 수 있었다.[12] 이규원은 1882년 4월 7일 고종을 알현한 뒤 4월 10일에 서울을 출발했다.[13] 1882년 4월 12일에 원주목, 4월 20일에 평해군에 도착했다. 서울에서 출발한 지 보름이 지나서야 이규원은 1882년 4월 27일 구산포에서 순풍을 기다릴 수 있었다.[14]

이규원은 상선(上船)으로 간성(杆城) 배, 종선(從船)으로 강릉(江陵)과 양양(襄

12月 4日, 「朝鮮國蔚陵島ノ儀ニ付朝鮮政府へ送翰ノ儀上申ノ件 附屬書 一」, 經理事 李載冕→外務二等屬 副田節)

10 1833–1901년. 강원도 금화군 출생. 1851년 신해(辛亥) 정시(庭試) 무과(武科) 급제(『무보(武譜)』(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1741]); 이혜은·이형근, 『만은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130–133쪽. 단천부사(端川府使)(『高宗實錄』, 高宗 8年(1871) 10月 28日); 통진부사(通津府使)(『高宗實錄』, 高宗 13年(1876) 1月 13日);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高宗實錄』, 高宗 19年(1882) 7月28日); 어영대장(御營大將)(『高宗實錄』, 高宗 19年(1882) 9月 24日); 총융사(總戎使)(『高宗實錄』, 高宗 20年 6月 22日); 해방사무총판(海防事務總辦)(『高宗實錄』, 高宗 21年 10月 20日); 동남개척사(東南開拓使)(『高宗實錄』, 高宗 21年(1884) 12月 17日); 함경남도 병마절도사(咸鏡南道兵馬節度使)(『高宗實錄』, 高宗 25年(1888) 8月 16日); 제주목사(濟州牧使)(『高宗實錄』, 高宗 28年(1891) 8月 1日); 군무아문대신(軍務衙門大臣)(『高宗實錄』, 高宗 31年(1894) 7月 15日); 경성부관찰사(鏡城府觀察使)(『高宗實錄』, 高宗 32年(1895) 5月 29日);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高宗實錄』, 고종 33年(1896) 7月 17日);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高宗實錄』, 高宗 36年(1899) 7月 27日); 함경북도 관찰사(咸鏡北道觀察使)(『高宗實錄』, 高宗 37年(1900) 7月 19日). "제주목사(濟州牧使) 이규원(李奎遠)이 이제 임기가 다 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성과 업적이 크게 드러나 백성들이 그가 떠나는 것을 애석해할 뿐 아니라 지금 진휼하는 정사가 한창 급하니 이런 때에 교체하는 것은 더욱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의 임기에 한하여 특별히 더 잉임(仍任)시켜 성과를 이루도록 책려(責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高宗實錄』, 高宗 31年(1894) 2月3日).

11 "臣於辛己五月二十三日 猥荷鬱陵島檢察之 命."(李奎遠, 光緖八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이규원의 「啓草本」과 『鬱陵島檢察日記』의 원본은 국립제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이혜은·이형근, 『만은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217쪽; 국립제주박물관 편, 『察理使 李奎遠』, 통천문화사, 2004).

12 박성준, 「1880년대 조선의 울릉도 벌목 계약 체결과 벌목권을 둘러싼 각국과의 갈등」, 『동북아역사논총』 43, 2014, 120쪽.

13 李奎遠, 光緖八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14 "초10일에 길을 떠나 12일에 原州牧에 이르러 하루를 머물고 20일에 平海郡에 도착하여 6일을 묵으면서 바다를 건너갈 선박과 땔나무·물·양식·찬 등속을 준비하도록 단속하여 27일에 읍에서 10리쯤 거리에 있는 邱山浦에 가서 순풍을 기다렸습니다. 29일에 비로소 순풍을 맞이하여…."(李奎遠, 光緖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陽) 배를 준비시켰고, 1882년 4월 29일 오전(辰時-巳時)에 총 3척으로 구산포에서 울릉도를 향해 출발했다.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을 수행한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중추부도사(中樞府都事) 심의완(沈宜琓), 군관(軍官) 출신 서상학(徐相鶴), 전(前)수문장(守門將) 고종팔(高宗八), 차비대령화원(差備待令畵員) 유연호(劉淵祜), 영리(營吏) 장병규(張秉奎), 영리 손영태(孫永泰), 영리 이두선(李斗善) 등이었다. 그중 장병규는 울진(蔚珍)에서 출항할 때 계본(啓本)을 작성했으며, 손영태는 평해(平海)에 돌아와서 계본을 작성했고, 이두선은 평창(平昌)에서 별단(別單)을 작성했다.

총인원은 주요 인물 및 관속과 사공 등 82명, 포수(砲手) 20명 등이었다.

이규원은 사격(沙格, 사공과 격수) 17명, 포수(砲手) 6명, 취수(吹手) 2명, 석수(石手) 1명, 도척(刀尺) 1명, 영리(營吏) 1명과 서울에서 내려온 10명을 상선(上船) 1척에 탑승시켰다. 사군(沙格), 포군(砲軍), 노군(櫓軍) 등을 종선(從船) 2척에 탑승시켰다.[15]

이규원은 1882년 4월 29일 구산포에서 울릉도까지의 항해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규원은 10시경(巳時量) 장계와 등보를 모두 급히 보고하고 3척의 배를 함께 출발시켰는데, 동해에서 거친 바람과 파도를 만나 고생한 일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바다 가운데 이르렀는데 바람이 약해지고 역류가 흘러 배가 잘 나가지 못했다. 석양에 동풍이 조금 일었다. 밤새도록 배를 몰았는데, 바다색이 하늘과 접하여 사방에 한 점의 산도 보이지 않고 회오리바람에 3척의 배가 대해에서 낙엽처럼 떠돌았다. 한밤에는 안개로 방향을 잃고 파도가 솟구쳐서 배의 앞 돛이 흔들려 배 안의 사람들이 놀라 움직였다. 밤이 지나도록 망망대해에서 향하는 곳을 도무지 모르겠다. 이내 바

---

15 "中樞府都事 臣 沈宜琓, 軍官出身 臣 徐相鶴, 前守門將 臣 高宗八, 差備待令畵員 臣 劉淵祜 및 관속 사공 등 82명, 砲手 20명과 더불어 세 배에 나누어 타고 당일 辰時쯤 배를 출발시켰습니다."(李奎遠, 光緖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상선(上船)에는 사공과 격수 17명, 포수 6명, 취수 2명, 석수 1명, 도척 1명, 영리 1명과 서울에서 내려온 상하 인원 10명을 태웠다." "종선(從船)에는 사공, 격군, 포군, 노군을 나누어서 태웠다."(李奎遠, 1882. 4. 28, 『鬱陵島檢察日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람을 따라 동쪽으로 향했다."

이규원은 1882년 4월 30일 정오 무렵 멀리서 울릉도의 형상을 볼 수 있었고, 상선(上船)은 곧바로 동북북으로 향하여 순풍을 타고 화살같이 빨리 달릴 수 있었다.[16]

이규원은 1882년 4월 30일 저녁(酉時, 오후 6시경) 울릉도 서쪽 소황토구미(小黃土邱尾, 현재 학포)에 도착했는데,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17]

"사흘 낮과 밤을 물길로 왔으니 대략 1,600-1,700리는 될 듯했다. 밤중에 풍랑이 갑자기 일어 배가 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에 배에 남아 있던 일행도 모두 상륙하려고 소동이 일어났다. 이튿날 새벽 포구를 살펴보니 남쪽 방향의 서쪽으로 좌우의 돌산이 해변으로 약간 돌출해 있었다. 겨우 배 몇 척을 정박시킬 만한데, 만약 서풍이 크게 일면 배가 반드시 손상될 형세였다."[18]

이규원은 5월 2일 아침 산을 올라 대황토구미(大黃土邱尾, 현재 태하)에 도착하여, 본격적으로 울릉도를 조사했다.[19] 이규원은 먼저 아침에 산제(山祭)를 지내고 서북쪽 곡태령(谷太嶺)을 넘어 대황토구미에 이르렀다.

이규원에 따르면 노변에는 넓은 돌로 덮개를 씌우고 그 전후좌우를 작은 돌로 받친 것이 있었는데, 이곳은 옛날 석장(石葬)하던 장소였다. 이날 지나온 험한 산길은 거의 30리 정도였다. 고개가 아주 높아서 올라갈 때엔 얼굴이 부딪히고 내려올 때엔 뒷머리가 부딪힐 정도였다. 이규원은 수목이 하늘을 가려서 길이 가는 실처럼 보였고, 해가 저물고 산바람이 점점 축축해지자 초막에서 묵었다.[20]

---

16 李奎遠, 1882. 4. 29,『鬱陵島檢察日記』. 辰時는 오전 7-9시 사이, 辰時-巳時는 9-11시다. 十二時의 여섯째 시이므로,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다. 二十四時의 열한 번째 시이므로, 오전 9시 반부터 오전 10시 반까지다.

17 李奎遠, 光緖 8年(1882) 壬午 六月,「啓草本」; 李奎遠, 1882. 4. 30,『鬱陵島檢察日記』.

18 李奎遠, 1882. 4. 30,『鬱陵島檢察日記』. "풍파가 일어났다. … 이날 바다에서 구름이 사방으로 일어 풍랑이 거세었다. 섬 가에서 느끼는 감회가 갑절로 처연했다."(李奎遠, 1882. 5. 1,『鬱陵島檢察日記』)

19 李奎遠, 光緖 8年(1882) 壬午 六月,「啓草本」; 李奎遠, 1882. 5. 2,『鬱陵島檢察日記』.

20 李奎遠, 1882. 5. 2,『鬱陵島檢察日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규원은 5월 3일 흑작지(黑斫支, 현재 현포)에 걸어서 도착하여 창우암(倡優岩)과 촉대암(燭臺岩)을 발견했다. 이규원은 배를 타서 천년포(千年浦, 현재 현포와 천부 사이)에서 추봉(錐峯)을 발견하고 왜선창포(倭船艙浦, 현재 천부)에 도착했다.

이규원에 따르면 3일 산신당에 제사를 지낸 후 고개를 넘고 숲을 헤치면서 흑작지(黑斫支)에 도착했다. 갯가에 내려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전진하니 창우암이 있었다. 창우암은 높이가 수천 척이고, 꼭대기에는 위아래로 크고 작은 구멍이 있고, 그 곁에는 나란히 높이가 수천 길이인 촉대암이 있었다. 배를 타고 계속 가서 천년포에 도달해 추봉을 목격했다. 추봉은 하늘 높이 솟아 높이가 수천 길이고 형상이 송곳과 같았다. 추봉 아래 큰 구멍이 뚫려 모양이 성문 같은 큰 바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래로 작은 시내가 흘러내렸다. 대한(大旱)에도 마르지 않아 나리동(羅里洞)에서 지하로 흐르는 물이 뿜어 나오는 곳이었다.

이규원은 5월 3일 다시 걸어서 나리동(羅里洞)에 도착했는데,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천년포를 거쳐 왜선창포에 도착한 다음, 제일 아래에 하나의 고개가 있으니 이름이 홍문가(紅門街)였다. 이 고개를 넘어 들어가니 울릉도의 중심인 나리동이었다. 나리동은 오방(午方)을 향하여 형국이 열려 있고 수목이 하늘에 높이 솟았고 바라보니 평탄한 지형이었다. 길이는 10리가 넘고 너비는 8-9리나 되며, 여러 산봉우리로 둘러싸여 첩첩이 서 있는 봉우리는 천연의 성곽을 이루었다.[21] 나리동이 정남쪽으로 펼쳐져 있고, 아름드리나무가 하늘을 덮고 해를 가려 끝이 보이지 않았다. 땅은 평탄한데 길이가 10리, 너비가 10리, 둘레가 거의 40리 정도였다.[22]

이규원은 1882년 5월 4일 성인봉(聖人峰)을 거쳐 저포(苧浦, 현재 저동)에 도착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 4일 산신당에 기도를 올린 후 등나무와 칡넝쿨을 잡고

---

21 李奎遠, 光緒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李奎遠, 1882. 5. 3, 『鬱陵島檢察日記』.

22 李奎遠, 1882. 5. 3, 『鬱陵島檢察日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변(東邊) 최고봉인 성인봉에 올랐다.

이규원은 「계초본」에 "사면(四面)을 바라보니 바다와 하늘이 아득하여, 다른 한 점의 섬도 없고 다만 열넷의 봉우리만이 우뚝 솟아 나리동을 둘러싸고 있는데, 과연 하늘이 감추어둔 별천지였다"라며 성인봉의 주변 풍경을 기록했다. 이규원은 산등성이 작은 길을 따라 내려오니 돌길이 중단되고 발을 디딜 곳이 없어서 엎드려 서로 이끌면서 여러 가지 줄을 잡으며 저포에 도착할 수 있었다.[23]

이규원은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방을 바라보니 바다에는 한 점의 섬도 보이지 않았다. '산꼭대기는 해에 비켜 접하고 높은 봉우리는 반쯤 하늘을 향해 있다'라는 시구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성인봉의 모습을 기록했다.[24]

그런데 이규원은 5월 9일 바다 풍경에 대해 "바다구름이 엷게 덮이고 산바람이 축축하였다"라고 묘사했는데, 이규원이 방문한 시기는 바다안개, 즉 해무(海霧)가 많은 시기였다. 이것은 독도를 관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울릉도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25]

결국 이규원은 1882년 5월 4일 「계초본」과 『울릉도검찰일기』에 맑은 날 성인봉 주변의 사면을 둘러보았지만 바다와 하늘이 아득할 뿐 한 점의 섬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이것은 이규원이 직접 독도를 목격하지 못하자, 처음 고종에게 답변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술된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이규원이 독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규원이 울릉도 주변 우산, 즉 독도를 찾아보려고

---

23 "四面憑眺 海天茫茫 更無一點島嶼 但見十四諸峰 屹然列立 環抱羅里一洞 果是天藏別界也."(李奎遠, 光緒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24 "登第一層 四望 海中都無一點島嶼之見形矣 絶頂橫臨日 高峰半向天之詩句 正以此謂也."(李奎遠, 1882. 5. 4, 『鬱陵島檢察日記』)

25 李奎遠, 1882. 5. 9, 『鬱陵島檢察日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고종은 1882년 4월 7일 "송죽도와 우산도는 울릉도 옆에 있다" 또는 "송도와 죽도라고도 칭하여 우산도와 함께 이 3개 섬을 울릉도라고 통칭한다"라고 이규원을 압박했다. 그래서 이규원은 울릉도 주변 2-3개 섬을 찾아야만 했다.[26] 이규원은 울릉도 정상 성인봉에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우산, 즉 독도를 발견하려고 시도했지만 찾지 못했을 뿐이다. 여기서 이규원의 독도 인식의 측면을 고려하면서 이규원이 독도를 찾아보려고 한 행동을 주목해야 한다.

이규원은 1882년 5월 6일 장작지포(長斫之浦, 현재 사동)에서 통구미포(桶邱尾浦, 현재 통구미)로 가는 길의 험난한 상황에 대해 묘사했다.

6일 날씨가 맑았지만, 이규원은 이른 아침에 가는 비와 바다안개를 만났다. 그는 아침을 먹고 큰 고개를 넘었는데 수목이 우거지고 낙엽이 쌓여 무릎까지 빠졌고, 수풀을 헤쳐 나가야 했다.

중봉(中峯)에 이르자 길의 형체도 안 보이고 끊겼다. 대숲 속으로 들어가 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눈 먼 뱀이 갈대밭에 들어간 꼴이었다. 간신히 숲을 나와서 나무를 붙잡고 더듬거리며 천천히 내려가니 통구미산 기슭에 도착했다.[27]

이규원은 5월 7-8일 곡포(谷浦, 현재 남양)를 거쳐 소황토구미에 도착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7일 서쪽으로 향해 세 고개를 넘고 세 냇물을 건너서 점점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니, 지명은 곡포였다. 산길이 험난하고 해가 저물어 암혈 사이에서 노숙했다.[28]

---

26 『承政院日記』, 高宗 19年(1882) 4月 7日. 만약 이규원이 독도를 발견했다면 독도까지 검찰을 가야만 했을 것이다. 이규원은 5월 4일 저포(苧浦, 대포와 소포로 구성)에서 쟁암(錚岩)을 발견했다. 대포(大浦)의 동남쪽 바다 가운데에 쟁암이 있는데 높이가 수백여 장(丈)이며, 대포와 소포가 합하여 하나의 포구를 형성했다."(李奎遠, 1882. 5. 4, 『鬱陵島檢察日記』)

27 "겨우겨우 내려와서 통구미포 안에 흐르는 물가 암석 옆에 다다르자 다리 힘은 다 풀리고 뱃속도 불편하여 부득이 숙소를 정했다."(李奎遠, 1882. 5. 6, 『鬱陵島檢察日記』)

28 李奎遠, 光緒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李奎遠, 1882. 5. 7, 『鬱陵島檢察日記』. "이른 아침에 동풍이 서서히 불고 파랑이 일었다. 조반 후 출발하여 서쪽으로 향했다. 서쪽 산에 올라서 고사리를 캐려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일 이규원은 바위 사이의 작은 길을 따라 갔고, 고개를 넘고 개울을 건너 30리를 가서 소황토구미에 도착했다. 그는 석수(石手)를 시켜 섬 이름을 석벽 에 새기게 했으며, 날이 저물어 초막에서 유숙했다.[29] 이규원은 소황토구미에 도착하여 "울릉도(蔚陵島) 검찰사(檢察使) 이규원, 임오(壬午) 5월(月), 고종팔(高宗八)"이라는 각석문을 석벽에 남겼다.

이규원은 울릉도 육로 탐사를 마치고 해안 탐사를 시작했다. 5월 9일 배를 타고 향목구미(香木邱尾)→대황토구미(태하)→대풍구미(待風邱尾)→흑작지(현포)→왜선창(倭船艙, 천부)→선판구미(船板邱尾, 선창)→도항(島項, 관음도)→죽도(竹島, 죽서도, 대섬)를 시찰했다. 이규원은 천부(왜선창)부터 선창(선판구미)까지 가는 길에 죽암(竹岩), 형제암(兄弟岩), 촉대암(燭臺岩)을 발견했다.

이규원에 따르면 9일 작은 배를 타고 서쪽으로 10여 리를 가서 향목구미에 이르렀는데, 가파른 형형색색의 석벽(石壁)을 목격했다. 배는 천천히 대황토구미→대풍구미→흑작지→왜선창 등의 포구를 지났다. 산봉(蒜峰)의 형태는 마늘모와 같았고, 큰 바위가 우뚝 솟아 하늘을 찌르는 듯하고 폭포가 층층으로 바다에 떨어지는 모양이었다. 한 뿌리에 머리가 둘인 바위가 수백 길로 기립(起立)한 모양이 특이했고, 형제암이 짝을 이루어 서로 바라보고, 촉대암이 둥근 형체로 깎여서 튀어나와 있었다.

이규원은 선판구미에서 남변(南邊) 바다 가운데 대나무가 무성한 작은 섬을 목격했다. 모양이 누워 있는 소와 같으며 좌우로 돌면서 서로 안을 듯한 형태인데, 하나는 죽도(竹島, 대섬)이고, 또 하나는 도항(관음도)이었다. 해가 저물자 육지에 내려 대나

했지만, 고사리는 없고 죽대 뿌리만 있어 그것을 캐서 움켜쥐고 걸었다. 험한 고개를 세 번 넘고, 물을 세 번 건너니, 산은 깎아지른 듯하고 숲은 우거져서 붓으로 쓰기 어려울 지경이었다."(李奎遠, 1882. 5. 7, 『鬱陵島檢察日記』)

29 李奎遠, 光緖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李奎遠, 1882. 5. 8, 『鬱陵島檢察日記』. 『鬱陵島檢察日記』에는 7일 소황토구미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계초본」에는 쉬는 일정을 축소했다. 이러한 사실은 『鬱陵島檢察日記』에 기초하여 「계초본」을 작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무가 있는 바위 아래에 막을 치고 숙박했다.[30]

이규원은 5월 10일 배를 타고 도방청(道方廳)→장작지(長斫支)→통구미(桶邱尾)→흑포(黑浦)→사태구미(沙汰邱尾)→산막동(山幕洞)를 거쳐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 소황토구미에 도착하여 숙박했다.[31]

그런데 이규원은 해안 탐사 과정에서 강치를 목격했다. "장작지 바다 가운데 몇 장쯤 되는 조그만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마침 가지어(可支魚) 한 마리가 그 위에 누워 있고 갈매기들이 놀라 날아들면서 쪼려 하니 또한 기이한 광경이었다."[32]

이규원은 육로와 해안 탐사를 마치고 울진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5월 11일 산신에게 기도하는 도중 동풍이 불기 시작하여, 12일 아침(辰時, 9시경)에 3척의 선박에 모두 돛대를 달게 한 뒤 출발했다.[33] 이규원 검찰사 일행은 5월 12일 저녁(亥時, 10시경)쯤 울진 쪽을 향해 가는데 풍랑이 크게 일어 정박할 수 없어 노를 저어 제어하면서 평해 구산포에서 정박하고 육지에 내렸다.[34]

결국 이규원은 서울에 도착하여 계본(啓本)과 함께 울릉도 그림도 제출했다. 울릉도의 지형과 산세의 기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토지의 비옥함과 척박함, 백성이 살

---

30 島項을 '섬목'이라 하지만 "바다 가운데 2개의 작은 섬"으로 보아서 島項은 관음도이고, 竹島는 죽서도임에 틀림없다. 검찰일기에 따르면 이규원과 倭船艙(천부)–船板邱尾(선창) 사이에서 형제암과 촉대암을 발견했다(李奎遠, 1882. 5. 9, 『鬱陵島檢察日記』). 이규원은 천부에서 선창 사이에 "바다 가운데에는 죽암(竹岩)이 있었는데 이름처럼 대나무만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으며, 높이가 수백 장(丈)은 될 듯하였다"라고 기록했다(李奎遠, 1882. 5. 9, 『鬱陵島檢察日記』). "船板邱尾… 남쪽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 2개(南便洋中 有二小島)는 모양이 소가 누운 듯하고,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도는 모습이다. 한쪽에는 어린 대나무가 빽빽이 자라고 있었고, 한쪽으로는 잡초가 나 있으며 높이는 수백 장(丈)이었다." "너비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길이는 500–600보쯤 되고, 사람들은 도항 또는 죽도라고 불렀으며, 둘레는 10리쯤 되었다(長爲五六百步 人云 島項 亦云竹島也 周可十里許)."(李奎遠, 1882. 5. 9, 『鬱陵島檢察日記』) 이규원은 1882년 5월 9일 울릉도 선창에서 2개의 작은 섬을 발견했다. 둘레가 4킬로미터, 길이가 50미터라면 도항은 관음도임에 틀림없다.

31 李奎遠, 光緖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李奎遠, 1882. 5. 10, 『鬱陵島檢察日記』.

32 李奎遠, 1882. 5. 10, 『鬱陵島檢察日記』.

33 李奎遠, 光緖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李奎遠, 1882. 5. 11, 『鬱陵島檢察日記』.

34 李奎遠, 光緖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李奎遠, 1882. 5. 13, 『鬱陵島檢察日記』. "뒤처졌던 배 2척도 도착하여 구산포에 정박하였다."(李奎遠, 1882. 5. 10, 『鬱陵島檢察日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만한 곳, 섬의 산물, 조류 등을 일일이 구별하여 기록했다.[35]

이규원은 울릉도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했다. 정박 항구의 부족, 하층민(下民)의 전복·약초의 채취와 재배, 배의 건조 등이 바로 그것이다.[36] 이규원은 나리동 중심의 이주가 가능하고, 울릉도 개간과 토지 허용을 요청하면서 울릉도에 시장을 형성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37]

이규원은 봄에 상선이 울릉도에 들어와 나무, 고기, 미역, 약초 등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38] 포구와 토산물의 내역도 상세히 보고했다.[39] 울릉도의 둘레는 140-150리이고, 물길이 넓고 아득하여 거리(里數)를 측량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40]

---

35 李奎遠, 光緒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돌아와 정박한 뒤 계초를 다듬었다."(李奎遠, 1882. 5. 13, 『鬱陵島檢察日記』) "울릉도 화본(畵本)을 넣을 양사(洋紗)를 구하고 책공(冊工)을 시켜서 종이를 붙이도록 했다."(李奎遠, 1882. 5. 24, 『鬱陵島檢察日記』) "혼자서 말을 타고 영리들을 거느리고 두모포(豆毛浦)의 미륵사(彌勒寺)에서 계본(啓本)을 작성했다."(李奎遠, 1882. 5. 27, 『鬱陵島檢察日記』) 계본(啓本)은 임금에게 보이는 서류(書類)다.

36 "섬에는 수많은 산봉우리가 구름 속에 솟아 벽처럼 깎아지른 듯이 첩첩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었는데 비록 해안이 있어도 끝내 배를 정박할 만한 항구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득을 따라 몰래 들어온 사람들도 모두 가난한 악착같은 사람들(下民)로, 겨우 전복을 따거나 약초를 캐거나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 뿐입니다."(李奎遠, 光緒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37 "섬의 중심지인 羅里洞은 산속에 들판이 펼쳐져서 평탄하고 비옥하여 천가호는 살 만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0호쯤 살 만한 사방 50-60리의 땅이 있습니다. 뽕나무, 산뽕나무, 모시, 닥나무가 자생하고 있어서 한 현(縣)을 만들 땅으로 충분합니다. …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여 개간을 허용하면 토지를 얻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今若募民 許墾 則歡如需土)." "만약 시장을 열어 매매를 허용하면 수년이 지난 후 마땅히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李奎遠, 光緒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38 "각처의 商船은 봄에 섬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고 고기를 잡고 미역을 따서 돌아가며, 약상배(藥商輩)는 상선을 따라 들어와서 움막을 짓고 약초를 캐어 역시 배를 따라서 나갑니다."(李奎遠, 光緒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39 "포구는 14곳이 있는데 소황토구미, 대황토구미, 待風所, 흑작지포, 천년포, 왜선창, 大岩浦, 楮田浦, 苧浦, 道方廳, 장작지, 玄浦, 谷浦, 桶邱尾 등인데 뿔같이 생긴 바위가 많고 파도가 거칠며 또 산기슭에는 遮護하고 藏抱하는 지형이 없어서 항상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키지 못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토산품으로는 紫丹香, 梧桐, 柏子, 冬栢, 黃柏, 뽕나무, 감나무, 厚朴, 槐木, 檜木, 馬柯木, 老柯木, 박달나무, 楮木, 苧草, 산삼, 麥門冬, 黃精, 前胡, 玄胡索, 蕨靈仙, 백합, 당귀, 南星, 속새, 貫衆, 覆盆, 산포도, 春菩, 尼實, 다래, 까마귀, 비둘기, 매, 霍鳥(슴새), 水牛, 海狗, 고양이, 쥐, 지네, 미역, 전복, 해삼, 홍합 등입니다."(李奎遠, 光緒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40 李奎遠, 光緒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규원은 자신이 울릉도를 철저히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울릉도에 도착한 다음 먼저 높은 곳을 걸어 다녔고, 다시 배를 타고 산기슭을 살폈다. 이규원은 울릉도 보고서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문장(文辭)의 문제라고 주장했다.[41]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겸손함을 표현하려는 의도다. 다른 하나는 혹시 보고서에 누락된 점이 있더라도 질책을 피하려는 의도다. 그럼에도 이규원은 자신의 보고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남겼다.

이규원이 발견한 울릉도 주변의 암초, 봉우리, 부속섬의 이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월 3일 흑작지(현포)에서 창우암과 촉대암, 천년포(현포와 천부 사이)에서 추봉, 나리동에서 성인봉, 5월 5일 도방청포(도동)와 장작지포(사동)에 도착, 5월 6일 장작지포에서 통구미포(통구미) 사이 중봉, 5월 9일 왜선창(천부)부터 선판구미(선창)까지의 죽암·형제암·촉대암, 선판구미에서 도항과 죽도까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42]

이규원의 지도인 「울릉도외도(鬱陵島外圖)」를 살펴보면 울릉도 북쪽 부속섬은 홍예암(虹霓巖), 대암(大巖), 촉대암, 형제암이고, 울릉도 동쪽 부속섬은 도항(관음도), 죽도(대섬), 노고암(老姑巖), 장군암(將軍巖) 등이다. 『울릉도검찰일기』와 「울릉도외도」에서 촉대암과 형제암은 일치한다. 1940년 『한국근대도지(韓國近代道誌)』에는 죽암(竹岩) 천부의 북쪽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울릉도검찰일

---

41 "신이 섬에 도착한 뒤에 먼저 높은 곳은 걸어 다녔고, 다시 배를 몰아 산기슭을 살펴서 발길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섬의 형세가 눈에 선하나, 다만 문장(文辭)에 능하지 못하여 누락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계문을 작성하여 급히 올렸습니다(臣於入島之後 旣步履其高顚 復舟駛其山麓 包日之間 足跡無所不到 全島形勝 瞭然在目 而惟其拙於文辭 尙多掛漏是白乎旀 緣由馳 啓爲白臥乎事云云)." (李奎遠, 光緖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42 "山川 彌勒峰(在島北 海拔 701米突) 錐山(在島北 해발 150미터) 孔岩(在島北) 卵峰(在島北 해발 611미터) 聖人峰(在島北 해발 984미터) 冠冑峰(在島北鎭山 해발 700미터) 水雷岩 可頭峰(俱在西海邊) 老人峰(在島北) 待風坎(在島北 玄圃西) 千年浦(在島北 羅里) 竹岩(在島北 天府北) 島項哨(在天府 東海濱) 觀音島(在島項 바로 아래) 竹島(在觀音島 南海中) 冑岩(在島東北 海邊) 北亭岩(在冑岩南) 燭墓岩(在島 東海濱)."(道誌刊行委員會, 940, 江原道誌 卷之十一 附錄 鬱陵島, 『韓國近代道誌』 23, 466쪽) 米突=m. 1902년 미돌법(미터) 제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의 '죽암'은 '대암'과 위치가 일치하므로 동일한 곳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울릉도 북쪽의 '홍예암(虹霓巖)'은 「울릉도외도」에만 나와 있다. 현재 울릉도 지도에는 북쪽에 공암(孔岩, 코끼리바위)이 있고, 『한국근대도지』에는 공암이 있다고 기록되었다. 추봉과 공암의 위치를 고려하면 '홍예암'은 '공암'임이 틀림없다.

2. 이규원의 일본인 심문 및 송도와 죽도의 명칭 문제

1) 이규원의 일본인 심문

이규원은 1882년 5월 5일 도방청포(현재 도동)와 장작지포(현재 사동)에 도착했다.[43]

이규원은 5월 5일 도방청포에서 길이 7파(把)와 넓이 3파(把)[44]인 일본 소선(小船)을 목격했다. 그리고 6-7명의 일본인을 발견했는데, 동래통사(東萊通辭)를 데려오지 못해서 글로 일본인과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규원은 조선이 수토관을 정기적으로 울릉도에 파견했고, 조선이 울릉도 내 일본인의 벌목 금지를 요청하는 외교문서를 일본 외무성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일본인에게 강조했다.

이규원이 묻고 일본인이 답변했다.

"언제 이 섬에 들어왔으며, 무슨 일로 막을 치고 살고 있느냐?"

"동해도(東海道), 남해도(南海道), 산양도(山陽道) 등의 일본인으로, 2년 전부터 벌목을 시작하여 금년 4월에 다시 이곳에 와서 벌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은 벌목한 나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추궁하면서 "작년에 수토관이 울

---

43 李奎遠, 1882. 5. 5, 『鬱陵島檢察日記』. "5일 하나의 큰 고개를 넘어 道方廳浦에 도착하니 … 長斫支 포구에 도착하니 興海 草島의 주민 金乃彦이 格卒 12명을 데리고 막을 치고 배를 만들고 있었으며, 해가 저물어 여기에서 유숙하였습니다."(李奎遠, 光緒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李奎遠, 1882. 5. 5, 『鬱陵島檢察日記』) 이규원은 도동과 사동 사이 저동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저동) 배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면서 해안절벽을 쳐다보았는데, 그 기괴함이 형형색색으로 비교할 바 없는 절경이었다. 바다에 해가 질 때는 바다와 하늘이 한 가지 색으로 되어, 경치가 거울처럼 호수와 다름이 없었다."(李奎遠, 1882. 5. 10, 『鬱陵島檢察日記』)

44 1把=1.561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릉도에 들어왔을 때 일본인이 벌목하고 있어서 사정을 물어보았다. 조선 정부는 서계(書契)를 만들어 일본 외무성에 보냈는데 어째서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한다고 하느냐?"라며 그들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불법벌목을 하던 일본인은 "일본 정부가 금지하는 법령을 듣지 못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사동(南浦搘谷)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에게 물으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런데 이규원은 사동에 있는 일본인을 불러오는 데 실패하자, 도동(道方廳浦)에 있는 일본인과 문답했다. 그 자리에서 이규원은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고, 따라서 일본인의 벌목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도동에 있는 일본인은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일본의 영토인 '송도'라는 표목(標木)을 근거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나는 왕명을 받들고 울릉도를 검찰하고 있다. 지난달 그믐날 이 섬에 들어와 산이나 물을 두루 다니며 돌아보다가 오늘 여기에 도착하여 너희를 만나 문답하는 것이다. 장차 이 사정을 조선 정부에 보고할 것이다. 강토에는 저절로 정해진 경계가 있는데 너희가 다른 나라에 와서 마음대로 벌목을 하고 있으니 이 무슨 도리냐?"

"저희는 다른 나라 강토가 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벌목을 시킨 역사자(役事者)는 지금 일본에 있으니 다른 나라의 경계(境域)인지를 거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사동(南浦槻谷)에 표목이 있으니 일본의 송도(松島)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규원은 송도 표목을 내세우는 일본인의 주장을 탐문하면서 반박했다. 그는 표목의 사실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조선의 경계에 표목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규원이 "송도라고 칭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라고 묻자, 일본인은 "일본제국지도(日本帝國地圖)와 여지전도(輿地全圖)에서 모두 송도(松島)라고 지칭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규원은 일본인을 강하게 비난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섬이 울릉(鬱陵)으로서 고려가 신라에서 받았고 조선이 고려에서 받아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강토다. 너희들이 일본의 송도(松島)라고 칭하는 것은 무슨 증거가 있느냐? 수백 년 이래로 조선이 관리를 파견하여 2년마다 수토(搜討)하여왔다. 조선의 법금(法禁)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벌목하고 있느냐?"

일본인은 섬에 대한 일은 역사자(役事者)가 알고 있으며, 자신은 모른다고 변명했다. 이규원은 일본인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울릉도 철수를 요구했다. 그러자 일본인은 8월에 배가 도착하면 출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규원은 계속해서 일본인의 성명과 주소, 총인원수 등을 파악했다.

이규원은 표목을 세운 시기와 인물에 대해서도 탐문했다. 일본인은 "2년 전에 여기 와서 처음 보았는데 메이지(明治) 2년 2월 13일에 이와사키 다다테루(岩崎忠照)가 세운 것이다"라고 답변했다.[45] 이규원에 따르면 "장작지 포구에서 통구미로 향하니, 해변의 돌길 위에 표목을 세웠는데 길이는 6척이요 너비는 1척이며 거기에 '대일본제국 송도(松島) 규곡(槻谷)'이라고 쓰여 있어 과연 왜인들이 말한 대로였다."[46]

---

45 이규원은 검찰일기에 5월 10일 일본인과의 문답을 기록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왔다는 일본인이 2년 전에 표목을 보았다고 답변했다. 이것은 모순된 답변이다(李奎遠, 1882. 5. 10, 『鬱陵島檢察日記』). 실제 이규원은 5일에 일본인을 만났지만 적절한 심문을 하지 못해 10일에 다시 도방청(도동)에 가서 심문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일본제국 南海道 豫州松山邑에 사는 內田尙長으로 나이는 29세, 山陽道 長州 善和邑에 사는 野村善一로 나이는 50세, 防州 宮市邑에 사는 吉崎卯吉로 나이는 40세, 東海道 總州 八田邑에 사는 吉谷庄次郎으로 나이는 26세입니다. 그 밖에 吉田大吉, 島海要藏, 庄司勇郎, 松尾而已助 등 4명은 나이도 모르고 일정한 거주지도 없습니다. 두 곳에 結幕의 일꾼을 합하면 78명입니다. 東海道는 뱃길로 6천 리요, 南海道는 2,500리이며, 山陽道는 1,500리입니다."(李奎遠, 光緖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李奎遠, 1882. 5. 5, 『鬱陵島檢察日記』) 박병섭은 야마모토 오사미(山本修身)의 기록과 이규원의 검찰일기를 대조하여 일본인의 명단을 작성했다. "南海道 豫州松山邑, 內田尙長〈우치다 히사나가(內田尙長): 아사히구미 부조장〉." "山陽道 長州 善和邑, 埜村善一〈노무라 젠이치(野村善一): 노무라구미 조장〉." "東海道 總州 八田邑 吉谷庄次郎." "防州 宮市邑吉崎卯吉." "島海要藏·庄司勇郎·松尾而已助." 〈도리우미 요조(島海要藏): 도쿄구미 조장〉 〈마쓰오 미노수케(松尾而已助): 도쿄구미 산하 나가이구미(永井組) 조장〉(檜垣直枝, 明治 15-16年, 「蔚陵島出張復命書」, 『公文別錄』(內務省); 박병섭, 「한말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연구』 35, 2010, 214쪽) *〈 〉 표시는 일본 측 자료.

46 "大日本國松島槻谷 明治二年二月十三日 岩崎忠照建之."(李奎遠, 光緖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李奎遠, 1882. 5. 6, 『鬱陵島檢察日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야마구치 현청 관리 야마모토 오사미에 따르면 1881년 5월 아사히구미(旭組) 대표 오쓰군(大津君)의 후지쓰 마사노리(藤津政憲)는 울릉도로 인부를 보내 벌목사업을 개시했다. 1882년 직공 어부를 보내서 어획사업도 시작했다.[47] 1883년 3월 일본 태정관은 조선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자 일본 외무성의 제안을 받아들여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일본 정부는 내무성 서기관 히가키 나오에(檜垣直枝)를 울릉도로 파견하여 1883년 10월 일본인 전원을 에치고마루(越後丸)로 강제송환했다.[48]

2) '송도'와 '죽도'의 명칭 문제

이규원은 1882년 5월 6일 통구미포로 가던 중 일본인이 세운 표목을 목격했다. 이규원에 따르면 일본인은 1869년(메이지 2) 울릉도를 '송도'라고 지칭하며 표목을 세웠다. 하지만 야마구치 현청 관리 야마모토 오사미가 1884년에 작성한 「복명서(復命書)」에 따르면 "대일본제국 마쓰시마(松島) 게이키다니(槻谷), 이와사키 다다테루(岩崎忠照). 메이지(明治) 13년(1880)"이라는 표목을 자신이 세웠다고 했다.[49] 1880년 울릉도를 '송도'라고 지칭하고 표목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규원 시찰 이후 '송도'라는 표목에서 메이지(明治) '2년'을 '13년'으로 고쳤다. 일본은 이규원 시찰 과정에서 최근 2년 사이 표목을 목격했다고 주장하여 표목을 세운 시기를 1880년으로 다시 확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

47 山本修身, 明治 17年(1884), 「復命書」, 『蔚陵島日件錄』(山口縣文書館: 行政文書戰前A土木25); 박병섭, 「한말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연구』 35, 2010, 212쪽)).

48 檜垣直枝, 「蔚陵島出張復命書 朝鮮國蔚陵島」, 『外務省記錄』 3824; 박병섭, 「한말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연구』 35, 2010, 217쪽. 송환된 일본인의 수는 총 266명이었다. 박병섭에 따르면 소환된 일본인은 "모두 목재 벌채의 일은 절도를 한 것이 아니면 그 목재가 조선 관리로부터 혜택으로 받은 것이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박병섭, 「한말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연구』 35, 2010, 221쪽).

49 山本修身, 明治 17年(1884), 「復命書」, 『蔚陵島日件錄』(山口縣文書館: 行政文書戰前A土木25); 박병섭, 「한말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연구』 35, 2010, 21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규원은 일본인과의 문답을 통해서 일본인이 울릉도를 '송도'라고 지칭하고, '송도'라는 표목을 근거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규원은 울릉도가 신라 때부터 조선의 영토였고, 조선이 2년마다 울릉도를 수토했다고 주장했다. 이규원은 일본인의 범법행위를 강조하며 일본인의 울릉도 철수를 지시했다. 일본은 에도막부(江戶幕府)때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고 지칭하며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 그런데 메이지 시기 이후인 1882년에 울릉도를 불법침입한 일본인은 울릉도를 '송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일본은 '죽도'를 '송도'라고 부르며 울릉도를 자국의 영토로 만들려는 전략을 내세웠다. 결국 일본은 울릉도(죽도)에서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울릉도를 '송도'로 바꿔 부르며 명칭의 혼동을 유발했다.

이규원은 울릉도를 둘러싼 조일관계를 살펴보면서 일본인의 불법벌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했다. 이규원은 17세기에 일본이 울릉도에 표목을 설치했지만 안용복이 울릉도를 수호했다며 안용복을 높이 평가했다.[50] 이규원은 일본의 울릉도 불법침입을 비판하면서 정부 차원의 항의 서한을 일본에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규원은 불법벌목 일본인이 "언동마다 사람을 속이기는 했지만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스스로 죄를 졌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기록했다. 이규원은 일본인들이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벌목이 불법이라는 것을 자인했다고 판단했다. 이규원은 일본에 항의하지 않는다면 "묵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교활한 왜인이 속이려 들 것이므로, 항의 문서를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51] 이규원은 조선 정부가 일본 정부 측

---

50 "왜인이 집을 짓고 있는 곳은 움막을 세운 지 여러 해가 되었으며, 날마다 나무를 베어 본국으로 나르고 있고, 외부처럼 여기면서 심지어는 표목까지 세워놓았습니다. 마침 그때 안용복이 없었다면 그들은 마음대로 행하면서 거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李奎遠, 光緒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51 "그러나 신(臣)이 꾸짖으면서 그들의 언동을 살피니, 언동마다 사람을 속이기는 하나 그 말에 부끄러워하는 바가 많았으므로 이는 반드시 스스로 죄를 졌다고 여기는 것으로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그들이 세웠다는 표목은 뽑지 않고 우선 증거로 삼을 계획입니다. 검찰하기 전에는 스스로 빈땅으로 듣고 와서 기강이 없겠지만, 이제 검찰한 뒤이니 만약 또 일본에 묻지 않는다면 이는 묵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교활한 왜인이 속이려 들 것입니다. 문서를 보내서 나무라는 것이 혹시 옳지 않을까 합니다."(李奎遠, 光緒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울릉도 불법벌목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원은 울릉도 보고서인 「계초본」에 송도(松島), 죽도(竹島), 우산도(于山島)의 명칭과 위치를 정리했다.

이규원은 "우산(于山)을 울릉(鬱陵)이라 부르는 것은 탐라(耽羅)를 제주(濟州)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라고 기록했다. 이규원은 '울릉'은 '우산'이라고 주장했다. 즉 우산을 중심으로 하는 송도와 죽도라고 기록했다.

그런데 이규원은 「계초본」에서 분명히 '송도, 죽도, 우산도', 즉 3개 섬을 구별하여 기록했다. 그렇다면 첫째, 이규원이 말하는 '우산도'는 울릉도와 부속도서를 의미하는 '우산국'이라는 게 가능하다. 즉 이규원은 '우산'을 울릉도와 '송도'와 '죽도'를 모두 포괄하는 명칭으로 사용했다. 둘째, 이규원은 '송도'라는 섬을 찾지 못했지만 울릉도의 부속도서라고 판단했다. 즉 송죽도를 각각의 섬인 '송도'와 '죽도'로 인식했고, 송도의 위치를 찾지 못했다. 이규원의 인식과 행동을 주목한다면 결국 이규원은 독도를 찾으려 했지만 직접 관찰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규원은 성인봉에서 "맑은 날에 높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 천 리를 엿볼 수 있으나 돌 한 주먹, 흙 한 줌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했다.[52] 이규원은 성인봉 정상에서 울릉도 주변의 새로운 섬을 찾으려고 시도했다. 이것은 이규원이 자신의 시야에서 독도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규원은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송도'라는 지명을 기록했다. 고종이 울릉도에서 불법활동을 하는 일본인들을 비판하자, 이규원은 일본인이 심지어 '송도'라는 표목까지 세웠

52 "松島, 竹島, 于山島 등에(松竹于山等島) 임시 거주할 사람들은 모두 근처의 작은 섬에서 보내야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근거로 삼을 지적도가 없고, 또 인도할 마을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맑은 날에 높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 천 리를 엿볼 수 있으나 돌 한 주먹, 흙 한 줌도 보이지 않으므로 우산(于山)을 울릉(鬱陵)이라 호칭하는 것은 탐라(耽羅)를 제주(濟州)라고 호칭하는 것과 같습니다(松竹于山等島 僑寓諸人 皆以傍近小島當之 然旣無圖籍之可據 又無鄕導之指的 晴明之日 登高遠眺 則千里可窮 以更無一拳石一撮土 則于山之稱鬱陵 卽如耽羅之稱濟州是白如乎)."(李奎遠, 光緒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고 기록했다.[53] 일본인은 울릉도가 '송도'라는 표목을 내세워 울릉도의 기존 이름인 '죽도'라는 이름을 버리면서 명칭의 혼란을 유도했다.

고종은 1882년 6월 5일 사관을 좌우에 앉게 하고 검찰사 이규원을 소견했다. 고종은 이규원을 만난 자리에서 서계(書啓)와 별단(別單), 그리고 지도(地圖)를 보았다고 말했다.[54]

"수로가 비록 어려우나 미개간지(閑曠地)로 두는 것은 곤란하다"라며 고종이 울릉도 개간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규원이 동의했다.[55] 고종이 지도에 나리동의 평지를 지목하며 읍(邑)의 설치를 제안하자, 이규원은 하늘이 준 땅으로 읍이나 진(鎭)을 설치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답변했다.[56] 고종은 울릉도 이주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역과 생활을 언급하면서 울릉도 지역 민심까지 챙겼다.

이규원은 검찰 당시 울릉도 거주민의 활동에 대해 기록했다. 울릉도에는 호남 사람이 가장 많은데 전부 배를 만들거나 미역을 채취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 사람은 주로 약초를 캤다.[57]

고종은 울릉도에 들어온 일본인들에 대한 대응을 고민했다. 고종이 "왜인이 표목을 세워 '송도'라고 주장하는데 일본인에 알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자 이규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일본인은 교활하고 거짓된 무리여서 표목을 세워 '송도'라고 쓰기에 이르렀는데, '송도'는 종전부터 양국이 서로 힐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한 일본공사 하나부

---

53 이규원은 '송도'라는 명칭은 일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에서 나왔다고 판단했다. 이규원에 따르면 울릉도는 '우산'이며 '송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54 "6월 초4일에는 私禮로 復命하였으나 초5일에는 公禮로 복명 … 書啓與別單 … 地圖도 역시 보았는데 …."(李奎遠, 光緖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55 "書契與別單 旣覽之 而水路雖難仍作閑曠之地爲難云 果然乎 果然矣."(『承政院日記』, 高宗 19年(1882) 6月 5日)

56 李奎遠, 光緖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承政院日記』, 高宗 19年(1882) 6月 5日.

57 李奎遠, 光緖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 요시모토(花房義質)와 일본 외무성에 송한(訟翰)과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고종은 정부 대신에게 항의 서한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면서 "지금 보니 일시라도 버려둘 수 없다. 비록 한 조각의 땅이라도 버릴 수는 없다"라며 울릉도 수호의지를 표명했다. 이규원은 고종의 지시를 받으면서 "비록 한 자 한 치의 땅이라도 이는 바로 조종(祖宗)의 강토이니 버려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58]

두 사람의 대화에서 주목할 점은 고종이 울릉도에 대한 강한 영토의식을 보여주었고, 이규원이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을 조일 외교 문제로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송도'라는 명칭이 언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이규원은 일본인이 교활하고 거짓된 무리라고 규정하면서 '송도'라는 명칭을 기록했다. 둘째, 이규원은 양국이 '송도'라고 말하는 것을 상호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조선과 일본이 울릉도를 '송도'라고 칭하는 것을 상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규원도 일본이 울릉도를 '송도'라는 명칭으로 바꿔 부르며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의도를 파악했다.

고종은 단지 "일본인에게 통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울릉도에 주민을 신속하게 이주시킬 것을 지시했다. 그러자 이규원은 우선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취락을 이루는 것을 본 연후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고종이 울릉도는 좋은 땅이지만 모르고 개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규원은 울릉도의 뱃길과 항구가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59] 고종은 신속한 이주를 주장했지만 이규원은 단계적인 이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58 "倭人立標 謂之松島 不可無信於彼 … 彼狡譎之類 至於立標木 書以松島 松島云者 自前相詰者也."(李奎遠, 光緒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承政院日記』, 高宗 19年(1882) 6月 5日)

59 "光緒 8년(1882) 임오년 6월 5일. 密州 朴基華 삼가 기록함."(李奎遠, 光緒 8年(1882) 壬午 六月, 「啓草本」; 『承政院日記』, 高宗 19年(1882) 6月 5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고종의 밀지와 이명우의 울릉도 파견

고종은 관찬사료에 기록된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정보에 만족하지 못했다. 고종은 울릉도에 본격적으로 주민을 이주시키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검찰사 이규원이 출발하기 직전에 밀사 이명우를 울릉도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울릉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의도였는데, 그만큼 고종이 울릉도에 대한 정보 파악과 이주 가능성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준다.[60]

고종은 1882년 음력 3월(暮春) 중순 전 흡곡현령(歙谷縣令) 이명우에게 몰래 가서(潛行) 울릉도의 정황을 살펴보라는 비밀명령(密旨)을 내렸다.[61] 이명우는 1882년 3월 16일 강원감영(東營)에 도착하여 강원감사(江原監司) 임한수(林翰洙)에게 밀지(密旨)를 알려주고 며칠간 머물렀다.[62] 이명우는 3월 13일 제천과 단양에서 출발하여 27일 만에 평해에 도착했고, 1882년 4월 9일 치성문(致誠文)과 성황문(城皇文)

---

60 유미림에 따르면 고종은 이명우와 이규원의 보고를 함께 참조하여 울릉도 개척을 명령했다. 고종은 이명우에게 울릉도의 개척 가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이규원에게 주변 도서와 일본의 침탈 현황을 파악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을 각각 파견한 것은 허위보고서가 작성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교차 검토하고자 해서인 듯하다(유미림, 「1882년 고종의 밀지와 울릉도 잠행: 이명우의 '울릉도기'에 대한 해제」, 『영토해양연구』 6, 2013, 280-282쪽).

61 『묵오유고(默吾遺稿)』는 이명우(李明宇, 1836-1904)의 아들 이혁의(李赫儀)가 1917년에 편집하여 목판활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김윤식(金允植)의 서문(1915), 이혁의 발문이 수록되었다. 「울릉도기(鬱陵島記)」는 1882년 5월 이후 작성되었다. 저자인 이명우는 본관 전주, 자(字)는 경덕(景德), 호는 묵오(默吾)이다. 아버지는 도정(都正) 이회수(李會壽)이며, 어머니는 한산이씨 이화재(李華載)의 딸이다. 어릴 적에 추사 김정희에게 수학했고, 박규수(朴珪壽)·김병학(金炳學)·신석희(申錫禧) 등과도 지적 교류를 했다. 묘갈(墓碣)에 따르면 이명우는 1865년 처음 벼슬길에 오른 이래 1869년 울산감목관(蔚山監牧官)에 임명되었고, 그 후 하양과 음죽의 현령을 거쳐 1871년 7월 흡곡현령이 되었다. 1885년 4월 한성부 주부에 임명되었다. 1887년부터 안산, 덕산, 단양, 청풍, 영원, 은진 등지로 부임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벼슬을 그만두고 가야산에 들어가 귀래정(歸來亭)을 짓고 저술에 전념했다. 저서로 『경구수록(警瞿收錄)』, 『역학제요(易學提要)』, 『임사편고(臨事便考)』 등이 있다(유미림, 「1882년 고종의 밀지와 울릉도 잠행: 이명우의 '울릉도기'에 대한 해제」, 『영토해양연구』 6, 2013, 275-276쪽; http://db.itkc.or.kr; 『承政院日記』, 高宗 12年(1875) 12月 23日).

62 "歲在壬午暮春之中旬 奉命潛行往察島情 克日發行 本月十六日 抵東營 祗授密旨于東伯林翰洙 留連幾日."(李明宇, 「鬱陵島記」, 『默吾遺稿』, 1917, 104쪽(국립중앙도서관 古朝4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올리며 평해 구산에서 순풍을 기다렸다가, 4월 14일에 순풍이 불자 배를 출발시켰다.[63] 이규원이 4월 27일 울릉도로 출발했는데, 이명우는 그보다 13일 먼저 울릉도로 출발할 수 있었다.

이명우는 4월 15일 밤 흑작지에 도착했고, 천년포로부터 선창(船倉)에 닿아 초막에서 묵었다. 4월 16일 황토구 신당(神堂)에 정성을 드렸고, 산에 올라 홍문령(紅門嶺)을 넘었다.[64] 이명우는 약상(葯商)을 대동하고 국동(國洞, 현재 나리동)에 도착했는데, 국동은 수구(水口)가 없지만, 자연히 땅 속으로 스며들어 천년포로 나왔다.[65]

이명우에 따르면 울릉도에는 12포구와 10리 평원이 있었다. 동쪽 저포와 서쪽 황토구의 거리는 50리였다. 북쪽 구선창(舊船倉)에서 남쪽 곡포(谷浦)까지의 거리는 50리였다. 울릉도 둘레는 140-150리였는데, 선인(船人)과 약상(藥商)의 말도 동일했다.[66]

이명우는 강치에 대해서 기록했다. '가지어(可支魚)'란 짐승이 있는데 귀가 작고 눈이 붉으며 큰 것은 소만 했다. 돌 위에 나와 누워 있는데, 선인(船人)이 때를 엿보아 만나면 때려잡아서 고기를 먹고 가죽도 사용했다.

그 후 이명우는 섬 안을 살펴보면서 홍문령에서 구선창에 닿았다. 이명우는 배가 대암(對巖)에 이르자 선인(船人)의 초막에 묵었다. 다음 날 저포 등지로 향했는데 대풍구(待風口)에서 풍랑을 만나 겨우 육지에 내리니 향목동(香木洞)이었고, 소황토구

---

63 "울릉도는 금강산보다 나으며, 영험한 섬으로 새가 와서 영접한다는 것들에 이르러서는 정령(精靈)이 많고 진실로 보기 드문 명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3절의 인등(引燈)과 3곳 성황당과 하백(河伯) 등지에 정성을 다해 기도한 뒤에야 갔다가 올 수 있다고 한다."(李明宇, 「鬱陵島記」, 『默吾遺稿』, 1917, 104-106쪽(국립중앙도서관 古朝46))

64 "삼척영장(三陟營將)은 통인(通引)과 기생(妓生)을 싣고 들어가서 되돌아올 때에 배가 출발하지 못하고 풍랑이 크게 일어나면 부득이 통인과 기생을 내려놓았다. 이 때문에 공적으로 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늘 남녀의 의상을 지어서 정성을 드린 뒤에야 무사했다."(李明宇, 「鬱陵島記」, 『默吾遺稿』, 1917, 106쪽(국립중앙도서관 古朝46))

65 李明宇, 「鬱陵島記」, 『默吾遺稿』, 1917, 107쪽(국립중앙도서관 古朝46).

66 李明宇, 「鬱陵島記」, 『默吾遺稿』, 1917, 108-109쪽(국립중앙도서관 古朝4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이르러 투숙했다. 4월 20일 오후 도천대(禱天臺) 소황토구 남쪽 석벽 아래에서 정성을 올렸고, 4월 21일 배를 이용하여 곡포에 이르고 통구미 해안에 닿았다.[67]

이명우는 4월 21일 통구미에서 "대일본송도규곡(大日本松島槻谷)"이라는 목패(木牌)를 목격했다. 이명우는 장작지 해변으로 가서 일본인이 만든 큰 널빤지를 목격하고 그 막사(幕)를 찾아가서 일본인과 문답(問答)한 다음 통구미로 돌아왔다.

이명우는 울릉도에서 거주하는 백성들을 보지 못했는데, 다만 곽선(藿船)과 약상(葯商) 등이 임시로 막사를 엮어 거주하고 있었다. 4월 22일 오후 순풍이 불어 배를 출발시킬 수 있었고, 4월 23일 사각(巳刻, 오전 9-11시) 삼척 장호포(莊湖浦)에 정박했다. 4월 29일 원주에 도착하여 문서(文書)와 도본(圖本)을 수정했고, 5월 3일 출발하여 5월 5일 서울 성 밖(城外) 산사(山寺)에 도착했으며, 5월 8일 고종에게 복명(復命)했다.[68] 이규원은 6월 5일 고종을 소견했는데, 고종은 한 달 전에 이명우를 통해 울릉도와 우산도에 관한 정보를 이미 파악한 상태였다.

이명우는 조선이 "동해의 물가(東海之濱)"에 위치한 국가라고 기록했다. 이명우는 역사적으로 조선이 소중화(小中華)라는 인식 아래 단군조선(檀君朝鮮), 기자조선(箕子朝鮮), 신라(新羅), 고려(高麗)를 계승한 국가로 파악했다.[69] 이명우는 백두산(白頭山) 한 줄기가 천여 리를 뻗어나가 중간에 연화산(蓮花山)과 천괘산(天掛山)이 일어나서 함경도와 평안도가 만들어졌고, 천여 리를 더 뻗어나가 금강산(金剛山), 오대산(五臺山), 태백산(太白山)이 되어 강원도가 형성되었으며, 태백산 한 줄기가 삼척으로 흘러내려 바다 속 수천 리를 들어가서 울릉도가 되었다고 기록했다.[70] 이명우는 지리적으로 백두산, 태백산, 울릉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우는 우산국(于山國)은 울도장군(鬱島將軍)이 통치했는데, 조선 동쪽 바다 천

---

67 李明宇, 「鬱陵島記」, 『默吾遺稿』, 1917, 110쪽(국립중앙도서관 古朝46).

68 李明宇, 「鬱陵島記」, 『默吾遺稿』, 1917, 111쪽(국립중앙도서관 古朝46).

69 李明宇, 「鬱陵島記」, 『默吾遺稿』, 1917, 101쪽(국립중앙도서관 古朝46).

70 李明宇, 「鬱陵島記」, 『默吾遺稿』, 1917, 104쪽(국립중앙도서관 古朝4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리에 취하고 사방 100리의 섬이었다.[71] 1694년 장한상의 울릉도 파견 이후 조선이 삼척영장과 월송만호를 통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울릉도 수토관을 보냈다고 기록했다.[72]

이명우는 "땅이 사람의 보배이니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땅으로 돌아간다"라며 백성들의 큰 근본이 지리(地利)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일 백성을 이롭게 하려면 한 조각 땅이라도 아까워해야 한다"라며 울릉도의 산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므로 울릉도를 개간할 것을 주장했다.[73] 이명우는 울릉도 개간과 이주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울릉도에 본격적인 주민 이주를 실시하기로 결심한 고종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명우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기초하여 울릉과 우산을 구별했다. 우산을 '송도'로 울릉을 '죽도'로 파악했는데, 울릉도를 '울도(鬱島)'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명우는 『여지(輿地)』(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이르길 "울릉(鬱陵)과 우산(于山)은 모두 우산국(于山國)에 속했던 곳으로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라고 주장했다. 이명우에 따르면 광해군 7년(1615)에 의죽도(礒竹島)의 형지(形址)를 살펴보고 조정이 답하기를 "의죽(礒竹)은 실로 조선의 울릉으로 『여지』에 실려 있다"라고 했다. 이명우에 따르면 숙종 19년(1693)에 어민 안용복이 인질로 잡혀간 일로 또한 많이 왕복했다. 조선은 울릉도와 하루 노정(路程)이고 일본은 5일 노정이었는데, "죽도와 울릉을 두고 많이 다투었다."[74]

고종은 1882년 5월 이명우의 「울릉도기(鬱陵島記)」라는 보고서를 이미 검토했기

---

71 李明宇, 「鬱陵島記」, 『默吾遺稿』, 1917, 102쪽(국립중앙도서관 古朝46).

72 李明宇, 「鬱陵島記」, 『默吾遺稿』, 1917, 103쪽(국립중앙도서관 古朝46).

73 李明宇, 「鬱陵島記」, 『默吾遺稿』, 1917, 111-112쪽(국립중앙도서관 古朝46).

74 "輿地云 鬱陵于山 皆于山國 而于山 則日本所謂松島也 光海七年 來探礒竹島形址 朝廷答曰 礒竹 實我國之鬱陵 載在輿地云云." "肅宗十九年 以漁民安龍福被質事 又多往復 略曰 距我國爲一日程 距日本爲五日程云云 多以竹島鬱陵爭之."(李明宇, 「鬱陵島記」, 『默吾遺稿』, 1917, 103쪽(국립중앙도서관 古朝4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때문에 6월 5일 이규원을 소견(召見)하기 전에 울릉과 우산을 구별할 수 있었다. 소견 당일 고종은 이규원에게 울릉과 우산의 위치를 다시 묻지 않았다. 그래서 이날의 소견에서는 울릉도에 백성을 이주시키는 문제가 대화의 중심이 되었다. 이때 고종은 신속한 이주를 강조했고, 이규원은 단계적인 울릉도 이주를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고종과 이규원은 일본의 '송도'라는 표목에 대해서 "일본의 교활하고 거짓된 행동"이라고 파악했다. '죽도'를 '송도'로 명칭을 바꾸어 울릉도를 자국의 영토로 만들려는 일본의 계략을 간파했던 것이다.

IV. 고종의 울릉도 개간과 조선의 울릉도 관할

고종은 이규원의 검찰 보고서와 면담을 통해 이규원의 단계적 울릉도 이주를 받아들여 실행했다. 울릉도 불법벌목 일본인을 추방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울릉도 관련 행정제도 신설, 울릉도 이주 백성의 모집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고종은 1882년 6월 16일 삼군부(三軍府)가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벌목을 항의하는 외교문서를 일본 정부에 보내자고 제안하자 승인했다.

삼군부에 따르면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은 일본인들이 한쪽 구석에 막을 치고는 송도라 칭하면서 나무 푯말까지 세웠으니 공문을 보내 힐책할 것을 요청(啓請)했다. 삼군부는 강역(疆域)을 신중하고 견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5]

---

75 "三軍府啓 鬱陵島檢察使李奎遠 以日本人結幕一隅 稱以松島 所木立標 啓請移書詰責事 有旨令三軍府稟處矣. 以日本人之侵斫此島樹木 自其國禁止之意 已有文字 而今於檢察之行 目見其猶復自如 則不得不更申前意 永杜此弊 令文任撰送書契何如. 允之."(『高宗實錄』, 高宗 19年(1882) 6月 16日) "朴鳳彬, 以三軍府言啓曰, 卽見鬱陵島檢察使李奎遠書啓, 則以爲, 日本人, 結幕一隅, 稱以松島, 立標斫木, 移書詰責, 恐不可已事, 判付有令三軍府稟處之命矣。殊厥疆界, 愼固封守, 自有典則, 而以日本人之侵斫此島樹木, 自其國禁止之意, 已有文字, 而今於檢察之行, 目見其猶復自如, 則不得不更申前意, 永杜此弊, 令文任, 撰送書契, 何如? 傳曰, 允."(『承政院日記』, 高宗 19年(1882) 6月 16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종은 1882년 8월 20일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을 차대(次對)했다. 그 자리에서 홍순목이 조선 정부의 울릉도 이주를 제안하자 승인했다.

홍순목은 "울릉도는 바다 가운데 외로이 떨어져 있는 미개간지이지만 땅이 비옥하다고 합니다. 우선 백성을 모집해서 밭을 일구고 5년 후에 조세를 물리면 스스로 점차 취락(聚落)을 이룰 것입니다. 영남(嶺南)과 호남(湖南)의 조운선(漕運船)이 울릉도에서 재목을 베서 배를 만들도록 허락하면 백성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우선 울릉도 검찰사에게 문의하여 도장(島長)을 임명하여, 규율과 질서를 세우고 그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강원감사에게 진(鎭)을 설치할 계획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76]

그 결과 울릉도 첫 도장으로 전석규(全錫圭)가 임명되었다.

1882년 9월 6일 의정부는 울릉도 도장 전석규 임명에 관한 체문(帖文)을 보내면서, 일과 거처를 마련하라고 강원감영에 지시했다. 또한 진을 설치하는 일과 관련하여 도장의 보고에 따라서 적절히 제도를 만들고 그 경과를 보고하라고 강원감영에게 지시했다.

1883년 3월 15일 의정부는 울릉도 이주와 관련하여 전석규가 내려가서 "진을 설치하는 데 기틀이 되는 사업이 원대한 계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원감영에 지시했다.[77] 전석규는 울릉도에 들어온 지 이미 10년이 넘은 경상도 함양의 사족 출신으로 약초 캐는 일에 종사했다. 그는 울릉도 지리에 익숙해서 사람이 살 만한 곳과 각종 토산물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78]

---

76 "次對. 領議政洪淳穆曰. … 向來檢察使復命時 鬱陵島地圖與書契 伏想已經乙覽. 而此島僻在海中 天荒一區 聞是沃□之地 爲先募民起墾 五年後定稅 則自至漸成聚落. 且兩南漕船 許令來此 取材而造之 人叢亦當繁集 此爲及今可圖者也. 然若管領無人 雜弊難防 其勤實幹事者 問議於檢察使 姑以島長差送 創立制置規模 豫講他日設鎭之意 分付道臣何如. 允之."(『高宗實錄』, 高宗 19年(1882) 8月 20日)

77 『各司謄錄(27)』, 「江原監營關牒」, 壬午年(1882) 9月 6日, 453쪽; 『各司謄錄(27)』, 「江原監營關牒」, 癸未年(1883) 3月 15日, 463쪽.

78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17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83년 3월 16일 고종은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島開拓使)로 임명하고 포경 등의 일을 겸하게 했다.[79] 『황성신문』은 1883년 동남제도개척사와 울릉도의 연관성을 기록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은 종사관 백봉배(白奉培)에게 울릉도 개척 사무를 맡겼다.[80] 그런데 김옥균은 1884년 1월 11일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불법벌목 현황을 보고하면서 여기에 결탁한 울릉도 도장 전석규의 처벌을 요구했다.[81]

1883년 4월 강원도 관찰사 남정익(南廷益)은 울릉도 이주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자를 보고했다. 물자 공급을 위해 총 4척의 선박이 출항하고, 사공과 격군(沙格) 40명, 목수 2명, 대장장이(冶匠) 2명 등이 동원될 예정이었다. 또한 벼(租) 20석, 콩(太) 2석, 조(粟) 2석, 팥(小豆) 등의 종자를 준비하고, 백미(白米) 60석, 소(牛) 2마리, 총(銃) 3자루, 화약(火藥) 3근 등을 준비했다.[82]

1883년 5월 9일 전석규는 울릉도 이주를 위해 양식과 잡물을 싣고 평해군에서 울릉도로 출발했다. 1883년 6월 6일 강원감영은 평해군수의 보고를 의정부에 첩보했다. "필요한 선격, 양미, 잡물을 도장과 다시 상의하여 모두 2,260냥 9푼을 마련했다."[83]

---

79 『高宗實錄』 高宗 20年(1883) 3月 16日; "참의교섭통상사무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로 삼아서 포경(捕鯨) 등의 일을 겸하게 하여 하직하지 말고 편리한 대로 왕래하게 하라."(『承政院日記』, 高宗 20年(1883) 3月 16日)

80 『皇城新聞』, 1899. 9. 23, 鬱陵島 事況.

81 울릉도 도장(島長) 전석규(全錫圭)는 일본인의 울릉도 벌채를 금지시키지 못하고 물건과 교환한 죄목으로 1년 만에 파면당했다(『高宗實錄』, 高宗 21年(1884) 1月 11日). 갑신정변 이후 이규원이 동남개척사로 임명되었다(『高宗實錄』, 高宗 21年(1884) 12月 17日).

82 "鬱陵島開拓時船格粮米雜物容入假量成冊."(高宗 20年(1883) 4月 奎17041; 신용하,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117쪽)

83 "이전에 받은 울릉도를 개척할 때 들어가는 선격(船格), 양식으로 쓰는 쌀, 잡물(雜物) 등을 써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올려 보내고, 연유를 첩보한 문서의 명령문에, '지금은 바다에 배를 띄우기에 적합한 때라 지체할 수 없으니, 소비되는 것의 경우에는 적정량을 헤아려 영문(營門)과 고을에서 상의하여 먼저 마련하여 획급(劃給)하고, 추후에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해당 도장(島長)이 섬에 들어가는 일은 잠시도 늦출 수 없으므로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은 먼저 적정량을 갖추어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급히 평해군수에게 감결(甘結)로 신칙하였습니다. 지금 해당 군수는 '배의 식량과 집물(什物)로 들어가는 것은 도장과 더불어 다시 추가로 상의하여 확정하고 간략하게 마련한 후, 모두 2,216냥 9푼의 돈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83년 7월 강원도 관찰사는 울릉도 대황토포(大黃土浦) 4호, 곡포(谷浦) 5호, 추봉(錐峯) 2호, 현포동(玄浦洞) 5호 등 총 16호 54명이 이주했다고 보고했다.[84]

조선 정부는 울릉도 이주가 실행되자 울릉도의 행정관할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884년 3월 울릉도첨사(鬱陵島僉使) 겸 삼척영장(三陟營將), 1884년 6월 울릉도첨사 겸 평해군수(平海郡守), 1888년 2월 첨사(僉使)를 다시 도장(島長)으로 바꾸었는데, 평해군 소속 월송진만호(越松鎭萬戶)가 울릉도도장을 겸직했다.[85] 울릉도장은 1888년부터 3월 전후 매년 울릉도를 수토하여 기본적으로 지도와 토산물을 바치고, 신구 호수, 남녀 인구, 개간 면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1884년 4월 14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민영목(閔泳穆)은 조선 해안의 방어를 위해서 수군(水軍) 강화에 관한 방안을 보고했다.

민영목은 해안 방어를 위한 수군이 취약하다며, 연안의 경계에 있어 해방(海防)의 통제권을 수군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항 이후 조선 개항장을 중심으로 해안의 방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양 영토의 강화를 판단했다. 민영목에 따르면 연안 고을의 포군(砲軍)은 원래 정원이 1,870명이지만 군사훈련을 견딜 만한 사람은 겨우 3분의 2 정도였다. 민영목은 영방(營房)을 설치하고 계기(械器)를 수집하며 조련하는 방도를 차례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고종은 해안 방어 강화를 지지하면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지시하여 해양 영토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86]

1884년 11월 26일 전(前) 오위장(五衛將) 이경렬(李京烈)은 '울도'의 이주 조치

본군(本郡)의 상납전(上納錢) 가운데서 마련해 나누어 지급했으며, 지난 5월 9일에 섬을 향해 배를 출발하였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선격과 양식으로 쓰는 쌀, 잡물 및 모아문(某衙門)이 상납한 돈의 수량을 모두 구별하여 책을 만들어 올려 보내니, 해당 군에서 상납한 돈은 각사(各司)에 감결을 보내 계산하여 처리하도록 요청합니다." (『各司謄錄(27)』, 「江原監營關牒」, 癸未年(1883) 6月 7日, 466쪽)

84 "江原道鬱陵島新入民戶人口姓名年歲及田土起墾數爻成冊."(光緖 9年, 高宗 20年(1883), 癸未 7月, 奎17117; 신용하,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121쪽)

85 『高宗實錄』, 高宗 21年(1884) 3月 15日; 『高宗實錄』, 高宗 21年(1884) 6月 30日; 『高宗實錄』, 高宗 25年(1888) 2月 6日.

86 『高宗實錄』, 高宗 21年(1884) 4月 14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적극 환영했다. 그는 울도에 수령(守令)을 두어 변경으로 삼는다면 바다 방어가 공고해지고 나라의 조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87]

1887년 8월 20일 조선 정부는 울릉도장 서경수(徐敬秀)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영국인 미첼(Mitchell, 米鐵)의 울릉도 벌목을 금지시킬 것을 강원감영에 지시했다. 조선 정부는 미첼이 1885년에 발급받은 울릉도 벌목 허가서를 이미 취소시킨 상태였다. 조선 정부는 공식적으로 울릉도에서 나무를 함부로 벌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88]

『황성신문』에 따르면 조선 정부는 1888년 울릉도 출신 서경수를 월송만호에 임명하여 울릉도의 백성 수를 늘리게 하고 외국인의 벌목을 금지시켰다.[89] 1888년 7월 10일 강원감영은 월송진만호 겸 울릉도장 서경수의 첩정(牒呈)을 보고했다. 서경수는 울릉도 수토 결과 토지 개간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보고했다. 강원감영은 1888년 7월 10일 일본인의 목재 구매 금지에 관한 지시를 서경수에게 내렸다.

서경수는 1888년 3월 21일 울릉도에 도착해 검찰하고, 6월 19일 월송진으로 돌아왔다. 1888년 2호(戶)가 울릉도에 새로 들어왔고, 울릉도의 농사는 새와 쥐 등으로 인한 재난이 없어서 흉년을 면할 수 있었는데, 새로 개간한 밭은 8섬지기(石落)였다. 일본인은 울릉도의 나무 102 톳(吐)과 판재 120 편(片)의 구매를 요청했다.[90]

1888년 8월 4일 울릉도장 서경수가 울릉도에 불법거주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보고했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서 나무를 베고 전복을 캐는 행위를 엄하게 금지하고,

---

87 "신이 강릉(江陵) 지방에 있었으므로 울도(鬱島)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臣在江陵地, 深知鬱島利病). 이 섬은 바로 옛날 우산씨(于山氏)가 나라를 세운 곳인데, 이번에 개척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조치입니다. 일정한 생업이 없는 부근의 백성들에게 선유(宣諭)하여 개간하게 하고 3년 기한으로 조세를 거두지 말며, 모두 개간한 뒤에 수령(守令)을 두어 변경으로 삼는다면 바다 방어가 공고해지고 나라의 조세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高宗實錄』, 高宗 21年(1884) 11月 26日)

88 "미첼(米鐵)이 빙자한 공문은 이미 시행하지 말도록 한 것인데, 하계록(河桂祿)이 뇌화부동하여 가서 소란을 일으켰으니 매우 통탄스럽고 놀랍다. 미첼은 좋은 말로 타일러 쫓아 보내고 하가 놈은 먼저 엄히 가두고, 범한 곳은 그 나무의 그루 수를 일일이 압류한 후 자세히 연유를 적어 속히 보고할 일이다."(『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丁亥年(1887) 6月 7日, 480쪽)

89 『皇城新聞』, 1899. 9. 23, 鬱陵島 事況.

90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戊子年(1888) 7月 10日, 48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불법거주 일본인을 추방할 것을 지시(題辭)했다.[91]

1888년 11월 28일 조선 정부는 목재를 벌목하고 운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무부(內務府)의 공문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92] 조선 정부는 울릉도 삼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갖고 있었다.

1889년 5월 6일 울릉도장 서경수는 울릉도에서 일본인이 전복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조선 정부는 부산감리를 통해서 일본인을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서경수는 통상이 허가되지 않은 항구에서 화물을 매매하면 "벌금 50만 문(文)을 부과하고 멕시코 은화(墨洋) 100원(元)의 벌금(罰)을 취하는 것"이 맞다며 일본인의 불법성에 대한 '벌금' 부과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부산감리가 "부산영사관에 인도하여 장정을 살펴서 징벌하고 처리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93] 이것은 조선 정부가 불통상항구에 대한 조약에 근거하여 '벌금'이라는 처벌을 인식하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889년 3월 6일 울릉도장 서경수는 2척의 배를 동원하여 울릉도로 출발했는데, 3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석 달 동안 머무르면서 수색하고 검찰했다. 그런데 서경수는 울릉도 수토기간 중 일본 배 24척과 일본인 186명이 들어와 전복을 채취하며 폐

---

91 "나무를 작벌하고 전복을 채취하는 것을 아울러 엄히 금지하고, 임시로 살고 있는 일본인 또한 모두 타일러 보낼 것이다."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戊子年(1888) 8月 4日, 482쪽)

92 "목재를 벌목하여 운반하는 것은 한결같이 내무부의 공문에 따라 거행하라."(『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戊子年(1888) 11月 28日, 482쪽)

93 울릉도장 서경수는 1888년 일본인 잠수기회사의 사원 미야케(三宅數矢) 등이 강원도 울릉도에 들어가 생복(生鰒) 1,250근(斤)을 불법적으로 잡자 현물을 모두 압수하고 일본인의 어업을 금지시켰다(『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戊子年(1888) 12月 24日, 482쪽). "전복을 채취하는 일본인 미야케와 구이(久井友之助) 등이 해변 3리(里) 안에서 불법채취하며, 후루야(古屋利涉)가 일찍이 면세의 약속을 했다고 핑계를 대며 억지를 씁니다. 통상하지 않은 항구에서 사사로이 화물을 매매하면 벌금 50만 문(文)을 부과하는 것 및 선척(船隻)이 해구(海口)에 진출하여 선법(船法)을 위반하면 배마다 멕시코 은화 100원(元)씩의 벌금(罰)을 취하는 것을 모두 일본공관에 조회하여, 해당 선장(船長) 등에게서 징수하여 뒷날의 폐단을 막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범죄를 저지른 일본인에게는 징벌이 있어야 한다. 하나같이 부산감리의 명령문 내용에 따라 즉각 잡아서 부산영사관에 인도하여 장정을 살펴서 징벌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己丑年(1889) 5月 6日, 48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단을 일으켰다며 외아문에 직접 알리겠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조선 정부는 7월 17일 울릉도장이 신속히 서울에 올라와서 보고하도록 강원감영에 지시했다.[94] 7월 26일 강원감영은 서경수가 3월부터 6월 사이 울릉도를 수토한 결과를 통리아문(統理衙門)에 보냈다. 서경수는 "울릉도의 도형(圖形), 자단향(紫檀香) 12돗(吐), 청죽(靑竹) 3개, 강치 가죽(可支魚皮) 2벌(領), 석간주(石間朱) 6되(升)" 등을 진상했다.[95]

1889년 9월 21일 조선 정부는 울릉도 수토 관련 물품 지원 및 철점(鐵店) 개설을 승인하는 공문을 강원감영에 보냈다. 조선 정부는 서경수가 울릉도 수토 보고서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대죄거행(戴罪擧行)'의 처벌을 내렸지만 "울릉도에 들어가 조사하는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서경수의 울릉도 수토를 지시했다. 조선 정부는 내년 2월 15일 이전에 울릉도를 수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울릉도에 철점을 개설하여 광석을 채취하도록 허가했다. 울릉도에서 산출되는 정철(正鐵)은 울릉도민이 농기구 등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96] 이것은 울릉도의 농업과 산업이 발전하고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890년 7월 18일 강원감영은 울릉도장 서경수가 작성한 울릉도 조사 현황, 민호(民戶)의 총수, 간전(墾田)의 수량 등을 의정부에 보고했다.[97]

1890년 8월 7일 조선 정부는 서경수의 임기가 만료되자 월송만호 겸 울릉도장으로 이종인(李種仁)을 임명하고, 월송진과 울릉도를 수색해서 검사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강원감영에 지시했다.[98] 1892년 2월 16일 조선 정부는 월송만호 겸 울릉도장

---

94 서경수는 3월 6일 오시(午時, 11–13시)에 출발해 3월 7일 오시에 도착했다. 서경수는 1889년 6월 7일 유시(酉時)에 울릉도를 출발하여 11일 해시(亥時)에 평해의 후리진(厚里鎭)으로 돌아와 정박했다(『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己丑年(1889) 7月 17日, 483쪽).

95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己丑年(1889) 7月 26日, 484쪽.

96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己丑年(1889) 9月 21日, 484쪽. '대죄거행(戴罪擧行)'이란 죄가 판명될 때까지 현직을 유지하는 것이다.

97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庚寅年(1890) 7月 18日, 485쪽.

98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庚寅年(1890) 8月 7日, 48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박지영(朴之榮)을 임명하고,[99] 1893년 1월 29일 월송만호 겸 울릉도장에 이완갑(李完甲)을 임명했다고 강원감영에 알렸다.[100]

1891년 5월 9일 강원감영은 울릉도 수토 계획을 접수했는데, 평해에서 울릉도의 거리를 대략 천 리 정도로 파악했다. 울릉도장은 평소 왕래하는 배편이 없기 때문에, 배를 세내고 음식을 준비한 다음 장교를 정해 바람을 기다렸다가 울릉도에 들어갈 계획이었다.[101]

1891년 8월 16일 울릉도장은 동래수영(東萊水營)을 통해서 울릉도를 수토한 다음 울릉도의 지도, 자단향 12톳, 청죽 3개, 강치 가죽 2벌, 석간주 6되 등을 내무부에 진상했다.[102]

1892년 2월 1일 조선 정부는 선전관(宣傳官) 파견과 관련하여 문서(關文)를 울릉도장에게 보냈다. 울릉도 선전관은 울릉도의 농업과 어업을 점검하고, 일본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윤시병(尹始炳)의 파견은 울릉도의 대표적인 산물인 미역을 둘러싼 이권과 연결되었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 수토가 3년마다 한 번씩 정례화되었지만 1888년 도장을 설치하여 관리를 파견했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 백성들에 대한 업무가 아직 시작 단계이므로 선전관 윤시병을 특별히 파견하여, 울릉도의 정세와 현황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울릉도 선전관은 외국인이 목재를 벌목하는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울릉도에서 해산물(魚藿)과 미역을 채취하여 백성의 생업을 편안하게 하는 일 등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았다.[103]

---

99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壬辰年(1892) 2月 16日, 488쪽.

100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癸巳年(1893) 1月 29日, 491쪽.

101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辛卯年(1891) 5月 9日, 487쪽.

102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辛卯年(1891) 8月 16日, 487쪽.

103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壬辰年(1892) 2月 1日, 48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92년 7월 24일 조선 정부는 울릉도 검찰사의(檢察事宜) 윤시병의 첩보 내용을 살펴보고 강원감영에 지시했다.

윤시병에 따르면 상납할 미역 100접(帖)의 운반선 3척이 울진 죽변과 영해 축산포에 정박했다. 월송만호는 평해군수과 함께 장차(將差), 교졸(校卒), 보부상 등을 동원하여 미역세를 이유로 현물을 압류했다. 월송만호는 영선감관(領船監官) 전사능(田士能)을 구금하고 구타했다. 조선 정부는 압류당한 선박도 즉시 출발시키고, 소란을 일으킨 보부상 두목 박영서(朴永西)를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104]

1892년 8월 28일 조선 정부는 울릉도 검찰사의 윤시병의 첩보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강원감영에 다시 지시했다.

윤시병에 따르면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미역 300접을 수확하여 상납하기 위해 배에 실어 운송했다. 그런데 평해군수와 울릉도장이 선박을 압류하고, 영선감관 전사능을 구타하여 한 달 넘게 구금했다. 미역 300접에 해당하는 상납전(上納錢)은 1접에 1,500냥으로 총 45만 냥이었다. 조선 정부는 강원감영에 평해군수와 울릉도장을 처벌하고, 미역 300접에 대한 45만 냥을 상납하도록 지시했다.[105]

그 후 1892년 9월 20일 삼척 우영장은 소란을 일으킨 보부상 두목 박영서를 체포했다고 보고했다. 강원감영은 박영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조속한 상납을 지시했다.[106]

1892년 12월 9일 조선 정부는 울릉도 수토에 대한 특별지시를 강원감영에 내렸다. 조선 정부는 새로 부임한 평해군수 조종성(趙鍾成)을 특별히 울릉도를 조사하도록 울릉도 사검관(査檢官)으로 임명했는데, 월송만호(울릉도장)를 포함한 평해군의

---

104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壬辰年(1892) 7月 24日, 489쪽.

105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壬辰年(1892) 8月 28日, 490쪽.

106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壬辰年(1892) 9月 20日, 490쪽. 그런데 1892년 11월 23일 울릉도 첨사(僉使)는 "울릉도 검찰관 윤시병이 미역 묶음 몇 백 접을 몰래 전라도에 보냈고, 본군에는 한 척의 배도 와서 정박한 것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본군의 수리와 수향 및 월송진의 수교가 삼척도호부에 이감되었다"라고 보고했다(『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壬辰年(1892) 11月 23日, 49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울릉도 수토 관련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조치였다.[107] 1893년 3월 12일 조선 정부는 평해군수 조종성의 특별검찰에 따라 월송만호(울릉도장)의 수토를 중단할 것을 강원감영에 지시했다.[108] 11월 9일 평해군수 조종성은 다시 울릉도 사검관으로 임명되었다.[109]

1893년 3월 10일 강원감영은 월송만호(울릉도장)의 보고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한 소재처를 찾았는데, 윤시병 검찰관의 미역 운반선 출발을 의정부에게 보고했다. 도민 배계주(裵季周)와 김익서(金益瑞)를 포함하여 영솔나상(領率羅商) 김한서(金漢瑞) 등의 12인은 미역을 포장하여 미역 상납선(藿船)에 싣고 출발했다.[110] 결국 울릉도 검찰사의 윤시병은 울릉도의 이권인 미역 상납을 추진하다가 공문 위조라고 판단한 월송만호(울릉도장)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강원감영은 울릉도장에게 지시하여 윤시병의 미역 상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1893년 9월 20일 강원감영은 평해군수의 울릉도 수토 관련 내용(牒呈)을 의정부에 보고했다. 평해군수는 민호와 개간지에 관한 조사 보고서와 함께 "울릉도를 조사한 후 제작한 지도 1본(本), 자단향(紫檀香) 12돗(吐), 청죽(靑竹) 3개, 강치가죽(可支魚皮) 2벌(領), 석간주(石間朱) 6되(升)" 등을 밀봉해서 내무부에 보냈다.[111]

1894년 1월 7일 조선 정부는 조종성의 울릉도 특별검찰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월송만호를 포함한 평해군의 부패한 서리(書吏)와 군교(軍校)를 처벌할 것을 평해군수

---

107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壬辰年(1892) 12月 9日, 490쪽. 1892년 6월 13일 조종성은 죄인 압송 관련 첩정(牒呈)을 강원감영에 보냈다. 조종성은 1892년 6월 전후 현지에 부임했는데 울진현 겸 평해군수(蔚珍縣兼任平海郡守)의 직책이었다(『各司謄錄』, 「關東啓錄」, 高宗 29年(1892) 6月 13日).

108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癸巳年(1893) 3月 12日, 491쪽. 1893년 5월 '행 평해군수 겸 울릉도첨사 조종성 영세불망비(行 平海郡守 兼 欝陵島僉使 趙鍾成 永世不忘碑)'는 울릉군 서면 태하리 465번지에 소재한다.

109 『承政院日記』, 高宗 30年(1893) 11月 9日. 1894년 7월 5일 평해군수 조종성은 내금위장(內禁衛將)에 임명되었다(『承政院日記』, 高宗 31年(1894) 7月 5日).

110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癸巳年(1892) 3月 10日, 491쪽.

111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癸巳年(1893) 9月 20日, 49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게 지시했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 수토와 관련한 평해군 하급관리의 부패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를 개간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 부세와 요역을 일률적으로 면제해주었다. 그런데 평해군이 서리와 군교를 별도로 정해 울릉도에 상주시켜 보리와 콩(麥太)을 몇 섬씩이나 거두었고, 해당 서리와 군교는 옷감·술값·짚신 등 각양각색의 잡비를 울릉도민들에게 요구했다. 조선 정부는 폐단을 부린 해당 서리와 군교를 체포할 것을 평해군수에게 지시했다.[112]

1894년 1월 7일 조선 정부는 장정(章程)에 근거하여 울릉도가 불통상(不通商) 지역이므로 조약을 준수할 것을 울릉도와 평해군에 지시했다. 울릉도는 본래 통상이 허용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범선이 함부로 정박할 수 없었다. 그런데 울릉도민 배상삼(裵尙三), 배치겸(裵致兼), 이운경(李雲景) 등은 외국인과 연락하여 곡물을 몰래 외국 범선에 실어서 유출시켰다. 조선 정부는 배상삼 등을 아문(衙門)에 압송할 것을 지시했다. 조선 정부는 "조약에 근거하여 울릉도가 불통상 지역이므로, 외국 범선이 들어오더라도 통상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울릉도 주민들이 다시는 몰래 외국 범선에 물건을 주지 못하게 할 것"을 울릉도와 평해군에 지시했다.[113] 이것은 조선 정부가 조일수호통상조규를 파악하여 울릉도가 불통상 항구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894년 1월 7일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들어온 평해군의 아전과 군교들의 명단을 작성해 보고할 것을 월송만호(울릉도장)에게 지시했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온 평해군 아전과 군교들을 모두 쫓아 보내며, 누구를 막론하고 본 아문(衙門)의 공문(公文)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 및 백성을 괴롭히는 경사(京司)나 영읍(營邑)의 하례(下隷)를 모두 구류하고 이름을 적어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조선 정부는 이러한 공문서

112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甲午年(1894) 1月 7日, 494쪽.

113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甲午年(1894) 1月 7日, 49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關文)의 내용을 한문과 한글로 만들어 울릉도민에게 알릴 것도 지시했다.[114]

고종은 1894년 12월 경상도위무사 이중하(李重夏)가 울릉도의 이주가 이미 수행되어 울릉도 수토 선격(船格)과 집물(什物)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자 승인했다.[115] 고종은 1895년 1월 29일 내부대신 박영효가 월송만호의 울릉도장 겸임을 해제하고, 대신 전임도장을 두어 울릉도 업무를 관장할 것을 제안하자 승인했다.[116] 그럼에도 갑오개혁기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불법벌목은 근절되지 않았다. 내부대신 박영효는 5월 20일 일본인이 울릉도에 난입하여 벌목하고 행패 부린 일을 주한 일본공사관을 통해서 금지시킬 것을 외부대신 김윤식에게 요청했다.[117] 이런 상황에서 조선 정부는 울릉도의 행정체제를 더욱 강화했다. 1895년 8월 고종은 내부대신 박정양이 울릉도의 도장을 도감(島監)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자 승인했다.[118] 그 결과 1895년 9월 20일 도감에 울릉도인 배계주가 판임관 대우로 임명되었다. 배계주는 인천 영종도 출신으로 개간 초에 이주한 사람이었다.[119]

---

114 『各司謄錄(27)』, 「江原道關草」, 甲午年(1894) 1月 7日, 494쪽.

115 『高宗實錄』, 高宗 31年(1894) 12月 27日.

116 『高宗實錄』, 高宗 32年(1895) 1月 29日; 『日省錄』, 高宗 32年(1895) 1月 29日.

117 內部大臣 錦陵尉 朴泳孝-外部大臣 金允植, 開國五百四年五月二十日, 「照會」, 『內部來去文』 6.

118 『高宗實錄』, 高宗 32年(1895) 8月 16日. "右ᄂᆞᆫ 該島가 海水中에 孤立ᄒᆞ야 陸地에 距離ᄂᆞᆫ 絶遠ᄒᆞ고 舟楫의 通行ᄋᆞᆫ 極罕ᄒᆞ야 居民이 政府에 命令ᄋᆞᆯ 不知ᄒᆞᄂᆞᆫ 中에 官置ᄒᆞᆫ 管攝者가 無ᄒᆞ야 于于移住ᄒᆞᆫ 民人이 榛蕪ᄅᆞᆯ 開拓ᄒᆞ고 聚落ᄋᆞᆯ 成ᄒᆞ나 統率ᄒᆞᄂᆞᆫ 權이 無ᄒᆞ면 散亂ᄒᆞᆫ 患ᄋᆞᆯ 免치 못ᄒᆞᆯ지니 本土人中에서 最其堪勝ᄒᆞᆯ 者ᄅᆞᆯ 擇ᄒᆞ야 島監에 任ᄒᆞ고 其俸給은 嗣後該島歲入ᄋᆞᆯ 查檢ᄒᆞ야 酌定ᄒᆞ기 前에ᄂᆞᆫ 姑且地方面執綱例로 官頒放은 無ᄒᆞ게ᄒᆞ미 合當ᄒᆞ올듯 此段ᄋᆞᆯ 閣議에 提出홈."(內部大臣 朴定陽-內閣總理大臣 金弘集, 開國五百四年(1895)八月十四日, 鬱陵島에 島監擇置ᄒᆞᄂᆞᆫ 請議書, 內部請議書 2) "官廳事項 鬱陵島에 島監을 置ᄒᆞᄂᆞᆫ 件을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시믈 經홈."(內閣記錄局官報課, 開國五百四年八月十六日 金曜日, 「第一百三十九號」, 『官報』)

119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183쪽. "官廳事項 鬱陵島人 裴季周로 島監을 定ᄒᆞ고 判任官待遇로홈."(內閣記錄局官報課, 開國五百四年九月二十日 水曜日, 第一百六十六號, 『官報』) 1940년 발간된 『한국근대도지(韓國近代道誌)』는 울릉도 주재 책임자의 변동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李朝 裵季南(고종조) 姜泳禹 裵季南(재래) 沈興澤(郡廳) 具然壽 沈能益 全泰興(순종조). 併合洪鐘旭."(道誌刊行委員會, 「江原道誌 卷之十一 附錄 鬱陵島」, 『韓國近代道誌』 23, 1940, 46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Ⅴ. 나오며

고종은 이규원을 접견하기 한 달 전에 1882년 5월 이명우의 보고서 「울릉도기(鬱陵島記)」를 검토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소견 당일 고종은 이규원에게 울릉과 우산의 위치를 다시 묻지 않았다.

고종은 1882년 6월 5일 이규원과의 접견에서 울릉도 이주 문제를 중심으로 대화했다. 이때 고종은 신속한 이주를 강조했고, 이규원은 단계적인 이주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고종과 이규원은 일본의 '송도'라는 표목에 대해서 "일본의 교활하고 거짓된 행동"이라고 파악했다. '죽도'를 '송도'로 명칭을 바꾸어 울릉도를 자국의 영토로 만들려는 일본의 계략을 간파한 것이다.

조선 정부는 검찰사 이규원과 밀사 이명우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울릉도 이주정책을 실시했다.

1882년 9월 6일 의정부는 울릉도장 전석규의 임명을 알리면서 울릉도에 진(鎭)의 설치를 준비할 것을 강원감영에 지시했다. 1883년 3월 16일 고종은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로 임명하고 포경 등의 일을 겸하게 했다. 그해 7월 강원도 관찰사는 울릉도 대황토포 4호, 곡포 5호, 추봉 2호, 현포동 5호 등 총 16호 54명이 이주한 사실을 보고했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 이주를 실행하면서 울릉도의 행정 관할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884년 3월 울릉도첨사 겸 삼척영장, 1884년 6월 울릉도첨사 겸 평해군수, 1888년 2월 첨사를 다시 도장으로 바뀌었는데, 평해군 소속 월송진만호가 울릉도장을 겸직했다. 울릉도장은 1888년부터 3월 전후 매년 울릉도를 수토하여 기본적으로 지도와 토산물을 바치고, 신구 호수, 남녀 인구, 개간 면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조선 정부는 1888년 울릉도 출신 서경수를 월송만호에 임명했다. 1890년 8월 7일 조선 정부는 월송만호 겸 울릉도장으로 이종인을, 1892년 2월 16일 조선 정부는 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송만호 겸 울릉도장에 박지영을, 1893년 1월 29일 월송만호 겸 울릉도장에 이완갑(李完甲)을 임명했다. 12월 9일 조선 정부는 평해군수 조종성을 특별히 울릉도를 조사하도록 울릉도 사검관으로 임명했고, 1893년 11월 9일 평해군수 조종성을 다시 울릉도 사검관으로 임명했다.

고종은 1894년 12월 경상도위무사 이중하가 울릉도 이주가 이미 수행되어 울릉도 수토 선격(船格)과 집물(什物)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자 승인했다. 고종은 1895년 1월 29일 내부대신 박영효가 월송만호의 울릉도장 겸임을 해제하고, 대신 전임도장을 두어 울릉도 업무를 관장할 것을 제안하자 승인했다. 1895년 8월 고종은 내부대신 박정양이 울릉도의 도장을 도감(島監)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자 승인했다. 그 결과 1895년 9월 20일 도감에 울릉도인 배계주가 판임관 대우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1889년 5월 6일 울릉도장 서경수는 울릉도에서 일본인이 전복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서경수는 통상이 허가되지 않은 항구에서 화물을 매매하면 "벌금 50만 문(文)을 부과하고 멕시코 은화(墨洋) 100원(元)의 벌금(罰)을 취하는 것"이 맞다며 일본인의 불법성에 대한 '벌금' 부과를 제기했다. 그러자 조선 정부는 부산감리가 부산영사관에 인도하여 장정을 살펴서 징벌하고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1894년 1월 7일 조선 정부는 장정(章程)에 근거하여 울릉도가 불통상 지역이므로 외국 범선이 들어오더라도 통상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울릉도 주민들이 다시는 몰래 외국 범선에 물건을 주지 못하게 할 것을 울릉도와 평해군에 지시했다. 울릉도는 본래 통상이 허용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범선이 함부로 정박할 수 없었다.

결국 조선 정부는 불통상 항구에 대한 조약에 근거하여 울릉도 내 일본인의 불법 행동에 대해서 '벌금'이라는 처벌을 내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지시했다. 무엇보다도 조선 정부는 조일수호통상조규를 파악하여 울릉도가 불통상 항구라고 판단했다. 법이 바르면 백성이 성실해지고 처벌이 합당하면 백성이 따르는 이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장

대한제국의 울릉도 조사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용정의 울릉도 파견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Ⅰ. 들어가며

기존 연구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의미에 집중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석도(石島)가 독도이다"라는 부분 때문이었다.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할 것'을 공포했는데 2조에서 울도의 관할 범위를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규정했다. 무엇보다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나오는 석도와 독도의 연관성은 한국의 고유영토론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과제였다.[1]

송병기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석도와 독도의 명칭 문제를 설명했다. 석도를 훈독(訓讀)하면 '독섬' 혹은 '돌섬'이 되는데,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독섬' 혹은 '돌섬'이라 불렀다. 석도는 바로 독도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이 강원도 관찰사서리 이명래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독도운운(獨島云云)'한 독도는 석도, 즉 '독섬'에서 음을 빌려온 것이다.

송병기는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 시찰위원 우용정의 파견, 지방관제 편입을 전체적으로 정리했다. 그럼에도 송병기는 울릉도 관제 개편의 내용 중 도감(島監)에서 감무(監務)로의 변화, 우용정의 파견 과정 내용 중 김용원(金庸爰)의 불법벌목 사건 및 박

1 허영란, 「독도 영유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학영사, 2004, 31쪽; 신용하,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2006, 32-33쪽; 한철호,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40, 2007, 21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closure in No. 72.

Acting Commissioner Laporte to Chief Commissioner Brown.

(Confidential.)

Sir, *Custom-house, Fusan, July 6, 1899.*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contained in letter of the 22nd June, I have the honour to report that, in company with Mr. Pei Kei Chu, the Government official of Woo Lung Do, and Messrs. Kim Long-won and Araki, of the Fusan Office, I proceeded in the Corean L S. "Hyenik" on a visit to Dagelet Island.

Leaving Fusan at 4 P.M. in the afternoon of the 28th, the highest peak of Dagelet Island was sighted for the first time at 7 A.M. the next morning, though it was not until 1 P.M. in the afternoon of the 29th that we arrived close on shore.

The appearance of Woo Lung Do, as the steamer aproaches it from the south, is very beautiful, and striking is the contrast afforded by its green and wooded collines when compared with the barren hills of the mainland.

The area of the island was roughly estimated by Captain Benzenius at 25 square miles, and the whole of its superficies, with the exception of a few patches of cultivated land, is covered from the shores, rising in most cases abruptly from the sea, to the summit of its highest mountain, 4,000 feet high, by a thick growth of large trees of all kinds.

Within a mile from the shores the chart shows a depth of water ranging from 1,000 to 1,600 fathoms, and in several instances the lead, thrown almost at the foot of the towering cliffs, gave no bottom at 100 fathoms; the water is, in consequence, so blue and so clear that, for experiment's sake, a bottle, lowered over the side with a line, could be distinctly seen at a depth of 25 feet.

Native Population.

The present population is said to be 3,000 adults and children, living in some 500 houses, not grouped together, but scattered all over the hills and along the shore, according to the exigencies of the owner's trade, and nowhere have I seen more than thirty houses together.

In 1879 Dagelet was a desert island. It is during that year that the first settlers crossed over from the mainlaind, Kang Won Do, distant about 70 miles. The pioneers appear to have been boat-builders, desirous of utilizing for their trade the wealth of timber growing on the island; then followed farmers, merchants, and fishermen. The latter, however, are not in large numbers, as the fish is not plentiful, and the great depth of the water proves a considerable impediment to the divers seeking sea-weed and shell-fish; still, over 2,000 piculs of sea-weed are, I was told, exported yearly from the island.

The number of inhabitants is continually increasing; this is due to the facts that life on the island is comparatively easy, that there are few or no taxes, and that the soil is so rich that no manure is ever needed or used. The settler, on landing, goes in search of a piece of land as flat and as easy of access as the island affords; having found it, he sets fire to the brush-wood and trees to clear away his ground. When the fire has burnt itself out, he builds a house from the material close at hand, removes as far as possible the roots of the charred trees and scratches slightly the surface of the soil which is then ready to receive seeds and to yield two crops every year, wheat or barley in the spring, potatoes or beans in the autumn. Deliciously cool water is found in abundance, brooks running everywhere from the hillsides, but I remarked with surprise the total absence of all the domestic animals that form so familiar a sight in a Corean village; during my walks on shore I did not see a dog, a pig, a horse or a cow, and even chickens seemed very scarce.

Native Industries, Trade, Produce, &c.

Boat-building is the only industry on the island; orders for the construction of boats are received in the spring from Kang Won Do, Kyong San Do, Chulla Do and Quelpart, and the new junks are generally completed and ready to sail in November, before the heavy weather sets in. Trade with the main-land is insignificant.

라포르트 보고서(189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순의 외교적 대응, 지방관제 편입 내용 중 울릉도 불법침입 일본인의 합법화 정책 시도 및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에 대한 '세금'과 '벌금'의 차이를 주목하지 못했다.[2]

홍정원은 1900년 하야시 공사와 아오키 외무대신의 울릉도 거주 일본인에 대한 방안과 지시를 압축적으로 정리했다. 홍정원에 따르면 아오키 외무대신은 하야시 공사의 보고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인의 왕래와 거주를 용인하고 세관 관리를 파견해서 출입 화물에 관세를 부과하여 징수한다면 한국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도민의 편익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방안을 한국 정부에 제의할 것을 지시했다.[3]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요한 자료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관제개혁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연속성에 주목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침입에 대한 대한제국의 대응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울릉도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이유와 의도를 살펴보고,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에 대한 인식 과정도 추적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먼저 대한제국이 1899년 부산해관 세무사 라포르트를 통해서 파악한 울릉도의 상황을 복원할 것이다. 기존 연구는 우용정의 울릉도 파견 과정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과정을 분리하여 다루었다. 우용정을 파견한 주체인 대한제국은 우용정을 파견하여 현지의 의견을 수렴하고 울릉도에 대한 정책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완성했다. 이 연구는 두 사건의 연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자는 울릉도의 관제개혁과 우용정의 파견 과정, 일본의 울릉도 합법화 정책 수립, 대한제국의 외교적 대응, 대한제국의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의 의미를 추적할 것이다.

---

2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191–215쪽.

3 홍정원, 「조선의 울릉도 독도 인식과 관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6, 17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I. 라포르트의 울릉도 조사

1. 라포르트의 조선에서의 활동

부산해관 세무사(稅務司) 라포르트(E. Laporte)는 1899년 총세무사 브라운의 명령으로 울릉도를 조사했고, 울릉도 시찰위원 우용정과 함께 1900년 6월 1-5일까지 울릉도를 방문했다.[4]

프랑스인 라포르트는 1883년에 묄렌도르프가 조선에 입국할 때 일반관리(Assistant)로 함께 들어왔다.[5] 1892년 3월 22일 인천해관에 근무하던 라포르트는 서울에서 뮈텔 주교를 방문했다. 뮈텔 주교에 따르면 라포르트는 프랑스로 휴가를 가기 전에 작별인사차 뮈텔 주교를 면담했다.[6] 그 후 가톨릭 신자인 라포르트는 제물포의 각종 소식을 뮈텔 주교에게 알려주었다.[7]

1897년 10월 19일 라포르트는 증남포(甑南浦)의 세관 업무를 조직하기 위해 제물포를 출발했다. 그날 뮈텔 주교는 선교 업무를 위해 라포르트와 함께 현익호에 승선했다. 뮈텔 주교에 따르면 라포르트는 현익호의 함장 스웨덴인 벤제니우스(C.G. Benzenius)를 소개해주었는데, 벤제니우스는 이탈리아어를 할 수 있었다. 벤제니우스는 조선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위해 작성한 미개항(未開港) 일람표를 보여

---

4 라포르트(E. Laporte)는 한자로 라보득(羅保得), 라포퇴(羅布退)로 표기되었다. 자료에는 라포르트를 '부산세관장(釜山稅關長)', '부산항감독관대리(釜山港監督官代理)'로 표기되어 있고, '세무사'와 '세무사대리'를 혼용했다. 필자는 한국 공문서인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에 기초하여 '해관세무사(海關稅務司)'라는 명칭을 사용했다(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光武 4年(1900) 6月 19日, 「照會 第十二號」, 『內部來去文』 13).

5 김원모, 『근대한국외교사연표』, 단국대출판부, 1984, 107쪽. 인천해관 세무사 라포르트의 집은 목사관으로 사용되다가 1969년 인천제일교회(중구 송학동 2가 13-6)로 신축되었다.

6 『뮈텔 주교 일기』 1, 1892. 3. 25,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40쪽.

7 『뮈텔 주교 일기』 1, 1894. 7. 28,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25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주었다.[8] 1898년 5월 29일 뮈텔 주교는 라포르트가 '제물포 세관 감독관'이라고 기록했다.[9]

1898년 7월 19일 라포르트는 부산해관 세무사대리(Acting Commissioner)로 임명되었고 1901년 7월 12일에는 인천해관 세무사대리로 임명되어 1905년까지 근무했다.[10]

1898년 9월 24일 부산 주재 일본영사 이쥬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는 부산해관 세무사대리 라포르트가 부산 주재 영국 영사대리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주한 일본공사 가토(加藤增雄)에게 보고했다.[11] 1898년 10월 1일 동래감리서리 김면수(金冕秀)는 주한 영국공사 조던(J.N. Jordan)의 통지 내용을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에게 보고했다. 그 내용은 부산해관(東萊港) 세무사 라포르트의 부산 주재 영국판리영사 겸임이었다.[12]

1899년 4월 8일 라포르트는 마산포(馬山浦)에 해관기지(海關基地)를 설치하기 위해 참서(參署) 김성원(金聲遠)과 함께 마산포에 출장을 갔다.[13] 1899년 10월 13일 부산해관 세무사 라포르트는 자신의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부산항과 부산진(釜山鎭) 사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했다. 당시 조약에 따르면 외국인은 거류지 밖 10리 이내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14]

---

8 『뮈텔 주교 일기』 2, 1897. 10. 19,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217쪽.

9 『뮈텔 주교 일기』 2, 1898. 5. 29,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290쪽.

10 김원모, 『근대한국외교사연표』, 단국대출판부, 1984, 185·294쪽.

11 『駐韓日本公使館記錄(13)』, 1898. 9. 24, 二. 各領事館機密往來信 (21) 機密京第15號 釜山港稅關長 代理 E. Laporte를 同港領事事務取扱에 任命 件, 釜山 一等領事 伊集院彦吉→京城 辨理公使 加藤增雄. 1909년 9월 베이징 주재 일본공사 이쥬인(伊集院彦吉, 1864-1924)과 청국 외부상서(外部尚書) 양돈언(梁敦彦)은 '간도협약'을 체결했다(김춘선, 「'간도협약' 체결 전후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동북아역사재단, 2009, 205-206쪽).

12 東萊監理署理 金冕秀→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1898. 10. 1, 『東萊港報牒』(규장각한국학연구원).

13 昌原郡守 李瑢敎→外部大臣, 1899. 4. 8, 『慶尙南北道來去案』(규장각한국학연구원).

14 『駐韓日本公使館記錄(14)』, 1899. 10. 13, 一二. 機密各館往復 (15) 機密第15號 釜山稅關長 E. Laporte의 私宅建築用 土地買收의 件, 釜山 領事館事務代理 領事官補 中村巍→京城 特命全權公使 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0년 4월 17일 뮈텔 주교는 부산에 있는 라포르트가 제물포 성당의 종 축성식과 미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그날 뮈텔 주교는 라포르트를 위한 타종을 실시했는데 "첫 번째 타종은 라(La)음. 라포르트를 위해 종을 쳤다"라고 기록했다.[15]

1904년 6월 1일 뮈텔 주교는 전날 진남포에서 제물포로 돌아온 라포르트를 만났다고 기록했다. 뮈텔 주교에 따르면 라포르트는 압록강으로 가는 15척의 일본 수송선을 보았는데, 증원 부대로 추정되는 1개 사단을 태운 배였다.[16]

1905년 7월 13일 라포르트는 인천사립박문학교(仁川私立博文學校)에 20원(元)을 기증했다.[17] 1905년 11월 2일 고종은 세무사 라포르트에게 훈 3등을 서훈(敍勳)했다.[18] 전 프랑스인 세무사 라포르트(羅保得)는 1914년 뉴욕 헤럴드신문사의 현금 출납계에서 근무했다.[19]

2. 라포르트의 1899년 울릉도 보고서

1899년 9월 23일 『황성신문(皇城新聞)』은 라포르트의 울릉도 조사 과정을 기록했다. 울릉도감 배계주가 일본인의 불법거주와 벌목에 대해서 조선 정부의 보호를 요청하자, 대한제국 내부는 총세무사 브라운(J.M. Brown, 柏卓安)에게 울릉도 조사를 요청했다.[20]

權助.

15 『뮈텔 주교 일기』 2, 1900. 4. 17,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461쪽.

16 『뮈텔 주교 일기』 3, 1904. 6. 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355쪽.

17 『皇城新聞』, 1905. 7. 13.

18 『高宗實錄』, 高宗 42年(1905, 光武 9年) 11月 2日. "法國人羅保得義國人別里尼幷特敍勳三等."(『大韓每日申報』, 1905. 11. 18)

19 『每日申報』, 1914. 6. 23, 雜同散異.

20 『皇城新聞』, 1899. 9. 23, 鬱陵島 事況 1899년 9월 23일 『황성신문』은 울릉도의 구성과 산물을 기록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울릉도는 6개(小六)의 부속섬(島)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가장 큰 섬은 우산도(于山島)와 죽도(竹島)였다. '대한지지'(玄采, 大韓地誌, 1899)에 따르면 울릉도는 옛 우산국(于山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황성신문』은 라포르트의 보고서를 간략히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21]

라포르트는 울릉도의 면적, 산물 등을 기록했다.

울릉도는 거리가 육지에서 200여 리, 면적이 약 75방리, 산의 높이가 4천 영척(英尺), 해안 3리 이내의 수심이 6천-9천 600영척이었다. 울릉도는 어업이 발달하지 못했지만 매년 미역(海菜) 2천 담(擔)을 운송했다. 울릉도의 산물은 봄에는 대소맥(大小麥)이고, 가을에는 마(薯)와 콩(豆)이었는데, 1898년 마(薯) 2만 포(包), 대맥(大麥) 2만 포, 황두(黃豆) 1만 포, 소맥(小麥) 5천 포를 수확했다. 수입 품목은 식물(食物)·연초(烟草)·포필(布疋) 등이었고, 수출 품목은 미역과 판목(板木)이었다.

라포르트는 해구봉(海狗峯) 사이에 약 100영척의 작은 만 '도동'에 일본인의 거주 현황을 기록했다.

일본 상선은 쌀(米), 소금(鹽), 자기(瓷器), 일본주(日本酒), 양포(洋布), 목면(木

이다. 울릉도의 크기는 사방 100리이고, 세 봉우리가 우뚝했다. 울릉도 산물(所産)은 시호(柴胡), 고본(藁本), 석남(石楠), 등초(藤草), 향목(香木), 규목(槻木), 노죽(蘆竹)이었다. 울릉도의 새 곽조(霍鳥, 슴새)도 기록되었다. 강치는 "예로부터 소 모양에 뿔이 없는 물짐승이 있으니 가지(可之)라고 한다"고 기록되었다(『皇城新聞』, 1899. 9. 23, 鬱陵島 事況). 대한지지의 지도에는 울릉도를 포함한 6개의 섬이 그려져 있고, 울릉도 바로 옆에 '우산'만 표기되었다.

21 "鬱陵島ᄂᆞᆫ 距陸二百餘里오 面積은 約計 七十五方里니 遍嶋中에 耕植ᄒᆞᄂᆞᆫ 地ᄂᆞᆫ 不多ᄒᆞ고 樹木이 海濱으로 從ᄒᆞ야 山巔ᄭᅡ지 鬱密ᄒᆞ얏ᄂᆞᆫ디 山高ᄂᆞᆫ 計有四千英尺이오 距岸三里內의 水深은 自六千 至九千六百英尺이라. 居民은 男女 約三百口ㅣ니 數十年來로 漸次 船匠 商客과 漁人 耕夫가 相隨而至ᄒᆞ야 居生ᄒᆞᄂᆞᆫ디 海水가 太深ᄒᆞ야 魚産은 未盛ᄒᆞ고 다만 海菜의 運出이 每年에 二千擔에 多至ᄒᆞ고 土質은 膏沃ᄒᆞ야 糞溉를 要치 아니ᄒᆞ고 樹叢燼灰로 覆耕ᄒᆞ야 一年兩熟을 得ᄒᆞ니 春季에ᄂᆞᆫ 大小麥이오 秋季에ᄂᆞᆫ 薯와 豆인디 上年所穫이 薯 二萬包, 大麥 二萬包, 黃豆 一萬包, 小麥 五千包이오 地勢가 太斜ᄒᆞ야 禾穀은 耕作지 못ᄒᆞ고 材木은 老年巨杉과 各種 貴重實木이 亦多ᄒᆞ고 槻木 香木 柏子木 甘湯木이 産有ᄒᆞ더라. 大陸과 通商이 極少한디 往往히 商旅의 輸入ᄒᆞᄂᆞᆫ 物貨ᄂᆞᆫ 食物 烟草 布疋 等 數包뿐이오 其載出ᄒᆞᄂᆞᆫ 物品은 海菜가 居多ᄒᆞ고 板木도 間或 裝運ᄒᆞ더라. 嶋邊海狗峯石壁亂叢中에 一小灣이 有ᄒᆞ니 約濶一百英尺이라 該灣으로 日本船商의 輸入品은 米鹽 瓷器 日本酒 洋布 木綿 火油 火柴 雨傘 等件인디 土民으로 더부러 交易ᄒᆞᄂᆞᆫ 法은 物로 物을 易ᄒᆞ고 其輸出品은 豆麥外에 滿山材木을 亂斫鋸削ᄒᆞ야 船隻에 載往ᄒᆞᄂᆞᆫ 者ㅣ 其値가 不資ᄒᆞ고 本嶋中에 築室旅居ᄒᆞᄂᆞᆫ 日本人이 二百餘名인디 土民을 侵凌ᄒᆞ야 相閧ᄒᆞᄂᆞᆫ 獘가 有ᄒᆞ더라 農民 商民의 公稅ᄂᆞᆫ 原定ᄒᆞᆷ이 無ᄒᆞ고 但 嶋監이 海菜에ᄂᆞᆫ 十分의 一을 徵ᄒᆞ고 木料에ᄂᆞᆫ 每船 一隻에 葉一百兩을 徵ᄒᆞ며 日本人은 賣貨時口文(百抽二)外에ᄂᆞᆫ 納稅ᄒᆞᆷ이 無ᄒᆞ더라. 本年九月에 內部에서 右項報告를 等因ᄒᆞ야 外部에 照會ᄒᆞ얏더니 外部에서 駐京日本公使에게 照會하야 該嶋에 潛越한 日本人을 訂期刷還ᄒᆞ고 不通商口岸에 密行買賣ᄒᆞᆷ을 禁戢케 하라 하얏더라."(『皇城新聞』, 1899. 9. 3, 鬱陵島 事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綿), 기름(火油), 성냥(火柴), 우산(雨傘) 등을 싣고 도동항에 들어왔는데, 울릉도민은 콩(豆)과 보리(麥) 등으로 일본 상품과 교환했다. 일본 상선은 콩, 보리, 목재(材木) 등을 싣고 떠났다. 200명의 일본인은 울릉도에 거주하면서 울릉도민과 대립했다. 울릉도감은 울릉도민에게 공세를 징수하지 않았지만 미역에는 10분의 1을 징수했다. 울릉도감은 목재에 대해서는 선박 1척당 엽(葉) 100냥(兩)을 징수했다. 일본인은 화물(貨)을 매매할 때 수수료(口文) 2/100(百抽二)를 제외하고 납세(納稅)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 정부가 불통상 항구이기 때문에 일본인에게 세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899년 9월 23일『황성신문』에 따르면 대한제국 외부는 1899년 9월 라포르트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의 추방 및 미개항장에서의 불법매매를 금지시킬 것을 주한 일본공사에게 요구했다.[22]

라포르트의 울릉도 보고서는『황성신문』의 요약 보도기사뿐만 아니라 영국 외교문서에 전문이 보관되었다.

1899년 7월 24일 주한 영국공사 대리 조던은 라포르트의 울릉도 파견 경위와 보고서 작성 과정에 대해서 영국 외무장관 솔즈베리(R.G. Salisbury)에게 보고했다. 라포르트는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은 브라운의 지시에 따라 파견되었고, 울릉도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조던에 따르면 한국의 동해안(east coast)에서 떨어져 있는 울릉도는 북위 37도 30분, 동경 131도에 위치하는데, 최근 울릉도감은 울릉도민이 일본인에게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며 서울에 호소했다. 총세무사(總稅務司) 브라운은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아 라포르트를 파견하여 울릉도를 조사하게 했다.

영국인 브라운은 라포르트의 보고서를 비밀리에 주한 영국공사 대리 조던에게 전달했다. 조던에 따르면 라포르트의 보고서에는 울릉도에 관한 흥미로운 사항이 있었

22 『皇城新聞』, 1899. 9. 23, 鬱陵島 事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일본인이 대한제국의 울릉도에서 착취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23]

1899년 7월 30일 총세무사 브라운은 라포르트의 울릉도 보고서를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제출했다.

브라운에 따르면 대한제국 내부대신은 1명의 서양인 직원을 파견해서 울릉도감 배계주와 함께 울릉도로 가서 사정을 조사하고 처리를 요청하는 서신을 총세무사인 자신에게 보냈다. 브라운은 울릉도감과 함께 증기선 현인호(Hyenik)를 타고 갈 것을 라포르트에게 지시했다. 그 후 라포르트는 울릉도의 주민, 생산물, 상업 현황, 일본인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브라운은 라포르트의 영문 보고서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내부대신에게 전달해줄 것을 외부대신에게 요청했다.[24]

1899년 7월 6일 부산해관 세무사 라포르트는 울릉도 조사 보고서를 총세무사 브라운에게 제출했다.

라포르트는 울릉도 출발 과정과 참여 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라포르트는 1899년 6월 22일 지시에 근거하여, 울릉도감 배계주, 부산해관의 방판(幇辦) 김성원(金聲遠, Kim Long-won)과 일본인 아라키(Araki)와 함께 증기선 현인호를 타고 울릉도(Woo Lung Do)를 조사했다. 라포르트는 6월 28일 오후 4시 부산을 출발하여 29일 아침 7시에 처음으로 울릉도를 목격했고, 29일 오후 1시에 울릉도 해안에 도착했다.[25]

라포르트는 울릉도의 인상과 수심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울릉도 남쪽으로 다가갔을 때, 물이 아주 푸르고 맑았으며, 온갖 종류의 큰 나무들

---

23 Mr. Jordan to Marquess of Salisbury, 1899. 7. 24, FO 881/7264. Part XII. No.72, p.83(The National Archives).

24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硏究所 編,「海關案」2,『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2卷, 1972, 592쪽.

25 Acting Commissioner Laporte to Commissioner Brown, 1899. 7. 6, FO 881/7264. Part XⅡ. Inclosure in No.72, p.84(The National Archives). 25제곱마일=64.751제곱미터. 1패텀=1.83미터. 라포르트는 일본 교역의 최대 개항장인 부산해관의 책임자였고, 당시 울릉도행 배편도 부산항에 있어 울릉도로 가기에 수월했다(홍성근,「라포르트의 울릉도 조사 보고서와 1899년 울릉도 현황」,『영토해양연구』6, 2013, 10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울창하게 우거진 푸른 모습이 아름다웠다. 현인호 선장 벤제니우스[26]에 따르면 울릉도의 크기는 25제곱마일이며, 해변이나 바다에서 솟아 있는 가장 높은 산은 4천 피트 정도의 높이였다. 라포르트에 따르면 해변 1마일 안의 수심은 천길(fathom)에도 바닥에 닿지 않았다. 줄에 병을 달아 측면으로 내렸더니 25피트 깊이에서도 뚜렷하게 병을 볼 수 있었다.[27]

라포르트는 '울릉도민'이라는 항목을 독자적으로 설정했고, 울릉도의 가구와 인구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울릉도민은 3천 명이고, 가구는 약 500호라고 하는데, 언덕과 해변을 따라 흩어져 살고 있었다. 라포르트는 30호 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

라포르트는 울릉도민의 이주 과정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1879년 울릉도(Dagelet)는 적막한 섬이었다. 그 후 첫 번째 이주민이 약 70마일 떨어져 있는 본토인 강원도에서 건너왔다. 초기 이주민은 울릉도에서 자라는 풍부한 목재를 활용하여 장사하고, 배를 만드는 사람으로 추정되었다. 그다음으로 농민, 상인, 어민들이 이주했다. 그러나 어민은 수적으로 많지 않았는데, 물고기가 풍부하지 않고, 바다가 너무 깊어서 잠수부의 해채나 패류의 채취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최근 매년 2천 피컬(piculs) 이상의 미역(해채)을 수출했다.[28]

라포르트에 따르면 울릉도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울릉도 생활이 비교적 편하고, 세금이 거의 없으며, 토질이 비옥하기 때문이었다. 울릉도 이주민은 상륙하자마자 평평하고 접근하기 쉬운 땅을 찾아서 불을 놓아 땅을 정리했고, 씨를 뿌렸다. 매년 두 차례, 즉 봄에는 보리나 밀, 가을에는 감자와 콩을 수확했다. 맛있는

---

26 스웨덴인 벤제니우스(C.G. Benzenius)는 현익호의 선장이었다. 한국의 연안을 운항하거나, 제주도 또는 상하이까지 운항하기도 했다(Robert Neff, 2010. 2. 16, *The Jeju Weekly*).

27 Acting Commissioner Laporte to Commissioner Brown, 1899. 7. 6, FO 881/7264. Part ⅩⅡ. Inclosure in No. 72, p. 84(The National Archives). 25제곱마일=64.751제곱미터. 1패텀=1.83미터.

28 Acting Commissioner Laporte to Commissioner Brown, 1899. 7. 6, FO 881/7264. Part ⅩⅡ. Inclosure in No .72 Native Population, p .84(The National Archiv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냉수가 풍부하고 시냇물이 산기슭 곳곳에서 흘렀다. 그런데 라포르트는 울릉도에서 개, 돼지, 말, 소를 목격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다.[29]

라포르트는 '울릉도민의 산업, 무역, 생산'이라는 항목을 독자적으로 설정했고, 울릉도의 선박 건조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선박 건조는 울릉도에서 유일한 산업이었다. 선박 주문은 봄에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와 제주도로부터 받았다. 새로운 범선은 일반적으로 11월 악천후가 시작되기 전에 건조를 끝내고 항해 준비를 마쳤다.

라포르트는 미역(해채)과 목재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본토와의 교역은 미미했다. 범선이 가끔 이주자를 싣고 도착하는데, 적은 양의 쌀과 연초, 몇 가지 피륙을 싣고 들어왔다. 화물이 팔리고 돈을 벌면, 범선은 미역(해채)과 판재를 싣고 회항했다.

라포르트는 울릉도민이 주로 밀, 보리, 감자를 먹고살았다고 기록했다. 1898년 울릉도의 수확량은 감자 2만 포, 보리(대맥) 2만 포, 누런 콩(황두) 1만 포, 밀(소맥) 5천 포였다.

라포르트에 따르면 울릉도의 나무들은 수령이 매우 오래되고, 키가 큰 소나무 숲이 언덕을 빽빽하게 뒤덮고 있으며, 각종 귀중하고 단단한 목재 역시 풍부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규목(Kiyak, 槻木, 느티나무), 백단향(香木), 백단목(Pak Cha, 柏子木), 감탕(Kam tan, 甘湯木) 등이 있었는데 감탕나무 껍질은 일본인들이 새덫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다.[30]

라포르트는 '울릉도에서의 일본인, 밀항과 벌목'이라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29 Acting Commissioner Laporte to Commissioner Brown, 1899. 7. 6, FO 881/7264. Part Ⅹ Ⅱ. Inclosure in No.72 Native Population, p.84(The National Archives). 1피컬은 60.48킬로그램이다.

30 Acting Commissioner Laporte to Commissioner Brown, 1899. 7. 6, FO 881/7264. Part Ⅹ Ⅱ. Inclosure in No.72 Native Industries, Trade, Produce, p.84(The National Archiv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라포르트는 절벽들 가운데 거의 숨어 있는 물개 서식지를 지나서 작은 포구인 도동을 보았다. 현익호는 배계주의 조언에 따라 먼저 울릉도의 동쪽 지역의 도동으로 갔는데, 가장 큰 규모의 일본인 거주지가 있는 곳이었다.

도동은 입구의 넓이가 약 100피트이고, 연안에서 벗어나 항해하는 선박을 목격하기 어려웠다. 마을은 계곡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40호의 집과 오두막이 있었고, 일본인 남자 140명과 여자 23명이 살고 있었다.

라포르트에 따르면 5척의 범선과 2척의 동력선이 도동 해변에 비어 있었는데 높은 파도도 닿지 않는 곳에 끌어올려져 있었다. 7척의 선원은 약 60명으로 일본인을 200명 이상 데려왔다. 그 밖에 1척의 범선은 콩 280포를 싣고 도동 앞에 있었는데 라포르트가 도착하고 2시간 후에 떠났다. 라포르트는 6월 27일 2척의 큰 동력선이 목재를 싣고 일본으로 출발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기록했다. 라포르트는 도동에서 선적을 위해서 잘라진 단단한 목재를 상당량 목격할 수 있었다. 3척의 일본 범선은 예비스(Yebisu)호, 코예이(Koyei)호, 쓰루오예이(Sluoyei)호였다. 일본 범선은 수입 화물을 가득 실었는데, 돗토리현(Itoki Province, 鳥取縣) 사카이(Sakai, 境港) 세관에서 발급한 부산행 허가장을 갖고 있었다.

라포르트는 울릉도의 주요 수입 물품으로 쌀, 소금, 자기, 술, 양포, 목면, 등유, 성냥, 우산 등을 기록했다. 수입 물품은 대부분 콩, 보리, 미역과 교환했다. 일본인들이 정해놓은 수출 품목의 가치는 콩과 보리는 1곡(약 5.13부셀, 293파운드)=2달러=4실링, 미역(해채)은 1피컬(133파운드)=2달러=4실링이었다. 이것을 부산에서 구입하려면 반 이하의 가격으로 살 수 있었다.[31]

라포르트는 일본인의 벌목 책임자와 불법벌목 상황을 보고했다. 라포르트는 와키

---

31 Acting Commissioner Laporte to Commissioner Brown, 1899. 7. 6, FO 881/7264. Part ⅩⅡ. Inclosure in No.72 Japanese on Dagelet, their Smuggling and Wood-cutting. p.85(The National Archives). 293파운드는 133.022킬로그램. 1,000냥은 일본 엔으로 환산하면 200엔의 가치. 200엔의 가치는 약 1만 배 정도 되므로 200만 엔=1,000냥은 현재 2천만 원의 가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 쇼타로(間宮)와 아마노 겐조(天野)가 관리의 허가를 받아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그들을 울릉도 벌목 책임자이자 주요 수출업자로 파악했다.[32] 라포르트는 일본인이 울릉도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인은 벌목을 위해 나무껍질을 벗긴 다음 약 6개월 후에 마른 나무를 찍어서 벌목했다.[33]

라포르트는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침입과 활동,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립 상황을 보고했다.

일본인은 대부분 약 160마일 떨어져 있는 오키섬 출신이었다. 일부 일본인은 7-8년 전부터 울릉도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894년에 울릉도에 도착했다.

일본인은 울릉도 북쪽 지역의 대장간에서 범선을 건조하고 있었다. 라포르트는 울릉도 북쪽 지역 2곳의 일본인 거주지를 방문했는데, 한 곳은 25명의 일본인이 점거하고 있었고, 다른 곳은 16명의 일본인이 점거하고 있었다. 일본인은 10척의 어선과 1척의 범선을 건조하고 있었고, 대장간은 활발히 가동되고 있었다. 라포르트는 일본인이 2곳 모두에서 불법적인 교역을 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34] 라포르트는 약 30명의 일본인이 울릉도 남쪽 지역에도 거주하고 있는데 대부분 벌목 일을 하는 모습을 멀리서 볼 수 있었다.

라포르트는 울릉도민들이 일본인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울릉도 마을의 대표들은 일본인에 대한 불평 사항을 담은 청원서를 라포르트에게 전달했다.

---

32 Acting Commissioner Laporte to Commissioner Brown, 1899. 7. 6, FO 881/7264. Part ⅩⅡ. Inclosure in No.72 Japanese on Dagelet, their Smuggling and Wood-cutting. p.85(The National Archives). 오성일이 울릉도 거주 일본인에게 수출품에 대한 세금을 내기로 약조문을 작성한 내용에 두 상인의 명단이 있었다. 와키다 쇼타로와 아마노 겐조는 울릉도일상조합의 조합원이었다(박병섭, 『한말 울릉도 독도 어업 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262쪽; 홍성근, 「라포르트의 울릉도 조사 보고서와 1899년 울릉도 현황」, 『영토해양연구』 6, 2013, 122쪽).

33 Acting Commissioner Laporte to Commissioner Brown, 1899. 7. 6, FO 881/7264. Part ⅩⅡ. Inclosure in No.72 Japanese on Dagelet, their Smuggling and Wood-cutting. p.85(The National Archives).

34 Acting Commissioner Laporte to Commissioner Brow, 1899. 7. 6, FO 881/7264. Part ⅩⅡ. Inclosure in No.72 Japanese on Dagelet, their Smuggling and Wood-cutting. p.85(The National Archiv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라포르트는 1899년 4월 울릉도민이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한 일본인과의 대립을 보고했다. 일본인이 한인 여성 1명을 폭행하자, 울릉도민은 배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일본인은 폭력적으로 돌변하더니 총과 칼로 무장하고 한인 남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마을로 쫓아 보냈다. 마침 울릉도감 배계주가 부재 상태였기 때문에 울릉도의 책임을 맡은 관리는 몇 그루의 규목을 벌목할 수 있는 허가장을 주었다.[35]

라포르트는 울릉도민의 '세금'이라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울릉도의 농민이나 상인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울릉도감은 바다에서 채취하여 울릉도에 가져온 모든 미역(해채)에 대해서 10퍼센트를 징수했고, 선박 건조에 사용된 나무에 대해서는 범선 1척당 평균 1만 푼(100兩)을 징수했다. 라포르트는 일본인이 물품 매각을 돕는 중개인(중간상인)에게 주는 2퍼센트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라포르트는 울릉도에 불법거주하는 약 250명의 일본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울릉도감은 일본인이 벌목한 목재에 대해 얼마의 보상을 받는데 성공한 것으로 추정했다. 라포르트는 울릉도감과 울릉도민이 일본인을 하루빨리 퇴출시키는 것을 소망한다고 확신했다.[36]

라포르트는 1899년 6월 30일 오후 5시 울릉도를 출발하여 7월 1일 오후 4시 부산에 도착했다. 라포르트는 별도로 느티나무와 백단향 견본, 콩·밀·보리 견본을 총세무사 브라운에게 보냈다.[37]

1899년 라포르트의 보고서를 통해서 대한제국은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의 활동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

35 Acting Commissioner Laporte to Commissioner Brown, 1899. 7. 6, FO 881/7264. Part ⅩⅡ. Inclosure in No.72 Taxes, p.86(The National Archives).

36 Acting Commissioner Laporte to Commissioner Brown, 1899. 7. 6, FO 881/7264. Part ⅩⅡ. Inclosure in No.72 Taxes, p.86(The National Archives).

37 Acting Commissioner Laporte to Commissioner Brown, 1899. 7. 6, FO 881/7264. Part ⅩⅡ. Inclosure in No.72 Taxes, p.86(The National Archiv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울릉도의 관제개혁과 우용정의 울릉도 파견 과정

1. 울릉도의 관제개혁

울릉도의 관제개혁은 울릉도 이주에 따른 지속적인 울릉도 행정체제의 변동 과정을 보여준다. 고종은 1882년 6월 5일 검찰사 이규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울릉도의 개척을 지시했다.[38] 1884년 3월 울릉도 첨사 겸 삼척영장, 1884년 6월 울릉도 첨사 겸 평해군수, 1888년 2월 첨사를 다시 도장으로 바꾸었는데, 평해군 소속 월송진만호가 울릉도장을 겸직했다.[39] 고종은 1895년 1월 29일 내부대신 박영효가 월송만호의 울릉도장 겸임을 해제하고, 대신 전임도장을 두어 울릉도 업무를 관장할 것을 제안하자 승인했다.[40] 고종이 1895년 8월 16일 울릉도감 설치를 승인하자, 조선 정부는 1895년 9월 20일 울릉도민 배계주를 도감에 임명(差定)하는 동시에 판임관 대우를 『관보』에 게재했다.[41]

대한제국은 울릉도의 행정 관할을 위한 제도 정비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는데, 울릉도감 설치 이후 울릉도의 인구와 토지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울릉도를 지방제도(地方制度) 안으로 편입할 것을 결정했다. 의정부참정 내부대신 박정양(朴定陽)은 1898년 5월 울릉도에 도감을 두고 지방제도로 편입하는 것에 관한 청의서(請議書)를 제출했다.

청의서에 따르면 울릉도가 동쪽 바다(東溟)에 홀로 서 있어서 육지와 너무 떨어져 있었는데, 대한제국 정부는 형편의 상황(形便에 如何)과 거주민의 숫자(居民의 幾許)

---

38 『承政院日記』, 高宗 19年(1882) 6月 5日.

39 『高宗實錄』, 高宗 21年(1884) 3月 15日; 『高宗實錄』, 高宗 21年(1884년) 6月 30日; 『高宗實錄』, 高宗 25年(1888년) 2月 6日.

40 『高宗實錄』, 高宗 32年(1895) 1月 29日; 『日省錄』, 高宗 32年(1895) 1月 29日.

41 『高宗實錄』, 高宗 32年(1895) 8月 16日; 內閣記錄局官報課, 開國五百四年九月二十日 水曜日, 「第一百六十六號」, 『官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상세하게 알지 못했다. 이에 울릉도의 형편과 호구를 사실대로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울릉도감에게 지시했다. 배계주의 보고(成冊)에 따르면, 거주민이 277호수, 남녀 인구가 1,137명, 개간한 전토가 4,774두락이었다. 내부대신 박정양은 울릉도의 인구, 호수, 토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제도 안에 포함(添入)시키는 칙령안(勅令案)을 회의에 올렸다.

박정양의 칙령안에 따르면 1896년 칙령 제36호 6조 아래 7조를 다음과 같이 보강(添入)했다. "울릉도 도감 1인을 두고, 본토인을 택하여 판임관으로 대우하고, 규칙은 내부대신이 정한다."[42] 칙령 제36호는 1896년 8월 4일 '지방제도와 관제와 봉급과 경비의 개정에 관한 건(地方制度와 官制와 俸給과 經費의 改正에 關ᄒᆞᄂᆞᆫ 件)'이었다.[43]

결국 대한제국은 1895년 8월 울릉도 도감제도를 신설했고, 1898년 5월 울릉도를 지방제도와 관제 등의 법적 규정에 포함시켰다. 대한제국은 울릉도 출신을 울릉도감에 임명하고 울릉도의 관할을 내부의 규칙에 포함시켰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대한제국은 1899년 울릉도에 감무(監務)를 설치하기로 계획했다. 『황성신문』은 울릉도 관제 개정안에 따른 인원의 구성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1899년 3월 1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대한제국 내부는 울릉관제(鬱陵官制)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도감을 감무[44]라고 개칭하고 임기를 5년으로 계획했다. 울릉도 관원은 감무 1인, 도장 1인, 서기 2인, 통인(通引) 2명, 사명(使命) 2명으로 구성될 예정

---

42 議政府參政內部大臣 朴定陽, 光武 2年(1898) 5月, 「鬱陵島區域을 地方制度中添入에 關ᄒᆞᆫ 請議書」, 『各部請議書存案』 5.

43 內閣記錄局官報課, 建陽 元年 8月 6日, 「第三百九十七號」, 『官報』.

44 고려 예종 1년(1106) 때부터 현령(縣令)보다 낮은 지방관인 감무(監務)가 파견된 적이 있었다. 감무는 유망민(流亡民)을 안정시켜 조세(租稅)와 역(役)을 효과적으로 직접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되었다. 조선 태조 때 감무가 설치되었으나, 태종 13년(1413)에 군현제의 개편에 따라 감무가 현감(縣監)으로 개칭되었다(『高麗史』, 睿宗 元年(1106) 4月 29日; 『太祖實錄』, 太祖 5年(1396) 9月 28日, 『太宗實錄』, 太宗 13年(1413) 10月 15日; 元昌愛, 「高麗 中·後期 監務增置와 地方制度의 變遷」, 『淸溪史學』 1, 1984,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울릉도 각 동의 책임자는 집강(執綱)이다. 차기 감무는 집강이 연서하여 도장(島長) 1명을 선출하여 내부의 추인을 받는다. 도장은 울릉도민 중 회의로 투표하여 다수결에 따라 선출하고 3년에 한 번씩 바꾼다. 울릉도 관원의 봉급은 울릉도의 호구와 전결을 조사하여 울릉도민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여 지급한다."[45]

결국 대한제국은 도장만 두어서는 행정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감무와 도장 각 1명을 임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울릉도의 행정 통치는 감무–도장–집강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대한제국은 1899년 감무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그런데 1900년 2월 27일 『제국신문』은 울릉도를 '울도', 도감을 '감무'로 바꾼다고 보도했다.[46] 1900년 3월 1일 『황성신문』도 '울도관제의 개정(鬱島官制 改定)'안을 보도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대한제국 내부는 울릉도 관제개정안을 의정부 회의에 제출했다. 도감은 주임관인 감무라 개칭하고 임기는 5년으로 내부 지방국장의 지휘를 받았다. 구성은 도장 1인, 서기 2인, 통인(通人) 2명, 사령 2명이었다.[47]

1900년 4월 12일 의정부 참서관(參書官) 조병규(趙秉圭)는 감무 설치 계획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울릉도에 감무를 두는 것(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鬱陵島에 監務를 두는 것)'에 관한 결재를 중추원 참서관 김사묵(金思默)에게 요청(照會)했다.[48] 실제 대한제국은 울릉도의 관제개혁을 바로 실시하지 못하고 1년 이상의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 후 1900년 7월 '울릉감무(鬱島監務)'라는

---

45 『皇城新聞』, 1899. 3. 1.

46 "울릉도 일흐을 울도라고 고치고 울릉도 도감은 감무라고 고친다더라."(『帝國新聞』, 1900. 2. 27)

47 "향후 도감의 선출은 도중(島中) 각동집강(各洞執綱)이 연서성명(聯署姓名)하고 도장(島長) 중 성망(聲望)이 우수(優著)한 인물을 내부(內部)에 보고한다. 도장은 울릉도민 중 회의투표하야 다수결로 선출하며, 3년에 한 번 교체한다. 관리의 봉급액은 울도 호구와 전결을 조사한 후에 울릉도민의 공의를 따라서 결정한다."(『皇城新聞』, 1900. 3. 1)

48 議政府參書官 趙秉圭→中樞院參書官 金思默, 光武 4年(1900) 4月 12日, 「第二十四號 照會」, 『照會』 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명칭이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에 사용되었다.[49] 그런데 1900년 10월 2일『제국신문』은 '울도관제의 개정'이 실행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제국신문』에 따르면 울릉도의 관제는 도감을 도무로, 도장을 주임으로 바꾸어 울릉도민에게 세금을 거두어 주사와 서리에게 월급을 주려고 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오히려 대한제국이 울릉도의 관제를 군수로 설치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50]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것은 '울도군수' 설치 이전에 '울릉도감'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2.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침입을 둘러싼 한일공동조사 합의

1)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침입 문제를 둘러싼 한일의 대립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대한제국의 관료와 결탁하여 울릉도에서 불법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1900년 3월 14일 의정부찬정 내부대신 이건하(李乾夏)는 울릉도에서 일본인이 불법으로 삼림을 벌목하며 매매하고, 울릉도민에게 행패를 부리는 상황을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보고했다. 여기에 농상공부 사검관(司檢官) 김용원(金庸爰)이 1899년 일본인과 결탁하여 규목을 불법벌목하려는 사건에 대한 처리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건하는 울릉도감 배계주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배계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인은 울릉도 항구에 경비(守直)를 세워서, 울릉도감의 출발을 방해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했다. 일본인은 불법벌목 관련 재판비용 수만 원을 요구하며 울릉도감 배계주를 위협했다. 배계주는 울릉도민이 모금한 비용으로 일본인의 부당한 재판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울릉도의 규목(槻木)은 울릉도

---

49 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光武 4年(1900) 7月 5日,「第十四號 照會」,『內部來去文』13.

50『帝國新聞』, 1900. 10. 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민과 일본인에게 모두 중요한 산물이었다. 울릉도민에게 규목은 중요한 땔감이었고, 일본인에게는 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배계주는 울릉도의 규목을 일본인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 이미 두 차례 보고했다. 배계주에 따르면 일본인이 불법벌목한 규목은 전 도감 오성일(吳聖一之)이 발급해 준 문서(文字)에 근거했다. 만약 일본인의 불법벌목을 금지시키지 않는다면 울릉도민은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배계주는 울릉도민과 함께 울릉도의 불법벌목을 금지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일본인은 경계(經界)를 없애고 계속해서 벌목했다. 1899년 8월과 9월 두 달 사이에 일본인은 천여 그루의 나무를 불법벌목했다. 배계주는 규목을 완전히 일본인에게 빼앗길 수 없어서(全奪) 정부(部庭)에 알리기 위해 출발했지만, 일본인은 울릉도 항구(各處港口)에서 경계(守直)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배계주에 따르면 일본인은 1899년 구매처(買處)의 문서(文字) 때문에 도리어 재판(訟)을 받았다며 울릉도감을 위협하며 재판비용 수만 원(元)을 요구했다. 배계주는 가산을 모두 털어도 태반이 부족했는데, 울릉도민이 각각 전곡(錢穀)을 내어 자금(錢)을 마련하여 겨우 화를 피할 수 있었다.

배계주에 따르면 1899년 8월 농상공부 사검관 김용원은 제익선(濟溺船) 건조에 관한 농상공부훈령을 소지하고, 규목 80그루(八十株)를 벌목할 계획이었다. 김용원은 규목 판매를 근거로 금전(債錢) 3천여 냥(兩)을 일본인에게 빌리고 일본인과 접촉하여 울릉도에 함께 도착하여 규목을 함부로 베려고 했다. 배계주가 나무 베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김용원은 일본인의 채무(日債) 독촉을 견디기 어렵다며 죽기로써 간청했다. 배계주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울릉도민에게 빌려서 김용원의 채무를 갚았지만, 아직 김용원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배계주에 따르면 울릉도는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서 업무를 받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배계주는 규목 보호가 매우 중요하며, 울릉도민의 땔나무는 규목에서 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롯되고, 규목을 판매하여 국가 재용에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했다.

배계주는 일본인과의 재판 관련 비용(浮費)을 마련하기 위해 울릉도민에게 수만 원(圓)을 징수했고, 사검관 김용원이 주민에게 3천여 냥을 빌렸다. 만약 이것을 갚지 못한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진실로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결국 내부대신은 이건하의 보고서에 대해 재판비용을 강압한 일본인을 처벌할 것, 3천여 냥의 금액을 울릉도민에게 반환할 것,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철수 등을 주한 일본공사관에 요구해달라고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요청했다.[51]

1900년 3월 16일 『제국신문』에 따르면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이 울릉도민을 피습했는데, 대한제국은 일본인의 소환을 주한 일본공사관에게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52] 이에 따라 1900년 3월 16일 외부대신 박제순은 울릉도 불법 일본인의 철수 요청(退去徹底) 및 3천여 냥 반환(錢貨責還) 등을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에게 요구했다. 그 이유는 일본인이 김용원의 계약서를 근거로 규목을 벌목했기 때문이다.

외부대신 박제순은 1899년 10월 2일에 접수된 주한 일본공사관의 답변을 기록했다. 주한 일본공사관은 원산주재 일본영사관(元山領事館)의 전보에 근거하여 사실을 조사한 뒤에 울릉도에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서 기일을 정해 물러가도록 명령했다. 박제순은 주한 일본공사관이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의 소환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했다.[53]

---

51 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光武 4年(1900) 3月 14日, 「第六號 照會」, 『內部來去文』 13.

52 『帝國新聞』, 1900. 3. 16.

53 외부대신 박제순은 재판비용을 강압한 일본인 및 울릉도민의 3천여 냥(兩) 반환 등 배계주의 보고서를 상세히 기록하여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이 아직도 버티면서 갖가지 폐단을 일으켰습니다. 첫째, 주한 일본공사는 속히 위원을 파견하여 울릉도에 가서 엄중히 조사하여 돈을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둘째, 일본인이 빠른 시일 안에 물러가도록 타일러서 다른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15), 光武 4년(1900) 3월 16일, 〈四. 外部來信〉(9) 照會第18號 「鬱陵島 日人 發惡實情의 指摘과 退去徹底 및 錢貨責還 措處要求」, 大韓 外部大臣 朴齊純→大日本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閣下) "本官이 貴政府의 事情을 살펴 특별히 好意上 편의의 조치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0년 3월 26일 의정부찬정 내부대신 이건하는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의 소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주한 일본공사에게 발송하도록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요청했다.[54] 1900년 3월 27일 박제순은 '울릉도거류일인사건(鬱陵島居留日人事件)'에 관해 일본공사에게 조회하고 답변을 받았다고 내부대신 이건하에게 알렸다.[55]

1900년 5월 14일 외부대신 박제순은 울릉도 조사를 둘러싼 일본공사의 제안을 내부대신 이건하에게 보냈다. 그런데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의 제안에는 1899년 9월 16일자 외부대신 박제순의 조회를 기술하고 반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박제순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일본인 수백 명이 한 구역을 함부로 점거하고 촌락을 이루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목재를 벌목하고 물화(物貨)를 훔쳐 운반하고 거주하는 백성을 침범하고 학대했다. 일본인은 조금이라도 그 뜻을 어기면 마음대로 폭동을 일으키고 무기를 사용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도 지방관리가 금지하지 못했다. 1899년 9월 중 다카오(高雄) 서기생(書記生)이 울릉도에 가서 불법거주 하는 일본인들에게 물러가기를 명령하자 일본인들은 항의했다.

하지만 하야시는 일본인이 울릉도에 가서 벌목한 것은 울릉도감의 허가를 받은 일이고 상당한 벌목료(伐木料)까지 납부했으니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 사실과 조회 내용은 조금 서로 어긋난다.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1900년 3월 16일자 외부대신 박제순의 조회 중 세 가지를 기술하고 조목조목 의문을 제기했다. 하야시는 박제순의 주장이 매우 의심스럽다

행하려고 元山에 碇泊한 警備艦에 領事館員을 탑승케 하여 정황을 조사해 本邦人을 說諭調回케 하려고 파견했다."(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議政府贊政內部大臣 閔丙奭, 光武 3年(1899) 9月 22日, 「第二十號 照覆」, 『內部來去文』 7(奎17794)) "日本公使 來文에서 鬱陵島에 파견된 元山領事館員이 섬에 있는 日本人을 訂期退去시키겠다고 했다."(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議政府贊政內部大臣 閔丙奭, 光武 3年(1899)10月 3日, 「照會」, 『內部來去文』 7(奎17794))

54 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光武 4年(1900) 3月 26日, 「第七號 照會」, 『內部來去文』 13.

55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3月 27日, 「第五號 照會」, 『內部來去文』 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주장했다. 하야시는 어느 정도 사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야시는 첫째, 패소자가 재판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보통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패소한 일본인이 도리어 울릉도감에게 재판비용을 요구한 것은 큰 모순이었다. 둘째, 일본인이 값을 지불하고 벌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그 금액을 마련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하야시의 주장은 "이번에 파견할 한일 조사위원이 각 항의 사실을 조사하여 복명(復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처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 다만 하야시는 한일 당국자가 조사위원의 복명을 기다려 서울(京城)에서 심의하여 판별(辨理)할 것을 제안했다.[56]

박제순과 하야시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99년 9월 16일 외부대신 박제순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 서한을 주한 일본공사관에 보냈다. 1899년 9월 일본공사관 다카오 서기생은 울릉도에 건너가 불법거주 일본인들에게 철수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만큼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둘러싼 상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부 관료의 지시까지 어길 정도로 세력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하야시는 1899년 해당 도감의 허락을 받아 벌목을 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1900년 3월 16일 외부대신 박제순은 주한 일본공사관에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울릉도 거주 일본인이 한국 관리를 울릉도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 둘째, 일본재판소의 소송 문제로 일본인의 재판비용과 관련하여 울릉도감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 셋째, 사검관 김용원이 일본인에게 배상하기 위해 주민에게 거둔 비용의 지급 문제 등이었다.

---

56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5月 14日, 「第七號 照覆」, 『內部來去文』 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지만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사실관계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 조사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도 하야시는 일본인이 값을 지불하고 벌목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야시는 일본인의 행동이 합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일본인이 잘못한 행동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다음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 결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대한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하야시는 한일 조사위원이 조사를 할 수 있지만 판결을 내릴 권리가 없다며 향후 조사위원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서울에서 심의하고 판결할 것을 제안했다.

2) 우용정의 울릉도 파견과 한일공동조사 합의

대한제국은 1899년 울릉도감과 울릉감무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울릉도 현지조사를 준비했다. 1899년 울릉도는 일본인의 불법벌목 등으로 한일 양국의 현안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제국은 울릉도 수호를 위해서 특별히 울릉도 시찰위원(視察委員)으로 우용정을 파견할 계획을 수립했다.[57]

1899년 12월 15일 의정부찬정 내부대신 이건하는 울릉도 개척과 관련하여 우용정의 파견을 상주(上奏)하여 승인(旨)을 받았다. 이건하에 따르면 울릉도는 개척된 지 여러 해가 되었고 호구가 번성하고 토지가 점차 개간되었지만, 아직까지 울릉도의 조사(調査)와 사무(事係)가 부족했다. 내부는 시찰위원 우용정을 파견(派定)하여 먼저 울릉도에 가서 일체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울릉도민을 위무할 것을 요청

57 그 후 1900년 6월 우용정은 「울도기(鬱島記)」, 「고시(告示)」, 「훈령개운회사중(訓令開運會社中)」, 「훈령 13동(訓令 十三洞)」, 「보고서(報告書)」, 「보고서후록. 울릉도재류 일본인조사요강(報告書 後錄. 鬱陵島在留 日本人調査要領)」 등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무엇보다도 우용정은 「울릉도재류일본인사건(鬱陵島居留日人事件)」에 관한 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했다(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鬱島記 告示 訓令開運會社 訓令十三洞 報告書 後錄」,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 10年 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58]

1899년 12월 20일 『제국신문』은 내부시찰관 우용정의 파견 결정을 보도했다. 『제국신문』에 따르면 대한제국 의정부 대신은 울릉도의 정형과 울릉도민의 안무라는 취지로 상주했다.[59]

1899년 12월 23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울릉도 시찰위원 우용정의 임명에 대해서 외무대신 아오키(青木)에게 보고했다. 하야시는 우용정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첫째, 울릉도의 호구와 토지에 대한 조사를 실행한다. 둘째, 러시아인의 상륙에 대한 소문을 파악하고, 울릉도 일체의 상황(情形)을 상세히 시찰한다. 셋째, 일본인들의 소환이 과연 실행에 옮겨졌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하야시는 당시 러시아인의 울릉도 상륙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60]

그런데 1900년 3월 28일 『제국신문』에 따르면 주한 일본공사는 울릉도의 공동조사를 외부에 요구했다.[61] 한국과 일본은 울릉도 조사단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1900년 5월 7일 『제국신문』은 한일공동 울릉도조사단의 구성을 보도했다. 『제국신문』에 따르면 주한 일본공사관은 일본 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출발을 지체했다. 사실 브라운과 우용정이 함께 간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브라운은 참가하지 않았다.[62]

1900년 5월 9일 의정부찬정 내부대신 이건하는 주한 일본공사관이 울릉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출발 날짜를 2주 연기했는데,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줄 것을 의정부찬정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요청했다.[63]

---

58 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 3年 12月 19日 火曜日, 「第一千四百四十八號」, 『官報』.

59 『帝國新聞』, 1899. 12. 20.

60 『駐韓日本公使館記錄』(13), 1899. 12. 23, 一〇. 本省往來信 (49) 發第110號 「鬱陵島 視察委員 任命의 件」, 林 公使→青木 大臣.

61 『帝國新聞』, 1900. 3. 28.

62 『帝國新聞』, 1900. 5. 7.

63 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光武 4年(1900) 5月 9日, 「第九號 照會」,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0년 5월 10일 『제국신문』은 주한 일본공사관이 울릉도 조사위원의 구성을 두 번이나 연기했다고 보도했다.[64] 1900년 5월 16일 『제국신문』에 따르면 주한 일본공사는 대한제국 내부대신과 함께 조사 내용을 각각 준비하여, 외부에서 회동하여 울릉도 조사위원의 파견 날짜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65]

1900년 5월 14일 외부대신 박제순은 울릉도 조사 일정을 내부대신 이건하에게 보냈다. 박제순에 따르면 주한 일본공사는 주무대신과 파견위원이 회동(會同)하여 출발 시기를 다시 의정(議定)할 것을 제안했다. 주한 일본공사는 울릉도 조사(調査) 내용의 초안(抄錄)을 보냈는데, 파견위원이 각각 1부씩 소지할 것도 제안했다. 박제순은 내부가 '울릉도 재류 일본인 조사요령(鬱陵島在留日本人調查要領)' 초록을 검토하고 날짜를 정해줄 것을 요청했다.[66]

1900년 5월 19일 내부대신 이건하는 외부대신과 함께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외부(外部)에서 1900년 5월 21일 오후 2시에 회동할 것을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제안했다.[67] 1900년 5월 22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주한 일본공사와 내부대신은 1900년 5월 21일 오후 1시에 외부에서 회동하여 일본인 소환(日人招還事)과 한일 조사위원(兩國調查委員) 파견 등을 논의했다.[68] 5월 21일 양국은 울릉도 파견과 관련된 사항을 조율할 수 있었고, 5월 25일 울도시찰위원 우용정은 인천항을 출발했다.

1900년 5월 24일 『황성신문』은 인천에서 부산으로 출발하는 울릉도 조사위원의

『內部來去文』 13.

64 『帝國新聞』, 1900. 5. 10.

65 『帝國新聞』, 1900. 5. 16.

66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5月 14日, 「第七號 照覆」, 『內部來去文』 13.

67 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光武 4年(1900) 5月 19日, 「第十一號 照會」, 『內部來去文』 13.

68 『皇城新聞』, 1900. 5. 2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명단을 보도했다. 울릉도 조사단은 내부시찰관 우용정, 동래감리서 주사 김면수, 주한 일본공사 관원 와타나베(渡邊) 등이었다.[69]

울도시찰위원(鬱島視察委員) 우용정은 제1호 훈령(訓令)에 따라, 1900년 5월 25일 인천항(仁川港)을 떠나 27일 일본경부(日本警部) 1인(員)과 함께 소카와마루(木曾川丸)를 타고 부산항(釜山港)에 도착했다. 우용정은 감리서주사(監理署主事) 김면수(金冕秀), 해관세무사(海關稅務司) 라포르테(E. Laporte, 羅保得), 방판(幇辦) 김성원(金聲遠), 일본 부영사(日本副領事) 겸 영사관보(領事官補)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赤塚正輔), 경부(警部) 와타나베(渡邊鷹治郎) 등과 함께 30일 창룡환(蒼龍丸)을 타고, 31일 오후 울릉도감 배계주가 거주하는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했다. 우용정은 6월 1일부터 5일까지 울릉도 정황을 조사했다. 한일공동조사를 마친 우용정은 1900년 6월 6일 창룡환을 타고 오전 10시 울릉도를 출발했다.[70]

1900년 6월 19일 내부대신 이건하는 울도시찰위원 우용정의 보고에 따라 주한 일본공사와 심의판리(審議辦理)를 위해서 회담(會辦)을 하자고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제안했다. 내부대신 이건하는 지난번 주한 일본공사가 서울에서 심의판리하자고 제안했으니 6월 23일 오후 1시 외부(外部)에서 회의(會辦)하자고 제안했다.

1900년 6월 20일 대한 외부대신 박제순은 우용정의 울릉도 조사에 따른 회의 개최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에게 요구했다.[71] 1900년 6월 22일 외부대신 박제순은 주

---

69 『皇城新聞』, 1900. 5. 24;『帝國新聞』, 1900. 5. 24. 1900년 5월 30일 우용정은 감리서주사 김면수, 부산해관 세무사서리 라포르테, 부산 해관방판 김성원,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보 아카쓰카 쇼스케, 경부 와타나베, 보호순검(保護巡檢) 신태현(申泰炫)과 김형욱(金亨郁), 일본 보호순검 2인과 함께 부산에서 출발했다(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報告書」, 光武 4年(1900) 6月,『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 光武 4年(1900) 6月,「鬱島記」,『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70 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光武 4年(1900) 6月 19日,「第十二號 照會」,『內部來去文』13;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報告書」,『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71 『駐韓日本公使館記錄』(15), 光武 4年(1900) 6月 20日,〈四. 外部來信〉(14)「照會第45號 鬱陵島 調查報告에 대한 會同審議 案內」, 大韓 外部大臣 朴齊純→特命全權公使 林權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일본공사의 회담 연기 요청을 내부대신 이건하에게 전달했다.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울릉도에 동행했던 일본영사관보 아카쓰카 쇼스케의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회의 연기를 제안했다.[72] 1900년 6월 26일 외부대신 박제순은 다시 우용정의 울릉도 조사에 따른 회의 개최를 하야시에게 요구했다.[73]

1900년 6월 26일 외부대신 박제순은 '울릉도안건(鬱陵島案件)'에 대해서 6월 27일 오후 2시 주한 일본공사와 회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내부대신 이건하에게 알려주었다.[74]

1900년 6월 26일 외부주사(外部主事) 이원용(李源鎔)은 우용정의 울릉도 조사 내용을 보내줄 것을 내부주사(內部主事) 서병염(徐丙炎)에게 요청했다.[75] 1900년 6월 27일 외부주사 박지양(朴芝陽)은 '울릉도조사안건(鬱陵島調查案件)'을 내부주사 신현구(申鉉九)에게 송부했다.[76]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거주로 인해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대립은 우용정을 비롯한 한일공동조사위원의 현지조사로 귀결되었고,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일공동조사위원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

72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22日, 「第十號 照覆」, 『內部來去文』 13.

73 『駐韓日本公使館記錄』(15), 光武 4年(1900) 6月 26日, 〈四. 外部來信〉(16) 「鬱陵島 事情의 會辦日字 正式通告」, 大韓 外部大臣 朴齊純→特命全權公使 林權助.

74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26日, 「第十一號 照覆」, 『內部來去文』 13.

75 外部主事 李源鎔→內部主事 徐丙炎, 光武 4年(1900) 6月 26日, 「第十二號 通牒」, 『內部來去文』 13.

76 外部主事 朴芝陽→內部主事 申鉉九, 光武 4年(1900) 6月 27日, 「第十三號 通牒」, 『內部來去文』 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V. 울릉도 불법침입 일본인 문제 합법화 시도에 대한 대한제국의 외교적 대응

1. 울릉도 불법침입 일본인의 합법화 시도

1900년 6월 우용정은 6월 1-5일까지 울릉도 조사를 마치고, 「울릉도거류일인사건(鬱陵島居留日人事件)」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대신에게 제출했다.[77] 우용정의 파견 전후에도 일본인은 울릉도에 여전히 불법거주하고 있었다. 1900년 6월 18일 『제국신문』은 울릉도 거주 한국인과 일본인 호수와 인구 등을 보도했다. 한국인은 호수 401호, 인구 1,641명이었다. 일본인은 집이 57칸이고, 인구가 44명이었다. 울릉도의 개간 전토는 7,717두락이었다.[78]

1900년 6월 27일 내부대신 이건하는 외부대신 박제순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와 함께 울릉도에서 조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미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자국 파견원의 조사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양국의 회의를 연기한 적이 있었다.[79] 그날 박제순은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침입에 대해 일본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하야시에게 요구했다. 박제순은 주한 일본공사의 신속하고 직접적인 조치를 재촉했다. 박제순은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의 '추방'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자리에서 박제순이 먼저 제안하고 하야시가 답변했다.

"울릉도 조사를 이미 마쳤으니 일본인을 돌려보내길 요구합니다."

"이전 조사는 한국에서만 했으므로 깊이 믿지 않았는데, 지금 일본영사의 보고를

---

77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報告書」,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 光武 4年(1900) 6月, 「鬱島記」,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78 『帝國新聞』, 1900. 6. 18.

79 『帝國新聞』, 1900. 6. 2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니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모두 과실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보고하여 명령을 받아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주한 일본공사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직권이 있는데, 어찌 정부에 보고한 후 실행하고자 합니까? 울릉도는 개항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거주 일본인이 울릉도민을 침학함이 날로 심하니 늦출 수 없습니다."

"일본인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울릉도에 명령하여 금지시키겠습니다."

그럼에도 박제순은 "만약 오늘 철수했다가 내일 다시 온다면 장차 어떻게 조처하습니까?"라고 묻자, 하야시는 "그때에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있을 것이니, 두 마음을 품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외부대신과 주한 일본공사는 일본인의 추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지 못하고 오후 5시에 회의를 마쳤다.[80] 주한 일본공사는 일본 정부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회의 결과를 지연시키려고 노력했다.

1900년 7월 4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1900년 6월 27일 오후 2시 30분 대한제국 외부에서 회견한 내용을 외무대신 아오키(青木周藏)에게 보고했다. 우용정과 아카쓰카(赤塚正助)는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입회하여 조사를 완수하고, 복명서(復命書)를 제출했다. 하야시는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를 '합법화' 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외부대신 박제순은 "양국의 조약을 어기고 울릉도에 거주하는 130명의 일본인을 신속하게 철수시킬 것"을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에게 요구하며 그 근거로 1899년 일본이 "다카오 서기생을 파견하고 철수를 명령한 사례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양국 관리의 조사 결과 "일본인과 울릉도민 사이의 관계를 상세하게 알았다"면서도 향후 "일본 정부의 훈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외

80 『皇城新聞』, 1900. 6. 29; 『帝國新聞』, 1900. 6. 2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대신 박제순에게 주장했다.[81] 하야시는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의 '추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하야시는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하야시는 아카쓰카 영사관보의 보고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인식했다.

첫째, 오래전부터 일본인이 울릉도에 거주하는 것을 울릉도감이 묵인했고, 둘째, 울릉도 벌목도 쌍방의 합의에 의해 이뤄졌으며, 셋째, 일본인은 수출품에 대해 '납세' 의무를 수행했다.

하야시에 따르면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부 한국인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배계주 도감과 결탁하여 일본인을 배척했다. 배계주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일본인의 철수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하야시는 울릉도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면 첫째, 일본의 배편이 끊어져 육지와의 교통편이 사라지고, 둘째, 울릉도 농산물을 판매할 곳이 없어지고, 셋째, 울릉도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처가 막힐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하야시는 울릉도 물산의 판매와 수입 때문에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야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울릉도 거주 일본인이 일본 정부의 철수 명령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공사는 1900년 7월 4일 울릉도 거주 일본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외무대신 아오키에게 제시했다. 하야시는 한국 정부가 십수 년 동안 일본인이 울릉도에 거주하는 것을 묵인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하야시는 일본 정부가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철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2] 하야시는 대한제국 정부 측에는 금지시킨다고 하면

---

81 『駐韓日本公使館記錄』(14), 1900年 7月 4日, 〈九. 機密本省往信 一·二〉(42) 機密第54號「鬱凌島在留 우리나라 사람 退去에 관한 意見上申」, 林 公使가 外務大臣 靑木周藏.

82 하야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을 일본 외무부에 요청했다. "차제에 한국 정부에 대하여는 울릉도에 일본인이 재류하게 된 것은 십수 년 전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재류를 묵인한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제국 정부는 그 제의에 동의를 표하기 곤란하다고 회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14), 1900年 7月 4日, 〈九. 機密本省往信 一·二〉(42) 機密第54號「鬱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 일본 정부의 훈령을 핑계로 일본인의 소환을 미뤘고, 오히려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를 합법화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일본 정부의 승인을 요구했다.

그 결과 1900년 7월 18일 외무대신 아오키는 울릉도 거주 일본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부각시키며, 일본인의 합법적 거주 방안을 지시했다.

외무대신 아오키는 한국 정부의 책임과 묵인을 비판했다. 아오키는 원래 대한제국 정부가 주한 일본공사의 의견처럼 울릉도의 단속을 책임져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양국의 우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호의로 두 번이나 주한 일본공사관원을 파견해 일본인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일본인은 통항(通航)이 오래되어 관계를 끊을 수 없으므로 울릉도에 또다시 모여들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단속법을 제정하여 일본인을 단속해야 한다. 아오키에 따르면 "오늘까지 한국 정부가 묵인해온 결과 일본인은 다년간 울릉도에 통항했다. 울릉도민은 일본인에 의지하여 해상 교통편을 얻었고, 농산물을 매매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상품을 구입했다. 일단 일본인의 도항이 금지되면 울릉도민도 지대한 불편을 느낄 것이다."[83]

외무대신 아오키는 변방의 일본인이 울릉도를 오랫동안 통항해왔기 때문에 관계를 끊을 수 없으므로, 철수시켜도 다시 울릉도에 입항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일본인의 울릉도 통항의 이유를 "단속의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에서 단속법을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한국 정부가 묵인해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아오키의 인식은 하야시 공사의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아오키는 "일본 정부가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와 잡거를 공인하고, 한국 정부가 세관 관리를 파견하여 출입 화물에 관세 부과 및 기타 세금을 징수하게 한다"라는 방침을 확정했다. 아오키는 "대한제국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울릉도민의 편익을 유

島在留 우리나라 사람 退去에 관한 意見上申」, 林 公使가 外務大臣 青木周藏)

83 『駐韓日本公使館記錄』(14), 1900年 7月 18日, 〈一〇. 機密本省來信〉(18) 機密送第36號「鬱陵島在留 日本人 退去 件」, 外務大臣 青木周藏이 在韓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할 수 있다"라며 '일거양득의 양책(良策)'이라고 주장했다. 아오키는 "대한제국이 일본의 제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한 일본공사의 의견대로 대한제국이 그 단속의 책임을 지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지시했다.

결국 하야시 보고서에 기초한 일본 외무성의 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한제국은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를 인정하면서, 울릉도 거주 일본인에게 세금을 거둔다. 둘째, 울릉도 거주 일본인이 철수를 거부한다면 대한제국이 일본인을 추방시켜야 한다. 하야시는 적극적인 대한제국 개입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인의 울릉도 침투를 강화하려고 시도했다.[84]

부산 주재 영사관보 아카쓰카는 일본인의 울릉도 합법적 거주 방안을 기초하는 데 사실을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야시는 1900년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 합법화 방안을 기획했고, 외무대신 아오키가 이를 승인했다. 20세기 초반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의 합법화 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불법적 영유권의 기원을 마련했다.

---

84 『駐韓日本公使館記錄』(14), 1900年 7月 18日, 〈一〇. 機密本省來信〉(18) 機密送第36號「鬱陵島在留 日本人 退去 件」, 外務大臣 靑木周藏이 在韓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홍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계속 재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면서 조선과의 협상에 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울릉도 재류 일본인들을 철수시킬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계속 재류시키려 한다는 것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홍정원, 「조선의 울릉도 독도 인식과 관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6, 177-17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대한제국의 불법 일본인에 대한 '벌금' 부과

우용정의 현지조사 이후에도 울릉도에 불법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한 소환은 진척되지 못했다. 일본인은 1901년까지 울릉도의 재목이 좋은 규목(느티나무)을 모두 벌목한다는 전략하에 집중적인 벌목을 수행했다.

1900년 7월 7일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은 울릉도감 배계주가 내부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서 지속적인 일본인의 불법활동을 보도했다.

내부시찰관 우용정은 일본인의 불법벌목을 금지시키겠다는 약속을 일본영사로부터 받아냈다. 하지만 우용정이 상경한 이틀 후에 일본 상선 5척이 도착하여 일본인의 불법벌목이 더욱 심해졌다. 일본인은 전 도감 오상일(吳相鎰)의 벌목 허가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7월까지 허가받은 전재항(田在恒)의 벌목표(代木票)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계주는 주한 일본공사관에 조회하여 이를 금지시켜줄 것을 내부에 청원했다.[85] 배계주에 따르면 오상일은 2주(二株)만 허가했는데 일본인이 70여 주(七十餘株)를 불법벌목했고, 전재항은 80주(八十株)를 허가했는데 일본인이 83주(八十三株)를 불법벌목했다. 배계주는 일본인의 불법벌목이 더욱 심해져서 도무(監務)의 권력으로 금지시킬 수가 없었다고 보고했다.[86]

사실 1900년 7월 5일 내부대신 이건하는 울릉도 시찰위원이 귀환하자마자 다시 삼림을 벌목한 일본인의 소환을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요청했다.

이건하는 우용정의 울릉도 조사 이후 울도감무 배계주의 보고서를 상세히 기록했다. 배계주에 따르면 시찰관 우용정이 돌아간 다음 날 일본 선박 5척이 도착하여 일본인의 벌목이 더욱 심해졌다. 일본인들은 전 도감 오상일의 허가표(許斫票)와 전재항의 벌목표를 보여주며 벌목의 권한을 주장했다. 하지만 배계주는 "시찰관의 조사

85 『帝國新聞』, 1900. 7. 7.

86 『皇城新聞』, 1900. 7. 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당시 일본영사도 일본인의 울릉도 침범을 금지시켰다"라고 기록했다. 지금 일본인이 자행하는 불법벌목(亂斫)을 도무의 권력으로는 금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배계주는 주한 일본공사와 담판해서 일본인들을 하루속히 소환(撤還)시켜줄 것을 내부에 요청했다.

내부대신 이건하는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侵暴)이 날로 심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내부대신 이건하가 외부에서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와 대화했는데, 하야시는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의 정기소환(定期撤還)을 약속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와 함께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의 정기철수를 합의(約定)했다.[87]

1900년 8월 27일 의정부찬정 내부대신 이건하는 다시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의 추방을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요청했다. 이건하는 울도도감 배계주의 보고서에 따라 일본인의 '정기소환'을 외부에 요구했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의 답변(照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88] 이건하는 주한 일본공사관에 요청해서 일본인의 울릉도 철수 날짜를 정할 것을 박제순에게 재촉했다.

1900년 9월 6일 외부대신 박제순은 내부대신 이건하의 울릉도 관련 공문을 주한 일본공사관에 전달했다. 이건하에 따르면 울릉도 감무 배계주는 일본인의 불법벌목 사실을 기록했다. 배계주에 따르면 일본인 하마모토(畑本吉藏)는 울릉도의 전 감무 오상일과 전재항의 벌목 허가증을 소지하고, 규목을 무차별 벌목했다. 외부대신 박제순은 "일본영사에게 명령하여 해당 일본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라며 일본인의 철수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에게 강력히 요구했다.[89]

---

87 "日本領使도 更勿侵犯ᄒᆞᆯ 意로 在島日本人의게 丁寧申飭ᄒᆞᆫ다 … 向日貴部에셔 日本公使와 談辦ᄒᆞᆯ 時에 日人撤歸ᄒᆞᄂᆞᆫ 事件을 日本政府에 卽爲報明ᄒᆞ야 定期撤還ᄒᆞᆯ 意로 日本公使와 約定ᄒᆞ야ᄉᆞ온즉 貴部로셔 更卽知照于日公館ᄒᆞ오셔 在島日人의 撤歸一款을 指日示明케 ᄒᆞ시믈 爲要事."(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光武 4年(1900) 7月 5日,「第十四號 照會」,『內部來去文』13)

88 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光武 4年 8月 27日,「第十七號 照會」,『內部來去文』13.

89 『駐韓日本公使館記錄』(15), 光武 4年(1900) 9月 6日,〈四. 外部來信〉(23) 照會第63號「鬱陵島 日人不法在留 및 伐木嚴辦 要求」, 大韓 外部大臣 朴齊純→特命全權公使 林權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0년 9월 7일 외부대신 박제순은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의 제95호 문서를 반박하면서,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불법성을 제기했다.

외부대신 박제순은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가 공문에서 제시한 네 가지 조목을 반박했다. 박제순은 한국 정부가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를 묵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제순은 울릉도 일부 벌목 허가에 대해서 전 도감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양국의 조사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인들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 울릉도는 원래 황산(荒山 또는 蔚山)이었고, 한국 정부가 18년 전부터 백성을 모집하여 개척했다. 그러나 일본인의 거주가 시작된 것은 3-4년 또는 5-6년 전부터였다. 일본인이 불통상 항구에 마음대로 들어와 살며 몰래 목재를 운송하는 것은 명백히 장정(章程)에 위반되었다. 이에 울릉도 감무가 여러 번 물러가도록 명령했지만 일본인은 저항하며 거부했다. 박제순은 일본인의 재화에 수출입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벌금'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연구는 일본인의 '세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정작 대한제국은 일본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이라고 주장했다.[90]

둘째, 벌목의 매매는 전 도감(島監)의 일시적인 실수였다. 그런데 일본인은 이를 핑계로 마구 벌목했고, 양국의 관리가 조사한 뒤에도 거리낌 없이 벌목을 자행했다.

셋째, 도감이 소위 '항구를 나가는 재화'(수출세)에 대해 100분의 2세(稅)를 징수하는 것은 벌금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이는 일본인이 스스로 원한 것이었다. 그럼에

---

90 유미림은 일본인이 울릉도에서 '수출화물'에 대해 100분의 2세를 납세했는데, 납세 주체가 화주로서 일본인임을 명시했다고 판단했다. 유미림은 외부대신 박제순이 1900년도 100분의 2세를 '수출세'가 아닌 벌금으로 보았지만 라포르트·스미스·박제순 모두 '세금'을 '관세'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유미림, 「1900년 칙령 제41호 제정 전후 울릉도 '수출세'의 성격」, 『영토해양연구』 7, 2014, 137-140쪽).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는 개항장을 중심으로 양국의 관계를 설정했다. 양국의 무역규칙도 개항장에 한정되었다(『高宗實錄』, 高宗 13年(1876) 7月 6日). 불통상 항구인 울릉도는 '관세' 또는 '수출세'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었다. 오쿠하라(奧原碧雲)에 따르면 1905년 전후 울릉도의 주요 수출품은 콩, 보리, 목재, 오징어였고, 주요 수입품은 쌀과 목면이었다. 오쿠하라는 수출품과 수입품 모두 관세가 필요 없었다고 기록했다. 일본인은 범선 여러 척을 소유하여 울릉도의 수출입품 운송을 도모했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현금으로 상거래를 하지 않고 콩을 표준으로 하여 교환했다(奧原碧雲,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1907(유미림 역, 「해제」, 『독도와 울릉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6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 항구로 들어오는 재화(수입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2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더구나 100분의 2세는 수출입세로 보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였다.[91]

넷째, 울릉도민은 일본인이 행패를 부려 점점 원수처럼 여기고 있으며, 울릉도민과 일본인은 편리한 관계가 아니었다.

외부대신 박제순은 조일수호조규에 기초하여 울릉도의 일본인들을 추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제순은 일본 정부가 일본인의 정당한 행위라며 죄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악습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주한 일본공사관이 상응하는 비용을 협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약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제순은 한국 정부가 "운화(運貨)에 대해 관세(關稅)를 징수하며 벌목에 방략(方略)을 만들어 현상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제순은 "주한 일본공사가 이해(利害)의 계산에 능숙하니 조약을 신중히 살피고, 일본 정부에 자세히 알릴 것이며, 울릉도에 체류하는 일본인이 기일을 정해 추방시켜줄 것"을 요구했다.[92]

결국 박제순은 미개항 항구인 울릉도에 수출입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일본이 조일수호통상조규를 어겨가며 울릉도에서 불법 경제활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울릉도의 불법벌목에 대해서 100분의 2세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대한제국과 일본은 불법거주 일본인의 소환을 둘러싸고 안용복 사건 이후 새로운 대립에 돌입하면서 치열한 논리와 전술 싸움을 벌였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지연작전을 폈고, 대한제국은 벌금 부과로 대응했다.

1900년 9월 14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대한제국 외부는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에게 세금을 거두고 일본인의 거주를 허가해달라는 주한 일본공사의 요청을 거절했

---

91 1883년 6월 22일(양력 7월 25일)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제37관에 따르면 수출입 양곡은 모두 100분의 5를 과세했다(『高宗實錄』, 高宗 20年(1883) 6月 22日). 일제강점기 해관세칙도 종가 5퍼센트 수출세를 부과했다.

92 『駐韓日本公使館記錄』(15), 光武 4年(1900) 9月 7日, 〈四. 外部來信〉(24) 照覆第64號 「鬱陵島 日人退去不應에 대한 論駁」, 大韓 外部大臣 朴齊純 →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 대한제국 정부의 논리는 분명했다. 울릉도는 개항장이 아니므로 수세를 거둘 수 없고, 양국의 조약을 무력화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93]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의 추방을 요구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0년 9월 12일 외부대신 박제순은 9월 6일과 7일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행위를 옹호하는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의 조회 내용, 그에 대한 외부의 반박 내용을 내부대신 이건하에게 전달했다.

박제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편선(便船)을 보내주면 주한 일본영사에게 지시하여 소환장을 발부하고 관련자를 일본 법정에서 심문한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대한제국 정부에 알렸다. 외부대신 박제순은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추방이 한일 양국의 조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에게 주장했다. 박제순은 일본 정부가 편선 등을 핑계 삼지 말고 날짜를 지정하여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철수 계획에 대해서 확정해줄 것을 주한 일본공사에게 촉구했다. 이것은 대한제국이 일본인 추방 등 울릉도에 관한 행정 관할을 구체적으로 실행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울릉도 합동조사 이후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 합법화를 위한 논리를 다음과 같이 개발했다. 첫째, 일본인이 울릉도에 거주한 것은 수십 년 전부터였고, 울릉도 도감도 이를 묵인(黙許)했다. 둘째, 울릉도의 나무 벌채(樹木伐採)는 울릉도 도감의 요청으로(島監依賴) 합의하에 매매(合意賣買)한 것이다. 셋째, 울릉도에서 수출입 화물의 징수는 수출세와 수입세가 동일했다. 넷째,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울릉도 주민이 대륙(大陸)을 이동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했다. 하야시는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 거주 일본인을 강제로 소환시키려면 그동안 일본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하야시는 울릉도 도감이 일본인의 거주를 '묵인'했고, 울릉도 거주 일본인이

---

93 『皇城新聞』, 1900. 9. 1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심지어 하야시는 일본인이 울릉도에서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하려고 했다. 도둑이 매를 드는 형국이었다.

그러자 외부대신 박제순은 편선 등을 핑계 삼지 말고 날짜를 지정하여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소환 계획을 확정할 것을 주한 일본공사에게 촉구했다. 당시 박제순의 반박 논리의 핵심은 수출입 관세의 부과가 아니라 벌금의 부과였다. 박제순은 일본 정부가 정당행위를 주장하면서 죄를 징계하지 않고 '악'을 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지연작전을 간파하고 조일수호통상조규에 기초한 일본 정부의 정상적 행동을 요구했다. 박제순은 "일본이 일을 질질 끌기를 일삼는 계획이므로(只事延拖之計) 진실로 민망하다"라고 비난했다.[94]

1900년 9월 15일 외부대신 박제순은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를 한국 책임으로 돌리는 주한 일본공사의 답변서를 내부대신 이건하에게 전달했다.

박제순에 따르면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대한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첫째, 한국 정부는 주한 외국 선교사들이 개항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울릉도 거주 일본인만 소환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주한 일본공사는 일본인이 관습적으로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책임도 대한제국 관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주한 일본공사는 "울릉도에 일본인이 거주하는 것이 조약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95]

---

94 외부대신 박제순은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체화했다. 첫째, 대한제국은 18년 전부터 이주 백성을 모집하여 울릉도를 개척했다. 일본인은 기간을 논할 필요가 없이 불통상 지역(非通商口岸)에 함부로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확실히 법을 어겼다(確係違章). 울릉도감이 여러 번 철수할 것을 요구(飭)했으나 일본인이 항의하고 따르지 않았다. 둘째, 일본인은 벌목을 합의하여 매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은 전 도감의 일시적인 잘못이었다. 일본인은 전 도감의 합의를 빙자하여 함부로 벌목했는데, 그 숫자를 계산하지 못할 정도였다. 셋째, 울릉도감이 일본인에게 징수한 세금은 단지 항구 밖으로 나가는 물화(貨)에 100분의 2를 '벌금'(罰款)으로 대신했다. 이것은 일본인이 스스로 희망한 것이었다(此由日人之自願). 항구로 들어오는 물화(貨)는 여기에(此例) 포함되지 않았다. 화물이 들어올 때는 징수하지 않았으며, 100분의 2는 통상적인 수출세에 비하면 적은 액수였다(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9月 12日, 「照覆」, 『內部來去文』 13).

95 "如外國宣教師之多數 散居於不許各地者 則貴政府認之 而獨要鬱陵島在留本邦人 獨退去者 本使不解也 … 本邦人之在留鬱陵島 雖係條約規定之外."(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議政府贊政內部大臣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0년 9월 12일 하야시는 울릉도 불법벌목 일본인 하마모토(畑本吉藏)에 대한 처리를 부산감리와 협의할 것을 부산 주재 일본영사 노세(能勢辰五郎)에게 지시했다. 하야시 공사는 부산감리가 불법벌목을 한 일본인에 대해서 기소 절차를 진행하고 소환장 송달도 집행하도록 유도했다.[96] 사건 처리자는 일본영사가 아닌 부산감리였다. 이것은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에 대한 사법적인 집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하야시는 하마모토의 기소를 인정하여,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불법행동을 스스로 인정했다. 하마모토는 1899년 다카오 서기생의 보고서에 따르면 울릉도에 불법거주하는 주요 인물이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주한 일본공사의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 합법화 시도를 파악하고 조약 규정까지 살펴보며 대응 마련에 고심했다. 1900년 10월 2일 의정부찬정 내부대신 이건하는 주한 일본공사가 외국 선교사 체류 등을 근거로 항의하자, 일본인의 울릉도 철수를 다시 강력히 요청할 것을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요구했다.

내부대신 이건하는 주한 일본공사의 논리를 조규와 장정에 기초하여 조목조목 비판했다.

첫째,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은 불통상 항구(不通商口岸)에 집을 짓고 물화(物貨)를 출입하며 울릉도민을 침탈하고 불법벌목하여 조일수호통상조규(約章規程)[97]

李乾夏, 光武 4年(1900) 9月 15日, 「照會」, 『內部來去文』 13).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의 주장은 당시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 이목을 끌었다. 1900년 9월 18일 『제국신문』에 따르면 하야시는 한국과 열강의 조약에 근거하면 개항장 이외는 외국인의 거주를 금지했는데, 한국 정부가 외국 선교사의 불법거주를 인정하면서 일본인의 추방만 요구한다고 항의했다. 하야시는 개항장 이외 지역의 외국인을 추방한다면 울릉도 거주 일본인도 철수시키겠다고 주장했다(『帝國新聞』, 1900. 9. 18).

96 『駐韓日本公使館記錄』(13), 1900年 9月 12日, 〈一三. 各領事館往信〉(9) 發第64號 發第65號 「日本人 畑本 鬱陵島 伐木에 관한 件」, 林 公使→在釜山 領事 能勢辰五郎(發第64號) 在元山 領事 武藤精一郎(發第65號).

97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은 1887년 『각국약장합편(各國約章合編)』을 발간한 다음, 1890년 증보판을 만들었다. 『각국약장합편』은 「各國條約合編」, 「各約附屬通商章程」, 「稅則」, 「稅則章程」, 「善後續條」, 「各國租界章程」, 「各國條約年表」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http://e-kyujanggak.snu.ac.kr).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크게 위반했다. 이것은 각국 선교사의 출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조약합편(條約合編) 제6관(第六款)은 외국상민(某國商民)이 화물을 불통상 해안(非通商口岸)으로 운송(偸運)하면 가배처벌(加倍施罰)하고 체포(查拿)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제국 정부는 불법 일본인(無恒民)을 직접 잡아서 일본영사(領事)에게 보낼 수도 있으나 양국 우호(兩國敦誼)를 고려하여, 양국 관리가 조사한 후 일본인을 소환(撤歸)시키려 했다. 그런데 이건하는 주한 일본공사가 조약규정(條約規程)을 무력화(虛文)했는데, "이것은 한국만의 누(累)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약합편의 제6관은 1883년 6월 22일에 체결된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제6관과 제7관과 제33관에 근거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허가받지 않은 화물의 압수, 해관의 허가증이 없는 화물의 몰수, 불통상 항구의 화물에 대한 몰수와 벌금을 규정한 내용이 있었다.

조일통상장정 제7관에 따르면 "해관의 허가증을 받지 않고 화물을 하선, 선적하거나 혹은 다른 배에 옮겨 싣거나 또는 해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지정한 부두 이외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그 화물을 관에서 몰수한다"라고 했다.

조일통상장정 제33관에는 "일본국 상선이 조선국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서 몰래 매매를 하거나 혹은 몰래 매매를 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조선 정부가 그 상품과 그 배에 싣고 있는 각 상품을 몰수하고, 선장에게 50만 문(文)의 벌금을 물린다"[98]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한제국 정부는 허가받지 않은 일본 화물을 압수(管押)하고 몰수(入官)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는 일본인이 불통상 항구에서 매매를 시도할 경우에 상

98 조일통상장정 제6관에 따르면 "일몰부터 일출까지 해관에서 화물을 하선, 선적하거나 혹은 다른 배에 옮기라고 특별히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관 관리가 승강구 및 따로 화물을 적재해둔 곳을 봉쇄하고 면밀하게 관압한다."(『高宗實錄』, 高宗 20年(1883) 6月 22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품을 몰수하고 선장에게 50만 문(文)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결국 외부대신 박제순은 일본인이 울릉도에 납부한 100분의 2세를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고 규정했고, 내부대신 이건하는 불통상 항구에 대한 일본의 조규와 장정 위반에 대한 논리를 제공했다. 대한제국은 일본이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鬱島在留日本人) 등을 조속히 소환(撤還)하여 규정(規程)을 준수할 것을 주한 일본공사관에 요구했다.[99] 이와 동시에 이건하는 울릉도의 부속도서 독도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완비하기 위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준비했다.[100]

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과 반포 과정

대한제국은 일본이 자국민의 울릉도 거주 합법화 정책을 추진하자 그동안 추진해오던 울릉도 행정개혁을 완성하려고 노력했다.

1900년 9월 29일 의정부주사 최동식(崔東埴)은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는 '울

---

99 "日本公使照覆內稱外國宣敎師之多數散在於不許各地者 則貴政府認之 而獨要鬱島在留本邦人退去者 本使所不解也云云 此則大有不然之端ᄒᆞ니 宣敎師 則但以敎誨民人으로 散住各處오 初不有裝載物貨ᄒᆞ야 任便貿易이라. 今此日本無恒之民은 潛越不通商口岸ᄒᆞ야 恣意築室ᄒᆞ고 出入物貨ᄒᆞ며 侵虐居民에 亂斫木料ᄒᆞ야 大違約章規程ᄒᆞ니 豈可以各國宣敎師散住各處로 藉爲口實哉아 且閱條約合編第六款 某國商民 如將貨物 偸運非通商口岸及禁不論已行未行 均應將貨往處所物入官 違犯之人 按入官貨物之價 加倍示罰 其希圖違禁之民 幷可查拏 隨卽轉送就近領事官云云等條 則該無恒民之自執送領事가 直行無疑이오나 第念兩國敦誼ᄒᆞ야 向以兩國官吏로 專往調查後 亟期撤歸케ᄒᆞ야 以敦友誼러니 不意日本公使가 推諉至此에 條約規程을 便歸虛文ᄒᆞ야 置而不講ᄒᆞ니 念之及此에 奚獨韓國之累리오 抑亦日本之羞라 玆更仰佈ᄒᆞ오니 照亮ᄒᆞ신 後 轉照日本公使ᄒᆞ시와 鬱島在留日本人等을 不日撤還ᄒᆞ야 以守規程케ᄒᆞ시믈 爲要事."(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光武 4年 10月 2日, 「第十九號 照會」, 『內部來去文』 13)

100 이건하(1835-1913)는 1904년 일본의 황무지개척권 반대를 상소했고,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을 반대하는 상소를 했지만, 1910년 10월 남작지위를 받았고, 1911년 1월 2만 5천 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이건하(李乾夏)-이범팔(李範八)-이완종(李完鍾)의 가계는 일제의 남작지위를 세습했다(『純宗實錄附錄』, 純宗 3年(1910) 10月 7日; 『純宗實錄附錄』, 純宗 6年(1913) 11月 14日; 『駐韓日本公使館記錄』(24), 1905年 11月 27日, 〈一一. 保護條約 一~三〉(128) 祕第105號 「時局에 관한 報告의 件」, 警務顧問 丸山重俊→特命全權公使 林權助; http://people.aks.ac.kr).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청의서(鬱島事請議書)'를 내부주사 이승채(李升采)에게 통첩(通牒)했다.[101] '울도 청의서'는 대한제국과 주한 일본공사관이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의 추방을 진행하는 사이에 추진되었다.

1900년 10월 8일『황성신문』에 따르면 대한제국 내부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감무(監務)'를 설치할 것을 의정부에 제의했다. 그런데『황성신문』은 의안(議案)이 갑자기 '군청(郡廳)'을 신설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102] 1900년 10월 13일『제국신문』은 울릉도 관리의 월급이 봄에 보리 두 말, 가을에 콩 서 말을 울릉도민들에게 걷어 지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103] 대한제국은 지방행정 구역 중 '도감'과 '감무' 사이에서 '군수'로 급전환하여, 울릉도의 중요성을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대한제국이 일본의 울릉도 진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1900년 10월 22일 의정부찬정 내부대신 이건하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에 관한 청의서(鬱陵島 를 鬱島로 改稱ᄒᆞ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에 關ᄒᆞᆫ 請議書)'를 의정부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제출했다. 내부대신 이건하가 참고한 주요 자료는 배계주의 보첩(報牒), 본부 시찰관 우용정의 시찰록(視察錄), 동래 세무사의 시찰록(視察錄) 등이었다.

이건하는 울릉도의 중요성은 대륙에서 떨어진 동쪽 바다의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대신 이건하는 "울도는 동쪽 바다(東溟)에 특별히 위치하고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개국 504년(1895) 도감(島監)을 설치하여 도민을 보호하고

---

101 "通牒 第二十三號. 貴通牒을 接準ᄒᆞ와 鬱陵島改稱鬱島事請議書를 玆에 繳ᄒᆞ오니 照亮査收ᄒᆞ심을 爲要."(議政府主事 崔東埴→內部主事 李升采, 光武 4年 9月 29日,「第二十三號 通牒」,『起案』3冊;『各司謄錄』近代編 卷3)

102 "鬱陵島를 鬱島라ᄒᆞ고 監務를 設置ᄒᆞ기로 內部에서 政府에 提議ᄒᆞ얏더니 該議案이 一變ᄒᆞ야 郡廳을 新設ᄒᆞ기로ᄒᆞ더라."(『皇城新聞』, 1900. 10. 8) "울릉도를 울도로 곳치고 도장을 감무로 한다더니 의론이 곤쳐서 원을 내기로 한다더라."(『帝國新聞』, 1900. 10. 9)

103 "울릉도에 원을 낸단 말은 이왕 기재하엿더니와 그 관리들의 월봉은 그 도민에게 봄에 보리 두 말 가을에 콩 서 말식 후봉하여 먹게 한다더라."(『帝國新聞』, 1900. 10. 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무를 관장시켰다"라고 기록했다.

이건하는 울릉도의 크기, 호수, 농경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내부대신 이건하에 따르면 "울도는 가로가 80리, 세로는 50이다. 사방이 험한 절벽이고 가운데 큰 산이 있어 북에서 남으로 이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대천(大川)이 깊어서 배가 드나들 수 있었다. 땅이 비옥하고 사람들이 질박(質野)하여 수십 년 전부터 백성들과 가축이 번식하고 호수가 400가구(四百餘家)가 넘고, 개간한 밭이 1만여 두락이었다. 거주민의 1년 농작 중 그 수효는 감자(藷)가 2만여 포(包)가 되고, 보리(大麥)가 2만여 포, 콩(黃豆)이 1만여 포, 밀(小麥)이 5천 포였다."

이건하는 울릉도가 개간되어 육지의 산군(山郡)과 유사하고, 외국과의 교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울도'와 '군수'라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내부대신 이건하에 따르면 "대체로 호수와 전토의 수와 곡물의 수효를 육지의 산군과 비교하면, 수효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심하게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외국인이 왕래하고 교역하여 교제상으로도 비슷하였습니다. 도감(島監)의 호칭은 행정상 방해되었습니다.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이 칙령안을 회의에 올립니다."[104]

1900년 10월 22일에 제출된 칙령 제41호는 10월 25일에 제정된 내용과 일치했다. 1900년 10월 24일 신의정부는 칙령 제41호를 의결했고, 10월 25일 고종은 칙령 제41호를 재가했다. 1900년 10월 25일 『제국신문』에 따르면 대한제국 신의정부는 10월 23일 의정부 의정의 개인 사정으로 인원이 부족해 회의를 연기했다가, 10월 24일 오후 4시에 회의를 진행했다.[105] 10월 24일 의정부 회의는 대부분의 의안을 가

---

104 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議政府議政 尹容善, 光武 4年(1900) 10月 22日, 「鬱陵島 를 鬱島로 改稱ᄒᆞ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에 關ᄒᆞᆫ 請議書」, 『各部請議書存案』 17冊(奎17715).

105 "재작일 오후에 의정부에서 회의한다 하더니 인원 수효가 부족하야 개회치 못한지라. 처분이 나리샤 실병과 실고기 잇실지라 일제히 회동하라 하옵신고로 작일(24일) 오후 네 시에 회의하엇다더라."(『帝國新聞』, 1900. 10. 2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결하고 둔토의 승총(陞總, 세금장부)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다.[106]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0호[107]와 칙령 제41호[108]를 동시에 『관보(官報)』에 게재했다. 그중 칙령 제41호는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이었다.

1900년 10월 29일 『황성신문』은 『관보』에 실린 칙령 제41호의 내용을 보도했다. 제3조를 살펴보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했지만 울릉도(鬱陵嶋)라는 명칭이 살아남았다. 제2조를 살펴보면 울도의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석도(竹島石島)'였다. 『관보』와 『황성신문』에 실린 울릉도(鬱陵嶋)는 '도(島)'와 '도(嶋)'의 한자가 다르다. 군청의 위치는 '치(置)'와 '치(寘)'의 한자가 다르다.[109] 칙령에서 울(鬱)자

---

106 "재작일 정부회의에 가결사건을 취결하엿는데 가타는 편이 득승하야 가결하기로 완명이라 하고, 이전 민세 결과 둔토도 승총이 된다더라."(『帝國新聞』, 1900. 10. 26)

107 "勅令第四十號. 外國語學校와 醫學校와 中學校卒業人을 該學校에 收用ᄒᆞᄂᆞᆫ 官制. 第一條 外國語學校와 醫學校와 中學校에 卒業ᄒᆞᆫ人은 該校敎官을 敍任在案ᄒᆞ엿다가 該校敎官이 有闕ᄒᆞ야 塡補ᄒᆞᆯ 時에ᄂᆞᆫ 卒業生敎官敍任ᄒᆞᆫ人으로 特別試驗을 經ᄒᆞ야 塡任ᄒᆞᆷ이라. 第二條 本令은 頒布日로붓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御押 御璽 奉 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李乾夏."(議政府總務局官報課, 『官報』, 第一千七百十六號, 光武 4年 10月 27日 土曜)

108 "勅令第四十一號.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ᄒᆞ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ᄒᆞᆫ 件
第一條 鬱陵島를 爵島라 改稱ᄒᆞ야 江原道에 附屬ᄒᆞ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ᄒᆞ야 官制中에 編入ᄒᆞ고郡等은五等으로ᄒᆞᆯ事
第二條 郡廳位置ᄂᆞᆫ 台霞洞으로 定ᄒᆞ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ᄅᆞᆯ 管轄ᄒᆞᆯ 事
第三條 開國五百四年八月十六日 官報中 官廳事項欄內 鬱陵島以下十九字ᄅᆞᆯ 刪去ᄒᆞ고 開國五百五年勅令第三十六號 第五條江原道二十六郡의 六字ᄂᆞᆫ七字로 改正ᄒᆞ고 安峽郡下에 鬱島郡三字를 添入ᄒᆞᆯ 事
第四條 經費ᄂᆞᆫ 五等郡으로 磨鍊호ᄃᆡ 現今間인즉 吏額이 未備ᄒᆞ고 庶事草創ᄒᆞ기로 該島收稅中으로 姑先磨鍊ᄒᆞᆯ 事
第五條 未盡ᄒᆞᆫ 諸條ᄂᆞᆫ 本島開拓을 隨ᄒᆞ야次 第磨鍊ᄒᆞᆯ 事
附則 第六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ᆯ 事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御押 御璽 奉 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李乾夏." (議政府總務局官報課, 『官報』, 第一千七百十六號, 光武 4年 10月 27日 土曜)

109 "勅令第四十一號.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ᄒᆞ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ᄒᆞᆫ 件
第一條 鬱陵嶋를 鬱嶋라 改稱ᄒᆞ야 江原道에 附屬ᄒᆞ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ᄒᆞ야 官制中에 編入ᄒᆞ고 郡等은 五等으로ᄒᆞᆯ 事
第二條 郡廳位寘ᄂᆞᆫ 台霞洞으로 定ᄒᆞ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를 管轄ᄒᆞᆯ 事
第三條 開國五百四年八月十六日官報中官廳事項欄內鬱陵嶋以下十九字를 刪去ᄒᆞ고 開國五百五年 勅令第三十六號第五條江原道二十六郡의 六字ᄂᆞᆫ 七字로 改正ᄒᆞ고 安峽郡下에 鬱陵嶋三字로 添入ᄒᆞᆯ 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아래 글자는 칙령 제41호에는 '촌(寸)'인데 『황성신문』에는 '삼(彡)'으로 표기되었다. 촌(寸)은 마디와 손이라는 의미다. 삼(彡)자는 털이 난 모습을 본떠 만든 글자다. 또한 빛이나 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소전(小篆)에서 삼(彡)이 촌(寸)으로 대체되었다. 촌(寸)은 오른손이라는 뜻의 우(又)자와 통용된다.[110]

칙령 제41호의 울도의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였다. 무엇보다도 칙령 제41호는 개국 504년(1895)의 울릉도에 대한 행정구역 변천의 법률을 모두 기록하는 역사적 연속성을 보여주었다. 대한제국은 죽도와 석도를 포함한 울릉도에 대한 영토의식을 구체적인 법령으로 완비했다. 석도는 바로 독도(獨島)였다.[111] 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거주를 막기 위해 행정체제를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통감부는 1897-1909년까지 칙령(勅令)에 의해 공포(公布)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13도(道) 중 관할 통폐합에 관한 칙령 공포 건(件)'을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1898년 칙령 제12호 강원도(江原道) 내 울릉도(鬱陵島)에 도감(島監) 설치, 1900년 칙령 제41호 울릉도감(鬱陵島監)을 울도군수(鬱島郡守)로 개정하여 군청을

第四條 經費ᄂᆞᆫ 五等郡으로 磨鍊호ᄃᆡ 現今間인즉 吏額이 未備ᄒᆞ고 庶事草創ᄒᆞ기로 該嶋收稅中으로 姑先磨鍊ᄒᆞᆯ 事

第五條 未盡ᄒᆞᆫ 諸條ᄂᆞᆫ 本島開拓을 隨ᄒᆞ야 次第磨鍊ᄒᆞᆯ 事附則

第六條本令은 頒布日로붓ᄐᆡ 施行ᄒᆞᆯ 事.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皇城新聞』, 1900. 10. 29)

110 장세후, 『이미지로 읽는 한자』, 연암서가, 2015, 114-128쪽.

111 석도(石島)=돌섬=독섬=독도(獨島)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독名「돌」의 사투리. 石."(文世榮, 昭和13年(1938), 『朝鮮語辭典』, 京城: 博文書館, 379쪽) 1953년 7월 11일 오쿠무라 헤이타로(奥村平太郎)의 장남 오쿠무라 아키라(奥村亮, 43세)는 독도 주변에서 했던 어업활동을 구술했다. "당시 조선인은 랑코섬을 독도라고 하였다(當時, 朝鮮人は, ランコ島(竹島)を獨島(トクソン). 일본인과 대화할 때는 '랑코섬'이라고 했다." 일본어 '손(トクソン)'의 한국어 발음은 '독섬'이다. 주목할 점은 일제강점기 '독도(獨島)'와 '독섬(トクソン)'을 동일하게 파악했다는 사실이다(アジア局2課, 昭和 28年(1953) 8月, 「(秘)竹島漁業の變遷, 奥村亮 口述書」, 『昭和 28年度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 33쪽(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廣報文書課)). 1906년 5월 9일자와 1906년 7월 13일자 『황성신문』은 각각 "본군소속독도(本郡所屬獨島)", "해군소속도(該郡所管島)는 죽도석도(竹島石島)"라고 표기했다. 이것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석도'는 '독도'임에 틀림없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태하동(台霞洞)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112] 일본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된 과정과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관보』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일본도 그 내용을 파악하여 국내외적인 공포(公布)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VI. 나오며

일본 외무성은 1900년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 합법화를 시도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제국은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를 묵인하면서, 울릉도 거주 일본인에게 세금을 거둔다. 둘째,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이 철수를 거부한다면 대한제국이 스스로 일본인들을 추방해야 한다. 하야시는 대한제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인의 울릉도 침투를 강화하려고 시도했다. 20세기 초반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불법적 영유권의 기원을 마련하고자 했다. 위험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소홀한 틈에서 생기는 법이다.

그러자 외부대신 박제순은 조일수호통상조규에 기초하여 울릉도 내 불법거주 일본인들의 추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제순은 일본 정부가 일본인의 정당한 행위라며 죄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악습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박제순은 주한 일본공사관이 상응하는 비용을 협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조약에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제순은 미개항 항구인 울릉도에 수출입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일본이 조일수호통상조규를 어겨가며 울릉도에서 불법 경제활동을 자행

112 "光武二年 勅令第年十三號로江原道內鬱陵島에 島監을 置홈. 光武四年 勅令第四十一號로 鬱陵島監을 鬱島郡守로 改正ᄒᆞ야 郡廳은 台霞洞으로 홈."(『統監府文書』(2), 一. 十三道及間島豆滿江位置沿革(3)「十三道中 管轄統廢合에 관한 勅令 公布 件」)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으며, 울릉도의 불법벌목에 대해서 100분의 2세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외부대신은 일본이 지연작전을 펴고 있음을 간파하고 조일수호통상조규에 기초한 일본 정부의 정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결국 외부대신 박제순은 일본인이 울릉도에 납부한 100분의 2세를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고 규정했고, 내부대신 이건하는 울릉도가 불통상 항구라는 점을 내세워 일본이 조규와 장정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제공했다. 대한제국은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鬱島在留日本人) 등을 조속히 소환(撤還)하여 규정(規程)을 준수할 것을 주한일본공사관에 요구했다.

대한제국은 일본이 울릉도 거주 합법화를 추진하자 그동안 추진해오던 울릉도 행정개혁을 완성하려고 노력했다. 대한제국은 울릉도 행정 관할을 위한 제도 정비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는데, 울릉도감 설치 이후 울릉도의 인구와 토지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울릉도를 지방제도 안으로 편입할 것을 결정했다.

고종이 1895년 8월 16일 울릉도 도감 설치를 승인하자, 조선 정부는 1895년 9월 20일 울릉도인 배계주를 도감에 임명(差定)하는 동시에 판임관 대우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부대신 박정양은 1898년 5월 울릉도에 도감을 두고 지방제도로 편입했다.

그 후 대한제국은 1899년 울릉도감과 울릉감무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울릉도 현지조사를 준비했다. 1899년 울릉도는 일본인들의 불법벌목 등으로 한일 양국의 현안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수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울릉도 시찰위원 우용정을 파견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우용정은 1900년 6월 1~5일까지 감리서 주사 김면수, 해관세무사 라포르트, 방판 김성원, 일본 부영사 겸 영사관보 아카쓰카 쇼스케, 경부 와타나베 등과 함께 울릉도 정황을 조사했다. 우용정과 아카쓰카는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입회하여 조사를 완수하고, 복명서(復命書)를 제출했다.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0호(勅令第四十號)와 칙령 제41호(勅令第四十一號)를 동시에 반포했다. 그중 칙령 제41호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이었다. 칙령 제41호는 울도의 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명시했다. 무엇보다도 칙령 제41호는 개국 504년(1895)의 울릉도에 대한 행정구역 변천의 법률을 모두 기록하는 역사적 연속성을 보여주었다. 대한제국은 죽도와 석도(독도)를 포함한 울릉도에 대한 영토의식을 구체적인 법령으로 완비했다. 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인들이 울릉도 불법거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체제를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용정의 울릉도 조사와 한일공동조사단의 활동

Ⅰ. 들어가며

1900년 6월 우용정이 작성한 보고서는 「울도기(鬱島記)」, 「고시(告示)」, 「훈령개운회사중(訓令開運會社中)」, 「훈령 13동(訓令 十三洞)」, 「보고서(報告書)」, 「보고서 후록. 울릉도재류 일본인조사요강(報告書 後錄. 鬱陵島在留 日本人調査要領)」 등으로 구성되었다. 내부시찰관(內部視察官) 울도시찰위원(鬱島視察委員) 우용정(禹用鼎)은 「울릉도재류일본인사건(鬱陵島居留日人事件)」에 관한 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했다. 당시 우용정은 1900년 전후 울릉도의 '거주'와 '벌목'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대립을 생생하게 보고했다. 우용정은 「울도기(鬱島記)」를 작성하여 자신의 행적과 활동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한일공동조사단은 1900년 6월 1-6일까지 울릉도에 체류하면서 울릉도를 조사했다. 한일공동조사단은 주요 현안으로 울릉도 내 일본인 추방 문제, 일본인의 울릉도감에 대한 업무 방해, 일본인의 불법적인 규목 벌목, 일본인과 울릉도감의 마쓰에(松江) 재판소송의 진실, 일본인의 화물에 대한 100분의 2세의 구문(口文) 문제, 전사능과 김용원의 규목 벌목에 대한 진실, 오상일(吳相鎰) 도감의 납세약조표(納稅約條票)에 관한 사실 확인, 고래를 둘러싼 울릉도 거주 조선인(我民)과 일본인(貴民)의 충돌 등의 진위를 조사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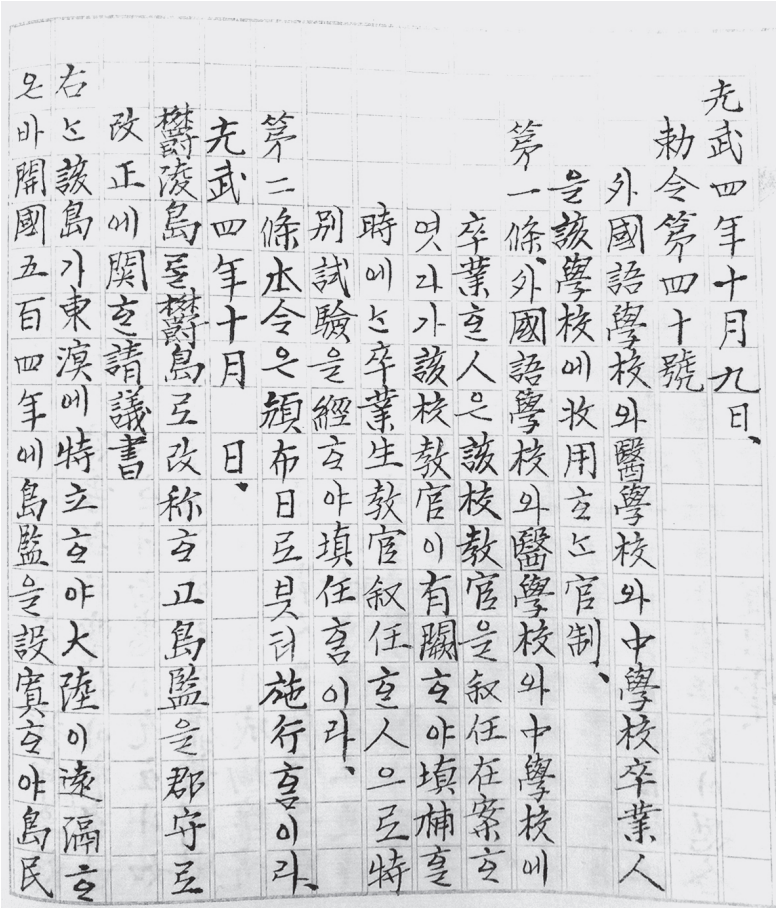

光武四年十月九日、
勅令第四十號
外國語學校와醫學校와中學校卒業人
을該學校에收用홈에官制、
第一條、外國語學校와醫學校와中學校에
卒業홈人은該校敎官을敍任在案홈
엇다가該校敎官이有闕홈야填補홀
時에는卒業生敎官敍任홈人으로特
別試驗을經홈야填任홈이라、
第二條本令은頒布日로붓터施行홈이라、
光武四年十月 日、
鬱陵島를鬱島로改稱홈고島監을郡守로
改正에關홈請議書
右는該島가東溟에特立홈야大陸이遠隔홈
으로開國五百四年에島監을設置홈야島民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각부청의서존안 17책(칙령 제40호와 제41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연구는 우용정의 울릉도 조사 및 울릉도의 역사와 자연, 우용정의 행정관할 활동, 일본인의 불법활동, 조선인과 일본인의 대립 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한일공동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존 연구는 우용정과 함께 울릉도로 출발한 동래감리서 주사 김면수(金冕秀)를 주목하지 못했다. 필자는 김면수의 이력을 조사하고 그의 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 김면수의 독자적인 활동을 추적할 것이다.

II. 우용정의 울릉도 조사 및 울릉도의 역사와 자연

우용정은 1849년(헌종 15)에 태어났고, 단양우씨(丹陽禹氏) 예안공파(禮安公派) 27세손(世孫)이다. 그의 아버지는 공주중군(公州中軍) 출신 우창균(禹昌均)이고, 아들은 1874년에 태어난 우영명(禹永命)이다.[1]

우용정은 1896년 7월 15일(양력) 내부주사(內部主事)로 관직에 진출했다.[2] 1898년 3월 8일 내부시찰관(內部視察官)으로 임명되었다.[3] 1899년 12월 15일 의정부찬정 내부대신 이건하(李乾夏)는 울릉도 개척과 관련하여 시찰위원(視察委員) 우용정의 파견을 상주(上奏)하여 승인 교지(旨)를 받았다.[4] 우용정은 1902년 9월 4일

---

1 丹陽禹氏禮安君宗親會, 『丹陽禹氏禮安君派譜』 4卷, 2004, 250쪽.

2 『承政院日記』, 高宗 33年 6月 5日. 필자는 『승정원일기』가 음력이므로 본문에서는 양력으로 환산했다.

3 『承政院日記』, 高宗 35年 2月 16日.

4 宮廷錄事. 議政府贊政內部大臣臣李乾夏謹奏. 鬱陵島開拓今旣有年戶口蕃殖土地漸闢 而迄未調查事係未遑矣 現自臣部派定視察委員禹用鼎使之前往該島詳察所有一切情形 幷撫綏居民以示朝家眷顧之意何如謹上奏 光武三年十二月十五日奉旨依奏.”(議政府總務局官報課, 『官報』, 第一千四百四十八號, 光武 3年 12月 19日 火曜) “울릉도(鬱陵島)를 개척한 지 어느덧 여러 해가 되어 이제는 호구가 늘어나고 토지가 점차 개간되었는데 아직도 경황이 없어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본부(本部)에서 시찰위원(視察委員) 우용정(禹用鼎)을 파견하여 해당 섬에 나아가서 그곳의 일체 정황을 상세히 살피는 동시에 주민들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살도록 함으로써 조정에서 돌보아주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承政院日記』, 高宗 36年 11月 13日(양력 12월 15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내부 참서관(參書官)이 되었다.[5] 1906년 6월 18일 경상북도 영덕군수(盈德郡守)로 임명되었고, 1909년 1월 18일 영덕군수를 자진 사퇴했다.[6] 우용정은 1906년 8월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 회원이었다.[7]

내부대신 이건하는 1899년 여러 차례 울릉도감 배계주(裵季周)의 보고서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시찰관을 조사위원으로 삼아 울릉도의 상황을 살피기 위한 상주를 올려 고종의 재가를 받았다. 그 후 우용정은 주한 일본공사와 회동하여 절차적인 문제를 처리했다.

내부시찰관 울도시찰위원(鬱島視察委員) 우용정은 1900년 5월 25일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발했다. 우용정은 일본 경부보(警部補) 와타나베 다카지로(渡邊鷹治郎)와 함께 기소가와마루(木曾川丸)에 탑승하여 5월 29일 부산에 도착했다. 5월 30일 우용정은 감리서주사 김면수, 부산 해관세무사서리 라포르트(E. Laporte, 羅保得), 부산 해관방판(港海幫辦) 김성원(金聲遠),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보(領事官補)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경부보 와타나베 다카지로, 보호순검(保護巡檢) 신태현(申泰炫)과 김형욱(金亨郁), 일본 보호순검 2인과 함께 부산에서 창룡환(蒼龍丸)을 타고 울릉도로 출발했다. 5월 31일 우용정은 울릉도감 배계주가 거주하는 도동항에 도착했다. 5월 31일 오전 8시 우용정은 멀리서 울릉도의 봉우리(峰巒)를 볼 수 있었고, 오후 1시 도동항에 정박했다.[8]

우용정은 1900년 6월 1–6일까지 울릉도 조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900년 6월 1–3일까지 우용정은 라포르트의 배석 아래에 아카쓰카와 공동으로 일본인과 울릉도감을 조사했다. 일본인과 울릉도감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는데 우용

---

5 『承政院日記』, 高宗 39年 8月 3日.

6 『承政院日記』, 高宗 43年 5月 8日; 『承政院日記』, 純宗 2年 12月 27日.

7 「會員名簿」, 『대한자강회월보』 제2호, 1906. 8. 25, 72쪽.

8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報告書」,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은 "일본인이 법을 위반하고 몰래 넘어와서(潛越犯法) 줄곧 꾸며대며 변명하여 더 이상 조사(查問)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9] 우용정은 일본인이 국경법을 어기며 허가 없이 울릉도를 침입했고, 자신들의 행동을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1900년 6월 4일 우용정은 창룡환에 탑승하여 울릉도 전체를 순찰했다. 우용정은 윤선(輪船)을 멈추고 육지에 내려 천부동(天府洞)의 고선포(古仙浦), 현포동(玄圃洞), 태하동(台霞洞) 3개 동을 시찰했다. 태하동은 골짜기가 둥글게 열렸는데, 지세가 평평하게 펼쳐져 있었고 관사 8칸이 있었다. 우용정은 산신당(山神堂)에 치성을 드리고 주민(洞民)을 시찰하고(曉諭), 해가 저물자 도동으로 돌아왔다.

1900년 6월 5일 우용정은 울릉도 거주 백성들의 소원(等狀)을 듣고 답변하면서 바쁘게 보냈는데 윤선이 여러 날을 정박할 수 없고, 석탄도 거의 떨어지고 있어 출발을 준비했다.[10]

1900년 6월 6일 우용정은 조사 장부를 마무리하면서 창룡환을 타고 오전 10시 울릉도를 출발했다. 일정이 짧아 울릉도의 산천, 형세(形勝), 토산, 풍속을 상세히 파악할 수 없어 5일 동안 머물면서 공무를 보는 틈틈이 각 마을의 부로(父老)들을 불러들여 개척 이후의 사실을 자세히 청취했다.

우용정은 조선의 수토정책, 울릉도의 이주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조선 정부가 숙종 시기(肅廟) 김환(金丸) 등 70여 명을 찾아내서 쫓아낸 사실이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후 조선 정부는 울릉도(絶島)에 무뢰(無賴)가 무리를 이루게 되어서 화란(禍胎)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삼척부사와 월송만호에게 명령하

---

9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 光武 4年(1900) 6月, 「報告書」,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10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 光武 4年(1900) 6月, 「報告書」,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태하동이 조금 평탄하여 대략 100여 이랑(頃)이 되므로 관사가 그곳에 있으며 도감이 그곳에 거주한다."(金冕洙, 光武 4年(1900) 6月 9日, 「報告 第26號 後錄」, 『東來港報牒』 4冊; 유미림, 『개화기 울릉도 독도 관련사료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151-15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 3년 간격으로 수토(搜討)했다.

우용정은 이규원의 울릉도 조사, 조선 정부의 울릉도 이주 과정을 기록했다.

조선 정부는 이규원의 울릉도 조사 이후 울릉도에 도장(島長)을 임명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을 구휼하는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조선 정부는 1882년 이규원을 검찰사로 임명하여 몰래 건너와 있던 일본인 1,500여 명을 모두 돌려보냈다. 그 이후 관동에서 7-8가구가 울릉도에 들어왔고, 영남에서 10여 가구가 따라 들어와 바위에 집을 짓고 불을 놓아 밭을 일구었다. 이때부터 팔도의 백성이 조금씩 이주해와서 점차 촌락을 이루었다.

우용정은 한국인이 울릉도에 이주하여 촌락을 이루었지만 쥐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해 남아나는 곡식이 없다고 보고했다. 영의정 심순택(沈舜澤)은 도장 서경수(徐敬秀)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삼척·울진·평해의 환곡(還穀) 중에서 300석을 울릉도민에게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이때부터 인구가 날로 늘고 토지가 점차 개간되어 엄연히 하나의 도회(都會)를 이루었다.

우용정은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침입과 자신의 파견 과정을 기록했다. 일본인은 울릉도에 몰래 침범(侵虐)하고 목재를 함부로 베어갔다. 1896년 임명된 도감 배계주는 여러 차례 일본인의 불법침입에 대해서 보고했다. 내부대신 이건하(李乾夏)는 1899년 내부시찰관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하고, 울릉도의 정형(情形)을 상세히 살필 것을 지시했다. 조선 정부는 주한 일본공사와 협의한 뒤 1900년 5월 25일 우용정을 인천항으로 출발시켰다.[11]

조선 정부는 1880년대 울릉도 개간 이후에도 일본인이 울릉도에 침입하여 불법으로 벌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지 도감의 보고서를 통해서 파악했다. 특히 조선 정부는 1896년 아관파천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일본에 대해 강력한

---

11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 光武 4年(1900) 6月, 「報告書」,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감 배계주가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침입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올리자, 내부대신 이건하는 1899년 우용정을 울릉도로 파견하여 일본인 추방을 추진했다.

우용정은 울릉도의 농업, 자연, 인구, 산물 등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울릉도의 전체 길이는 70리, 너비는 40리, 둘레는 140–150리 정도였다. 1882년(壬午)과 1883년(癸未) 울릉도를 조사하였는데 거주민은 400여 가구, 남녀 인구 1,700여 명 정도였다.[12] 개간한 화전은 7,700여 두락(斗落)이었다. 땅이 기름지고 곡식을 뿌리면 잘 자랐다. 종자는 대맥(大麥), 소맥(小麥), 황두(黃豆), 고구마(甘藷)로 집집마다 양식이 풍족했다. 수리(水利) 미역을 채취하는 것이 위주였다. 면화와 삼베, 종이류 등은 외부에서 들여오지 않아도 충분했다.[13]

우용정은 울릉도에 흉년이 들 경우에는 학조(鶴鳥, 霍鳥, 슴새)와 명이풀(茗夷草)로 기아를 면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살리기를 좋아하는 하늘(上天)이 마치 의도적으로 울릉도에 이런 물산을 자라나게 한 듯하다고 기록했다.[14]

---

12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 光武 4年(1900) 6月, 「報告書」,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본도의 지형은 석벽이 대부분인데 … 140–150리를 밑돌지 않으나 이 또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다."(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報告書 後錄」,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울릉도는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사면이 암벽으로 천 길 낭떠러지로 깎아지른 듯 서 있으며 둘레는 100여 리입니다." "거주민의 가옥은 모두 401호입니다. 남녀 모두 1,641명이 산속에 흩어져 살거나 바닷가에 판잣집을 짓고 삽니다."(金冕洙, 光武 4年(1900) 6月 9日, 「報告 第26號 後錄」, 『東來港報牒』 4冊; 유미림, 『개화기 울릉도 독도 관련사료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151–152쪽.)

13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 光武 4年(1900) 6月, 「報告書」,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다만 부족한 것은 섬의 지세가 너무 기울어 있어 논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뿐이다."(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報告書 後錄」,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나주 상인들이 쌀을 싣고 와서 토산물, 해채(海菜)와 바꾸어 물러갔다고 합니다."(金冕洙, 光武 4年(1900) 6月 9日, 「報告 第26號 後錄」, 『東來港報牒』 4冊; 유미림, 『개화기 울릉도 독도 관련사료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151–152쪽)

14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 光武 4年(1900) 6月, 「報告書」,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화전을 일구어 대맥과 소맥, 황두, 고구마를 심습니다. 거주민이 입고 먹는 것을 외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생계를 자족할 수 있습니다."(金冕洙, 光武 4年(1900) 6月 9日, 「報告 第26號 後錄」, 『東來港報牒』 4冊; 유미림, 『개화기 울릉도 독도 관련사료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학조는 매의 부리, 오리 발, 털은 하얀 비둘기와 같았다. 한낮에는 바다 수면 위로 날면서 물고기류를 잡아 먹고 저녁이면 산속 동굴에서 살았다. 사람들이 그 새를 잡으려고 산속에서 불을 켜면 밝은 곳으로 모여들었다. 이 틈을 타서 전혀 힘 들이지 않고 잡을 수 있었다. 맛은 오리고기와 비슷하지만 더 맛있었다. 명이는 줄기가 하나에 잎이 둘이었다. 줄기는 달래 이삭 같고 잎은 옥잠(玉簪) 같고, 꽃은 마치 파 이삭 종류 같았다.[15]

우용정은 울릉도의 산세(山勢)와 수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산세는 층층한 산봉우리들이 우뚝 서서 푸르고, 기암괴석(奇巖怪石)은 혹 사람이 서 있거나 짐승같이 쭈그리고 있는 모양 등 천태만상이었다. 수목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규목(槻木, 느티나무), 자단(紫檀, 향나무), 백자(柏子, 잣나무), 감탕나무(甘湯木)가 있었다. 모두 단단(堅密)하고 결이 촘촘하여 그릇을 만들 수 있었다. 산세가 깊지만 승냥이와 호랑이, 뱀과 독사의 피해가 없었다. 수목이 무성한데도 가시에 찔리는 고통이 없었다.[16] 우용정은 영기(靈氣)가 울릉도에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제거해 주었는데, "천 년의 맑은 기운이 모여서 산에는 호랑이, 뱀이 없고 나무엔 가시가 없다"라고 기록했다.[17]

조선 정부가 1882년 울릉도를 조사한 이후 울릉도민은 400여 가구, 1,700여 명이었다. 울릉도민은 땅을 개척하여 주로 대맥, 소맥, 황두, 고구마 등의 작물을 심었다. 면화와 삼베, 종이류 등을 자급자족했고, 흉년이 들면 학조와 명이 등으로 기아를 면

원, 2008, 151-152쪽)

15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 光武 4年(1900) 6月, 「報告書」,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16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 光武 4年(1900) 6月, 「報告書」,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땅에서 나는 것으로는 규목, 잣나무, 향나무, 감탕나무 등이다. 나주와 원주 선객 등의 선료(船料)는 대부분 여기서 취한다."(金冕洙, 光武 4年(1900) 6月 9日, 「報告 第26號後錄」, 『東來港報牒』 4冊; 유미림, 『개화기 울릉도 독도 관련사료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151-152쪽)

17 "巡島日謾吟一絶. 海中鬱島久聞名 挺立奇峰不世情 鍾得千年淸淑氣 山無虎蛇樹無荊."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할 수 있었다. 수목으로는 규목, 자단, 백자, 감탕나무 등이 자랐다.

우용정은 '울도(鬱島)'는 '우산국(于山國)'이라고 불렸는데, 울릉도의 명칭이 '울도'이고 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기록했다.[18] 우용정은 울릉도 개척에 대해서 "황상(皇上)이 등극하심에, 성덕(聖德)이 높고 넓어 원근을 가릴 것 없이 일체가 되니, 땅 끝까지 왕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황상'은 황제를 의미하는데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고종의 황제 등극을 「울도기」에서 표현한 것이었다.

Ⅲ. 우용정의 울릉도 행정 관할 활동

우용정은 1900년 6월 1일 울릉도 주민에게 황명(皇命)을 받들어 내부대신 훈령에 따라 울릉도에 파견되었다고 고시(告示)했다.

울릉도 파견의 이유와 주민의 의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알렸다.

"울릉도민의 질고(疾苦), 개척진행(開拓多寡)의 형편, 외국인이 침학(侵暴)한 정황 등을 상세히 조사한다. 일본 관원 2명도 일본인 상민의 출몰작패(出沒作弊)하는 정황을 조사하고자 함께 왔다. 각 동의 백성 가운데 사정을 아는 사람은 두세 명씩 즉시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후폐막(前後弊瘼)을 숨기지 말고 모두 진술하라."[19]

우용정은 1900년 6월 3일 울릉도의 관민에게 "정부의 금령(禁令) 준수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는 고시를 발표하고 울릉도 개척이 대한제국의 영토 강화로 연결되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울릉도 개척 이후 식산의 노력과 도회의 형성이 '민국(民國)'의

---

18 1884년 11월 26일 전(前) 오위장(五衛將) 이경렬(李京烈)은 고종의 울릉도 개척을 지지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울릉도를 '울도(鬱島)'라고 불렀다. 이경렬은 울릉도는 우산씨(于山氏)가 세운 국가인데, 개간 이후 수령(官長)을 두고 변경(藩蔽)으로 삼는다면 바다 방어(海防)가 공고해지고 나라의 조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高宗實錄』, 高宗 21年(1884) 11月 26日).

19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 光武 4年(1900) 6月 1日, 「告示」,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행복이라고 판단했다.[20]

우용정은 울릉도의 제도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본인이 울릉도를 불법침입하여 울릉도민의 불안이 심각해졌으므로 대한제국이 울릉도민의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용정에 따르면 모든 제도가 일체 구비되지 않아서, 도감이 관리라는 허울만 있고, 인민(人民)이 국가의 원적(原籍)에서 누락되었다. 행정법률(行政法律)과 교육경영(教育經營) 등의 제반 규칙이 시행되지 않았다. 일본인이 몰래 넘어와 침학하여 백성들이 동요하고 불안에 떠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조선정부가 백성을 보호하는 방략을 소홀히 했고, 뱃길이 너무 멀기 때문이었다.

우용정은 1900년 6월 3일 고시에 따른 긴급조치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첫째,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울릉도에서 불법벌목과 선박 제조를 금지했다. 이것은 울릉도의 주요 자원인 삼림을 보호하려는 의도였다. "삼림(森林)은 벌목이 금지된 산(國家封山)이므로, 각 동이 적극 지키고 가꾸며(極力守養), 아름드리나무(連抱木)는 농작을 위해 밭에 불을 놓을지라도(火菑) 태우지 말라. 울릉도민이 일본인과 결탁하여 규목(槻木)을 벌목(盜斫)하면 목재는 모두 관에 귀속시키고, 백성은 바로 축출한다."

둘째, 매년 울릉도의 인구 변동과 곡물 수확량을 정확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개간한 밭에서 나오는 수확량(斗數), 실제 가구와 인구(實戶實口) 등을 조사하여 매년 정부(本部)에 보고한다."

셋째, 울릉도 항로와 무역의 편리를 위해서 선박의 구매와 회사의 설치를 지시했다. "돛단배(風帆船隻)를 구매하여 뱃길(航路)에 편리하게 하고 토산물을 운반하여 무역한다. 돛단배는 울릉도의 물산(物産)을 수송하고, 외국 선박에 울릉도의 물화를 적재(裝

---

20 "울릉도(本島)는 바다 가운데 홀로 있는 곳으로 개척한 지 십수 년밖에 안 되었다. 백성들이 고향을 등지고 친척을 버리고서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와 식산(殖産)에 힘썼다.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토지가 점차 개간되어 엄연히 하나의 도회(都會)를 이루었다."(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 光武 4年(1900) 6月 1日, 「告示」,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載)할 경우 울릉도의 회사(會社)는 그 물화(物貨)를 소유한다."

넷째, 울릉도민의 생활과 교육에 필요한 염전 산업과 학교 설치를 지시했다. "염전 장비를 준비하여 소금 만드는 것을 급선무로 한다. 학교를 세워 백성(人民)을 교육한다."

다섯째, 울릉도 주민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음주잡기를 금지하고, 어른 공경을 강조했다. "불법한 백성이 어른을 업신여기고, 음주잡기로 동규(洞規)를 어지럽히면 법률을 정하여 엄히 금지한다." 이것은 울릉도에 팔도의 백성이 이주하여 알력이 심해지는 것을 엄한 법률로 다스리겠다는 의도였다.[21]

결국 우용정은 울릉도의 삼림 보호와 관련하여 첫째, 본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벌목하여 배를 만드는(造船) 것을 금지하고, 둘째, 불법한 백성이 일본인과 협정을 체결하여 느티나무(槻木)를 벌목하는 것 등을 금지했다. 해양과 관련해서는 첫째, 선박을 구매하여 해운과 무역에 활용할 것, 둘째, 울릉도 물산을 모두 울릉도의 선박으로만 출입하여 무역할 것, 셋째, 만일 외국 선박에 적재할 경우에는 그 물화(物貨)는 모두 울릉도 회사의 소유로 삼을 것 등을 지시했다.

우용정은 1900년 6월 고시 직후 '개운회사(開運會社)'라는 선박 구입과 운영을 위한 회사의 설립에 관한 훈령을 발표했다. 울릉도는 동해 먼 바다(東溟)에 있어 수로가 험한 곳인데도 아직까지 사용하는 배가 없었다. 표몰(漂沒)될 염려, 물건을 유통할 필요성, 정부명령(政府命令) 전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용정은 각 동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울릉도민이 자체적으로 개운환(開運丸) 1척을 마련하고 회사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면서 "세납의 다소(稅納多少)와 장정의 조약(章程條約)은 본부의 지시를 기다린다. 울릉도민은 각 항구의 사안, 항구에 들어오는 화물세 등에 대해서 일체 도감의 약속(約束)을 따라야 한다"[22]라고 강조했

---

21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 光武 4年(1900) 6月 1日, 「告示」,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22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 光武 4年(1900) 6月, 「訓令開運會社」,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 이것은 울릉도의 독자적 자립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우용정은 1900년 6월 울릉도를 시찰한 직후 "일본인이 울릉도에서 장정위법(違犯章程)과 침학주민(侵虐居民)을 저질렀다"라고 규정하면서 불법 일본인과 결탁한 울릉도 주민 처벌에 관한 훈령을 13동(十三洞)에 내렸다. 울릉도 도감이 주민의 불법 사실을 보고하면 부산 경무서에서 이송하여 엄벌할 것이라는 훈령을 내렸다. 우용정은 자신의 명령(令飭)을 각 동 대표가 울릉도 주민들에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23]

1900년 6월 4일 우용정은 태하동 관사를 시찰하고, 태하동 주민을 불러서 어려움(疾苦)을 물어보았다. 태하동 관사는 1900년 봄에 수리되었다. 규모는 8칸이었다. 골짜기 아래 넓게 트인 관사 주변은 평탄하고 보리밭이 넘실거렸다. "골짜기는 둥글게 열려 있고 지세는 평탄하여 보리밭이 육지에 못지않았다."

그날 우용정은 마을 사람들과 대화한 뒤 윤선을 타고 순시했는데, 이때 일본 상선(商船)을 목격했다.

우용정에 따르면 윤선에 올라 순시하며 지나갈 때 마침 일본 상선 4척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다음 날 탐문하니 일본인 벌목(伐木) 장인(匠人) 40명이 도끼와 톱을 실었는데, 모두 합쳐 70여 명이 내렸다고 했다. 우용정은 동행한 주한 일본영사에게 일본인의 불법벌목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잘못을 지적했다.[24]

1900년 6월 4일 일본 상선 4척이 울릉도를 상륙했다. 일본 상선은 도끼와 톱 같은 장비를 실었고, 인원은 70여 명이었다. 우용정은 일본의 벌목을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일본 상선의 철수를 아카쓰카에게 요구했다.

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23 "향후 울릉도민 중 일본인과 부화뇌동(符同)하여 불법벌목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여 싸움을 일으키거나, 일본인의 사환(使喚)이 되어 고용되는 일이 있으면, 울릉도감이 보고(馳報)하고 바로 부산 경무서로 수감하고 등급을 나누어 엄히 징벌할 것이다."(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 光武 4年(1900) 6月, 「訓令十三洞」,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24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報告書 後錄」,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용정은 울릉도에 불법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추방하려고 노력하면서 울릉도에서 자체 운영하는 선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울릉도 주민이 일본인의 불법행동을 알면서도 고소하거나 제지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선박이 없기 때문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우용정은 울릉도의 선박 개운환의 구매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다.

울릉도민은 개운환이라는 이름의 돛단배(風帆) 1척을 구매하고자 했지만 비용을 마련할 수 없었다. 결국 과거 울릉도민의 불법벌목에 따른 속전(贖錢) 400금(金)을 기초로, 최근 적발한 규목 106주(株)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개운환 1척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우용정은 '회사'를 설립하여 개운환을 운영하도록 후원했다. 우용정은 "만일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 배를 살 수가 없고, 울릉도의 정세와 항로가 급하므로 부득이 상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허락했다"라고 보고했다. 우용정은 개운환의 구매를 내부와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우용정은 섬의 정세와 항로가 시급하여 선박을 구매했다고 보고했다.[25] 우용정은 선박 구매까지 결정할 정도로 울릉도에서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을 수행했다.

우용정은 1895년 9월 울릉도 도감 설치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기록했다. 조선 정부는 1895년 9월부터 울릉도에 도감을 설치하여 사무를 관할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우용정은 도감의 권위를 뒷받침해줄 하급관리가 없기 때문에 "일본인이건 한국인이건 모두 날뛰며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 모두 관장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울릉도감은 서기(書記)나 사환(使傭, 심부름꾼)을 거느리지 못했고, 월급(月俸 또는 廩料)을 받지 못했다. 우용정은 하급관리의 부재 때문에 울릉도민이나 일본인 모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용정은 울릉도의 과세 물품 중 미역세(藿稅)와 조선세(造船稅)를 주목했다. 조

---

25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報告書 後錄」,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선세는 1파(把)마다 5냥(兩)의 세금을 걷었는데, 전라도민이 울릉도에서 매년 10척의 선박을 제조했다. 우용정에 따르면 "울릉도의 과세(稅課)는 미역세가 위주였는데, 미역(藿)은 100원(円)마다 5원(円)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매년 거두는 세금이 500-600원을 밑돌지 않았다. 최근 울릉도감은 전라도 백성의 청원을 받아들여 100분의 10세를 100분의 5세로 변경했는데, 다시 100에 10을 거둔다면 울릉도의 경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우용정은 울릉도의 과세 물품 중 미역세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용정은 전라남도 출신의 울릉도 거주민이 주로 미역을 채취했는데, 미역세를 100원마다 5원 세금에서 100원마다 10원으로 조정할 것을 제의했다.

우용정은 불법 일본인에 대한 세금 징수와 중단을 기록했다. 우용정에 따르면 울릉도감은 불법 일본인에게 1896년과 1897년 "벌금을 내라고 질책하여 화물에 대해서 100분의 2의 세금을 거두었다." 그런데 울릉도감은 불통상 항구에서 '벌금' 대신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일본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26]

우용정은 울릉도감 휘하의 감무와 서기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무(監務), 서기(書記), 사환(使傭) 등의 관리를 보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또한 관청 운영을 위해서 울릉도 400호로부터 보리와 콩을 각각 2두, 총 80석(石)을 거둘 것을 제안했다.

우용정에 따르면 "지금 울릉도의 관제(官制)를 개편하는 청의서(請議書)가 재결을 기다리며 보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실 1900년 3월 1일 『황성신문』은 '울도관제의 개정(鬱島官制 改定)'안을 보도했다. 이미 우용정 파견 이전에 대한제국 내부는

---

26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報告書 後錄」,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우용정은 다음과 같은 서류 목록을 첨부했다. 戶口成冊 一件, 起墾成冊 一件, 日人結幕人口成冊 一件, 日人犯斫槻木成冊 一件, 本島人犯斫成冊 一件, 監務報告 一件, 本島等狀 一件, 日人事實 一件(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報告書 後錄」,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울릉도 관제개정안을 의정부 회의에 제출했다.[27] 우용정은 관제의 재결 후에는 감무, 서기, 사환 등의 월급을 반드시 울릉도 내에서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용정은 경비 마련을 위해서 울릉도의 400호로부터 "여름에는 보리 2말, 겨울에는 콩(黃豆) 2말씩을 거두어, 보리와 콩을 합하면 80석은 넉넉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28]

우용정은 대한제국의 울릉도 관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울릉도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활동했다. 우용정은 울릉도의 관제청의서(官制請議書)가 정부에서 보류(留案)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경비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우용정의 파견은 대한제국 내부에서 울릉도의 관제 개편을 계획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대한제국이 울릉도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강력한 행정 관할을 시도하려는 목적에서 우용정을 파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한일공동조사단의 조사 내용 및 울릉도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대립

1. 우용정이 바라본 조선인과 일본인의 대립

우용정은 1900년 6월 울릉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후록(報告書 後錄)」을 작성하여 내부대신 이건하에게 제출했다.[29]

---

27 『皇城新聞』, 1900. 3. 1.

28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報告書 後錄」,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29 "섬에 있는 동안 울릉도의 정황을 두루 조사하여 도민의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과 전후의 사실 또한 후록으로 만들어 항목별로 자세히 진달하니 조사하여 대조해보시기 바랍니다."(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報告書」,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용정은 일본인이 울릉도에 거주하는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가호는 모두 57칸(間)이고, 남녀 인구 144명이었다. 정박한 배(留泊舡隻)는 모두 11척으로 왕래하는 상선은 정해진 숫자가 없었다. 일본인은 모두 바닷가(海濱) 골짜기 입구(洞口)에 초막(結幕)을 짓고 살았는데, 대부분 규목으로 판자를 만들어 지붕을 덮고 벽을 둘렀다.

우용정은 불법거주 일본인의 벌목 현황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일본인이 과거에 함부로 규목을 벌목한 것은 모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1899년 71그루(柱) 정도였고, 향나무와 잡목도 벌목하여 그릇을 만들었다. 1년 동안 감탕나무(甘湯木) 껍질을 벗겨 즙을 짜내 운반해 나간 것도 천여 통이 넘었다. 우용정은 일본인이 몇 년만 더 거주한다면 울릉도 산은 모두 민둥산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일본인은 1901년까지 울릉도에서 일정 규모의 수목을 모두 벌목할 계획이었다. 우용정은 일본인이 울릉도의 수목이 모두 없어진 다음에야 불법벌목을 그만둘 것이라고 간파했다. 일본인은 매번 싸움을 일으켜 문제를 만들었고, 반드시 벌목 허가표를 받고 나서야 물러났다. 이것은 일본인이 허가표를 내세워 그동안 불법벌목한 사실을 덮으려는 의도였다.

우용정은 일본인의 불법적인 활동과 그 이유도 기록했다.

일본인은 고래를 잡기로 약속하고는 고래 고기와 기름을 나누지도 않았다. 심지어 일본인은 울릉도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피해만 주었는데 아녀자를 희롱했고, 갑자기 남의 집 안으로 쳐들어가 주민을 공격했다. 우용정에 따르면 일본인은 심문 과정에서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면서 말이 막히면 물러가겠다고 답변했다. 우용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인에 의한 피해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용정은 울릉도감이 단신(單身)이라 힘이 없어(空拳) 금지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우용정은 조속히 회담하여 최대한 빨리 일본인을 추방시켜야 울릉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민을 보호하고 삼림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30]

우용정은 1900년 6월 1일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보 아카쓰카와 함께 울릉도 거주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6월 3일 도감 배계주와 함께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우용정은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이 촌락을 형성하고 선박을 운항하며 울릉도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항산(恒産)이 없는 일본인 수백 명이 한 구역을 마음대로 점거하여 촌락을 이루어 살면서 선박을 운항하고 목재를 벌목하고 화물을 몰래 실어 날랐다. 울릉도감은 일본인이 멋대로 난동을 부리고 병기(兵器)를 휘둘렀음에도 불구하고 금지시킬 수가 없었다.[31]

그런데 우용정은 1899년 9월 16일 외부대신과 주한 일본공사관이 주고받은 문서의 내용을 기록했다. 1899년 9월 일본영사관 다카오 겐조(高雄謙三) 서기생은 울릉도에 불법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철수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일본인은 울릉도감의 허가를 받고 목재비용(伐木料)을 납부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다.[32]

우용정은 1900년 6월 일본인의 울릉도 추방 문제와 울릉도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중요한 현안으로 기록했다. 우용정은 일본인들이 울릉도감의 업무까지 방해한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울릉도감은 일본인의 불법벌목이 심해지자, 곧바로 배를 타고 한성으로 달려가 사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일본인들이 각 나루 입구를 지키고서

---

30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報告書 後錄」,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31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鬱島在留日本人調查要領」,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우용정은 다음과 같은 서류 목록을 첨부했다. 戶口成冊 一件, 起墾成冊 一件, 日人結幕人口成冊 一件, 日人犯斫槻木成冊 一件, 本島人犯斫成冊 一件, 監務報告 一件, 本島等狀 一件, 日人事實 一件(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報告書 後錄」,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32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鬱島在留日本人調查要領」,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출발하지 못하게 했다"[33]라는 것이다

우용정은 1900년 6월 1일 한일 공동으로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 후쿠마 효노스케(福間兵之助)를 비롯한 가타오카 히로치카(片岡廣親), 마쓰모토 시게요시(松本繁榮)를 조사했다.

후쿠마 효노스케 등은 3년 전부터 울릉도에 거주했지만 불법벌목을 하거나 병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인은 화물을 운송할 때 "울릉도감이 매번 사람을 파견하여 100분의 2의 세금을 울릉도감에게 납부했다"라고 주장했다. 후쿠마를 포함한 일본인은 전 도감 오상일(吳相鎰)에게 벌목량을 정하지 않고 나무 가격으로 500냥을 선납했다고 주장했다.[34]

1900년 6월 우용정은 울릉도감과 일본인의 재판 과정을 기록했다.

우용정에 따르면 울릉도감 배계주는 1898년 일본인의 불법벌목에 대해서 일본 재판소에 호소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인은 재판비용을 보상하라며 울릉도감을 위협하고 협박했다. 이에 울릉도민이 배계주 대신 비용을 마련했다.[35]

1900년 6월 1일 우용정은 울릉도감과 일본인의 재판소송에 대해서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 후쿠마 효노스케 등에게 질문했다.

후쿠마 등에 따르면 배계주는 일본인이 울릉도 규목 95판(板)을 몰래 운반했다고 일본 마쓰에(松江)재판소에 고발했다. 후쿠마 등은 울릉도민의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쿠마는 일본 재판소에서 승소하여 법에 근거한 도감의 처벌 등을 주

---

33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鬱島在留日本人調査要領一」,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34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鬱島在留日本人調査要領」,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35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鬱島在留日本人調査要領 二」,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배계주는 1898년 9월 12일 사카이(境港) 경찰서장에게 시마네현 다나카 미치노리(田中道德), 돗토리현 요시오 만타로(吉尾万太郎), 오이타현 간다 겐키치(神田健吉) 3명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마쓰에지방재판소 사이고지청(西鄉支廳)으로 송치되었다(「사료해제: 1898년 울릉도감 배계주의 친필 고발장」, 『독도연구』 24호, 2018, 347-35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장하며 자신들의 합법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1900년 6월 2일 우용정은 울릉도감과 일본인의 재판소송에 대해서 배계주에게 질문했다.

배계주에 따르면 1899년 9월 후쿠마는 일본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갑자기 관청(官房)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협박했다. 일본인은 자신들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했으니 소송비를 당장 배상하라고 위협하면서 배계주의 수족을 결박(堅鎖)했다. 그때 일본인 와키타(脇田)가 화해를 권하며 콩 400두(斗)로 타협할 것을 제안하여, 배계주는 어쩔 수 없이 승인했다. 그 후 후쿠마는 통역 정술갑(鄭述甲)을 보내 콩을 상환하라고 재촉했고, 배계주는 가옥의 전토를 울릉도민에게 전당잡히고 콩 400두를 후쿠마에게 주었다. 그런데 배계주는 후쿠마가 콩 400두를 받은 '표기'를 주지 않아 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36] 후쿠마가 배계주를 결박하여 협박했다는 사실은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의 무력에 의한 위협이 심각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900년 6월 2일 울릉도 시찰위원 우용정과 부산 일본영사관보 아카쓰카는 울릉도감 배계주를 조사했다.

먼저 1900년 6월 2일 우용정이 질문하자 도감 배계주가 답변했다.

"사무장 이노우에 타이소(井上帶莊)는 납세 책자 1권을 만들어 출항하는 화물에 대해 100분의 2를 납부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1896년과 1897년에 일본인은 세금(捧稅)과 달리 100분의 2세(稅)의 수수료(口文)만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이 벌금표(罰金標)만 바치고 끝내 벌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도주한 증거문적(證據文蹟)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계주는 울릉도가 '개항장(開港場)'이 아닌 '불통상구안(不通商口岸)'임을 일본인에게 설명했다. 배계주에 따르면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은 부산항(釜山港) '상선

---

36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鬱島在留日本人調査要領二」,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물표(商船物表)'만을 갖고 있었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1896년과 1897년 출항하는 화물에 대해서 100분의 2의 수수료만 납부했다. 배계주는 100분의 2가 수수료이지 실제 세금(捧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벌금표 6장을 소지한 일본인은 단지 '벌금표'만 제출하고 벌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은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

1900년 6월 2일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보 아카쓰카는 "일본인이 콩으로 납세한 적이 있는지"를 울릉도감 배계주에게 물었다. 그러자 배계주는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이 콩(太穀) 40두를 납세하려고 했지만 출항하는 화물에 비해 세금이 너무 적어 거절했다고 답변했다.

"일본인들이 콩으로 납부하기를 원했으나, 본관은 출항하는 물건에 비해서 40두의 콩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질책하고서 끝내 납세를 허락하지 않았다."

배계주에 따르면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전 도감 오상일에게 규목 1그루를 벌목하겠다며 50원(元)을 지불하고, 규목 1그루에 대해서 박중(朴仲)에게 500냥을 주고 구매했다.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은 2그루의 규목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대규모의 규목을 불법적으로 벌목했다. 배계주는 "어찌 벌목료(伐木料)를 지불한 것인가"라고 하면서 아카쓰카에게 강력하게 주장했다. 배계주는 "일본인들이 소란을 일으킨 날에 관해 기록해둔 책자도 있다"라며 일본인의 불법행동을 기록으로 남겼다.[37]

1900년 6월 2일 우용정이 울릉도의 현안 문제에 대해 배계주에게 질문했다. 그 질문의 핵심은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철수하지 않는 이유, 전사능의 벌목 이유, 일본인들의 울릉도감 억류 이유 등이었다.

첫째, 배계주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철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했다. 배

37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鬱島在留日本人調査要領」,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계주는 일본인이 규목으로 만든 판자 28자루를 압류했다. 일본인들은 이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것을 핑계로 울릉도를 떠나지 않았다.

둘째, 배계주는 김용원이 규목 80그루를 판자로 만든 일에 대해서 답변했다. 배계주는 전사능이 일본인과 함께 농상공부 훈령을 빙자하여 죽을 각오로 규목을 벌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치했다. 배계주 자신이 일본인을 고용할 이유가 없었다.

셋째, 배계주는 일본인들이 항구를 봉쇄한 것에 대해서 답변했다. 배계주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항구 입구를 파수하여 그의 출발을 방해했고, 이경언(李敬彦)은 일본인이 배계주의 편지를 찢어버린 것을 목격했다.[38]

우용정은 1900년 6월 오노 케이지(大野桂治)와 김용원의 울릉도 불법벌목 과정과 철수를 상세히 조사했다. 김용원은 농상공부 훈령을 소지하고 벌목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배계주는 울릉도민의 지원을 약 3천 냥의 배상을 김용원에게 약속하여 불법벌목을 막았다.

1900년 6월 2일 우용정은 일본인이 김용원에게 약 3천 냥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 배계주에게 물었다.

배계주에 따르면 일본인 오노 케이지는 전답문권(田沓文券) 및 수표(手票)를 저당잡고, 동래(東萊)에 사는 김희언(金希彦)과 윤장오(伊章五)에게 3,030냥(兩)을 내주었다. 김희언과 윤장오는 울릉도 규목 벌목에 관한 농상공부 훈령을 받아서, 김용원과 오노를 울릉도에 보내 벌목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배계주는 김용원과 오노의 불법벌목을 금지시켰다. 김용원과 오노가 벌목을 허락하지 않으려면 3,030냥을 내라고 독촉하자, 배계주는 어쩔수 없이 동의(應諾)했다. 그러자 우용정은 먼저 배계주가 1,500냥을 콩으로 계산하여 현물로 지불하고, 나머지 이자를 붙인 1,700냥을 부산영사관에 갚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39]

---

38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鬱島在留日本人調査要領一」,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39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鬱島在留日本人調査要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0년 6월 3일 울릉도 시찰위원 우용정과 일본 부영사(영사관보) 아카쓰카는 세무사 라포르테의 참여 아래, 도감 배계주와 일본인 대표 후쿠마 등을 대질 심문했다.

1900년 6월 3일 우용정과 영사관보 아카쓰카는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의 납세에 대해서 대화했다.

아카쓰카는 "처음에 세금을 받다가 끝에 세금을 받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배계주에게 물었다. 배계주는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서는 납세를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수수료(口文)라는 명색으로 받았으나 나중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카쓰카는 100분의 2를 '세금'으로, 배계주는 100분의 2를 '수수료'로 판단했다. 우용정과 배계주는 불통상 항구에서는 '납세'를 할 수 없으며 정부의 '신칙(申飭)'으로 폐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아카쓰카는 일본인이 제출한 표기(標記) 4장을 우용정에게 제시했다. 배계주 도감이 발급한 콩(太) 30두(斗)에 대한 납세표(納稅票), 오상일 도감이 발급한 콩(太) 140두(斗)에 대한 납세표 및 납세약조표(納稅約條票) 및 규목물금표(槻木勿禁票) 등이었다.

우용정은 1900년 6월 3일 후쿠마가 오상일에게 500냥을 지불한 것에 따른 규목 허가 범위도 조사했다.

우용정은 후쿠마가 규목 관련 오도감(吳島監)에게 준 표면(票面)을 살펴보면, "하나의 규목을 베는 데 500냥을 바친다(一槻木伐條 五百兩價捧上也)"라는 것인데, 이는 1그루의 규목에 500냥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카쓰카는 "하나의 규목이라고 할 때 '일자(一字)'는 범칭하는 일자이지, 1그루라는 의미의 일자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우용정은 "어떤 물건이든 숫자를 정하지 않고 하는 매매법(賣買法)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三」,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크게 당황한 일본영사는 '일규목(一槻木)'의 '일(一)'자가 범칭(泛稱)의 일자(一字)이지, '1주(一株)'의 '1자(一字)'가 아니라고 변명했다. 우용정은 '납세약조표'를 검토하면서, 숫자(數)를 정하지 않고 매매하는 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우용정은 1900년 6월 3일 고래를 둘러싼 울릉도 거주 조선인(我民)과 일본인(貴民)의 충돌을 조사했다. 우용정에 따르면 1900년 5월 죽은 고래 한 마리가 바다 위로 떠오르자 일본인 7명과 한국인 7명이 합력하여 끌어온 후에 반씩 나누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한국인이 왜 반분(半分)하지 않고 조금(70근)만 주냐고 항의하자, 일본인이 칼을 빼어들었다. 우용정에 따르면 "일본인이 성을 내며 칼을 빼어들자 한국인은 돌을 던져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한국인 2명은 칼에 찔려 머리에 상처를 입었고 2명은 정강이 아래를 다쳤다." 결국 한국인은 투석으로 대항했지만 일본인이 휘두르는 검에 2명이 머리를 다치고 2명이 복부 아래를 부상당했다.

우용정은 1900년 6월 3일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이 철수하지 않는 이유를 기록했다.

일본영사관보 아카쓰카는 배계주가 규목 80그루를 벌목할 때까지 철수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라포르트 세무사는 "전사능(田士能)이 벌목하기로 한 80그루를 벌목한 이후, 현재 머물고 있는 일본인 130여 명과 정박하고 있는 11척의 선박(十一船隻)은 물러갈 수 있는 겁니까? 전에 다카오 서기생은 주한 일본공사의 지휘(貴公使指揮)를 받아 일본인을 소환시켰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라포르트는 만약 규목 80그루를 벌목하면 일본인도 모두 철수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일본영사는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이 "80그루를 다 베면 물러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뿐이라고 변명했다. 우용정은 전사능이 농상공부 훈령을 빙자하여 이미 규목 83주를 베어갔으니,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아카쓰카는 배계주가 벌목을 이유로 일본인들을 체류하게 만들었고, 일본인 선박에 대한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그러자 답답한 라포르테 세무사는 80그루의 벌목이 완료되면 일본인도 모두 철수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카쓰카는 80그루의 벌목이 완료되면 철수한다는 것은 자국인이 한 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궁색하게 빠져나갔다.

그런데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보 아카쓰카가 불리할 때 보이는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납세약조표의 사실이 드러나고, 일본인의 폭력으로 부상당한 증인이 나타나자 아카쓰카는 "이 안건을 미결로 해두자고 하면서, 당사자가 자리에 있어야 심판할 수 있다"며 심판을 결정하지 않으려고 했다.[40] 또한 그는 불리하면 화제를 전환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했다.

우용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며 일본인의 무력 사용을 비판했다. 그러자 아카쓰카는 울릉도에 일본인을 거주시키려는 생각으로 일본인이 울릉도에서 한 행동을 변호하려고 노력했다.

2. 아카쓰카의 울릉도 조사와 일본인에 의한 울릉도 삼림 황폐화

1900년 6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보 아카쓰카 쇼스케[41]는 우용정과 공동으로 일본인들과 울릉도감을 조사했다.

---

40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禹用鼎→內部大臣 李乾夏, 光武 4年(1900) 6月, 「鬱島在留日本人調査要領三」,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41 赤塚正助, 赤塚正助, 赤塚正輔 등으로 표기되었는데, 일본 외교문서에는 공식적으로 赤塚正助(1872-1942)로 기록되었다. '赤塚'은 '赤塚'을 잘못 표기하였다. 赤塚正助는 1900년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보(부영사)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駐港日本副領事赤塚正輔."(李乾夏-朴齊純, 光武四年六月十九日, 「照會 第十二號, 內部來去文 13) 그는 1906년 마닐라 주재 영사로 임명되었다.(外務大臣子爵 林董, 明治 39年(1906) 11月 6日, 「マニラ駐在領事赤塚正助ヘ御委任状御下付ノ」, 『公文雜纂』 第十三巻(国立公文書館). 그는 1917~1922년 봉천 주재 일본총영사로 근무했다(在奉天 總領事 赤塚正助-外務大臣 子爵 內田康哉, 大正 8年(1919) 11月 25日, 「機密公第六四號 不逞鮮人英國基督教會內潛入ノ件」, 『韓國獨立運動史: 國內·中國東北地域 宗教運動』 38)). "在奉天赤塚總領事"(「機密 제113호 鮮人의 행동에 관한 건」,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西比利亞』 8, 1919년 11월 6일). 그는 1922년 11월 주네덜란드 공사로 승진하였다. "赤塚奉天領事, 和蘭公使에 昇任."(『東亞日報』, 1922. 11. 24). 그는 1928년 제16회 중의원(衆議院)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였다. 1899년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보는 中村 이었고, 1902년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보는 今井이었다(최보영, 2018, 「개항기 주한일본영사의 활동과 한국인식」,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9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0년 5월 4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울릉도 조사요령을 외무대신 아오키(青木)에게 보고했다. 첫째는 한국 정부의 조회 내용 중 폭행 사실과 원인이었다. 둘째는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숫자, 원적(原籍), 직업(職業), 울릉도 거주 연한, 소유 선박이었다. 셋째는 목재(木材), 곡물(穀物), 잡화 등의 수출입 내용이었다. 넷째는 벌채한 목재의 수출입 등에 대해 울릉도사(島司)와의 관계, 즉 세금 징수 등에 대한 공식 허가 또는 묵인 사실 여부였다. 무엇보다도 하야시 공사는 일본이 울릉도의 벌목권을 러시아인으로부터 양도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의 삼림 상황도 조사할 것을 외무대신 아오키에게 제안했다.[42]

동시에 1900년 5월 4일 하야시 공사는 "1899년부터 러시아인과 울릉도 벌목이 문제가 되었다며 필요한 관계 서류를 일괄 밀봉하여 송부한다"라며 부산 주재 일본영사 노세(能勢)에게 울릉도 삼림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지시했다.[43]

1900년 5월 15일 부산 주재 일본영사 노세 다쓰고로(能勢辰五郎)는 아카쓰카 영사관보의 울릉도 출장을 일본 외무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하야시 공사에게 보고했다.[44] 동시에 1900년 5월 15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주한 서울영사관의 경부 와타나베를 출발시킬 예정인데, 울릉도 목재 조사를 위해 도쿄에서 부산으로 가는 일본인이 있을 것이라고 노세 영사에게 알려주었다.[45]

1900년 5월 22일 부산 주재 일본영사 노세는 군함 오시마(大島)의 함장이 출항을 준비했고, 필요할 경우 명령이 있으면 어느 지방으로 회항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

---

42 『駐韓日本公使館記錄(14)』, 1900年 5月 4日, 〈九. 機密本省往信 一·二〉(26) 鬱陵島ニ於ケル本邦人ノ行爲立合取調ノ件, 林 公使→青木 外務大臣, 340쪽.

43 『駐韓日本公使館記錄(14)』, 1900年 5月 4日, 〈一三. 各領事館機密來信 一·二〉(27) 鬱陵島 日人行爲 立會調査 件, 林 公使→能勢 領事, 526쪽.

44 『駐韓日本公使館記錄(14)』, 1900年 5月 15日, 〈七. 各領事館電報來信〉(269) 赤塚領事官補 鬱陵島에 出張命令 件, 能勢 領事→林 公使, 264쪽.

45 『駐韓日本公使館記錄(15)』, 1900年 5月 15日 오후 3시 5분 發, 〈三. 各領事館電報往來〉(29) 鬱陵島 出張에 관한 件, 林 公使→能勢 領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았다.[46]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울릉도 출장과 관련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함 오시마를 준비시켰다.

1900년 5월 30일 부산 주재 일본영사 노세는 영사관보 아카쓰카 외 3명 및 사토 준조(佐藤潤象) 외 1명이 창룡호에 탑승하여 오후 5시 울릉도로 출발했다고 보고했다.[47] 울릉도 벌목 조사를 위해 도쿄에서 출발한 인물은 바로 사토 준조였다.[48]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1900년 5월 31일 울릉도 조사를 위해서 아카쓰카 영사관보 및 일본영사관 소속 와타나베 경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와타나베는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의 통역을 겸임할 정도로 하야시의 신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실력도 뛰어났다. 하야시는 노세 영사가 추천한 사람을 배제하고 자신의 통역인 와타나베로 결정했는데, 울릉도의 삼림권을 포함한 이권 문제를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49]

1900년 6월 12일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보 아카쓰카 쇼스케는 「울릉도 조사개황 및 산림조사개황(鬱陵島 調査概況 및 山林調査概況)」에 관한 보고서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에게 제출했다.

아카쓰카는 1900년 5월 30일 경부 와타나베, 부산 영사관 소속 순사(巡査) 타카쿠라(高倉純雙), 자신의 심복(同朋) 오카노보리(岡登之進)와 사토 준조를 동반시켜 창룡호(蒼龍號)를 타고 31일 울릉도에 도착했다. 아카쓰카는 3일 동안 도감 배계주의 자택에서 한일공동조사단과 함께 일본인 및 울릉도감을 조사했다. 그 밖에 아카

---

46 『駐韓日本公使館記錄(15)』, 1900年 5月 22日 오후 4시 50분 發, 〈三. 各領事館電報往來〉(64) 軍艦大島 鬱陵島 廻港 件, 能勢 領事→林 公使.

47 『駐韓日本公使館記錄(15)』, 1900年 5月 30日 오후 6시 發, 〈三. 各領事館電報往來〉(68) 赤塚 領事官補 一行 鬱陵島 向發 件, 能勢 領事→林 公使.

48 "조선 농상공부보좌관. 前 산림국 영림주사. 佐藤潤象."(『駐韓日本公使館記錄(5)』, 〈十. 顧問官進退 及本邦人雇聘〉(25) 各衙門의 日人顧問官 名單)

49 『駐韓日本公使館記錄(14)』, 1900年 5月 31日, 〈九. 機密本省往信 一·二〉(29) 鬱陵島 日本人 不法行爲 調査續報, 林 公使→青木 外務大臣, 34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쓰카는 산림과 잡무를 조사하고 5월 6일에 출발하여 7일 부산에 도착했다.[50]

아카쓰카에 따르면 "울릉도(鬱陵島)는 한국(韓國) 강원도(江原道)에 속한 도서(島嶼)로 송도(松島) 또는 죽도(竹島)라고도 불렸다. 동경 130도(度) 8분(分) 2리(厘), 북위 37도(度) 5분(分)에 위치했다. 동서는 모두 6마일 정도이고 남북은 대략 4마일 정도이고, 주위는 대략 20리(里) 정도였다." 아카쓰카는 울릉도가 강원도에 속한 도서이고, 울릉도의 명칭을 "송도 또는 죽도"라고 지칭했다. 아카쓰카는 울릉도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해저가 깊고 짙은 남색을 띠고 있는데 풍파가 언제나 사납다"라고 기록했다.

아카쓰카는 울릉도의 지리적 거리에 대해서 "부산에서 동북쪽으로 180마일, 사카이미나토(境港)에서 서북쪽으로 200마일, 오키(隱岐)에서는 140마일"이라고 기록했다. 그는 동해에서 부산, 사카이미나토, 오키 등을 울릉도와 관련된 지역으로 인식했다.

아카쓰카는 울릉도 수목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여 있는 천연림으로 느티나무의 질이 가장 양호하고 나무결이 치밀하다고 기록했다. 수종으로 느티나무(欅), 너도밤나무(山毛欅), 단풍, 동백나무(椿), 매화나무(梅), 떡갈나무(欅), 백단(白丹), 앵두나무(櫻), 뽕나무(桑), 오엽송(五葉松), 오동나무(榎) 등이 있었다. 아카쓰카는 13년 전 울릉도 느티나무를 일본인 천여 명이 반출했고, 교토 혼간지(本願寺)[51]의 건축용

---

50 『駐韓日本公使館記錄(14)』, 1900年 6月 12日, 〈一三. 各領事館機密來信 一·二〉(47) 機密京第17號 鬱陵島 調査概況 및 山林調査概況 報告의 件, 在釜山 領事官補 赤塚正助→京城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542쪽.

51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와 니시혼간지(西本願寺)는 교토에 소재했다. 정토진종(淨土眞宗) 혼간지(本願寺)는 도쿠가와(德川家康) 시대에 동서로 분리되어 2개의 혼간지로 나뉘었다. 1873년에 히가시혼간지는 대곡파(大谷派)라 불리고, 니시혼간지는 본원사파(本願寺派)로 불리게 되었다. 히가시혼간지는 1877년 11월 5일에 참판관(參判官) 관사(官舍)를 빌려 혼간지 출장소(本願寺出張所)라 칭하고 포교를 시작했다. 1878년 12월 관의 허가를 받아 히가시혼간지의 부산별원(大谷派釜山別院)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부산별원 자리에는 대각사(大覺寺)가 위치한다(http://busan.grandculture.net). 히가시혼간지 부산별원은 당시 조선 정치인과 일본 정부를 이어주는 창구 역할을 했다. 이동인(李東仁)은 부산별원의 조선 개교 활동과 깊이 관련된 인물이었다(채상식, 「日本 明治年間 淨土眞宗의 추이와 그 특성」, 『한국민족문화』 16, 2000, 2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목재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했다.

아카쓰카에 따르면 일본인은 1897년 저포(苧浦)에서 1그루의 벌목을 도감에게 허가받아 실제 2,500재(才)가 넘는 판재(板材)를 수송했다. 1899년에는 10만여 재(才)의 판재를 수송했고, 1900년 한국 정부의 공문에 기초하여 5만여 재(才)의 판재를 수송했다. 당시 느티나무(欅材) 1재(才)는 1촌각(寸角) 길이 7척(尺)으로 7전(錢)의 가격이었고 10만 재(才)는 7천 원(圓)이었다. 이피(貽皮)는 1897년부터 1900년까지 끈끈이로 만들어, 총 3,400원(圓)에 해당하는 7,500관(貫)을 일본에 수송했다.

아카쓰카에 따르면 느티나무(欅) 3척 이상 6척 미만이 1만 6,335그루 정도이며, 우장동(牛腸洞), 남양동(南陽洞), 황토구미(黃土九味)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아카쓰카는 4일 동안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울릉도의 수목 중 3척 이상이 50만 1,600그루로 추정된다고 했다.[52]

아카쓰카는 울릉도의 '위치와 지세'라는 항목에서 울릉도가 "부산과의 거리는 180마일, 원산과의 거리는 180마일, 일본 오키에서는 140리(里)"라고 기록했다. 아카쓰카는 부산, 원산, 오키의 지점에서 울릉도를 파악했다. 아카쓰카는 울릉도의 항구에는 '도동'에 좁은 작은 항구가 있지만 일본 풍범선(風帆船) 200석적(石積) 이하 선박도 풍랑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기록했다.

아카쓰카는 울릉도의 '산물'이라는 항목에서 해산물, 농산물, 수목 등을 기록했다. 울릉도의 해산물은 미역(若布), 우뭇가사리(天草), 전복(鮑魚) 등이었는데 해저가 깊고 암석이 많기 때문에 전망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카쓰카는 울릉도의 농산물은 콩, 보리, 감자 등이라고 기록했다. 대두(大豆)는 연평균 대략 5천 석(石)이었는데, 그중 3천 석 일본 시세로 평균 2만 원(圓) 정도를 일본에 수출했다. 보리는 울릉도민 2,500여 명이 주로 자급자족하고, 100석 내지

---

52 『駐韓日本公使館記錄(14)』, 1900年 6月 12日, 〈一三. 各領事館機密來信 一·二〉(47) 機密京第17號 鬱陵島 調査概況 및 山林調査概況 報告의 件 別紙 1 鬱陵島 山林調査 概況, 在釜山 領事官補 赤塚正助→京城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542-54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50석만 일본에 수출했다.

울릉도의 주요 수목은 규목(槻木), 백단(白檀), 이(黐), 뽕나무(桑) 등이었다. 그중 규목은 일본에 비해 질이 뛰어나지만 6척(丈)이 넘는 것은 겨우 150그루 정도였다.

아카쓰카에 따르면 울릉도의 주요 수출품은 규목(槻木), 대두(大豆), 보리(麥), 전복(鮑魚), 우뭇가사리(天草), 이(黐) 등이었다. 돈으로 환산하면 대두 2만 원(圓), 보리 960원(圓), 전복 2,960원(圓), 우뭇가사리 1,200원(圓)이었다.

아카쓰카에 따르면 울릉도의 수입품은 능목면(綾木綿), 금건면(金巾綿), 음식용품(飮食用品)등이었고, 1898–1899년의 평균 수입은 7천 원(圓) 내외였다. 수입품은 한인의 대두, 보리 등과 교환했는데, 도동과 사카이미나토가 주요 거래 장소였다.[53]

아카쓰카는 울릉도의 '도치(島治)'라는 항목에서 울릉도 거주민(島民)의 호수가 520여 가구, 인구가 2,500여 명이라고 기록했다. 아카쓰카는 "울릉도 거주민은 이웃간에 서로 친하며 공동생활의 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기록했다.

아카쓰카에 따르면 도감 배계주는 한국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했고, 수입이 적었다. 울릉도민도 배계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그는 치적도 세우지 못했다. 배계주는 일본을 세 차례 방문하여 기초적인 일본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배계주가 "규목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항상 직접 벌목하여 일본인 한 사람과 결탁하여 이익을 독점하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아카쓰카는 배계주가 "일본인의 규목 도벌에 관한 보고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여 울릉도의 느티나무를 독점하려 한다"라고 파악했다. 더구나 아카쓰카는 "울릉도민이 규목의 가격도 모르고 산에서 규목을 땔나무와 숯(薪炭用)으로 사용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릉도민은 일본인이 규목을 불법적으로 벌목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미 규목의 가치를 알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아카쓰

---

53 『駐韓日本公使館記錄(14)』, 1900年 6月 12日, 〈一三. 各領事館機密來信 一·二〉(47) 機密京第17號 鬱陵島 調査概況 및 山林調査概況 報告의 件 別紙 2 鬱陵島 調査 概況, 在釜山 領事官補 赤塚正助→京城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544–54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카가 도감 배계주의 개인적 규목 독점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일본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아카쓰카는 울릉도의 '일본인'이라는 항목에서 1900년 울릉도 거주 일본인이 주로 시마네현(島根縣) 출신으로 100명 안팎이었다고 기록했다.

1891년 일본인 7명은 끈끈이(黏)를 제조하기 위해 울릉도에 도항했다. 1896년 이후 200명 내외의 일본인이 울릉도에 거주하면서 느티나무(櫸木)를 벌목했다. 1900년 울릉도 거주 100여 명의 일본인은 원산 또는 부산을 항해하던 도중 기상 악화로 체류한 인물, 의도적으로 울릉도에 도항하기 위해서 체류한 인물로 구별되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선박의 출항면상(出港免狀)과 여권(旅券)은 대부분 원산 또는 부산용이었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도동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촌을 형성했고, 조합을 만들어 간사(幹事)를 두고 질서를 유지했다.

아카쓰카(赤塚正助)는 "도감 배계주는 그다지 경복(敬服)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난폭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했다. 특히 배계주는 "전 간사(幹事) 가타오카 요시베(片岡吉兵衛), 현 간사(幹事) 마쓰모토 시게요시(松本繁榮)와는 잘 지내는 모양이었다"라고 기록했다.

아카쓰카에 따르면 울릉도 거주 한국인은 능목면과 금건면 등의 옷감을 모두 일본으로부터 수입했다. 울릉도민은 본토와 왕래할 때 일본형 풍범선에 의존했다. 아카쓰카는 1900년 100석적(石積) 내외의 기항(寄港) 중인 일본 선박 11척(艘)을 목격했다.

아카쓰카는 '울릉도에 대한 장래의 전망'이라는 항목을 기술했다. 해산물은 전망이 좋지 않았고, 전복(鮑魚)과 우뭇가사리(天草)의 수량이 감소하여 기계선(器械船) 1척 이상의 전망이 없었다. 그 밖에 대두의 수출량이 3천 석(石) 이상은 불가능했고, 6척(尺) 이상의 규목도 200그루에 못 미쳤다.

아카쓰카는 울릉도의 장래에 대해 "앞으로 그리 유망하지 못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울릉도에 있는 일본인을 돌아가게 만들고 앞으로 입도(入島)를 금지하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라도 손실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아카쓰카는 "올해 1년간 울릉도의 일본인 문제를 미결로 놔둘 수 있다면 규목이 대체로 다 베어질 것이다"라고 기록했다.[54]

결국 아카쓰카는 울릉도민이 울릉도 거주 일본인으로부터 많은 편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에 대한 감정이 매주 좋은 상태였다고 기술했다. 이것은 아카쓰카가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거주가 합법화되기를 의도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아카쓰카는 1900년 일본인을 그대로 두면 울릉도에서 상품성이 있는 규목이 모두 벌목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협상 지연을 통해서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은 규목을 포함한 울릉도 삼림을 황폐화시켰다.

Ⅴ. 동래감리서 주사 김면수의 울릉도 조사

대한제국 내부와 외부는 1900년 5-6월 울릉도 시찰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했다. 그 과정에서 대한제국 외부는 1900년 5월 동래감리서 주사 김면수의 파견을 계획하면서 김면수에게 독자적인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1900년 5월 30일 감리서 주사 김면수는 우용정과 함께 울릉도로 출발했다. 김면수(1854-1930)는 풍산김씨(豊山金氏) 학호공파(鶴湖公派)의 26세손이며, 아버지는 김낙용(金洛龍)이다. 1854년(철종 5) 경상북도 안동군 풍산면(豊山面) 오미동(五美洞)에서 출생했고 1930년에 사망했다.[55]

---

54 『駐韓日本公使館記錄(14)』, 1900年 6月 12日, 〈一三. 各領事館機密來信 一·二〉(47) 機密京第17號 鬱陵島 調査概況 및 山林調査概況 報告의 件 別紙 2 鬱陵島 調査 概況, 在釜山 領事官補 赤塚正助→京城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545-546쪽.

55 金奭欽 刊編, 『豊山金氏世譜』 3卷, 1935, 10-11쪽(국립중앙도서관 古朝58); 『大韓帝國官員履歷書』 5冊, 145쪽(國史編纂委員會編纂 1972년 재간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면수는 1894년 부산항 감리서 서기관(書記官)으로 관직에 진출했다. 1898년 6월 동래감리서 주사, 1901년 5월 무안감리서(務安監理署) 주사로 임명되었다. 1907년 11월 목포상업보습학교(木浦商業補習學校) 명예한문교사(名譽漢文敎師)로 활동했다.[56] 1910년 전라남도 정의군수(旌義郡守) 겸 정의보통학교장(旌義普通學校長)에 임명되었고, 1914–1922년까지 전라남도 나주군수(羅州郡守)로 근무했다.[57]

대한제국 외부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집을 짓고 살며 목재를 함부로 베고 소란을 피우며 이치에 맞지 않게 탐욕을 부리고 있다며 여러 차례 주한 일본공사관에 항의했다. 외부는 내부에서 시찰관 우용정을 파견하고, 주한 일본공사가 경부 와타나베를 파견한다는 사실을 김면수에게 전보했다. 외부는 1900년 5월 주한 일본공사와 왕래한 공문을 첨부하면서, 조사할 내용을 초록으로 작성하여 김면수에게 훈령 제33호를 보냈다. 외부는 김면수가 울릉도에 미리 가서 정형을 자세히 조사하고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58]

1900년 6월 9일 동래감리서 주사 김면수는 우용정을 수행하여 조사한 내용을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6월 1일부터 3일까지 조목조목 조사해보니, 일본인은 금령을 위반했고, 심지어 재판할 때 말을 온통 꾸몄다.[59] 김면수는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불법행동을 확인하고 조사 내용을 「후록(後錄)」으로 작성하여 외부에 보고했다. 김면수는 일본인이 심문

---

56 『大韓帝國官員履歷書』 5冊, 145쪽(國史編纂委員會編纂, 1972년 재간행).

57 『承政院日記』, 純宗 4年(1910) 1月 6日.

58 東來監理署 主事 金冕洙→外部大臣 朴齊純, 光武 4年(1900) 6月 9日, 「報告 第26號」, 『東來港報牒』 4冊; 유미림, 『개화기 울릉도 독도 관련사료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148쪽.

59 東來監理署 主事 金冕洙→外部大臣 朴齊純, 光武 4年(1900) 6月 9日, 「報告 第26號」, 『東來港報牒』 4冊; 유미림, 『개화기 울릉도 독도 관련사료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149쪽. 김면수는 5월 30부터 6월 7일까지 총 9일 동안 자신을 수행한 1명을 포함한 여비를 기록했다. 즉 판임관의 일당이 3냥 5전이고, 수행한 사람의 일당이 2냥 5전씩이니, 9일간의 총 여비는 54냥이었다(東來監理署 主事 金冕洙→外部大臣 朴齊純, 光武 4年(1900) 6月 9日, 「報告 第26號」, 『東來港報牒』 4冊; 유미림, 『개화기 울릉도 독도 관련사료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15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정에서 모순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김면수는 1900년 6월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이 울릉도에서 대장간과 목공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일본인은 울릉도 전체를 이익의 장소로 생각했다. 주물 화로를 열어 칼과 톱을 만드는 철야장을 설치하고, 향나무와 각종 미목을 베어 그릇을 만드는 목기공도 제작했다.

김면수는 일본인들이 평소에도 무례한 행동을 저질렀다며 울릉도민 희롱사건을 자세히 기록했다. 1899년 4월 울릉도 여인이 샘물을 길러 나왔는데 일본인이 갑자기 냇가에 나타나 여자의 손을 잡고 희롱했다. 울릉도민은 희롱한 일본인의 집에 가서 무례함을 꾸짖고 부산항으로 끌고 가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그 일본인은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수거(手據, 증표)를 작성했다. 그런데 며칠 후 일본인들이 창을 잡고 칼을 휘두르며 일본인의 수거를 빼앗았다. 울릉도감은 수하에 하인도 없어 일본인의 침학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김면수는 일본인의 불법행위를 기록하면서 울릉도감의 무기력한 대응을 기록했다.

김면수는 1900년 6월 울릉도 이주 과정을 기록했다.

울릉도는 1883년 강원도 사람이 먼저 이주한 이후 영남인 등이 모여들었다. 울릉도는 1882년 이전에는 하나의 거친 산에 불과했다. 1883년 이주 명령이 내려져, 관동 사람 7~8가구가 먼저 들어갔다. 1884년 이후 영남인 및 각 지역의 사람이 차츰 모여들었다. 이들은 자식을 낳고 혼인을 하여 점차 유교적인 풍속을 이루었다. 18년이 지난 후 백성이 번성하여 1,600여 명이 되었다. 울릉도에서 밭을 갈고 샘을 파서 백성들이 편안히 정착하여 '무릉도원'이 되었다.

그런데 김면수는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불법침입하면서 민심이 술렁대고 온갖 폐단이 발생했다고 기록했다.[60] 김면수는 신속히 주한 일본공사와 담판을 지어 일본인

60 金冕洙, 光武 4年(1900) 6月 9日, 「報告 第26號 後錄」, 『東來港報牒』 4冊; 유미림, 『개화기 울릉도 독도 관련사료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151~15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들을 소환할 것을 주장했다.

VI. 나오며

1900년 5월 30일 내부시찰관 울도시찰위원 우용정은 동래감리서 주사 김면수, 부산 해관 세무사서리 라포르트,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보 아카쓰카 쇼스케와 함께 부산에서 창룡환(蒼龍丸)을 타고 울릉도로 출발했다. 1900년 5월 31일 우용정은 울릉도감 배계주가 거주하는 도동항에 도착했다.

우용정은 1900년 6월 1-6일까지 울릉도 조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900년 6월 1일부터 3일까지 우용정은 라포르트의 배석 아래 아카쓰카와 공동으로 일본인과 울릉도감을 조사했다. 1900년 6월 4일 우용정은 창룡환에 탑승하여 울릉도 전체를 순찰했다. 5일 우용정은 울릉도 거주 백성들의 소원(等狀)을 받고 답변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6일 우용정은 조사 장부를 마무리하면서 창룡환을 타고 오전 10시에 울릉도를 출발했다.

우용정과 김면수는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1900년 6월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은 144명 정도였는데, 초막 57칸을 지었고, 선박을 11척 소유했다. 김면수는 신속히 주한 일본공사와 담판을 지어 일본인들을 소환할 것을 주장했다. 우용정은 울릉도감 휘하의 감무, 서기, 사환 등의 하급관리 보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우용정은 울릉도의 관청 운영을 위해서 울릉도 400호로부터 보리와 콩을 각각 2두 총 80석(石)을 거둘 것을 제안했다.

우용정은 개운환(開運丸)의 구입을 스스로 결정할 정도로 울릉도에서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을 수행했다. 우용정은 대한제국의 울릉도 관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울릉도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활동했다. 우용정은 울릉도의 관제청의서(官制請議書)가 정부에서 보류(留案)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경비 마련을 위한 방안을 구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적으로 제시했다. 우용정의 파견은 대한제국 내부에서 울릉도의 관제 개편을 계획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대한제국이 울릉도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강력한 행정 관할을 시도하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용정은 울릉도에서 현지조사를 하면서 일본인의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우용정은 일본인이 국경법을 어기며 허가 없이 울릉도를 침입했고, 자신들의 행동을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 진술로 일관한 사실을 기록했다. 우용정은 일본인들이 울릉도의 수목을 모두 벌목한 다음에야 불법벌목을 그만둘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일본인들은 1901년까지 울릉도에서 일정 규모의 수목을 모두 벌목할 계획이었다. 일본인은 매번 싸움을 일으켜 문제를 만들었고, 반드시 규목에 대한 벌목허가표를 받고 나서야 물러났다. 이것은 일본인이 허가표를 내세워 그동안 울릉도에서 불법벌목한 사실을 덮으려는 의도였다. 도감 배계주는 일본인들의 불법행위를 금지시키려고 시도했지만 단신(單身)이라 성공할 수 없었다. 기개가 세상을 덮을지라도 시세가 불리하면 어찌할 수 없는 법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부

러일의 울릉도 · 독도 조사, 대한제국의 영토해양 인식과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장

러시아의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한국 영토해양 조사와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의 영토와 해양에 관한 러시아의 조사와 정책

Ⅰ. 들어가며

러시아의 대한제국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청일전쟁으로부터 기인한다.[1] 청국과 일본이 대한제국에 군대를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위협하자, 대한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불안한 정세를 우려했고,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대한제국에 대한 자국의 정책을 수립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일전쟁 직후인 1894년 8월 러시아 정부는 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한제국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지지했다.[2] 이 과정에서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장교, 작가, 학자 등은 극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대한제국과 만주에 파견되었다.

그 후 러일전쟁 직전까지 대한제국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었다.[3] 그 과정에

---

1 Азбелов И.П., 1895, Япония и Корея(일본과 조선), М.; Симанский П.Н., 1895, Японско-китайская война 1894-1895 гг(청일전쟁), СПб.; Покотилов Д.В., 1895, Корея и японо-китайское стокновение(조선과 청일전쟁), СПб.

2 РГВИА(군사문서보관소). Ф.846.Оп.1.Д.134.ЛЛ.39-40.

3 Черкунова Н., 1904, Великий океан. Япония и Корея как арена современных событий(현재 사건의 무대로서 일본과 조선), Киев; Сувиров, 1904, Корея. Страна и её история последнего времени(최근 시기의 조선의 역사), СПб; Байков А., 1904, Военно-топографический и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очерк Северной Кореи(북조선지역의 군사적 지형과 통계의 개관). СПб; Афанасьев, 1904,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Кореи(조선 무장력의 구성)//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동방학연구소 소식). Т.11. Владивосток; Головачев П., 1904, Россия н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 1900년 6월 의화단 사건 이후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만주를 점령하자, 일본은 1902년 1월 영일동맹을 맺어 외교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대한제국 진출에 대한 러시아의 포기를 끊임없이 요구했다.[4] 특히 러시아 정부는 1903년 7월 1– 11일까지(6. 18–28) 대한제국과 만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뤼순회의'를 개최했다. 군부대신 꾸라빠뜨낀(А.Н. Куропаткин), 극동총독 알렉세예프(Е.И. Алексеев), 국무고문 베자브라자프(А.М. Безобразов), 청국공사 레사르(П.М. Лессар), 대한제국 주재 러시아공사 빠블로프(А.И. Павлов), 소장 보각(К.И. Вогак) 등 극동 문제 최고의 정책결정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를 통해서 러시아 정부는 대한제국과 만주정책에 대한 관료와 황실 세력의 대립을 조정할 수 있었고, 대한제국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유보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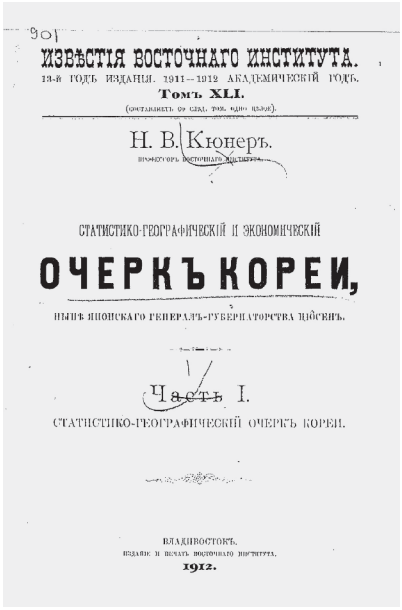
ИЗВѢСТІЯ ВОСТОЧНАГО ИНСТИТУТА.
19-й ГОДЪ ИЗДАНІЯ. 1911—1912 АКАДЕМИЧЕСКІЙ ГОДЪ.
Томъ XLI.
Н. В. Кюнеръ.
СТАТИСТИКО-ГЕОГРАФИЧЕСКІЙ И ЭКОНОМИЧЕСКІЙ
ОЧЕРКЪ КОРЕИ,
ВЛАДИВОСТОКЪ.
1912.

규네르의 『한국개관』(1912)

러일전쟁 이전에 이미 러시아에서는 대한제국의 정치 상황 및 반일운동 등에 관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극동에서 러시아), СПб.; Федорова И.М., 1904,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Япония, Корея, Манчжурия(극동. 일본, 조선, 만주). СПб.

4 АВПРИ(대외정책문서보관소). Ф.150.Оп.493.Д.185.ЛЛ.224–226.

5 ГАРФ(국립문서보관소). Ф.568.Оп.1.Д.136.Л.66. 최근 국내에서도 러일전쟁의 발발 원인을 살펴보면서 러시아 자료에 기초하여 러시아 정부의 정책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심헌용 편, 『러일전쟁과 한반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김영수, 「러일전쟁 패배를 보는 두 시각」, 『역사비평』 69, 2004; 김영수, 「러일전쟁 전야 제정러시아의 극동정책」, 『사림』 22, 2004; 로스뚜노프 等著, 김종헌 譯, 『러일전쟁사』, 건국대학교출판부, 2004; 정성화 等, 『러일전쟁과 동북아의 변화』, 선인, 200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각종 정보가 상세히 보도되고 있었다. 그중 극우신문으로 알려진 『노보에 브레먀』(새 시대)를 살펴보면 1903–1906년 사이에 대한제국과 관련된 기사가 대략 150건이었다. 여기에는 크게 일본의 대한제국 식민지화 과정을 보여주는 기사, 대한제국 내부의 반일운동 관련 기사, 대한제국 내부의 정치 상황 관련 기사, 러일전쟁 당시 강제동원된 한국인 관련 기사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6]

러시아는 대한제국의 전체적인 상황을 개괄하는 수준에서, 대한제국에 대한 사실적인 자료들을 축적하는 시기였다. 러시아 재무부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대한제국의 사정에 대한 백과사전적 성격을 갖는 작업을 지원했다. 『한국지』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대한제국의 정치, 경제, 지리 등이 총망라되었고, 대한제국과 러시아의 각종 조약 등이 정리되었다. 『한국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당대의 1차 사료에 기초했다는 것이다. 즉 당시 대한제국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1차 사료들이 『한국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때문에 향후 『한국지』에 소개된 러시아의 1차 사료를 수집하는 것은 당대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한국지』의 작업을 주도한 사람은 재무부 관청의 책임자이자 뻬쩨르부르크대학 동방학부 교수인 뽀즈드네예프(Д.М. Позднеев)라는 학자였다. 이후 뽀즈드네예프는 1899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동방학연구소를 창설했다. 그는 동방학연구소 소장에 취임하여 대한제국, 일본, 만주지역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면서 극동지역 전문가를 본격적으로 양성했다.[7]

이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이후 러시아의 외교정책 및 대한제국의 경제와 지리적 상황에 대해서는 뀨네르(Н.В. Кюнер)의 연구 성과를 주목해야 한다. 그

---

6 김영수 等譯, 『러시아신문 '노보에 브레먀(Новое Время)'의 러일전쟁 전후 극동 및 한국관련 기사목록(1903–1906)』,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및 역사문제연구소, 2005. 이 신문은 러시아의 수도 뻬쩨르부르크에서 1868–1917년까지 발행되었다.

7 Описание Кореи, Составлено в канцеляр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Ч.1, СПб., 1900, С.XVI; Позднеев Д.М., Япония. Воен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описание(일본. 군사와 경제적 개관), М, 1924; Позднеев Д.М., Япония: Страна, население, история, политика(일본: 주민, 역사, 정치), М, 192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재무부가 발간한 『한국지』의 집필에 참여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역사에 대해 정통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는 『한국지』 후편의 성격으로 20세기 초반 대한제국의 변화를 집대성했다.[8]

근대시기 러시아는 한국의 전체적인 상황을 개괄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사실적인 자료들을 축적했다. 그 결과로 나온 대표적인 저서가 외교관 뽀지오의 『한국개관』, 러시아 재무부의 『한국지』, 동방학자 뀨네르의 『한국개관』 등이다.

뽀지오의 『한국개관(Очерк Кореи)』은 19세기 말 한국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집대성한 백과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저작은 러시아인에게 당시까지 미지의 땅이었던 한국이라는 존재를 널리 알리고, 이후 양국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양국을 연결시켜주는 정보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러시아 재무부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성격을 갖는 작업을 지원하여 1900년에 『한국지(Описание Кореи)』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정치, 경제, 지리 등이 총망라되었고, 한국과 러시아의 각종 조약 등이 정리되었다. 동방학자 뀨네르는 일본이 한국을 강제병합한 이후 한국의 지리와 경제 상황에 관한 『한국개관(Очеркъ Кореи)』을 저술했다. 『한국개관』은 1912년 러시아 동방학연구소의 기관지 '동방학연구소 소식'이라는 잡지에 공식적으로 발간되었다.

현재까지 러시아의 울릉도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 러시아의 한국 영토해양 인식에 대한 연구는 진척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먼저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 해군부의 울릉도 현지조사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문헌에 나타난 러시아의 한국 영토해양 조사를 살펴보면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내용을 규명할 것이다.

---

8 Кюнер Н.В. Новейшая история стран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극동국가의 새로운 역사), Владивосток, 1910; Кюнер Н.В.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очерк Кореи(조선의 지형과 경제적 개관), Владивосток, 1913; Кюнер Н.В. Сношения России с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на протяжении царствования дома Романовых(극동지역과 러시아의 관계), Владивосток, 191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I.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해양 조사와 정책

1. 러시아 해군부 정책과 태평양함대의 조사

러시아 해군부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 영토의 해안을 탐사하고 동해안을 측량했다. 그 과정에서 마산포, 거제도, 진남포, 신포항 등에 러시아 해군기지 설치를 고려했다.

해군대신 사무대리 띄르또프(П.П. Тыртов)는 1898년 6월 마산포가 극동에서 러시아 해군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외무대신 무라비요프에게 주장했다. 띄르또프는 뤼순까지 러시아의 철도부설이 완공되기 전에 쁘리아무르 군사관구의 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9]

띄르또프는 1899년 4월 러시아 해군부가 외국의 상업활동을 위해서 개항되는 한국의 항구에서 반드시 토지를 조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산포가 편리한 해군기지를 건설할 수 있고, 비교적 넓은 땅과 해안가에 인접한 곳을 점유할 수 있는 장소라고 판단했다. 띄르또프에 따르면 태평양함대 사령관 해군소장 두바소프(Ф.В. Дубáсов)는 석탄층이 발견된 평양에서 가까운 진남포의 입지를 고려하여 진남포 토지 조차의 필요성을 해군부에 요청했다. 그래서 띄르또프는 두바소프의 진남포 토지 조차를 지지했다.[10] 띄르또프는 개방된 한국 항구에 저탄소의 설치를 고려하여

---

9 РГАВМФ. Ф.9. Оп.1. Д.3. ЛЛ.2–4об.

10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06. Л.3об. 1880년부터 1904년까지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관(Командующий Тихоокеанской эскадры) 명단은 다음과 같다. Вице–адмирал Лесовский С.С.(1880–1881), Контр–адмирал Копылов Н.В(1882–1884), Контр–адмирал Кроун А.Е(1884–1885), Вице–адмирал Корнилов А.А.(1885–1888), Вице–адмирал Шмидт В.П.(1888–1889), Вице–адмирал Назимов П.Н.(1889–1891), Вице–адмирал Тыртов П.П.(1891–1893), Вице–адмирал Тыртов С.П.(1893–1895), Контр–адмирал Алексеев Е.И.(1895–1897), Контр–адмирал Дубасов Ф.В.(1897–1899), Вице–адмирал Гильтебрандт Я.А.(1899–1900), Контр–адмирал Веселаго М.Г.(1900), Вице–адмирал Скрыдлов Н.И.(1900–1902), Вице–адмирал Старк О.В.(1902–1904), Контр–адмирал Виттефт В.К.(1904), Контр–адмирал Иессен К.П.(190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러시아 재무부 소속 진남포 소유지를 해군부에 양도해줄 것을 재무대신 비테에게 요청했다.[11]

1899년 9월 태평양함대 사령관 해군중장 길떼브란트(Я.А. Гильтебрандт)는 한국의 남쪽 지방을 점유하려는 일본의 한국 분할 의도에 관한 첩보를 보냈다. 띄르또프는 한국 분할은 러시아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한일관계에서 위험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띄르또프는 러시아가 극동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호츠크-뻬뜨로빠블롭스크-니꼴라옙스크-블라디보스톡에서 멈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띄르또프는 러시아가 한국 동해안의 남쪽 기지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으로 한국의 신포항을 고려했다.

띄르또프는 청일전쟁 이후 남한의 거점이 러시아 함대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띄르또프는 만약 한국이 남북으로 분할된다면 흑해보다 더 나쁜 입지에 놓여서 태평양함대의 해상 활동을 제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블라디보스톡에 묶이게 되고, 일본은 부산 또는 거제도의 남동해안에 강력한 해양 거점을 구축할 것이다.

띄르또프는 뤼순항이 발해만에 깊숙이 위치하고 있고, 시베리아 철도의 종점으로서 러시아 함대에게 안식처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띄르또프는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뤼순항이 극동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 함대의 주요 근거지로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띄르또프는 한국의 분할 점령이 실행되면 뤼순항이 블라디보스톡과 주요 작전지역으로부터 단절되어, 시베리아 철도의 연결 거점 및 베이징과의 전략적 거점으로서만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띄르또프는 첫째, 극동지역에서 태평양함대를 증강시키고, 둘째, 태평양함대의 작전 재량권을 보장하며, 셋째, 뤼순항과 블라디보스톡의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

11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06. Л.8о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판단했다. 띄르또프는 대한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한반도 남해안에 강력한 기지를 구축하고, 일본이 한반도 남해안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띄르또프는 남동해안에서 가장 편리하고 중요한 지역으로 거제도를 꼽았다. 거제도는 향후 발생할 전쟁 예상 지역과 가깝고, 대규모 함대의 정박이 가능하며, 바다로의 출입이 자유로운 지리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의 현상유지가 러시아에 이익이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열강이 한국의 남쪽 지방을 점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2]

러시아 해군부는 1899년 8월 1일 임명된 태평양함대 사령관 길떼브란트 중장에게 태평양함대의 임무, 태평양함대의 작전 수행, 태평양함대의 한반도 전략 등에 관한 훈령을 내렸다.[13]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은 자국의 극동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했는데, 태평양 연안에서 자국의 세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새롭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1860년 베이징조약 체결 이후 아무르강 연안지방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출구를 획득했다. 러시아는 1898년 뤼순과 다롄을 포함한 랴오둥반도(遼東半島)를 획득했는데, 뤼순을 해군의 군사항구, 다롄을 상업항구로 설정했다. 황해 연안까지 진출한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그 임무를 전반적으로 수정했다.

해군부는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극동에서 정치적 영향력과 이익을 수호하려면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랴오둥반도를 획득하여 극동지역에서 한국, 중국, 일본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태평양함대는 가장 먼저 일본을 비롯한 인접국가와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전투태세를 준비해야만 했다.

러시아 해군부는 태평양함대가 전투에 필요한 보급품을 상시적으로 대비하고, 함

12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06. Л.47–48об.

13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11. Л.10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포와 수뢰장비 등의 전투물자를 준비하도록 길떼브란트 중장에게 명령했다. 해군부는 태평양함대의 군사행동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작성하고, 함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장교와 수병이 높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도록 훈련시킬 것을 지시했다.

러시아 해군부는 일본의 공격을 예상하면서 태평양함대가 영국과 연합한 일본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첫째, 일본 또는 영국의 러시아 해안 혹은 한국 해안 상륙을 저지한다. 둘째, 극동지역에서 영국과 영국 식민지들 사이의 상품 교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러시아 해군부는 1899년 전쟁을 대비한 해양 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해군부는 한국, 페칠리만, 연해주 지역 해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적 의미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러시아 해군부는 해전이 예상되는 지역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을 태평양함대에 명령했다. 러시아 해군부는 태평양함대가 개별적으로 항해하거나 일부 항구에 분산되는 것을 금지시키고 완전편성 형태로 항해하도록 지시했다.

러시아 해군부는 블라디보스톡과 뤼순을 주요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군사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한국의 항구에서 태평양함대가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군부는 개방되는 한국의 항구인 마산포와 진남포에 저탄소 건설을 위한 토지구역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러시아 해군부는 태평양함대의 주요 훈련 과제에 대해 함포사격, 수로 부설 및 제거, 기동훈련, 합동항해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해군부는 태평양함대가 특정 항구에 오랜 기간 머물 경우 2-3주일에 한 번씩 모든 함대가 바다로 나가 기동훈련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해군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태평양함대가 겨울에는 랴오둥반도의 항구 중 뤼순항에 정박할 것을 지시했다. 해군부는 태평양함대가 5월부터 11월까지 블라디보스톡을 향한 선상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아무르강 연안 항구에 체류할 것을 명령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러시아 해군부는 태평양함대가 효율적인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병과별 전투훈련 목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해군부는 함선별 훈련, 함포와 수뢰 사격훈련 등의 계획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해군부는 실제 훈련에 대비하여 범선이나 전마선을 구입하여 사격하도록 명령했다. 해군부는 모든 함선이 해양기술위원회의 훈령에 따라 6개월에 한 차례씩 6시간 동안 전속력 항진을 실시하여 함선의 기관능력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해군부는 전자식 신호 체계 및 수신호 체계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해군부는 항법장교가 자신의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훈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하급 장교가 함포와 수뢰 및 보트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훈련시키도록 지시했다. 해군부는 비밀서한에 대해서 러시아 장교, 러시아 함선, 시베리아의 전신수단을 통해서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14]

태평양함대 사령관 길떼브란트 중장은 러시아 해군부의 지시에 따라 태평양함대의 해상훈련을 수행했다. 1899년 겨울 태평양함대는 블라디보스톡의 결빙기가 시작되었지만 랴오둥반도에 전염병이 발생하자 함대를 마산포로 이동시킬 것을 결정했다. 태평양함대는 이동기간 중에 기동연습과 훈련을 실시하고 마산포 항구에 정박하면서 1개월 동안 함대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길떼브란트는 마산포에 정박하면서 한국의 항구와 거류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함선을 파견할 것을 계획했다.[15]

그런데 러시아는 마산포 조차를 위한 토지 획득에 실패했다. 길떼브란트에 따르면 러시아가 마산포 토지 획득에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상인이 불법적으로 마산포 토지를 구매했다. 주한 러시아공사관이 일본의 불법성에 대해 항의했지만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항의를 기각했다. 한국 정부의 기각 결정은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

14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11. Л.15–20.

15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11. Л.22–72о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러시아 해군부는 1899년 11월 5일(양력 11월 17일) "사전에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동을 자제하라"는 명령을 길떼브란트에게 내렸다. 그 결과 길떼브란트는 마산포 방문 계획 및 훈련 계획을 취소했다.

그럼에도 태평양함대 사령관 길떼브란트는 1899년 11월과 12월 사이 동해에서 태평양함대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때 태평양함대는 다양한 해군 전술훈련을 실시했는데, 블라디보스톡–울릉도–나가사키 등이 주요 훈련 지역이었다.

길떼브란트는 1899년 11월 11일(양력 11월 23일) 순양함 드미뜨리 돈스꼬이(Дмитрий Донской)호와 함께 보브르호와 까레예쯔(Кореец)호를 뤼순항으로 보냈다. 길떼브란트는 "한국의 동해안과 남해안의 군도를 따라 항해하면서 기상 상황에 따른 항해 거리를 측정하고, 러시아·영국·일본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모든 만을 관찰할 것"을 드미뜨리 돈스꼬이호 함장에게 지시했다.

그 후 태평양함대 사령관 길떼브란트는 뤼순항으로 이동하는 계획을 확정했고, 나가사키에서 예비용 석탄을 보충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뤼순항에는 예비용 석탄 재고가 한정되어 있었고, 태평양함대에 배정된 전마선이 상인 긴스부르크(Гинсбург) 소유의 15톤 이하의 3–4척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길떼브란트는 1899년 11월 20일(양력 12월 2일) 블라디보스톡 주둔 러시아(Россия)호, 류릭(Рюрик)호, 빠먀찌 아조프(Память Азов)호, 아드미랄 꼬르닐로프(Адмирал Корнилов)호, 시소이 벨리끼(Сисой Великий)호, 나바린(Наварин)호 등의 순서로 우수리만으로 출항했다. 태평양함대는 블라디보스톡 측면 스끄리쁠료프(Скрыплёв)섬을 0.5마일 지났고, 울릉도(Остров Дажелет) 서쪽 5마일 지점에서 나가사키 방향으로 항로를 잡았다.

태평양함대는 1899년 해양기동 지침에 근거하여 밀집대형에서의 기동훈련과 함대의 대형 형성 등을 다양하게 실시했다. 태평양함대는 길떼브란트의 신호에 따라 선미등을 제외한 모든 등화기구를 소등한 채 훈련을 실시했다. 길떼브란트는 함대의 항진 대형도 변경시켰다. 우측에 나바린호, 류릭호, 시소이 벨리끼호를, 좌측에 러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호, 빠먀찌 아조프호,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를 배치하여 2열 종대를 형성했다.

태평양함대는 1899년 11월 25일(양력 12월 7일) 러시아호, 빠먀찌 아조프호,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 등이 길떼브란트의 신호에 따라 나가사키 항로로 항진하기 위해 종대대형을 형성했다. 11월 26일 쓰시마 북단으로 항로를 설정했는데 강풍을 고려하여 종대대형을 형성했다. 나가사키에 도착한 태평양함대는 1899년 12월 3일 류릭호, 빠먀찌 아조프호를 비롯한 순양함 러시아호가 뤼순항으로 출항했다. 태평양함대는 대한해협과 한국의 남부 군도를 거쳐 황해로 진입해서 뤼순항에 도착했다.[16]

2. 극동총독 알렉세예프의 만주와 한국 정책

러시아 해군제독 알렉세예프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태평양함대 사령관, 뤼순 총사령관, 극동총독 등을 역임하여 극동정책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할 정도로 극동정책에 깊숙이 개입했다.[17]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관 알렉세예프는 20세기 초 러일전쟁 이전 러시아의 한국, 만주, 일본 등에 대한 전략을 마련했다.

알렉세예프는 만주지역의 보존이 러시아 극동정책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러시아는 아무런 보장이나 이익의 실현 없이는 만주에서 러시아 군대를 철수시킬 수 없었다.[18]

알렉세예프는 1901년 3월 만주에서 러시아의 독점적인 지위 확보가 선결과제라

---

16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11. Л.22–72об.

17 알렉세예프(1843–1917)는 1843년 출생했고, 1863년 해군학교를 졸업했다. 1892년 해군참모본부 사령관 보좌관에 임명되었다. 1895–1897년 태평양함대 사령관에 임명되었고, 1899년 8월 관동주 총독 겸 사령관, 태평양함대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1903년 7월 30일 극동총독에 임명되었다. 1905년 6월 극동총독부가 폐지되면서 그는 국가평의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http://encyclopedia.mil.ru). 알렉세예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이항준, 「러시아 해군부의 한반도 정책과 태평양함대 사령관 알렉세예프」, 『사림』 44, 2013.

18 ГАРФ. Ф.543. Оп.1. Д.186. ЛЛ.1–14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판단했다. 알렉세예프는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관계를 이집트에 대한 영국의, 보스니아에 대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관계에 비유"하며 러시아의 만주 점령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만주에 대한 막대한 통상이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실로 러시아의 만주 점령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일시적인 양보와 타협을 하더라도 한국 문제를 통해 일본과 협상에 착수하여 만주에서의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일본으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19]

그럼에도 알렉세예프는 한국도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판단했기에 러일전쟁에 대비한 군사전략을 마련했다. 러시아는 압록강의 개항을 반대한다는 경고를 한국과 일본에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 전체를 차지하거나 혹은 한국 남부를 차지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손실이 막대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만일 일본이 한국 점령에 착수하여 한국 북부에 군대를 상륙시키고 집중시킨다면, 러시아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알렉세예프는 1903년 9월 러일전쟁이 한국에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군사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만약 일본이 제물포, 진남포, 압록강 하구로 상륙할 경우 첫째, 해안에서 진영을 펼치는 상륙부대에 대해 공개적인 무력시위를 개시한다, 둘째, 만주 전역에 전시상태를 공포한 이후 만주 주둔 러시아 군대를 전시체제로 편성한다는 전략이었다. 알렉세예프는 이러한 조치가 바이칼 동쪽 지역의 예비군을 동원하고 시베리아, 모스크바, 까잔 지역에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알렉세예프는 1904년 1월 니꼴라이 2세에게 "광둥과 남만주 지역에서 한국 국경으로 포병대와 1개 소총연대를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알렉세예프는 20세기 초 러일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의도 및 러시아 군비증강의 필요성 등에 관한 러시아의 극동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19 РГАВМФ. Ф.32. Оп.1. Д.123. Л.1-8о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알렉세예프는 1900년대 러일협상에 대해서 러시아의 국가적 이해관계와 일본의 야심적 계획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의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러시아와 일본의 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향후 군사적 조치를 위한 일시적 협정으로 이용했을 것이라고 파악했다. 그가 보기에 일본과의 전쟁은 불가피했다. 알렉세예프는 일본이 러일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에서 행동자유를 부여받아 군사적으로 한국을 이용할 것이고, 향후에는 만주 러시아군에 대해 최후통첩을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극동에서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알렉세예프는 첫째, 중국인의 소동에 대해 즉시 러시아가 만주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사용하여 정당하고 단호한 조치를 실행해야 하고, 둘째, 극동에서 강력한 군사력 건설을 목적으로 뤼순항에 강력한 요새와 병기고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

Ⅲ. 뽀지오와 뀨네르가 바라본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영토와 영해

1. 뽀지오가 바라본 한국의 영토와 영해

뽀지오의 『한국개관』은 19세기 말 한국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집대성한 백과사전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저작은 러시아인에게 당시까지 미지의 땅이었던 한국이라는 존재를 널리 알리고, 이후 양국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 창구의 역할을 담당했다. 뽀지오의 저서는 러시아에서 출판된 한국에 관한 최초의 저술일 뿐만 아니라 유럽인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제공했다. 1892년 출판된 뽀

20 ГАРФ. Ф.543. Оп.1. Д.186. ЛЛ.1–14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오의 『한국개관』은 1895년에 독일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21]

러시아 외교관 뽀지오의 『한국개관』은 19세기 후반 한국의 지리적 형태, 국가체제, 민속과 종교 등을 개괄하고 있다. 그 지리적 형태 중 압록강과 울릉도 및 한국의 항구와 섬 등에 관한 고찰이 진행되었다. 무엇보다도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안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특히 뽀지오는 '울릉도(О-Лон-То)'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울릉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술했다.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후반 서양에서 울릉도를 정확하게 인식했고, 울릉도와 독도를 혼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그의 저작에 첨부된 지도에는 서도를 올리부차, 동도를 메넬라이로 표기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정확하게 표시했다. 특히 뽀지오는 한국 동쪽 바다의 이름을 동해와 '일본해(Японском и Восточном морях)'라고 표기했다.[22] 한국 쪽 바다를 동해, 일본 쪽 바다를 '일본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뽀지오는 한국의 동해 지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사했다. 함경도는 반도 북쪽의 동해안(Восточный берег) 전체를 점유했다. 두만강을 따라 국경이 펼쳐졌다. 두만강은 얀알린(гора Янъ-алинъ)산에서 발원했다. 수량이 상당히 풍부한 편이지만 선박 항행은 위험을 동반했다. 수면 밑에 보이지 않는 암초들이 산재했기 때문이다. 겨울이 되면 강은 5개월 동안 결빙되었다.[23] 뽀지오는 한국 쪽의 바다 이름을 '동해'라고 기록했다.

한국의 남쪽 지역에는 제주도가 포함되었다. 낙동강은 아래에서 몇 마디 언급할 부산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대한해협(Корейский пролив, Броутон, 브로튼 해협)으로 유입되었다.[24] 뽀지오는 남해안에서 일본 본토로 연결되는 지명을 '대한해협'이라고 기록했다.

---

21 Von M. A. Pogio, Korea, Wien, 1895.

22 Поджио М. А. Очерк Кореи, СПб. 1892, С.277.

23 Поджио М. А. Очерк Кореи, 1892, С.13-14.

24 Поджио М. А. Очерк Кореи, 1892, С.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뽀지오는 동해에 있는 울릉도를 주목했다. 연안에서 75마일 떨어진 동해에는 울릉도(О-лонъ-то, Dagelet)가 위치했다. 울릉도 해안선은 총 길이가 25마일을 넘지 않았다. 울릉도는 산지 지형으로 낭떠러지와 험한 해안이 있고, 중간 부분까지는 울창한 삼림이 펼쳐져 있었다. 울릉도는 한국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땅에서는 매우 많은 양의 곡식과 채소가 생산되었다. 울릉도 주민은 농경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물개, 바다표범, 고래 등이 해역에 대량으로 서식했다.[25]

뽀지오에 따르면 한국인은 동쪽 바다에 수많은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 괴물 중 하나가 '인어'라고 불리는 동물이었고, 살고 있는 바다가 바로 동해와 '일본해(Японском и Восточном морях)'라고 주장했다. 뽀지오는 한국 동쪽 바다의 이름을 동해와 일본해로 병기했다.[26] 이미 19세기 후반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것이다.

뽀지오는 한국의 항해 및 어업과 관련해서 연안조업, 고래잡이, 나침반 등을 주목했다. 한국의 어부들은 밑바닥이 평평하고 2개의 돛을 단 정크선을 타고 바다에 출항했다. 정크선은 다양한 크기가 있는데, 큰 선박의 경우 길이가 25피트, 너비가 9피트, 깊이가 7피트였다. 선박에 승선하는 어부의 인원은 30-60명까지 다양했다. 한국 어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고래를 추적하여 사냥하기도 했다. 한국은 1882년부터 포경업에 사용하고 있는 현대적인 장비와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주도를 오가는 선박은 나침반을 이용하여 항해했다.[27]

---

25 Поджио М. А. Очерк Кореи, 1892, С.13.

26 Поджио М. А. Очерк Кореи, 1892, С.277.

27 Поджио М. А. Очерк Кореи, 1892, С.220-22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뀨네르가 바라본 한국의 영토와 영해

뀨네르의 저서 『한국개관』의 출간 작업에는 동방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학자들도 참여했다. 스빨빈(Е.Г. Спальвин)은 한국 명칭을 일본 명칭으로 바꾸었고, 다양한 일본 전문용어에 관한 지식을 제공했다. 뽀드스따빈(Г.В. Подставин)은 한국 발음을 러시아 발음으로 바꾸었고, 한국 사료의 다양한 정보를 조사했다. 꼬하노프스끼(Н.И. Кохановский)는 교정을 담당했다. 동방학연구소의 일본인 강사인 마쓰다 마모루(Мацуда Мамору)는 일본 문헌의 번역 내용을 검토했다.[28]

뀨네르에 따르면 한국은 동아시아 북방지역에 위치한 대륙과 도서의 자연적 특징이 혼합된 형태였다.[29] 뀨네르는 영국 지도와 러시아 지도에 기초하여 한국의 동서남북의 끝 지점을 기록했다. 최북단 지점은 훈춘강(琿春江)과 두만강이 만나는 북위 43도 2분 동경 130도의 지점이다. 최남단 지점은 제주도 남쪽 마라도로 북위 33도 7분 지점이다. 최동단 지점은 육지가 동경 130도 40분이며 울릉도(鬱陵島, Дажелет, Dagelet)이다. 최서단 지점은 압록강 하구 동경 127도 30분의 지점이다. 뀨네르는 영국과 러시아 지도에 기초했지만 동서남북의 끝 지점의 지명 이름을 모두 제시하지 못했다.

뀨네르는 2차 『통감부통계연보』(1909)에 근거하여 한국 동서남북의 끝 지점을 기록했다. 최남단 지점은 북위 33도 12분, 최서단 지점은 동경 124도 18분이다. 뀨네르는 1907년에 발간된 『한국총람(韓國總攬)』에 근거하여 한국의 지리적 동서남북의 끝 지점을 기록했다. 최북단 지점은 북위 42도 25분 녹둔도(鹿屯島)로, 최남단 지점은 북위 33도 15분의 제주도 모슬포(毛瑟浦)로, 최서단은 동경 124도 30분 소유현각(小乳縣角) 또는 황해도 장산곶(長山串)으로, 최동단 지점은 두만강 하구의

---

28 Кюнер Н.В. Очеркъ Кореи. Ч.1. Владивостокъ. 1912. С.ⅩⅢ.

29 Кюнер Н.В. Очеркъ Кореи. Ч.1. Владивостокъ. 1912. С.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경 130도 35분으로 기록했다.[30]

뀨네르는 유럽 지도, 일본 자료 등에 근거하여 한국의 동서남북 끝 지점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것은 뀨네르가 다양한 정보 때문에 한국의 동서남북 끝 지점의 명칭을 통일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뀨네르는 동해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첫째, 연안지대에 깊숙이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지점이 적다. 둘째, 동해안은 연안 부근에 형성된 매우 깊은 수심, 만조 때 크지 않은 해수면 높이의 변화, 풍랑으로부터 선박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암벽 등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동해안에는 적절한 항만이 다수 존재한다.[31]

뀨네르는 한국과 일본이 과거 동해의 일부 섬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고 기록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은 울릉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것을 일본으로부터 인정받았지만, 일본은 오키열도(隱岐諸島)의 하카시마(Остров Хакасима, Faga)를 지배했다. 뀨네르는 동해에서 일본의 영토를 오키열도까지라고 파악했다.[32]

뀨네르는 동해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 뀨네르에 따르면 울릉도는 한반도 동해안과 일본 혼슈(本州) 남부 연안의 중간 지역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해상교통 노선에 위치했다.

뀨네르에 따르면 "울릉도는 평해군(平海郡) 월송포(越松浦)에서 남쪽으로 일본 거리 40리 정도, 부산으로부터 증기선 항로를 따를 경우 177해리, 호키(伯耆) 사카이(堺)만으로부터 186해리,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307해리에 위치한다." 울릉도의 위치는 '북위 37도 31분 34초, 동경 130도 45분 53초'다. 울릉도는 1787년 동해를 따라 항해한 라페루즈(Лаперуз) 탐험대가 발견했고, 울릉도를 다줄레(Дажелет)로 명명했다.

---

30 Кюнер Н.В. Очеркъ Кореи. Ч.1. Владивостокъ. 1912. СС.11–12.

31 Кюнер Н.В. Очеркъ Кореи. Ч.1. Владивостокъ. 1912. С.34.

32 Кюнер Н.В. Очеркъ Кореи. Ч.1. Владивостокъ. 1912. С.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뀨네르는 울릉도 주변 섬으로 독도(Liancourt)와 죽서(竹嶼, Чюксё)를 기술했다.[33] 뀨네르는 독도의 명칭을 '리앙쿠르(Liancourt) 또는 얀코(Янко)'라고 기술했다. 뀨네르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이후인 1912년 시점에 '죽도(다케시마)'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 독도의 중립적인 명칭인 '리앙쿠르(Liancourt)'라고 기록했다.

뀨네르는 독도를 '작은 섬(островок) 또는 섬(остров)'이라고 기록했다. 독도를 '바위'가 아니라 '섬'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더구나 뀨네르는 독도를 연료와 식수가 충분하지 않지만 어선이 선착하기 편리한 장소라고 파악했다. 뀨네르는 독도를 섬으로 파악하면서 독도의 어업적 가치에 주목했다. 뀨네르는 독도 주변에 해마를 포함한 해산물이 풍부하다고 기록했다. 뀨네르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뀨네르는 울릉도와 인접한 섬으로 죽서와 독도를 파악했다. 이것은 뀨네르가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죽서와 독도를 인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뀨네르는 라페루즈 탐험대가 발견한 울릉도 인근 부솔(Бусоль)이 바로 죽도(竹嶼島)라는 사실도 기록했다.

뀨네르는 1905년에 발간된 『한국신지리(韓國新地理)』를 참고하여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일본 지리학자도 1905년 전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다. 둘째, 뀨네르는 일본인의 독도 관련 인식을 수용했다. 결국 뀨네르는 1910년 일본의 한국병합 이후에도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인식했고, 독도가 동해에 위치한 울릉도의 부속섬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뀨네르는 전근대 울릉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기술했다. 뀨네르에 따

---

33 "울릉도에 가장 근접해 있는 작은 섬(островок) 리앙쿠르(Liancourt, 일본에 전달될 때는 얀코〈Янко〉)는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일본 거리 30리(약 70해리)의 거리에 위치한다. 리앙쿠르는 울릉도와 오키(隱岐)섬의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이다. 얀코섬(Янко остров)의 길이는 10정이다. 독도는 식수와 연료가 충분하지 못하다. 바로 이 때문에 독도는 사람이 살기 어렵다. 심하게 굴곡진 독도의 연안에는 어선들이 선착하기에 편리한 장소들이 많다. 독도 인근에는 해마(海馬, 카이바)가 많이 살고 있으며, 다양한 해산물이 풍부하다. 울릉도 연안 근처의 동쪽 측면에 부솔(Бусоль, 라페루즈 탐험대에 소속된 선박 중의 하나를 기념하기 위한 명칭)이라는 작은 섬이 있다. 이를 『한국신지리』에서는 죽서(竹嶼島, 일본식 독음으로는 치쿠쇼)로 명명하고 있다."(Кюнер Н.В. Очеркъ Кореи. Ч.1. Владивостокъ. 1912. С.5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르면 울릉도는 한국의 신라와 일본의 이즈모(出雲) 지역 간에 왕래가 이루어진 시기에, 중간지점이라는 위치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울릉도는 직선으로 남동쪽 80해리에 위치한 오키와 함께 한국과 일본 해상 항로의 중간 계류지의 역할을 수행했다. 일본의 해적은 전근대 한국 연안을 약탈하기 위한 거점으로 울릉도를 잠시 이용했다.

뀨네르는 한국 정부가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유지시키려는 노력을 기술했다. 뀨네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삼림 불법채벌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일본은 1882–1883년 한국 정부의 항의에 따라 울릉도의 한국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 후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획득한 러시아는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삼림을 채벌하자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공사에게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주한 일본공사도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한국이 울릉도에 대한 국가 행정권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뀨네르에 따르면 울릉도는 강원도에 속하며, 군수가 통치하고 있다. 뀨네르는 1905년 이전과 이후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구 변동에 대해서 서술했다. 1903년 레베제프가 방문했을 당시 대략 한국인 2,500명, 일본인 180명 정도였다. 그런데 1909년 울릉도 전체 가옥 1,112채 중 일본인 가옥이 213채였고, 전체 주민 5,374명 중 일본인이 713명으로 증가했다.[34]

뀨네르에 따르면 울릉도 거주 한국인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다. 벼, 보리, 감자, 옥수수, 대두 등을 수확했다. 울릉도 거주 한국인은 어업에도 종사하지만 대부분 일본인에게 고용되었다. 울릉도의 주요 어업은 오징어 잡이였고, 어획량은 2만–3만 엔에 달했다. 울릉도는 1910년 전후 매달 1회만 증기선이 일본과 한국을 왕복하기 때문에 겨울철 2개월은 외부로부터 고립되었다.

---

34 러시아 조사단은 1903년 8월 18일(양력 9월 2일) 오전 4시에 야꾸트(транспорт Якут)호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울릉도로 출발했다(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н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СС.163–17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뀨네르는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중요성, 1900년 전후 울릉도 거주민의 인구 변동 추이,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울릉도 영유권을 유지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 등을 기술했다. 그중 주목할 점은 독도가 바위가 아닌 섬이고,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독도를 포함시켰으며, 독도의 어업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이다. 뀨네르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했고, 한국의 영토 범위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Ⅳ. 나오며

러시아 외교관 뽀지오의 『한국개관』은 19세기 후반 한국의 지리적 형태, 국가체제, 민속과 종교 등을 개괄했다. 뽀지오는 그의 책에서 '울릉도'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울릉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술했다. 더구나 첨부된 지도에는 서도를 올리부차, 동도를 메넬라이로 표기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포함시켰다.

러시아 동방학자 뀨네르는 『한국개관』에서 20세기 초 한국의 지리적·인구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여기에는 한반도의 항구, 연안, 도서 등이 서술되었는데, 그중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었다. 특히 뀨네르는 울릉도를 기술하면서 독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달았다. 이것은 일제의 한국 강점이 시작된 1910년 이후에도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러시아 해군부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 영토의 해안을 탐사하고 동해안을 측량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 해군부는 마산포, 거제도, 진남포, 신포항 등에 해군기지 설치를 고려했다.

러시아 해군부는 일본의 공격을 예상하여 태평양함대가 영국과 연합한 일본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첫째, 일본 또는 영국이 러시아 해안 혹은 한국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저지한다. 둘째, 극동지역에서 영국과 영국 식민지들 사이의 상품 교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군대신 띄르또프는 첫째, 극동지역에서 태평양함대를 증강시키고, 둘째, 태평양함대의 작전 재량권을 보장하며, 셋째, 뤼순항과 블라디보스톡 사이의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띄르또프는 대한해협을 장악하기 위해 러시아가 한반도 남해안에 강력한 기지를 구축하고, 일본이 한반도 남해안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동총독 알렉세예프는 만주지역의 보존이 러시아 극동정책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알렉세예프는 한국도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러일전쟁에 대비한 군사전략을 마련했다. 러시아는 한국의 압록강 개항을 반대한다는 경고를 한국과 일본에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 전체를 차지하거나 혹은 한국 남부를 차지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손실이 막대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알렉세예프는 "만일 일본이 한국 점령에 착수하여 한국 북부에 군대를 상륙시키고 집중시킨다면, 러시아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알렉세예프는 극동에서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사력을 강화하면 주변국가의 의심이 자연 따르는 법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러시아 함정 야꾸트호의 울릉도 조사의 과정과 내용

Ⅰ. 들어가며

러시아 해군부는 19세기 후반 한반도 해양탐사를 기반으로 한국의 전략적 해양 거점지에 대한 구상을 작성했다. 러시아 해군부는 서해에서 뤼순-진남포-제물포를 연결하는 거점, 남해에서 거제도-마산포,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톡-원산-울릉도를 연결하는 거점을 중시했다.

1910년 이전 한국을 둘러싼 바다의 정규 항로로 3곳이 개설되었다. 러시아 세벨료프선박회사(Шевелёв), 일본우선회사(日本郵船會社), 오사카상선회사(大版商船會社)의 항로가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항로는 상하이-제물포-부산-원산-블라디보스톡을 오가는 월 1회의 정기운항이었다. 두 번째 항로는 15일마다 고베-나가사키-부산-제물포-지부(芝罘)-뤼순항 등을 운항했다. 세 번째 항로는 고베-시모노세키-부산-원산-블라디보스톡을 월 2회 통과했다.[1]

그만큼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해를 둘러싸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인구와 물류가 이동했고, 러시아는 동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동해의 섬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러시아는 한반도 해양탐사를 기반으로 전략적 해양 거

1 까를로 로제티, 서울학연구소 역, 『꼬레아 꼬레아니』, 숲과나무, 1996, 37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군사 수송선 야꾸트호(블라디보스톡)

점을 구상했는데, 동해에서는 블라디보스톡–원산–울릉도를 연결하는 해양 거점을 중시했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러시아 사료에 대한 접근의 한계 때문에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가 울릉도를 조사한 일련의 과정을 추적한 적이 없었다.

러시아는 청일전쟁 이후 러일전쟁 직전까지 본격적으로 울릉도를 탐사했다. 이는 동해의 군사적 요충지로 울릉도를 주목했기 때문이다. 울릉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내려오는 러시아 선박, 나가사키 등에서 올라오는 일본 선박, 동해로 진입한 서양 선박 등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어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다.

1899년 러시아 장갑 순양함 아드미랄 꼬르닐로프(Адмирал Корнилов)호는 울릉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1900년 4월 러시아 수송선 예르마크(Ермак)호는 동부 대양에 대한 지리적 탐험 과정에서 울릉도를 지나갔다. 수로학자들은 양호한 기상을 이용해서 천문학적 관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 섬의 위치를 명확하게 확인했다. 섬은 동쪽으로부터 약 4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2]

그 후 러시아 해군은 1901년 러시아 포함 까레예쯔(Кореец)호, 1903년 러시아 군사 수송선 야꾸트(Якут)호 등을 통해서 울릉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1903년 9월 러시아의 울릉도 조사는 1904년 '울릉도(Остров Дажелет)'라는 제목으로 『동방학소식(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이라는 잡지에 게재되었다. 러시아 선박의 방문 사실을 기록한 인물은 레베제프(Е. Лебедев)였다.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레베제프는 블라디보스톡 동방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3] 레베제프에 따르면 1860년대 오페르트(Опперт)는 다줄레(Dajalet, Dagelet)섬이 비옥한 토양으로 유명하다고 기록했다. 레베제프는 1904년 오페르트의 문헌을 비롯한 서양의 울릉도 탐사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4]

기존 연구는 1900년 초 러시아의 울릉도 조사에 대한 러시아 문헌을 발굴한 적이 없었다.[5] 이 논문은 우선 레베제프의 '울릉도' 조사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에 기초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료를 보강하여 1903년 울릉도 조사에 관한 사실관계를 복원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해군이 울릉도를 주목한 이유를 추적할 것이다.

---

2 Глушков В.В. История военной картографии в России (XVIII–начало XX в.). М., 2007. С.373; Глушков В.В. На островах уллындо и докд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М., 2018. С.61.

3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3.

4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1.

5 다만 기존 연구는 1903년 9월 러시아 함선의 울릉도 조사에 대해서만 한국과 일본의 자료에 기초하여 간략하게 다루었다. 김호동은 러시아와 일본의 첨예한 대립이 1903년 울릉도에서도 전개되었다고 주장했고, 홍정원은 심흥택이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불법벌목과 경찰서 주재 사실에 대해 러시아 측이 한국 정부를 오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가했다(김호동, 「개항기 울도군수의 행적」, 『독도연구』 19호, 2015, 31–32쪽; 홍정원, 「조선의 울릉도 독도 인식과 관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6, 204–20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I. 일본과 한국이 바라본 러시아 함정의 울릉도 조사 과정

1. 1899년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의 울릉도 조사

1899년 11월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장갑 순양함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는 울릉도에 도착하여 울릉도의 지형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울릉도 현지조사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한제국 신문들은 앞다투어 보도했다.

1899년 11월 14일자 『독립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함대 '즁가로니 모후호'[6]는 10월 26일 '포렴 샤덕항'을 떠나서 울릉도에 도착하여,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을 관찰하고 11월 7일 마산포로 출발했다.[7]

1899년 11월 27일자 『제국신문』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개항장이 아닌 울릉도에서 삼림을 불법으로 벌목했다.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은 11월 3일 천장절(天長節)을 경축하며 일본 국기를 내걸었다. 러시아 군함이 11월 3일 울릉도에 정박하고 해군 30명이 상륙했는데, 러시아 해군은 일본 국기를 훼손하면서 울릉도를 러시아가 점령한 땅이라고 말했다.[8]

---

6 『독립신문』은 '즁가로니 모후호'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당시 동청철도 소속 우편선 숭가리호(Сунгари, почтовое судно)가 있었다. 『독립신문』은 '숭가리호'와 '즁가로니 모후호'를 동일한 선박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독립신문』에 보도된 러시아 선박의 이동 날짜와 행적을 추적하면 '즁가로니 모후호'는 러시아 군함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가 맞다.

7 "아라샤 함듸. 아ᄅᆞ샤 동양 함듸 즁가로니 모후호가 十월 二十六일에 포렴 샤덕항에셔 써나 울릉도에 긔항ᄒᆞ야 히도에 잇ᄂᆞᆫ 일본 사ᄅᆞᆷ들의 동작을 관찰ᄒᆞ고 七일에 ᄆᆞ산포로 향ᄒᆞ여 출범ᄒᆞ얏다더라."(『독립신문』, 1899. 11. 14, 장갑 순양함(бронепалубный крейсер))

8 "우리나라 울릉도는 개항하지 아니한 섬인데 토지가 고옥함을 인연하야 일본 사람들이 그 섬에 들어가 사는대, 삼림을 임의로 작벌하며 생각되는 말은 이와 말하엿거니와, 이 섬에 들어가 사는 일본 사람들이 이달 3일에 자기 나라 천장절을 경축하노라고, 일본 국기를 세웟더니 아라사 군함이 그날 울릉도에 정박하고 30명이 상륙하야 일본 사람들이 세운 기를 부시고 또한 무삼 경계를 인연 함인지, 이 섬은 아라사국에서 점령한 땅이라고 떠들엇다더라."(『帝國新聞』, 1899. 11. 2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99년 12월 5일자 『황성신문』은 러시아 군함 '고로니로후호'(아드미랄 꼬르닐로프)의 울릉도 조사에 관한 『조선신보(朝鮮新報)』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는 임무관(林務官) '가디니후'[9](1899년 함장은 뻬뜨로프(И.И. Петров))를 포함한 30여 명의 육군사관(陸軍士官)이 승선했다.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는 원산을 거쳐 부산에서 마산공사(馬山工事)를 맡은 주한 러시아공사관 부속(附屬) 측량기사(測量技師) 막시모프, 블라디보스톡에서 온 해군기사(海軍技師) '안트레쏘스랏프싸지'를 탑승시켰다. 러시아 해군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요해(要害)와 육면(陸面)을 전부 정밀히 답사하고 측량했다. 『조선신보』는 러시아 해군이 울릉도에 병영 설치와 수뢰기지(水雷營) 건설을 계획하면서, 장소를 물색하는 중이라고 추정했다.[10]

1899년 12월 8일자 『제국신문』에 따르면 원산 주재 영사관 다카오(高雄) 서기생(書記生)이 울릉도에 파견되어 일본인들의 추방을 직접 지시했다. 그 결과 일부 일본인은 행장을 수습하여 철수를 준비했다. 그런데 『제국신문』에 따르면 11월 3일 러시아 장교가 일본인 거류지를 시찰했는데, 러시아 해군은 일본인이 천장절 행사에 국기를 내걸고 경축하자, 일본 국기를 모욕하고 일본인을 위협했다. 『제국신문』은 러

---

9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의 함장은 다음과 같다.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Е.И. Алексеев 1-й (17. 11. 1886-09. 09. 1891);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М.И. Ельчанинов (09. 09. 1891-10. 01. 1894);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П.Н. Вульф (10. 01. 1894-16. 10. 1895);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П.П. Молас 1-й (16. 10. 1895-09. 06. 1897); капитан 1 ранга С.С. Черкасс (09. 06. 1897-07. 06. 1899);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И.И. Петров 1-й (07. 06. 1899-18. 04. 1900);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Н.А. Матусевич 1-й (18. 04. 1900-06. 08. 1900);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А.Т. Тарасов (06. 08. 1900-06. 09. 1900);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П.Ф. Нельсон-Гирст (06. 09. 1900-25. 10. 1904);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К.П. Арнаутов 1-й (25. 10. 1904-25. 04. 1905) (https://forum.worldofwarships.ru)

10 "鬱陵島의 俄國經營. 朝鮮新報에 하엿스되 鬱陵島에 對한 俄國方針에 就하야 今에 可信한 情報를 據한즉 俄國軍艦고로니로후 号ᄂᆞᆫ 林務官 가디니후 及三十餘名의 陸軍士官을 率하고 該地에 赴할 次로 몬저 元山에 寄港하야 釜山에서 更히 馬山工事에 執掌하던 京城俄公館附屬測量技師 마기시모후(*막시모프) 及海蔘威에서 來한 海軍技師 안트레쏘스랏프싸지 氏를 搭乘ᄒᆞ고 鬱陵島로 赴하야 上陸한 後에 海濱의 要害及陸面의 全部를 精密히 踏査測量하얏ᄂᆞᆫ디 畢竟 該嶋內에 兵營을 築設하고 別히 水雷營을 建設할 터이라ᄂᆞᆫ디 目下 其場所를 選定하ᄂᆞᆫ 中이라더라."(『皇城新聞』, 1899. 12. 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아 해군이 울릉도감(鬱陵島監)을 결박하고 문초했다고 보도했다.[11]

하지만 울릉도감의 보고에 따르면 울릉도감을 결박한 사실은 없었다. 러시아 군함이 섬 안에 와서 정박하고 있으면서 출입허가(本島許給)에 관한 훈령(訓令)을 보여주자, 울릉도감 배계주는 전후 사정(前後事狀)을 러시아 군함에 알려주었고, 러시아 군함이 한 마디도 묻지 않고 조용히 물러갔다고 보고했다.[12]

1899년 12월 25일자 『황성신문』은 러시아 군함의 울릉도 상륙 관련 나가사키 영자보(長崎英子報)의 내용을 보도했다. 나가사키 영자보는 러시아인이 울릉도에 1병영(一兵營)과 1수뢰분치소(一水雷分置所)를 설치한다고 보도했다.[13]

울도시찰위원(鬱島視察委員) 우용정도 1899년 11월 러시아의 울릉도 정박에 관한 정보를 대한제국 정부에 보고했다.

우용정에 따르면 1899년 10월 1일(양력 11월 3일) 러시아 군함은 남양동 포구에 정박하여, 장교(將官) 1인(員), 통역(通事) 1인(人), 해병(兵丁) 7명(名)이 상륙했다. 러시아 장교는 울릉도의 형세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울릉도를 정찰했다. 러시아 군함은 8일 동안 울릉도에 정박하면서 규목(槻木, 물푸레나무) 1그루를 75냥을 주고 일본인에게 구매했다. 러시아 군함은 1900년 3월에 다시 오겠다며 울릉도를 떠났다.[14]

---

11 "울릉도에 삼림보호권리를 아라사 사람이 있엇는대 일인이 그 섬에 잇는 자를 것어가라고 조회하엿다니, 일본서 원산 영사관에게 기별하야 서기생 고도 씨를 그 섬에 보내여 일인을 물러가라고 효유하대, 일인들이 행장을 수습하야 더러는 돌아갈 즈음에 80여 명은 앞서 마감하노라고 두류하더니, 지난달 2일(*3일)아라사 군함이 무관과 통변하는 일본인 1명을 도박(*포박)하엿는대, 여러 번 방포하야 위험을 보이고, 우리나라 도장을 결박하여 문초하며 병영(*병장)으로 하여금 일인의 거류지를 엄히 시찰하더니, 그 이튼날은 일본 천장절이라 그곳 잇는 일인들이 국기를 걸고 경축하는 거슬 아라사 사람이 그 국기를 대하야 욕설을 무수히 하나 통병이 만류하야 다행이 무사하엿다 하고, 또 의기가 양양하야 일본 사람들을 공갈하며 장차 선창을 싸흘 모양 갓다더라."(『帝國新聞』, 1899. 12. 8) * 표시는 오류를 정정함.

12 "適其時에 俄國軍艦이 來泊于嶋中ᄒᆞ고 本島許給의 訓令을 輸示ᄒᆞᄂᆞᆫ 故로 幷將前後事狀ᄒᆞ야 知照한즉 俄國軍艦이 有若恬然ᄒᆞ고 無一言問荅而退ᄒᆞ얏ᄂᆞᆫ뒤."(『皇城新聞』, 1900. 3. 10) 鬱陵島監의 公報.

13 "鬱陵島에 俄人. 長崎英子報를 據한즉 울릉도에 아인이 一兵營과 一水雷分置所를 方設한다는대 차언은 東京某報官通信員의 函致한 배니 其詳細論列한 것으로 觀하건데 其可信處한 것으로 관하건대 一種風說과는 有異하더라 하얏더."(『皇城新聞』, 1899. 12. 25)

14 『各觀察道案』, 光武 10年 自隆熙四年至, 一-三(奎章閣, 799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결국 러시아 군함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는 1899년 11월 3–7일까지 울릉도에 체류하면서 울릉도의 지형을 파악하고, 해군 수뢰분소 설치를 대비한 조사를 실시했다. 러시아 군함의 명칭에 대해서 『독립신문』은 '즁가로니 모후호'로, 『황성신문』은 '고로니로후호'로 기록했다. 당시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동해 훈련에서 러시아 함정의 이름은 '즁가로니 모후호'가 아닌 '고로니로후호'만 기록되었다. 따라서 고로니로후호, 즉 '아드미랄 꼬르닐로프' 함정이었고, 『독립신문』의 오보였다.

2. 1903년 야꾸트호의 울릉도 조사

1903년 10월 7일 부산 주재 일본영사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는 경부(警部) 아리마 다카노부(有馬高孝)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9월 2일 러시아 군함 야꾸트(Якут)의 울릉도 방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에게 제출했다. 앞서 울릉도 주재 경부 아리마는 1903년 9월 12일 부산 주재 영사 시데하라에게 러시아 선박의 울릉도 방문을 보고했다.[15] 이미 일본은 1902년 2월 울릉도 내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일본경찰서(日本警察署)를 울릉도 도동에 신설했고, 부산 주재 일본경찰서 소속 경부 1명과 순사 2명이 울릉도에 파견되었다.[16]

아리마는 1903년 9월 러시아 수병의 울릉도 상륙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울릉도 주재 경부 아리마 다카노부는 러시아 군함 야꾸트호가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울릉도로 내항했다고 추정했다. 아리마에 따르면 1903년 9월 2일 오전 11시경 포 2문을 갖춘 러시아 선박 야꾸트호의 러시아 사관(士官) 2명과 수병 19명이 울릉

15 "한국 鬱陵島의 南陽洞 부근에서의 러시아 군함의 거동에 관해 지난달 12일자로 울릉도 주재 警部 有馬高孝로부터 소관 앞으로 보고가 있었사오니 別紙 요령을 摘錄한 뒤 보고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본문은 本省에도 같은 모양으로 보고했습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20), 1903年 10月 7日, 〈各館來信〉(7) 韓第41號「러시아 수병의 鬱陵島 상륙에 관한 건」, 在釜山 領事 幣原喜重郎→特命全權公使 林權助)

16 『帝國新聞』, 1902. 3.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 남양동(南陽洞)에 상륙했다. 9월 2일 상륙한 러시아 사관과 수병은 남양동 해안에서 약 10정(町)의 산중턱 주변에서 야영을 하면서 울릉도 지도를 제작했다. 러시아 사관은 러시아가 울릉도의 삼림벌채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인이 일본인의 삼림벌채를 금지시키지 않는 것을 심흥택에게 힐문했다. 그러자 심흥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미 금년 4월에 취임할 때 삼림벌채에 대해서 울릉도의 일본 경부에게 교섭했다. 그런데 일본 경부가 직접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대한제국 정부에 위의 내용을 보고했지만 아직 아무런 명령을 접하지 않았다." 주한 일본공사관의 기록은 심흥택에 대한 러시아의 위압적인 행동을 부각하고 있는데, 러시아 사관이 문서를 요구해서 심흥택이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으로 기록되었다.

1903년 9월 2일 러시아 국기를 게양하고 포 2문을 갖춘 선명(船名)을 알 수 없는 기선 1척이 나타났다. 러시아 군함은 러시아 사관 및 수병 복장을 한 자들을 싣고 울릉도 도동의 일본 경찰관 주재소에서 약 4리 떨어진 남양동에 내항했다. 그 후 9월 11일 오후 6시경에 출발했다. 그동안 러시아 선박은 연안을 천천히 항해하면서 울릉 전도(全島)를 항해(周航)했다.

9월 2일 오전 11시경 러시아 사관 2명과 수병 19명은 남양동에 상륙한 다음, 약 10정의 산중턱 주변에서 야영했다. 러시아 해군이 5-6일 체류하면서 울릉도 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9월 11일 러시아 사관 2명은 군속(軍吏) 1명과 수병 16명을 거느리고 남양동 방면에서 육로로 도동의 대한제국 관아에 와서 군수 심흥택과 대담했다. 러시아인은 일본인 소유의 느티나무와 그 밖의 목재를 촬영했다. 사관 1명은 그곳에서 즉시 승선하고, 그 밖의 해군(兵員)은 육로를 이용해 남양동으로 철수했다.

울릉도 주재 경부 아리마 다카노부는 러시아 사관과 울도군수 심흥택과의 대화를 기록했다. 아리마는 심흥택이 러시아 해군의 강요에 의해 진술 내용을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9월 11일 러시아 사관 2명과 16명의 수병은 남양동 방면에서 육로로 도동에 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군수 심흥택과 면담했다. 그 자리에서 러시아 사관은 "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이 러시아에 있다"며 "왜 일본인의 삼림벌채를 금지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심흥택은 "1903년 4월 취임할 때 울릉도 주재 일본 경찰에게 교섭했지만, 일본 경찰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다. 아리마는 "러시아 수병은 회담 중에 칼을 휴대하고 있었고 러시아 사관이 심흥택에게 진술 내용의 문서 작성(書證)을 강요했고, 심흥택은 이에 응하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했다. 러시아 선박 야꾸트호는 울릉도 연안을 항해하며 울릉도 전역을 탐사하다가 9월 11일 오후 6시경에 출발했다.[17]

1903년 11월 28일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金禎根)은 러시아와 일본이 울릉도 삼림 벌목 관련 보고서를 외부대신 임시서리 이하영(李夏榮)에게 제출했다.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은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러시아 해군의 울릉도 조사를 조선 외부(外部)에 보고했다. 김정근은 외부가 주한 일본공사와 러시아공사에게 조회하여 양국 모두의 울릉도 벌목을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심흥택에 따르면 1900년 7월 12일(양력 9월 3일) 러시아 병선(兵船)의 병정(兵丁) 23명은 울도군의 남양포(南陽浦)로 들어와 지형(地形)을 탐지하고 사진을 찍은 후 울도군수를 방문했다. 러시아 사관은 한국 정부가 울릉도의 삼림을 러시아(俄國)에 양도했는데도, 일본인이 벌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심흥택에 따르면 러시아 병선은 남양포 동구에 와서 대관(隊官) 1인과 부관(副官) 2인이 병정 23명을 이끌고 내려와 산 위를 올랐고, 땅을 측량하거나 나무의 수를 계산하고 산천의 지형과 각 포구를 돌며 사진을 찍었다.

러시아 대관은 7월 19일(양력 9월 10일) 오시(午時)에 병정 27명을 이끌고 울도군수 심흥택을 방문했다. 러시아 문서에 따르면 그 대관은 까르쩨프(В.А. Карцев) 대위였다.

---

17 『駐韓日本公使館記錄』(20), 1903年 10月 7日, 〈各館來信〉(7) 韓第41號「러시아 수병의 鬱陵島 상륙에 관한 건 別紙 1 러시아 수병의 鬱陵島 상륙 보고서 요지」, 在釜山 領事 幣原喜重郎→特命全權公使 林權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까르쩨프 대위는 질문했다.

"이 섬의 목재는 5년 전 우리 회사에서 귀 정부와 조약으로 얻기를 청했으니 이 섬의 삼림은 러시아의 소유입니다. 타국인이 삼림을 벌목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일본인이 이리 심하게 베어 가는 것입니까?"

"한국 정부가 일본인에게 벌목을 허가한 문서가 있습니까? 일본 정부의 문서가 있습니까?"

울도군수 심흥택은 "모두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까르쩨프가 묻고 심흥택이 답했다.

"일본인의 벌목을 어떻게 금지하겠습니까? 일본경찰서가 울릉도에 주둔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정부의 조약이 있습니까?"

"본관은 조약의 유무를 알지 못하며, 부임한 이후에야 일본경찰서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의 벌목을 금지하지 않은 사실, 일본경찰서가 주둔하는 사실 등에 관한 조약을 한국과 일본이 맺었는지 여부를 분명히 글로 써서 주시길 바랍니다."

심흥택은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글(書)로 써서 주겠다"라고 답했지만 까르쩨프는 "윤선이 떠나려 하니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라고 독촉했다.

심흥택은 까르쩨프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글로 써서 주었다. 심흥택은 러시아 해군의 항의를 근거로 일본인의 벌목 금지를 일본 경부에게 촉구할 수 있었다.

"1903년 3월 23일(음력) 부임한 이후 일본경찰서가 본군 도동포에 주둔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의 조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본군에 주둔한 이상 만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일본 경부 아리마 다카노부를 만났습니다. 본관이 삼림을 금지시키겠다는 뜻을 전하자, 아리마는 '피차 정부의 문서가 없으니 금지하기가 곤란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심흥택이 까르쩨프에게 글을 써주자, 러시아 해군은 포위를 풀고 도동포로 내려가서 지형을 촬영한 후 남양동으로 돌아가서 배를 타고 떠났다. 심흥택은 러시아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울릉도 조사 관련 보고서를 전라도인 박양(朴陽)의 선편에 부쳐 대한제국 내부에 보냈다. 하지만 심흥택은 8월 22일(음력) 선박이 침몰하여 보고서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후 심흥택은 또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에 보냈다.[18]

1903년 12월 5일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은 러시아인의 울릉도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외부대신 임시서리 이하영에게 제출했다.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은 울릉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러시아삼림회사(森林會社)와 한국 정부 사이에 울도군

---

18 "鬱島郡守沈興澤報告書內開에 本年七月十二日 俄國兵船一隻이 來泊本郡南陽浦洞口 而隊官一人副官二人이 率兵丁二十三名下陸ᄒᆞ야 仍爲上山 而或尺量地段ᄒᆞ며 或計數木根ᄒᆞ고 山川地形과 各浦를 巡環寫眞이더니 十九日午時에 率兵丁二十七名ᄒᆞ고 環匝本官職所 而隊長이 問曰 此島木料는 五年前 我國會社에서 貴政府와 約條ᄒᆞ고 請得ᄒᆞ얏시니 此島森林은 我國之物也라 他國人은 不可斫伐이거늘 如何日人之伐木이 甚多也오 其伐木이 有貴政府許可文字乎아 有日本政府文字乎아 有我國會社文字乎아 本官曰皆無로라 彼曰其伐木을 何不禁止乎며 且日本警署가 駐此ᄒᆞ얏시니 有貴政府條約否아 本官曰其條約有無는 不知 而本職赴任後 聞知駐此也로라 彼曰然則其伐木不禁之由와 日警署駐此之貴政府條約有無를 明書給我也ᄒᆞ라 本官이 尋思無路ᄒᆞ야 答以爲一二日後書給云 則彼曰輪船이 方發ᄒᆞ니 不可久留로라 ᄒᆞ고 督促非輕故로 乃以實事書給曰 癸卯三月二十三日赴任後 聞日警署가 來駐本郡道洞浦云 而其與我政府約條有無는 未知나 然이나 旣駐本郡에 不可無一次相見故로 往見日警署有馬高孝後에 以森林禁斷之意로 言之則答云 無彼我政府文字ᄒᆞ니 難以禁止故로 以此意報告于我國內部耳라ᄒᆞ고 以此書給 則彼乃撤圍率兵ᄒᆞ고 仍下道洞浦ᄒᆞ야 寫眞地形後 還去南陽洞 乘船以去ᄒᆞ얏ᄉᆞ오니 此之擧措가 實爲未安이옵기 卽修報告ᄒᆞ와 付送于羅人朴陽船便矣러니 今八月二十二日에 船便得聞 則該船이 海中覆沒ᄒᆞ와 同報告가 俱爲鬪失故로 玆更報告等因을 據ᄒᆞ와 玆에 報告ᄒᆞ오니 照亮ᄒᆞ신 후 移照日俄兩公使官ᄒᆞ야 以爲禁斷케ᄒᆞ시믈爲望."(報告書第六號, 光武 7年(1903) 11月 28日, 「江原道來去案」 第一冊, 『各司謄錄』 28, 江原道篇 2, 江原道觀察使金禎根→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宮內府特進官李夏榮, 59-60쪽(奎17985)) 1903년 12월 1일 외부는 울도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벌목 금지에 대한 강원도 관찰사의 보고서를 기록했다. "江原觀察報告 鬱島郡守報稱 俄兵船一隻來泊本島南陽浦 隊官一人 副官二人 率兵圍官採問日人伐木 日警署駐此裏由 尺量地段 計數木株 寫眞地形而去等情 移照日俄兩館 發訓禁斷爲望. 江原觀察報告 鬱島郡守報開 該島所住日警署及日人伐木侵土之 有難禁斷等情 移照日館爲望."(交涉局, 光武 7年 12月 1日, 『外部日記』 7冊, 入直 李範奭 金瑞圭(奎17841)

"鬱島郡守 沈興澤氏의 報告를 據ᄒᆞᆫ 則 陰七月十二日에 俄國兵艦 一隻이 本郡南陽洞浦口에 來泊ᄒᆞ야 隊官 一名과 副官 二人하 率兵丁 二十三名ᄒᆞ고 下陸ᄒᆞ야 仍爲上山ᄒᆞ야 或量地段ᄒᆞ며 木株를 計數ᄒᆞ며 山川地形과 各浦를 巡環模寫ᄒᆞ얏고 同十九日에 隊官이 率兵丁 二十七名ᄒᆞ고 到道洞本官直所ᄒᆞ야 四面環圍ᄒᆞ고 隊長이 問ᄒᆞ되 此島木料ᄂᆞᆫ 五年前 俄國會社가 貴政府에 約條請得ᄒᆞᆷ이 有ᄒᆞᆫ 則 此島森林은 俄國之物也라 俄國人外他國人은 不可斫伐이어ᄂᆞᆯ 如何히 日人之伐木이 甚多ᄒᆞᆫ지 其伐木에 有貴政府許可文字乎아 有日本政府文字乎아 有俄會社文字乎아 ᄒᆞ야ᄂᆞᆯ 本官曰 皆無라 ᄒᆞ니 彼曰 其伐木을 何不禁止乎아 且曰 日本警部가 駐此ᄒᆞ니 有貴政府約條否아 本官 曰 其約條有無 吾所未知나 本職이 赴任後에 聞知駐此라 ᄒᆞ니 俄官이 以此도 詰迫ᄒᆞ다가 仍以發船以去라 ᄒᆞ얏더라."(『皇城新聞』, 1903. 11. 17) 『황성신문』 기사는 심흥택의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鬱島郡)에 대한 조약(約條)을 맺은 사실이 있는지를 외부에 질의했다.

심흥택에 따르면 러시아 병선(俄國兵船)은 9월 3일 남양포에 정박하여 지형을 측량(尺量)하고 수목을 계산(計數)했다. 9월 10일 러시아 병정(兵丁) 27명은 심흥택을 둘러싸고 대화했다. 러시아 대관과 병정은 도동포로 내려가 지형의 사진을 찍은 후 남양동에서 승선해 떠났다.

까르제프 대위(隊官)가 심흥택에게 물어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5년 전 러시아 회사(我國會社)가 한국 정부와 조약(約條)을 체결(請得)하여 울릉도의 삼림이 러시아 소속인데, 일본인의 불법벌목과 일본경찰서(日警署) 주차(駐此)에 관한 정부약조(政府約條)의 유무 여부를 알려달라."

김정근은 일본인이 가옥 설치(設幕搆屋)를 외부(外部)에 요청(報明)한 사실이 있었는지, 한국 정부와 러시아 사이에 울도군의 목재(森林會社)에 관한 약조(約條)를 맺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알려달라고 외부에 요청했다.[19]

---

19 "江原道觀察使 金禎根의 第六十五號 報告書 內開 頃聞通川高城兩界長箭浦에 日人等이 設館인바 無論本他國ᄒᆞ고 如非租界內 則外國人之賃房購屋은 法所當禁이온 況該浦가 本非租界約定之地 而如是營役은 揆以約章에 萬萬垂當故로 發訓該兩郡ᄒᆞ야 以該基址가 或有京部認許而然인지 自郡不禁而私自營造인지 昭詳報來ᄒᆞ고 亦卽禁斷之意로 措辭申飭이올고 另派巡檢ᄒᆞ야 使之詳探이오며 且江陵郡注文津은 本非通商口岸이거ᄂᆞᆯ 外人輪船이 每年 幾次式 來往貿易云者 亦非約章共守法意故 發訓該郡ᄒᆞ야 該輪船之創自何年來往과 緣何事而來往을 詳探報來事申飭이올더니 通川高城江陵等郡報를 次第接閱ᄒᆞᆫ즉 通川郡長箭浦에 設館云者는 乃是訛傳也오 捕鯨幕段은 不過是藏置鯨肉之所 而暫欲權設이나 日人松尾言內에 亦知章程之所禁 則過冬後撤去이다ᄒᆞ오며 日人森萬之新搆十二間板屋은 且無認許之可據 而亦知章程所禁ᄒᆞ고 將爲毁撤云이오나 蓋幕與屋이 俱是年前認許俄人之基址外 則其所禁斷은 恐不可已이오며 江陵郡注文津段 荻浦丸輪船이 七月九日에 販載幾魚ᄒᆞ고 出往釜山이라가 同月十三에 回還元山 而他無所幹이을고 其外ᄂᆞᆫ 更無外國船來往이다 以不通商口岸에 輪商船交易이 亦是條規故로 依通商約條禁飭之意로 另加題飭于該郡이오며 通川高城兩郡所報成冊을 纔已轉報于外部故로 該成冊을 謄本ᄒᆞ와 玆에 報告ᄒᆞ오니 査照後 移照外部ᄒᆞ와 俾爲措處 爲望等因과 連接第六十六號報告書 內開 卽接鬱島郡守 沈興澤 報告書 則俄國 兵船一隻이 七月十二日來泊本島南陽浦洞口 而隊官一人 副官二人 率兵丁二十三名 下陸 或尺量地段 或計數木根이다가 十九日率兵丁二十七名 圍環本官直所問曰 此島木料ᄂᆞᆫ 五年前 我國會社에서 貴政府와 約條를 請得ᄒᆞ엿스니 此島森林은 我國之物也라ᄒᆞ오며 以日人伐木과 日警署駐此가 或緣政府約條有無與否를 明細給我ᄒᆞ라고 問答ᄒᆞ다가 彼乃撤圍率兵ᄒᆞ고 仍下道洞浦 寫眞地形 而還去南陽洞 乘船以去ᄒᆞ얏스나 今此擧措가 實爲未安이오니 移照外部ᄒᆞ와 使之知照於俄日兩館ᄒᆞ야 以爲發訓禁斷케ᄒᆞ심을 爲望等因을 據査ᄒᆞ온즉 高城通川兩郡交界에 日本人이 稱以藏置鯨肉ᄒᆞ고 設幕搆屋ᄒᆞᆫ 事로 該府로서 先已報明于貴部이다 貴部措飭이 必有ᄒᆞ시려니와 鬱島郡에 俄人이 來泊ᄒᆞ야 本島木料를 該國森林會社에 我政府約條가 有ᄒᆞ다ᄒᆞ오니 該島森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 문서는 러시아 해군이 9월 2일 도착하여 상륙했다고 기록했고, 한국 문서는 9월 3일 상륙하여 지형을 탐사했다고 기록했다. 러시아 함정의 항해 날짜를 고려하면, 러시아 해군은 9월 2일에 도착해서 9월 3일에 상륙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문서는 러시아 장교와 울도군수와의 면담 날짜를 9월 11일, 한국 문서는 9월 10일로 기록했다. 러시아 문서는 8일 동안 체류했다고 기록했다. 9월 2일 도착을 기준으로 본다면 울도군수와 대담한 날짜는 9월 10일일 것이다.

일본 문서는 심흥택과 면담한 러시아인은 러시아 사관 2명과 군속(軍吏) 1명, 수병 16명, 한국 문서는 대관(隊官) 1인과 부관(副官) 2인, 병정(兵丁) 27명이라고 기록했다. 러시아 문서에는 러시아 지휘관 까르쩨프 대위, 메르꾸쉐프(B.A. Меркушев) 군의관, 레베제프 통역관, 16명의 러시아 수병으로 기록되었다.[20]

결국 까르쩨프 대위가 지휘한 러시아 군사 수송선 야꾸트호는 1903년 8월 31일 블라디보스톡 출발, 9월 2일 울릉도 도착, 9월 3일 울릉도 남양포 상륙, 9월 10일 도동에서 심흥택 면담 직후 출항했다. 울릉도를 조사하고 심흥택을 면담한 인물은 러시아 장교 2인, 통역 1인, 수병 16명이었다.

도 政府認許가 果有ᄒᆞ온지 玆以仰佈ᄒᆞ오니 照亮後 一切示明ᄒᆞ심을 爲要."(照會 第十八號, 光武 7年(1903) 12月 5日,「內部來去文」15, 議政府贊政內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 金奎弘→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李夏榮) 1903년 12월 10일 외부는 러시아삼림회사의 울릉도 삼림이권 획득 사실에 관한 내부의 조회를 기록했다. "內部照會 江原道觀察使金禎根報告書內開 通川高城兩界長箭浦 日人等稱以藏置鯨肉 新搆板屋 綰已轉報于外部等因. 連接該觀察報告內開 俄船來泊鬱島郡 隊官稱本島木料 我國會社請得於貴政府 已有條約等情 該島森林 果有政府認許 照亮示明."(交涉局, 光武 7年 12月 11日,『外部日記』7冊, 入直 丁大有 方大榮(奎17841)

20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1903년 러시아 탐사단의 울릉도 조사와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립

1. 러시아 탐사단의 울릉도 조사

1903년 9월 2일 울릉도를 방문한 선박은 러시아 군사 수송선 야꾸트호[21]였고, 지휘관은 까르제프 대위[22]였다. 러시아는 1901년 울릉도의 삼림을 탐사할 목적으로 까르제프 대위를 파견했다. 당시 파견된 선박은 러시아 포함 까레예쯔(Кореец)호였다. 까르제프 대위는 1903년에 다시 울릉도를 방문하여 조사했다.[23]

1903년 8월 중순 통역관 레베제프는 군의관 메르꾸쉐프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톡 항구 책임자(начальник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го порта) 가우쁘트(Н.А. Гаупт) 제독의 초청을 받았다. 가우쁘트 제독은 러시아가 삼림채벌권을 획득한 울릉도(Дажелет)의 삼림 탐사를 목적으로 조사팀을 파견하는데, 레베제프에게 일본어 통역관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레베제프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으로부터 울릉도의 정보와 소식을 파악하여 기행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 레베제프는 일본인이 울릉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인이 일본어를 할 수 있었다고 기록했다. 레베제프는 일본어와 한문에 능통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3년 8월 18일(양력 8월 31일) 러시아 탐사단은 군사 수송선 야꾸트호를 타고

---

21 야꾸트호(Якут, Во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транспортное судно, 1887–1937)는 723톤이고, 가로 세로 각 8.4미터와 62.5미터였다.

22 Виктор Андреевич Карцев(Карцов, 1868–1936). 1889년 흑해함대 해군소위에 임관되었다. 1901년 포함 까레예쯔호의 어뢰장교로 활동했다. 1903년부터 뤼순함대(Порт-Артурской эскадры) 소속 러시아 어뢰정 블라스뜨늬이(Властный)의 함장이었다. 1904년 러일전쟁에 참전했고, 1910년부터 1913년까지 주프랑스 대사관 해군무관(Морской агент)으로 근무했다. 1916년 러시아 해군 부제독(вице-адмирал)이 되었다(http://w.histrf.ru/articles/article/show/kartsov_viktor_andrieievich).

23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4. 포함(канонерская лодк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오전 4시 블라디보스톡에서 울릉도로 출발했다. 레베제프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지휘관 까르쩨프와 군의관 메르꾸쉐프의 경험과 열정으로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올랐고, 거대한 삼림을 헤치면서 울릉도 전역을 탐사할 수 있었다고 기록했다.[24]

러시아 탐사단은 울릉도에 8일 동안 머물면서 성인봉을 등반하고 울릉도 전역을 탐사했다. 또한 야꾸트호는 울릉도 전역을 순회했고, 매일 정오 남양포 러시아 탐사단의 임시 숙소에 도착하여 상호 연락할 수 있었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벌목작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일본인은 러시아 탐사단이 울릉도를 방문하자 바로 벌목작업을 중단했다.[25]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위치와 명칭을 기록했다. 울릉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나가사키 방면으로 307해리 떨어진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54분에 위치하고, 둘레가 25마일(약 40킬로미터)을 조금 넘는다"라며 한국의 섬(Корейский остров)이라고 기록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를 서양에서는 '다줄레(Дажелет, Dagelet)', 일본에서는 '마쓰시마(소나무의 섬, Мацусима, остров сосен)', 한국에서는 '울릉도(Уллындо)'라고 부른다고 기록했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한국에서 부르는 명칭은 정상과 산등성이 등 산 전체를 뒤덮어서 건축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거대한 삼림에서 유래했다. 1787년 프랑스 탐험대 라페루즈(La Perouse)호는 아스트롤라베(Astrolabe)호와 부솔(Boussole)호 선단으로 구성되어, 한국의 북쪽 해안을 항해하던 중에 처음 울릉도를 발견했다. 1851년 봄과 여름에 걸쳐 영국 선박 악테온(Acteon)호는 다줄레(о. Дажелет)섬을 탐사했는데, 이 배에는 현지 식물을 채집하던 식물학자인 윌포드(ботаник Вильфорд, botanist

---

24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3.

25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С.163-174. Студента III-го курса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Е. Лебедев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ilford)도 승선하고 있었다.

레베제프는 19세기 후반 영국과 러시아의 울릉도 탐사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다. 1883년(20년 전) 영국인과 일본인들이 함께 울릉도에서 벌목했고 성인봉(Суимбон)을 등반하면서 산길의 암석들을 연구했다.

1887년 러시아 군함 비쟈지(Корвет Витязь)호는 세계일주 중 울릉도를 방문하고 전체 지도를 작성하면서 해안을 측량했다.[26] 함장은 러일해전으로 유명한 마까로프(С.О. Макаров)였다. 비쟈지호의 장교는 섬의 지형을 측량하고 촬영했는데, 이후 뻬쩨르부르크에서 지도가 발간되었다.[27] 미국인 미첼(Митчель, Mitchell)이 총 매출의 50퍼센트를 조선 정부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소유했다. 그 후 러시아인 브리네르(Бринер)가 순익의 25퍼센트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획득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 삼림채벌권이 베자브라조프(Безобразов)에게 넘어갔는데도 일본인들이 울릉도 삼림을 벌목하여 러시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위치, 생성, 산맥 등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울릉도는 한국의 도서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유일한 섬이지만, 천 톤 이상의 선박이 정박할 만한 곳이 없었다. 울릉도는 육지에서 70마일의 거리이고, 그리니치 동경 130도 54분이라고 파악했다. 도동항(Тодо)은 울릉도 동해안에 위치하고 북풍, 서풍, 서남풍의 영향을 받지 않아 최적의 기항지였다. 또한 레베제프는 선박과 구명정이 접근할 수 있는 항구가 자신들이 체류했던 꼬르께(Корке, 남양포)라고 주장했다.[28]

---

26 레베제프에 따르면 비쟈지호는 다줄레섬 북쪽에 위치하는 암초에 좌초해 침몰했다. 러시아는 그 암초를 '비쟈지(Скала Витязь)'로 명명했다. 하지만 비쟈지호는 1893년 5월 원산항(порт Лазарева) 근처에서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다고 알려졌다.

27 Глушков В.В. На островах уллындо и докд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М., 2018. С.60.

28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줄레(Dajalet, Dagelet)섬은 지층의 수직형 구조, 굳은 용암으로 형성된 수많은 암석, 화산섬에서만 볼 수 있는 극히 험난한 지형 등이 화산작용으로 형성된 것임을 입증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가 대략 1200-1500년 전에 형성된 화산섬이라며 그 증거로 산굴의 형성, 울릉도 삼림의 둘레와 크기 등을 꼽았다.

레베제프는 나리분지(Нариколь)와 연결되는 울릉도의 산맥을 묘사했다. 레베제프는 성인봉(Суимбон)이 안장의 머리 모양이고 천두봉(Турибон)이 꼬리 모양이라고 기록했다.

울릉도는 산림으로 덮여 있으며 좁은 계곡들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며 산과 산을 가르고 있었다. 나리분지 산맥은 가장 높은 2개의 산봉인 성인봉(Суимбом, 3208 피트)과 천두봉(Турибон)을 중심으로 반경이 뻗어 나가듯이 산의 등줄기가 퍼져 나가면서 바다 쪽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졌다. 모든 산은 정상에서 기슭까지 거대한 산림으로 덮여 있었다. 성인봉 정상에는 높지 않은 대나무와 야생포도 그리고 키가 작은 옴찌오(Омцио) 관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아래로 내려가면 마가목(馬價木)으로 바뀌다가, 나중에는 거대하고 우거진 산림으로 변모했다. 바위들로 둘러싸인 계곡 바닥으로 개울이 흐르고 산림이 없는 산등성이에서는 잡곡들이 재배되었다.

성인봉은 대략 원둘레 36사젠(сажень, 2.1336미터)으로 작고 평평한 땅이 있었다. 성인봉은 높지 않은 대나무와 야생포도가 자생하고 있고, 주변과 바다를 관찰하기 편리했다. 또한 성인봉에서는 울릉도의 북쪽과 북서쪽 그리고 서쪽을 상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쪽은 천두봉으로 가려져 있어서 관찰할 수 없었다.

천두봉에서는 정상과 산등성이 모두 거대한 산림으로 덮여 있어서 주변을 관찰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메르꾸쉐프 박사는 천두봉의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섬의 남부를 촬영했다.[29]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기후와 수목을 기록했다. 8월과 9월이 가장 날씨가 좋고,

---

29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CCC.166-16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월부터 2월까지 눈이 내렸다. 레베제프는 울릉도가 "상쾌한 좋은 공기, 담수로 인한 충분한 수자원을 활용한다면 폐결핵 환자의 치료에 실효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삼림자원이 풍부하며 24종의 삼림이 분포한다"라고 기록했다. 그런데 현재 울릉도에는 "성인 양팔 길이의 5배가 되는 '거목'을 찾을 수 없다"라며 "계곡의 움푹 파인 곳에 방치된 '거목'의 넓은 나무판자나 그루터기만 남아 있다"라고 기록했다. 레베제프는 "거목의 흔적을 통해서 일본인의 약탈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레베제프는 "기슭에서 정상까지 거목으로 덮여 있던 산들이 지금은 일본인들의 도끼에 의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인들의 불법벌목 상황을 파악했던 것이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식물, 동물, 조류 등을 기록했다.

울릉도민은 옥수수, 벼, 콩류, 감자, 양배추, 호박, 양파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에 서식하는 동물류의 물가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소 한 마리가 쉐스따꼬프(Шестаков)에서 8-10루블하는 데 비해서 울릉도에서는 60-70루블이었고, 42파운드의 돼지 한 마리가 5루블이었고, 중간 크기의 염소 한 마리가 2-3루블이었다." 또 울릉도에는 제비, 딱따구리, 참새, 비둘기, 까마귀, 갈매기 등이 서식하고 있었다.[30]

레베제프는 바다 앞에는 전복과 낙지가 비교적 풍부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류가 많지는 않다고 기록했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울릉도는 수심이 깊어서 물고기가 서식하고 번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레베제프는 섬의 앞바다에서 강치를 목격했다.[31]

레베제프는 한국인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한국인은 밭에 옥수수, 콩, 호박 등을 심었다. 또 "갈매기를 잡아 털을 제거해 껍질을 벗겨내고 소금이나 다른

30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8.

31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양념 없이 꼬챙이 구이를 했다."[32]

2. 레베제프가 바라본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립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행정구역과 거주 인원을 기록했다. 울릉도는 강원도(Кан-ундо)에 속하며 20개의 마을로 구성되었는데, 군수가 울릉도를 관리했다. 울릉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대략 2,500명이고, 560채의 가옥이 있었다.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대략 180명 정도이며, 62채의 가옥이 있었다. 일본인들은 도동에 상주하는 일본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에 많은 일본 배가 정박해 있고 (일본인들이) 활발히 벌목작업을 한다"라며 일본인들의 불법활동을 기록했다.[33]

레베제프는 조선 정부의 울릉도 이주정책과 실시 과정을 기록했다. 조선 정부는 일본인들이 울릉도를 점령할 것을 우려하여 6가구의 조선인을 파견하여 개척했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20여 년 전에 불법적으로 울릉도에 들어왔다. 조선 정부는 일본인들의 불법거주를 의식하고 울릉도 개척을 실시했다. 1902년 울릉도로 이주한 한국인은 300명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주민의 정착을 위해서 1902년까지 면세정책을 실시했지만 1903년부터 "조선 니켈화로 2달러 60센트"(일본 은화로 1달러 30센트)에 상당하는 연간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레베제프는 일본인들의 불법행위를 기록했다.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일본 집보다 크기가 조금 작고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레베제프는 일본인들의 거주 환경을 통해 그들의 불법거주 이유를 지적했다. "일본인들은 돈을 벌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으로 섬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인들의 마을에

---

32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1.

33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거주하여 다른 일본인들과의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인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일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을 착취하고 있는 상황을 포착했다.[34]

레베제프는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본인들은 잠수복을 준비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전복을 잡았다. 그들은 삼나무와 잣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일본인들은 삼림을 벌목한 다음 주로 계곡을 통해 원목을 보내고, 항구에 정박한 배에 실어 일본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일본인들은 목재를 실어 보내는 항구로 도동을 주로 이용했다.[35]

레베제프는 목재 밀반출의 주요 항구인 도동항에서 목격한 일본의 영향력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일본인은 울릉도 도동항에 자국의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중의 권력체제가 존재했다. 법률적으로 조선의 공직자가 권력을 행사하지만, 사실상 일본 경찰이 모든 일에 관여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에 상주하는 일본 경찰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여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립을 기록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에 도착하자마자 "동양의 두 민족 간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울릉도 거주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립을 포착했다.

울릉도에 도착한 러시아 탐사단은 울릉도에 임시 기지를 설치하기 위해 15명의 한국인을 고용했다. 그때 일본인들이 나타나자 고용된 한국인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히려 그 일본인들이 러시아 탐사단의 일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돌아가는 한국인들에게 러시아 탐사단에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한 일본인이 "일본 경찰관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러시아 탐사단에 제안했다.

---

34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0.

35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울릉도 거주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며 두려워했다. 레베제프는 "러시아 탐사단이 울릉도 내 일본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기록했다. 러시아 탐사단은 "섬에서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러시아인도 일본인의 도움과 관리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러시아 탐사단은 "수많은 짐을 가지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일본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며, 이는 러시아의 국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결국 러시아 탐사단은 일본인의 제안을 거절했다.[36]

레베제프는 일본인들의 불법벌목 현장을 다음과 기록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벌목작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러시아 탐사단이 울릉도를 방문하자 바로 벌목을 중단했다. 레베제프는 "나무토막과 나무줄기에 남아 있는 도끼의 흔적들만이 일본인들의 약탈행위를 입증하고 있었다"라며 일본인의 불법벌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해마다 약탈자 일본인이 증가하면서 벌목된 산림 면적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울릉도의 사용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결국 황폐한 불모지로 바뀐 산봉과 암벽만 보유하게 될 것이다"[37]라고 했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러시아 탐사단이 일본인의 도움을 거절한 지 이틀 후에 한국인이 접근해왔다. 레베제프는 한국인이 "처음에는 식량과 관련된 부탁을 들어주다가 나중에 신뢰가 구축되자 일본인들과의 삶에 관한 이야기도 털어놨다"라고 기록했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업신여겼고 무장한 일본인 2-3명이 한국인의 집에 나타나서 살림을 자기 물건처럼 다루며 폭력을 행사했다. 일본인은 한국인에게 일을 시키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대신 일본산 상품으로 대체하며 착취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인의 현물 지급

---

36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2.

37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때문에 돈이 유통되지 못한 사실을 파악했다.[38]

레베제프에 따르면 "러시아 탐사단은 일본인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으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레베제프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극단적인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일본인은 총알이 없어서 한국인과 맞서지 못했다. 일본인은 한국인의 집을 지나갈 때 한국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렸다." 그만큼 울릉도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갈등과 대립은 심각했다.[39]

IV. 나오며

까르제프 대위가 지휘한 러시아 군사 수송선 야꾸트호는 1903년 8월 31일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여 9월 2일 울릉도에 도착했다. 9월 3일 울릉도 남양포에 상륙했으며, 9월 10일 도동에서 심흥택을 면담한 직후 출항했다. 울릉도를 조사하고 심흥택을 면담한 인물은 러시아 장교 2인, 통역 1인, 수병 16명이었다. 통역관은 레베제프였고, 군의관은 메르꾸쉐프였다.

러시아 탐사단은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한국인과 일본인의 극단적인 대립을 생생히 목격했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일본인은 총알이 없어서 한국인과 맞서지 못했다. 일본인은 한국인의 집을 지나갈 때 한국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렸다. 그만큼 한국인과 일본인의 갈등과 대립은 심각했다.

레베제프는 러시아 탐사단이 한국인에게 호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들은 "가장 좋은 식량을 공급해주었고, 일을 철저히 도와주었고, 편할 때

---

38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3.

39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돈을 지불해도 된다"라며 러시아 탐사단에게 친절히 대했다. 레베제프는 한국인의 러시아 탐사단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했다. 러시아 탐사단이 출발하기 전날 한 한국인이 메르꾸쉐프를 찾아와서 자신의 아내를 치료해줄 것을 요청했다. 메르꾸쉐프는 다리에 누(瘻, 부스럼, fistula)가 생긴 환자를 진찰하고 환부를 소독해 주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에 대한 러시아의 상업적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레베제프는 "러시아 외교관이 극동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얻은 성과인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레베제프는 러시아 민간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울릉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외국인은 러시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일본인은 목재자원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레베제프는 러시아가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러시아 기업인들은 삼림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레베제프는 "일본과 중국이 목재 판매 시장이고, 러시아와 만주도 목재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한국 현지에서 저렴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레베제프는 현재 판매 시장 및 인력의 확보가 가능하지만 러시아 자본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와 틀에 박힌 생활에 안주하려는 자세 때문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레베제프는 "러시아인이 전쟁에서만 강하지 않고 평화로운 삶 속에서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터에서처럼 경제 현장에서도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40]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익은 천하의 소유라 독점하면 해로운 법이다.

러시아의 울릉도 탐사는 러시아의 경제 이권의 확장뿐만 아니라 향후 일본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러시아 해군제독 알렉세예프는 1896년 1월에 이미 한국의 주요 항구를 조사하면서 동해안의 전략적인 거점으로 울

40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С.173-17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릉도를 주목했다.[41] 더구나 알렉세예프는 1903년 9월 20일 러일전쟁 관련 군사적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만약 일본이 제물포, 진남포 혹은 압록강 하구로 상륙할 경우에는 해안에서 진영을 펼치는 상륙부대에 대해 공개적인 무력시위를 개시한다."[42] 러시아 해군은 일본이 동해를 통한 한국 상륙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했고, 따라서 울릉도가 러시아의 중요한 해상거점이 될 것이라고 인식했다.

1896년 러시아는 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획득하고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불법적인 벌목에 항의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해군은 울릉도의 삼림과 지형을 상세히 조사하고, 기뢰 설치 장소까지 파악했다. 이것은 야꾸트호를 비롯한 러시아 함정이 러일전쟁을 예상하고 동해에서 일본과의 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41 РГАВМФ. Ф.417. Оп.1. Д.1340. ЛЛ.375–392, 1896. 1. 21.

42 ГАРФ. ф.543. Оп.1. Д.186. ЛЛ.1–14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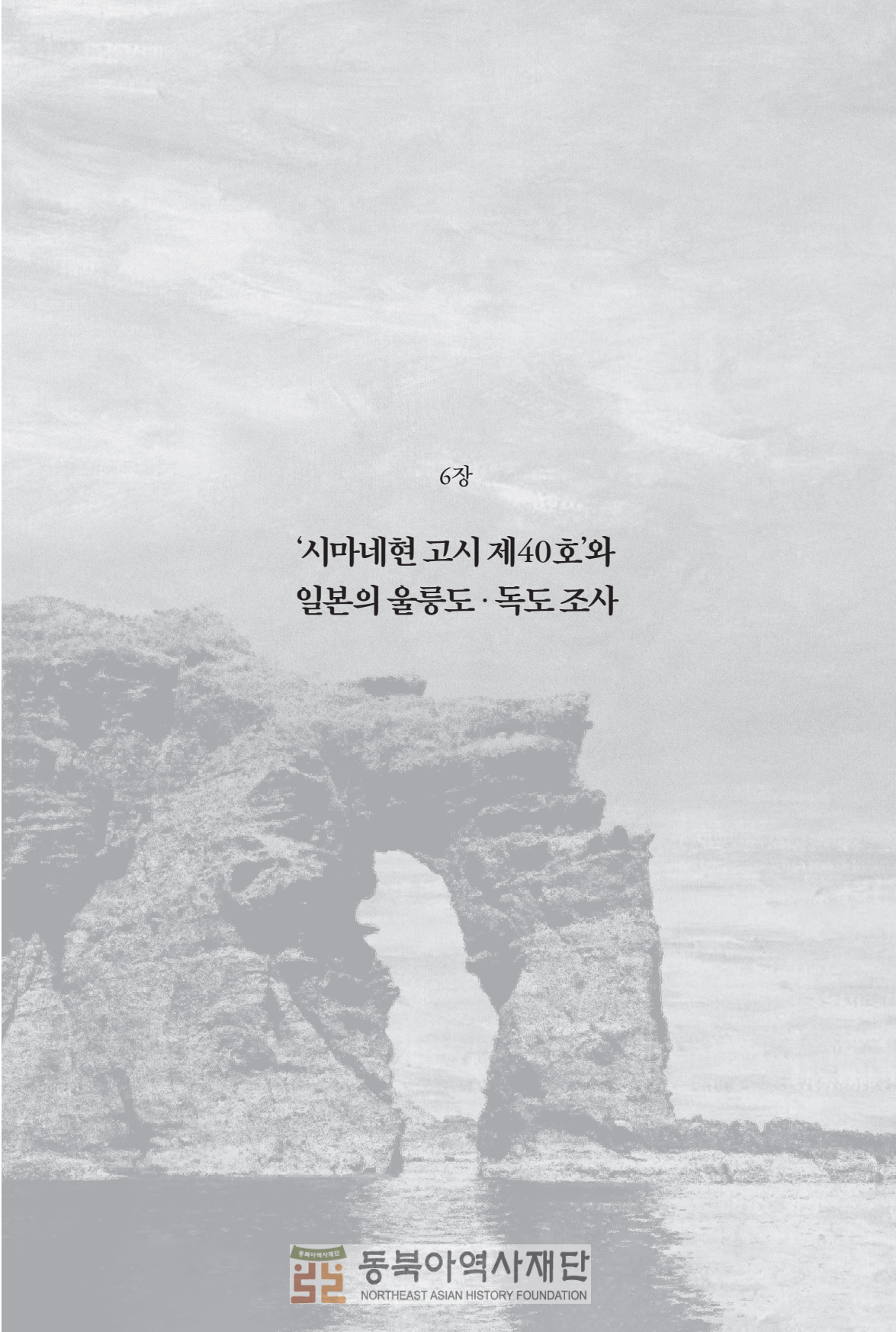

6장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일본의 울릉도·독도 조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 정부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의 과정 및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고시의 유무

Ⅰ. 들어가며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둘러싼 일본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에 대해서 현재까지 한일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본은 1905년 전후 독도 편입과 관리를, 한국은 러일전쟁 전후 독도를 포함한 일본의 한국 침략 과정을 주목했다.

일찍이 호리(堀和生)는 오쿠하라(奥原碧雲)의 『죽도급울릉도(竹島及鬱陵島)』 중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진술 및 『사업경영개요(事業經營概要)』 문서를 발굴하여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과정을 추적했다. 호리에 따르면 첫째, '죽도' 영토편입에 내무성 관료가 명확히 반대했고, 둘째, 마키 나오마사(牧朴眞),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 야마자 엔지로(山座圓次郎) 등이 독도의 영토편입을 몰고 간 관료였고, 셋째, 영토편입의 이론인 '무주지 선점'이 적용되었는데, 조선 영토에 대한 군사점령이 '조선병합'의 전제였다는 점에서 보면, "죽도 영토편입이 그 시작"이었다.[1]

다케우치 다케시(竹內猛)와 김수희는 호리의 연구에 기초하여 나카이와 일본 관

1 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1985, 117-121쪽(堀和生, 「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 영토편입」,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나남, 2008, 119-123쪽).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죽도(竹島), 송도(松島)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필자는 예외적으로 일본 학자와 일본 자료가 죽도(竹島)라고 표기했을 경우에는 '다케시마'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료의 결탁을 보강했다. 다케우치와 김수희에 따르면 "나카이는 한국 영토로 믿었다→마키 수산국장을 만났으나 영토 소속을 확인하도록 했다→기모쓰키 수로부장은 일본 영토 편입원을 제출하도록 했다"라고 기술했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는 나카이가 '한국 영토로 믿었다'는 근거가 없다. 단지 마키 농상무성 수산국장은 찬성했고 수로부에 가서 영토 소속을 확인하도록 한 사실이 기록되었다. 수로부장 기모쓰키는 '확고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나카이에게 '본토로부터 10리 가깝기 때문에' 일본 영토로 소속을 결정하라고 사주했다.[2]

죽도자료실

한철호는 일본 수로부가 독도 강점 이전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한철호에 따르면 기모쓰키는 해군부 수로부장으로 약 16년간 재직하면서 독도와 오키를 비롯한 도서의 영역 혹은 소속 여부, 섬의 위치와 거리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기모쓰키는 일본인이 이미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 당연히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고 사주했

2 다케우치 다케시(竹內猛),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선인, 2013, 174–177쪽; 김수희,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와 독도 강점」, 『독도연구』 17, 2014, 77쪽. 최장근은 '죽도문제연구회'가 발굴한 '죽도 경영자 나카이 요사부로 씨 입지전'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조선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증거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 영토로서의 권원이라고 강변한다고 주장했다(崔長根, 「竹島経営者中井養三郎氏立志傳의 해석오류에 대한 고찰: 죽도문제연구회의 『최종보고서』비판」, 『일어일문학』 40, 2008, 293–294쪽). 김화경은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에서 러일전쟁의 연관성을 주목했고, 김영은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키를 중심으로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을 살펴보았다(김화경, 「동해 해전과 독도의 전략적 가치」, 『대구사학』 103, 2011, 171–173쪽; 김영,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에 관한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23, 2017, 194–19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던 인물이다.[3]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과정을 중요하게 파악했지만 독자적인 주제로 다루지 못했다. 더구나 기존 연구는 1905년 전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과정에서 생산된 시마네현 어업사료 및 일본의 공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시마네현 어업사료 등의 일본 자료에 기초한 1905년 전후 일본의 독도 어업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진행되었다.

허영란은 나카이 요자부로를 중심으로 하는 독도 어업의 전개 과정을 포괄적으로 연구했다. 허영란에 따르면 1903년 이전까지 독도에서의 어업행위는 울릉도를 거점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1905–1910년 사이 일본의 강치 남획으로 인해 어장이 피폐해지면서, 1920년 이후에는 어업행위가 울릉도 거주민에게 다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4] 허영란에 따르면 오키도사(隱岐島司)는 1904년 11월 독도를 일본의 신영토로 편입한 다음 오키도(隱岐島) 소관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면서, 그 이름으로는 '죽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5]

김수희는 나카이 요자부로의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 설립 전후의 연구를 시마네현 어업사료에 기초했다. 김수희는 나카이의 1900년대 초 잠수기 어업을 소개했다. 또한 제국주의자 나카이가 작성한 문서에 기초하여 1903년과 1904년의 '죽도' 어업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했다.[6] 유미림은 1903–1905년 나카이의 강치 어업에 대한 개

---

3 한철호, 「일본 수로부의 오키 측량과 독도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65, 2013, 32–33쪽.

4 허영란,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13, 2006, 253–254쪽.

5 허영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의 정부기록물에 나타난 울릉도 독도 인식」, 『독도를 둘러싼 한일양국의 현황과 과제 학술회의』, 2013, 15–19쪽. 오키군(隱崎郡)은 원래 스키군(周吉郡), 오치군(穩地郡), 치부리군(知夫郡), 아마군(海士郡) 등 4개 군으로 구성되었는데, 1904년 오치군 고카무라(五箇村)가 성립했다. 오치군은 고카무라와 쓰마무라촌(都万村)으로 구성되었다(송휘영, 『일본 향토사료 속의 독도』, 선인, 2014, 141쪽).

6 김수희, 「나카이 요자부로와 독도어업」, 『인문연구』 58, 2010, 133–136·15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략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유미림은 독도 강치에 대한 세금을 일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품목이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7]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1903–1905년 나카이의 '죽도' 조사 내용 및 '죽도' 어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필자는 1903–1905년 나카이의 독도 조사 및 '죽도' 어업, 독도 영토편입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개입 등을 전체적으로 추적할 것이다. 이 논문은 나카이 요자부로의 '죽도' 어업의 과정과 결과를 어업에 함께 참여한 가토 주조(加藤重造)와 나카토세 니스케(中渡瀬仁助)를 통해서 규명할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영토편입 과정 등을 시마네현 어업사료 및 일본 정부의 공문서에 기초하여 파악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사본(寫本)의 문제와 '고시'의 유무(有無)를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Ⅱ. 나카이 요자부로의 '죽도' 어업과 영토편입 요청

1. 나카이 요자부로의 '죽도' 어업 시작과 강치 어업 독점

수산업자 나카이 요자부로[8]는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 이전 독도에서의 어업활동

---

7 유미림,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3, 264–267쪽.

8 나카이 요이치(中井養一)는 1953년 7월 10일 자신의 아버지 나카이 요자부로의 이력서를 마쓰에시(松江市) 기타호리초(北堀町) 93번지 자신의 집에서 구술했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1864년 1월 27일 태어났다. 그는 1900년 유도강어업시험(鮪渡綱漁業試驗)에 종사했고, 1903년 강치 어업(海驢漁業)에 종사했다. 1905년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사원이 되었다. 1934년 4월 26일 사망했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겐지(元治) 원년(1864) 1월 27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메이지 33년(1900) 유도강어업시험에 종사했습니다. 그는 메이지 36년(1903) 이후 강치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는 메이지 37년(1904) 강치 어장 '리앙코르도' 열암을 일본 영토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내무, 외무, 농상무 3대신에게 출원하였습니다. 그는 메이지 38년 '리앙코르도' 열암을 일본 영토에 귀속시켰습니다. 그는 '죽도(竹島)'로 개명시켰고, 오키도사 관할에 두었습니다. 그해 '죽도어렵합자회사'를 조직하고 대표사원이 되었습니다. 쇼와 9년(1934) 4월 26일 사망했습니다."(アジア局2課, 昭和 28年(1953) 8月, 「(秘) 竹島漁業の變遷 中井養一 口述書」, 『昭和28年度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 44쪽(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기를 1903–1904년이라고 주장했다. 나카이는 1903년 5월 독도에 도착하여 강치를 발견하고 포획했는데, 1903년 귀항할 때 어업자 이구치 류타(井口龍太)[9] 등을 목격했다고 기록했다.

나카이는 1903년 5월 6일 사이고(西郷) 항구를 출항했고, 5월 16일 '죽도(竹島)'에 도착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1903년 5월 16일 '죽도'에 도착했을 때 다른 어렵자는 한 명도 없었다. 강치는 전체 해안에 넘쳐나서 포획하기 매우 용이했다. 어렵자들은 기뻐서 날뛰었고, 적당한 곳에 어사(漁舍)를 만들어 각종 어로 도구로 강치를 포획했고, 포획한 강치들을 제품으로 만드는 다양한 연구를 시도했다.

나카이는 사냥을 통해서 강치를 포획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강치가 '죽도'에 상륙하면, 육상에서 총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했다. 하지만 '죽도'는 사면이 깎아지른 절벽이라 돌아다니면서 강치를 잡을 수가 없었다. 어선(獵船)을 바위 뒤쪽에 대놓고 사수가 상륙하여 바위 뒤에서 몰래 접근한 다음 머리를 겨냥하여 사격했다.

나카이는 강치 어렵의 모선(母船)이 물건을 가득 싣고 귀항하려고 할 때, 오치군 고카촌 거주 이시바시 쇼타로(石橋松太郎)에 소속된 후루카와 고타(古川幸太)와 이구치 류타 등이 인부들을 데리고 '죽도'에 도착하는 것을 목격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그들은 집 한 채를 마련해서 강치 포획에 종사했다. 1903년 어렵자는 나카이 이외에 이시바시조(石橋組)밖에 없었으며, 각자 모선 1척과 어선(獵船) 1척에 의존하여 강치를 포획했다.[10] 나카이는 1903년 자신이 직접 강치 어업을 시작했고, 소수의 일본인만 독도에서 강치 어업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1904년 4–5월 독도에서 일본 어부들이 강치를 포획하는 과정

---

9 시마네현 문서에는 이구치 류타(井口龍太)로 적혀 있지만, 최근 발굴된 위패에 따르면 이구치 류타로(井口龍太郎)로 보도되었다(『山陰新聞』, 2018. 7. 3). 그럼에도 필자는 당시 시마네현 공문서에 기록된 이름인 이구치 류타를 사용한다.

10 島根縣隱岐島廳, 「明治 36年 調査 營業人 中井養三郎」, 『竹島貸下 · 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상세히 기록했다. 나카이는 이시바시 쇼타로와 이구치 류타 등이 강치 포획에 종사했는데, 일본인 어부 5개 조가 독도에서 강치 어업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나카이는 1904년 4월 1일 사이고 항구를 출발하여, 3일 '죽도(竹島)'에 도착했고, 10일 일단 귀항했다. 4월 28일 또다시 사이고 항구를 출발했고, 5월 1일 '죽도'에 도착했다. 나카이는 잠시 귀항한 이유에 대해 '죽도'에 도착했을 때 강치가 모여드는 것을 방해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강치 포획을 보류하고 어사만 손질한 뒤 귀국했다고 기록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1904년 4월 28일 다시 도항했을때 오치군 고카촌 오아자 구메 거주 이시바시 쇼타로의 작업조, 스키군 나카촌 오아자 미나토 거주 이구치 류타의 작업조가 있었다. 이시바시와 이구치의 작업조는 강치를 포획했는데, 나카이 작업조는 더 많은 강치를 포획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그 밖에 1904년 어렵자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야마구치현의 이와사키(岩崎)는 울릉도에서 한인을 데리고 포획에 나섰고, 오아자 니시마치의 가토 주조(加藤重造)는 한창때가 지나서 사이고 항구에서 '죽도'에 도항했다. 이와사키와 이구치 2조는 아직 어기에 이르지 못해 영업을 중지했고, 가토 조는 절정기가 지나서 영업을 개시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1904년 강치 포획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렵법과 제조법에서 다소 경험을 쌓았으며 판로도 확보했다. 나카이, 이시바시, 이구치 등 3개 조는 시장 가격이 크게 올라서 조금 이익을 올렸다. 가토와 이와사키의 작업조는 손실을 입었다.[11]

나카이에 따르면 일본인은 울릉도 주민을 동원하여 독도 어업을 실행했다. 이는 한국인도 울릉도 강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독도의 어업적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

11 島根縣隱岐島廳,「明治 37年 調査 營業人 中井養三郎」,『竹島貸下 · 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나카이와 함께 '죽도'에서 어업에 종사한 나카토세 니스케의 증언에 따르면 강치 어업이 성공적이었다는 나카이의 보고서는 거짓이었다. 나카토세 니스케(73세)는 1953년 7월 10일 독도 어업에 관해 구술했다. 1903년 무렵 나카이 요자부로 등의 5개 조가 경쟁적으로 강치 어업에 종사하여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 어부들끼리 서로 경쟁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나카토세에 따르면 "1903년 무렵 이소무라(磯村) 일행, 나카이(中井養三郎) 일행, 가토 주조 일행, 이구치 류타 일행, 고카촌 구메 1팀, 총 5팀이 경쟁하며 '죽도'의 강치 어업에 종사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여 강치를 잘 잡을 수 없었다."[12]

나카이는 독도에서 강치를 발견한 후 포획을 하면서, 독도의 일본 영토편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나카이에 따르면 독도는 절해에 우뚝 솟아 있는 '작은 바위섬'에 지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방치해두었다. 나카이는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구별했고 외부 모습을 상세하게 관찰하여 독도의 위치, 수목이 없는 모래와 자갈, 물의 존재 등을 기록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리양코'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독도를 '무인도'로 판단했고, 동도의 '고인물'의 존재를 파악했다는 사실이다.

"오키열도 서북 85리, 조선 울릉도 동남 55리 '리양코'라 불리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둘레가 약 15정(町)이나 되는 갑(동도: 필자)과 을(서도: 필자) 2개의 바위섬이 서로 마주하고 있어서, 둘 사이에 하나의 해협을 이루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수천 개의 암초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으며, 중앙 2개 섬은 사면이 바위를 깎아놓은 듯 절벽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 정상에는 얼마 안 되는 토양을 덮고 있는 잡초가 자라고 있을 뿐 섬 전체에 수목이 한 그루도 없습니다. 해변의 만이 굽어지는 곳은 모래와 자갈이

12 アジア局2課, 昭和 28年(1953) 8月, 「(秘) 竹島漁業の變遷, 橋岡忠重 口述書」, 『昭和28年度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 39쪽(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廣報文書課)).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기저기 해변을 이루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만한 곳은 갑의 해협에 접하고 있는 일부에 겨우 한 곳 있을 뿐입니다. 갑(동도: 필자)의 정상 움푹 패어 있는 곳에는 고인물이 있습니다. 담갈색을 띤 을에는 염분을 조금 머금은 맑고 찬 물이 가파른 암석에서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나카이는 독도의 항로 위치, 선박 연결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선박은 해협을 중심으로 바람 부는 방향을 봐서 좌우로 피해 정박하면 안전을 보전할 수 있었다. 독도는 오키열도와 울릉도를 거쳐 조선의 강원과 함경 지방으로 가는 선박의 항로에 위치했다. 만일 독도를 경영하여 사람이 상주한다면, 연료와 식음료 등이 부족할 때 선박이 기항하여 보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 나카이는 일본이 강원과 함경 지방에서 어업과 무역의 이익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독도 경영이 앞으로 매우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나카이는 독도에서 강치 포획 과정과 강치의 경제적 유용성에 대해 기록했다. 나카이는 울릉도를 왕복하던 길에 우연히 독도에 들러 정박하면서 강치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카이는 강치를 내버려두는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강치 포획에 관한 계획을 세웠다.

나카이는 1903년 자본을 투입하여 어사를 짓고 인부를 데려가서 사냥 도구를 갖추어 강치 포획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멀리 떨어져 있어 오가기가 쉽지 않은 '무인도(독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설비가 부족하고 사냥 방법과 제조 방법이 분명하지 않았다. 또 용도와 판로가 확실하지 않아 허다한 자본을 허비했다.

나카이는 1905년 사냥 방법과 제조 방법을 개발하고, 판로도 개척했다. 강치 가죽은 소금에 절여 우피(牛皮)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신선한 지방에서 뽑아낸 강치 기름은 품질과 가격 모두 고래 기름에 뒤지지 않았다. 기름 찌꺼기는 수분을 빼내면 아교 원료가 되었다. 살코기는 가루를 내어 뼈와 함께 비료로 만들 수도 있었다.

나카이는 독도 주변 어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죽도'는 동해의 요충에 해당하는 섬으로, 여러 가지 어족이 몰려와 서식하지 않을 리 없었다. 이 섬에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강치 어업을 계속한다면 어류 탐사 기회를 얻어 앞으로 더욱 유리하고 유망한 사업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 섬의 경영에 필요한 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설비를 완전히 갖추면 강치 포획은 전도가 유망한 사업이라고 보았다.

나카이는 독도의 소속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속이 확정된 이후에 독도 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 섬은 영토의 소속이 정해지지 않아 훗날 다른 나라가 이의(故障)를 제기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다면) 이 섬의 경영에 물자와 힘을 쏟아 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카이는 강치의 서식 기간을 기록하면서 강치 남획을 규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카이는 강치의 멸종 가능성을 내세우며 강치 포획을 독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죽도'의 강치는 보통 때는 서식하지 않고 4-5월에 몰려와서 번식을 마치고 7-8월에 흩어져 떠나갔다. 강치 포획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번식을 적당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금방 달아나버리고 절멸할 수도 있었다. 강치의 포획 제한과 보호는 경쟁하는 동안에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 '죽도' 경영은 영토 소속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강치 포획의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카이는 독도의 영토편입과 강치 남획 금지의 필요성을 연관시켰다. 하지만 실제 강치의 남획은 영토편입과 달리 일본 어부들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카이는 강치 남획 방지를 내세워 강치 어업의 독점을 청원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포획할 수 있는 강치의 크기와 숫자 등을 제한하고, 암컷과 새끼는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몇 군데는 수렵 금지 장소로 정해야 하고, 강치에게 해를 끼치는 범고래와 상어 등을 포획해야 한다고 했다. 포획에 관한 여러 가지 정교한 기계를 갖추고 장치를 만드는 설비가 완비되어야 한다. 어구를 갖추고 다른 수족을 잡는 일도 시도해야 한다.

나카이는 영토를 확장하려는 제국주의와 자신의 애국심을 동일한 것으로 연결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키면서, 독도 어업을 독점하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나카이는 "사업의 안전과 이익 원천의 영속을 확보하여 이 섬의 경영을 끝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이 섬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고,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 대여해달라"라고 청원했다.

나카이는 '리양코'섬 약도를 첨부하면서 독도의 위치와 지도를 제시했다. "동경 131도 55분, 북위 37도 15분. 범례: 강치 양식장, 어사(漁舍), 저수(瀦水, 웅덩이), 적수(滴水, 빗방울), 조약돌, 고깃배 정박장." 나카이는 독도에서 물의 존재를 웅덩이와 빗방울로 보았다. 기본적으로 독도는 웅덩이, 빗방울, 물골 등으로 물의 존재가 확인되었다.[13]

나카이는 독도를 '리양코'로 부르면서, 영토편입 제안의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독도는 영토 소속이 정해지지 않았다. 둘째, 다른 나라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이의(故障)를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일본 영토편입은 독도 경영을 끝까지 보전하는 데 필요하다. 나카이는 기본적으로 독도를 '무인도'로 설정하고 독도 편입의 절차적인 문제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2. 나카이 요자부로와 가토 주조의 '죽도' 어업의 방안과 실행

나카이 요자부로는 1904년 9월 29일 별지로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リヤンコ島領土編入幷ニ貸下願)'을 작성했다.

나카이는 강치를 보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초기 자본금 1,500엔을 이미 사업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나카이는 이익을 영구히 보전하기 위해 '죽도'의 강치를 보호하고 포획을 제한하며, 설비를 완전하게 갖추어 포획물을 충분히 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3 中井養三郎, 明治 37年(1904) 9月 29日, 「庶1073號 別紙 リヤンコ島領土編入幷ニ貸下願」,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나카이는 강치를 보호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크기 8척 이상의 수컷이 아니면 절대 포획하지 않는다. 한 철에 500마리 이상을 포획하지 않는다. 총을 쏘는 사수 1명과 엽정 1척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보호 구역을 정하여 그 안에서는 강치 포획을 금지한다. 해로운 범고래와 상어 등은 쫓아내거나 포획한다. 해조류는 모두 베지 않는다. 포획 이외에 강치를 놀라게 하고 번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철저히 기피한다. 보호 구역은 몇 년씩 간격을 두어 섬 전체를 돌아가면서 옮긴다."

나카이는 독도 강치의 서식과 포획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죽도'는 매우 많은 강치가 군집하고 있으며, 해변에는 강치로 뒤덮여 땅이 보이지 않았고, 강치의 숫자가 몇 천에서 몇 만을 헤아리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1904년 처음에는 3척에서 6척의 배가 사용되었는데, 총 포획 숫자는 대략 수컷 850마리, 암컷 900마리, 새끼 천 마리 등이었다.

나카이는 독도에서 사냥한 강치의 상업적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강치의 지방과 살코기와 뼈 등에서는 품질 좋은 기름과 비료를 채취할 수 있었다. 강치 가죽은 소금을 뿌려놓기만 해도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먼 곳까지 수송하여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기름과 비료를 제조하려면 설비가 필요했다.

나카이는 독도의 위치와 명칭을 『일본수로지』에 기초해서 기록했다. 이것은 나카이가 해군성의 『일본수로지』까지 입수해 독도를 파악하는 치밀함을 보여준다.

"이 섬은 동경 131도 55분 북위 37도 105분에 있습니다. 일본 오키열도에서 서북 85해리, 조선 울릉도에서 동남 55해리로 울릉도와 가깝습니다. 프랑스 선박 리양코르도(리앙쿠르, Liancourt)가 1848년 처음 발견하여 그 배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러시아 전함 팔라다(Паллада)호는 1854년 (동도와 서도를) '메넬라이와 올리부차'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국 함대 호네트(Hornet)는 1855년 (독도를) 탐험하고 조사하여 '호네트' 열암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호네트 함장 포시스(C.C. Forrsyth)에 따르면, 이 열암은 북위 37도 104분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하는 2개의 암초이고, 새똥이 늘 섬 위에 퇴적되어 섬 색깔이 흰색이었습니다. 북서, 서동남, 동쪽의 길이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약 1리입니다. 서쪽 섬은 높이가 약 410척(呎)입니다. 동쪽 섬은 약간 낮고 평평한 정상이 있습니다."

나카이는 1903년 5월 독도에서 강치를 포획하기 위해 인부를 데려와 어사를 지었다고 주장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그 후 독도에서 처음 구조물을 만들고 국기를 달았던 인물은 일본군 제4군 예비 중사(軍曹) 고하라 이와조(小原岩藏)가 인솔한 인부였다.[14] 나카이가 1904년 독도에서 함께 작업한 인물은 바로 일본 육군이었다.

그런데 나카이와 함께 독도 어업에 참가했던 가토 주조는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후 1905년 4월 13일 '죽도대여청원(竹島貸與請願)'을 시마네현 지사(知事) 마쓰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에게 독자적으로 보냈다. 가토 주조는 "죽도가 본래 리양코섬으로 속칭되었다"라며 '리양코'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1904-1905년 강치 어업 활동을 기록했다.[15]

가토는 1904년 그물과 배 등 강치 포획 준비를 마치고 출항했다. 하지만 바람과 파도 때문에 '죽도'에 닿지 못하고 귀항을 시도했다. 그런데 역풍을 맞아 니시마치(西町) 북쪽 수십 리까지 떠내려갔고, 겨우 돗토리현 슈요국(周陽國)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다시 날씨를 지켜보다가 '죽도'에 도항하여 강치 사업에 종사했다. 왕래가 순조롭지 못해 여러 날을 허비하고, 어업 기간을 놓치면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가토는 1905년에 이미 고정 자본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기에 맞춰 서둘러 도항했지만, 지난해의 손실을 만회하지 못했다.

가토는 독도의 규모와 강치 보호를 주장하면서 3년 동안 '죽도'를 대여해줄 것을 주장했다. 가토는 '죽도'가 오키국의 부속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는데, 강치 포획

---

14 中井養三郎, 明治 37年(1904) 9月 29日, 「庶1073號 別紙 リヤンコ島領土編入幷ニ貸下願」,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나카이는 1903년 강치잡이를 위해 독도를 방문했고, 그 후 일본 육군과 함께 다시 독도를 방문했는데, 그 연도가 1904년이었다. 일본군 제4군은 1904년 6월 24일 노즈 미치쓰라(野津道貫) 대장을 중심으로 창설되었고, 포츠머스조약 이후 1906년 1월 17일에 해산되었다.

15 加藤重造→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 38年(1905) 4月 13日, 「竹島貸與請願」, 『竹島貸下 · 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토에 따르면 강치를 포획할 때 법규에 따라 영업해야 하는데 1905년 갑자기 영업을 청원하는 사람이 늘었다. '죽도'는 면적이 비좁아 다수가 출어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상당한 정도로 보호를 해서 포획을 제한하지 않으면, 도저히 어업 이익의 오랜 지속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상당한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고, 제재를 철저히 지켜야 하고, 장래 영원히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6]

시마네현은 1950년대 가토에 대한 독도 어업 관련 조사서를 작성했다.

시마네현의 조사서에 따르면 스키군 사이고정 오아자 니시마치에 거주하는 가토 주조는 1904년 7월 12일 '죽도'에 도항했다. 가토는 1904년 6월 16일 그물을 포함한 포획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출항했지만 풍파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렸다가 7월 12일 '죽도'에 도착했다. '죽도'에 어사를 짓고 포획에 종사했으나, 이미 어기를 놓쳐 목표치만큼 포획을 하지 못했고, 8월 22일에 귀항했다.[17] 일본에서 독도를 가는 데도 날씨는 매우 중요했다. 가토는 러일전쟁 기간에 독도 어업에 종사했는데, 러일전쟁 전후 일본 어부들은 강치 어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나카이는 해군성의 『일본수로지』까지 입수할 정도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더구나 나카이가 1904년 독도에서 함께 작업한 인물은 바로 일본 육군이었다. 나카이는 영토를 확장하려는 제국주의와 자신의 애국심을 동일한 것으로 연결시켰다. 나카이는 기본적으로 독도를 '무인도'로 설정하고 독도 편입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까지 파악했다.

---

16 加藤重造—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 38年(1905) 4月 13日, 「竹島貸與請願」, 『竹島貸下 · 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17 島根縣隱岐島廳, 「調査書 加藤重造」, 『竹島貸下 · 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일본 정부 관료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 개입

1. 일본 정부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 과정

시마네현 내무부장(內務部長) 서기관(書記官) 호리 신지(堀信次)는 1904년 11월 15일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편입 주장에 대해서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東文輔)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소속을 결정할 경우 오키(隱岐) 도청 소관으로 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도서의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잘 헤아려서 주길 바란다."[18]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는 1904년 11월 30일 호리 신지의 조회 내용에 대한 회답을 보냈다. 히가시는 독도 편입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일본 영토에 편입한 뒤 오키섬 소관으로 정해지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명칭은 '죽도'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19]

시마네현과 오키도의 관리는 독도의 불법 영토편입 과정에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문서를 주고받았다. 무엇보다도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는 독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죽도'를 작명할 정도로 깊숙이 개입했다. '죽도' 명칭 사용은 바로 나카이의 편입 요청에 따른 히가시의 결정이었다.

1905년 1월 10일 내무대신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는 소위 '비을(秘乙) 제337호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내각 총리대신 가쓰라 다로(桂太郎)에게 상신했다. 주요 내용은 수산업자 나카이 요자부로의 청원을 비롯하여, 오키도에서 서북 85리(浬)에 위치한 '무인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여 '죽도'로 이름 붙이고, 시마네현 오

---

18 島根縣 內務部長 書記官 堀信次→隱岐島司 東文輔, 明治 37年(1904) 11月 15日, 「庶1073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이 문서에 대한 회답은 '乙庶 152호'이다.

19 隱岐島司 東文輔→島根縣 內務部長 書記官 堀信次, 明治 37年(1904) 11月 30日, 「乙庶152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키도사의 소관으로 하자고 청원한 것이었다(內務省請議書 1905. 1. 10).[20]

일본 내각은 1905년 1월 28일 내무성의 요청(請議)을 각의(閣議)에서 결정(決定文)했다.

"별지(別紙) 내무대신이 청의(請議)한 '무인도의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해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도에서 서북쪽으로 85리(浬)에 위치한 무인도는 타국(他國)에서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形跡)이 없고, 메이지 36년(1903) 일본인 나카이 요자부로가 어사(漁舍)를 짓고, 인부(人夫)를 이동시키고, 사냥 도구를 갖추어 강치(海驢)잡이에 착수하고, 이번에 영토편입 및 대하(貸下)를 제출했는데, 이번 기회에 소속 및 도명(島名)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도(該島)를 '죽도(竹島)'라고 명명하고, 지금부터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하고자 한다. 이에 심사한바, 메이지 36년 이래 나카이 요자부로는 해도(該島)에 이주해 어업에 종사한 일이 관계 서류에 의해 명백하므로, 국제법상 점령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이를 일본(本邦)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삼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청의(請議)대로 각의결정(閣議決定)이 성립되었음

---

20 明治 38年, 『公文類聚』, 第二十九編, 卷一(國立公文書館所藏: http://www.archives.go.jp). 첫째, 태정류전(太政類典)은 태정관 기록과에서, 태정관일기·일지, 공문록 등에서 전례조규(典例條規)에 해당하는 문서를 채록하여 19개 부문으로 분류·편찬한 것이다. 연대별로 편찬되어 있는데 1867년부터 1881년까지 모두 911책이다. 둘째, 공문류취(公文類聚)는 태정류전의 명칭이 1882년부터 바뀐 것이다. 이때 분류항목도 바뀌었다. 분류항목은 1891년에 다시 한 번 바뀌어, 1945년까지 유지되었다. 편집 방식은 1886년에 크게 바뀌었다. 이전에는 여러 공문서를 등사하여 편찬했으나, 1886년부터는 원본을 직접 수록하고 등사한 것은 부본으로 편찬하게 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전례조규를 채록한 반면, 이후에는 ① 법률규칙, ② 법률규칙의 설명서, ③ 법률의 정신에 따라 처분·시행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공문서를 수록했다. 모두 2,957책이 있었다. 셋째, 공문록(公文錄)은 1868년부터 1885년까지 태정관에서 수수(收受)한 각 성청의 품청(稟請), 상신(上申), 진달(進達) 등 일체의 공문서를 각 성청별, 월별로 편집한 것이다. 정본은 모두 4,102책이다. 넷째, 공문잡찬(公文雜纂)은 1886년부터 1945년까지, 예규에 따라 시행된 사항 및 임시로 시행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공문서 원본을 각 부서별로 수록하여 편찬한 자료다. 공문서들은 연도별로 구분된 다음, 그 아래 각 성청별로 구분되어 있다. 성청별로 분류된 문서는 다시 세목이 분류되어 수록되었다. 모두 3,082책이 있었다. 일본의 내각제도가 수립된 것은 1885년 12월인데, 1885년까지는 거의 모든 중요 공문서가 공문록에 수록되었으며, 그중 전례조규에 해당하는 사항이 태정류전(공문류취)에 등사되었다. 1886년부터는 법률 관련 사항은 공문류취에, 예규 관련 사항은 공문잡찬에 수록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일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1권, 2002,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인정한다."(內閣決定文 1905. 1. 28)[21]

일본 각의는 독도의 위치, 나카이의 강치 어업, 나카이의 영토편입과 임대 청원, '죽도'의 명칭 부여, 오키도사의 소속 등을 심의했다. 그 결과 일본 각의는 나카이의 어업 종사 인정, 국제법상의 점령 사실 등을 근거로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인정했다. 이는 전근대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에서의 어업활동을 부정하고, 근대의 '점령'이라는 국제법적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일본 각의의 독도 불법 편입 결정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각의는 독도의 지명을 '죽도(竹島)'로 확정했다. 둘째, 각의는 '죽도'를 무인도로 규정하면서 타국이 점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셋째, 1903년부터 일본인 나카이 요자부로가 '죽도'에서 강치 어업에 종사했다. 넷째, 각의는 '죽도'가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에 기초하여 일본 소속으로 편입을 결정했다.

일본 내무성 내무대신 요시카와 아키마사는 2월 15일 훈령(訓令) 제87호로 각의 결정을 관내에 고시하도록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다케요시에게 지시했다. 그 내용은 '죽도'의 위치, '죽도'라는 명칭, '죽도'의 오키섬 소속, 관내 고시 등을 포함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본은 '관내 고시' 관련 원본을 소장하고 있지 않다.

"훈 제87호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분, 오키섬을 사이에 두고 서북 85리(浬)에 있는 도서(島嶼)를 '죽도(竹島)'라고 칭하고, 이제부터 이 섬의 소속은 오키섬 지방관의 소관으로 한다. 이 뜻을 관내에 고시해야 한다."(內務省訓令 1905. 2. 15)[22]

---

21 明治 38年, 『公文類聚』, 第二十九編, 卷一(國立公文書館所藏: http://www.archives.go.jp).

22 쿠보이 노리오, 『독도의 진실』, 부산: 부산민족학교, 2017, 244쪽; 국회도서관, 『일본 자료로 보는 독도』, 국회도서관, 2013, 56쪽. 마쓰나가 다케요시(1869-1936)는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출신으로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04년 11월 17일부터 1908년 3월 27일까지 시마네현 지사로 근무했다. 초대 평안남도 장관(1910. 10. 1-1916. 3. 28), 경기도 장관(1916. 3. 28-1919. 9. 26), 조선총독부 중추원 서기관장 겸 사무관, 총독 관방 외사과장 등을 역임했다(국회도서관, 『일본 자료로 보는 독도』, 국회도서관, 2013, 5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런데 나카이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업경영개요(事業經營槪要)』에서 1905년 2월 전후 일본 정부 관료의 독도 편입 과정에 대한 개입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그는 1909년 치시마(千島) 열도(列島)의 해마도(海馬島)의 강치 어업권 허가신청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력서」 및 『사업경영개요』를 작성했는데, 두 문서는 시마네현의 총무과 소장 『행정제관청왕복잡서류(行政諸官廳往復雜書類)』에 포함되었다.

나카이는 독도의 불법 영토편입에 일본 농상무성 수산국장인 마키 나오마사, 일본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키 가네유키,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기록했다.

나카이는 독도의 불법 영토편입 과정을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기록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이자 한국의 영토, 독도에 대한 통감부와의 협의 등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나카이가 울릉도의 부속섬인 독도라는 지리적 개념, 한국의 영토라는 영역적 개념 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나는) '죽도'가 울릉도에 부속하여 한국의 영토(所領)라는 생각을 갖고, 장차 통감부에 가서 할 일이 있다고 보았다. 상경(上京)해서 여러 가지를 획책하던 중 당시 수산국장인 마키 나오마사의 주의로 말미암아 반드시 한국령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문이 들었다. 그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 분주한 끝에 당시 수로부장 기모쓰키의 단정(短艇)에 힘입어, '죽도'가 완전히 무소속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경영상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진술(具陳)하여 '죽도'를 일본(本邦) 영토에 편입하고, 아울러 대여해줄 것을 내무·외무·농상무 3대신에게 출원하는 원서를 내무성에 제출했다. 내무성 당국자에 따르면 '러일전쟁 시기 한국령의 의심이 있는 일개 불모의 암초를, 눈을 부릅뜨는(環視) 여러 외국에게, 일본이 한국 병탄(倂呑)의 야심이 있다는 의혹을 키울 것이다. 이익이 지극히 적은 데 반하여 상황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므로 아무리 설득해도 출원이 끝내 각하될 형편이었다. 이렇게 좌절할 수는 없어서, 즉시 외무성으로 달려가서 당시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를 만나 자세히 설명했다. 야마자 엔지로는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빨리 영토로 편입할 필요가 있으며, 망루(望場)를 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敵艦) 감시에 대단히 좋을 것이다. 특히 외교상 내무성의 고려가 필요한 일이 아니다. 마땅히 청원서를 외무성에 회부해야 한다. 그래서 의기앙양(意氣昻揚)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죽도'는 일본 영토에 편입되었다."[23]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카이가 처음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불법 독도 편입을 정리하면, 첫째, 농상무성 수산국장 마키 나오마사는 반드시 '죽도'가 한국령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의를 주었다. 둘째,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키는 나카이에게 단정을 제공하여, '죽도'가 완전히 무소속인 것을 확인시켰다. 셋째,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는 러일전쟁 상황에서 시급히 독도를 영토로 편입할 필요가 있으며,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여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고, 나카이의 청원서를 외무성에 회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것은 일본 관료가 독도 불법 편입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무엇

---

23 "매년 수획(收獲)을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메이지 38년(1905) 1천 3마리 대금 2천 5백 59엔 79전 2리. 메이지 39년 1천 3백 85마리 대금 5천 4백 37엔 17전 5리. 메이지 40년 1천 6백 마리 대금 5천 9백 40엔 80전. 메이지 41년 1천 6백 80마리 대금 5천 8백 78엔 55전 5리. 메이지 42년 1천 1백 52마리 대금 4천 3백 44엔 19전. 메이지 43년 6백 79마리 대금 2천 3백 17엔 13전 4리."(島根縣隱岐島廳, 從明治參拾八年, 「事業經營概要」, 『行政諸官廳往復雜書類』(島根縣總務科所藏)) "어부들이 강치 포획사업의 유리함을 알게 되었고, 1904년 어기에는 각 방면에서 속속 도항하여 경쟁적으로 남획했다. 그 결과 그 폐해를 인식한 나카이는 리앙코섬을 조선의 영토라고 믿어 조선 정부에 대하를 청원할 결심을 하고는 1904년의 어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상경했다."(奧村碧雲, 1906. 6, 「竹島沿革考」, 『歷史地理』 8-6, 7-24쪽) "당시 지방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井原 시마네현 지사는 농상주임인 시마네현 소속 藤田辛年을 동반해서 상경 중이었다. 나카이는 藤田을 여관에서 방문하는 것을 기도했고, 藤田도 크게 찬성해서 지방국으로 향해서 구신하는 것을 약속했다. 자연히 지방국의 의견은 전술과 같았다." "지금 장래 유망한 사업을 목전에서 잃고, 소속 불명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경영의 시기를 잃고, 더구나 수년에 걸쳐 남획되면 앞으로 동업은 자못 어려워질 것이다. 나카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남아로서 다시 뜻을 결정하여 백난을 배제할 결심을 세웠다." "같은 고향 출신의 桑田態蔵(현재 귀족원 多額納稅 의원)에게 이를 부탁하자 구와타(桑田) 박사는 즉시 글을 써서 나카이를 야마자(山座) 정무국장에게 소개했고, 나카이는 야마자 국장을 면담해서 량코도 경영에 관한 의견을 진술했다." "국장은 천천히 이를 다 듣고 외교상의 일은 다른 부처(他者)가 관여할 수 없으며, 작은 바위섬 편입이라고 하는 사소한 사건일 뿐, 지세상으로나, 역사상으로나, 또한 시기상으로도 지금 영토로 편입하는 것은 큰 이익이 된다고 뜻을 내비쳤다."(奧村碧雲, 1906. 5. 20,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傳」(Web竹島問題研究會, 平成 20年(2008) 7月,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7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다도 일본 내무성 당국자는 러일전쟁 이후 "한국령의 의심이 있는 암초", "일본의 한국 병탄(倂呑) 야심이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일본 스스로 독도 불법 편입이 '한국 강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24]

2. 시마네현과 오키도의 독도 면적 조사와 어업 허가 과정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는 1905년 3월 7일 독도의 '지적 편입' 등의 부속 조치에 관한 훈령을 내릴 것을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다케요시에게 요구했다. 또한 히가시는 "섬 전체 대여를 요청하거나 강치 어업 허가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으며, 향후 그것이 채택될지 여부와 의견은 조사 후 다시 자세하게 보고할 것"이라고 기록했다.[25]

---

24 시마네현 지사 쓰네마쓰 야스오(恒松安夫)는 1952년 5월 12일 지방자치청(地方自治廳) 차장(次長)에게 독도 관련 조사 문서를 보냈다. 쓰네마쓰는 나카이가 1904년 어획이 끝나자 강치 어획 독점권을 얻기 위해 곧바로 상경했다고 기록했다. "나카이는 오키 출신의 농상무성 수산국원 후지타 간타로(藤田勘太郎)와 상담하고 마키 나오마사 수산국장과 면담하여 마키의 찬성을 얻었다."(島根縣知事 恒松安夫→地方自治廳 次長·外務省 情報文化局 特別資料課, 昭和 27年(1952) 5月 12日, 「總694號 別添 竹島(舊松島)をめぐる諸問題」, 『昭和26年度 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쓰네마쓰에 따르면 나카이는 오키 출신의 농상무성 관료 후지타 간타로를 통해서 수산국장과 면담할 수 있었다. 나카이는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키(肝付兼行)를 면담하면서 독도 소속이 애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카이는 1904년 9월 29일 독도의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내무, 외무, 농상무성에 제출했다. 그 후 나카이는 내무성 지방국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에게 사정을 진술했다. 그리고 같은 고향 출신의 법학사 구와타(桑田) 귀족원 의원의 소개로 외무성에서 야마자 정무국장과 면담했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요청했고, 시마네현은 오키도청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고했다. 그 결과 일본 각의는 영토편입을 결정하고 '리얀코루토섬'(마쓰시마)을 '죽도'라고 명명했다(島根縣知事 恒松安夫→地方自治廳 次長·外務省 情報文化局 特別資料課, 昭和 27年(1952) 5月 12日, 「總694號 別添 竹島(舊松島)をめぐる諸問題」, 『昭和26年度 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나카이는 기모쓰키 수로부장과 만나, 이 섬의 소속은 확실한 증거가 없고, 한일 양국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면 일본 쪽이 10리 정도 가까우며, 일본인이 이 섬의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 일본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奧村碧雲, 1906. 6, 「竹島沿革考」, 『歷史地理』 8-6, 7-24쪽; 奧村碧雲, 1906. 5. 20,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傳」(Web竹島問題研究會, 平成 20年(2008) 7月,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73쪽).

25 隱岐島司 東文輔→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 38年(1905) 3月 7日, 「甲庶16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 후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는 1905년 5월 3일 "죽도 면적을 조사하여 개신(開申)할 것을 훈령한다"라며 독도 면적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오키도청에 내렸다.[26] 그 결과 오키도사 히가시는 1905년 5월 17일 "1905년 5월 3일 지(地) 90호(號) 훈령에 따라 조사를 했더니, 총 반별(反別) 23정(町) 3반(反) 3무보(畝歩)입니다"라며 별지에 도면을 첨부하여 독도의 면적을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에게 보고했다.[27]

시마네현 내무부장 서기관 호리 신지는 1905년 4월 11일 강치 어업에 관한 허가 방침 및 어업 종사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오키도사 히가시에게 보냈다.

'죽도'는 면적이 협소하여 자칫하면 어장이 황폐해질 염려가 있으니, 경쟁으로 말미암은 남획을 막고 어업을 영속시키겠다는 취지로 허가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많은 인원을 허가할 수 없었다. 호리는 '죽도'를 경영해온 사람 중 공로의 많고 적음, 사업 계획의 확실 여부 등을 조사하여,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28] 호리는 최소 인원만 허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독도 어업에 종사한 인물들을 상세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오키도사의 보고서에 따라 독도 어업권 허가의 영향력이 크게 좌우되었다.

그 결과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는 1905년 5월 6일 독도 강치 관련 일본 어업자에 대한 조사를 시마네현 제3부장 호리 신지에게 보고했다. 히가시는 4월 11일 농(農) 제 487호에 따라 '죽도' 강치 어업자의 경영과 공로 등을 조사했다.

1903년부터 나카이 요자부로, 이구치 류타, 하시오카 도모지로(橋岡友次郎), 1904년부터 가토 주조 등이 '죽도'에 도항하여 어업에 종사했다. 1903년 3명은 거의 누가 낫고 못하다고 하기 어려울 만큼 차이가 없었다.

---

26 島根縣知事 松永武吉→隱岐島廳, 明治 38年(1905) 5月 3日, 「島根縣地90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27 隱岐島司 東文輔→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 38年(1905) 5月 17日, 「甲土4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28 島根縣 內務部長 書記官 堀信次→隱岐島司 東文輔, 明治 38年(1905) 4月 11日, 「農487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나카이 요자부로는 1904년 여름에 상경하여 담당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서 '죽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다음, 자기에게 대여해줄 것을 청원했다. 히가시는 1905년 영토편입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나카이의 공로가 처음부터 컸다고 보고했다.

'죽도' 어업권을 나카이가 독점한다면, 지금까지 '죽도' 경영에 착수한 다른 3명의 투자 설비가 물거품이 될 것이다. 히가시는 4명이 공동으로 강치 번식과 보호의 방법을 지정하고 일정 연한을 두어 영업할 것을 제안하면서, 발표 전에 4명을 불러서 공동 청원서로 대체할 것을 설명하고 지시했다.[29] 오키도사 히가시는 나카이 요자부로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독도 어업권 관련 4명의 공동 청원서를 계획했다. 이것은 히가시가 독도 어업권 허가와 관련하여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시마네현 제3부장 호리 신지는 1905년 5월 10일 독도 공동 청원서의 허가 관련 문서를 오키도사 히가시에게 보냈다. 호리는 5월 6일 을농(乙農) 92호를 통해 강치 어업 허가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했다.

제시한 의견대로 나카이 요자부로, 이구치 류타, 하시오카 도모지, 가토 주조 4명은 공동 원서가 아니면 허가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 호리는 4명에 대하여 공동 원서로 정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30]

시마네현은 독도 어업권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공동 청원 방침을 정했다. 시마네현 제3부장 호리 신지는 독도 어업권에 대해 오키도사 히가시가 제시한 공동 청원서를 승인했다. 시마네현과 오키도는 일본 지방 관료가 의도한 방침에 따라 계획적으로 독도 어업권의 참가자를 공동으로 조직했다.

이러한 시마네현과 오키도사의 직접적인 개입에 따라 나카이 요자부로, 이구치 류타, 하시오카 도모지, 가토 주조 4명은 1905년 5월 20일 강치 관련 공동 사업으로

---

29 隱岐島司 東文輔→第3部長 堀信次, 明治 38年(1905) 5月 6日, 「乙農92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30 島根縣 第3部長 堀信次→隱岐島司 東文輔, 明治 38年(1905) 5月 10日, 「農685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려어업허가원(海驢漁業許可願)'을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에게 제출했다. "어업 구역: '죽도'와 주변. 어구의 수: 그물 2측. 허가 기간: 1905년 6월부터 1908년 5월까지 3년간"[31]이었다.

나카이를 비롯한 4명은 1905년 5월 20일 구체적인 공동 어업 관련 규약도 제출했다. 첫째, 합동 조직은 정식 합자회사다. 둘째, 사무소는 스키군 사이고정에 둔다. 셋째, 각자의 권리는 아래의 비율에 따른다. 나카이 100분의 40, 이구치 100분의 23, 하시오카 100분의 23, 가토 100분의 14이다. 넷째, 위의 비율에 기초하여 각자 자본금을 출자하고 이익을 배당한다. 다섯째, 당국의 명령 규칙에 나와 있지 않은 강치의 번식과 보호 방법은 나카이 요자부로가 당국에 제출한 의견을 채택한다. 다만 훗날 그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때는 서로 의논하여 정한다.[32]

내용을 살펴보면 나카이 요자부로 주도의 합자회사였다. 즉 나카이의 권리가 40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강치의 번식과 보호 방법은 나카이 요자부로가 제출한 방식을 채택했다. 강치의 번식과 보호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강치 포획의 변경은 나카이 요자부로의 단독 결정이 아닌 합자회사 회원의 공동 합의로 결정해야 했다. 합자회사는 "당국의 규칙과 명령"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규정하여 정부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어업회사를 표방했다.

오키도사 히가시는 1905년 5월 22일 독도 어업권 허가를 요청하는 문서를 시마네현 제3부장 호리 신지에게 보냈다. 히가시는 4명이 공동 어업을 협정하여 원서를 제출했는데, 바로 허가가 나오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33] 오키도사 히가시는 독도

---

31 中井養三郎 · 井口龍太 · 橋岡友次郎 · 加藤重造→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 38年(1905) 5月 20日, 「乙農805號 別紙 海驢漁業許可願」,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32 "6. 영업순익은 총액의 2할을 적립하고 그 나머지를 각자에게 배당한다. 7. 회사의 현금은 모두 은행에 맡긴다. 8. 이 규약을 기초로 하여 회사 정관을 만들고 등기를 한다. 9. 당국의 규칙과 명령, 이 규약과 다른 날 규정하는 정관에 배치되거나 혹은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또 언제든지 제명한다."(中井養三郎 · 井口龍太 · 橋岡友次郎 · 加藤重造→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 38年(1905) 5月 20日, 「乙農805號 別紙 申合規約寫」,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33 "'죽도' 강치 어업 허가와 관련하여 5월 5일 농(農)685호(號)로 조회하신 취지를 잘 알았습니다."(隱岐島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공동 어업권 허가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나카이 요자부로를 비롯한 4명에 대한 중재까지 진행했다.

나카이는 1907년 7월 '1905년 독도 영업 보고'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정부의 영업 준비 내부 명령을 받은 것은 (1905년) 5월 19일이다. 회사 설립 준비에 착수한 것은 6월 6일이다. 실제 현지에 가서 어렵을 시작한 것은 6월 9일이다."[34]

그런데 1905년 5월 20일 강치 관련 공동 사업으로 '해려어업허가원'이 제출되었다. 오키도사 히가시는 1905년 5월 22일 공동 어업권에 대한 합의를 시마네현 제3부장 호리 신지에게 보냈다.[35] 하지만 나카이는 "5월 19일 정부의 영업 준비 내부 명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했다. 이것은 독도 어업권이 오키와 시마네현의 지방 관료가 사전에 직접 지시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오키도와 시마네현의 합작품으로 '죽도' 어업권을 나카이에게 허가해준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였다.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다케요시는 1905년 6월 5일 "1905년 5월 20일 청원한 강치 어업건을 허가하며 감찰 1매를 내려보낸다"라며 강치 어업 허가와 감찰 교부 통지서를 공식적으로 보냈다.[36] 마쓰나가에 따르면 어업 구역은 독도 주변이었고, 어

司 東文輔→島根縣 第3部長 堀信次, 明治 38年(1905) 5月 22日, 「乙農805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34 竹島漁獵合資會社 代表社員 中井養三郎, 明治 40年(1907) 7月 11日, 「會社營業報告 別紙 明治 38年(1905) 度業務執行顚末」,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35 隱岐島司 東文輔→島根縣 第3部長 堀信次, 明治 38年(1905) 5月 22日, 「乙農805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36 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 38年(1905) 6月 5日, 「島根縣農1926號」, 『竹島貸下 · 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시마네현 총무부장(總務部長)은 오키도청장(隱岐島廳長)이 1951년 9월 10일자로 작성한 독도 조사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다. 오키도청장은 1900년대 나카이의 독도 관련 어업활동을 기록했다. 오키도청장은 독도를 '마쓰시마'로 파악했는데, 이것은 그만큼 독도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오키도청장에 따르면 어획물은 오키로 수송하여 강치 가죽을 가공해 한신(阪神) 지방으로 보냈다. 1909년 물가 인하로 회사 경영이 곤란해져 사업을 중단했다. 오키도청장은 나카이의 어업 관련 법적 근거를 "오키도사의 관할 아래 '죽도' 어업권 일체를 받았다"라고 기록했다(隱岐島廳長→島根縣 總務部長, 昭和 26年(1951) 9月 10日, 「總第號外號 別添 總厚1478號」, 『昭和 26年度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이것은 독도 어업권과 관련하여 오키도사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 수는 그물 2측(側)이었다. 허가 기간은 메이지 38년(1905) 6월부터 41년(1908) 5월까지 3년이었다.

3. 나카이 요자부로의 일본 해군성 독도 망루 건설 참가

나카이는 1905년 7월 25일 일본 정부의 독도 측량 관련 지시를 수령했다며 오키도사 히가시에게 보고했다. 나카이는 일본 해군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는데, 나카이와 일본 정부가 독도를 경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연결되었다.

일본 정부는 "사원을 파견하여 어장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아래 조항의 명령을 시행한다. 해군성과 기타 정부 부서에서 '죽도'의 측량 등을 수행할 경우 인부를 동원하여 준비하라"라고 나카이에게 지시했다. 그러자 나카이는 "죽도 강치어장 작업장 청소건과 관련하여 깨우쳐 일러주신 것에 따라 종업자(從業者)들을 동원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37]

나카이는 1907년 7월 11일 일본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의 독도 어장 감독과 어부는 1905년 일본 해군의 망루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나카이는 "1905년 영업 중 '죽도'에 제국 군함 하시(橋) 5호가 내항하여 가설 망루 건축 등을 시행했다"라고 기록했다. 무엇보다도 나카이는 "진자이 사무관, 히가시 도사 이하 일행이 '죽도'를 시찰할 때, 자신을 포함하여 사원 2명 및 임시 고용 인부 5명과 함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기록했다. 그 '중요한 임무'는 바로 독도 망루 설치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나카이는 일본 해군의 독도 망루 건설에 참여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1905년 어렵이 끝날 무렵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다케요시가

---

37 中井養三郎一隱岐島司 東文輔, 明治 38年(1905) 7月 25日, 「乙衛26號 別紙 御受書」,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방문했다. 어장 감독을 맡은 사원은 업무를 다 처리할 수가 없어서 임시로 야와카 켄지(やわか けんじ)를 고용했다. 많은 수의 인부를 이끌며 망루 건축원과 망루원 사이에서 시종 원만하고 화목한 우정을 유지했다.[38]

나카이는 독도 망루 불하 등 일본 정부와의 특별한 관계를 주장했다. 나카이는 "죽도 망루를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의 특별한 은혜에 힘입어 마이즈루 진수부(舞鶴鎮守府)로부터 불하를 받았다"라고 기록했다. 해군이 쓰던 물건이 '죽도'에 남았는데 모두 정식으로 시마네현 지사에게 인계되었고, 나카이가 물건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나카이가 일본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나카이와 정부의 관계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카이에 따르면 관계 당국의 관리는 '죽도' 전체를 빌리고 지선과 수면의 배타적 이용권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나카이는 5년 기한으로 '죽도' 전체 대여를 허가받을 수 있었다. 나카이는 합법적인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선과 수면의 배타적 이용에 대해서 머지않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39]

결국 나카이는 1906년 3월 진자이 사무관과 히가시 도사 일행의 시찰 당시 독도에 대한 다양한 독점권을 요구하여 각종 혜택을 받았다. 그 내용은 "가설 망루를 불하받는다. '죽도' 섬 전체를 차용한다. 지선과 수면을 전용한다. 어렵 기간을 전후하여 어장의 감수를 철저하게 한다" 등이었다.[40]

---

38 竹島漁獵合資會社 代表社員 中井養三郎, 明治 40年(1907) 7月 11日, 「會社營業報告 別紙 明治 38年(1905) 度業務執行顚末」,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39 竹島漁獵合資會社 代表社員 中井養三郎, 明治 40年(1907) 7月 11日, 「會社營業報告 別紙 明治 39年(1906) 度業務執行顚末」,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나카이 요이치(中井養一)는 1905년 세워진 해군 망루를 그의 아버지 "나카이 요자부로가 불하받아 빗물을 모으는 데 이용했다"라고 기록했다(アジア局2課, 昭和 28年(1953) 8月, 「(秘) 竹島漁業の變遷, 中井養一 口述書」, 『昭和28年度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 44쪽(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40 竹島漁獵合資會社 代表社員 中井養三郎, 明治 40年(1907) 7月 11日, 「會社營業報告 別紙 明治 39年(1906) 度業務執行顚末」,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Ⅳ.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사본 문제와 ‘고시’의 유무

현재 시마네현청에 따르면 1945년 8월 시마네현 청사가 전소될 때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원본도 소실되었다.[41]

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에 소장된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사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섬에서 서북으로 85해리(浬) 떨어진 곳에 있는 도서를(島嶼ヲ) ‘죽도’라 부르며 지금부터 본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해짐.”[42]

그런데 시마네현 현청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일부 인쇄본에는 ‘島嶼ヲ’(일본어 ‘오’는 한국어로 ‘를’)가 ‘島嶼ラ’(일본어 ‘라’는 어조를 고르는 상태 또는 근처)로 표기되어 있다.[43] 원본이 없다 보니 인쇄본마다 글자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일본 외무성은 “실제로 시마네현 고시는 메이지 38년 2월 22일자 『시마네현현보(島根縣縣報)』에 게재되어 있으며, 1905년 2월 24일자 『산인신문(山陰新聞)』 제5912호에 위의 공시가 있었던 사실 및 내용이 보도되었다”라고 주장했다.[44]

---

41 『東亞日報』, 2013. 11. 9; 『오마이뉴스』, 2014. 1. 6, 이종학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1905년 2월 시마네현청 내에서 일부 사람이 돌려보는 ‘회람(回覽)’으로 끝났으며 일본 신문에 고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종학에 따르면 표제 ‘明治 38年 島根縣告示 秋鹿村役場’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시마네현청에만 1장 보관되어 있는 유일한 것이다. 소재지는 시마네현 야츠카군 아이카촌(島根縣 八束郡 秋鹿村)이었다. 이종학은 일반에 고시된 것이 아니라, 현청 내에서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돌려본 ‘회람’용으로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비밀리에 편입시켰다고 판단했다(이종학, 「독도를 둘러싼 바다 명칭에 대한 한일 간의 시각」, 『군사논단』 24호, 2000, 83-84쪽).

42 島根縣隱岐島廳, 「島根縣告示40號」, 明治 38年(1905) 2月 22日, 島根縣知事 松永武吉,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섬에서 서북으로 85해리(浬) 떨어진 곳에 있는 도서를 ‘죽도’라 부르며 지금부터 본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해졌으니, 이런 내용을 잘 헤아리기 바람. 明治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松永武吉).”(島根縣知事 松永武吉-隱岐島廳, 明治 38年(1905) 2月 22日, 「島根縣庶11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43 한국 외무부의 『독도문제개론』에는 ‘島嶼ヲ’로 표기되었다. 외무부 정무국, 『독도문제개론』, 외교문제총서 11호, 1955(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편, 『독도문제개론』, 2012 재발행, 30쪽).

44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24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럼에도 현재 1905년 『시마네현현보』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이다. 또한 『산인신문』 제5912호는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직접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다.

일본 국회와 시마네현 도서관을 살펴보면 시마네현 현립도서관(島根縣立圖書館)은 시마네현에서 편찬하는 1913년 『시마네현고시고유(島根縣告示告諭)』, 1916년 『시마네현보(島根縣報)』, 1917년부터 1년에 2권씩 발간된 『시마네현보(島根縣報)』를 소장하고 있다.[45]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1886년 11-12월 발간된 『시마네현공보(島根縣公報)』 제1-16호, 1887년 4월부터 1888년 3월까지 발간된 『시마네현공보』를 소장하고 있다.[46] 결국 현재 『시마네현공보』는 1880년대 발간되었고, 『시마네현보』는 1910년대에 발간되었다. 1905년 전후 『시마네현공보』 또는 『시마네현보』는 발간된 사실조차도 불분명하고, 일본 국회도서관과 시마네현 현립도서관에도 소장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산인신문』[47]을 살펴보면 『산인신문』은 시마네현 마쓰에시(松江市) 사유본점(白湯本店) 58번지(番地)에 소재했다. 1882년(明治 15)에 창간되었고, 1892년 3종(種) 우편물로 인가받았는데, 4면으로 구성되었고,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간되었다.

---

45 https://www2.library.pref.shimane.lg.jp.

46 https://ndlonline.ndl.go.jp.

47 1882년 5월 1일 산인신문사창립(山陰新聞社創立). 1901년 11월 3일 쇼요신보사창립(松陽新報社創立, 松陽新報). 1942년 1월 1일 쇼요신보사와 산인신문사가 합병하여 『시마네신문(島根新聞)』으로 변경되었다. 1973년 현재의 명칭인 『산인주오신문(山陰中央新報)』으로 제호가 변경되었다(http://www.sanin-chuo.co.jp). 1905년 전후 산인신문의 내용은 사설(社說)과 논설(論說), 잡보(雜報), 소설(小說), 도쿄특발전보(東京特發電報), 소현(小絃), 강담(講談), 광고(廣告), 물가(物價) 등으로 구성되었다. 잡보는 1면의 잡보와 2면의 잡보로 구별되었다. 1면은 사설과 잡보로 구성되었는데, 잡보에는 주로 칙어(勅語)와 조칙(詔勅)과 칙령(勅令), 황실 동정, 중의원의사(衆議院議事)와 법안(法案)과 법률안(法律案), 국내외 주요 정치·경제·외교, 러일전쟁 주요 전투, 해외 소식 등을 보도했다. 2면은 주로 도쿄특발전보, 잡보, 서임(敍任)과 사령(辭令), 소현(小絃)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잡보에는 국내외 일반 소식, 러일전쟁 일반 소식, 시마네현 주요 소식 등을 보도했다. 3면은 현지사 마쓰나가 등의 지역 인물 소식, 시마네현을 비롯한 국내외 일반 소식, 상업등기공고(商業登記公告), 광고, 물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4면은 강담, 광고, 신간소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산인신문』 1905년 2월 24일자 2면 '잡보(雜報)'에 '현참사회(縣參事會)'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시마네현 참사회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어 추가예산과 부동산 처분을 의결하고 폐회했다.[48]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시마네현 참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산인신문』은 1905년 2월 24일자 2면 '잡보'에 '오키의 신도(隱岐の新島)'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북위 37도 9분 3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섬 거리 서북 85리(浬)에 있는 도서를 죽도(竹島)로 칭하고, 지금부터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하게 되고, 현지사(縣知事)로부터 고시(告示)되었고, 우도서(右島嶼)는 주위 15정위(町位)의 2도(島)로 구성되어 주위에는 무수(無數)의 군도산재(群島散在)해서, 해협(海峽)은 선박(船)의 정박에 편리하고 초목은 살아 있지만 수목은 없다."[49]

『산인신문』을 살펴보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라는 직접적인 명칭과 '고시'가 없다. 단지 "시마네현 지사로부터 고시가 있었고, 오키의 새로운 섬인 죽도가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해졌다"라고만 했다.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마쓰에시 고시(松江市告示)'처럼 제호, 제목, 본문이 『산인신문』에 실린 적이 없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공식적으로 고시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영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 참사회에서 논의된 적도 없었다.[50]

---

48 『山陰新聞』, 1905. 2. 24.

49 『山陰新聞』, 1905. 2. 24. 1905년 2월 24일 『쇼요신보』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라는 직접적인 '고시' 형태가 아닌 단순 보도기사로 냈다. "本縣新所管島竹島. 北韓(*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 東經百(*三十)一度五十五分隱岐島を距る西北八十五浬に在る島嶼を竹島と称し自今島根縣所属隱岐島司の所管と定められたる旨三十八年二月二十二日を以て本縣知事は本縣告示第四十号を告示せり."(『松陽新報』,1905. 2. 24) 『쇼요신보』는 독도 관련 기사에서 '北緯'를 '北韓'으로 오기했고, 프랑스 상선 리앙쿠르호가 1860년 전후 독도를 발견했다고 잘못 보도했다. 『쇼요신보』는 『산인신문』과 마찬가지로 "현지사(縣知事)로부터 고시(告示)되었고, 해도서(該右島嶼)는 암석으로 된 2도(島)로 구성되었고 주위 15정여(町餘)"라는 내용을 유사하게 보도했다.

50 제성호에 따르면 선점(先占)의 방법으로 새로이 영토를 편입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행정조치로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산인신문』의 '고시' 형태를 살펴보면, 『산인신문』 2월 22일자 3면에 '마쓰에시 고시 제15호(松江市告示第十五號)'라는 제목으로 날짜(明治 38年 2月 20日)까지 실었는데, 화재에 따른 무료치료 관련 내용이었다. 『산인신문』 2월 23일자 3면에는 '마쓰에시 고시 제16호(松江市告示第十六號, 明治 38年 2月 21日)'와 '마쓰에시 고시 제17호(松江市告示第十七號, 明治 38年 2月 21日)'가 실렸는데, 소유자의 인도(引渡)에 관한 청구(請求) 관련 내용이었다. 『산인신문』 2월 25일자 3면에는 '마쓰에시 고시 제18호(松江市告示第十八號)'라는 제목으로 날짜(明治 38年 2月 24日)까지 실었는데, 징병검사 장소와 일시에 관한 내용이었다.[51]

『산인신문』 2월 18일자 3면 광고에는 '공고(公告)'라는 형식으로 시마네현의 토제4호(土第四號) 방파재 수선 공사에 관한 내용을 공지했다. 『산인신문』 2월 26일자 3면 광고에는 '공고' 형식으로 시마네현의 토제8호(土第八號) 도로 수선 공사에 관한 내용을 공지했다. 결국 시마네현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행위를 '공고'라는 형식으로 『산인신문』을 통해서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는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발표된 날짜인 2월 22일 전후에 시마네현에 없었다. 『산인신문』 2월 17일자 2면에 따르면 시

어디까지나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은밀한 '서류점령(paper domination)' 혹은 '명목상의 점령(nominal occupation)'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제성호, 「국제법상 島根縣 告示 제40호의 불법·무효성」, 『중앙법학』 10-1, 2008, 438-440쪽). 최철영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황제의 칙령이 아닌 하위의 각의결정 형식으로 독도를 편입하여 관보 게재 부담을 피하고, 시마네현 행정명령으로서 훈령을 내려 현의 고시를 통해 독도를 대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만을 마련했다. (최철영, 「1905년 일본 정부 각의결정의 무주지 선점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2018, 160쪽).

51 『산인신문』 1905년 2월 3일자 3면에는 '마쓰에시 고시 제9호(松江市告示第九號)'라는 제목으로 날짜(明治 38年 2月 1日)까지 실었는데, 마쓰에시 내(松江市內) 각구회의원(各區會議員) 당선자 명단이었다. 『산인신문』 2월 6일자 3면에는 '마쓰에시 고시 제10호(松江市告示第十號)'라는 제목으로 날짜(明治 38年 2月 4日)까지 실었는데, 마쓰에시회(松江市會)의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에 대한 의결이었다. 『산인신문』 2월 19일자 2면에는 '마쓰에시 고시 제13호'(松江市告示第十三號)라는 제목으로 날짜(明治 38年 2月 19日)까지 실었다. 『산인신문』 2월 20일자 3면에는 '마쓰에시 고시 제14호(松江市告示第十四號)'라는 제목으로 날짜(明治 38年 2月 18日)까지 실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마네현 지사 마쓰나가는 24일부터 개회되는 지방관회의(地方官會議)에 참석(列席)하기 위해서 19일 출발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28일 추가예산을 논의할 예정이던 시마네현 회의가 연기되었다.[52] 『산인신문』 2월 19일자 2면에 따르면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는 지방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했다.[53] 『산인신문』 2월 20자 2면에 따르면 23일 도쿄에 지방관이 소집되고, 24일부터 내무성에서 회의가 개최되어 재정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54] 『산인신문』 2월 27일자 1면에 따르면 지방관회의가 24일 오전 10시 내무성에서 개최되었고,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 내무대신의 주요 연설 내용이 보도되었다.[55] 『산인신문』 3월 1일자 3면에 따르면 마쓰나가는 도쿄에서 시마네현 상무회장과 함께 시마네현 출신 부상자(傷病兵)를 위문했다.[56] 『산인신문』 3월 4일자 2면에 따르면 지방관회의는 3월 1일에도 개최되어 지방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57] 적어도 마쓰나가는 1905년 2월 19일부터 3월 1일까지 시마네현에 없었다.[58] 이것은 마쓰나가가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필기체 문서에 직접 서명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당시 일본 정부의 『관보(官報)』를 살펴보면, 1905년 2월 22일 일본 『관보』 중 고시(告示)는 내무성고시 제14호(內務省告示第十四號, 2월 22일), 대장성고시 제41호(大藏省告示第四十一號, 2월 22일) 등 정부 내각의 고시문이 수록되었고, 지방행정

52 『山陰新聞』, 1905. 2. 17.

53 『山陰新聞』, 1905. 2. 19.

54 『山陰新聞』, 1905. 2. 20.

55 『山陰新聞』, 1905. 2. 27.

56 『山陰新聞』, 1905. 3. 1.

57 『山陰新聞』, 1905. 3. 4.

58 '시마네현 고시 제39호'는 공보(公報)와 현보(縣報) 관련 내용(警視廳 東京府 公報 등)으로 1905년 2월 19일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시마네현 고시 제41호'는 조합사무소(組合事務所) 관련 내용(塩田嘉戶浦魚業), '시마네현 고시 제42호'는 명부 취소 관련 내용(産姿名簿)으로 모두 1905년 2월 24일에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은 야마구치현(山口縣)의 임시현회(臨時縣會)가 소개되었다.[59] 1905년 2월 23일 『관보』 중 고시(告示)는 내무성고시 제15호(內務省告示第十五號, 2월 23일), 대장성고시 제43호(大藏省告示第四十三號, 2월 23일), 체신성고시 제67호(遞信省告示第六十七號, 2월 23일), 농상무성고시 제46호(農商務省告示第四十六號, 2월 23일) 등 정부 내각의 고시문이 수록되었다.[60] 『관보』에는 시마네현의 소식 및 '죽도' 관련 고시가 수록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1905년 5월 29일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서 벌어진 러일해전 소식을 공지하며 독도 명칭을 '리양코루도암(リヤンコールド岩)'이라고 공식적으로 『관보』에 게재했다. 당시 일본 『관보』는 대장성인쇄국(大藏省印刷局)에서 발간되었다. 이것은 일본 정부조차도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인지하지 못했고, 시마네현이 고시의 '공개 발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61] 또한 일본 정부는 1905년 5월 30일 울릉도 주변 러일해전 소식을 공지하며 독도 명칭을 다시 한 번 '리양코루도암'이라고 공식적으로 『관보』에 게재했다.[62] 『관보』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해군성의 러일해전 공식 보고에도 독도를 '리양코루도암'으로 기록했는데, 이것은 해군성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존재를 몰랐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

59 大藏省印刷局, 明治 38年 2月 22日 水曜日, 「告示」, 『官報』(国立国会図書館). 일본 『관보(官報)』는 법률(法律), 칙령(勅令), 훈령(訓令), 고시(告示), 서임급사령(敍任及辭令), 궁정록사(宮廷錄事), 전보(戰報), 휘보(彙報), 제국의회(帝國議會), 지방행정(地方行政), 공사관급영사관보고(公使館及領事館報告), 관상(觀象), 광고(廣告) 등으로 구성되었다.

60 大藏省印刷局, 明治 38年 2月 23日 木曜日, 「告示」, 『官報』(国立国会図書館).

61 "연합함대의 주력은 27일 이래 잔적(殘敵)에 대해서 추격을 속행해서 28일 '리양코루도암(リヤンコールド岩)' 부근에서 적함 '니코라이'제(第)1세(戰艦), '아리요루(戰艦)', '세니야윙(裝甲海防艦)', '아뿌라키싱(裝甲海防艦)' 및 '이드무루도(巡洋艦)' 등으로 구성된 일군(一群)을 만나서 공격했다."(大藏省印刷局, 明治 38年 5月 29日 月曜日, 「戰報」, 『官報 號外』(国立国会図書館))

62 "일본해 해전 속보(日本海海戰續報). 일본해 해전에 관해 그 후 접수(接手)된 연합함대사령장관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郎)의 보고는 왼쪽과 같다.(海軍省) 30일 오후 저전(著電). 연합함대의 대부는 전에 전보한 것과 같이 28일 오후 '리양코루도암(リヤンコルド岩)' 부근에서 패잔적함대(敗殘敵艦隊)의 주력을 포위공격하고 그 항복(降伏)을 받아 추격을 중지했다."(大藏省印刷局, 明治 38年 5月 30日 火曜日, 「戰報」, 『官報 號外』(国立国会図書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공개 발표'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일본 정부는 1905년 6월 5일 『관보』 중 전보(戰報)에서 러일해전과 러일전쟁 소식을 공지하면서 '리양코루도암'을 '다케시마(竹島)'로 정정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1905년 5월 일본 해군성과 대장성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다케시마(竹島)' 용어를 알지 못했고 공식적으로 독도를 '리양코루도암'으로 파악했다. 그런데 『관보』에 게재된 후 5일이 지나서야 대장성은 '리양코루도암'을 '다케시마(竹島)'로 정정했다.[63] 결국 이것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공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해군성과 대장성도 파악하지 못했고, 단지 시마네현의 관료와 관련 인물들만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1905년 2월 신문, 현보, 관보 등에 공식적으로 게재된 적이 없었다. 더구나 '고시'에 서명해야 할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는 1905년 2월 22일 전후에 도쿄 출장으로 시마네현에 없었다. 결국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소수의 일본인만 알고 있었던 '고시'되지 않은 종이에 불과했다.

Ⅴ. 나오며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의 위치와 명칭을 『일본수로지』에 기초해서 기록했다. 이것은 수산업자 나카이가 해군성의 『일본수로지』까지 입수하여, 일본 해군 수로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독도를 인식하고 소유하려고 했던 사실을 알려준다. 더구나 1904년 독도에 망루를 건설할 때 나카이와 함께 작업한 것은 바로 일본 육군이었다. 나카이는 영토를 확장하려는 제국주의와 자신의 애국심을 동일한 것으로 연결시켰

63 정정(訂正): 지난달 29일 『관보 호외』의 본란(本欄) 일본해 해전 전보의 항(項) 기삼(其三) 및 동(同) 30일 동일(同日) 일본해 해전 속보 항(項) 기오(其五) 중(中) '리양코루도암(リヤンコルド岩)' 모두 다케시마(竹島)로 정정함."(大蔵省印刷局, 明治 38年 6月 5日 月曜日, 「戰報」, 『官報 號外』(國立國會図書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데,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을 촉구하면서 독도의 어업을 독점하게 해달라며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다. 그가 분주히 오갔던 것은 모두 자기이익 때문이었다. 나카이는 기본적으로 독도를 '무인도'로 설정하고 독도 편입의 절차적인 문제까지 파악했다.

나카이는 독도의 불법 영토편입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이자 한국의 영토, 독도에 대한 통감부와의 협의 등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나카이가 처음에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라는 지리적 개념, 한국의 영토라는 영역적 개념 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일본의 시마네현과 오키도의 관리는 독도의 불법 영토편입 과정에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서 문서를 주고받았다. 특히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는 독도의 새로운 명칭 '죽도'까지 작명할 정도로 깊숙이 개입했다. '죽도' 명칭 사용은 바로 나카이의 편입 요청에 따른 히가시의 결정이었다.

나카이는 독도 불법 편입 과정에서 정부 관료와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첫째, 농상무성 수산국장 마키 나오마사는 반드시 '죽도'가 한국령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의를 주었다. 둘째,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키는 나카이에게 단정을 제공하여, '죽도'가 완전히 무소속이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셋째,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는 러일전쟁 상황에서 시급히 독도를 영토로 편입할 필요가 있으며, 독도에 망루(望場)를 세우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여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고, 나카이의 청원서를 외무성에 회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무엇보다도 일본 내무성 당국자는 러일전쟁 이후 "한국령의 의심이 있는 암초", "일본의 한국 병탄(倂呑) 야심이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일본 스스로 독도 불법 편입이 '한국 강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다.

현재까지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기준으로 일본의 독도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시마네현청에 따르면 1945년 8월 시마네현 청사가 전소될 때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원본도 소실되었다고 한다. 1905년 관찬문서 『공문류취(公文類聚)』가 필기체로 작성되었고, 현재 시마네현 죽도자료실 소장 1905년 『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마네현 고시(島根縣告示)』의 표지는 필기체로 작성되었다. 그렇다면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원본은 당연히 필기체로 작성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시마네현청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인쇄체 형태로 작성되었고, 심지어 시마네현 지사의 도장과 서명도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다케요시는 최소 1905년 2월 19일부터 3월 1일까지 도쿄 출장 때문에 시마네현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원본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본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원본 문서가 없다면 그 문서에 기반을 둔 일본의 증거력도 국제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지금까지 일본의 지방과 중앙에서 공식적으로 '고시(告示)'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결국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원본이 없는 사본으로만 존재하고, 사본을 인정하더라도 시마네현의 소수 관료 및 '죽도'의 어업자만 공유한 문서에 불과했다.[64]

64 『공문류취』에는 도쿄부고시(東京部告示) 제58호(第五十八號)는 실려 있지만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없었다. 일본 정부는 1898년 미나미토리섬(南鳥島) 편입을 참고하여 '죽도' 편입의 제도적인 절차를 진행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부고시 제58호 메이지 31년(1898) 7월 24일 미나미토리섬을 오가사와라섬(小笠原島)의 도청에 편입시켰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나카이 요자부로의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와 '죽도어업조합'의 조직과 운영

Ⅰ. 들어가며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둘러싼 연구는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및 어업활동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이 분야는 향후 일본의 1904년 2월 러일전쟁과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편입 의도와 이유가 주목의 대상이었다.

그동안 기존 연구는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일본 각의결정 과정,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リヤんコ島領土編入並び貸下願)」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서 기존 연구는 일본의 독도 불법 강점의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1]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한 이후 독도를 둘러싼 불법 어업의 전개 과정에는 주목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나카이 요자부로가 독도의 어업권을 독점하기 위해 조직한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竹島漁獵海驢合資會社)'와 '죽도어업

1 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1985, 117-121쪽; 신용하,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2006, 200-207쪽; 허영란,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동북아역사논총』13, 2006, 253-254쪽; 崔長根, 「竹島経営者中井養三郎氏立志傳의 해석오류에 대한 고찰: 죽도문제연구회의 『최종보고서』 비판」, 『일어일문학』 40, 2008, 293-294쪽; 유미림,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3, 26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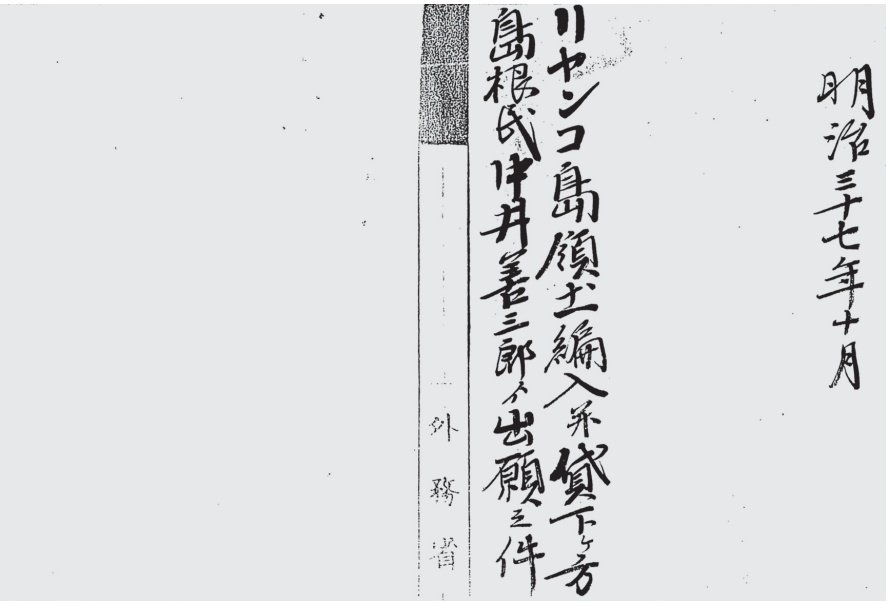

나카이의 리양코도 영토편입(1904. 10)

조합'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시마네현 어업 사료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발굴과 체계적인 자료 분석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후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불법 편입의 전개와 불법 어업 과정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였다.

김수희는 일본의 독도 강점 과정에서 각의결정, 나카이 요자부로의 활동과 기록 등을 추적했다. 김수희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편입 및 독도 어업권 허가 과정을 기술했다. 김수희에 따르면 나카이 요자부로가 1904년 9월 29일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일본 정부에 제출하자 일본 정부는 전면적으로 승인하여 독도를 강점했다. 이 사료를 통해서 일본은 무주지 선점의 법적 타당성에서 어민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편입한 것으로 설명했다. 1906-1909년 사이 나카이는 일본의 독도 강점 과정과 그 경위를 진술하고 기록했는데, 그는 고위 관리들의 실명과 자신에게 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한 사항, 이로 인해 발생한 사건과 전말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나카이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 '한국 영토로 믿었다'고 인정하면서 자신을 사주한 관료들의 실명과 언행을 공개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한 무언의 약속을 지키게 하려는 의미에서 기록했다. 김수희에 따르면 나카이가 남긴 문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날조된 거짓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독도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해 강점되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였다.[2]

유미림은 일본의 '어업단속규칙'을 추적하면서 나카이의 '죽도어업조합'의 기각 과정을 언급했다. 유미림은 시마네현이 잡종세 과목과액에 '강치 어업'을 추가했고, 1906년 3월 이후 강치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3]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를 간략히 살펴보면서 국가의 논리를 주목했다. 이케우치에 따르면 나카이가 대표 사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가 죽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하는 데 공적을 세웠기 때문이다. 오키제도에서의 지역산업 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논리가 우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4]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나카이 요자부로의 활동과 강치 어업의 '세금'에 치중하여 나카이 요자부로의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와 '죽도어업조합'의 조직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와 '죽도어업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 어업 개입 및 나카이의 불법적인 어업활동을 주목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카이의 강치 어업 독점과 남획에 따른 결과를 추적할 것이다.

---

2 김수희,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와 독도 강점」, 『독도연구』 17, 2014, 100-106쪽.

3 유미림, 「1905년 전후 일본 지방세와 강치 어업, 그리고 독도」, 『영토해양연구』 9, 2015, 30-37쪽.

4 나카이는 죽도어렵이 영토편입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 또한 나카이는 죽도 영토편입에 돌아다니는데 사용한 비용을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의 사원들에게 부담을 주어 회수했다(池内敏, 「中井養三郎と竹島漁獵 會社に関する覚書」, 『동아시아의 영토관념과 독도 2018 독도국제포럼』, 2018. 12. 11, 8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1905년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의 조직과 운영

나카이 요자부로는 1864년 1월 27일 돗토리현(鳥取縣) 도하쿠군(東伯郡) 오가노촌(小鴨村) 오아자(大字) 나카가와라(中河原) 출생이다. 가업은 양조업(醸造業)이었다. 나카이는 한학을 배우기 위해 도쿄로 갔지만 23세 때 실업으로 진로를 전환했다. 이때부터 잠수기(潜水器) 어업에 몰두하여 해삼, 전복 등을 채취했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한국 전라도와 충청도, 일본 돗토리현의 미쿠리야, 오키, 이와미 등에서 어업사업을 벌였다. 1903년 5월 나카이는 육군 하사 오하라 이와조(小原岩蔵), 시마타니 곤조(島谷権蔵)와 함께 7명을 인솔하고 소형 어선을 타고 독도로 들어가 작은 가옥을 짓고 강치 어업을 시도했다.[5]

나카이 요자부로를 비롯한 일본인 4명은 1905년 6월 3일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 정관을 별지(別紙)로 작성했다.

첫째,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독도의 어렵, 포획,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했다. 둘째,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나카이 요자부로, 이구치 류타(井口龍太), 하시오카 도모지로(橋岡友次郎), 가토 주조(加藤重造) 등의 사원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시마네현(島根縣) 스키군(周吉郡) 사이고정(西郷町) 오아자 니시바치(大字西町) 아자 사시무코(字指向) 23번지에 본점을 두었다.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출자액과 책임에 대해 규정했다. 나카이 요자부로가 다른 사원보다 2배 정도 많은 출자금을 냈으며, 다른 사원과 달리 무한의 책임을 갖고 있었다. 그만큼 나카이 요자부로 중심의 합자회사라는 의미였다.

---

5 奥村碧雲, 『竹島經營者 中井養三郎 立志傳』, 1906; 유미림 역, 「해제」, 『독도와 울릉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106쪽. 나카이는 1934년 4월 26일에 사망했다. 伯耆国久米郡小鴨村大字中河原(현재 鳥取県倉吉市).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에 따르면 1903년 나카이 요자부로가 신죽도(新竹島)의 강치 포획사업을 계획하자, 고향 사람 오하라(小原) 육군 보병하사는 찬성했다. 1903년 5월 나카이, 오하라, 시마타니(島谷権蔵) 등 7명은 폭 8척(尺) 길이 4칸(間)의 소형 어선을 타고 신죽도에 상륙하여 일장기를 걸었고, 강치 포획에 종사했다(奥原碧雲, 「竹島沿革考」, 『歷史地理』 8-6, 1906. 6; 유미림 역, 「해제」, 『독도와 울릉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14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출자액은 나카이 요자부로 1,200엔, 하시오카 도모지로 690엔, 이구치 류타 690엔, 가토 주조 420엔이었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무한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유한책임을 졌다.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사무원과 감독원을 두었다. 감독원은 독도 현장에서 인부를 지휘하는 일체의 업무를 맡았다. 사무원 1명이 금전의 출납 사무를 처리하고, 감독원 2명이 '죽도'로 출장을 가서 인부를 지휘하고 강치의 포획 · 제조 · 번식 · 보호 등을 담당했다.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회의와 관련된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했다. 사업 방법, 이익 배당 등은 과반수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런데 제10조 강치의 번식과 보호는 나카이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는 사업 방법에 대한 회원들의 과반수 결정에 배치되어 나중에 강치의 포획 규모에 대한 나카이의 독단적인 결정을 불러왔다.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사업 방법, 예산 결산, 이익 배당, 임원의 보수, 위로와 상여, 포획물 판매 등에 대한 평결이 필요했다.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영업 순이익 총액의 2할을 적립했다.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나카이 요자부로가 관청에 설명한 의견에 기초하여 강치의 번식과 보호 방법을 실행하게 되었다.

그 밖에 사원권의 상실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법령 또는 정관을 어긴 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죽도 강치 어업 허가를 취소당한 자 등은 사원권을 상실했다.[6]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의 정관을 살펴보면 나카이 요자부로는 출자액의 규모, 강치 포획 방법의 결정 등에서 다른 사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기에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를 주도할 수 있었다.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사무원과 감독원을 배치하고, 영업 순이익의 2할을 적립하여 회사의 안정성을 꾀했다.

나카이 요자부로를 비롯한 4명은 1905년 6월 3일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 사원 내

---

6 中井養三郎 · 井口龍太 · 橋岡友次郎 · 加藤重造, 明治 38年(1905) 6月 3日, 「竹島漁獵海驢合資會社建立御届 別紙 竹島漁獵海驢合資會社定款」,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규를 별지(別紙)로 작성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05년 5월 20일 강치 어업 허가 요청서가 사원 내규의 기초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첫째, 1905년 5월 20일 강치 어업 허가 출원 때 4명이 서로 체결한 규약은 사원 내규로써 그 효력을 지녔다. 둘째, 사원의 통상총회는 매년 사업을 개폐할 때에 개최된다.[7]

나카이를 비롯한 4명은 1905년 6월 3일 공동 어업자의 상속인의 권리도 규정했다.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사망과 파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아 죽도 강치 공동 포획권을 상실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상속인이 권리와 이익을 취득하도록 서로 계약했다.[8]

나카이 요자부로, 이구치 류타, 하시오카 도모지로, 가토 주조는 1905년 6월 12일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 대표자로 나카이가 선정되었다고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다케요시에게 보고했다.[9]

나카이, 이구치, 하시오카, 가토는 1905년 6월 13일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문서를 오키도사(隱岐島司) 히가시 분스케(東文輔)에게 보냈다. 나카이 등에 따르면 4인은 협의를 거쳐 공동사업으로 '죽도' 강치 어업을 일찍이 출원했다. 공동조건에 기초하여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정관과 부속되는 여러 규약을 체결했다. 1905년 6월

---

7 "3조. 분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각기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조. 판매물의 대금은 중개상이 직접 회사로 송달한다. 5조. 이중 잠금장치를 한 금고를 비치하고, 긴요한 서류와 은행에 맡기지 못한 현금을 보관한다. 6조. 본 내규를 어긴 사람은 본사의 사원권을 상실한다. 7조. 본 내규는 평결에 의해 개정 증보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을 서로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中井養三郎 · 井口龍太 · 橋岡友次郎 · 加藤重造, 明治 38年(1905) 6月 3日, 「竹島漁獵海驢合資會社建立御届 別紙 竹島漁獵合資會社々員內規」,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8 中井養三郎 · 井口龍太 · 橋岡友次郎 · 加藤重造, 明治 38年(1905) 6月 3日, 「竹島漁獵海驢合資會社建立御届 別紙 定約證」,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9 中井養三郎 · 井口龍太 · 橋岡友次郎 · 加藤重造-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 38年(1905) 6月 12日, 「代表者届」,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이 문서는 "5월 14일 도장을 찍어 진달(進達)을 마침"이라고 기록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일 재판소 등록을 마쳤다.[10]

나카이는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자 1905년 독도에서 강치 어업에 본격적으로 종사했다. 그 결과에 대해서 1905년 10월 30일 강치 어업활동에 관한 보고서(1차 보고서)를 제출했다.

나카이는 다수의 밀렵자가 매우 심할 정도로 강치를 남획하자 그들을 쫓아버렸고,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가 보호장을 설치하고 포획을 제한했다고 보고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1905년 어장 인부의 태만 및 동맹파업의 이유는 번식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사의 어장 규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강치 번식기인 6월에 인부들은 주로 수컷을 포획하고 암컷의 포획을 크게 절제했다. 보통 강치 1마리에서 나오는 기름은 평균 1상자(2두) 정도였다.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살찐 강치 약 190마리의 지방을 모두 썩혔고 품질이 나쁜 기름 510여 상자를 겨우 만들었다.

나카이에 따르면 1905년 7월 10일 인부의 동맹파업을 진정시킨 뒤 강치 포획이 늘어났지만, 7월 14일에 이르러 식염이 부족해 포획을 할 수 없었다.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1905년 8월 2천여 관(貫, 1관=3.75킬로그램)의 소금에 절인 가죽을 오사카(大阪)로 수송하여 판매했다. 그런데 밀렵자들의 상품은 오사카에서 다수의 위탁업자를 통해 판매되었다. 밀렵자들은 100파운드에 15엔 이상의 가격을 10엔 전후로 낮춰 싸게 팔았다.

나카이는 1905년 어업활동의 출자금이 2,996엔 57전 9리, 수익금이 753엔 18전 5리, 부채액이 금 2,243엔 39전 4리라고 보고했다.[11]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1905년 인부들의 파업 등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보았다.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1905년 6월 독도 강치의 밀렵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다.

---

10 中井養三郎 · 井口龍太 · 橋岡友次郎 · 加藤重造–隱岐島司 東文輔, 明治 38年(1905) 6月 13日, 「竹島漁獵海驢合資會社建立御届」,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11 竹島漁獵合資會社代表社員別中井養三郎, 明治 38年(1905) 10月 30日, 「竹島海驢漁業成績」,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밀렵자들은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의 선박이 독도에 상륙하자 자신들의 어업 도구를 합자회사 어부에게 팔고 물러났다.[12]

나카이는 다수의 밀렵자가 독도에 밀항하여 강치를 불법적으로 포획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카이는 암컷의 포획을 절제하는 등 최대한 강치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다고 보고했다. 회사의 강치 보호 정책에 반대한 어부들의 동맹파업으로 손해가 막대했는데, 오사카에서 강치를 판매했지만 밀렵자들의 낮은 가격에 밀려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나카이는 향후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1907년 7월 11일 나카이는 1905-1906년 독도 어업 관련 '업무집행전말(業務執行顚末)' 보고서(2차 보고서)를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에게 제출했다.[13] 이 중 1905년 상황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나카이는 1905년 독도 어업의 실패 요인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나카이는 공동 참여한 사원들이 예전 밀렵으로 인한 손해를 본사에 떠넘기고 자본금 불입을 거부하여 회사 운영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1905년 영업 계획은 장래에 필요한 생산품의 판로를 확장하고 가격을 인상한 것 이외에는 모두 판매의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이유는 강치 생식 개시, 업무 착수 지연, 필수품의 결핍, 밀렵의 영향, 자본금 부족 등 때문이었다. 나카이에 따르면 1905년 6월 9일 강치(海馬)가 독도에 이미 떼를 지어 몰려와서 생식을 시작한 상황이었다. 나카이는 성장한 수컷을 고르고 좋은 품질의 기름을 채취할 시기가 이미 늦었다고 판단했다.

---

12 "밀렵자는 오래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아 괴로워했다. 앞에 적은 5-6월의 교체기에 이르러 강치가 많이 몰려오자 신바람이 나서 남획을 다부지게 하려고 했다." "죽도어렵합자회사의 모선(母船)이 와서 경관이 상륙하자, 그들은 실망하고 당황하여 어사와 엽구를 회사에 팔아넘기고 물러갔다." "회사의 모선은 6월 8일 이 섬에 도착한 뒤, 6월 12일 이 섬을 출범하여 귀항했다." "모선이 정박하고 있는 동안 반나절에 8척 이상의 수컷 13마리를 포획했다."(島根縣隱岐島廳, 明治 38年(1905), 「竹島海驢實況覺書」,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작성자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지만 나카이 요자부로일 가능성이 높다.

13 竹島漁獵合資會社 代表社員 中井養三郎-隱岐島司 東文輔, 明治 40年(1907) 7月 11日, 「會社營業報告」,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나카이는 정부의 내부 명령을 받자마자 신속히 착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회사 설립 이전에 밀렵을 했던 1–2명의 사원이 밀렵 중에 입은 손해를 회사에 떠넘기고 회사의 자본금 불입 의무를 면제하려고 소동을 일으켰다.

나카이는 공동 참여한 사원들이 물품을 예정대로 공급하지 않아 연료과 식염의 부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기름과 비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는 처음부터 공급량이 적었기 때문에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연료 부족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사원 한 명이 자본금을 불입하는 대신에 어장으로 직접 수송하기로 약속한 땔감과 식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현장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지 못했다. 그 사원은 자신이 소유한 운반선을 회사에 제공하면서, 개인 용도로 쓰거나 비싼 임차료를 요구하여 분란을 일으키고 항해를 지체시켰다.[14]

나카이는 자본금 모집과 판매의 어려움도 겪었다고 주장했다.

나카이는 3천 엔 중 겨우 800엔만 모집했다고 보고했다. 1–2명의 사원이 나머지 금액을 청구해도 응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나카이는 사업 집행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고, 1905년 가죽 판매도 실패했다. 그럼에도 나카이에 따르면 오사카 판로가 커다란 자극을 주었는데, 향후 홋카이도까지 판로를 확장할 수 있었다.

나카이는 1906년 가죽 판매 예약건으로 오사카 피혁 상인 아이사카 고헤에(合坂五兵衛)와 미리 교섭했다. 나카이는 러일전쟁 중 최고 가격인 암컷 가죽 100파운드에 5엔을 관철시켰다. 나카이는 강치 기름과 비료를 오사카나 도하쿠군(東伯郡)으로 보내 판매했다.[15]

---

14 그 사원은 나카이와 대립한 이구치 류타였다. 최근 발굴된 개인 위패에 따르면 그 사원은 이구치 류타로(井口龍太郎)로 보도되었다(『山陰新聞』, 2018. 7. 3). 그럼에도 필자는 시마네현 공문서에 기록된 이름인 이구치 류타(井口龍太)를 사용했다.

15 竹島漁獵合資會社 代表社員 中井養三郎, 明治 40年(1907) 7月 11日, 「會社營業報告 別紙 明治 38年(1905) 度業務執行顚末」,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나카이는 1906년 4월 28일 '죽도경영에 관한 진정서(竹島經營ニ關スル陳情書)'까지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나카이는 적지 않은 사재를 투자했고, '죽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도록 청원했다. 그 이유는 국가와 자신을 위해서 죽도를 질서 있게 경영하고 이익의 원천을 영구히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청원을 받아들여 '죽도'를 영토로 편입하고, '죽도'의 주산물인 강치의 어업을 오로지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에만 허가했다. 나카이는 자신의 청원에 따라 일본 정부가 '죽도'를 영토로 편입했다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새로운 영토편입을 의미했다.

나카이는 자신이 사재를 털어 '죽도' 영토편입을 청원했다고 주장했다. 나카이는 일본 이익의 원천을 보전하는 것이 '죽도' 편입이라고 생각하면서, '죽도'를 경영하여 이익을 보전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죽도' 경영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여 '죽도'의 영토편입이 일본의 국익과 직결된다고 판단했다.

나카이는 '죽도'에서의 강치 어업을 독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만일 '죽도'에서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카이는 강치 어업이 심각한 방해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강치의 군집과 번식에 교란을 일으켜 강치가 멸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업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 다른 사람에게 사업 허가를 내준다면, 나카이는 아무 소득 없이 영업이 중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카이는 '죽도'의 독점 어업권, 장기 대여, 해면 전용 면허 등의 출원을 오키도사에게 요청했다.[16]

나카이는 '죽도' 독점 어업권의 연장을 오키도사에게 청원했다. 나카이는 오키도사가 다행히 "이해가 관계되는 점, '죽도'가 영토로 편입된 유래" 등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독도 편입에 오키도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16 竹島漁獵合資會社代表社員 中井養三郎–隱岐島司 東文輔, 明治 39年(1906) 4月 28日, 「竹島經營ニ關スル陳情書」,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 결국 일본의 독도 편입은 나카이 개인의 청원이 아닌 지방관리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독도의 장기 임대 및 해면 전용 면허 등의 어업 독점권은 일본 정부의 영향력이 없다면 획득할 수 없는 권한이었다.

나카이는 1906년 4월 28일 '죽도경영상필요계획(竹島經營上必要計劃)'도 함께 작성했다. 나카이는 강치 포획 시설, 배의 정박 시설, 어사 만들기, 식수 개발 장치, 강치 판매지의 개발, 기타 수산물 채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나카이는 '죽도'에 특별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죽도' 주위 암벽으로 사냥하기 위한 길, 엽정이 닿을 장소, 어사에서 분화구 안의 자갈밭에 이르는 길, 강치가 상륙하는 곳의 길목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 등이 그것이었다.

나카이는 강치 판로의 발전과 확장을 계획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강치의 가죽, 기름, 비료 등은 충분히 판로를 개척하여 가격을 정해놓고 판매해야 한다. 회사는 창업의 고통을 견뎌야 했고 많은 이익을 희생했다. 홋카이도로 사원을 파견하여 판매를 개시했고, 오사카에서 매매상의 폐습 타파를 시도했다.

나카이는 선박의 정박과 체류 설비를 준비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죽도' 부근 해저는 높고 험한 암초가 있어서 닻을 던지면 걷어 올리기 어렵고, 걸핏하면 닻줄이 걸려 끊어졌다. 때문에 쇠사슬과 부표를 매단 닻을 바다 속에 설치해야 했다.

나카이는 어사, 통로, 식수 시설을 만들 계획도 수립했다. '죽도' 한복판에 있는 조금 평평한 곳을 뚫어서 좀 더 완전한 가옥을 짓고, 해변에서 이어지는 통로를 뚫는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엽철로 만든 거대한 깔때기를 설치하여 빗물을 받아 마실 물을 해결하려 했다.[17] 나카이는 강치 어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도 환경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나카이는 사원들이 자본금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독도 어업활동이 실

17 竹島漁獵合資會社代表社員 中井養三郎, 明治 39年(1906) 4月 28日, 「竹島經營上必要計劃」,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도 어업의 실패가 동료들 때문이라며 그들을 비난했다. 나카이는 오사카와 홋카이도까지 강치 판로를 준비했다.

나카이는 창업 이후 회사의 이익이 희생당했다고 주장했다. 나카이는 정박 관련 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선착장 건설이 최대 급선무라고 파악했다. 그는 물의 채취 방안을 고민했다. 그는 강치 포획을 위해서 섬 한복판을 뚫을 계획까지 세웠는데, 이는 독도의 자연을 심하게 훼손하는 일이었다. 나카이는 '죽도'의 이익 원천을 영구히 보전하려면 반드시 강치의 포획 및 수산물 채취를 절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독도 어업권을 독점하려 했다.

Ⅲ. 1906년 '죽도어업조합'의 조직과 운영

1906년 6월 죽도 경영에 대한 진정서와 계획서를 제출한 나카이 요자부로 등은 '죽도어업조합(竹島漁業組合)'을 창립했다.

1906년 6월 20일 나카이 요자부로의 집에서 죽도어업조합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나카이가 죽도어업조합의 이사와 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나카이와 참석자들은 죽도어업회사 설립을 의결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참석자는 제1호 의안인 죽도어업조합규약, 제2호 의안인 1906년 경비 수지 예산과 부과징수법 등을 원안대로 결의했다. 다수 득표자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선출되었는데, 이사는 나카이 요자부로, 감사는 가토 주조, 의장은 나카이 요자부로였다. 출석자는 하시오카 도모지로(橋岡友次郎), 가토 주조(加藤重造), 이구치 류타(井口龍太)였다.[18]

---

18 中井養三郎-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 39年(1906) 6月 20日, 「竹島漁業組合設置 別紙 決議錄」, 『竹島貸下 · 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나카이 등은 1906년 6월 20일 죽도어업조합의 규약(規約)을 결의했다.

총칙을 살펴보면 본소(本所)는 시마네현, 지소(支所)는 죽도(竹島)라고 규정했다.

1조 본 조합은 어업권을 향유하고 행사하여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2조 본 조합의 명칭은 죽도어업조합(竹島漁業組合)이다.

3조 본 조합의 사무소는 본소(本所)를 시마네현 스키군 사이고정 오아자 니시마치 아자 사시무코 23번지, 지소(支所)를 '죽도(竹島)' 제2의 도서(島嶼)에 둔다.

4조 본 조합의 지구는 시마네현 오키섬 소속 '죽도(竹島)' 구역에 따른다.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은 본소(本所)와 지소(支所)의 주소 또는 가주소를 둔 어업자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이사에게 전달해야 했다. 그만큼 이사인 나카이의 권한은 막강했다.

총칙을 살펴보면, 6조 본 조합의 '지구 안에 주소 또는 가주소'를 둔 어업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 7조과 8조 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뜻을 이사에게 말해야 했다. 9조 조합원이 탈퇴하려고 할 때 이사는 조합원 명부에서 그 사람의 성명을 삭제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했다.

어업권의 행사와 방법을 살펴보면 죽도어업조합은 기존 강치 어업에서 모든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죽도어업조합은 "김, 미역, 우뭇가사리" 등을 특정 시기에 공동 채취하기로 규정했고, 공동 채취를 어길 경우 "5엔 이하의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죽도어업조합의 이사는 "김, 미역, 우뭇가사리"의 공동 채취 기간을 조합원에게 통지했다. 죽도어업조합은 조합비를 지연하는 조합원에게 하루당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까지 마련했다.[19] 죽도어업조합은 전체적으로 '죽도' 어업권의 확장과

19 "3장 이사 감사 사무원. 10조 본 조합에 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와 감사는 1년 이상 본 조합의 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나카이 요자부로의 권한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죽도어업조합(竹島漁業組合)은 1906년 6월 20일 조합원의 경비금 규정도 마련했다. 나카이는 조합권의 의무를 평등하게 만들면서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조합원 5명은 조합 경비금 15엔을 동등하게 부과했다. 조합원은 죽도어업조합 설립 인가 이후 20일 이내에 3엔씩을 징수했다.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징수한 경비를 반환하지 않고, 새 조합원이 가입하는 경우 그 부담액을 달로 나누어 징수할 계획이었다.[20]

나카이를 비롯한 5인은 1906년 6월 25일 '죽도어업조합' 설치 신청서를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다케요시에게 제출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어업조합규칙 제7조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가 열렸다. 나카이는 죽도어업조합의 규약과 경비예산, 부과징수법 등을 결의하고, 증명하는 서류와 결의록 등본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했다.[21]

구 안에 주소 또는 가주소를 두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1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선을 막지 않는다. 보궐선거에 의해 취임한 이사 또는 감사는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다.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했을 때는 후임자의 취임 때까지 여전히 그 직무를 수행한다." "4장 회의. 16조 총회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 두 종류로 한다. 통상총회는 매년 1회 1월 또는 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개최한다. 가.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감사가 어업조합규칙 24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밝히고 청구할 때." "6장 어업권의 향유, 행사와 어업 방법. 26조 본 조합이 향유하는 어업권의 행사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지선 수면 전용 어업권에 따라 어업조합원 각자 또는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기로 한다. 나. 김, 미역, 우뭇가사리 등은 날짜를 정해서 일정한 시기에 채취하기로 한다. 다만 그 날짜는 이사가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中井養三郎-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 39年(1906) 6月 20日, 「竹島漁業組合規約」, 『竹島貸下 · 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이 문서는 작성 초안 날짜가 6월 20일이지만 7월 25일 시마네현의 수정 요구를 반영한 내용이었다.

20 中井養三郎-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 39年(1906) 6月 20日, 「竹島漁業組合設置 別紙 明治 39年度經費賦課徵收方法」, 『竹島貸下 · 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21 "죽도어업조합 설치 발기인: 스키군 사이고정 오아자 니시마치 아자 사시무토 23번지 죽도가주자(竹島仮住者)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 오치군 고카촌 오아자 구메 274번지 동상 하시오카 도모지로(橋岡友次郎), 스키군 사이고정 오아자 니시마치 아자 야비 27번지 동상 가토 주조, 동군 나카촌 오아자 미나토 740번지 동상 이구치 류타(井口龍太), 동군 사이고정 오아자 히가시마치 136번지 동상 사마타니 다카(島谷)."(中井養三郎-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 39年(1906) 6月 25日, 「竹島漁業組合設置」, 『竹島貸下 · 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나카이는 '죽도가주자(竹島仮住者)'라고 하여 실제 독도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이것은 현지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는 일본 어업조합규칙 제6조와 제7조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오키도사 히가시는 1906년 6월 26일 나카이 등의 '죽도어업조합' 신청 과정을 기록하면서 허가 관련 문서를 작성했다.

히가시에 따르면 스키군 사이고정 나카이 요자부로 외 4명은 '죽도어업조합' 설치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조합회원의 주소가 모두 본도(本島)로 되어 있어, 규칙 제6조와 제7조에 저촉되었다. 히가시에 따르면 "원래 죽도는 주소를 옮겨갈 곳이 아니었다." 1903년부터 여름철 바닷가 날씨가 좋으면 어업에 종사했고, 가주소(仮住所)를 정하여 영업했다. 조합원 이전에는 '죽도' 어업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히가시는 죽도어업조합을 인가해줄 것을 시마네현에 요청했다.[22]

그런데 히가시는 "조합원의 주소가 모두 본도(本島)로 되어 있어서 규칙 6조와 7조에 저촉된다"라고 기록했다. '죽도'는 주소지가 아니므로, 죽도어업조합은 어업조합 규칙에 위배되는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다. 더구나 히가시는 독도 주소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여름철에만 독도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죽도어업조합 이외의 사람이 독도 어업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히가시는 독도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라고 파악하면서도, 일본 어업조합규칙을 위반하면서 '죽도어업조합'에 독도 어업권의 특혜를 주려고 했다.

그런데 시마네현 제3부장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는 1906년 7월 25일 죽도어업조합 설립 규정의 수정을 오키도사 히가시에게 지시했다. 문제의 핵심은 조합원의 '가주소' 등의 표시였다.

---

22 隱岐島司 東文輔, 明治 39年(1906) 6月 26日, 「甲農92號」, 『竹島貸下 · 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진자이 요시타로에 따르면 6월 26일 갑농(甲農) 92호(號)로 부내(部內) '죽도어업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가 전달되었다. 하지만 진자이는 해당 서류와 첨부 서류에서 일부 내용을 정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죽도어업조합 규약에 '가주소'를 표시할 것, '지구 안에 주소 또는 가주소'를 삽입할 것, '보궐선거'를 규정할 것 등의 서류 보완을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첫째, 신청 서류상 발기인 각자는 '죽도'에 가주소를 가지고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어업조합규칙 제6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이었다. 즉 '죽도' 거주자는 발기인으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둘째, 규약 제6조와 제10조에서 '지구 안에' 다음에 '주소 또는'이라는 네 글자를 삽입해야 한다. 그 이유는 향후 누군가 '죽도'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미리 삽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셋째, 제11조 1항 "보궐선거에 의해 취임한 이사 또는 감사는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다"라는 1개 항을 추가한다. 그 이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임원이 사직했을 때는 보궐선거가 필요하며, 보궐자의 임기를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조합 설립 통지서 끝에 동의자의 서명에 이구치 류타의 날인이 빠져 있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23]

진자이 요시타로는 세부적인 내용 보완을 지시하여 죽도어업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특히 조합원이 '죽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강조하여, '죽도어업조합'의 합법성을 보완하려고 노력했다. 실제 나카이 요자부로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독도 거주자가 아니면서 어업조합을 설립했다. 이러한 사실은 위법한 어업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시마네현도 '죽도'에 주소가 없다는 사실이 불법적인 어업과 연결된다고 판단했다. 시마네현은 죽도어업조합 규약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죽도어업조합에 시마네현의 직접적인 개입 흔적

23 島根縣 第3部長 事務官 神西由太郎–隱岐島司 東文輔, 明治 39年(1906) 7月 25日, 「農1095號」, 『竹島貸下 · 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조합원인 이구치 류타는 죽도어업조합 신청서 날인을 거부하여 자신의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1906년 10월 20일 시마네현 제3부장 사무관 후지모토(藤本)는 '죽도어업조합' 조합원의 '죽도' 거주 문제를 다시 한 번 오키도사 히가시에게 지적했다.

후지모토에 따르면 사이고정 나카이 요자부로 외 4명이 '죽도어업조합' 설립을 신청했다. 그들은 '죽도'가 종래 무인도라서 어업 계절에 한정하여 5-6개월 동안 출어했다. 이들은 '죽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며, 어업법 제18조에 따라 어업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24]

후지모토는 '죽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조합원의 불법성을 인정했다. 후지모토는 '죽도'가 무인도이고 나카이가 한정된 시기에만 '죽도'에서 어업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시마네현은 나카이 등의 조합원이 '죽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인물로 파악했다. 시마네현 관리는 어업법 제18조에 근거하여 나카이가 죽도어업조합을 설립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시마네현조차도 죽도어업조합을 불법회사로 규정했다.

1907년 7월 11일 나카이는 1905-1906년 독도 어업 관련 '업무집행전말(業務執行顚末)' 보고서(2차 보고서)를 오키도사 히가시에게 제출했다.[25] 이 중 1906년 상황을 파악하면 나카이는 1906년 어업 영역이 어려웠지만 전년도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었다고 기록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1906년 사업은 조금 순조로운 편이었다. 처음에는 자본이 부족

---

24 島根縣 第3部長 事務官 藤本-隱岐島司 東文輔, 明治 39年(1906) 10月 20日, 「農1640號」,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유미림에 따르면 시마네현은 '죽도'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어업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나카이의 '죽도어업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일본의 어업법은 19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본 어업법 제18조에 따르면 "일정 구역 안에 주소를 지닌 어업자는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어 어업조합을 설치할 수 있다."(유미림, 「1905년 전후 일본 지방세와 강치 어업, 그리고 독도」, 『영토해양연구』 9, 2015, 30쪽)

25 竹島漁獵合資會社 代表社員 中井養三郎-隱岐島司 東文輔, 明治 40年(1907) 7月 11日, 「會社營業報告」,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고 신용이 땅에 떨어져 업무 착수에 큰 곤란을 겪었지만 전년도에 값비싼 희생을 치러서 얻은 판로 확장과 가격 인상 덕분이었다. 나카이는 1906년 이익을 가지고 전년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었다. 기구, 건축물, 생산물 판매 잔고, 물품 사용 잔고 등을 고려하여, 나카이는 1,300엔 정도 부족한 금액을 거래처에서 빌렸다.[26]

나카이는 1906년 3월 진자이 사무관과 히가시 오키도사 등의 시찰 이후 '죽도'의 이권을 독점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카이는 자본금 모집, 망루 불하, 어장 파견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나카이는 시찰이 끝나자 서둘러 감수인을 어장에 파견할 것을 대리자에게 부탁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자금을 융통할 길을 찾으면서 망루 불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월에 도하쿠군(東伯郡)과 마쓰오카(松岡)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 하지만 자금 융통에 실패했다.

나카이는 1906년 4월 13일 기쿠모토 겐타로(菊本源太郎) 외 6명의 인부를 파견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1906년 5월 23일 파견한 인부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박이 출항했다. 선박의 보고에 따르면 강치(海馬)의 군집이 예년에 뒤지지 않았다. 선박은 1906년 5월 27일 인부 등이 채취한 각종 수산물(400엔 정도)을 싣고 돌아왔다. 나카이는 신용을 회복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다. 어업의 철수는 8월 중순에 준비했지만 순풍이 불지 않아 9월 중순까지 끌었다.

나카이는 1906년 5월 독도에서 밀렵자의 어업활동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 나카이는 죽도 어업 독점권을 위협하는 밀렵자와 여러 차례 충돌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5월 초순 아마쿠사(天草) 어부 30명이 '죽도'로 와서 강치의 군집을 크게 방해했다. 수적으로 적은 나카이의 인부들은 선의로 교섭하려다 무시당하고 폭행을 당했다. 기

---

26 竹島漁獵合資會社 代表社員 中井養三郎, 明治 40年(1907) 7月 11日, 「會社營業報告 別紙 明治 39年(1906) 度業務執行顚末」,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쿠모토 겐타로 외 6명의 인부가 맞대응하여 겨우 밀렵자의 의지를 꺾을 수 있었다.

나카이에 따르면 10월 초순 밀렵자가 밀항한다는 소문을 듣고, 기쿠모토 외 5명의 인부가 '죽도마루(竹島丸)'를 타고 출발했다. 인부들은 밀렵자를 볼 수 없었지만, 죽도마루는 강한 바람과 파도를 만나 선체와 선구가 파손된 채 겨우 귀항했다.[27]

1907년 7월 14일 나카이 요자부로는 '죽도'에서의 강치 어업활동을 진행하면서 사할린 해마도(海馬島) 강치 어업의 실태 파악에 관한 협조를 오키도사 히가시에게 요청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강치 가죽의 판로 확장과 관련하여 홋카이도의 강치 어업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그는 가죽의 제조법을 파악하고 양질의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여 다수의 거래를 확보하고 이익을 늘리려고 했다.

종래 가라후토청(樺太廳) 해마도가 강치의 포획을 금지했는데, 나카이는 향후 강치 포획이 허용될 경우 사할린의 산출액을 확인하려고 계획했다.

나카이는 히가시가 해마도 관할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첫째, 해마도 강치 포획은 해금이 되었는지, 그리고 허가 여부에 대한 방침은 무엇인가? 둘째, 해금되었다면 포획에 제한이 있는지, 제한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셋째, 강치가 해마도에 군집하는 모습과 상황, 시기, 군집의 소멸과 성장은 어떤가? 넷째, 해마도의 강치 서식 및 포획에 관한 모든 상세 상황은 어떤가 등이었다.[28]

나카이는 사할린의 강치 서식과 포획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 이유는 '죽도'에서의 강치 판매 방법, 사할린에서의 강치 사업계획 등을 타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실제 히가시는 1907년 7월 16일 삼농(三農) 164호로 해마도의 강치를 어획하는 건을 사할린청(樺太廳)에 조회했다.

---

27 竹島漁獵合資會社 代表社員 中井養三郎, 明治 40年(1907) 7月 11日, 「會社營業報告 別紙 明治 39年(1906) 度業務執行顚末」,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나카이는 순풍이 불지 않으면 독도에 갈 수 없는 상황을 기록했다.

28 竹島漁獵合資會社 中井養三郎-隱岐島司 東文輔, 明治 40年(1907) 7月 14日, 「願書」,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할린청 제1부(第1部)는 1907년 8월 7일 사할린 해마도의 강치 어업 현황에 대해 시마네현 오키도청에 답변했다. 사할린 담당자는 해마도에 강치가 약 2천 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으며, 강치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사할린청에 따르면 강치의 포획은 현행 어업규칙에서 허가되지 않았으며, 향후 허락 여부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사할린청에 따르면 강치는 해마도 서쪽 연안의 깎아지른 절벽 아래 모래사장에서 약 반 리 정도 떨어진 곳에 서식했다. 그 밖에도 섬 주위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암초에 무리지어 서식했다. 수가 많을 때는 약 2천 마리 정도였다. 강치는 여름과 가을 두 시기에 나타났고, 여름철에 새끼를 낳았다. 아이누 원주민들은 매년 2월과 7월에 도항하여 칼자루가 달린 작살을 던져서 포획했다.[29]

나카이는 1908년 4월 독도 어업활동의 시작을 보고했다.

'죽도마루'는 1908년 4월 13일 오전 9시 인부 7명을 태우고 사이고를 출발하여 4월 15일 새벽 '죽도'에 도착했다. 나카이는 4월 17일 아침 '죽도'를 출발하여 19일 오전 10시에 귀항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해안에 붙어 있는 몹시 조악한 어사 1채는 파도 때문에 파괴되고 유실되었다. 파도가 어사를 덮친 흔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망루 건축물, 소금 300가마니, 소형선 5척 등은 무사했다.[30]

결국 나카이는 1907년 오키도청을 통해서 사할린의 강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강치의 홋카이도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사할린의 강치 포획을 준비할 수 있었

---

29 樺太廳 第1部-島根縣 隱岐島廳, 明治 40年(1907) 8月 7日, 「樺官382號」, 『竹島貸下 · 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30 竹島漁獵合資會社 代表社員 中井養三郎, 明治 41年(1908) 4月 20日, 「竹島狀況報告」,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일본에서 강치 등의 수요는 전시까지 확대되었다. 주식회사 교육수족관(株式會社教育水族館)은 1907년 2월 1일 3월 예정인 도쿄 권농 박람회에 전시할 강치 등을 隱岐島司 東文輔에게 요청했다. "2월 말 또는 3월 초순까지 강치, 바다표범, 물개 등을 두세 마리씩 얻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잡비 명목으로 금 20엔을 보내드리니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지출해주시기 바랍니다."(株式會社教育水族館-隱岐島司 東文輔, 明治 40年(1907) 2月 1日, 「農192號」, 『竹島貸下 · 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 나카이는 독도에 거주하지 않았고, 어업활동을 한정된 시기에만 전개했다. 나카이의 죽도어업조합은 독도에 거주하거나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어업조합규칙에 위반되었다. 나카이는 겨울철 어업활동을 중단했고, 소금과 배 등을 '죽도'에 남겨놓고 봄철에 다시 어업활동을 전개했다.

그 후 나카이 요자부로의 장남 나카이 요이치(中井養一)는 1953년 7월 10일 마쓰에시(松江市) 기타호리초(北堀町) 93번지 자신의 집에서 죽도 어업권을 하치만 조시로(八幡長四郎)에게 양도한 과정을 증언했다.

나카이 요이치는 나카이 요자부로가 자금난에 시달린 것은 제빙회사 설립 때문이었는데, 결국 고리대금을 빌렸다가 강치 어업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나카이 요이치는 나카이 요자부로가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 대표에서 물러난 이유와 자신이 어업권을 상실한 과정을 기록했다.

나카이 요이치에 따르면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나카이 요자부로가 다이쇼 3-4년(1914-1915)경 치시마(千島, 쿠릴) 어업에 전념하게 되면서 회사 명의를 요이치(養一)로 변경했다.

나카이 요이치에 따르면 아버지 나카이 요자부로는 사이고정에서 제빙회사를 세우면서 자금 부족을 겪었다. 그래서 하치만 나가시로, 하시오카 도모지로(橋岡友次郎), 이케다(池田) 등에게 고리대금을 빌렸는데, 기한이 지나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했다. 그 결과 강치 어업권을 잃게 되면서 죽도 도항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카이 요이치는 고베의 브로커였던 나카다 다타이치(仲田忠一)와의 분규에 휘말렸다. 시마네현 현회의원 하치만이 시마네현 수산과장 노사키(野崎)를 설득했는데, 그 결과 요이치는 현청에 불려나가 '죽도 어업권'을 하치만 조시로에게 양도해야 했다. 그 당시 교섭자는 현재 시마네현 현회의원 나카가와 히데마사(中川秀政)였다.

나카이 요이치는 하치만 나가시로의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도 어업권'을 넘겨주었다고 주장했다. 나카이 요이치에 따르면 하치만은 현회의원 신분으로 시마네현 수산과장을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죽도 어업권을 획득했다.[3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V. 나카이의 강치 어업의 독점과 남획

1907년 6월 27일 나카이 요자부로와 함께 죽도 관련 회사와 조합 설립에 참여한 이구치 류타는 폐업신고서를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다케요시에게 보냈다.

이구치는 나카이 요자부로 외 2명과 공동으로 죽도 강치 어업 허가를 받았지만 어업권을 포기하고 폐업을 신고했다. 이구치 류타는 스키군(周吉郡) 나카촌(中村) 오아자 미나토(大字湊) 102번지에 거주하고 있었다.[32]

시마네현에 따르면 이구치 류타는 자본가 나미 칸이치(永海寬市)의 지원 아래 1904년 '죽도'에서 강치 어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자본가 나미 칸이치는 이구치 류타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제로 '죽도'로 건너가 포획에 종사한 사람은 이구치였다. 이구치는 1904년 5월 14일 '죽도'에 도착하여 어사를 짓고 어업에 종사했지만, 바람과 파도 때문에 5월 24일까지 휴업할 수밖에 없었다. 5월 25일부터 해면이 조금 평온해지자 5월 26일 처음으로 강치 포획에 착수했다. 6월 20일까지 '죽도'에 체류하고 6월 24일 사이고(西郷) 항구로 돌아왔다.[33]

그런데 1904년 강치 어업을 실행한 이구치 류타는 왜 강치 어업을 포기했을까?

이구치 류타는 1907년 7월 3일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시말상신서(始末上申書)'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이구치 류타는 강치의 번식과 포획이 국가경제에 중요한 사업이며 사업 방법을 전체 평결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1 나카이 요자부로의 장남 나카이 요이치(中井養一)는 1916년 5월 중학교를 졸업한 후 1929년까지 매년 강치를 잡으러 '죽도'에 도항했다고 주장했다(アジア局2課, 昭和 28年(1953) 8月, 「(秘) 竹島漁業の變遷, 中井養一 口述書」, 『昭和28年度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 44쪽(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나카이는 1929년까지 '죽도'에서 강치 어업을 부분적으로 지속했다.

32 井口龍太-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 40年(1907) 6月 27日, 「廢業申告書」, 『竹島貸下 · 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33 島根縣隱岐島廳, 「調査書 永海寬市」, 『竹島貸下 · 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구치에 따르면 나카이 요자부로 외 2명은 1905년 6월부터 1908년 5월까지 만 3년 동안 '죽도' 주위에서 강치를 포획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다. 해당 면허인 4명은 합자회사를 조직하여 '죽도' 어업에 종사했다. 이구치는 "강치가 중요한 해산물이고, 강치 번식과 포획이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중대한 일이다"라며 강치 어업을 개인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으로 연결시켰다.

이구치는 정부의 강치 어업 허가와 실제 강치 어업활동을 자세히 기록했다. 이구치에 따르면 당초 강치 어업의 면허를 출원할 때 포획 시기 및 숫자를 한정했다. 매년 암컷은 50마리, 수컷은 8척 이상 700마리, 새끼는 50마리로 한정했다. 모든 강치는 제한된 숫자만 포획해야 했고, 새끼 강치는 질병이나 장애로 생존 불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다. 모든 사원이 오로지 번식에 더욱 중점을 두고 서로 경계했는데,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사업 방법에 대해서 전체 평결을 거쳐 정관을 제정했다.

그런데 이구치는 "나카이 요자부로가 독단적으로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함부로 시기를 연장했다"라고 기록했다. 이구치는 나카이의 불법적인 강치 남획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구치에 따르면 나카이는 한 철에 암컷 강치 포획 수를 700마리로 늘려서 애초 제한 숫자를 초과했고, 실제로 암컷만 650마리를 남획했다. 그 뒤 나카이는 강치 어업을 거듭하여 남획한 숫자가 몇 백 마리가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이구치는 나카이의 불법어업이 "당국의 강치 번식 방침에 반대되고 회사 정관에도 어긋나며 장래의 원대한 계획을 그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구치는 나카이에게 여러 차례 반성을 촉구했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불법어업을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 나카이는 이구치와 뜻을 함께한 사원에게 '폭리'를 제시하여 무마시켰다. 이구치는 나카이가 "갈수록 정도가 지나쳐서 결코 깨닫지 못하고, 의무와 공덕을 알지 못한다"라고 비난했다. 이구치는 회사 정관을 검토하고 사업의 미래를 생각하면, 도저히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퇴사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구치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국가사회를 위해 남획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말상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34]

결국 이구치 류타는 나카이 요자부로가 무한책임을 악용하여 회사 정관을 무시하고 강치 포획 시기와 수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나카이는 강치 어업 관련 시기를 독단적으로 연장했고, 신고한 포획량을 초과하여 강치 멸종의 원인을 제공했다. 나카이는 다른 조합원들의 강치 포획량을 통제하면서 조합원에게 권한을 행사했다.

시마네현 제3부장 사무관 후지모토는 1907년 7월 9일 이구치 류타 관련 진상조사를 오키도사 히가시에게 지시했다.[35]

그러자 나카이는 1907년 7월 13일 이구치 류타를 반박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오키도청 서기(書記) 아리미 히로(有美孫)에게 전달했다. 나카이는 자신이 정해진 강치 포획량을 준수했고, 오히려 이구치가 강치 남획을 주도했다고 반박했다.

나카이에 따르면 1905년 강치 포획량은 총 771마리이고, 그중 수컷이 272마리, 암컷이 358마리, 새끼가 141마리였는데 62마리만 태아였다. 1905년 8월 중 '죽도' 어업이 끝나갈 무렵, 나카이는 해군이 사용하던 교토마루(京都丸)를 타고 어장으로 출장을 갔었다. 그런데 어장에 있던 사원 이구치 류타는 영업상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나카이가 정한 포획량을 지킬 수 없다면서, 제한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나카이는 회사로 돌아와 협의를 거쳐 1905년에 한정하여 강치 포획량 제한을 문제 삼지 않았고, 향후 포획량 제한을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나카이는 1906년 6월 총회를 열었을 때 사원 모두 의견 일치를 통해서 강치 번식과 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과 함께 포획량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나카이는 '죽도'에 군집하는 강치

---

34 井口龍太-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 40年(1907) 7月 3日, 「始末上申書」, 『竹島貸下 · 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35 島根縣 第3部長 事務官 藤本-隱岐島司 東文輔, 明治 40年(1907) 7月 9日, 「農1017號」, 『竹島貸下 · 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 1만 마리 정도였는데, 한 해 2천-3천 마리 이내로 제한된 포획 수를 확대하더라도 번식에 영향을 줄 만큼 중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36]

결국 나카이는 오히려 이구치가 강치를 남획했다고 주장했다. 포획량 제한에 불만을 가진 이구치는 먼저 제한 해제를 요청했다. 이구치는 이미 포획량 제한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강치를 포획했다고 주장했다. 나카이는 총회를 열어 강치 포획량을 늘리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나카이와 이구치는 강치를 남획했다며 서로를 비난했다. 이것은 최소한 두 사람 모두 '죽도' 이권을 둘러싼 강치 남획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무엇보다도 독도에 1만 마리 정도의 강치가 서식했는데, 나카이는 1905-1907년 3년 동안 불법적이고 집중적인 포획으로 '죽도'에 서식하는 강치의 수를 급속히 감소시켰다.

나카이와 이구치의 강치 남획을 둘러싼 책임 공방에서 누가 진실일까?

오키도 청장(廳長)은 1951년 10월 16일 나카이의 강치 어업에 대해 하시오카 다다시케(橋岡忠重)의 증언을 시마네현 총무부장 모토야마(本山修策)에게 보고했다.[37]

하시오카 다다시케는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 조합원 하시오카 도모지로의 아들이었다. 더구나 하시오카 도모지로는 나카이가 추천하여 조합원이 된 인물이었다.

---

36 竹島漁獵合資會社 代表社員 中井養三郎-隱岐島廳 書記 有美孫(아리미 히로), 明治 40年(1907) 7月 13日, 「答申」, 『竹島貸下 · 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유미림에 따르면 죽도어렵합자회사의 독도 강치 어획고를 살펴보면, 1904년 2,750마리, 1905년 1,004마리, 1906년 1,385마리(5,437엔), 1907년 1,600마리(5,930엔), 1908년 1,680마리(5,878엔), 1909년 1,153마리(4,344엔), 1910년 679마리, 1911년 796마리였다(유미림, 「1905년 전후 일본 지방세와 강치 어업, 그리고 독도」, 『영토해양연구』 9, 2015, 33-35쪽). 오쿠하라에 따르면 울릉도와 일본과의 수출 내용 중 강치 가죽은 1904년 800관(貫) 가격 600원(圓), 1905년 800관 가격 700원이었다(奧原碧雲),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1907; 유미림 역, 「해제」, 『독도와 울릉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61쪽). 기록마다 나카이의 독도 강치 어획고가 조금씩 다르다. 나카이는 실제 강치 어획고를 축소하여 시마네현에 신고했음에 틀림없다. 필자는 시마네현 공문서에 나온 어획고를 인용했다.

37 "10월 2일 총비호외로 조회하신 건에 대해 하시오카 다다시케(橋岡忠重)에게 청취했습니다." "1903년 이전 저의 아버지 橋岡友次郎, 백부 池田吉太郎, 고카(五箇) 촌(村) 오아자(大字) 히사미(久見) 구(區)의 유지(有志)가 매년 죽도로 출어해서 강치와 해산물을 채취했습니다."(隱岐島廳長-島根縣 總務部長 本山修策, 昭和 26年(1951) 10月 16日, 「總厚1652號 記」, 『昭和26年度 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시오카 다다시케는 나카이가 대규모 사업을 시작한 이후 5-6년 동안 상당한 이윤을 얻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하시오카에 따르면 연이은 남획으로 강치와 기타 어획물이 감소하고, 이익이 늘지 않았다.[38] 결국 나카이는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죽도'의 강치를 포획했는데, 5-6년 이후 지나친 남획으로 '죽도'의 강치 사업이 악화되었다.

하시오카 다다시케는 나카이의 죽도와 치시마(千島, 쿠릴열도) 어업의 실패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하시오카에 따르면 나카이는 사업을 전환해 치시마 어업까지 확장했지만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 곤란을 겪었다.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계속된 사업 부진으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죽도 어업은 나카이 개인이 독점하는 형태였다.[39]결국 하시오카 다다시케는 죽도 어업의 실패 원인이 나카이의 강치 남획이라고 생각했다.

Ⅴ. 나오며

1905년 6월 나카이 요자부로는 이구치 류타, 하시오카 도모지로, 가토 주조를 참여시켜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를 설립했다.

그런데 나카이는 회사 설립에 참여한 사원들이 자본금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

---

38 "나카이는 橋岡友次郎과 池田吉太郎에게 요청하여 두 사람이 사원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했습니다."(隱岐島廳長-島根縣 總務部長 本山修策, 昭和 26年(1951) 10月 16日,「總厚1652號 記」,『昭和 26年度 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39 隱岐島廳長-島根縣 總務部長 本山修策, 昭和 26年(1951) 10月 16日,「總厚1652號 記」,『昭和26年度 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일본 어민 하시오카 다다시케(53세)는 1953년 7월 9일 나카이가 '죽도' 어업을 독점했다고 구술했다. "1903년 전후에 경쟁적으로 강치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나카이 요자부로가 주목하고 강치 어업권의 독점을 기도했습니다."(アジア局2課,「(秘) 竹島漁業の變遷, 浜田正太郎 口述書」, 昭和 28年(1953) 8月,『昭和28年度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 33쪽(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 독도 어업활동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원들을 비난하면서 독도 어업의 실패가 자신이 아닌 동료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카이는 오사카와 홋카이도로 강치 판매의 활로까지 준비했다.

나카이는 정박 관련 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선착장 건설이 가장 급선무라고 파악했다. 그는 식수의 채취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그는 강치 포획을 위해서 섬의 한 복판을 뚫을 계획까지 세웠는데, 이는 독도의 자연을 심하게 훼손하는 일이었다. 나카이는 '죽도'의 이익 원천을 영구히 보전하려면 반드시 강치의 포획 및 수산물 채취를 절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독도 어업권을 독점하려 했다.

1906년 6월 죽도 경영에 관한 진정서와 계획서를 제출한 나카이 요자부로 등은 죽도어업조합을 창립했다. 그 후 나카이는 1907년 오키도청을 통해 사할린의 강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강치의 홋카이도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사할린의 강치 포획을 준비할 수 있었다. 나카이는 독도에 거주하지 않았고, 어업활동도 한정된 시기에만 할 수 있었다. 죽도어업조합은 독도에 거주하거나 주소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어업조합규칙을 위반했다.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시마네현의 특혜에 따른 나카이의 독점적 영업활동이 진행되면서 조합원의 반발과 탈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 더구나 나카이는 강치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강치를 남획했다.

이구치 류타는 나카이 요자부로가 무한책임을 악용하여 회사 정관을 무시하고 강치 포획 시기와 숫자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구치 류타에 따르면 나카이는 강치 남획을 주도하면서 동료들에게 회유와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나카이는 회사 어업규칙 및 정부 어업정책을 어겨가면서 강치 남획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나카이는 정부에 제출한 공식적인 보고서와 달리 실제 강치를 남획했고,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 이구치의 문서는 나카이 보고서의 사실과 다른 측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하시오카 다다시케도 죽도 어업의 실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원인을 나카이의 강치 남획에서 찾았다.

이구치 류타와 하시오카 다다시케는 나카이의 강치 어업의 남획과 독점을 기록과 증언으로 남겼다. 결국 이구치를 핑계로 강치가 남획되었다는 나카이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나카이는 독도에 거주하지 않고 일본 어업법까지 어겨가면서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와 죽도어업조합을 설립했고, 1만 마리 이상이 살고 있던 독도 강치를 불법적으로 남획하여 독도의 생태환경을 파괴했다. 그것도 모자라 나카이는 자신의 불법 남획을 동료인 이구치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익으로 모인 사람은 그것이 다하면 서로 멀어지는 법이다. 결국 나카이는 독도에서 불법적으로 강치를 남획하여 강치 멸종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장

대한제국의 영토해양정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울도군수 배계주와 강영우의 활동과 대한제국의 영토해양정책

Ⅰ. 들어가며

1900년대 울도군 설치 이후 우산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대한제국 시기 우산국의 역사적 교훈은 한국인에게 회자되어 신문에 보도될 정도였다.

1901년 4월 24일 『황성신문』은 대한제국이 울도군으로 행정체제를 강화한 이후 우산국의 역사적 교훈을 보도했다. 『황성신문』은 '독사유감(讀史有感)'이라는 사설에서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시키는 과정을 조명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異斯夫)가 무장한 군사 10여 인과 나무 사자 100여 마리만으로 우산국을 복속시켰는데, 이것은 우산국 백성이 어리석고 우매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청국의 백성이 어리석어 연합국의 베이징 함락으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황성신문』은 한국 백성이 우산국보다 심하게 어리석은 상태이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는 먼저 백성을 가르쳐서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되

1 "論說. 讀史有感. 按東史 新羅智證王十二年에 討服于山國ᄒᆞᆯ시 于山은 在溟洲正東海中ᄒᆞ니 卽今鬱陵島라 地方이 不過百里로ᄃᆡ 恃其險不服이어ᄂᆞᆯ 伊飡 異斯夫 率甲兵 十餘人ᄒᆞ고 以木造獅子百許頭ᄒᆞ야 塗飾金彩ᄒᆞ야 載之戰船ᄒᆞ야 抵其島 誑之曰 汝若不降이면 卽放此獸 踏殺之ᄒᆞ리라 ᄒᆞᆫᄃᆡ 國人이 大懼乃降이라 ᄒᆞ니 恃險不服者ᄂᆞᆫ 始何强項이며 大懼乃降者ᄂᆞᆫ 終何柔腸耶아 料其山河之固가 足以不受敵ᄒᆞ며 城池之壯이 足以堅其守ᄒᆞ며 人民戰士之能作捍禦者를 審其衆寡强弱之勢ᄒᆞ야 知其不能攻然後에 可以不服이어ᄂᆞᆯ 海上孤嶋가 小如點墨者 所恃維何而徒恃其險고 可知其民之愚也오 見其甲士之猛이 足以蹂躪이오 戰船之多가 足以衝擊이오 金毛獅子之能售悍獰者를 究其眞假詐正之跡ᄒᆞ야 知其不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皇城新聞

光武四年十月廿九日月曜 開國紀元子九月初七日 一

第二百四十九號 第三卷 每日刊行

八日 農商工部認可

官報 ◎(宮廷錄附)宮內府特進官協民隱自引疏 批旨曾疏具悉已經勘何必爲引嫌其勿辭行公 十月二十五日

議政府議政府支部大臣閔泳韶疏 批旨曾疏具悉卿想軍旅財賦缺歷於胸臆心所同然赤誠合而我祖忽主是嘗上下相孚之久意設其勿煩疏即爲受勅毋遞部官論 十月二十六日

○勅令第四十一號

(慶陵島)鬱陵島ヲ鬱島ニ改稱シ島監ヲ郡守ニ改正ス件

第一條 (慶陵鳴谷)鬱陵島ヲ鬱島ニ改稱シ江原道ニ附屬シ島監ヲ郡守ニ改正シ官制中ニ編入ス

第二條 郡廳位置ハ台霞洞ニ定ム

區域ハ鬱陵全島及竹島石島ヲ管轄ス

(○第三條 開國五百四年八月十六日官報中官職項內鬱陵鳴以下十九字ヲ刪去シ開國五百五年 勅令第三十六號第五條江原道二十六郡ノ六字ヲ七字ニ改正シ安峽郡下ニ鬱陵鳴二字ヲ添入ス)第四條 經費ハ五等郡ニ準ス

第五條 未盡ノ諸條ハ本島開拓ノ進歩ニ從テ現今更額ノ未備ヲ補ヒ隨時ニ之ヲ增減收稅中ニ於テ始先置錢ヲ(○)第六條 本令ハ頒布日ヨリ施行ス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

◎(叙任及辭令)軍部協辦李漢英 命署理大臣事務

平理院裁判長姜東燊 將金永準 解臨時署理 元帥府檢查局總長事務

外報 ◎(英德協約과俄國)本月廿六日東京電 예日俄兩半官報에英國과協商을論ᄒᆞ되 大體ᄂᆞᆫ可ᄒᆞ다ᄒᆞ고但日本以北滿洲의開放은俄國의利益이아니라反對ᄒᆞᆫ다더라

●(淸帝雖認 同電에日淸國皇帝及西太后ᄂᆞᆫ本月廿一日發程에서陝ᄒᆞ고本月廿八日에는安州에到着ᄒᆞᆯ터인ᄃᆡ大原府를出發ᄒᆞᆯ時에莊親王을命ᄒᆞ야政府에駐在ᄒᆞ라ᄒᆞ얏다더라

◎(勝和問題과埃及新聞 埃及維也納府의公使團이協議ᄒᆞᆫ一半官報에日淸兩國에서皇室에對ᄒᆞ야敬意의表示ᄒᆞᆫ다ᄒᆞ니皇帝ᄭᅴ서ᄂᆞᆫ日本의勸告를從ᄒᆞ야北京으로還幸ᄒᆞᆯ次列國과講和ᄒᆞᆯ事가可ᄒᆞᆫ다論을얏더라

◎(廣東省暴動)滬電에日本軍艦、海鷹、陸豐及汕頭附近의排外暴徒의勢가甚히猖獗ᄒᆞ고德國軍艦은目下汕頭에保護中이더라

◎(漢城西安天津間에日人旅行)各國의承認ᄒᆞᆯ빈되지못ᄒᆞ야西安府로向ᄒᆞ얏더라

●(法國提議와日本同意)西報에日本은法國提議에同意를表示ᄒᆞ고其外一點에就ᄒᆞ야確答을不與ᄒᆞ얏더라

◎(賠償問題와仲裁裁判)同報에日法國은此로新聞에埃伊日三國이清與賠償問題의決定을海牙仲裁裁判에一任ᄒᆞᆫ事에對同意記事를揭ᄒᆞ얏더라

◎(西安府의報道遲誤)滬電에日英國砲艦一隻이測量ᄒᆞ기爲ᄒᆞ야蕪河로溯ᄒᆞ야 ᄒᆞ더인ᄃᆡ西安府의報道가遲誤ᄒᆞᆫ다ᄒᆞ고北方面에서更히運動ᄒᆞᆫ始ᄒᆞ야저ᄒᆞ다더라

◎(李鴻章葬事)故大臣李鴻章의葬事에對ᄒᆞ야日皇帝陛下께서ᄂᆞᆫ同電에日我國이我國과管理權을列國委員以下에派ᄒᆞ야其結果ᄂᆞᆫ반ᄃᆞ시列國의同意를要ᄒᆞᆯ터인ᄃᆡ此ᄒᆞᆫ次가現今北京에在ᄒᆞᆫ列國의代表者들이百九十八年에淸國과協商ᄒᆞ야約束ᄒᆞᆫ賠償의約款과英人으로ᄒᆞ야금現約에不拘ᄒᆞ고四億兩을將此提言에同意ᄒᆞ얏다더라

●(德艦派北進)中止同電에日法德兩國艦隊ᄂᆞᆫ已히陝西에向ᄒᆞ야進發ᄒᆞᆫ次로湖南에서逃匿ᄒᆞᆫ德旗兵을對ᄒᆞ야德東으로歸還ᄒᆞ라命ᄒᆞ얏다더라

◎(荷國女王結婚)西報에日荷國女王이엣구렌브루구슈웨린公과婚約을結ᄒᆞ얏다더라

◎(法兵入德州)滬電에日一千法兵이本月十七日에山東德州에到着ᄒᆞ야他軍隊와合ᄒᆞ야德軍을次로同地에進入ᄒᆞᆯ터이다더라

◎(德國首相辭職原因)德帝ᄭᅴ서ᄂᆞᆫ俾斯麥相의ᄇᆞᆯ로伯爵ᄒᆞᆫ분이라事對內外策을自行ᄒᆞᆯ싱이多ᄒᆞᆫ고首相에게諮詢ᄒᆞ지아니無ᄒᆞᆫ由ᄒᆞ야德國議會ᄂᆞᆫ十一月十四日로써召集ᄒᆞᆯ기로ᄒᆞ얏다더라

◎(山東德兵과義世凱)滬電에日路州에在ᄒᆞᆫ德兵이一萬餘人이라德國이山東省一帶占領ᄒᆞᆯ形跡이益明ᄒᆞᆫ고義世凱가限死反對ᄒᆞᆯ것ᄉᆞ라言ᄒᆞᆫ고準德ᄒᆞᆫ다더라不意ᄒᆞ더라

『황성신문』, 1900. 10. 29(칙령 제41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승되었고, 한국인에게 역사적 교훈의 자산이 되었다. 백성의 우민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위정자의 정치적 무능을 경고하는 논설이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이후 울릉도의 역사는 대한제국의 관민(官民)에게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제공했다. 기존 연구는 배계주의 울도군수 부임과 활동에 주목하여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이후 울릉도 사회를 복원했다.

김호동은 1902년 배계주 소송사건과 강영우 무고사건을 중심으로 배계주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런데 김호동에 따르면 1901년 김성술 자살사건으로 울릉도민이 배계주를 비난하자, 배계주는 그 돌파구로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 점령을 알리는 보고서를 외부와 내부에 제출했다.[2]

이상태는 배계주의 생몰년(1851–1918)을 확인하면서 울릉도 행정체제의 변화와 함께 그의 행적을 추적했다. 이상태는 1899년 전후 배계주와 일본인의 소송사건과 1902년 강영우와 배계주의 소송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무엇보다도 이상태는 1900년 우용정의 10개조 고시문을 분석하면서 1902년 울도절목과의 연관성을 주목했다. 울릉군 절목은 1899년 9월 내부에서 동리감리를 통해 울릉도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발표한 7개 항의 절목, 1900년 우용정이 울릉군을 시찰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발표한 우용정의 고시문 10개 항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행정 명령이다.[3]

能制然後에 可以乃降이어늘 幻目奇怪로 一言威嚇者를 所懼維何 而大懼乃降고 可知其民之昧也니 其民이 愚且昧而其國不亡者 自古及今에 未之有也라 比今世界以觀之컨디 大小强弱이 相與聯肩이로디 其民이 不愚昧則始而不恃ᄒᆞ야 相與和好ᄒᆞ며 終而不懼ᄒᆞ야 相與猗角키로 小與大相抗ᄒᆞ며 弱與强相立이어니와 其民이 愚昧則始而未嘗不恃ᄒᆞ며 終而未嘗不懼ᄒᆞ야 小爲大吞ᄒᆞ며 弱爲强幷이오 民其愚昧之甚則不惟小者弱者라 大者强者도 亦至吞幷ᄒᆞ니 不必遠求라 泰西之波蘭이 可謂大者强者로디 其民이 愚昧 故로 終爲吞幷於俄普奧ᄒᆞ며 現今 支那之淸國이 亦可謂大者强者로디 其民이 愚昧 故로 方見敗陷於聯合軍ᄒᆞ야 未知吞幷於誰手ᄒᆞ니 其民愚昧而其國必亡之證을 昭然可據라 如今 木造獅子之威嚇가 羅列前後에 不啻一二로디 民之愚昧ᄂᆞᆫ 甚于于山ᄒᆞ니 可不憂哉아 有國者 急先敎民ᄒᆞ야 開其愚昧ᄒᆞ야 能知木獅之眞假詐正이면 豈非存國興國之大基本이리오."(『皇城新聞』, 1901. 4. 24) * 波蘭은 폴란드.

2 김호동, 「울도군수의 행적」, 『독도연구』 19, 2015, 15–26쪽.

3 이상태, 「울도군 초대 군수 배계주에 관한 연구」, 『영토해양연구』 11, 2016, 65–76 · 88–10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1902년 5월 김성술 사망사건 재판 판결, 6월 강영우와의 소송사건, 9월 이능해와의 소송사건 등의 연관성을 주목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기존 연구는 울릉도의 내부 세력과 외부 세력과의 연관성을 추적하지 못했다. 특히 고종의 측근인 내장원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翊)의 울릉도 이권의 개입 과정을 다루지 않았다.

당시 울도군수 배계주는 1900년 11월 26일부터 1903년 1월 26일까지 울릉도 군수로 활동했다. 그런데 배계주는 1차 울도군수로 1900년 11월 26일부터 1901년 9월까지, 2차 울도군수로 1902년 3월 7일부터 1903년 1월 26일까지 임명되었다. 강영우는 1901년 10월 9일부터 1902년 2월 19일까지 잠시 울도군수를 지냈다. 배계주는 1901년 3월 울릉도에 부임한 이후 소송사건에 휘말려 울릉도에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 강영우는 1901년 10월에 임명되었지만 실제 울릉도에 부임하지 못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 삼림이권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울릉도에 불법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철수 방안을 고민했다.

필자는 배계주와 강영우의 활동 및 일본인들의 불법벌목, 전사능 위조사건(1901년 3월), 김성술 자살사건(1901년 10월), 배계주와 강영우의 소송사건(1902년 6월), 이능해의 울도 사검관 사칭사건(1902년 11월)을 살펴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배계주의 울도군수 시절을 중심으로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의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 합법화 정책과, 이에 대한 대한제국의 대응을 복원할 것이다.

Ⅱ. 배계주의 임명과 활동 및 일본인의 불법벌목

울도군수 배계주(裴季周, 1851–1918)는 1900년 11월 26일부터 1903년 1월 26일까지 울릉도 군수로 활동했다. 배계주는 1900년 11월부터 1901년 9월까지 1차 울도군수로 활동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0년 11월 26일 대한제국은 전 울릉도감인 배계주를 주임관 6등(奏任官六等) 울도군수로 임명했다.[4] 배계주는 1901년 3월 13일 울릉도에 도착했고, 1901년 9월에 첫 보고서를 제출했다.

1900년 12월 4일 내부 주사 조병남(曺秉楠)은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는 청의서에 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문서를 보내줄 것을 의정부 주사 이도상(李道相)에게 요청했다.[5] 그러나 1900년 12월 8일 의정부 주사 최동식(崔東埴)은 울릉도에 군을 설치한다는 청의서가 이미 고종의 재가를 받았기에 반송이 불가하다고 조병남에게 통보했다.[6] 이 문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1900년 10월 25일에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1901년 1월 25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울도군수 배계주는 1900년 5월 우용정의 울릉도 조사 이후 일본인의 불법벌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배계주는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은 전 도감 오성일(吳聖一)의 문표(文票)를 빙자하여 불법벌목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7]

1901년 2월 2일 내부참서관 오영렬(吳永烈)은 울도군수 배계주가 울릉도에 부임

---

4 "鬱島郡守敍奏任官六等 九品 裴季周 … 以上十一月二十六日."(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 4年(1900) 11月 29日, 「第1744號」, 『官報』) 배계주는 1851년 2월 24일 인천 덕적도에서 태어났다. 배계주가 1898년 일본에 갔을 때 야마구치 지사가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서에도 배계주의 나이를 46세로 적고 있다. 배계주는 1918년 2월 15일 사망했다(이상태, 「울도군 초대 군수 배계주에 관한 연구」, 『영토해양연구』 11, 2016, 74쪽).

5 "本部大臣均敎를 承ᄒᆞ와 鬱島設郡ᄒᆞ온 請議書中 有查閱事故로 玆以仰佈ᄒᆞ오니 該請議書를 此趾送交ᄒᆞ시면 査後卽完ᄒᆞ깃ᄉᆞ오니 照亮ᄒᆞ시믈 爲要."(內部主事 曺秉楠→議政府主事 李道相, 光武 4年(1900) 12月 4日, 「通牒」, 『內部來去文』 15)

6 "昨接貴通牒內槪 鬱陵島設郡ᄒᆞ온 請議書中 有查閱事ᄒᆞ니 該請議를 此趾送交等因이온바 準此査ᄒᆞ온즉 該案을 旣經會議ᄒᆞ고도 奏裁可後 安寶以下ᄒᆞ얏기로 今不得送交ᄒᆞ오니 照亮禀明ᄒᆞ심을 爲要."(議政府主事 崔東埴→內部主事 曺秉楠, 光武 4年(1900) 12月 8日, 「通牒 第二十七號」, 『起案』 3)

7 "鬱嶋船破. 鬱嶋郡守 裴季周氏의 公報를 據ᄒᆞᆫ 則 去五月에 視察官 禹用鼎이 日人의 獘端과 居民의 疾苦를 調査報部ᄒᆞᆫ 後에 日人斫伐이 甚於前日 故로 私自禁斷則 日人이 前島監 吳聖一의 文票를 憑藉ᄒᆞ고 少無忌憚ᄒᆞ며."(『皇城新聞』, 1901. 1. 2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지 않았다고 의정부 참서관 조병규에게 보고했다.[8] 1901년 2월 27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울도군수 배계주는 학교를 개설하는 청원서를 대한제국 학부에 제출했다.[9] 1901년 7월 15일 내부 참서관 오명환(吳命煥)은 울도군수 배계주가 1901년 3월 13일 울릉도 현지에 부임했다고 의정부 참서관 조병규에게 보고했다.[10]

그런데 1902년 7월 7일 탁지부대신 심상훈(沈相薰)은 1901년 3월 울도군수 배계주가 창룡선(蒼龍船)을 타고 서출 출장한 비용 268원 40전을 예비금에서 지출해 줄것을 요청했다.[11] 1902년 8월 20일 의정부참정 김성근(金聲根)은 울도군수 배계주의 소환에 들어간 선박비 268원 40전을 예비금에서 지출할 것을 통고했다.[12] 배계주는 1901년 3월 부임했다가 곧바로 상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1901년 8월 20일 내부 참서관 오명환(吳命煥)은 울도군수 배계주가 울릉도 도착 이후 아직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의정부 참서관 이도상(李道相)에게 보고했다.[13]

---

8 "鬱島郡守 裵季周 未赴任."(內部參書官 吳永烈→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光武 5年(1901) 2月 2日, 「通牒 第二十三號」, 『內部來去文』 16)

9 "鬱島設校. 鬱島郡守 裴季周氏가 該郡人民을 敎育次로 學校를 設始ᄒᆞ고 學部에 認許를 請ᄒᆞ얏더라." (『皇城新聞』, 1901. 2. 27)

10 "官報에 揭載ᄒᆞᆯ 件을 左開ᄒᆞ오니 照亮ᄒᆞ시믈 爲要 … 鬱島郡守 裵季周 三月十三日 到任."(內部參書官 吳命煥→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光武 5年(1901) 9月 15日, 「通牒 第百五十二號」, 『內部來去文』 17)

11 "本年三月三日 內部大臣 第十三號 照會를 接準ᄒᆞ온즉 內開 郵船會社 總務員 李泳均의 報告書를 現接ᄒᆞ온즉 內開 本會社 所駛蒼龍船을 昨年三月分에 因部訓ᄒᆞ와 鬱島郡에 往還ᄒᆞ온 賃費가 爲二百六十八元四十錢이온ᄃᆡ 于今未受故로 玆에 報告ᄒᆞ오니 照亮ᄒᆞ신 後 右賃費二百六十八元四十錢을 卽爲出給ᄒᆞ심을 伏望等因이라 此를 査ᄒᆞ온즉 上年度에 鬱島郡守 裴季周를 承處分招上ᄒᆞ온바 往還船費를 不容不支劃이ᄋᆞᆸ기 玆以仰佈ᄒᆞ오니 照亮ᄒᆞ신 後 該船費 二百六十八元四十錢을 預算外趕速支出ᄒᆞ시고 示明ᄒᆞ심을 爲要等因이온바 査該船費를 斯速支撥淸勘이기로 別紙調書를 從ᄒᆞ야 預費金中支出ᄒᆞᆷ을 會議에 提出事."(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 沈相薰→議政府議政 尹容善, 光武 6年(1902) 7月 7日, 「第五十一號 內部所管鬱島郡守往還船費 預算外支出請議書」, 各部請議書存案 21) "請撥船賃. 郵船會社事務員李泳均氏가 內部에 請願ᄒᆞ되 昨年三分鬱島郡守裴季周招上時에 本社所駛蒼龍船의 往還賃費二百六十八元을 尙未支撥ᄒᆞ얏스니 該額을 移照度支ᄒᆞ야 卽速支給ᄒᆞ라ᄒᆞ얏더라."(『皇城新聞』, 1902. 3. 7)

12 "左開案件에 決裁ᄒᆞ시믈 望홈. 預備金中支出事 … 鬱島郡守招上時往還船費二百六十八元四十錢 … 本府會議ᄅᆞᆯ 經ᄒᆞᆫ 後 上奏ᄒᆞ와 奉旨制曰 可라 ᄒᆞ시엿기 玆에 指令事."(議政府參政 金聲根→議政府贊政 度支部大臣臨時署理 內藏院卿 李容翊, 光武 6年(1902) 8月 21日, 「指令 第十七號」, 『起案』 5)

13 "十一道管下守令治蹟褒貶件을 錄交ᄒᆞ오니 照亮ᄒᆞ오셔 官報에 揭載ᄒᆞ시믈 爲要 … 鬱島郡守 裵季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1년 9월 12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울릉주민 안재훈(安在勳) 등은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침입하는 심각한 상황을 대한제국 내부에 호소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1900년 울릉도를 시찰한 우용정은 일본인들이 울릉도민을 위협하며 규목(槻木)을 불법벌목한 사실을 파악하고, 일본인을 재판하여 불법어업 등을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1901년 일본인 천여 명이 울릉도에 불법침입하고, 일본인 70여 호(戶)는 울릉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거주하면서, 울릉도민의 농경과 벌목까지 금지시켰다. 울릉주민 안재훈 등은 '대한토지(大韓土地)'를 일본인에게 빼앗긴 상황이라며 울릉도민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했다.[14] 안재훈은 배계주와 연결되어 회사를 설립한 인물이었다.

우용정의 시찰 이후인 1901년에는 일본인의 불법행위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1901년 9월 13일 울도군수 배계주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삼림을 불법벌목하여 토지가 일본인의 수중에 넘어간 상황이라며 의정부찬정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보고했다. 배계주는 "현재 일본인은 울릉도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백성이 도탄에 빠졌고 삼림도 이미 벌거벗었고, 토지가 장차 일본인의 손에 들어가게 생겼다"[15]라고 호소했다.

1901년 9월 울도군수 배계주는 일본인들의 불법벌목에 관해 의정부찬정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

울도군수 배계주는 울릉도 개척이 완료되지 않았고, 일본과 울릉도 사이에 교섭

赴任報告가 尙未到付事 光武五年七月十六日."(內部參書官 吳命煥→議政府參書官 李道相, 光武 5年(1901) 8月 20日, 「通牒 第百八十七號」, 『內部去來文』 17)

14 "鬱島郡 安在勳 等이 內部에 呼訴ᄒᆞ되 近年 日本人이 數數 往來ᄒᆞ야 或 斫伐槻木ᄒᆞ며 或 侵逼居民ᄒᆞᄂᆞᆫ 事狀은 昨年 視察官入島時에 招致日人裁判則 日人이 更勿侵漁之意로 自服矣러니 今年則 日人 千餘名이 作黨突入ᄒᆞ야 七十餘戶가 全島南北에 分界居生ᄒᆞ며 分界內에 一草一木을 大韓之民은 不得犯斫케 ᄒᆞ고 稱云渠山ᄒᆞ니 日人之作弊가 去益甚焉이라 島中居民이 不得安堵ᄒᆞ야 至於 渙散之境ᄒᆞ온則 大韓土地를 日人에게 見奪ᄒᆞᄂᆞᆫ 故로 不勝憤寃이라 ᄒᆞ얏더라."(『皇城新聞』, 1901. 9. 12)

15 "現今日人의 彌滿全島ᄒᆞ야 恣行不法이 非徒陷民이라 森林則已歸童濯ᄒᆞ옵고 土地가 將入於彼人之手이오기 玆報告事."(鬱島郡守 裵季周→議政府贊政 外部大臣, 光武 5年(1901) 9月 23日, 「報告書 副本」, 『江原道來去案』 第一冊; 「江原道篇」 2, 『各司謄錄』 28, 48쪽(奎1798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 없었다고 보고했다. 1900년 5월 우용정은 울릉도 시찰 당시 불법거주 일본인을 재판하고 일본인의 불법어업을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울릉도에서 불법 벌목과 어업을 계속하며 심지어 울릉도민의 재물까지 빼앗았다. 배계주는 일본인의 철수를 주한 일본공사관에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무엇보다도 배계주는 울릉도를 '대한요충(大韓要衝)'이라며 지리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계주에 따르면 울릉도는 바다 끝에 있어 가구가 500호에 못 미쳤다. 울릉도는 불통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이 각국 회판(會辦)의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교섭을 요청했다. 배계주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의 '봉산(封山, 벌목 금지 산)'에서 불법 벌목한 사실을 여러 차례 대한제국 내부에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배계주는 울릉도는 일본인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통상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배계주에 따르면 1900년 5월 시찰관 우용정이 일본 외교관과 함께 울릉도에 들어가 일본인들을 불러모아 재판을 했는데, 일본인들은 다시는 침범(侵魚)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우용정이 상경하자 일본인 500인이 다시 산에 들어가 규목을 불법벌목한 뒤 출항했다. 일본인들은 1901년 울릉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자국의 소유라며 울릉도민의 벌목을 막았다. 심지어 그들은 울릉도민의 재물을 훔쳐가기도 해서 울릉도민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배계주는 "울릉도민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여 대한요충의 땅(大韓要衝之地)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의 철수를 시급히 요구할 것"을 외부대신에게 요청했다.[16]

---

16 "本郡이 處在海隅ᄒᆞ와 開拓이 未完ᄒᆞ여 戶數가 未滿五百戶에 素是不通商旅之地 則彼人之交涉이 本無各國會辦之條例이거늘 現今日人往來無常ᄒᆞ야 莫重封山을 無難犯斫ᄒᆞ옵기여 內部에 報告이옵더니 去庚子五月에 視察官禹用鼎이 與日公使로 奉命入島ᄒᆞ와 招集日人裁判之場에 日人이 更勿侵漁之意로 自服이옵더니 視察官上京後에 日人五百餘名이 突入全山ᄒᆞ와 槻木與材木을 任意斫伐輸去ᄒᆞ옵더니 至於今年則南北分界ᄒᆞ와 自稱爲渠山ᄒᆞ옵고 島民은 一不犯斫계ᄒᆞ옵고 又況島民處에 橫奪錢財에 無數困侵ᄒᆞ옵ᄶᅥ 緣由를 報告ᄒᆞ오니 照亮ᄒᆞ옵셔 移照於日公館ᄒᆞ여 使侵島日人으로 卽速撤還케 ᄒᆞ시고 民安居業ᄒᆞ와 以保大韓要衝之地을 伏望홈."(鬱島郡守 裵季周 一議政府贊政 外部大臣, 光武 5年 辛丑(1901) 9月, 「報告書第一號」, 『江原道來去案』 第一冊; 「江原道篇」 2, 『各司謄錄』 28, 47-4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1년 9월 18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울릉도민은 일본인의 불법벌목을 막아달라고 외부에 청원했다. 1900년 우용정의 시찰 이후 오히려 더 많은 일본인이 울릉도에 침입하여 나무를 벌목했다. 심지어 일본인은 울릉도민 윤은중(尹殷中)이 규목 한 그루를 베자 무리를 지어 폭력(無數亂打)까지 휘둘렀다. 울릉도민은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를 일본인에게 허락(許給)했느냐고 비판하면서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17]

1901년 9월 25일 의정부찬정 내부대신 이건하는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소환(撤歸)하도록 주한 일본공사에게 통보할 것을,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조회(照會)했다. 내부대신 이건하는 울도군수 배계주의 9월 보고서에 기초하여 외부대신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배계주는 현재 울릉도가 대한(大韓)의 토지(土地)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배계주에 따르면 "1901년 일본인 천여 명이 울릉도에 들어와서 울릉도를 남북으로 분할하여 70여 호(戶)가 울릉도에 거주하면서 대한 백성(大韓之民)이 나무를 벌목하지 못하게 했다. 특히 일본인은 울릉도민 윤은중이 수리(盖屋)를 위해 벌목하자 방해했다."

내부대신 이건하는 울도군수 배계주의 9월 보고서에 기초하여 울릉도의 상황을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1901년 일본인 1천여 명이 들어와서 울릉도의 산을 남·북으로 나누어 70호가 거주했다. 둘째, 일본인들로 인한 폐단이 날로 커져서 울릉도 거주민이 불안하여 대한영토를 일인에게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다. 배계주는 대한의 영토인 울릉도를 수호해야 한다는 영토의식을 강조했다. 내부대신 이건하는 울릉도에 한인 500호, 즉 수천 명의 인구가 흩어져버릴 수 있으

(奎17985))

17 "鬱島의 日人作梗. 鬱島民 等이 日人作梗事로 日昨 內部에 呼訴ᄒᆞ얏더니 또 外部에 請願ᄒᆞ되 日人을 撤還ᄒᆞᆯ 次로 昨年 政府에서 派員來到ᄒᆞ야 日領事와 會判定期而趁未退去ᄒᆞ고 尙今 延拖矣러니 今年則 日人이 多聚本島ᄒᆞ야 稱以渠地ᄒᆞ고 槻木與他材木을 任意斫伐之中에 島民 尹殷中이 有所緊用ᄒᆞ야 伐一槻木則 日人이 作黨來到ᄒᆞ야 無數亂打曰 爾何取吾木고 ᄒᆞ오니 近日 政府에서 本島를 日本에 許給乎아 ᄒᆞ얏더라."(『皇城新聞』, 1901. 9. 1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므로, 기한을 정해놓고 일본인들을 소환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건하는 외부대신 박제순이 불법거주 일본인(日本亂民)의 '정기철귀(定期撤歸)'를 요청하는 공문을 주한 일본공사에게 발송해달라고 요청했다.[18]

울릉도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한제국 정부는 1901년 8월 부산해관에 지시하여 울릉도 한국인과 일본인의 거주 상황을 독자적으로 파악했다.

1902년 4월 29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1901년 8월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거주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부산해관 파원(派員) 스미스(D.H. Smith, 士彌須), 부산해관 방판(同幇辦) 김성원(金聲遠), 동래감리서 주사(主事) 정보섭(丁寶燮) 등을 울릉도로 파견했다.

1901년 8월 20일 현지조사를 마친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대한제국 정부에 제출했다. 한인은 대략 3천 명인데 모두 전호로 농사를 짓고 있다. 울릉도에 불법거주하는 일본인은 약 550명이고, 매년 3월과 6월 사이에 어업과 벌목을 위해서 300-400명의 일본인이 울릉도에 들어왔다. 울릉도에 불법정박한 일본 선박은 21척이고, 그중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의 허가증을 가진 어선 7척과 잠수정 3척이 있

---

18 槪 鬱陵島日本亂民撤歸事. 上年十月日에 貴部第十五號 第十六號 照覆을 連接ᄒᆞ와 敝部로셔 第十九號 照會ᄅᆞᆯ 更爲仰佈ᄒᆞ왓더니 經年閱序에 如何ᄒᆞ신 照覆을 尙靳ᄒᆞ시와 至今鬱ᄒᆞ온中 現接鬱島郡守裵季周 報告書內開. 本島가 僻在海隅ᄒᆞ야 島中居民이 只以畊田爲業 而近年日人이 數數往來ᄒᆞ야 或伐規木ᄒᆞ ᄋᆞᆸ고 或侵居民之事狀을 昨年分視察官 禹用鼎 已所洞悉者也라. 伊時에 招集日人裁判則日人이 更勿侵漁之弊로 自服矣러니 視察官上京後로 在山槪木無一遺漏ᄒᆞ ᄋᆞᆸ고 今年則日人千餘名이 作黨突入ᄒᆞ야 全山南北分界ᄒᆞ와 七十餘戶居生島中이 ᄋᆞᆸ고 分界之內雖一草一木이라도 大韓之民은 勿爲犯斫케 ᄒᆞ고 島民 尹殷中이 蓋屋之事로 伐木作板이온즉 稱云渠山之木이라 ᄒᆞ ᄋᆞᆸ고 勿犯케 ᄒᆞ오니 大抵渠國渠山之木이라도 不至此境이온 又況大韓之土地乎잇가. 日人之弊가 去去益甚이온즉 島中居民이 不得安堵ᄒᆞ야 至於渙散之境이 ᄋᆞᆸ고 大韓土地ᄅᆞᆯ 奪之於日人이온 故로 玆以報告ᄒᆞ오니 照亮ᄒᆞ신 後 特爲公決之地伏望等因ᄒᆞ온즉 在島日人의 滋弊가 愈往愈甚ᄒᆞ야 犯斫木料ᄅᆞᆯ 益無顧忌ᄲᅮᆫ더러 全島南北을 分界築室ᄒᆞ고 滿山木料ᄅᆞᆯ 看作已有ᄒᆞ야 島中民蓋屋伐木을 還爲禁止라 ᄒᆞ오니 言念及此에 不覺寒心이라. 大抵在島無恤之日人을 若不撤還ᄒᆞ오면 全島五百戶數千名人口가 渙散乃已이 ᄋᆞᆸ기 前後仰照가 非至一再이온바 尙今延拖ᄒᆞ와 爲弊滋甚에 罔有紀極ᄒᆞ온즉 公法所在에 該日民之行悖ᄂᆞᆫ 實爲兩國之羞라. 玆更仰佈ᄒᆞ오니 照亮ᄒᆞ신 後 日本公使에게 지조ᄒᆞ시와 在島之日本亂民을 定期撤歸케ᄒᆞ시고 示明ᄒᆞ시믈 爲要."(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光武 5年(1901) 9月 25日,「照會 第十一號」,『內部來去文』1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었다.

스미스에 따르면 울릉도 일본인은 2대 파벌인 '하타모토당(畑本黨, ハタモト党, 畑本吉造[하타모토 요시조])'과 '와키타당(脇田黨, ワキタ党, 脇田庄太郎[와키타 쇼타로])'으로 구성되었는데, 울릉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산림을 지배하면서 허가서(認壯) 없이 벌목했고, 울릉도민의 벌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벌금까지 징수했다.

스미스에 따르면 울릉도 주민 오상일은 배계주가 일본과의 소송 문제로 울릉도를 떠나 있을 때 울릉도감 서리를 사칭했다. 울릉도 주민 김경중(金敬重), 김성술(金性述), 전사능(田士能) 3인은 가장 교활하여 백성의 재물을 빼앗으려 했다. 『황성신문』은 부산감리의 아들 현상건(玄尙健)이 시찰 강영우를 파견하여 울릉군의 관리를 파면시키려 했다고 보도했다.[19] 이를 통해 현상건과 강영우의 연결고리가 드러난다. 강

---

19 "別報. 左에 槩譯ᄒᆞᆫ 것은 釜山海關洋員士 彌須氏의 鬱陵島視察報告書인ᄃᆡ 其日子ᄂᆞᆫ 비록 經年ᄒᆞᆫ 者나 事實로 觀ᄒᆞ면 關係가 綦重ᄒᆞ기 玆에 譯謄ᄒᆞ노라. 光武五年(1901)八月本派員이 與本海關幇辦金聲遠查檢官荒木監理署主事丁寶燮으로 於釜山起程ᄒᆞ야 翌日上午七時에 到鬱陵島ᄒᆞ니 嶋中日本人口가 約爲五百五十人而皆造船伐木者及幾個舖戶라 該日人等이 以此嶋로 認爲永遠居住ᄒᆞ야 有于今七八年土着者ᄒᆞ고 每歲自三月至六日히 乘其浪息風靜ᄒᆞ야 日人男女三四百名이 自日本ᄉᆞ가이 地方으로 來泊該島ᄒᆞ야 或漁獵或斫木ᄒᆞ며 或日人所貯材木豆麥薯蕷等物을 裝運輸云者 絡繹云ᄒᆞ고 日本女子現居島中者ᄂᆞᆫ 爲三十二名而凡日人作業은 斫伐槻木ᄒᆞ야 出賣日本ᄒᆞ야 旋購米鹽漿酒食品과 其他布木ᄒᆞ야 輸入島中ᄒᆞ야 與韓氏交換雜穀ᄒᆞ고 罕以錢幣償價ᄒᆞ며 居島日人이 有兩黨ᄒᆞ니 一은 하다모도 者 爲黨首ᄒᆞ고 一은 와기다者 爲黨頭ᄒᆞ야 二黨이 割分南北疆土而自領其森林ᄒᆞ고 昨年七月十五日에 有告示韓民者에 曰自今으로 若無日本人許可면 毋得擅目伐木ᄒᆞ며 毋得輸出一木이고 若有現發則應償罰欵云이라ᄒᆞ얏ᄂᆞᆫᄃᆡ 從此韓民之被捉賠罰者 屢屢로ᄃᆡ 該島官民이 無禁制權力이라 本派員入島時에 適有一案件來告者ᄒᆞ니 卽本年七月頃에 一韓人所有新斫板木을 被日人查出ᄒᆞ야 見徵罰金三萬五千文ᄒᆞ고 又一韓人은 於其所居地內에 斫倒一木이다가 爲人告發ᄒᆞ야 亦徵罰金三萬文ᄒᆞ니 皆係的實事件이오 島中日人은 斫伐材木호ᄃᆡ 都無認狀ᄒᆞ며 且材穀各種輸出入에도 亦無稅金ᄒᆞ며 裴季周ᄂᆞᆫ 監管該島■已經六年而年前 裴島監이 因材木還推事ᄒᆞ야 發往日本時에 島人吳祥日이 乘島監不在ᄒᆞ야 詐稱署理ᄒᆞ고 勒討稅欵於輸出入物品云이나 只是米鹽酒若干捧賂而已오 島居韓民은 畧至三千口나 皆佃戶農氓之爲活者니 米布漿酒等은 皆以土產豆麥薯蕷로 交易於日人ᄒᆞ며 或出日消售於釜港이라ᄒᆞ며 嶋東小灣岸上에 居生日人之板屋이 略五十戶오 方新築者 亦多ᄒᆞ고 沿岸에 亦有日八四五村落이나 本員이 因牽掣事ᄒᆞ야 未能詳探其戶數ᄒᆞ고 嶋人中有金敬重金性述田士能者三人이 最奸猾欺騙ᄒᆞ야 歛民錢財ᄒᆞ고 又揚言各村曰 釜山監理之子玄尙健이 現任要職ᄒᆞ야 云自政府로 派送視察姜永佑ᄒᆞ야 一應島中現官을 併皆罷免ᄒᆞ고 永不置島監이나 姜視察의 所需費額七十萬文을 當自民間捐納이라 ᄒᆞᆷ이 愚民이 或被其慫恿ᄒᆞ야 頗有隱納者云이며 本員到島時에 有兩桅船十六隻이 碇泊海面ᄒᆞ고 又有五隻船이 滿載木材ᄒᆞ야 準備出帆ᄒᆞ고 且於灣岸에 置有五百介堅緻板材及體木ᄒᆞ니 長或十尺二十尺而皆日人所伐者也오 且有漁艇七隻及潛水夫艇子三隻ᄒᆞ니 皆自釜港日領舘으로 領有官許者也오 又有乾鰒海蔘과 黃豆三百石及雀膠等物이 皆將輸出者也오 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영우는 현상건의 비호 아래 1901년 하반기 울도 시찰관으로 활동하면서 울도도감 배계주를 해고하려고 했고, 1901년 10월 울도도감으로 임명되었다.

Ⅲ. 선박 제익선 구입 과정, 전사능 위조사건과 김성술 자살사건

울릉도민의 세력과 대립 구도의 한편에는 최병린(崔秉麟)을 중심으로 한 김성집(金聲集), 안원서, 김찬수 등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배계주를 중심으로 한 전사능이 있었다. 울진 출신 최병린과 울릉도 출신 배계주는 상호 대립의 핵심 인물이었다.

울릉도에서는 왕복을 위한 선박 마련과 군청 건립이 중요한 문제였다. 먼저 1900년 하반기 울릉도 관민은 나룻배 파손, 일본 선박 구입 등을 시도했는데, 그만큼 선박 문제는 울릉도 최대의 현안이었다.

울릉도민은 선박 제조와 관련하여 배계주 세력과 최병린 세력으로 나뉘었다. 1899년 울릉도민 전사능은 전 울릉도감 배계주의 지지를 받아 제익선사(濟益船社)를 설립하고 선박 제조를 준비했다. 하지만 1900년 울릉도민 김성술(金聖術)은 울진 출신 최병린의 지지를 받아 전사능의 제익선사를 반대하면서 나룻배를 건조했다. 그런데 1900년 7월 25일 풍랑으로 김성술의 나룻배가 파손되었다. 그러자 1901년 울릉도민 전사능은 울도군수 배계주의 허락을 받아 나룻배 파손에 따른 1만 6천 냥(兩)을 김성술과 연결된 울릉도민에게 징수하려고 했다. 하지만 울진 출신 최병린은 우용정의 지지를 받아 전사능을 울도군수의 문서를 위조했다며 부산감리서에 구금했다. 그 과정에서 김성술은 나룻배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압박을 받고 자살했다.

1899년 4월 14일 『독립신문』에 따르면 울릉도 상민(商民) 전사능 등은 제익선

嶋海水가 甚深ᄒᆞ야 如實合港灣者ᄂᆞᆫ 絕無ᄒᆞ고 海岸則四面開濶ᄒᆞ나 但有三處小灣ᄒᆞ야 輪船이 可得碇泊矣오 嶋中處處에 有韓人田土ᄒᆞ고 全嶋中央은 森林이 尙且望之鬱葱矣라ᄒᆞ얏더라 西曆一千九百一年八月二十日 海關派員士彌須."(『皇城新聞』, 1902. 4. 2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를 설립하고 농상공부에 울릉도 항해를 위한 선박 마련(造船)을 청원했다. 전사능 등은 울릉도 목재 80주(株)를 벌목하여 선박을 건조하고, 선세는 매년 은화(銀貨) 100원씩(一百元式)을 납세할 계획이었다.[20] 1899년 4월 12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전사능 등은 선박 제조 경비를 출자하여, 사무원 2인을 두고, 울릉도와 육지 2곳에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었다.[21]

1899년 10월 18일 『제국신문』에 따르면 이미 울릉도감 배계주는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을 추방한 다음 나무 80주를 벌목하여 풍범선 1척을 건조할 것을 대한제국 내부에 제안했다.[22]

1900년 6월 20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울릉도민은 개운회사를 만들어 풍범선 개운환(開運丸) 1척을 도입하려고 했다. 개운환은 울릉도의 여객과 상품을 운송하는데, 울릉도감이 화물세를 징수할 예정이었다.[23]

그런데 1900년 울릉도민 중 김성술 등은 울릉도민의 회의를 소집하여, 울릉도의 제익선사를 혁파하고 풍범선인 나룻배(津船)를 사용했다. 그런데 1900년 7월 25일 풍파가 크게 일어 나룻배가 파손되었다. 그러자 울릉도 관민은 선박(船隻)을 마련하

---

20 "울릉도 사건. 울릉도 백성 전사능 등이 제익선사를 설립하고 농상공부에 청원하기를 해도 삼림 재목 八十수를 작벌하여 배를 짓고 선세는 매년에 돈 一百원식 바치겠노라 하였으나, 해도를 二十五개년 작정하여 러시아 사람에게 빌려주었거늘 해도 백성들은 그 내평도 알지 못하고 이런 청원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들 한다더라."(『독립신문』, 1899. 4. 14)

21 "船社章程. 蔚珍郡 居ᄒᆞᄂᆞᆫ 商民 田士能 等이 濟益船社를 創設ᄒᆞ고 該社章程을 農部에 認許ᄒᆞ기를 請ᄒᆞ얏ᄂᆞᆫᄃᆡ 造船木材八十株를 鬱陵島의 所在森林中 取用事오 造船工費ᄂᆞᆫ 請願人 等이 出資支給ᄒᆞᆯ 事오 事務員은 二人이오 本島民人이 陸地에 出來ᄒᆞᆷ과 陸地民人이 居産入島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人與裝具ᄂᆞᆫ 勿論 船賃ᄒᆞ고 依數載運ᄒᆞ되 至若商況等物ᄒᆞ야ᄂᆞᆫ 船賃를 計物收捧事오 本島物産을 裝載ᄒᆞ야 通商口岸에 發賣ᄒᆞ고 陸地産物을 貿載ᄒᆞ야 該島로 入ᄒᆞᆯ 際에 徵稅之弊ᄂᆞᆫ 一切 禁斷事오 該船稅項은 每年에 銀貨 一百元式 十月內로 上納事오 該船止泊所ᄂᆞᆫ 島陸兩處에 設立濟益船社事라 ᄒᆞ얏더라 然ᄒᆞ나 數年前 政府에서 該島를 俄人에게 限二十五年 養木伐木ᄒᆞᄂᆞᆫ 것을 管領케 ᄒᆞ얏기ᄂᆞᆯ 田氏가 其事由를 不知ᄒᆞ고 農部에 請願ᄒᆞ얏ᄂᆞᆫ지."(『皇城新聞』, 1899. 4. 2)

22 "울릉도 도감 배계쥬씨가 내부에 보고하기를 구목 팔십주를 버여 풍범선 한 척을 지어 항행에 쓸 터인대, 일인을 다 내보낸 후에야 짓갯다고 하엿다더라."(『帝國新聞』, 1899. 10. 18)

23 "鬱陵嶋民들이 合資ᄒᆞ야 該島에 開運會社를 置ᄒᆞ고 釜山에 風帆船開運丸一隻을 購入ᄒᆞ야 島中行客及商品을 搭乘載運ᄒᆞᄂᆞᆫᄃᆡ 該島에 進口貨物抽稅ᄂᆞᆫ 該島監約束을 一遵ᄒᆞ더라."(『皇城新聞』, 1900. 6. 2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 위해서 다시 모여 논의했고, 제익선사의 분사장(分社長) 배치겸(裵致謙)과 이태욱(李泰旭) 등을 파견하여 일본 선박 1척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배치겸과 이태욱은 선박 구매 이후 목재 수출만을 실행하면서 분쟁을 일으켰다.[24]

1901년 1월 18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대한제국 내부는 울도군 승격 이후에 군수 체제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병린을 파견하여 군청 사무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대한제국 내부는 울릉도로 출발하지 못하고 평해군(平海郡)에 체류하던 배계주에게 제익선을 파견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25]

1901년 3월 11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울릉도 주민 김성집 등은 대한제국 내부에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그 과정에서 『황성신문』은 나룻배를 둘러싼 울릉도민의 대립을 보도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1900년 하반기 울진 출신 최병린과 시찰관 우용정은 도민과 물품의 편리한 왕래를 위해 제익선인 나룻배를 구매했다. 그런데 나룻배는 규목을 싣고 가다가 황토굴에서 풍랑을 만나 파손되었다. 그러자 울도군수의 보고서를 소지한 제익선사 사원(船會社員) 전사능은 선가(船價)와 비용(浮費) 1만 6천 냥을 김성술과 연결된 세력에게 강제로 징수(勒徵)하려고 부산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최병린은 전사능이 울도군수의 인장을 위조하여 보고서에 날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사능을 부산항 감리서에 구인했다.[26]

---

24 "鬱嶋船破. 鬱嶋郡守 裴季周氏의 公報를 據ᄒᆞᆫ 則 周 … 嶋民中 金聖述 等 數三人이 揮動衆民ᄒᆞ야 作鬧齊會ᄒᆞ야 本嶋會社船務를 革罷ᄒᆞ고 津船으로 作用ᄒᆞ얏더니 七月二十五日에 風波가 大作ᄒᆞ야 右船이 破傷홈이 船隻更備ᄒᆞᆯ 意로 官民이 會同公議ᄒᆞ고 會社分社長 裴致謙 李春旭 等을 派送ᄒᆞ야 日船 一隻을 購入ᄒᆞ라 ᄒᆞ얏더니 該兩人이 買船後에 伐木輸出만 ᄒᆞ야 自稱負商ᄒᆞ고 作黨起鬧라 ᄒᆞ얏더라."(『皇城新聞』, 1901. 1. 25)

25 "訓令鬱嶋. 內部에서 鬱島郡守 裴季周에게 訓令ᄒᆞ되 本嶋를 陞郡ᄒᆞᆫ 後에 政體를 未定ᄒᆞ얏기로 崔聖麟(*최병린)을 派送ᄒᆞ야 郡廳事務를 調査ᄒᆞ얏더니 風高路阻ᄒᆞ야 平海郡에 滯在ᄒᆞᆫ지라 顯益船을 專派抵泊케 ᄒᆞ니 令到卽地에 不日 上來ᄒᆞ라 ᄒᆞ얏더라."(『皇城新聞』, 1901. 1. 18) "작년에 울진 사람 최병린과 시찰관 우용정이 입도하여 제익선(濟益船) 한 척을 구입하여 도민과 물품의 왕래에 편리하게 하였는데…."(「鬱島郡節目」, 1902)

26 "島民訴請. 鬱島居民 金聲集 等이 內部에 呼訴ᄒᆞ되 昨年에 蔚珍人 崔秉麟及視察官 禹用鼎이 入島ᄒᆞ야 濟益船 一隻을 購入ᄒᆞ야 島民과 物品來往에 便利케 ᄒᆞ얏더니 槻木을 裝載ᄒᆞ다가 黃土浦에서 風浪의 所破됨이 船會社員 曰 此ᄂᆞᆫ 政府所備어ᄂᆞᆯ 爾等의 曳木遲滯로 致破라 ᄒᆞ고 船價與浮費 一萬六千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1년 5월 3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김성집을 비롯한 울릉도 주민은 배계주가 제익선 나룻배의 파손 비용으로 전(錢) 1만 5천여 냥을 울릉도민에게 배상하도록 지시하여, 울릉도민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내용을 부산항에 도착하여 대한제국 내부에 전보했다.[27] 결국 울릉도 주민 김성술과 김성집 등은 전사능을 반대했고, 김성집은 배계주의 나룻배 파손 비용의 청구를 반대하는 청원서와 전보를 대한제국 내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제국신문』은 최병린이 배계주를 동원하여 회사를 설립했으며, 두 사람이 토색하여 울릉도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잘못된 사실을 보도했다. 1901년 5월 14일 『제국신문』에 따르면 최병린이 배계주와 협력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여 울릉군민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28] 1901년 7월 26일 『제국신문』에 따르면 울릉군민은 배계주와 최병린이 토색하여 도민 100여 호가 파산할 지경이라고 대한제국 정부에 전보했다. 『제국신문』에 따르면 심지어 울릉군민 300명은 부산항에 도착하여 정부 시찰단의 파견을 요청했다.[29]

을 島民에게 勒徵코져 ᄒᆞᄂᆞᆫ 故로 郡守의 報告를 帶ᄒᆞ고 島中知事人 田士能을 渡來ᄒᆞ야 釜港에 到泊ᄒᆞᆫ則 崔秉麟 曰 印章을 僞造ᄒᆞ야 報告에 捺ᄒᆞ얏다 ᄒᆞ고 田士能을 該港監理署에 捉囚ᄒᆞ얏스니 幷押(*압송처리)上裁判ᄒᆞᆷ을 請ᄒᆞ얏더라."(『皇城新聞』, 1901. 3. 11) 우용정에 따르면 구매한 선박은 개운환(開運丸)이라는 이름의 돛단배(風帆)였다.

1900년 김용원(金庸爰)은 울릉도 濟益船社 설립 査檢派員이 되었다(『司法稟報(乙)』 漢城府裁判所檢事 金正穆→議政府贊政法部大臣 權在衡, 報告書 第三十二號, 1900. 3. 30). 배계주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한국인 金庸爰에게 돈을 주고 작성한 벌목의 계약서가 있다는 핑계로, 만약 벌목의 금지를 요구하려면 꼭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15)』, 光武 4年(1900) 3月 16日, 〈四. 外部來信〉(9) 照會第18號 [鬱陵島 日人 發惡實情의 指摘과 退去徹底 및 錢貨責還 措處要求], 大韓 外部大臣 朴齊純→大日本特命全權公使 林權助 閣下)

27 "島民電報. 鬱島郡民이 釜山港에 到하야 內部에 電報하되 本郡守 裴季周가 錢 一萬五千餘兩을 排徵하기로 民難支保라 하얏더라."(『皇城新聞』, 1901. 5. 3) "울릉도 백성들이 내부에 전보하기를 울도도감이 일만 륙천 량을 민간에 배징하야 백성들이 다 환산한다더라."(『帝國新聞』, 1901. 5. 4)

28 "울릉도 백성들이 또 내부로 전보하기를 명부지 최가가 본도군수 배계슈(*배계주)로 중간에서 모계하야 정부를 기망하야 회사를 설시하고 추렴을 륵징하는고로 도민들이 부지할 수 업다고 하엿더라."(『帝國新聞』, 1901. 5. 14)

29 "울도군 백성들이 정부로 전보하기를 본 군수 배계쥬와 최병인이가 토색하야 도민 백여 호가 장차 환산 한 지경인고로 삼백 명이 부산항에 나와 대령하엿사니 민원을 통촉하야 정부에서 시찰사를 파송하야 백성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1년 8월 1일 『황성신문』에는 인천윤선출범(仁港輪船出帆) 광고가 실렸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창룡호(蒼龍號)는 1901년 6월 11일(음력) 오후 인천을 출발하여 제주, 부산, 울도, 북관 등에 취항했다.[30]

1901년 8월 9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울도군수 배계주는 목재를 싣고 부산에 도착했다. 배계주는 울릉도에서 죄인 1명을 압송하여 부산항에 구금했다고 내부에 전보로 보고했다.[31]

1901년 10월 29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울릉도민은 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이 대한제국 외부에 보고했다. 울릉도민이 선박이 없어 울릉도의 상권을 외국인에게 빼앗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울릉도민이 출자하여 보합환(保合丸) 2척을 매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32]

그런데 1902년 4월 28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울도군민은 배계주가 1만 4천 냥을 주민에게 부과했다고 내부에 전보했다.[33] 1901년 6월 김성술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1902년 5월 평리원재판소는 자살이 확실하지만 검시를 하지 않은 배계주를 처벌했다.

1902년 5월 10일 평리원검사(平理院檢事) 오상규(吳相奎)는 울도군민 김찬수(金贊壽) 등이 울도군수 배계주를 고소하여 배계주를 구금했다고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한규설(韓圭卨)에게 보고했다.[34]

안업케 하여 달나고 하엿더라."(『帝國新聞』, 1901. 7. 26)

30 "仁港輪船出帆廣告. 蒼龍號. 陰曆六月十一日午后發 羣, 木, 濟州釜山鬱島北關."(『皇城新聞』, 1901. 8. 1)

31 "裴倅到釜. 昨日 鬱島郡守 裴季周氏가 釜港에 到하야 內部에 電告하되 罪人 一名을 押率하고 今到하얏스니 電飭監理하야 捉囚本港하고 木料를 載來하얏스니 何以措處오 하얏더라."(『皇城新聞』, 1901. 8. 9)

32 "鬱島二船. 鬱島民人 等이 會議ᄒᆞ고 外部에 請願ᄒᆞ되 商權을 外國人에게 見奪ᄒᆞᄂᆞᆫ 所以ᄂᆞᆫ 運輸ᄒᆞᆯ 船隻이 無ᄒᆞᆫ 故라 各出股金ᄒᆞ야 保合丸 等 二隻을 買入ᄒᆞᆯ 터이라 ᄒᆞ얏더라."(『皇城新聞』, 1901. 10. 29)

33 "鬱島民電. 鬱島民이 釜山에 在ᄒᆞ야 內部에 電告ᄒᆞ되 無名錢一萬四千兩을 民間에 排斂ᄒᆞ얏다고 誣訴ᄒᆞᆫ 安元瑞와 裁判次로 等待ᄒᆞ얏스니 電飭ᄒᆞ심을 望이라 ᄒᆞ얏더라."(『皇城新聞』, 1902. 4. 28)

34 "江原道鬱島郡民 金贊壽 對該郡守 裵季周 告訴事 部指令承准 該郡守 裵季周 今爲掌囚故 玆 報告 査照爲望."(平理院檢事 吳相奎→議政府贊政法部大臣 韓圭卨, 光武 6年(1902) 5月 10日, 「報告書 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2년 5월 17일 평리원재판장(平理院裁判長) 임시서리 이근택(李根澤)은 배계주가 울도군수 재임 시 선박 배상금 징수 과정에서 김성술 사망사건 처리를 소홀히 한 데에 따른 처벌을 법부대신 한규설에게 보고했다.

이근택에 따르면 1901년 5월(음력) 울릉도민 김성술은 일본인의 풍범선을 빌려 콩(大豆) 4천여 두를 무역하려고 했다. 그런데 울릉도 조사위원 최병린은 풍범선이 사선(私船)이므로 공선(公船)인 창룡환(蒼龍丸)의 이용을 지시했는데, 풍범선에 있던 콩(大豆)을 창룡환으로 옮겨 실었다.

그러자 김성술과 결탁한 일본인은 풍범선과 둘러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기(書記) 박필호(朴弼浩)는 1901년 6월 내부(內部)의 훈령(訓令)을 받아서 김성술을 잡아가려고 울릉도(鬱島)에 도착했다. 박필호는 "일본인 풍범선의 배상이 김성술의 무촉(誣囑) 때문이니 모두 부담해야 한다"라고 김성술을 위협했다. 그러자 1901년 6월 18일 밤 김성술은 목을 매어 죽었다.

울도군수 배계주는 공무로 인한 상경에 따른 선편(船便)의 촉박함을 이유로, 김성술의 사망사건을 자살로 판정하면서 검시하지 않았다(不行檢). 평리원재판소는 검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배계주에게 태(笞) 40도(度)를 선고했다.[35]

七十一號」, 『司法稟報(乙)』 34)

35 "被告 裵季周 案件 由檢事公訴審理 則被告前此鬱島郡守在任時 上年陰曆五月分 該郡民 金聖術 衆人貿取之大豆四千餘斗 日人風帆船賃借裝載之際 調查委員 崔秉麟 適爲來到 對衆宣言曰 風帆船私船 蒼龍丸公船 若捨公從私 發覺之日 所載穀沒數屬公於海關云 風帆船所載大豆 移載於蒼龍丸矣 金聖術以此由嗾囑於日人處 則風帆船主 因此含憾ᄒᆞ야 稱以損害賠償 該穀四千餘金價値 沒數奪去 崔秉麟 日人處賠償條 推徵於金聖術次 使渠之書記 朴弼浩 同年六月分 呈訴內部 持帶訓令 金聖術押上次 還到該郡 朴弼浩逢着金聖術言曰 前日日人處賠償條 實由汝之誣囑所致 則該穀價 汝須擔徵云 則金曰 歸家後措處 與朴弼浩 偕往渠家之路 該洞前林藪中 及到歇宿 自裁致命 其時被告 奉承內部罔夜上來之訓飭 同月十八日 搭乘蒼龍丸矣 其翌十九日早朝 崔文玉來告曰 金聖術去夜結項致死云故 被告從小船下陸往見停屍處 則金聖術自縊形止 明確無疑 且當夜林藪中同宿之金敬旭所告內 金聖術致死 確係自裁 不待究覈可判 然其在命案審愼之道 固當如法檢驗 而該搭乘之船便方發云故 還郡後歸決之意 成給印蹟於屍親 縛載朴弼浩於船中 纔到釜山港 則崔秉麟 該朴弼浩 擔當率去 被告上京後 仍爲見遞 更爲復任下去之路 因此被訴云 而死者金聖術 以無據之說 致使崔秉麟賠償之境 及其朴弼浩到付押上訓令之時 自裁其命 則情固慊也 死亦浪矣 朴弼浩之持帶押上之訓令 還討賠金之時 威脅情節 不見是圖 該犯現住蔚山郡 則押上照法 斷不可已 被告之初不行檢 雖曰因公上京 急於船便 不遑成案云 然命案攸重 有難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결국 김성술은 일본인의 풍범선을 사용하려 했지만, 최병린이 창룡환을 사용할 것을 김성술에게 지시했다. 우용정과 최병린은 선편을 풍범선에서 창룡환으로 바꾸도록 유도했다. 그 과정에서 김성술은 나룻배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압박을 받고 자살했다. 울릉도의 선박 구매와 관련하여 울진 출신 울릉도 조사위원 최병린과 울릉도 출신 울릉군수 배계주가 대립했다. 나룻배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자, 울릉도민은 최병린 세력과 배계주 세력으로 분열되었다.

IV. 강영우 임명과 활동 및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

강영우(姜泳禹)는 1901년 10월 9일부터 1902년 2월 19일까지 울도군수를 지냈다. 울도군수 강영우는 고위 정부 관료와 연결되었는데, 재임 시절 울릉도 주재 일본 경찰의 거주를 허가하는 등 울릉도의 자체 치안질서를 무너뜨렸다. 강영우는 이용익, 현상건과 연결되어 울릉도의 삼림 이권을 황실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인물이었다.

1899년 11월 1일 강영우는 경상북도 관찰부 주사로 임명되었다.[36] 1901년 10월 6일 강영우는 9품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으로 임명되었다.[37] 강영우는 현상건의 지원 아래 울도시찰관에 임명되었고, 1901년 10월 9일 주임관 6등 울도군수로 임명되

全恕之其事實被告陳供自服明白 被告 裵季周 照大明律雜犯編不應爲條 凡不應得爲而爲之者律 處笞四十 玆報告 査照爲望."(平理院裁判長臨時署理警衛院總管兼任憲兵司令官陸軍參將 李根澤→議政府贊政法部大臣, 光武 6年(1902) 5月 17日, 報告書 第七十二號, 『司法稟報(乙)』 35) "笞放裴守. 鬱島郡守裴季周氏가 該島民訴를 因ᄒᆞ야 平理院에 押囚됨은 已報ᄒᆞ얏거니와 昨日에 笞四十放送ᄒᆞ얏더라." (『皇城新聞』(1902. 5. 20)

36 "任慶尙北道觀察府主事敍判任官七等 姜泳禹 以上十一月一日."(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 3年 11月 6日 月曜日, 「第一千四百十一號」, 『官報』; 『承政院日記』, 高宗 36年 9月 28日(양력 11. 1))

37 "九品 中樞院議官 姜泳禹 … 敍奏任官六等 以上十月六日."(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 5年(1901) 10月 9日 水曜日, 「第二千十三號」, 『官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었다.[38] 1902년 1월 25일 내부 참서관 오영렬(吳永烈)은 울도군수 강영우가 1901년 12월 30일 울릉도에 도착했다고 의정부 참서관 이도상(李道相)에게 보고했다.[39] 하지만 강영우는 울릉도 현지에 부임한 적이 없었다. 강영우는 1902년 2월 18일 울릉도민 안재훈 등의 상소로 울도군수에서 해임되었다. 강영우가 임명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울릉도에 부임하지 않았는데, 잡류배가 군수의 경비를 사칭하여 울릉도민의 생활을 위협했기 때문이다.[40] 1902년 4월 15일 강영우는 정상참작이 되어 징계를 면제받았다.[41] 1902년 5월 4일 내부 참서관 구본순(具本淳)은 울도군수 강영우가 부임 이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의정부 참서관 이도상에게 보고했다.[42]

대한제국은 신임 군수 강영우 임명 이후 외국인의 울릉도 출입금지, 일본인의 울릉도 삼림 벌목 금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대한제국은 외부대신뿐만 아니라 탁지부협판까지 나서서 일본인의 불법벌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다.

1901년 10월 14일 『황성신문』은 일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논설로 실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주한 일본관리는 일본인의 경찰권 및 퇴한권(警察及退韓權)을 갖고 있지만 한인(韓人)이 피해를 당한 후에야 일본인을 처벌했다. 『황

---

38 "任鬱島郡守敍奏任官六等 前議官 姜泳禹 以上十月九日."(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 5年 10月 15日 火曜日, 「第二千十八號」, 『官報』)

39 "官報에 揭載ᄒᆞᆯ 件을 左開ᄒᆞ오니 照亮ᄒᆞ시믈 爲要周… 鬱島郡守 姜泳禹 光武五年十二月三十日 到任."(內部參書官 吳永烈→議政府參書官 李道相, 光武 6年(1902) 1月 25日, 「通牒 第二十九號」, 『內部來去文』 20.

40 "免本官 鬱島郡守 姜泳禹 右ᄂᆞᆫ 本郡民 安在勳等의 訴狀를 據ᄒᆞ온즉 該員이 敍任五朔에 尙不赴任ᄒᆞ야 浮浪之輩가 稱以郡守京費ᄒᆞ고 民間排歛이 數 甚夥然ᄒᆞ야 實爲難保라 ᄒᆞ얏ᄉᆞᆸ기… 以上二月十八日."(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 6年 2月 21日 金曜日, 「第二千一百廿九號」, 『官報』) "三守免官. 울도군수 강영우 씨는 서임한 지 오삭이 되도록 도임 아니하야 잡류배가 군수의 경비라 하고 민간에 배렴하야 백성이 부지할 수 없다 하는고로 면관하엿는데 도임한 보고가 면관하는 날에 올나왓다더라."(『帝國新聞』, 1902. 2. 20, 잡보)

41 "免懲戒 姜泳禹 右ᄂᆞᆫ 該員이 鬱島郡守在任時에 敍任五朔에 尙不赴任ᄒᆞ므로 免本官ᄒᆞ얏ᄉᆞᆸ더니 追究情跡에 容有可恕이옵기 免懲戒… 以上四月十五日."(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 6年 4月 18日 金曜日, 「第二千一百七十七號」, 『官報』; 『承政院日記』, 高宗 39年 3月 8日(양력 4. 15))

42 "官報에 揭載件各道殿最十一冊을 送交ᄒᆞ오니 照亮ᄒᆞ시믈 爲要 … 鬱島郡守 姜泳禹 赴任報告 尙未到付事."(內部參書官 具本淳→議政府參書官 李道相, 光武 6年(1902) 5月 4日, 「通牒」, 『內部來去文』 2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성신문』은 일본인의 여권발급제도를 폐지하면 불량한 일본인(不良之徒)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성신문』은 일본인이 한국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증거를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첫째, 일본인은 해면 3리(海面三里) 안에서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데 불법적으로 어업활동을 했다. 둘째,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은 주한 일본 공사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인의 농경과 벌목을 방해했다.[43] 『황성신문』은 일본인의 불법적인 행동을 고발하면서 일본인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신문』은 일본인의 대표적인 불법행동 사례가 울릉도 불법거주라고 지목했다.

1901년 10월 30일 의정부찬정 외부대신 박제순은 외국인의 울릉도 출입, 흥판(興販), 건축(建屋), 영업(營業), 삼림(森林) 등의 금지를 울도군수 강영우에게 훈령했다. 동시에 박제순은 외국인이 토산물을 훼손(侵損土産)하고, 가옥을 짓고 영업(營建房屋)하는 행위를 처벌할 것도 지시했다. 외부대신 박제순은 외국인의 울릉도 거주가 조약을 어기는 불법행위이고, 한국인이 외국인과 불법을 저지르면 동래감리서에 구금하도록 울도군수 강영우에게 지시했다.[44]

고종의 측근인 내장원경 이용익이 울릉도 삼림 이권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그만큼 대한제국도 울릉도 삼림 이권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1901년 10월 29일 내장원경 임시서리 탁지부협판 이용익은 "울릉군 삼림이 황실

---

43 "論說. 再卞日本人自由渡韓 … 日人이 韓民에 對ᄒᆞ야 恒常 欺凌ᄒᆞᄂᆞᆫ 事實이 自在ᄒᆞᆫ 明證을 略擧ᄒᆞ건ᄃᆡ 漁採로 論ᄒᆞᆯ지라도 海面三里에 無准單漁採ᄂᆞᆫ 約章所禁이어ᄂᆞᆯ 海沿近地에 韓民의 主有ᄒᆞᆫ 漁機를 日人이 占奪ᄒᆞᄂᆞᆫ 暴行이 有ᄒᆞ야 京部에 民訴가 頻繁ᄒᆞ니 此 一證이오 鬱島에 多數日人이 住在ᄒᆞᆷ이 島民의 呼訴를 因ᄒᆞ야 我廷에셔 日公使와 交涉ᄒᆞ야 日使가 明言撤還ᄒᆞ얏스되 尙不退去ᄒᆞᆯ 쑨 아니라 到今ᄒᆞ야ᄂᆞᆫ 反爲添入ᄒᆞ야 韓民이 一草一木을 斫伐치 못ᄒᆞ게 ᄒᆞ니 此 二證이오."(『皇城新聞』, 1901. 10. 14)

44 "貴郡이 新設未久ᄒᆞ야 庶事艸刱ᄒᆞᆫ듸 外國人이 藉稱內地游歷ᄒᆞ고 往來頻繁ᄒᆞ야 至有建屋營業ᄒᆞ며 斫伐森林ᄒᆞ야 致滋弊端ᄒᆞ니 此非但違越約旨라 有關吾民利害ᄒᆞ야 不可因循置之이기로 玆에 訓令ᄒᆞ니 嚴加禁飭ᄒᆞ야 外國人游歷興販以外에 勿得營建房屋ᄒᆞ며 侵損土産케ᄒᆞ고 遇有難便事端이어든 附近東萊監理에게 報明辦理ᄒᆞ고 本國民人이 與外國人으로 串通不法者有ᄒᆞ거든 拿交東萊監理署가 爲可."(議政府贊政外部大臣朴齊純→鬱島郡守姜泳禹, 光武 5年(1901) 10月 30日, 「訓令第一號」, 『江原道來去案』 第一冊; 「江原道篇」 2, 『各司謄錄』 28, 49쪽(奎1798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皇室)의 원림(園林)이므로, 1목(木)이라도 사적으로 벌목을 금지한다"라며 울도군수 강영우에게 훈령을 내렸다. 이용익은 울릉도의 '수목실수(樹木實數)'와 '지계장광(地界長廣)'을 상세히 보고할 것을 강영우에게 지시했다.

이용익은 울릉군의 삼림이 현재 황실의 원림이므로 내장원 소속이라고 판단했다. 이용익에 따르면 "울릉도 수목(樹木)은 원래 공산(公山)의 삼림으로 각별히 중요하므로 사적으로 벌목할 수 없는 것인데, 최근 불량한 무리들이 좌우를 사칭하여 마음대로 베는 폐단이 있었다. 이후 단속을 별도로 더하여 1목(木)이라도 범하여 벌목하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불량배(悖類輩)가 불법벌목한다면, 특별히 체포하고 보고함으로써 엄히 징벌해야 한다. 또한 회사(會社) 등이 서울에 출몰하면서 거짓으로 청탁하여 백성을 침탈하는 행동도 모두 금지한다."[45]

이용익은 울릉도에서 회사가 만들어져 서울에서 로비를 하면서 청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회사를 둘러싼 잡음은 울릉도 내부에서 삼림 이권을 둘러싸고 대립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용익은 울릉도 삼림 이권을 황실 재산으로 규정하면서 적극적인 이권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고종의 측근인 이용익의 개입은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의 각종 이권에 대해서 정보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것은 울릉도 삼림 이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901년 11월 12일 내장원경 임시서리 탁지부협판 이용익은 황실의 기지인 울릉도(欝島)에서 일본인의 불법벌목을 단속하라고 울도군수 강영우에게 훈령을 내렸다.

이용익은 울릉도(欝島)가 황실의 소유이므로 특별한 조치를 내린다며 위반할 경우 내장원이 직접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 일본인은 울릉도(欝島)에 소재한 삼림을 울릉도 주민과 결탁하여 불법벌목했다. 이용익은 울릉도의 행정체계 개선, 일본인의 불법벌목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45 內藏院卿 臨時署理 度支部協辦 李容翊→欝島郡守 姜泳禹, 光武 5年(1901) 10月 29日(奎19143), 「訓令 第1號」, 『訓令照會存案』 24(宮內府內藏院 編, 奎1914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용익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울릉도 내의 지형에 따라 면리(面里)를 구별하는데, 면(面)은 풍헌(風憲)과 집강(執綱)을 임명하고, 리(里)는 존위(尊位)를 임명한다. 모든 면리의 면임(面任)과 동임(洞任)은 일본인의 불법벌목을 금지시킨다. 만약 개인적인 관계로 일본인의 벌목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면임과 중민(衆民)은 잃어버린 삼림을 되돌린다. 내장원은 이를 지키지 못한 동임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 이용익은 회사민(會社民)에 의해 벌목된 규목을 부산항으로 수출할 경우, 벌목 숫자(株樹)를 상세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46]

내장원경 이용익은 울릉도 주민이 일본인과 결탁하여 불법벌목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용익은 일본인의 불법벌목을 금지시키지 못하는 면임과 동임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익은 울릉도 내부의 소식을 파악하여 울릉도의 행정체계까지 제시했다. 이용익은 신임 군수 강영우를 통해 울릉도의 삼림과 이권을 장악하고 내장원을 통한 직접적인 통제를 시도했다.

Ⅴ. 배계주의 재임명과 활동

1. 배계주와 강영우 소송사건(1902. 6. 22)

배계주는 1902년 3월 7일부터 1903년 1월 26일까지 2차 울도군수로 활동했다. 1902년 3월 7일 배계주는 다시 울도군수에 임명되었다.[47] 1902년 4월 1일 『제국신

---

46 內藏院卿 臨時署理 度支部協辦 李容翊→欝島郡守 姜泳禹, 光武 5年(1901) 11月 12日, 「訓令 第2號」, 『訓令照會存案』 25(宮內府內藏院 編, 奎19143).

47 "任鬱島郡守敍奏任官六等 前郡守 裴季周 … 以上三月七日." (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 6年(1902) 3月 8日 土曜日, 第二千一百四十二號, 『官報』) 1902년 3월 4일 『황성신문』은 강영우의 해임과 배계주의 임명을 동시에 보도했다. "鬱守新任. 鬱島郡守姜泳禹氏免官된 代에 前郡守裴季周氏가 叙任되얏더라."(『皇城新聞』, 1902. 3. 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문』에 따르면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은 농사의 계절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울도군수가 부임하지 않았다고 재촉했다.[48] 배계주는 1902년 8월까지 울도에 부임하지 못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49] 1902년 9월 27일 『제국신문』에 따르면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은 울도군수 배계주가 현재까지 도착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50]

1902년 10월 30일 『제국신문』에 따르면 울도군수 배계주는 일본이 울릉도의 삼림을 임의로 벌목하고, 일본경찰서를 설치하여 울도군민을 무단 처벌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부임하여, 일본인의 행패를 금지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법부에 청원했다. 배계주는 평리원에 오랫동안 구속되어 현지에 부임할 수 없었다.[51] 배계주는 1903년 1월 26일 심흥택이 울도군수에 임명된 날 울도군수에서 해임되었다.[52] 배계주는 1903년 1월까지 울도군수 부임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53]

그런데 1902년 고종의 측근 이용익은 울릉도 삼림 이권에 개입했는데, 강영우와 이능해 사건을 계기로 경무사로 임명받아 배계주의 소송사건에 개입했다. 심지어 이용익은 울릉도 규목이 내장원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배계주를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

---

48 "報促赴任. 춘천관찰사 김정근 씨가 내부로 보고하기를 농무가 방은하야 잠시도 고을사무로 비일수가 업는데 홍천 원주 고성 양구 영월 정선 울도 각 군수들이 서임한 후에 지금까지 도임하지 아니하니 곳 재촉하여 보내라고 하엿더라."(『帝國新聞』, 1902. 4. 1)

49 "鬱島郡守裴季周 赴任報告尙未到付事."(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 6年 8月廿六日 火曜日, 「第二千二百八十八號」, 『官報』)

50 『帝國新聞』, 1902. 9. 27.

51 "請願速赴. 평리원에 구슈된(*구속된) 울도군수 배계주씨가 법부에 청원하기를, 본인의 사건을 상주한지가 이구(*오래)하되 지금까지 처분을 봉승치 못한바 오래 도임치 아니하매 경내 삼림을 일인이 임의로 작벌한다 하며, 또 경찰서를 설시하고 백성을 무란이 착거한다 하니, 상주하고, 조속히 도임하야 일인의 행패를 금단케 하라고 하엿다더라."(『帝國新聞』, 1902. 10. 30, 잡보) 『황성신문』도 배계주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다. "請速裁決. 平理院未決囚罪人鬱島郡守裴季周氏기 昨日法部에 請願ᄒᆞ되 本人이 以無據之罪로 被誣於人ᄒᆞ야 閱月在囚에 尙未裁決ᄒᆞ니 私情悶迫ᄲᅮᆫ 外에 現今日本人이 鬱島에 警察所를 設立ᄒᆞ고 日益來渡ᄒᆞ야 森林을 自意斫伐ᄒᆞ며 人民을■意捉去ᄒᆞ되 現無■幹ᄒᆞ야 禁止가 無路ᄒᆞ니 從速裁決ᄒᆞ야 使之還■ᄒᆞ야 俾此一島衆生으로 安接케ᄒᆞ라ᄒᆞ얏더라."(『皇城新聞』, 1902. 10. 29)

52 "鬱島郡守 裴季周依願免本官 … 鬱島郡守敍奏任官六等 前郡守 沈興澤 以上一月二十六日."(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 9年(1903) 1月 29日 木曜日, 「第二千四百廿二號」, 『官報』)

53 "鬱島郡守裴季周 赴任報告가尙未到付 … 以上二月二日."(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 9年(1903) 2月 13日 金曜日, 「第二千四百卅五號」, 『官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2년 3월 배계주가 칙령을 받기 위해 상경하자, 강영우는 배계주를 울릉도 삼림 불법벌목으로 고소했다. 배계주는 1902년 5월 김성술 사망사건 재판 판결, 6월 강영우와의 소송사건, 9월 이능해와의 소송사건 등에 휘말렸다. 배계주는 울도군수에 다시 임명되었지만 소송사건에 연루되어 끝내 울릉도에 부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배계주는 내장원경 이용익의 지원을 받은 강영우와의 소송사건에서 혐의를 벗어 석방될 수 있었다.

1902년 5월 18일 내장원경 겸 경무사 임시서리 이용익은 동래부(東萊府)에 부산항의 울릉도 규목을 운반하도록 내부대신 이건하에게 요청했다.

이용익은 울릉도 삼림이 황실원림(皇室園林)으로 내장원의 감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익은 부산항에 보관된 규목 75편(片)을 동래부에 지시(申飭)하여 즉시 내장원으로 운반해줄 것을 내부대신 이건하에게 요청했다.[54] 1902년 내장원경 이용익은 울릉도 규목의 내장원 소유를 주장하여 울릉도의 이권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1902년 6월 22일 평리원검사 오상규는 전 울도군수 강영우의 요청에 따라 현 울도군수 배계주를 구금했다고 법부대신 한규설에게 보고했다. 오상규에 따르면 평리원은 배계주의 울릉도 불법벌목을 조사하기 위해서 배계주를 구금했다. 그런데 이용익은 경무사 임시서리로 활동하면서 강영우의 배계주에 대한 소송(訴狀)에 개입했다.[55] 이용익은 울릉도 산림이 황실 재산임을 강조했고, 배계주를 처벌하도록 직접 개입했다. 이것은 이용익이 강영우를 간접적으로 비호하면서, 배계주를 구금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902년 7월 2일 『제국신문』에 따르면 대한제국 내부는 경무청이 평리원 재판에

---

54 內藏院卿警務使臨時署理 李容翊→議政府贊政內部大臣兼任惠民院摠裁 李乾夏, 光武 6年(1902) 5月 18日, 「照覆 第2號」, 『訓令照會存案』 31(宮內府內藏院 編, 奎19143).

55 "抵本院裁判長之臨時署理 警務使 李容翊 照會第二十七號內槪 卽接鬱島前郡守 姜永禹 訴狀 時郡守 裵季周 招致查核 具供案押交等因 准此查 該案是禁山內犯斫事 則確係刑事故 該 裵季周 拿囚 玆 報告查炯爲望."(平理院檢事 吳相奎→議政府贊政法部大臣 韓圭卨, 光武 6年(1902) 6月 22日, 「報告書 第九十九號」, 『司法稟報(乙)』 3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출석한 배계주를 체포한 이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경무청에 따르면 경무사 이용익은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배계주를 체포했다. 배계주는 울릉도감 시절 일본인에게 삼림을 방매(放賣)했는데, 일본재판소에서 콩(大豆) 500두(斗)를 벌금으로 물었고, 울릉도 군수 시절 울릉도의 황실 삼림을 매매했으므로, 울릉도에 일본인의 조계를 허락한 죄목이었다.[56] 1902년 7월 3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경무청이 배계주를 체포한 것은 전 울도군수 강영우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57]

1902년 7월 7일 평리원검사 김사묵(金思默)은 배계주의 안건을 조사한 결과 석방을 요청한다고 법부대신 한규설에게 보고했다.

김사묵에 따르면 배계주는 울도군수 재직 중에 울릉도 주민 황종해(黃鍾海)가 규목을 벌목하여 일본인에게 매매한 사실을 인지했다. 1900년 우용정(禹用鼎)은 울릉도 시찰 당시 황종해로부터 벌금을 징수했다. 그런데 황종해와 박군중(朴君中)이 또 다시 일본인에게 사적으로 규목을 몰래 판매했는데, 이 때문에 배계주는 직접 일본에 가서 재판을 진행했다. 그 후 일본인이 울릉도에 들어와서 배계주를 구타했는데, 일본인은 배계주의 재판 소송으로 징역에 처해졌다면서 배계주를 위협했다. 배계주는 일본인의 위협 때문에 손해비용으로 콩 500여 두를 일본인에게 주었다. 배계주는 전사능의 선박 건조 이유에 대해서 서울(京部)에 청원하여 훈령(訓令)을 받았기 때문에 전사능의 벌목을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배계주는 울릉군민의 요청에

---

56 "裴守直捉之理由. 일전에 평리원에서 재판한 울도군수 배계주 씨를 그때에 경무청에 즉착한고로 내부에서 경무청으로 훈령하야 즉착한 이유를 사보하라 하엿더니, 작일에 서리경사 리용익 씨가 회보하기를 배계주가 울도도감으로 잇슬 때에 일인에게 나무를 방매하다가 일본 법관에 재판하야 벌금으로 콩 오백 두를 무럿고, 또 군수로 잇슬 때에 막중한 황실 삼림을 일인에게 방매하엿고, 또 내지에 조계를 허락하야 일인을 주엇기에 착수하엿다고 하엿더라."(『帝國新聞』, 1902. 7. 2, 잡보)

57 "裴氏案件. 內部에서 警務廳에 訓令ᄒᆞ고 鬱島郡守裴季周氏를 本廳에서 直行拘拿ᄒᆞ야 多日捉囚가 此是格外라 該守의 罪犯如何와 捉囚格例를 昭詳報明ᄒᆞ라ᄒᆞ얏더니 回報內槪에 前郡守姜泳禹의 發告를 接ᄒᆞᆫ 則 裴季周가 曾在該島時에 森林材木을 無難斫伐ᄒᆞ야 運送日本ᄒᆞ야 放賣라가 至于裁判於日本法司ᄒᆞ야 大豆五百斗를 徵贖ᄒᆞᆫ 事가 有ᄒᆞ고 且有許斫收稅之傳令ᄒᆞᆷ은 其時調查委員崔秉麟의 叅証錄告가 自在ᄒᆞᆷ으로 拿致訊查則所供과 發告가 吻合ᄒᆞᆫ지라 該島ᄂᆞᆫ 卽皇室所屬森林이오 初非通商港口어ᄂᆞᆯ 噫彼裴季周가 少無顧忌ᄒᆞ고 許以日人居留ᄒᆞ며 傳令斫伐은 一島所共知則若此不已면 該島ᄂᆞᆫ 畢竟何如哉아 所以로 越送平理院ᄒᆞ야 惟俟司法處辦이라ᄒᆞ얏더라."(『皇城新聞』, 1902. 7. 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따라 1그루를 벌목할 때마다 세액을 10분의 2로 정했다. 결국 평리원은 울도군을 설치한 이후 봉급과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배계주의 사정을 고려하고 석방을 요청했다.[58]

1902년 7월 17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평리원은 배계주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조사했다. 우용정은 이미 배계주의 일본재판소 재판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 또한 대한제국 정부는 울도군청이 신설되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울도의 생물품(生物品)으로 군청의 비용을 조달할 것을 지시했다. 그래서 배계주는 한 그루 벌목마다 10분의 2로 세금을 정했다.[59]

1902년 8월 25일 평리원재판장 임시서리 이용태(李容泰)는 울도군수 배계주 처벌(處辦)에 대한 선처(妥安)를 법부대신 임시서리 이지용(李址鎔)에게 요청했다.

법부 훈령 84호에 따르면 배계주는 정부가 울도군(鬱島郡)을 설치한 이후 봉급과 비용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울릉도 삼림을 벌목하여 읍(邑)의 경비로 충당했다. 하지만 법부는 10분의 2세액(十二之稅額) 관련 규목의 수와 돈 액수가 일치해야 하므로, 읍을 설치한 이후 경비 결산, 벌목한 나무의 숫자, 벌목 관련 세액 등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부는 배계주가 울릉도 삼림 벌목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평리원에 따르면 배계주는 1901년 3월 임명장(勅)을 받으려고 올라온 상황에서

---

58 "被告 裴季周 案件審査 則被告前任鬱島郡守時 該島黃鍾海 斫伐槻木 放賣於日人云故 追後聞知 言及於視察 禹用鼎 徵出罰金 其後 黃鍾海 及朴君中 又有私斫潛賣於日人之事故 被告往着日本 因此而裁判出來矣 追後日人 率衆入島 縛打被告曰 吾之處役 由於汝之裁判云 勒徵損害費故 被告不勝其威脅 大豆五百餘斗 收斂以給 且 田土能 稱以造船 請願于京部 得付訓令故 不爲禁斫而許施 且因衆民之齊訴 定十分之二稅額 而許斫一款 則被告供稱 以未經事之致 有此踈忽云 然該郡設置以後 俸給與應用費項 不爲磨鍊 則爲補於一應公用 至有此擧者 參情究跡 不必苛責故 被告 裴季周 放免 玆報告 査照爲望."(平理院檢事 金思默→議政府贊政法部大臣 韓圭卨, 光武 6年 7月 7日, 「報告書 第百五號」, 『司法稟報(乙)』 36)

59 "裴氏審案. 鬱島郡守裴季周氏가 槻木을 斫伐ᄒᆞ야 日人에게 放賣ᄒᆞᆫ 事로 警廳에 被捉ᄒᆞᆷ은 本報에 已記ᄒᆞ얏거니와 平理院에서 該案件을 審査ᄒᆞ얏ᄂᆞᆫᄃᆡ 該郡廳을 新設以後에 政府로서 經費預筭이 初無ᄒᆞ고 本島中所生物品으로 廳費를 支用ᄒᆞ라 ᄒᆞᆷ으로 略干木材를 斫伐ᄒᆞᄂᆞᆫᄃᆡ 稅金을 十에 二로 定ᄒᆞ얏고 前後日人과 裁判ᄒᆞᆫ 事ᄂᆞᆫ 前日調査委員이 詳知ᄒᆞᄂᆞᆫ비라 ᄒᆞ얏더라."(『皇城新聞』, 1902. 7. 1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강영우가 배계주를 고소하여 평리원에 압송되었기 때문에 소송 관련 서류(文簿)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평리원은 조사관이 험난한 뱃길로 울릉도로 출장 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배계주도 공적으로 울도군의 운영 비용을 사용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해결(妥安)해줄 것을 법부에 요청했다.[60] 결국 평리원은 강영우가 배계주를 고소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배계주를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2. 이능해의 울도 사검관 사칭 사건(1902. 11)

1902년 4월 궁내부 사검관(査檢官) 이능해(李能海)는 울릉도의 상황을 조사한 다음,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능해는 궁내부 사검관임에도 불구하고 울도 사검관이라고 사칭하여 1902년 9월 울릉도에서 불법적인 세금을 징수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용익은 울릉도 회사의 불법활동을 조사하여 배계주와 이능해를 연결시켜서 처벌하려고 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용익이 배계주의 불법행위를 조작하려고 개입했지만, 배계주는 평리원의 재판 결과 무고혐의로 풀려났다.

1902년 9월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은 이능해의 울릉도 보고서에 기초하여 보고했다. 김정근에 따르면 1900년 4월 대한제국 정부는 궁내부 사검관 이능해를 해세(海

60 "鬱島郡守 裵季周 處辦案件에 對ᄒᆞ신 部訓令第八十四號內槪에 該郡設置以後로 俸給與應用磨鍊을 雖姑未遑이나 早晩間必有內部措劃이거ᄂᆞᆯ 私斫禁山ᄒᆞ야 把作經費ᄂᆞᆫ 大關事體에 駭歎莫甚이요 旣云用於邑經費면 其所出額이 必有決算이요 十二之稅額이 株數與錢數가 亦必有成筭矣라 豈可歸之疏忽ᄒᆞ야 謂之不必苛責ᄒᆞ고 遽行放免乎아 到卽設邑以後 幾個月經費決算과 所斫株數와 所捧錢數를 更爲明査ᄒᆞ야 從理處辦後報來事等因이온바 此를 承準ᄒᆞ와 用下於經費之錢數와 俄木之株數와 所出稅額之錢數를 卽當更査之不暇이오되 裵季周가 初不因此上來요 以新除後受勅次上京이라가 姜泳禹等에게 板訴ᄒᆞ야 押到本院者이온즉 右項諸條를 雖欲盤核이오나 可據文簿를 初不持帶라ᄒᆞ온즉 其所決算與成算之如何ᄂᆞᆫ 全沒把捉이오며 且欲定査官行査報來後 處計料이오나 海上孤島에 設郡이 未幾이올뿐더러 該倅의 已過之做錯은 雖欠事體이오나 爲補於公用ᄒᆞ야 不得已而行之者也오 實不欲營私之計이온즉 參究情跡에 容有可原이ᄋᆞᆸ기 依前報妥案ᄒᆞ심믈 爲ᄒᆞ와 玆에 報告ᄒᆞ오니 査照ᄒᆞ심을 爲望."(平理院裁判長臨時署理議政府參贊 李容泰→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元帥府記錄局總長 李址鎔, 光武6年 8月 25日,「報告書 第百三十七號」,『司法稟報(乙)』3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稅)를 조사하기 위해서 울도군에 파견했는데, 울릉도의 형편과 풍속, 인물, 토산품을 일체 조사하라고 지시(訓飭)했다. 이능해는 울릉도를 조사한 후 울릉도의 상황을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에게 보고했다.[61]

그런데 1902년 9월 강릉 사람인 이능해는 울도 사검관의 신분을 사칭하여 울릉주민에게 세금을 불법적으로 부과했다. 이능해는 황실비(皇室備)와 석고봉세(石皷捧稅)를 명목으로 울릉도민에게 세금을 독촉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계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즉 배계주는 울릉도 삼림을 불법적으로 벌목하고, 울릉도민에게 선박 파손에 따른 세금을 부과했으며, 저항하는 울릉도민을 동래항에 구금했다는 것이다. 사실 울도군수 배계주는 이근국(李根國), 안재훈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었다.

1902년 11월 7일 내장원경 겸 탁지부 대신 이용익은 이능해가 울도 사검관을 사칭하고 울릉 주민의 미역(藿)을 빼앗았다며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이용익은 이능해를 동래부로 잡아들여 처벌(嚴懲)하고, 이능해가 강제로 빼앗은 돈(勒奪錢) 2,850냥을 찾아서 울릉도 주민에게 돌려주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용익에 따르면 울릉도에 거주하는 양성재(梁性在) 등이 다음과 같이 상소했다.

울도는 황실기지(皇室基址)로 내장원 부속이었다. 그런데 강릉군민 이능해는 울도 사검관을 사칭하면서 하인을 인솔하고, 황실비전(皇室備錢) 6천 냥, 석고봉세전(石皷捧稅錢) 2천 냥, 1894년 이후 상납조(上納條)와 선곽세(船藿稅)를 10일 내로 납부할 것을 독촉했다. 이능해는 세금 명목을 양지정결(量地定結)이라고 주장했다. 이근국은 이능해의 회사 동료(作魁)이자 당숙이었다. 회사는 작폐가 심각했다. 울릉도민이 회의해서 허표(許表), 이준필(李俊弼) 등을 시켜서 서울(京部)에 호소하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이능해는 먼저 항구(渡口)에 가서 선박(島船) 출항(出泊)을 기

61 江原道觀察使金禎根→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外部協辦崔榮夏, 光武 6年(1902) 9月 15日, 「報告書第二號」, 『江原道來去案』 第一冊; 「江原道篇」 2, 『各司謄錄』 28, 51-52쪽(奎1798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려서, 허횡(許橫)과 이인숙(李仁淑)의 상곽(商藿) 천여 속(束), 허표(許表)와 이준필(李俊弼)의 상경 여비(路費)인 무곽(貿藿) 600속(束)을 빼앗고, 춘천부(春川府)에 무고(誣囑)하여 허표를 잡아 가두었다.

이용익은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이 울도군수 배계주가 이근국, 안재훈 등과 함께 회사를 설립(捌設)하여 불법행동을 저지른 것이라고 파악했다. 배계주는 삼림을 벌목(斫伐)하여 백성(衆民)으로 하여금 선두(船頭)를 이동(曳運)하게 하고서 비용(雇價) 5천여 냥을 지급(出給)하지 않았다. 또한 배계주는 선박이 바람에 난파(致敗)하자 선비(船價) 1만 6천여 냥을 백성(衆民)에게 물리고자 울릉도민(島民) 5인을 동래항에 가두었다.

이용익은 군청이 황실비(皇室備)를 거둔 적이 없었고, 이능해를 내장원에서 파견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용익에 따르면 울릉도(鬱島)가 군(郡)으로 내부의 소속이고, 기지(基址)는 내장원 관할(句管)이었다. 이용익은 춘천부에 구금된 허표를 즉시 석방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용익은 배계주가 불법징수(勒奪錢)한 5천여 냥, 대두(大豆) 2천여 두를 환수(還推)하여 울릉군민에게 반환할 것을 지시했다.[62]

그런데 1903년 1월 5일 평리원재판장 정기택(鄭騏澤)은 울도군수 배계주의 재판에 관한 보고서를 법부대신 이재극(李載克)에게 제출했다. 정기택은 내부가 울도군 설치 이후 관속(官屬) 인건비 및 관청 경비 등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했다.[63] 1903년 3월 14일 평리원재판장 이남희(李南熙)는 1902년 6월

---

62 內藏院卿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 李容翊—江原道觀察使 金禎根,「訓令 第13號」,『訓令照會存案』 37(宮內府內藏院 編, 奎19143).

63 "鬱島郡守 裵季周 案件에 對ᄒᆞ야 已有再次修報이온바 部訓令 第一百六號 第一百三十三號를 次第承準ᄒᆞ온 內槪 裵季周에게 應査文簿를 使之持待ᄒᆞ야 消詳審査에 具案馳報等因이온바 此를 奉準ᄒᆞ와 該倅를 更爲捉囚ᄒᆞᄋᆞᆸ고 設邑以後 幾個月經費決算과 所斫株數와 所捧錢數를 另加査覈ᄒᆞ온즉 供稱 上年陰曆四月分에 設郡 而所謂俸給及經費ᄂᆞᆫ 內部에서 初不磨鍊故로 只有郡守之名 而無他決算이ᄋᆞᆸ기 將欲議定規制ᄒᆞ야 上京이ᄋᆞᆸ다가 因此被囚에 迄今未遑이ᄋᆞᆸ고 私斫禁木ᄒᆞᆷ은 本島民人이 皆曰旣爲設郡則官舍를 不可不新建이며 買得船隻後에 可通水路 而各民開拓田土時에 伐棄之木을 不必等棄니 以十分之二稅로 納官ᄒᆞ야 俾爲官用이 爲好라 ᄒᆞ기 依民願許施나 然이나 斫鍊木이 不過三十株이온듸 定稅決算을 不爲磨鍊 則豈有推錢者乎잇가 至於應査文簿ᄂᆞᆫ 略在本郡이나 初非如法成案者 則無足爲可據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3일 구금된 배계주는 "초불봉전(初不捧錢) 칙별무탐구시죄(則別無深究示罪)"라며 '무죄'라고 법부대신 이재극에게 보고했다.[64] 결국 배계주는 1903년 8월 1일 울도 전토(田土) 개척 당시 울도군민의 요청으로 1그루 벌목할 때마다 10분의 2로 세금을 허가한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65] 결국 이 사건은 이용익이 배계주를 처벌하기 위해 무리하게 이능해와 연결시켜 조작한 것으로, 배계주의 무죄로 일단락되었다.

VI. 울릉도 주재 일본경찰서 설치와 대한제국의 대응

1901년 12월 10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 경찰관의 울릉도 파견을 추진했다. 이미 하야시는 울릉도의 조직 개편, 군수 면담 등을 통해서 울릉도의 현지 상황을 주목했다. 하야시는 일본인의 조선 거주 전략의 일환으로 울릉도에 일본 경찰관을 주재시키기로 계획했다.

신임 울도군수 강영우는 군수로 임명된 직후 주한 일본공사관을 방문하여 울릉도의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주한 일본공사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치안을

公証이오 烟波千里에 勢難持待라ᄒᆞ온즉 該倅之職在命吏ᄒᆞ야 島民私斫을 不禁許稅가 雖云補公이나 揆以事理면 不無逕庭之責이로ᄃᆡ 未定稅額에 初不捧錢ᄒᆞ얏峽 設郡以後에 官屬定額과 經費決算을 未遑磨鍊 則文簿修整을 不能如例ᄂᆞᆫ 勢或然矣라 參究情跡에 容有可恕이오니 有罪思量이 恐涉未妥이ᄋᆞᆸ기 玆에 報告ᄒᆞ오니 査照ᄒᆞ시믈 爲望."(平理院裁判長 鄭駪澤→議政府贊政法部大臣 李載克, 光武 7年(1903) 1月 5日,「報告書 第二號」,『司法稟報(乙)』38)

64 "裴季周 光武六年六月十三日囚. 鬱島郡守在任時 私斫禁木事 被訴於 姜泳禹 屢度査覈 則該員所供內設郡時初無俸給及經費磨鍊 而各民開拓田土時 伐棄之木 定十二稅納之意 依民願許施 初不捧錢 則別無深究示罪."(平理院裁判長 李南熙→議政府贊政法部大臣 李載克, 光武 7年(1903) 3月 14日,「報告書 第四十三號 別紙」,『司法稟報(乙)』37)

65 "別紙平理院 … 輕囚中未決囚放送秩裴季周 以鬱島郡守該島諸民田土開拓時伐棄之木依民願定 十二稅許用而未及捧錢則可合參放… 以上八月一日."(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 7年(1903) 8月 5日 水曜日,「第二千五百八十三號」,『官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근거로 자국 경찰의 울릉도 파견을 제안했다. 이것은 일본인 단속이라는 거짓 이유를 내세워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를 합법화하려는 조치였다.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1901년 12월 10일 원래 울릉도에 도감(島監)을 두었지만, 새로 울도군수를 설치하여 신군수(新郡守) 강영우가 조만간 출발할 예정이라고 일본 외무성에 보고했다.

하야시는 전 도감 배계주가 면직되어 서울(京城)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를 직접 만나 울릉도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파악했다. 하야시는 배계주에게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울릉도 상황을 기록했다.

배계주는 울릉도 개척 상황,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 과정, 울릉도 거주 한국인과 일본인의 수, 울릉도의 치안 부재 등을 다음과 같이 하야시에게 증언했다.

하야시는 1901년 배계주와의 면담을 통해서 일본인이 울릉도에 도항하는 과정, 울릉도 거주 일본인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을 집중적으로 기록했다. 하야시는 일본의 울릉도 영유권 주장,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 합법화 등을 염두에 두고 배계주를 만났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야시의 기록에 따르면 배계주는 울릉도와 조선 연안 사이의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일본인의 도항을 권유했다. 하야시에 따르면 배계주는 일본 시마네(島根)와 고베(神戶) 등의 지방을 방문하여 울릉도 규목 등의 판매를 주선하는 방법으로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을 유도했다. 일본인은 어업활동을 위해 울릉도에 도항했으며, 300–400명까지 거주했다. 일본인은 울릉도에 30–40호의 가옥을 짓고 본격적으로 거주했는데, 이들 중에는 '무지하고 억센' 인물이 많았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은 "상호 간의 논쟁을 오로지 완력으로 결정하여 심하게는 살인범도 있었다."[66] 결국 하야시 공사는 배계주의 증언을 통해서 울릉도에서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폭력적 대립, 일본인들에 대한 통제 불능 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

66 "배계주는 인천 대안(對岸) 영종도(永宗島)의 주민으로 20년 전 울릉도에 이주하여 개척할 것을 계획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런데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불법거주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규정했다. 하야시는 한국인이 교통의 편익을 얻기 위해 일본인의 도항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야시는 "오늘날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일본인을 철수시킬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자신의 부임 이후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철수를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주한 일본 외교관도 두 번이나 울릉도에 파견되어 정황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야시는 일본인이 울릉도에 거주한 시기를 '십수 년'으로 파악했고, 강제로 철수를 시켜도 다시 울릉도에 거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67]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외국 선교사의 내지(內地) 거주'를 근거로 삼았다. 하야시는 "유독 울릉도 거주 일본인에 한하여 퇴거를 재촉하는 것은 부조리한 이유"라며 대한제국 정부에 반박했다. 하야시는 "일본인이 울릉도에 거주하기에 이른 것은 조약(條約) 규정(規定) 밖에 있다"라며 예외적인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미 하야시는 1900년 9월 12일 "오늘의 습관을 만든 것이 도치(島治)를 감독하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한국 정부에게 회신했

고 울릉도에 도항(渡航)하여 개척에 종사했다. 배계주는 울릉도가 원래 무인도서로 한국 연안과의 교통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의 도항을 권유하고자 시마네(島根) 또는 고베(神戶) 등에 직접 가서 울릉도 산출(産出)의 규목(槻木) 매매를 추진했다. 점차 일본인이 울릉도로 도항했고, 한국인도 도항할 배편이 열려서 이주의 단서를 열었다. 울릉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재 5천-6천 명 정도였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300-400명이고, 1천 명까지 도달할 때도 있었다. 그것은 오로지 어업(漁業) 시기와 관계가 있었다. 일본인은 30-40호의 가옥을 짓고 토착 생활을 했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 중 무지하고 억센 무리가 많았지만, 일본인을 단속할 관리가 없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논쟁은 오로지 폭력으로 결정되어 심하면 살인도 벌어졌다. 한국인들 사이도 폭력에 호소함이 보통이었다. 울릉도 도사(島司)는 완력을 제지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여 울릉도를 다스리는 데 장해가 있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16), 1901年 12月 10日, 〈五. 本省機密往信 一·二〉(67) 機密第133號 鬱陵島在留民 단속을 위한 警察官 派遣의 件 上申, 林 公使→外務大臣 小村壽太郎)

67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일본 정부 및 한국 정부 사이에 오간 문서를 기록했다. "1900년 7월 4일자 機密 제54호로 卑見을 具申하여 드린 끝에 동년 7월 18일자 機密 제36호의 回訓을 받았습니다. 본 공사는 회훈의 취지를 명심하여 즉시 別紙 甲號와 같이 한국 정부에 照會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同 乙號와 같이 일본의 제안을 동의하기 어렵다고 회답했습니다. 본 공사는 더 나가서 別紙 丙號의 조회를 발송했습니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16), 1901年 12月 10日, 〈五. 本省機密往信 一·二〉(67) 機密第133號 鬱陵島在留民 단속을 위한 警察官 派遣의 件 上申, 林 公使→外務大臣 小村壽太郎)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68] 하지만 하야시의 주장은 조불수호통상조약을 살펴보면 사실이 아니었다. 선교사는 여행증명서(護照)를 소지하면 통상지역 이외에 내지(內地)를 여행할 수 있지만 거주는 할 수 없었다.[69]

하야시 공사는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한국 정부의 회신이 없었으므로, 한국 정부가 자국의 입장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야시에 따르면 주한 일본공사관의 마지막 조회는 1900년 9월 12일자였고, 그 후 1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한국 정부의 의사 표시가 없었다. 하지만 실제 울릉도민은 그 사이 대한제국 내부와 외부에 일본인의 불법거주를 금지시킬 것을 요청했고, 대한제국 내부는 적극적으로 일본인의 불법거주를 금지할 것을 외부에 전달했다.

하야시에 따르면 외부대신 박제순은 1901년 주한 일본공사관 고쿠분 쇼타로(國分象太郎) 서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박제순은 "신임 울도군수 강영우의 부임에 즈음하여 어떠한 불상사가 야기될지도 모른다"라며, 일본인을 단속할 방안을 고쿠분과 상의했다. 박제순은 "신임 군수 강영우는 전 도감 배계주로부터 일본인의 불법행동과 관련하여 울릉도를 다스리는 데 곤란한 상황이라고 들었다. 울릉도 주재 일본인의 발호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강영우는 어떠한 불상사가 야기될지도 모른다며 매우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단속할 방법이 무엇인가?" 그 자리에서 고쿠분 서기관은 "신임 군수와 면담을 마치고 적당한 단속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박제순에게 답변했다.

그 후 신임 군수 강영우는 1901년 주한 일본공사관을 방문하여 고쿠분 서기관을

---

68 "본관은 외국 선교사의 내지(內地) 거주의 사례를 원용했는데, 유독 울릉도 거주 일본인에 한해 퇴거를 재촉하는 것은 부조리한 이유입니다. 또 일본인이 울릉도에 거주하기에 이른 것은 조약 규정 밖에 있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오늘의 습관을 만든 것은 도치(島治)를 감독하는 한국 관리의 책임으로, 즉 한국 정부의 책임에 속한다고 회답하였습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16), 1901年 12月 10日, 〈五. 本省機密往信 一·二〉(67) 機密第133號 鬱陵島在留民 단속을 위한 警察官 派遣의 件 上申, 林 公使→外務大臣 小村壽太郎)

69 김영수, 「조불수호통상조약」, 『한국근대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51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면담했다. 고쿠분 서기관은 하야시 공사의 지시를 그대로 강영우에게 전달했다.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행위를 감시할 목적으로 일본 경관을 매년 임시 출장시키거나 또는 상주시키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실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제안이었다.

결국 하야시는 일본 경찰을 울릉도에 파견하는 것을 제안했다. 하야시는 "강영우는 빨리 그런 조치를 취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대답한 모양입니다"라고 간접화법으로 보고했다.[70] 이러한 기록은 강영우가 일본 경찰의 울릉도 주재를 제안하지 않았으며 직접적으로 허락하지는 않았음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하야시는 강영우를 핑계로 울릉도에 일본 경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울릉도 주재 일본 경찰 파견은 철저하게 하야시의 전략에서 나온 결과였다.

하야시 공사는 배계주를 통해 대한제국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일본 경찰의 울릉도 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하야시는 자신이 제안한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해결 방안, 즉 일본 외무대신이 일본 경찰관의 울릉도 파견을 결정하여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다.

하야시는 배계주와의 면담은 한국 정부의 저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속내를 비쳤다. 하야시는 "본관은 배계주와의 대화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도 탐지(窺知)했습니다. 향후 단속법을 만들어 울릉도 거주 일본인에 대한 감시와 제재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면, 울릉도민과의 타협과 융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인의) 철수(退去)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다.

하야시 공사는 1901년 12월 10일 울릉도 거주 일본인에 대한 통제 정책으로 '일본 경찰의 울릉도 파견을 통한 단속법'을 일본 외무대신 고무라에게 제안했다.

하야시의 '단속법'이란 울릉도를 부산 또는 원산 주재 영사관의 관할 구역으로 편

---

70 『駐韓日本公使館記錄x』(16), 1901年 12越 10日, 〈五. 本省機密往信 一·二〉(67) 機密第133號 鬱陵島在留民 단속을 위한 警察官 派遣의 件 上申, 林 公使→外務大臣 小村壽太郎.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입시켜, 6개월부터 1년까지 경부(警部) 1명과 순사 2명을 울릉도에 파견하는 것이었다. 하야시에 따르면 일본인 50-60명이 거주하는 송도(松都)를 경성지역 영사관의 구역 아래 두고 순사 파출소를 설치한 전례가 있었다. 하야시는 '단속법' 제안 배경에 대해서 첫째, 단속법을 만들어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인이 울릉도민과 타협할 수 있고, 둘째, 일본인이 울릉도민과의 융합이 가능하다면 일본인의 철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결국 하야시는 울릉도에 일본 경찰을 파견한다면 일본이 "울릉도를 다스리는 데 있어 장애가 자연히 소멸될 것이며, 철수 같은 고충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외무대신 고무라에게 제안했다.[71] 하야시 공사는 울릉도에 일본 경찰을 파견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를 합법화하고, 향후 울릉도를 관할하려는 의도까지 갖고 있었다.

하야시는 일본 경찰의 울릉도 파견에 대해서 "조약상의 권한으로 당연히 주장할 수 없지만 한국 정부가 묵인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하야시는 일본 경찰의 울릉도 파견이 조일조약에 위배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런데 하야시 공사는 한국 정부가 묵인했다고 하면서 울릉도에 일본 경찰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하야시 공사가 일본의 울릉도 관할을 목표로 설정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

71 "단속법은 부산 혹은 원산 주재 일본영사관에 울릉도를 편입하여 실행하면 됩니다. 부산이 교통의 편의가 많습니다. 순사 2명을 포함한 경부(警部) 1명를 울릉도에 파견하는 방식입니다. 교대 시기는 대략 6개월에서 1개년까지입니다. 이것은 경성 주재 일본영사관이 마치 송도(松都)를 관할 구역 내에 포함시키는 것과 유사합니다. 송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50-60명 정도이므로, 경성 주재 일본영사관은 송도에 순사를 파견하여 주재시키고 순사파출소를 두어서 일본인의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감히 조약의 권한으로 당연히 주장할 수 없지만, 실제 한국 정부는 순사 파출소를 묵인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울릉도도 송도와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일본인의 행위 시찰 등을 명분으로 울릉도에 일본 경찰관을 파견한다면, 울릉도를 다스리는 데에 장애도 자연히 소멸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인) 퇴거 문제 같은 고충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추신: 甲乙丙號 3통의 왕복문은 보고에 누락되었으니 참고로 특히 이에 첨부합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x』(16), 1901年 12月 10日, 〈五. 本省機密往信 一·二〉(67) 機密第133號 鬱陵島在留民 단속을 위한 警察官 派遣의 件 上申, 林 公使→外務大臣 小村壽太郎) 김호동도 이 문서를 상세히 활용했다(김호동, 「울도군수의 행적」, 『독도연구』 19, 2015, 1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2년 2월 28일『황성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일본 경찰서(日本警察署)를 울릉도에 신설했다. 부산 주재 일본경찰서 소속 니시무라(西村) 경부와 순사 2명이 울릉도에 파견되었다. 하야시는 일본 정부의 승인 아래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를 합법화하는 전략을 실행했다.[72] 하야시는 1902년 2월 일본경찰서를 울릉도에 신설하고 경찰을 파견했다.

결국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일본경찰서를 울릉도에 신설할 것을 본국 정부에 제의하였고, 신임군수 강영우의 묵인 아래 추진했다. 일본 정부는 하야시의 제안을 승인하여 울릉도에 일본인의 불법거주를 합법화하였고, 나아가 울릉도를 통치하려는 전략을 추진했다.

일본의 울릉도 경찰서 분소 설치에 대해서 국내의 여론은 들끓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거주를 비판하고 그들의 소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1902년 5월 1일『황성신문』은 일본인의 불법적인 울릉도 침범 상황을 보도했다.『황성신문』은 동해상의 울릉도가 "아인한판도중강토야(我人韓版圖中疆土也)"라고 하여 한국의 영토(疆土)라고 강조했다.『황성신문』에 따르면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은 한국인 도감(島監)이 있는데도 울릉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점령하고, 한국인들의 벌목 금지를 고시하는 불법까지 저질렀다. 한국인은 울릉도에 3천여 명이 거주하고 일본인은 550여 명에 불과했다.『황성신문』은 외국인이 울도(鬱嶋, 鬱島)에서 불법적으로 행동하듯이 한국의 영토 전부를 점령할지도 모른다고 경계했다.[73]

---

72 "鬱島日巡查. 日本人이 鬱島에 羣居ᄒᆞ야 反히 韓人으로 一草一木을 斫伐치 못ᄒᆞ게 ᄒᆞᆷ은 已報ᄒᆞ얏거니와 今에 日本各新報를 據ᄒᆞᆫ 則鬱島에 在ᄒᆞᆫ日本人을 保護管轄ᄒᆞ기 爲ᄒᆞ야 今回該島에 日本警察署를 新設ᄒᆞ고 在釜山日本警察署의 西村警部及巡查三名을 派送ᄒᆞ야 該島에 駐在ᄒᆞ기를 命ᄒᆞ얏더라."(『皇城新聞』, 1902. 2. 28) "鬱島日巡. 일본 사람이 울도군에 이거하며 본국 백성을 도리여 축출하야 초목 한 개라도 작벌하지 못하게 한단 말은 이왕 기재하엿거니와 지금 울도에 잇는 일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본경찰서를 울도에 신설하고 부산에 잇는 일본경찰서에서 총순과 순사 4인을 파송하야 울도에 주차케 한다더라."(『帝國新聞』, 1902. 3. 1)

73 "論鬱島報告事件. 昨年八月에 釜山海關派員士彌須氏鬱陵島視察後報告書ᄂᆞᆫ 前已譯載本報어니와 大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은 울릉도에 일본경찰서 분소가 설치된 게 사실인지 확인에 나섰다.

1902년 9월 27일 『제국신문』에 따르면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은 일본이 울릉도에 경찰서를 설치하여 울도군민의 활동에 개입하고 있는데,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에 일본경찰서의 설치를 허가한 일이 있는지를 질의했다.[74]

1902년 9월 15일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은 일본경찰서(日本警署)가 불법적으로 울릉도에 설치되어 주민들을 핍박하고 있으므로, 일본경찰서의 폐지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외부협판 최영하(崔榮夏)에게 제출했다.

김정근은 울릉도의 수토제도와 군청의 설치 과정을 기록했다. 강원도가 관할하는 울도군은 동해바다(東溟) 요충지에 있어서, 갑오경장 이전에는 해마다 수토(搜討)했다. 울도군은 삼림이 빽빽하고 인민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히 군청을 설치했다. 이것은 경계를 정하고 인민을 위무하여 깨어나길(蘇醒) 희망했기 때문

抵鬱陵島ᄂᆞᆫ 我人韓版圖中疆土也라 日本人이 初無我廷認准ᄒᆞ고 擅自渡航斫木ᄒᆞ야 築屋開舖에 要爲永遠居住者 已是法外欺蔑之習이니 此 不俟多辨이어니와 就將報告中所陳者論之컨니 有曰居島日人이 割分全島南北ᄒᆞ야 自領其森林ᄒᆞ고 反禁韓人伐木ᄒᆞ야 至有自爲告示ᄒᆞ고 賠徵罰欵於韓人이라ᄒᆞ니是ᄂᆞᆫ 客反爲主ᄒᆞ야 日本人이 以鬱陵一島로 視做自國土地者也며 韓國之島監이 自任로ᄃᆡ 彼則目無島監故로居住之客民이 有若官吏ᄒᆞ야 至發告示ᄒᆞ니 是ᄂᆞᆫ 賊反荷杖ᄒᆞ야 輒禁韓民之斫韓木者也라 彼其視我韓國을 曾謂有政府則豈容毫無顧憚ᄒᆞᄒᆞᆫ 擅自占領이 至此之極乎아 噫其侮蔑逞臆이 誠不勝痛恨憤歎이로다 所謂島中韓民之男女人口ᄂᆞᆫ 爲三千餘名이오 日本人口ᄂᆞᆫ 僅爲五百五十餘名則日人之數ᄂᆞᆫ 直不過韓民五分之一也로ᄃᆡ 哀此韓民은 反爲受制於五分一客人之下ᄒᆞ야 讓與全島之利權ᄒᆞ고 僂僂然束手賠罰ᄒᆞ니 寧不可哀乎哉아然而究其受制之源則豈非我政府不能開導之責乎며 不能自强之咎乎아 彼之饕慾은 必不止於東海上幺麼一島而已오 全國之內에 膏沃之壤과 鑛林之藪가 無處非垂涎之地則又安知不以鬱嶋爲例乎아 彼視我政府를 如虛無人ᄒᆞ고 視我國民을 皆如鬱島ᄒᆞ야 稍稍蚕食而鯨呑이라도 我政府我國民은 猶往認若應然而一任客人之欺侮乎아 嗚乎痛矣라 且其中又有韓民之奸猾欺騙者ᄒᆞ야 或陰附外人ᄒᆞ야 以流毒生民이라ᄒᆞ니 此所以受侮外人者也라 盖我韓之近日惡習이 每有此等奸慝▣莠居良間ᄒᆞ야 種種貽毒流害者 在一島에 爲一島之弊ᄒᆞ고 在一省에 爲一省之弊ᄒᆞ고 在一國에 爲一國之弊ᄒᆞ니 此等莠惡은 痛宜芟除根苗ᄒᆞ야 不容寬縱이어니와 吾輩之所深憂者ᄂᆞᆫ 外人之占我彊土가恐以鬱嶋而爲濫觴일가ᄒᆞ노니 我政府我齊民은 宜惕厲而奮發哉어다 鬱島中三十人之受制가 非三千人之受制而已라 特我全國千萬人之共遭也니 豈不痛歎也哉아."(『皇城新聞』, 1902. 5. 1)

74 "春察報告. 울도군수 배계주 씨가 지금까지 도임치 못하엿는데, 백성은 일인과 두루 상지하야 백성은 호소할 곳이 업고 일인은 경무서를 실시하야 백성을 임의로 착수하는지라.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 씨가 외부로 보고하기를 일인의 경무서를 정부에서 인허하야냐 하고 힐문하엿더라."(『帝國新聞』, 1902. 9. 27, 잡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다. 그런데 울도군수는 부임하지 않고 있고, 무뢰배들의 싸움이 이어지자 울릉도민들은 버티기 어려워 모두 흩어졌다.

그런데 1902년 9월 15일자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의 보고서는 궁내부 사검관 이능해의 울릉도 보고서에 기초했다. 1900년 4월 대한제국은 해세(海稅)를 조사하기 위해 이능해를 울릉도로 파견했는데, 이능해는 울릉도를 조사한 이후 울릉도 상황을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에게 보고했다. 이능해에 따르면 울도에 군청이 설치된 지 오래되었지만 교리(校吏)와 노령(奴令)이 없었고 군수도 부임하지 않아서 억울한 백성이 호소할 곳이 없었다. 반면 일본인은 일본경찰서(警署)에 호소하여 울릉도민을 주저 없이 구금했다.[75]

김정근은 이능해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일본경찰서 설치에 따른 울릉도민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울릉도는 개항장이 아닌데 우리 백성을 잡아 다스리는 것이 무슨 법입니까? 울릉도민이 위압에 핍박당해 견디기 어려울 것이니, 이로 인해 울릉도민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각각의 조례에 어긋나고 백성을 보호하는 뜻이 아닙니다." 김정근은 대한제국 외부가 일본공사관에 조회하여 경찰서를 철수시켜, 울릉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근은 조례의 규정에 어긋나는 일본경찰서가 울릉도에 설치되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은 울릉도가 개항장이 아니므로 일본의 경찰서 설치도 불법이고, 일본 경찰이 울릉도 주민을 구속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인이 무단으로 경찰서(警署)를 신설하여 울릉도민을 핍박하자, 김정근은 외부가 주한 일본공사관에 조회하여 경찰서를 폐지하도록 요청했다. 그 후 대한제국 외부는 1902년 9월 30일 일본인의 불법행위를 금지시키도록 주한 일본공사에게 항의할 것을 결정했다.[76]

---

75 江原道觀察使金禎根→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外部協辦崔榮夏, 光武 6年(1902) 9月 15日, 「報告書第二號」, 『江原道來去案』 第一冊; 「江原道篇」 2, 『各司謄錄』 28, 51-52쪽(奎17985).

76 "本道所管鬱島郡이 東溟要衝에 在ᄒᆞ야 更張以前則每年搜討派送이올더니 該地形便이 森林이 攸重ᄒᆞ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2년 10월 13일 외부대신 서리 외부협판 최영하는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의 철수(退去) 및 울릉도에 설치된 일본경찰서의 폐지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에게 요구했다.

최영하에 따르면 외부대신 박제순은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강제소환에 대한 조회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미 대한제국 외부는 1900년 9월 7일 제64호의 조회를 통해서 네 가지 조목을 열거하며 일본인의 불법성을 반박했다. 그런데 하야시 공사는 1900년 9월 12일 답변(照覆)에서 네 가지 조목에 대해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았다. 단지 하야시 공사는 한국 정부가 외국 선교사에 대해서는 개항장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도 일본인의 울릉도 철수를 반대했다고 답변했다. 하야시는 "한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들과 동일하게 한일조약(日韓條約)은 개항(開港)과 개시(開市) 이외 지역에서 외국인의 거주가 불가능합니다. 한국 정부가 조약에 허가된 지방 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모두 퇴거시키지 않는다면 본관은 단연코 일본인만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1902년 10월 13일 외부협판 최영하는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에게 답변서를 보냈다.

최영하는 각국의 선교사가 국내를 돌아다닐 경우 대한제국 정부가 장정(章程)에

고 人民이 湊集ᄒᆞ기로 自朝家로 特設郡守ᄒᆞ시믄 經界을 頓定ᄒᆞ고 人民을 按撫ᄒᆞ야 島樣蘇醒을 可望ᄒᆞ미여ᄂᆞᆯ 差送之郡守ᄂᆞᆫ 現無赴任ᄒᆞ고 無賴輩之傾軋은 相續ᄒᆞ야 島民難支에 無非渙散이다 聽聞攸暨에 方擬一番調查矣러니 去四月아에 宮內府로 查檢官李能海를 海稅調查次派送前往故로 其在查檢之地에 該島形便과 風俗人物土品物産을 一體查探次 訓飭以送矣러니 現接該查檢官所報內開에 該島을 設郡數年에 尙無校吏奴令等名目ᄒᆞ고 官不赴任ᄒᆞ야 有寃之民이 呼訴無處ᄒᆞ고 與日本人으로 交涉之場에 如有是非之端이면 呼訴于日本新設警署則我國人을 無難捉治ᄒᆞ니 大違各國條例요 亦非保護生民之本意等因이두 查此該島가 旣非通商口岸 而日人之設置警署는 未知政府之認許與否이오나 捉治我民이 是何法意乎잇가 島民之見逼於威壓이 勢所難耐에 由是而徒懷渙散이오며 繼又樂禍之類ᄂᆞᆫ 接筍而起ᄒᆞ야 因此而害及生民이 不一其端ᄒᆞ니 職在管轄에 誠切憂悶ᄒᆞ와 玆에 報告ᄒᆞ오니 照亮ᄒᆞ오셔 照會于日本公館ᄒᆞ와 該島中新設警署을 使之撤還케 ᄒᆞ야 使遠島民人으로 安堵奠接之地爲望. 光武六年九月十五日." "當行文日本公使ᄒᆞ야 使之禁斷ᄒᆞᆯ事 三十日."(江原道觀察使金禎根→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外部協辦崔榮夏, 光武 6年(1902) 9月 15日, 「報告書第二號」, 『江原道來去案』 第一冊; 「江原道篇」 2, 『各司謄錄』 28, 51-52쪽(奎1798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초하여 여행증명서(護照)를 발급했다. 이는 조약에서 "외국인이 해당 호조를 가지고 각처를 다닐 수 있다"라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최영하는 선교사가 백성의 집에 잠시 머무는 것과 통상을 위해 각지에서 마음대로 집을 구매하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울릉도에 불법거주하는 일본인들은 호조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들어와서 집을 짓고 토지를 개척하며 삼림을 벌목했고, 각종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최영하는 일본 정부가 관원을 파견하여 일본인을 송환할 것을 기다렸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영하는 외국 선교사와 일본인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째, 한국 정부는 각국의 선교사가 국내를 이동할 때는 해당국의 공사가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내면 여행증명서(護照)를 발급했다. 둘째, 일본인은 통상을 위해 가옥을 구매했지만 각국의 선교사는 언어와 문자를 가르쳤다. 셋째,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호조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들어와서 집을 짓고 토지를 개척하고 삼림을 불법적으로 벌목했다.

최영하는 1902년 울릉도 일본경찰서의 폐해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에게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울릉도에 경찰서를 신설하고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불법으로 한국인을 체포하여 심판했다. 최영하는 한일조약에 의거하여 울릉도 주재 일본경찰서를 철폐하고,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을 철수시킬 것을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에게 요구했다.

"한국에 일본의 경찰서를 설립하는 것은 조약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각국에서 모방하여 실행할 것도 두렵습니다. 첫째, 주한 일본공사는 경찰서를 철폐하도록 일본 정부에 연락해야 합니다. 둘째, 주한 일본공사는 일본인들을 소환하도록 해당 영사에게 명령하고, 조약의 취지에 부합하고 교의(交誼)에 주의하길 바랍니다."[77]

『제국신문』은 이러한 대한제국의 결정을 신속히 보도했다. 1902년 10월 15일 『제국신문』은 울릉도 주재 일본경찰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대립을 보도했다. 대한제국 외부는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일본인이 불통상 지역에 거류하는 것은 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법이며, 울릉도 일본경찰서를 폐지할 것을 하야시 공사에게 요구했다.[78]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 합법화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수집하고 정리했다. 1902년 10월 29일 최영하의 공문을 접수한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거주 과정과 철수 거부 등에 관한 답변을 외부대신 임시서리 조병식(趙秉式)에게 제출했다.

하야시는 울릉도가 10여 년 전에는 무인도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인이 울릉도에 거주한 이유를 기록했다. 전 도감 배계주는 10여 년 전에 무인도인 울릉도의 개척을 계획했다. 배계주는 직접 일본에 가서 일본인의 도항을 권유하고 울릉도 규목(물푸레나무)의 매매를 약속(特約)했다. 이때 일본인은 처음으로 울릉도 도항의 단서를 열었는데, 그 후 한국인도 도항하여 비로소 울릉도가 개척되었다.

하야시는 울릉도 개척이 일본인 도항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한국인의 울릉도 개척 역사를 왜곡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인의 울릉도 개척을 빼앗으려고 하고, 조약상의 단순한 형식만을 고집하면서 일본인의 철수를 요구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심지어 일본 경찰이 울릉도에 주재하게 된 것은 1901년 울도군수 강영우의 부임에 즈음하여 외부대신 박제순의 일본인에 대한 단속 요청에 따른 협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79]

---

77 『駐韓日本公使館記錄』(18), 光武 6年(1902) 10月 13日, 〈六. 外部來〉(14) 照會第115號 [鬱陵島의 日本人 警察署 撤廢와 居留民의 退去를 촉구], 大韓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大日本特命全權公使 林權助.

78 "照請撤署. 울릉도에 일인이 거류하는고로 외부와 일공관에 누차 교섭하야 것인가를 청하엿더니, 임공사가 공문하기를 서양 선교사들은 내지에 임의 래왕하되 금치 아니하고, 일인의 거류는 금단하는 것이 가치 안타 하엿는데, 지금은 울릉도에 일본경찰서까지 설립하고 한인을 임의로 착거하는지라. 외부에서 일공관으로 변명하야 조회하기를 서양 교사는 다 집조장을 가지고 래왕하거니와 일인은 빙거 업시 불통상해지에 거류하니 약장 어긴 일이라. 곳 처관하야 경찰서까지 것어가라 하엿다더라."(『帝國新聞』, 1902. 10. 15)

79 『駐韓日本公使館記錄』(18), 1902年 10月 29日, 〈七. 外部往〉(9) 公文第165號 [鬱陵島 日人의 在留經緯와 撤收 거부], 林 公使→趙 署理外相. 하야시는 울릉도 내 일본인 관련 문서의 진행 과정을 기록했다. 하야시는 자신이 보낸 1900년 9월 조회 이후 답변이 없어서 한국 정부가 인정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13일자 貴 照會 제115호로 鬱陵島에 在留하는 일본인의 철수, 울릉도의 일본 경찰관의 재류 건에 대해 말씀하신 취지를 알았습니다." "울릉도의 일본인 철수 건은 재작년 중의 교섭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1900년 9월 중 본사(本使)의 제99호 공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사(本使)는 본건(本件)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조회에 접하게 되어 의외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야시는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 합법화의 논리를 개발했다. 첫째, 하야시는 울릉도가 무인도라는 논리를 개발했다. 이것은 이후 독도가 무인도라는 논리와 연결되었다. 둘째, 10여 년 전에 전 도감 배계주가 울릉도 개척을 계획하여 일본에 가서 일본인의 도항을 권유했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도항해서 울릉도를 개척했다. 셋째, 대한제국 외부는 신임 군수 강영우가 울릉도에 부임할 당시 일본공사관에 울도 거주 일본인의 단속을 요청했는데, 양국이 서로 협의한 결과 일본 경찰을 울릉도에 파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울릉도에 일본 경찰을 파견하겠다고 한 인물은 바로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였다.

하야시는 울릉도 주재 일본 경찰이 한국인을 불법구금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자신은 대한제국이 울도군수에게 훈령을 내려 사법, 행정, 경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촉구했다는 것이다. 하야시는 울릉도 주재 일본 경찰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한국 정부의 사법과 경찰 관할을 비꼬았다. 결국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울릉도 일본경찰서의 설치를 양국이 서로 합의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일본경찰서를 유지시켰다.

일본 외무성도 울릉도 내 일본경찰서를 지원했다. 1903년 4월 13일 외무대신 고무라(小村)가 사이엔호(濟遠號)의 기항(寄港) 운항을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에게 조회했는데, 일본 외무성은 울릉도 주재 일본 경찰관의 교대 임무를 위한 선편을 확인했다. 사이엔호는 4월 29일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고무라는 사이엔호가 부산에 잠시 기항하여 울릉도 주재 일본 경찰관의 교대 임무를 마친 후 인천으로 출발할 수 있는가를 확인했다.[80]

하야시는 한국 정부와 합의하여 울릉도에 일본 경찰을 파견했다고 거짓 주장을

생각합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18), 1902年 10月 29日, 〈七. 外部往〉(9) 公文第165號 [鬱陵島 日人의 在留 經緯와 撤收 거부], 林 公使→趙 署理外相)

80 『駐韓日本公使館記錄x』(18), 1903年 4月 13日 오후 5시 5분 發, 九. 本省來電(52) 來電第50號 [濟遠號의 寄港 운항에 관한 조회], 東京 小村→林 公使.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펼쳤고, 최하영은 한일조약 위반을 근거로 울릉도 내 일본인들의 철수와 일본경찰서의 철폐를 요구했다.

Ⅶ. 나오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이후 울릉도 왕복을 위한 선박의 마련(造船)과 군청 건립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먼저 1900년 하반기 울릉도 관민은 나룻배 파손, 일본 선박 구입 등을 시도했는데, 그만큼 선박 문제는 울릉도에서 가장 큰 현안이었다.

1901년부터 1903년까지 울릉도는 제익선(濟益船)의 구매와 파손을 둘러싸고 전사능과 김성술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 군수 배계주와 현 군수 강영우를 둘러싼 대립이 핵심이었다. 여기에 내장원경 이용익이 경무사로 활동하면서 배계주를 구금하고 심문하는 데 관여했다.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는 1901년 12월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의 철수를 둘러싸고 주한 일본공사관과 협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울릉도에 일본경찰서를 설치하여 일본 경찰관을 파견할 것을 제안하고 실행했다.

1901년 울릉도민의 세력과 대립 구도는 김성집, 안원서, 김찬수 등이 최병린을 중심으로 연결되었고, 전사능은 배계주를 중심으로 연결되었다. 울릉도의 선박 구매와 관련하여 울진 출신 울릉도 조사위원 최병린과 울릉도 출신 울릉군수 배계주는 서로 대립했다. 김성술은 일본인의 풍범선을 사용하려 했지만, 최병린은 창룡환을 사용할 것을 김성술에게 지시했다. 우용정과 최병린은 풍범선에서 창룡환으로 선편을 바꿀 것을 유도했다. 그 과정에서 김성술은 나룻배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압박을 받고 자살했다. 이익을 같이 하면 생사를 같이 하는 법이다. 나룻배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자, 울릉도민은 최병린 세력과 배계주 세력으로 분열되었다.

1901년 고종의 측근인 이용익까지 울릉도 삼림 벌목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내장원경 이용익은 울릉도 주민이 일본인과 결탁하여 불법벌목을 하는 것을 경고했다. 이용익은 일본인의 불법벌목을 금지시키지 못하는 면임(面任)과 동임(洞任)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익은 울릉도 내부의 소식을 파악하여 울릉도의 행정체계까지 제시했다. 이용익은 신임 군수 강영우를 통해서 울릉도의 삼림과 이권을 장악하고 내장원을 통한 직접적인 통제를 시도했다.

이용익은 1902년 강영우와 이능해 사건을 계기로 경무사로 임명받아 배계주의 소송사건에 직접 개입했다. 1902년 3월 배계주가 칙령을 받기 위해서 상경하자, 강영우는 배계주를 울릉도 삼림 불법벌목죄로 고소했다. 이용익은 울릉도 규목이 내장원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배계주를 체포하도록 지시했다.

배계주는 1902년 5월 김성술 사망사건 재판 판결, 6월 강영우와의 소송사건, 9월 이능해와의 소송사건 등에 휘말렸다. 배계주는 울도군수에 다시 임명되었지만 소송사건에 연루되어 끝내 울릉도에 부임하지 못했다. 하지만 배계주는 내장원경 이용익의 지원을 받은 강영우와의 소송사건에서 혐의를 벗어 석방될 수 있었다.

그런데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불법거주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규정했다. 한국인들이 교통의 편익을 얻기 위해 일본인의 도항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하야시는 1901년 배계주와 면담하여 일본인이 울릉도에 도항하는 과정,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을 집중적으로 기록했다. 이것은 하야시가 일본의 울릉도 영유권 주장,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 합법화 등을 염두에 두고 면담했음을 시사한다.

하야시는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 합법화의 논리를 개발했다. 우선 하야시는 일본 경찰서를 울릉도에 신설할 것을 본국 정부에 제의했다. 일본 정부는 하야시의 제안을 승인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를 합법화했고, 나아가 울릉도를 통치하려는 전략을 추진했다.

하야시 공사는 1901년 12월 10일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에 대한 통제 정책으로 '일본 경찰의 울릉도 파견을 통한 단속법'을 일본 외무대신 고무라에게 제안했다. 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야시의 '단속법'이란 울릉도를 부산 또는 원산 주재 영사관의 관할 구역으로 편입시켜, 6개월부터 1년까지 경부 1명과 순사 2명을 울릉도에 파견하는 것이었다. 하야시의 '단속법' 제안의 목적은 첫째, 단속법을 만들어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인도 울릉도민과 타협할 수 있고, 둘째, 일본인이 울릉도민과 융합할 수 있다면 일본인의 철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외부협판 최영하는 1902년 울릉도 일본경찰서로 인한 폐해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에게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울릉도에 경찰서를 신설하고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불법으로 한국인을 체포하여 심판했다. 최영하는 '조일수호통상조규'에 의거하여 울릉도 주재 일본경찰서의 철폐와,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의 철수를 하야시에게 요구했다.

결국 하야시는 한국 정부와 합의하여 울릉도에 일본 경찰을 파견했다고 거짓 주장을 펼쳤고, 최하영은 '조일수호통상조규' 위반을 근거로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의 철수와 울릉도 주재 일본경찰서의 철폐를 요구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울도군수 심흥택과 심능익의 활동과 대한제국의 영토해양정책

Ⅰ. 들어가며

대한제국의 영토해양정책을 해명하기 위해서 울도군수 심흥택의 울릉도와 독도 수호를 위한 활동, 대한제국 정부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행정 관할 노력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필자는 대한제국의 울릉도와 독도 행정 관할 체제 구축 과정, 심흥택의 울릉도와 독도 행정 관할 실행 활동 등을 주목할 것이다.

그런데 기존 연구는 1906년 심흥택 보고서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심흥택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1]

심흥택은 1903년 4월부터 1907년 3월까지 울도군수를 역임했다. 그의 재임 시기에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했고,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과정에서 심흥택은 울릉도에 부임하여 일본인의 불법 삼림채벌을 금지했고, 러일전쟁 전후 러시아인의 울릉도 탐사 관련 동향을 본국 정부에 보고했으며,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했다는 사실을 본국 정부에

1 심흥택을 언급한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申奭鎬, 「獨島의 來歷」『獨島』, 大韓公論社, 1965; 이한기,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신용하,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2006; 서종학, 「독도 석도의 지명 표기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36-3, 2008; 유미림,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3; 박현진, 『독도 영토주권 연구』, 경인문화사, 201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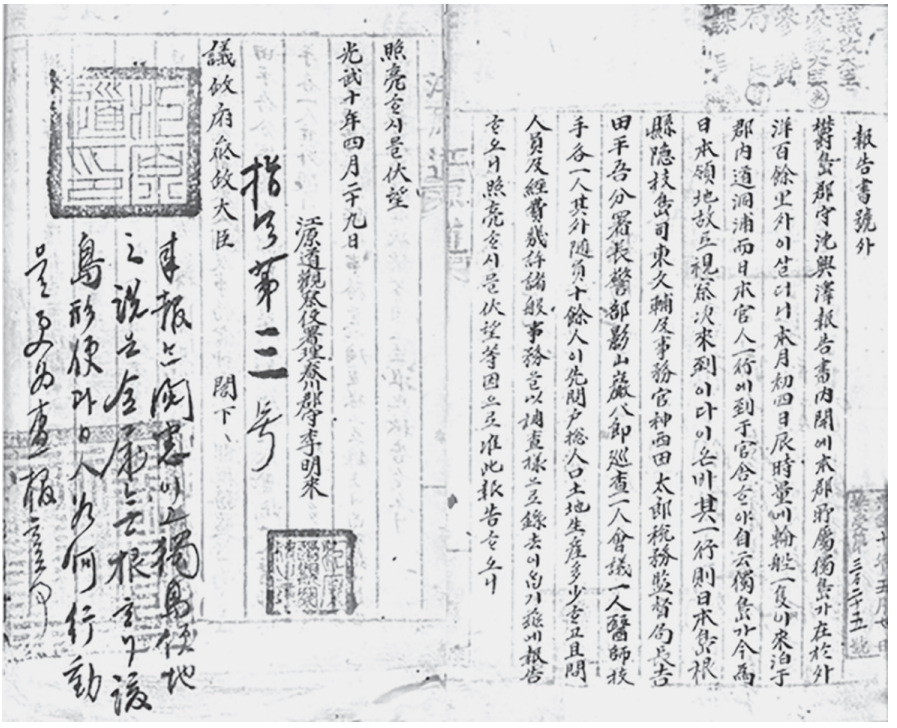

1906년 보고서 호외와 지령 제3호(규장각 소장)

알렸다. 그만큼 심흥택의 활동은 대한제국의 울릉도와 독도 수호활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최근 연구는 심흥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그럼에도 심흥택의 생몰년 같은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호동에 따르면 심흥택은 1855년 서울에서 태어난 대한제국의 신진 관료로서 1903년 1월 26일부터 울도군수로 재직했다. 울릉도에 부임한 심흥택은 객사, 향리 이하 정당(政堂)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중앙정부에 순검을 요청했다. 김호동에 따르면 울도군수는 한계가 많았는데, 심흥택은 중앙정부에 보고를 누락했다. 즉 심흥택은 일본이 울릉도 2개 외 망루를 설치하고 죽변과 울릉도 사이에 해저전선을 부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것을 수수방관했다. 또한 심흥택은 1905년 3월 시마네현 관리를 만난 후에는 관할구역인 독도에 간 적이 없었다.[2]

스기하라 다카시(杉原隆)에 따르면 심흥택은 반일과 민족주의자의 이미지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관 시절에 처벌을 받거나 군수 시절 현지 주민의 반발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 또한 심흥택은 일본인과 친하게 지내기도 했으며, 한일관계가 복잡했던 시기에 시대에 휘둘리며 살았던 인간으로서의 측면도 있었다.[3]

홍정원은 심흥택의 울도군수 부임 이후 1903년 4월 울릉도 주재 일본 경부 아리마 다카노부(有馬高孝)와의 대담, 1906년 3월 진자이 일행의 울릉도 방문 등에 주목했다. 홍정원은 대한제국 정부가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등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할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홍정원에 따르면 1906년 3월 울도군수 심흥택은 "본군 소속 독도(本郡所屬獨島)"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수의 관할하에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4]

홍정원은 울도군수 심능익의 보고서 '경상북도 울도군 지방상황(慶尙南道鬱島郡地方狀況)'을 처음으로 발굴하여 학계에 보고했다. 홍정원은 울도군의 면·동·수, 호구와 인구 수, 교통 상황, 토산물 등에 관한 심능익의 보고서를 상세히 기술했다.[5] 그럼에도 홍정원은 심능익의 보고서의 전후 문서 및 상황을 기술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존 연구는 주로 1906년 '심흥택 보고서'의 의미, 그에 따른 박제순의 지시에 주목했다. 그런데 기존 연구는 울도군수 심흥택의 "본군 소속 독도"에만 주목하여 대

---

2 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11年 3月 15日, 『官報』; 김호동, 「개항기 울도군수의 행적」, 『독도연구』 19, 2015, 29·42쪽.

3 杉原隆, 平成 27年(2015) 8月, 「明治39年鬱陵島で対面した神西由太郎と沈興澤に関する余録」, 『第3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110-111쪽.

4 홍정원, 「조선의 울릉도 독도 인식과 관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6, 201-202·225-226·245쪽.

5 홍정원, 「조선의 울릉도 독도 인식과 관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6, 23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제국과 통감부의 외교 교섭을 추적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울도군수 심흥택의 4년 이상의 활동을 추적하면서 울릉도 및 독도와 관련한 일본에 대한 대한제국의 대응을 고찰할 것이다. 특히 필자는 대한제국 정부가 1906년 심흥택의 보고서를 받은 이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국가행정 관할의 노력을 주목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대한제국의 영토해양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무엇보다도 필자는 1906년 4월 29일 강원도 관찰사서리(觀察使署理) 춘천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를 통해서 알려진 '본군 소속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 도발에 대해서, 대한제국이 어떻게 통감부와 이사청에 대응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심흥택과 이명래의 독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석도와 독도의 관련성도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심능익의 보고서 전후 장서각 소장 궁내부잡철의 내용과 울릉도의 상황을 보강할 것이다.

II. 러일전쟁 이전 심흥택의 활동 및 대한제국의 대응

1. 심흥택의 임명과 활동

청송심씨 봉익공파 정랑공 후손인 심흥택(沈興澤)은 1855년에 태어났고,[6] 1896년 4월 경무청(警務廳) 총순(總巡, 서장)에서 주임관(奏任官) 6등 경무관(警務官)으로 승진했다.[7]

---

6 "전 강원도 횡성군수 주임관 2등, 현 횡성군 군수 고등관 7등."(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조선신사명감』, 1911) "興澤 乙卯生(1855) 橫城郡守 配淸風金氏 父仲善."(청송심씨대종회, 『靑松沈氏大同世譜』 9卷, 2002, 1673쪽) 심흥택(沈興澤)은 동명이인으로 1839년에 태어나서 1857년(丁巳年) 정시(庭試) 무과(武科)에 급제한 인물이 있었다(『무보』(武譜: 장서각 K2-174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서비스(http://people.aks.ac.kr))

7 "警務廳總巡 沈興澤 魏洪奭 任警務官 叙奏任官六等 右該員等의 任官ᄒᆞᄂᆞᆫ 件을 閣議에 提出함."(內部大臣 朴定陽, 建陽 元年 4月 7日, 「請議書」, 『內部請議書』 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심흥택은 울도군수에 임명되자, 관사를 비롯한 울릉도 행정체제의 완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심흥택은 1903년 1월 26일 울도군수에 임명되었다.[8] 1903년 3월 31일 『제국신문』에 따르면 심흥택은 풍범선(돛단배) 1척을 1,100원(元)에 구입했다.[9] 심흥택은 1903년 4월 20일 울릉도에 도착했다.[10] 심흥택은 선박을 구매하여 부임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해상 교통수단을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1903년 6월 20일 탁지부 사계국장(司計局長) 유정수(柳正秀)는 울도 객사(客舍), 교궁(校宮, 문묘), 관사(官舍)의 신설비 1천 원(元)의 지출에 관한 통첩을 사세국장 이건영(李健榮)에게 보냈다.[11] 1903년 7월 1일 탁지부(度支部)는 울도군 관사 등의 토목공사비 1천 원을 지출할 것을 울산군수에게 훈령을 보냈다.[12]

1903년 7월 2일 『제국신문』에 따르면 울도 주민은 3,500여 명이고, 일본인이 250여 명이었다. 울도주민은 대체로 콩을 매매했다. 심흥택은 도동에 관사를 짓고 있었다.[13] 1903년 7월 14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심흥택은 울릉도 부임 이후 객사

---

8 "鬱島郡守 裴季周依願免本官 … 鬱島郡守敍奏任官六等 前郡守 沈興澤 以上一月二十六日."(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 7年(1903) 1月 29日 木曜日, 「第二千四百廿二號」, 『官報』)

9 "鬱島購船. 울도군수 심흥택 씨의 공보를 거한즉 일본 풍범선 일 척을 일천일백 원에 매득하야 해군인민의 래왕을 편리케 한다더라."(『帝國新聞』, 1903. 3. 31)

10 "鬱島郡守沈興澤 四月廿日 到任."(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 7年 8月 11日 火曜日, 「第二千五百八十八號」, 『官報』)

11 "現接內部大臣署理第十三號第十四號照會ᄒᆞ와 地方各郡土木工費合五千三百元을 本年度該部所管臨時部第二款第一項土木工費中計勘事로 大臣勻敎ᄅᆞᆯ 承ᄒᆞ와 郡名錢數를 左開仰佈ᄒᆞ오니 照亮ᄒᆞ오셔 各該管觀察府에 劃訓度ᄅᆞᆯ 趕速繕送ᄒᆞ심을 爲要." "左開. 慶北 壬寅條 鬱島 客舍校宮官舍新設費 一千元."(司計局長 柳正秀→司稅局長 李健榮, 光武 7年(1903) 6月 20日, 「通牒」, 『訓令存(編)案』 10)

12 "本年度 地方各府郡土木工費支撥事로 內部照會를 據ᄒᆞ야 鬱島郡官舍校宮客舍新設費一千元을 本郡公錢中排劃發訓ᄒᆞ니 待該郡來推ᄒᆞ야 卽爲支撥ᄒᆞ고 報部計勘이 可ᄒᆞᆯ 事."(地稅課長代→蔚山郡守, 光武 7年(1903) 7月 1日, 「訓令」, 『訓令存(編)案』 10)

13 "鬱島狀況. 울도에 잇는 본국인 호수는 칠백여 호에 삼천오백여 인구오, 일인의 집은 사십이 호에 이백오십여 인구라 하며, 군수 심흥택 씨는 양력 5월 20일에 도임하야 도동이란 동리에 집을 짓는 중이라 하고, 본국인은 연속부절하게 건너가는대 매매물건은 콩이 만타 하며 사월간에 일본 배 오륙 척이 파선하야 손해가 여러 천 원이라 하며, 배는 일본 거시 제일 만타더라."(『帝國新聞』, 1903. 7. 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客舍)와 향교(鄕校) 등을 건축하고 있었다. 심흥택에 따르면 각 도에서 건너온 울릉도 주민의 상호 파벌이 심각했다. 새로운 군청이 설치되어 규정을 실행하는데 울릉도 주민의 반발도 우려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순사 2명을 울릉도에 파견해 3-4개월 주재시키면서 불법거주 일본인들의 진압도 지시했다.[14]

1903년 7월 20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심흥택은 울릉도민과의 회의(大會人民)를 열어 결정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심흥택에 따르면 "울도 주민은 개간 농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봄과 가을에 1호마다(每一戶) 보리 5두(斗) 3승(升)과 콩 5두 3승을 나누어 납세한다"라고 했다. 심흥택은 울도군의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15동에 500호가 살고 있다고 보고했다. 심흥택에 따르면 도동(道洞)은 선박의 정박 항구로 왕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다. 일본 상인은 63호가 거주하며, 도동항(道洞浦)에 일본인 경무보(警務補)가 주재했다. 심흥택은 군청 관사 건축비로 2천 원을 요청했다.[15]

심흥택은 울릉도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점차 강화해나가면서 동시에, 군청 관사 건립을 추진했다. 1903년 11월 5일 심흥택은 군청 관사의 기초 건축이 진행되었다고 보고했다.[16] 그런데 1904년 7월 21일 울산군수 김우식(金佑植)은 울릉도 군청 관

---

14 "鬱島郡守 沈興澤氏報告를 據한 則 赴任以後에 客舍鄕校以下政堂을 略略 建築하난데 該島民은 本是各道流寓之人이라 互相樹黨하야 訛誤成習인 則 今此新設郡衙하야 實施規定之際에 慮或紛競뿐더러 日本潛越之民이 種種 作梗則 不可不 巡檢 二名을 派送하야 三四朔間 留駐彈壓케 하라 하얏더라."(『皇城新聞』, 1903. 7. 14)

15 "鬱島郡守 沈興澤氏가 赴任한 後에 境內에 躬行하야 大會人民하고 設郡形便을 略擧하야 內部에 報하얏난듸 此彊彼處를 勿論하고 起墾爲農인 則 排結이 難定이나 國土起耕에 不可無稅키로 從民願決定하고 每一戶에 牟 五斗三升 太 五斗三升式 春秋에 分等收捧하야 排定年俸홈이 允合便宜이고 諸般經費난 採藿稅出太稅中으로 隨捧補用이고, 郡內坊曲은 十五洞인데 分爲東西北面而實戶가 五百戶오 其中道洞은 郡中要路오 人民來往과 船隻駐泊에 最爲方便하야 一郡會所오 現今 日商이 至爲六十三戶之多하고 彼警務補가 駐在道洞浦하야 逐日交涉인 則 郡廳을 占定此地하깃스니 官舍建築費 限二千元劃下하라 하얏더라."(『皇城新聞』, 1903. 7. 20)

16 "鬱島郡守沈興澤 海路脩夐ᄒᆞ니 赴任之狀이 中滯ᄒᆞ나 基礎建築ᄒᆞ니 設郡之方을 已報이제."(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 7年(1903) 11月 5日, 「第二千六百六十二號」, 『官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련 공사비용을 처리하지 않아서 중견책(重譴責)을 받았다.[17] 결국 1904년 10월 7일 울도군수 심흥택은 울릉도 군청의 건설 완공을 보고했다.[18] 1940년 발간된 『강원도지』에는 심흥택이 울릉군청을 건설했다고 기록되어 있다.[19] 심흥택은 울릉도민과 합의하여 세금 납부를 결정했고, 정부의 지원 아래 군청의 건립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심흥택이 기본적인 울릉도의 행정 관할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 추방을 위한 심흥택과 대한제국의 시도

심흥택은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거주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 울도군수 심흥택과 내부대신서리 김규홍(金奎弘)은 조일수호통상조규에 기초하여 일본인이 불통상 해안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행정 관할 조치를 수행했다.

1903년 3월 27일 『제국신문』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조계지 이외 지역에도 불법적으로 거주했다. 울릉도에 290명 이상, 제주에 200명 등이 거주했다. 일본인은 한국 연안에서 어업 경영을 더욱 확대하려고 노력했다. 『제국신문』은 일본인이 한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러시아의 진출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20]

---

17 "蔚山郡守 金佑植右ᄂᆞᆫ 度支部照會ᄅᆞᆯ 接ᄒᆞᆫ즉 該員이 鬱島郡移劃公錢을 遲久不撥ᄒᆞ야 竟使修理狼狽ᄒᆞ니 上部令飭을 視同弁髦而然이라 不可仍置라ᄒᆞ얏기 是以로 重譴責에 處ᄒᆞᄂᆞᆫ事(七月二十一日 內部)."(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 8年 7月 25日 月曜日, 「第二千八百八十七號」, 『官報』)

18 "鬱島郡守沈興澤 公廨創建ᄒᆞ니 島民奠安홈."(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 8年 10月 7日 金曜日, 「第二千九百五十一號」, 『官報』)

19 『江原道誌』 七卷, 1940; 「江原道誌」 2, 『韓國近代道誌』 23, 1991, 468쪽.

20 "論說. 한국 각 장시와 각 항구 조계 안에 일인이 늘어가는 거슨 물론하고 서울 근처에는 영등포 수원 지방에 일인의 촌락을 일웟고 부산 근처에는 구포 물금 밀양 대구 지경에 일인이 연속히 들어가고 조계 밧게는 울릉도에 이백구십 명 이상이오, 제주에 또한 이백 명이오, 기타 소안도에 삼십 명 흑산도에 사십 명, 죽도에 천 명가량 천산도에 이백이십 명 진도에 사십 명이 잇스니 이 일인들은 전라 충청 양도 바다를 우리 일본서 차지한 바다갓치 독히 점령하야 고기잡기를 히미써 해마다 큰 리를 엇으니 그 어업의 경영이 잘된 거슨 가히 목도한바니, 해상식민은 여의케 왕성하였고 … 점점 더 만이 조선으로 옴겨가서 사업을 더욱더욱 확장하야 조선 반도국을 아라사에게 빼기지 안케 함이 가하도다 하얏더라."(『帝國新聞』, 1903. 3. 2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3년 8월 10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심흥택은 일본인의 불법벌목을 보고했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 63호의 가구가 불법벌목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심흥택은 울릉도 주재 일본 순사와 담판했다고 보고했다.

심흥택은 "외국인이 내지(內地)에 들어와서 삼림을 벌목하는 것은 당초 부당한 일이며, 현재 군청을 설치하여 본 군수(本郡守)가 관할(管轄)한 상황이다. 지금 이후 불법벌목은 불가하며, 귀국 순사도 금지(嚴禁)시켜라"고 주장했다. 그 순사는 아리마 다카요시(有馬高孝) 경부였다. 그러자 아리마는 "벌목한 지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으며, 한국 정부와 일본공사가 교섭하여 금지시킨 적이 없으니, 순사가 금지시킬 수가 없으며, 주한 일본공사와 타협하라"고 주장했다.[21] 울도군수 심흥택은 군청의 설치와 행정의 관할을 제기하며 일본 순사에게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심흥택은 일본의 영향력 때문에 일본 순사의 철수까지 주장하지는 못했다.

1903년 8월 12일 내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참정 김규홍은 심흥택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울릉도에서 불법적으로 벌목하는 일본인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외부대신 이도재(李道宰)에게 조회했다.

울도군수 심흥택은 제3호 보고서를 내부대신 임시서리 김규홍(金奎弘)에게 제출

1903년 6월 6일 『제국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대신은 러시아의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허락했는데, 삼림 이권의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제국신문』은 용암포 사건과 함께 울릉도 삼림 이권의 중요성도 환기시켰다. "울릉도 삼림과 압록강 두만강 연변 삼림채벌권을 청구하얏는대 그때 우리 정부대신들은 오늘날 관계가 이렇케 될 줄은 뜻밧기오, 또 삼람으로 말하야도 그 깁은산에 재목이 무삼 이익이 잇스랴 하야 허락하여준 거시어니와 지금 와서는 어떻케 할 방책이 없고, 다만 그 사람의 처분에 달렷으니 내 것주고 도로혀 부대껴 지내는 것이 가석한 일이로다."(『帝國新聞』, 1903. 6. 6)

21 "鬱島報告. 鬱島郡守 沈興澤氏가 內部에 報告하되 本島居民이 各處에 居하야 十五洞이오 戶數난 五百戶인듸 所産之物은 麥太甘藿이라 其官廳組織하난 節次난 人民의 方便을 隨하야 磨鍊하려니와 本郡各浦에 在ᄒᆞᆫ 日人이 六十三戶인듸 日日 伐木이 至於無限 故로 郡守가 來駐하난 日巡査를 請하야 談辦하기를 外國人이 內地에 入하야 材木을 伐去ᄒᆞᆷ이 當初不當ᄒᆞᆫ 事ᄲᅮᆫ더러 今已設郡하얏슨則 本郡守의 管轄하난 바라 往事난 勿論하고 從今以後로난 不可伐木이오 貴巡査도 亦嚴禁하라 한則 日巡査言內에 此島內에 伐木ᄒᆞᆷ이 已過數十年이오 又貴政府와 日公使가 交涉하야 處辦 事가 無한則 巡査난 不能禁戢이라 하니 日公使에게 照會하야 妥商하라 하얏더라."(『皇城新聞』, 1903. 8. 1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 그 후 1903년(광무 7) 8월 12일 김규홍은 외부대신 이도재에게 보고서를 보냈다. 심흥택에 따르면 1903년 울릉도 거주 일본인 가구는 63호이고 벌목에 종사하고 있었다. 심흥택은 1903년 4월 27일 울릉도 주재 일본경찰서 경부 아리마를 방문하여 일본인의 불법벌목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심흥택은 "현재 울릉도에 거류하는 일본인이 63호(戶)이고 벌목(斫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청이 설치되어 이전과 다른 상황이고 본관이 지방관직(地方官職)에 있으므로 마땅히 금지시켜야 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심흥택은 1903년 4월 27일 아리마 다카요시 경부를 찾아가서 교섭했다.

심흥택이 먼저 말했고, 아리마 다카요시 경부가 답변했다.

"이치(理)로써 논하면 타국인(他國人)으로 한국 목재(我國材)의 벌목은 애초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비록 '도(島)'라 하였으나 지금은 '군(郡)'이 되었으니 산천초목이 본직(本職)의 관영(管領)이 아닌 것이 없으므로, 앞으로 전처럼 벌목(斫伐)하지 못할 것이므로, 경부(警部)도 금지(禁斷)시키길 바랍니다."

"울릉도 벌목이 이미 수십여 년이 되었으나 애초 대한제국 정부가 주한 일본공사에게 조회하고 금지(處辦)한 적이 없었으니, 내가 감히 금지(擅禁)시킬 수 없습니다."

김규홍은 주한 일본공사관을 방문하여 울릉도에서 자행되는 일본인의 불법성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규홍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울릉도에 불법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조속히 추방(撤歸)시키기 위해 일본과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았다. 1900년 내부 시찰(內部視察)과 부산 주재 일본영사는 울릉도에 도착하고 심판(會同審判)하여, 일본영사가 벌목(封山斫伐) 금지(禁飭)를 명령했다. 주한 일본공사는 합의하여(會同商辦),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의 추방(定期撤歸)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법거주(潛越) 일본인(日人)은 벌목을 조금도 꺼려하지 않았다. 심지어 주한 일본공사관은 울릉도에 일본경찰서 관원(警署官員)을 파견했다. 김규홍은 "어떤 조약(約章)을 근거로 외국경찰서(外國警署)가 불통상내지(不通商內地)에 설치될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리마 경부는 대한제국 정부가 주한 일본공사에게 조회처판(照會處辦)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규홍은 "대한제국 정부가 주한 일본공사에게 삼림벌목(森林斫伐)을 허가(認許)한 것으로 인식한 극히 무리(無理)한 답변이다"라며 아리마 경부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규홍은 울릉도에 일본경찰서(日本警署)를 설치하는 것은 만국조약(萬國約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우방교의(友邦交誼)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홍에 따르면 "법외침탈(法外侵凌)은 일본정치상(日本政治上)에도 만국공안(萬國公眼)에 시비(是非)가 존재(自在)할 것이며, 만약 문명개화한 국가로 정녕 애석한 일이다"라며 불법성을 비판했다. 김규홍은 대한제국 외부에서 우선 경찰서 관원(警署官員)을 즉각 소환하고 불법거주(潛越居留) 일본인도 모두 철수시키도록 주한 일본공사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2] 김규홍은 만국공법에 비추어 불통상내지에 일본인이 들어와 살고 경찰서까지 설치하는 것을 비판했다.

---

22 "江原道管下鬱島郡守 沈興澤의 第三號報告書 內槪 現今本郡各浦 居留日人이 爲六十三戶 而日事伐木에 殆無限節ᄒᆞ니 此而不禁이면 不出幾年에 材無餘用ᄒᆞ고 山皆童濯은 明若觀火이올고 令旣設郡 則與前有異ᄒᆞ니 有不可一向任寘오 其在地方官職에 事係當禁故로 乃於二十七日에 本郡守가 躬往于日警部有馬高孝居留所ᄒᆞ야 始爲交接 而我曰 以理論之ᄒᆞ면 以他國人으로 取我國材가 初非妥當이오 前雖曰島나 令焉爲郡이라 山川草木이 無非本職之管領 則往旣勿論ᄒᆞ고 來猶可追라 從玆以往으로 更不當如前斫伐이니 亦自貴警部로 諒此禁斷云爾 則 彼曰 此島伐木이 令旣數十餘年 而初無貴政府 我公使照會處辦 則有不敢自我擅禁이다 爲答ᄒᆞ옵기로 問答緣由를 玆庸報告ᄒᆞ오니 照會于日公使ᄒᆞ시와 嚴明處分ᄒᆞ시믈 伏望等因을 據査ᄒᆞ온즉, 該島潛越居住ᄒᆞ는 日本人을 斯速撤歸케ᄒᆞᆯ 事로 在前公文往覆도 不啻屢度ᄲᅮᆫ더러 年前에 敝部視察과 釜港에 留ᄒᆞᄂᆞᆫ 日本領事와 該島에 前往ᄒᆞ야 會同審辦ᄒᆞᆯ 時封山斫伐은 該領事도 當場禁飭ᄒᆞ고 居留日人은 京部에셔 日本公使와 會同商辦ᄒᆞ야 定期撤歸케 ᄒᆞᆫ 後貴部會辦과 敝部照促을 專事推諉에 荏苒至令ᄒᆞᆷ도 極涉訝惑이거늘 該潛越日人이 一向伐木을 少無顧忌ᄒᆞ고 甚至於該島에 日本警署官員을 設寘라 ᄒᆞ오니 不通商內地에 外國警署가 據何約章이오며 令此該官員言內에 此島伐木이 令旣數十年에 初無貴政府及我公使照會處辦 則有不敢自我擅禁이라 ᄒᆞ오니 在前我國府에셔 日本公使에게 該島森林斫伐을 認許ᄒᆞᆫ쥴로 知ᄒᆞᄂᆞᆫ지 該警官에 稱托이 尤極無理ᄒᆞ온지라 大抵該島에 日本警署設寘라 ᄒᆞ옴은 萬國約章에 所無ᄒᆞᆫ 事인즉 其在友邦交誼에 大欠事體ᄲᅮᆫ더러 法外侵凌이 日本政治上에도 萬國公眼에 是非가 自在ᄒᆞᆯ듯 ᄒᆞ오니 以若文明開化ᄒᆞᆫ 國으로 寧不歎惜이올지 事甚慨然이옵기 玆以仰佈ᄒᆞ오니 査照ᄒᆞ신 後 日本公使에게 轉照ᄒᆞ시와 爲先該警署官員을 刻卽召還ᄒᆞ고 潛越居留ᄒᆞᆫ 日本人도 幷卽定期撤歸케ᄒᆞ신 後 斯速示明ᄒᆞ심을 爲要."(議政府贊政 內部大臣臨時署理 議政府參政 金奎弘→議政府贊政外部大臣 李道宰, 光武 7年(1903) 8月 20日, 「照會 第八號 槪鬱島日人事」, 『內部來去文』 1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3년 8월 19일 『황성신문』은 김규홍의 1903년 8월 12일자 보고서에 기초하여 보도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내부는 심흥택의 보고서에 따라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의 철수를 외부에 다음과 같이 조회(照會)했다.

"개항장이 아닌 곳에 외국 경찰서가 무슨 조약에 의거한 것인가? 일본 경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공사에게 울도 삼림 작벌을 허락한 줄로 알고 있는 것인가? 울도 경찰서(警署) 설치는 만국약장(萬國約章)에 없는 사항이고, 우방교의(友邦交誼)에 커다란 결례이며, 법외침능(法外侵凌)이 일본 정치에도 옳고 그름이 자명할 것이다. 울도 경서 관원을 즉각 소환하고 울도 거주 일본인의 기한을 정하여 철수할 것을 요청했다."[23]

대한제국 내부는 울릉도에 일본경찰서를 설치하는 것이 만국공법(萬國約章)에 없는 사실이고, 우방국가의 행위를 손상시키고, 법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내부는 울릉도 경찰서 관원을 즉각 소환하고 울도 거주 일본인들의 철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황성신문』은 내부의 보고서를 신문에 공개하여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불법성을 공론화했다.

결국 1903년 8월 19일 대한제국 외부는 내부를 통해서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를 파악하고, 1903년 8월 20일 외부는 주한 일본공사관에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

---

23 "昨日 內部에셔 鬱島郡守 沈興澤氏의 報告를 據하야 外部에 照會 ᄒᆞᆫ 槪意가 如左하니 該島에 潛越하야 居留하난 日人을 斯速撤歸 ᄒᆞᆯ 事로 在前公文往復이 不啻屢度오 年前에 敝部視察과 釜港日領事가 前往該島하야 會同審辦 ᄒᆞᆯ 時에 封山斫伐을 該領事가 當場禁飭하고 居留日人은 京部에셔 日本公使와 會同商辦하야 定期撤還케 ᄒᆞᆫ 後에 貴部會辦과 敝部照促을 專事推諉하니 極涉訝惑ᄲᅮᆫ더러 該潛越 ᄒᆞᆫ 日人이 一向伐木을 少無顧忌하고 甚至於該島에 日本警署官員을 設寘라 하니 不通商內地에 外國警署가 據何約章인지 今此 該警官言內에 此島伐木이 今旣數十年에 初無貴政府及我公使照會處辦則 有不敢自我擅禁이라 하니 在前 我國政府가 日本公使에게 該島森林斫伐을 認許 ᄒᆞᆫ 줄노 知하난지 該警官의 稱托이 尤極無理라 大抵 該島警署設置난 萬國約章에 所無 ᄒᆞᆫ 事인則 其在友邦交誼에 大欠事体ᄲᅮᆫ더러 法外侵凌이 日本政治上에도 萬國公眼에 是非가 自在 ᄒᆞᆯ 듯하니 以若文明開化國으로 寧不歎惜이올지 事甚慨然이기 玆以仰佈하오니 査照後 日公館에 轉照하야 爲先該警署官員을 刻卽召還케 하고 該島內에 居留하난 日本人을 幷卽定期撤歸케 ᄒᆞᆫ 後에 斯速示明하라 하얏더라."(『皇城新聞』, 1903. 8. 19) 1903년 8월 24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외부는 울도군수의 보고와 내부의 조회에 근거하여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의 철수를 주한 일본공사에게 요구했다(『皇城新聞』, 1903. 8. 2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들의 추방을 조회(요청)했다.[24]

1903년 10월 15일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金禎根)은 일본인이 울릉도에서 벌목하는 폐단을 영원히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외부대신서리 이하영(李夏榮)에게 조회했다.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에 따르면 울도군수 심흥택은 울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의 상황에 대한 제4호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지금 울릉도 불법거주 63호(戶)의 일본인은 벌목을 일삼아 한정이 없어, 이대로 금하지 않으면 재목에 여유가 없고 머지않아 산의 나무가 고갈될 것입니다. 이미 군을 설치했으므로 지방관은 직무상 당연히 금지시켜야 합니다."

김정근은 대한제국 외부가 일본인들의 불법벌목을 영원히 금지시켜줄 것을 주한일본공사에 조회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대한제국 외부는 1903년 10월 20일 "보고에 근거하여(依報辭)하여 주한 일본공사에게 조회할 것(行將照詰日使홀事)"이라는 지령을 내렸다.[25]

---

24 "內部來照玆據鬱島郡守報稱 本郡居留日人 日事伐木 不出幾年 材無餘用 本郡守以禁斷之意 往日本警察署 據理駁論 而不可擅禁之意爲答等情 査不通商口 外人居留 外國警署設寘 約章所無 請轉照日使警署官員及居留人 幷即撤還爲要."(入直 李載說 黃祐璿, 光武 7年(1903) 8月 19日, 『外部日記』 4) "照會日館 鬱島在留日人撤還一事 屢經往覆 玆接內部文開 鬱島各浦居留日人爲三十六戶 日事伐木 理合禁斷 本郡守向日警官理論 該官推諉不遵等因 請貴公使亟將該警署撤廢 幷飭居留日人 一律退歸." (入直 李載說 金華圭, 光武 7年(1903) 8月 20日, 『外部日記』 4)

25 "卽接鬱島郡守沈興澤報告書則內開에 現今本郡居留日人이 爲六十三戶 而日事伐木에 殆無限節ᄒᆞ니 此而不禁이면 材無餘用ᄒᆞ고 山皆童濯은 明若觀火이올고 今旣設郡則其在地方官職에 事係當禁故로 乃於本年四月二十七日에 本郡守가 躬往于日警部有馬高孝居留所ᄒᆞ야 始爲交接 而我曰以理論之ᄒᆞ면 以他國人으로 取我國材가 初非妥當이요 前雖曰島나 今焉爲郡이라 山川草木이 無非本職之管領則往旣勿論ᄒᆞ고 來猶可追라 從玆以往으로 更不當如前斫伐이니 亦自貴警部로 諒此禁斷云爾 則彼曰此島伐木이 今旣數十餘年 而初無貴政府我公使照會處辦 則有不敢自下擅禁이다 爲答ᄒᆞ옵기로 問答緣由를 枚報ᄒᆞ오니 以此轉報京部ᄒᆞ와 俾爲禁斷之地等因인바 査此該島가 今旣爲郡則島界內森林이 無非本郡句管 而今此日人之如前伐木이 係是法外故로 玆에 報告ᄒᆞ오니 照亮ᄒᆞ신 후 照會于日本公使ᄒᆞ시와 鬱島伐木之弊를 永爲禁斷ᄒᆞ야 無復如前犯斫케ᄒᆞ시믈 爲望." "指令第四號. 依報辭ᄒᆞ야 行將照詰日使홀事. 二十日."(江原道觀察使金禎根→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宮內府特進官李夏榮, 光武 7年 10月 15日, 「報告書第四號」, 『江原道來去案』 第一冊; 「江原道篇」 2, 『各司謄錄』 28, 54-55쪽(奎 17985)) 1903년 10월 18일 외부는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의 보고에 기초하여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불법벌목 행위를 기록했다. "江原察報 鬱島守報稱 本郡居留日人爲六十三戶 日事伐木 山皆童濯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3년 11월 17일 주한 일본공사관은 울도군수 심흥택의 제5호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보고했다. "일본인은 과거 대부분의 규목(槻木)을 불법벌목했는데, 현재는 1그루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며, 잡목(雜木)과 향목(香木) 역시 규목과 같이 벌채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부(警部)는 자신의 설득을 듣지도 않습니다. 일본인은 도동항(道洞浦)에 민전(民田)과 상점(商店)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주한 일본공사관에 조회를 보내 금지시키길 바랍니다"[26] 라고 심흥택은 보고했다.

1903년 11월 26일 내부대신 임시서리 김규홍은 울도군수 심흥택의 제5호 보고서에 근거하여,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과 일본인 경찰을 철수시켜줄 것을 외부대신 임시서리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 이하영(李夏榮)에게 조회했다.

김규홍에 따르면 울도군수 심흥택은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의 상황에 대한 제5호 보고서를 제출했다. 심흥택은 일본인들이 향목과 잡목을 벌목하고 있다며 일본 경부 아리마 다카요시에게 항의했다. 심흥택에 따르면 도동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불법적으로 상점과 가옥을 확장하고 있었다. 김규홍은 "불통상내지(不通商內地)에 일본경찰서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고, 불법거주 일본인이 전토(田土)를 매수하여 가옥을 건축하는 것도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규홍은 잠입한 일본인들과 일본 경찰관의 철수를 위해서 외부가 일본공사관에 조회해줄 것을 요청했다.[27]

躬往日警部 請其禁斷 彼曰初無貴政府我公使處辦 有不敢自下擅禁云等因 査該島今旣爲郡 日人伐木係是法外 請照日使禁斷."(入直 李範奭 李源鎔, 光武 7年(1903) 10月 18日, 『外部日記』 6)

26 『駐韓日本公使館記錄』(19), 1903年 11月 17日, 〈二. 鴨綠江經營 一一七〉(605) 「龍岩浦 개방반대에 대해 러시아 公使 李外部와의 면담건 및 日人의 鬱陵島에서의 무단벌목 등에 관한 錄紙」. 이 문서는 주한 일본공사관이 1903년 당시 용암포 사건과 함께 울릉도도 중요한 현안 문제로 다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27 "鬱島郡守 沈興澤의 第五號 報告書 를 接準 ᄒᆞᆫ즉 內開 本郡旣往許多槻木이 皆爲日人所伐ᄒᆞ야 今無一株餘存 而其外雜木與香木을 亦如槻木斫伐故 往喩于日警部有馬高孝ᄒᆞ야 欲爲禁斷 則不爲聽施故로 其弊端을 已爲擧實於第二號報告中이 살고 姑俟指令之如何이오며 尤有甚焉者는 道洞浦邊所居日人等이 附近民田五斗落廛에 渠之商店家屋을 謂以移造ᄒᆞ고 欲買於田主 則田主不聽故로 來會于官ᄒᆞ야 萬般奸計之說로 欲爲蠶食之計이옵기 以好言으로 喩以不通商港口에 本無寸土賣買之章程ᄒᆞ야 不得許施라 云云 則彼雖不得肆意나 內有慍意ᄒᆞ야 將有發惡之慮이옵기 玆에 報告ᄒᆞ오니 照亮ᄒᆞ신 後 日館으로 有飭於本郡所駐日警部處ᄒᆞ야 伐木侵土 를 禁斷케ᄒᆞ심을 伏望等因이라 此 를 準査ᄒᆞ온즉 該地에 潛越居駐ᄒᆞᆫ 日本人을 卽爲撤歸케 ᄒᆞᆯ 意로 日本公使에게 往復商辦이 非止一再이거ᄂᆞᆯ 尙今遷延ᄒᆞᆷ도 其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3년 11월 27일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은 울릉도 주재 일본경찰서 및 일본인들의 벌목 침탈(該島所駐日警署及 其伐木侵土之弊)을 금지시켜줄 것을 다시 한 번 외부대신 서리 이하영에게 요청했다.

울도군수 심흥택에 따르면 울릉도 도동 거주 일본인은 상점과 가옥(商店家屋)을 설치하려 했지만 한국인 주인(田主)이 토지 매매(放賣)를 거부했다. 그 후 일본인이 군수를 찾아와 다시 토지 매입을 요청했지만 심흥택은 통상장정(通商章程)에 따라 통상해안(通商口岸)이 아닌 곳에서는 토지(地段)을 매입할 수 없다며 돌려보냈다. 심흥택에 따르면 도동포 주변의 일본인은 상점과 가옥을 옮겨 짓는 데 필요하다며 부근의 민전 5두락을 요구했다. 하지만 토지 주인이 매매를 거부하자, 일본인은 군청을 찾아가서 간계한 말로 계책을 실행할 계획이었다. 심흥택은 불통상 항구에서는 본래 한 치의 땅도 매매하는 장정이 없으므로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인이 비록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안으로 성난 뜻을 품어 장차 악을 드러낼까 염려스럽다고 보고했다.[28]

在約章에 已極慨歎이온바 不通商內地에 警官設置는 抑何約章이오며 該潛越人이 該島에 田土를 買收ᄒᆞ야 家屋建築코져 ᄒᆞ오니 尤極無理이옵기 玆以仰佈ᄒᆞ오니 照亮ᄒᆞ신 後 日本公館에 移照ᄒᆞ시와 該警官과 潛越諸人을 幷卽撤還ᄒᆞ야 俾免葛藤케ᄒᆞ시고 示明ᄒᆞ심을 爲要."(議政府贊政內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 金奎弘→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李夏榮, 光武 7年(1903) 11月 26日, 「照會 第十六號 槪鬱島在日人撤還事」, 『內部來去文』 15) 1903년 11월 26일 외부는 일본경찰서 철수에 대한 내부의 보고서를 접수했다. "內部照會 鬱島郡守報稱 本郡槻木 沒爲日人所伐 其外雜木 亦爲斫伐故 往喩日警部禁斷 不爲聽施一事. 姑俟指令 道洞浦邊居日人等 謂以渠之家屋 移造於附近民田 欲買該田 來言于官故 喩以不通商口 本無寸土賣買章程等情. 請照日館日警官 與潛越諸人 並卽撤還."(入直 李建春 徐相鴻, 光武 7年 11月 26日, 『外部日記』 7冊(奎17841)) 외부입직일기(外部入直日記)는 1903년(광무 7년) 2월 2일부터 1904년(광무 8년)까지 작성된 외부 입직자(入直者)의 일기다.

28 "鬱島木材日人斫伐과 禁斷日警署之由는 前因該郡守沈興澤之所報ᄒᆞ야 已爲修報이올 견과 卽接該島荐報 則內開에 道洞浦邊 日人等이 附近民田五斗落廬에 渠之商店家屋을 謂以移造ᄒᆞ고 欲買於田主 則田主不聽故로 來會于官ᄒᆞ야 萬般奸計之說로 欲爲蠶食之計이옵기 以好言으로 喩以不通商港口에 本無寸土賣買之章程ᄒᆞ야 不得許施云云 則彼雖不得肆意나 然이나 內有慍意ᄒᆞ야 將有發惡之慮ᄒᆞ옵기 玆報告等因을 據實轉報ᄒᆞ오니 照亮ᄒᆞ신 후 移照日官ᄒᆞ와 該島所駐日警署及其伐木侵土之弊를 另行禁斷케ᄒᆞ시믈 爲望."(江原道觀察使金禎根→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宮內府特進官 李夏榮, 光武 7年 11月 27日, 「報告書第七號」, 『江原道來去案』 第一冊; 「江原道篇」 2, 『各司謄錄』 28, 60쪽(奎1798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심흥택은 조일수호통상조규에 기초하여 불통상 해안에 대한 일본인의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울릉도에 대한 행정 관할을 수행했다. 대한제국은 불통상지역 무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심흥택, 김정근, 이하영 등의 정부 관료는 주한 일본공사관에 일본인의 불법거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Ⅲ. 러일전쟁 이후 심흥택의 활동과 대한제국의 독도 수호

1. 울릉도 삼림을 둘러싼 대립과 심흥택의 활동

1904년 2월 23일 일본은 대한제국을 위협하여 공수동맹을 전제로 한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토지를 군용지로 강제 점령했고, 통신기관도 군용으로 강제 접수했다. 1904년 8월 22일 일본은 내정 개선이라는 구실로 고문정치를 실시하기 위해 대한제국을 위협하여 한일협정서(제1차 한일협약)를 강제로 체결했다. 일본은 한국의 재정 · 외교 등의 정책부문에서 일본인과 외국인 고문을 두고 지배하는 '고문정치체제'를 확립했다.

그런데 1904년 4월 김기우(金箕祐)의 배일격문(排日檄文) 사건은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荒蕪地開拓權) 요구로 시작된 반대운동으로, 울릉도가 민족의 정서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배일격문은 한국의 주권을 침탈하고 이익을 탈취하면서 한반도가 새 일본이라는 말을 퍼뜨린다는 내용이었다. 김기우는 배일격문에서 "한국 재상(宰相)을 꼬여서 일본 은행권을 사용하도록 하며 내륙지방으로서 통상하지 않은 곳에도 임의대로 거주해서 우리 땅에 제 백성을 번식시키고자 한다. 울릉도의 삼림을 불법으로 사매(私買)해서 임의대로 벌채(伐採)하여 함부로 들어가 거주하면서 도리어 한국 사람의 벌채를 금지한다"라고 주장했다.[2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배일격문은 철도, 어업, 은행권, 울릉도 벌목 등을 일본의 대표적인 이익 농단 부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한국 진출 중 울릉도 벌목은 일본을 배척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였다. 이것은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이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적 정서와 연결되었으며, 울릉도 불법벌목이 1900년대 들어서 울릉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러일전쟁 이후에도 일본인의 불법행동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1904년 3월 30일 울도군수 심흥택은 '장정(章程)'에 근거하여 일본인의 불법벌목을 금지시키려고 노력했다.[30] 그럼에도 1904년 4월 19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울도군수 심흥택은 일본인 100여 호(戶)가 비통상지역(非通商口岸)인 울릉도에서 상업에 종사하며 울릉도민과 충돌했다고 대한제국 내부에 보고했다.[31]

그런데 1905년 울릉도는 김영학(金永學) 살해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했다.

1905년 9월 25일(음력) 울도군수 심흥택은 자신의 부재중에 발생한 울도군민의

---

29 "私買不法鬱陵島之森林, 任意伐採, 閔入居住, 反禁韓人之採伐."(許舫山先生記念事業會, 「排日檄文甲辰」, 『國譯旺山全書』, 亞細亞文化社, 1985, 64-72쪽) 1904년 6월 25일 허위(許蔿) 등은 일본의 황무지 개간을 반대하여 13도 배일통문(十三道 排日通文)을 배포했다. 김윤식은 1904년 12월 29일 김기우 사건의 주요 내용을 기록했다. "十二日二十九日丁未 … 金箕祐發通十三道, 臚陳日本人之弊, 一. 鐵道役夫作弊事, 一. 北進軍暴行事, 一. 銀行券發用事, 一. 不通商內地, 自意買土居住事, 一. 鬱島森林採伐事, 一.濟州島漁基勒占事, 一. 環海三面漁採權盡入彼手事, 日公館招去問質後, 押付警務廳, 又移送平理院, ○日人長森藤吉郎, 我國新設之御供院所管山林川澤, 及其荒蕪地開墾, 更要我政府, 特許讓與合同, 其案件在上,日本代理公使荻原, 照會外部, 晴爲特許, 外大李夏榮提議于政府, 政府未決, 於是物論大譁, 以爲此將全失國土之本, 前議官鄭喬朝·崔東植等設疏廳于倉洞, 通文發佈, 將爲伏閤, 前議官洪肯燮獻議樞院, 極論其非, 且陳便宜十七條, 首請革罷御供院."(金允植, 光武 8年 12月 29日, 「金箕祐의 排日」, 『續陰晴史』 下, 卷十一, 99쪽)

30 "邑을 是務이제 鬱島郡守沈興澤 禁斫森林ᄒᆞ니 遵章程而有法ᄒᆞ고 經始邑廨ᄒᆞ니 設方略而不煩이라 海路云邊에 聲聞을 難詳이제."(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 8年 3月 30日 水曜日, 「第二千七百八十七號」, 『官報』)

31 "請認商務. 鬱島郡守 沈興澤氏가 內部로 報告ᄒᆞᆫ 辭意概據ᄒᆞᆫ 則本島ᄂᆞᆫ 雖非通商口岸이나 日本人의 結幕商販者 幾至百餘戶而其交易之時와 是非之塲에 彼我民間種種生事之獘가 不無ᄒᆞᆫ 則不可不別般交涉然後에 內外國民이 俱爲便宜故로 擇郡民中有聲望者ᄒᆞ야 誓以同契ᄒᆞ고 名曰商務라ᄒᆞ얏스니 商務者ᄂᆞᆫ 非商販之人이라 與彼人商業者로 對質審判에 分析是非ᄒᆞ야 與彼組合所로 合席談辦ᄒᆞ야 以便民人之生業케ᄒᆞᄂᆞᆫ 目的이오니 請永久遵行ᄒᆞ야 俾無外人見侮之地라ᄒᆞ얏더라."(『皇城新聞』, 1904. 4. 1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피살사건을 보고했다. 심흥택에 따르면 8월 10일 이순여(李順汝)와 김인보(金仁甫)는 서면(西面) 남양동(南陽洞)에 사는 김영학을 공격하여 살해했다.[32] 1905년 9월 25일(음력) 심흥택은 김영학 살인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부대신에게 요청했다.[33] 1905년 9월 25일 심흥택은 김영학 피살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경북관찰사(慶北觀察使)에게도 제출했다.

심흥택에 따르면 피살자 김영학은 주점을 운영하는 이순녀의 처를 강제로 빼앗았고, 토족(土族) 김인보의 처의 손을 잡고 희롱하여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김인보는 8월 10일 밤 동회(洞會) 개최를 명목으로 이순녀의 집에서 마을 사람들을 소집하여, 김영학을 결박하고 살해했으며 김영학의 집까지 파괴했다. 심흥택에 따르면 주범(正犯)은 김인보이고, 종범(干犯)은 이순녀와 박민동이고, 관련자는 이장촌, 이형오, 김치실이었다. 김영학의 사망 원인은 폭행치사(被打致死)였다.[34] 1906년 2월 2일 강원도재판소 판사 민영돈(閔泳敦)은 울도군 김영학 살인사건 관련자 처리 문제를 법부대신 이하영에게 보고했다.[35]

---

32 "郡守가 上京이다가 九月十六日에 還官하온바 八月初十日에 本郡西面南陽洞居 金永學이가 爲李順汝金仁甫等被打하야 仍爲致斃이다온 其時空官也라 鄕長 田在恒이가 馳往該所ᄒᆞ야 屍體를 仔細看檢하고 灰印封標後에 報告郡守故로 郡守還之第二日에 始爲行檢이옵고 招辭文案을 玆에 報告하오니 査照하오셔 處辦하시믈 伏望."(鬱島郡守 沈興澤→法部大臣, 光武 9年(1905) 陰9月 25日, 『司法稟報』(乙) 50) 『황성신문』은 나인보가 울도 주민 조영준에게 받을 엽(葉) 500냥 어음을 분실했다는 광고를 실었다. "울도(鬱島) 조영준에게 추심(推尋)할 엽(葉) 500냥 어음을 유실하엿사오니 수모습득(雖某拾得)하던지 휴지시행하시옵. 나인보 고백."(『皇城新聞』, 1905. 6. 19)

33 "今此金永學屍帳內 犯胸罪人은 新設郡立法之初에 不可尋常處置者 而其斷罪輕重은 惟在於上部處分中 이살건과 此等之民이 盡是無依流來之居生으로 本無分錢하고 但依於山畑耕食하야 逢年則糊口이다가 今年段는 尤以風災로 當於歉歲하야 窮不能自保 而猝當鹿此變者也라 若照律於生死間 有上使之處分 則水陸遠程에 治送難堪이요 且其無罪眷屬이 必無餘存이옵기로 玆以報告하오니 照亮이신 후 特軫孤島民情하시와 依律勘罪을 自郡擧行케 하신 則有罪可殺者는 殺之라도 其餘無罪眷屬은 若可保存이오니 依願她行之地을 緣由報告事."(鬱島郡守 沈興澤→法部大臣, 光武 9年(1905) 陰9月 25日, 『司法稟報』(乙) 50)

34 鬱島郡, 光武 9年(1905) 9月 25日(奎21260), 「鬱島郡獄事良中招辭文案成冊」.

35 "鬱島郡南陽洞致死男人 金永學 獄事初檢文案은 堅封上送이올 견과 此獄段은 死者 金永學이 素以悖類로 兼有膂力 而和奸於該里居賣酒女李順汝之妻黃召史ᄒᆞ야 以其凌蔑之習으로 加之於順汝ᄒᆞ니 順汝가 不耐困逼ᄒᆞ야 棲屑在道가 至爲七八朔之久이온바 該里居金仁甫之妻가 緣何事端ᄒᆞ야 與黃召史로 互相鬪詰이던지 該死者가 藉托挽解ᄒᆞ고 該金妻를 摻手撫乳ᄒᆞ니 金妻가 憤不自勝ᄒᆞ야 歸言家中 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런데 1906년 8월 23일 강원도재판소 판사 심상훈(沈相薰)은 김영학 살인사건 관련자들이 압송 중 도망간 사실을 법부대신 이하영에게 보고했다. 울도군 순교(巡校) 배찬선(裵贊善)과 사령(使令) 남원식(南元植)은 정범 김인보, 간범 이순녀와 박민동(朴民同)을 압송하는 도중에 김인보와 박민동이 족쇄를 풀고 도망쳤다는 것이다.[36] 1906년 10월 6일 강원도재판소 판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李明來)는 울도군이 경상남도로 행정관할이 변경되었는데, 김영학의 검안 문서를 포함한 울도군 관련

仁甫가 聞此大怒ᄒᆞ야 路逢順汝에 激昂憤心ᄒᆞ고 以先往黃女家起鬧之意로 指日約送ᄒᆞ고 及其日而會集洞民於黃女家ᄒᆞ야 見其順汝之被打ᄒᆞ고 突入聲罪타가 亦被死者之揮打ᄒᆞ야 暫倒忽起에 先手猛打ᄒᆞ고 與朴同民으로 合力結縛에 衆捧交加ᄒᆞ야 當下致命이온바 該犯金仁甫段은 原謀先手가 均係渠身則罪固難逭이요 法不容貸이옵기 此를 刑法大全鬪驅殺人律第四百八十一條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ᆫ 律에 照ᄒᆞ야 絞에 處ᄒᆞᆯ만 ᄒᆞ오나 褻謾士妻의 切憤ᄒᆞᆫ 情狀을 酌量ᄒᆞ와 減一等懲役終身에 處ᄒᆞ옵고 李順汝段은 同全第四百八十條次下手ᄒᆞᆫ 者懲役一年律에 處ᄒᆞᆯ만 ᄒᆞ오나 該妻見奪이 甚於姦所ᄒᆞᆫ 情狀을 參酌ᄒᆞ와 嚴飭白放ᄒᆞ옵고 于犯朴同民段은 同全第四百八十一條餘人笞一百律에 照ᄒᆞ오미 何如이오며 一時到付該郡守 沈興澤 報告書第一號內開에 現今獄事罪人等이 俱以流離顚連之氓으로 本無一分資生이요 只業菑畬ᄒᆞ야 僅得糊口 而況値如今大飢之歲ᄒᆞ야 魚喁鮮食之狀은 慘不忍見이온바 此若有押上之處分이오면 鯨濤一千里 陸走八百里之遠에 實無治送領納之計이오니 所犯各該漢을 參酌罪之輕重ᄒᆞ시와 擬絞處役이라도 自郡擧行之意로 轉報于京部ᄒᆞ시와 特蒙處分之地等因이온바 該郡相距가 幾近二千里에 罪人押上이 甚爲難便즉 自郡處治가 極爲便易이오나 難以擅便故로 玆以質稟ᄒᆞ오니 照亮裁處後指下ᄒᆞ시믈 爲望."(江原道裁判所判事 閔泳敦→法部大臣勳一等 李夏榮, 光武 10年(1906) 2月 2日, 「第十一號 質稟書」, 『司法稟報』(乙) 50)

36 "本年二月二十五日到付部指令 第十號을 承準ᄒᆞ와 鬱島郡南陽洞致死男人 金永學 獄事에 正犯 金仁甫와 干犯 李順汝 朴民同을 具格押上之意로 翻飭該郡이올더니 卽接該郡守 沈興澤 報告書內開 陰四月二十日到付本府祕訓을 接承ᄒᆞ와 該犯 金仁甫 李順汝 朴民同 等三漢을 使本郡巡校 裵贊善 使令 南元植으로 押領上送矣러니 閏四月二十六日에 該校差等이 以輪船便으로 入來還現이옵기 督納罪人等押到府指令이온즉 渠矣等所告內 領受罪人等ᄒᆞ고 晝夜七八日을 泛在海上타가 僅得出陸이온바 多日水疾絶穀之致로 昏倒不省타가 俄爾覺見즉 該金仁甫 朴民同 兩漢이 碎其足鎖ᄒᆞ고 一時逃逸에 莫知去向故로 不勝驚駭ᄒᆞ와 率其李順汝ᄒᆞ고 奔走跟探於海關 釜山 草梁 大邱 慈仁 慶山 密陽 慶州 等地이오되 竟無蹤跡이올고 且乏路需ᄒᆞ와 不獲已還歸釜港 則適有入島之船故로 生死間冒罪入來이다 이오니 郡守不審之責은 萬萬悚惶이오며 失捕之該校卒及干犯 李順汝를 更卽押上計料이오나 風濤領送에 恐未知又有如何意外之患이올지 玆에 報告等因이온바 此를 據査ᄒᆞ오니 押解中道에 不覺失囚가 自有當勘이오되 陸海路數千里之外에 巧値水疾ᄒᆞ야 昏迷中不覺ᄒᆞ얏스니 參情究跡에 愍有可原이오며 竝與失囚校卒及干犯 李順汝를 更若押上이오면 押到中道에 又不他患이오니 雖是違越程式이오나 該犯等을 自本所로 分輕重擬律後繕送宣告書ᄒᆞ야 自該郡宣告後執刑케 ᄒᆞ오미 何如이올지 玆에 質稟ᄒᆞ오니 照亮指下ᄒᆞ시믈 爲望."(江原道裁判所判事 沈相薰→法部大臣勳一等 李夏榮, 光武 10年(1906) 8月 23日, 「第十七號 質稟書」, 『司法稟報』(乙) 5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류를 경상남도로 이관했다고 법부대신 이하영에게 보고했다.[37]

러일전쟁 당시 심흥택은 울릉도의 실질적인 행정 관할을 위한 행정조치를 수행하려고 노력했다. 1905년 8월 9일 『관보』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울도를 새로운 읍(邑)으로 재편할 것을 심흥택에게 명령했다.[38]

한편 1905년 8월 10일 『황성신문』은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드미뜨리 돈스꼬이(Дмитрий Донской)호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음력 4월 25일(양력 5월 28일) 울릉도 앞 서남쪽에서 포격소리가 들렸고, 일몰 이후 도동 앞에서 대포가 발사되었다. 러시아 함선은 삼경(三更, 23-1시)에 정박하고, 러시아 수병들이 하선하기 시작했다. 26일 러시아 함장 1인, 부함장 1인, 수병 774명은 백기로 항복했는데, 일본 병선(兵艦)은 저동(苧洞)에 정박하고 러시아 수병을 싣고 떠났다.[39]

1905년 12월 일본 농상무성(農商務省) 삼림국(山林局) 니시다(西田又二) 등은 한국 삼림(韓國森林)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영림기사 겸 농상무기사(營林技師兼農商務技師) 나가쿠라(長倉純一郎)는 경기(京幾), 황해(黃海), 강원(江原) 3도를

---

37 "內部訓令 第八十三 號內開에 本道管下鬱島郡을 慶尙南道에 移屬ᄒᆞ엿스니 該郡에 關ᄒᆞᆫ 各項文簿의 本府에 由來保管ᄒᆞ던 者를 一一調査ᄒᆞ야 該道에 刻卽越送이 爲宜事等因을 接承ᄒᆞ와 本所에 保管ᄒᆞ엿던 該郡 金永學 檢案一件과 部指令二度와 該郡郡報를 幷爲同封ᄒᆞ와 當日發送于該道裁判所ᄒᆞ오며 玆에 報告ᄒᆞ오니 照亮ᄒᆞ시믈 伏望."(報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春川郡守 李明來→法部大臣勳一等 李夏榮, 光武 10年(1906) 10月 6日, 「第三十一號 報告書」, 『司法稟報』(乙) 52)

38 "鬱島郡守 沈興澤 鬱乎蒼海에 島嶼渺茫이라 一邑改觀ᄒᆞ야令."(議政府官報課, 光武 9年 8月 9日 水曜日, 「第三千二百十三號」, 『官報』)

39 "鬱島公報. 鬱島郡守 沈興澤氏의 報告를 據ᄒᆞᆫ 則 本郡鄕長 田在恒의 報告內에 陰四月二十五日에 自島前西南大洋으로 遠遠 聞大雷聲이다가 至日暮後에 雷火가 漸近 道洞前洋ᄒᆞ고 大砲連發矣러니 少息後夜到三更에 有一大兵艦이 泊到前洋ᄒᆞ고 船卒이 漸次 下陸이나 黑夜之內에 不分日俄하고 近而見之則俄兵也라. 急報來到 故로 往而聞情則 不通言語하고 只作啞人之聲이라 翌日天明에 俄兵이 無數下陸後에 同俄艦이 小退前洋하이 自陷其船하고 在陸艦長 一名 副艦長 一名 軍卒 七百七十四名은 竪立白旗請降이더니 同日巳時量에 日兵艦 一隻이 泊於 苧洞(*저동)하고 同俄降卒을 沒數載去하얏다더라."(『皇城新聞』, 1905. 8. 10) 돈스꼬이호는 추격하는 일본 연합함대소속 순양함 나니와(浪速) 등의 공격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포격전을 펼치며 저항했다. 돈스꼬이호 선체가 크게 손상되자 함장 레베데프 대령은 승조원들을 울릉도에 상륙시킨 후 함정의 킹스톤 밸브를 열어 배를 침몰시켰고, 5월 29일 새벽 울릉도 앞바다에 가라앉아 최후를 맞았다(유해수, 『울릉도 보물선 돈스코이호』, 지성사, 2007, 55-5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담당하여 조사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울릉도 삼림의 면적은 약 3천 정보(町步)이고, 일본인은 1871년경부터 불법벌목을 해왔다.[40] 일본 농상무성은 울릉도 삼림을 조사하면서 일본인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

1906년 3월 11일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한국 이권 침투를 보도했다. 『대한매일신보』에 따르면 일본은 울릉도(鬱島)와 압록강 등지의 삼림권(森林權), 삼면어업(三面漁業), 경의경원철도(京義京元鐵道), 우전양사(郵電兩司), 내지통행(內地航行) 등 한국의 경제권을 침해했다.[41] 이것은 일본이 한국의 삼림, 어업, 철도, 전신, 통행

---

40 "小官等韓國森林調查ノ命ヲ受ケ本年七月東京ヲ發シテ韓國ニ渡航シ永田正吉·西田又二兩人ハ咸鏡南北平安南北四道就中主トシテ鴨綠江·豆滿江兩流域ニ於ケル森林ノ調查ヲ擔當シ道家充之ハ全羅南北忠淸南北·慶尙南北六道長倉純一郎ハ京幾·黃海·江原三道ヲ各擔當シテ之ニ從事シ其間約四ケ月ヲ費セリ … 明治三十八年十二月. 山林局監督官補兼林務官 西田又二, 營林技師兼農商務技師 長倉純一郎, 大林區署技師 道家充之, 大林區署技師 永田正吉." "別冊 [韓國森林에 대한 調查報告書] 附言. 一 鬱陵島ノ森林. 本島森林ノ地勢ハ甚タ峻嶮ニシテ連山重嶂平地坦路少ナシ往昔ハ全島樹木森々トシテ貴尙暗キノ觀アリシカ晩近島民ノ繁殖セルニ從ヒ海岸附近ハ概シテ伐木開拓セラレテ耕宅地ト變セリ全島森林ノ面積約三千町步樹種ハ欅·ヒヤクシン·五葉松·キワタ·タブ·楓·其他濶葉樹繁茂シ韓國中稀有ノ森林ナリト雖欅·ヒヤクシン等ノ良樹ハ旣ニ明治四五年頃ヨリ近年ニ至ル迄本邦人ノ爲メニ數次伐採セラレ現時ハ僅カニ海岸ニ遠キ山嶺深谷ニ之ヲ見ル得ルノミ到ル處木材ノ搬出極メテ困難ナルノミナラス海波常ニ荒ク且良好ノ港灣ナキカ故ニ亦舟運ノ便ヲ缺ケリ故ニ本島ノ森林ハ之ヲ利用スルニ於テ有望ナラスト雖島民約四千人ノ使用スル水源ノ涵養及木材薪炭供給上ノ必要ニ依リ永久之ヲ保存スルヲ要ス."(「韓日經濟關係」 1, 『韓國近代史資料集成』(6), 明治 38年(1905) 12月, 〈一〇. 韓國森林調查復命書摘要〉(1) 韓國森林調查書摘要 [日本 農商務省 山林局 西田又二 등의 韓國森林에 대한 調查報告書])

41 "曩者韓俄之交方合에 日本人이 甚是憎惡ᄒᆞ야 俄將剪韓呑韓等說로 沮撓恐動을 不遺餘力이다가 及其開戰也에 卽使毁其成約ᄒᆞ며 絶其交涉ᄒᆞ야 以快從前憾忿之心ᄒᆞ니 其在兩敵相搆之地에 如彼行動이 容或無怪로되 所可哂者ᄂᆞᆫ 不旋踵而剪韓脅韓을 十倍於俄人ᄒᆞ야 鬱島及鴨綠江等地森林權을 悉置其範圍中ᄒᆞ며 三面漁業과 京義京元鐵道와 郵電兩司와 內地航行等諸件을 次第占奪ᄒᆞ야 肆其無厭ᄒᆞ니 在俄則必曰剪韓呑韓이라ᄒᆞ며 在日즉 獨不爲剪韓呑韓歟아 尤而效之ᄂᆞᆫ 君子不爲ᄒᆞᄂᆞ니 旣知俄之剪韓이 在所當憎인딘 何不反其道而行之ᄒᆞ야 結之以信義ᄒᆞ며 交之以光明이고 行此不公正之行動ᄒᆞ야 以傷隣誼ᄒᆞ며 以拂衆心인지 大抵人情이 惠我則親ᄒᆞ며 虐我즉仇ᄒᆞᄂᆞ니 以此論之컨딘 韓人之俄日間向北가 其將何居일지 且聞日本人之言에 曰韓國이 每懷反覆키로 不得不另爲操切이다 이되 此亦有可論者ᄒᆞ니 往在韓國獨立之初에 苟能雍容勸告ᄒᆞ며 優游浸漬ᄒᆞ야 磨以歲月에 俾圖其漸趁開明ᄒᆞ얏시면 韓將感服之不暇ᄒᆞ야 終始敦密이 捨日而其誰리오마ᄂᆞᆫ 顧乃持之太急ᄒᆞ며 督之太苛ᄒᆞ야 使其志氣로 不得一日舒泰타가 末乃無前駭機가 驀地出來ᄒᆞ야 俄舘播遷之擧가 因此而生ᄒᆞ니 細究其裏由컨딘 韓之反覆은 非韓之素志라 實是日本人之激成인즉 到今不思反省ᄒᆞ고 但爲咎人ᄒᆞᄂᆞᆫ거시 未知其爲公案이며 且念韓國이 獨立以後十數年에 徒思宴安ᄒᆞ고 不修政務ᄒᆞ야 生民이 塗炭ᄒᆞ며 百度荒廢ᄒᆞ야 致使隣人으로 未免有唇亡齒寒之憂ᄒᆞ야 得以藉口케ᄒᆞ니 執此以論ᄒᆞ면 韓不可曰無咎이되 扶危援溺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등에 대한 경제권 전반을 침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906년 5월 8일 『대한매일신보』는 울릉도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구를 보도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울릉도 거주 한국인은 3,800명이었고, 일본인은 303명이었다. 일본인의 대표자 중 요시오(吉郎乙治郎)는 민장(民長)이었고, 가다오카(片岡吉兵衛)는 부장(副長)이었다.[42]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은 민장과 부장을 두어 조직을 구성했다. 실제 일본인들의 불법벌목은 울릉도 삼림의 황폐함을 초래했다.

통감부 시기 농공상무부(農工商務部)는 삼림 벌채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벌채권과 판매권 등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중 일본인 마사히코(管坡弘章)는 울릉도의 벌목 허가를 출원했다. 하지만 농공상무부는 "울릉도 산림이 황폐하여 오히려 식수가 필요할 정도다"라며 울릉도의 벌목원을 각하했다. 그만큼 일본인들의 불법벌목이 심해서 통감부 시기에 이르면 울릉도의 산림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다.[43]

1906년 9월 26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울도군수 심흥택은 내부의 지시에 따라 울도군의 경계 위치와 호구장적을 자세히 조사했다. 심흥택에 따르면 울릉도 거주

爲義之大者인즉 澄其政界ᄒᆞ며 撫其人民ᄒᆞ야 思所以保全이 自是恤隣之本意이거날 今乃不然ᄒᆞ야 奸人을 利用ᄒᆞ며 國權을 脅奪ᄒᆞ야 以亂易亂에 轉益危困ᄒᆞ니 田奪牛가 無乃已甚이며 負義蔑隣이 豈曰美事리오 嗚呼라 世間萬事이 皆有一種公議ᄒᆞ야 是非得失을 不待百世而可定이되 本記者 以見淺識으로 安敢妄論時事ᄒᆞ야 以取不韙之誚리오마ᄂᆞᆫ 目擊韓日之交涉歧貳ᄒᆞ고 不能無慨于心ᄒᆞ야 信筆一論에 以俟世之批評ᄒᆞ노라." (『大韓每日申報』, 1906. 3. 11)

42 "鬱陵島에 韓民은 總계 三千八百名이오 住在ᄒᆞᆫ 日人이 總계 三百三名인ᄃᆡ 日人中民長은 吉郎乙治郎氏오 副長은 片岡吉兵衛라더라."(『大韓每日申報』, 1906. 5. 8)

43 "1. 平安南道 安州에 거주하는 奧吉二次郎이 平安北道 熙川郡 狼林嶺의 立木 벌채건을 출원한 것에 대해 지금 조사 중임. 2. 일본인 管坡弘章이 鬱陵島의 벌목 허가건을 출원하였는데 同島의 현황으로는 산림이 황폐하여 오히려 식수가 필요할 정도이기 때문에 본건 벌목원은 각하하였음. 3. 志岐信太郎이 大同江 연안 일대의 산림 벌채권과 판매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출원하였음. 그런데 본건은 조사가 필요하므로 서류는 일단 供覽해두었음. 4. 岡山縣 知氣郡 香登村의 淸水松太郎이 식림 경영을 위하여 토지 구입 방법을 지시해주도록 출원하여왔으므로 참고할 사항을 回示하였음."(『統監府文書』(1), 〈一二.農工商務部事務公債〉(14) 청원, 기타 雜件. 5.「산림에 관한 청원, 기타 雜件」) 志岐信太郎은 한국에서 다양한 공사를 맡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 인물은 1906년과 1909년에 주로 활동한 흔적으로 보아서 1909년에 출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남자는 1,916명, 여자는 1,116명이었고, 가호는 614호였다.[44]

1906년 9월 28일 『대한매일신보』는 울도군이 강원도에서 경상남도에 부속된 사실을 보도했다.[45] 이미 1906년 9월 17일 대한제국 내부대신 이지용은 강원도 소속 울도(鬱島)를 경상남도 동래(東萊) 소속 울도 구동(九洞)으로 변경하는 '지방구역정리(地方區域整理)에 관한 건(件)'의 청의서를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았다.[46]

1906년 9월 29일 『관보』에 따르면 심흥택은 1906년 4월 19일 모친상(母憂)을 당해 휴가를 냈는데, 정부는 심흥택이 돌아올 기한이 지났으므로 복귀하여 공무에 임할 것을 명령했다.[47] 1907년 3월 울도군수 심흥택은 횡성군수로 승진[48] 했으며 1911년 9월 횡성군수에서 면관되었다.[49]

2. 대한제국의 독도 수호: 심흥택과 이명래의 독도 관련 보고서

1905년 11월 18일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을사늑약(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

44 "鬱島戶口. 울도군수가 내부의 영을 받들어 울도군의 경계 위치와 호구 장적을 금년부터 시작하여 일일이 조사했는데, 남자가 모두 1천 9백 16명이오, 여자가 모두 1천 1백 16명이오, 가호의 수는 614호라고 했다."(『皇城新聞』, 1906. 9. 26)

45 "忠淸南道管下文義郡은 同北道로 付屬하고 全羅南道管下興德茂長高敞郡은 同北道로 付屬하고 全羅北道管下求禮郡은 同南道로 付屬하고 江原道管下鬱島郡은 慶尙南道로 付屬하얏다더라."(『大韓每日申報』, 1906. 9. 28)

46 "慶尙南道. 東萊. 鬱島. 九洞."(內部大臣 李址鎔-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 光武 10年(1906) 9月 17日, 「請議書 地方區域整理에 관한 件」; 「第49號 勅令 地方區域整理件」, 『奏本』 9, 1997, 548-560쪽)

47 "官廳事項 鬱島郡守沈興澤이가 本年四月十九日에 母憂를 丁ᄒᆞᆫ바 復期가 已過ᄒᆞ얏기 起復行公을 被命事."(議政府官報課, 光武 10年 9月 廿九日 土曜日, 「第三千五百七十一號」, 『官報』)

48 "今番郡守奏本中에 旌義郡守蔡洙康氏ᄂᆞᆫ 不治로 有名ᄒᆞ더니 智島로 陞移ᄒᆞ고 鬱島郡守沈興澤씨ᄂᆞᆫ 殿最에 貶下ᄒᆞ얏더니 橫城으로 陞移ᄒᆞ고 咸安郡守丁喜燮氏ᄂᆞᆫ 民擾를 當ᄒᆞᆫ 守令인디 善山으로 陞移ᄒᆞ얏스니 銓考委員에 造化手段은 神鬼가 莫測이라고 輿論이 紛紜ᄒᆞ더라."(『大韓每日申報』, 1907. 3. 17)

49 "朝鮮總督府 郡守 沈興澤이 면관되다."(朝鮮總督府, 1911. 9. 12, 『官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사늑약 제3조에 따르면 통감(統監)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에 주재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각 지역 개항장 등에 이사관(理事官)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주한 일본영사에게 속했던 일체의 권한을 행사했다.[50]

대한제국은 을사늑약에 의해 외교권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각종 협상에서 매우 불리했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대립 상황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소홀할 수 없었다.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서의 이권 침탈로 인해 일반 백성의 반일 정서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06년 4월 29일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보고했다. 울도군수 심흥택이 1906년 3월 29일 이명래에게 보고하자, 이명래는 4월 29일 박제순에게 보고했다.

"본군(本郡) 소속 독도(獨島)가 외양(外洋) 100여 리(里) 밖에 있습니다. 본월 초4일 진시(辰時, 오전 7-9시)가량에 윤선(輪船) 1척이 군내 도동포(道洞浦)에 도착(來泊)하였습니다. 일본 관인(官人) 일행이 관사(官舍, 군청)로 와서 스스로 말했습니다. '독도가 이제 일본 영지(領地, 영토)가 된고로 시찰차 내도(來島)했습니다.' 그 일행은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오키도사(隱技[岐]島司) 히가시 분스케(東文輔) 및 사무관(事務官)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田太郎, *神西由太郎), 세무감독국장(稅務監督局長) 요시다 헤이고(吉田平吾), 분서장(分署長) 경부(警部) 가게야마 간파치로(影山巖八郎), 순사(巡査) 1인, 회의원(會議員) 1인, 의사(醫師)·기수(技手) 각 1인, 그 밖에 수원(隨員) 10여 인입니다. (그들은) 먼저 호총(戶摠) 인구 토지 생산의 다소(多

---

50 1906년 2월 12일 함경남도 관찰사 신기선(申箕善)은 을사늑약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국권이 상실되었다고 하면서 사직 상소를 올렸다. "외교권이 모두 이웃 나라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역사에 없었던 일이며 우리나라가 처음 당한 치욕입니다. 그 형세는 장차 외교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신기선은 "거사무실(祛私務實)을 행하지 않는다면 폴란드(波蘭)나 이집트(埃及)와 같이 망할 것이며 베트남(安)이나 유구국(琉球國)을 닮을 것이다"라며, '거사무실'을 오랫동안 실천한다면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高宗實錄』, 光武 10年(1906) 2月 12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少)를 묻고 또 인원 및 경비가 얼마인지를 물으며 제반 사무를 조사할 양으로 기록(錄去)했습니다."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1906년 5월 20일 "올라온 보고를 다 읽었고, 독도 영지(領地)의 설은 전혀 근거가 없으니, 그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동향을 다시 조사해보고하라"고 지시했다.[51] 다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재조사한 내용을 담은 문서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문서는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불법 편입된 이후 일본 관료가 처음으로 시찰했다는 점, 울릉도의 토지와 인구를 조사했다는 점, 대한제국이 독도의 한국 영유를 주장했다는 점 등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자료였다.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는 당시 대한제국의 여러 신문이 보도할 만큼 일본의 한국 영토 침략에 대해서 국내에서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인이 1906년 4월 4일 울릉도를 방문한 사건에 대해서, 1906년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와 『제국신문』, 1906년 5월 9일자 『황성신문』 등은 사건의 중요성을 조금씩 다르게 보도했다.

1906년 5월 1일 『대한매일신보』는 울도군수 심흥택이 일본관원의 울릉도 방문에 관해서 내부에 보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대한매일신보』에 따르면 일본 관원 일행은 울도군에 도착하여 '본군 소재 독도(本郡所在獨島)'가 일본 속지(屬地)라 자칭했다. 일본 관원은 '지계활협(地界濶狹)'과 '호구결총(戶口結總)'을 상

51 "鬱島郡守 沈興澤 報告書內開에 本郡所屬獨島가 在於外洋百餘里外이 살더니 本月初四日辰時量에 輪船一隻이 來泊于郡內道洞浦 而日本官人一行에 到于官舍ᄒᆞ야 自云獨島가 今爲日本領地故로 視察次來到이다 이온바 其一行則日本島根縣隱技島司 東文輔及事務官 神西田太郎 稅務監督局長 吉田平吾 分署長警部 影山巖八郎 巡査一人 會議一人 醫師技手各一人 其外隨員十餘人이 先問戶總人口土地生産多少ᄒᆞ고 且問人員及經費幾許諸般事務를 以調查樣으로 錄去이옵기 玆에 報告ᄒᆞ오니 照亮ᄒᆞ시믈 伏望等因으로 準此報告ᄒᆞ오니 照亮ᄒᆞ시믈 伏望." "指令 第三號. 來報ᄂᆞᆫ 閱悉이고 獨島便地之說은 令屬無根ᄒᆞ니 該島形便과 日人如何行動을 更爲查報ᄒᆞᆯ 事. 五月二十日."(江原道觀察使署理春川郡守 李明來→議政府參政大臣 閣下, 光武 10年(1906) 4月 29日, 「報告書號外」, 『內部來去文』 13;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 10年(1906) 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세히 기록하고 떠났다. 대한제국 내부(內部)는 심흥택에게 다음과 같이 지령했다.

"유람(遊覽道) 차(次)에 지계호구(地界戶口)를 녹거(錄去)함은 객혹무괴(客或無怪)이다. 독도(獨島)를 지칭하며 일본 속지는 반드시 그 이치가 없으니(必無其理) 지금 보고가 심히 놀랍다.(訝然)"[52]

『대한매일신보』는 내부의 공식적인 지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실었다. 이것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불법적인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대한매일신보』에 따르면 일본인이 '본군 소재 독도'로 불렀는가, 아니면 심흥택이 스스로 '독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등이 명쾌하지 않다. 문맥상 일본이 먼저 독도를 표기했더라도 심흥택은 독도라는 용어를 정부의 공식 문서에 표기했다.

그런데 1906년 5월 1일 『제국신문』도 독도 관련 대한제국 내부의 지령을 보도했다. 『제국신문』에 따르면 대한제국 내부는 구체적인 항의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내부는 "쟁이상지하거든 일본리사에게 교섭하여 쳐단하라"는 훈령을 내렸다.[53]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906년 2월 1일 설치된, 통감부 소속 지방기구인 이사청(理事廳)을 통한 해결을 모색했다.

실제로 대한제국 정부는 이사청을 통해 항의를 제기하도록 강원도 관찰사와 울도 군수에게 명령했다. 이것은 대한제국 정부가 독도 영유의사에 대한 행정 관할 의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당시 강원도 동북부를 관할하는 원산 이사청은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했다. 을사

---

52 "無變不有. 鬱島郡守沈興澤氏가 ᄂᆡ府에 報告ᄒᆞ되 日本官員一行이 來到本郡ᄒᆞ야 本郡所在獨島ᄂᆞᆫ 日本屬地라 自稱ᄒᆞ고 地界濶狹과 戶口結摠을 一一錄去라 ᄒᆞ얏ᄂᆞᆫᄃᆡ 內部에서 指令ᄒᆞ기를 遊覽道次에 地界戶口之錄去ᄂᆞᆫ 客或無怪어니와 獨島之稱云 日本 屬地ᄂᆞᆫ 必無其理니 今此所報가 甚涉訝然이라ᄒᆞ얏더라."(『大韓每日申報』, 1906. 5. 1) 무변불유(無變不有)는 변이 있다는 뜻이다.

53 "내부에서 훈령하기를 일인이 호구 됴사는 용혹무괴한 일이어니와 점령하였다는 말은 무기한 일이니 쟁이상지하거든 일본리사에게 교섭하여 처단하라 하엿다더라."(『帝國新聞』, 1906. 5. 1) 장영숙에 따르면 이 시기는 이미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였기에 공문서로 확인해보라는 상부의 명령만 있을 뿐, 어떠한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한일병합이 가속화되면서 일본의 독도 침탈은 병합의 한 단계로 귀결되었을 뿐, 한국 정부가 목소리를 낼 여지는 남아 있지 않았다(장영숙, 「대한제국기 일본의 울릉도 자원침탈에 따른 대응과 인식」, 『역사와현실』 95, 2015, 27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늑약 제3조에는 통감부와 함께, 이사청의 위치와 이사관의 직권에 대해 규정해놓았다. 통감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땅에 이사관을 두었다.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주한 일본영사에 속한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관리(掌理)했다. 소속 직원으로는 주임관인 이사관과 부이사관, 판임관인 경부와 통역생 등이 있었다.

그 결과 1906년 1월 19일 외무대신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는 1906년 2월 1일부터 공사관과 영사관을 폐쇄하고, 경성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현재의 영사관과 분관 소재지에 이사청을 개설하고 직무를 집행할 것을 통감대리 하야시 공사에게 통고했다. 1906년 1월 31일 통감부(統監府)는 고시(告示) 제2호를 통해 1906년 2월 1일부터 통감부와 이사청의 사무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1906년 3월 9일 초대 통감으로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지방 외교관서인 감리서의 문부(文簿)가 이사청으로 인계되기 시작하고, 이사청은 감리서가 관할한 외국인에 대한 가계(家契)와 지계(地契)발급, 지단박매(地段拍賣), 외국인 통행증인 호조(護照)발급 업무를 관할했다. 이사청은 주한 일본영사관이 있던 부산·원산·인천·서울·목포·진남포·마산 등 7개 지역, 영사분관인 평양·군산·성진의 3개 지역에 설치되었다. 이후 이사청은 대구·신의주·청진 지역에 증설되어 통치구역이 한국 전역을 아울렀다. 1906년 9월 14일까지 부산이사청은 경상도 동북부, 강원도 남부, 충청도 동남부를 관할했고, 원산이사청은 함경도 남부, 강원도 동북부를 관할했다.[54] 울릉도와 독도는 1906년 9월 14일까지 원산이사청 소속이었고, 15일 이후부터 부산이사청 소속이었다.

1906년 5월 9일 『황성신문』은 울도군수 심흥택이 대한제국 내부에 보낸 보고서를 보도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일본 관인은 일본 시마네현 오키도사 히가시 분

54 한지헌, 「理事廳의 설치 과정(1905-1907년)」, 『사학연구』 116, 2014, 288-330쪽. 그런데 1906년 9월 15일 이사청의 관할구역이 개정되어, 부산이사청은 경상도 남부, 경상도 동부 연해안 일대, 강원도 동부 연해안 일부를 관할했다(한지헌, 「理事廳의 설치 과정(1905-1907년)」, 『사학연구』 116, 2014, 31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스케,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 세무감독국장 요시다 헤이고, 분서장 경부 가게야마 간파치로, 순사 1인, 회의원 1인, 의사와 기수 각 1인, 그 밖에 수원(隨員) 10여 인이었다. 일본 관인은 가호의 총인구, 인구와 토지의 생산량, 인원 및 경비, 제반 사무를 조사하여 기록했다.

"본군 소속 독도(本郡所屬獨島)가 외양(外洋) 100여 리 밖에 있는데, 이달 4일에 일본 관인 일행이 관사에 도착하여 직접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도가 지금 일본의 영지(領地)가 되었으므로 시찰차 내도했다.'"[55]

『황성신문』은 울도군수 심흥택에 따르면 울도군 소속 '독도'에 1906년 4월 4일 일본 관원 일행이 관사로 와서 현재 독도는 일본 영지이므로 시찰차 왔다고 보도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일본인은 울릉도의 가구 수, 총인구, 토지 생산량, 운영경비와 제반 사무 등을 조사하고 기록했다. 여기서 심흥택은 "본군 소속 독도"라고 표현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무엇보다도 독도가 울릉도의 '외양(外洋) 100여 리 밖'이라는 거리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 후 대한제국과 통감부의 독도 관련 공문 교환에 대해서 1906년 7월 13일자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등이 보도했다.

1906년 7월 13일 『대한매일신보』에 따르면 통감부는 내부에 강원도 삼척군 관할 울릉도의 소속도서와 군청의 설치연월에 대해서 질문했다. 『대한매일신보』에 따르면 통감부 통신관리국장 이케다 주자부로(池田十三郎)는 "울도군면 각동호(鬱島郡面名洞號)"와 "설치연월(設置何年月)"을 상세히 보고할 것을 대한제국 내부에 요청했다.[56] 『대한매일신보』는 통감부의 요청 내용을 간략하게 보도했다.

---

55 "鬱倅報告內部 鬱島郡守沈興澤氏가 內部에 報告ᄒᆞ되 本郡所屬獨島가 在於外洋百餘里外인ᄃᆡ 本月四日에 日本官人一行이 來到官舍ᄒᆞ와 自云獨島가 今爲日本領地故로 視察次來到이다이온바 其一行則 日本島根縣隱岐島司東文補及事務官神西田太郎과 稅務監督局長吉田坪五分署長警部影山岩八郎과 巡查一人會議一人醫師技手各一人其外隨員十餘人인ᄃᆡ 戶總人口와 土地生產多少와 人員及經費幾許와 諸般事務를 調查錄去ᄒᆞ얏다더라."(『皇城新聞』, 1906. 5. 9)

56 "統監府通信管理局長 池田十三郎氏가 江原道三陟郡으로부터 分設ᄒᆞᆫ 鬱島郡面名洞號와 設置何年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런데 『황성신문』은 1906년 7월 13일 통감부의 요청에 따른 대한제국의 답변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대한제국 내부는 다음과 같은 답변(答函)을 통감부에 보냈다.

"광무 2년 5월 20일에 울릉도감으로 설시하였다가, 광무 4년 10월 25일 정부 회의를 거쳐 군수를 두었습니다. 군청은 태하동에 두고, 이 군이 관할하는 섬은 '죽도'와 '석도'입니다.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이니 합쳐 200여 리입니다."[57]

『황성신문』은 1906년 5월 9일자에 "본군 소속 독도(本郡所屬獨島)", 1906년 7월 13일자에 "해군 소속도(該郡所管島)는 죽도석도(竹島石島)"라고 표기했다. 이것을 연결해 해석하면 '석도'는 곧 '독도'임에 틀림없다. 또한 『황성신문』은 "합 200여리"라고 했는데 '200여 리(약 80킬로미터)'는 독도까지의 거리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심흥택의 항의 이후 내부가 조치한 구체적인 문서이자 통감부와 내부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문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무엇보다도 1906년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와 1906년 7월 13일자 『황성신문』에 나오는 '독도'와 '석도' 명칭을 종합하면 '독도'와 '석도'가 동일한 장소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또한 대한제국 시기 '독도'의 공식적인 명칭은 여전히 '석도'였지만 '독도'도 함께 사용했다.

결국 1906년 4월 29일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를 통해 알려진 '본군 소속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도발에 대해서, 대한제국은 통감부와 이사청의 교섭을 통해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답변하여 영토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제국의 여론은 이것이 일본의 한국 영토 침략의 시작일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을 昭詳錄交ᄒᆞ라고 內部에 公函ᄒᆞ얏다더라."(『大韓每日申報』, 1906. 7. 13)

57 "鬱島郡의 配置顚末. 統監府에서 內部에 公函ᄒᆞ되 江原道三陟郡管下에 所在鬱陵島에 所屬島嶼와 郡廳設始年月을 示明ᄒᆞ라 ᄒᆞᆫ故로 答函ᄒᆞ되 光武二年五月二十日에 鬱陵島監으로 設始ᄒᆞ얏다가 光武四年十月卄五日에 政府會議를 經由ᄒᆞ야 郡守를 配置ᄒᆞ니 郡廳은 霧台洞에 在ᄒᆞ고 該郡所管島ᄂᆞᆫ 竹島石島오 東西가 六十里오 南北이 四十里니 合二百餘里라고ᄒᆞ얏다더라."(『皇城新聞』, 1906. 7. 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Ⅳ. 울도군수 심능익의 활동과 울릉도 경제상황의 악화

1. 심능익의 울도군 지방 상황 보고서

심능익(沈能益)은 1907년 8월 19일부터 1909년 7월 31일까지 울도군수를 지냈다. 1907년 7월 21일 울도군수 구연수(具然壽)가 경무사로 임명되었다.[58] 1907년 8월 22일 『대한매일신보』는 심능익이 울도군수로 임명되었다고 보도했다.[59] 과거 심능익은 1900년 11월 27일 동래항총순(東萊港摠巡)으로 임명되었다.[60] 1907년 8월 19일 울도군수로 임명되었고,[61] 1909년 8월 5일 용남군수(龍南郡守)로 임명되었다.[62]

1909년 순종의 전국 시찰은 을사늑약 이후 계속되는 의병항쟁 및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무마하고, 일제의 보호권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되었다.

순종은 1909년 1월 7-17일까지 대구, 부산, 마산, 등지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순종은 1월 10일 오후 3시 10분 창원부 행재소에서 경상남도 관찰사와 울도군 등 해당

---

58 "詔曰命鬱島郡守具然壽爲警務使 光武十一年七月二十一日 內閣總理大臣勳二等李完用."(議政府編, 『詔勅①』, 19冊(奎17708의 1)) "鬱島郡守具然壽氏로 警務使를 任命되얏더라."(『大韓每日申報』, 1907. 7. 23) "울도군수 구연수(具然壽)를 경무사에 임명하고 칙임관 2등을 주었다."(『純宗實錄』, 1907年 7月 21日)

59 "再昨日內部에서 郡守奏本를 上奏ᄒᆞ얏ᄂᆞᆫ대 白川김寅基 海州韓炯履 草溪金承源 金化趙範夏 禮安鄭象煥 綾州閔象鎬 ᄐᆡ仁洪範植 鬱嶋沈能益 鐵原金彰鉉 固城兪擎淳 楊口趙완九 영平박義陽 甕津鄭泰應 河東리承斗 安邊吳達泳 諸氏더라."(『大韓每日申報』, 1907. 8. 22)

60 "任東萊港摠巡敍判任官三等 沈能益 以上十一月二十七日."(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 4年 11月 廿九日 木曜日, 「第一千七百四十四號」, 『官報』)

61 "任鬱島郡守敍奏任官四等 沈能益 … 以上八月十九日."(內閣法制局官報課, 隆熙 元年 8月 22日 木曜日, 「第三千八百五十一號」, 『官報』) "官報第三千八百五十一號 敍任及辭令欄內 鬱島郡守沈能益의 九品二字가 脫落ᄒᆞᆷ이라."(內閣法制局官報課, 隆熙 元年 8月 31日 土曜日, 「第三千八百五十九號」, 『官報』) "鬱島郡守 沈能益給七級俸 … 以上八月二十八."(內閣法制局官報課, 隆熙 元年 10月 3日 木曜日, 「第三千八百八十七號」, 『官報』)

62 "龍南郡守 沈能益 … (以上八月五日內部)."(內閣法制局官報果, 隆熙 3年 8月 7日 土曜日, 「第四千四百四十九號」, 『官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역 군수 17명을 면담(陛見)했다.[63]

1909년 1월 심능익은 순종의 시찰에 대비하여 '경상남도 울도군 지방 상황(慶尙南道鬱島郡地方狀況)'을 작성하여 궁내부에 보고했다. 이 문서는 장서각 『궁내부잡철(宮內府雜綴)』에 보관되어 있다. 『궁내부잡철』은 동래부윤(東萊府尹) 김창한(金彰漢)이 융희(隆熙) 3년 1월 28일 순종에게 보내는 헌상물품(獻上物品) 목록과 관련 '보고서(報告)' 1부, 기장군수(機張郡守) 구연호(具然浩)가 융희 3년 1월에 작성한 '경상남도 기장군 지방 상황(慶尙南道機張郡地方狀況)' 1부 등으로 구성되었다.[64]

울도군수 심능익은 울릉도의 크기와 위치를 서술한 다음, 울도군의 면·동·수, 호구와 인구수, 교통 상황, 토산물 등 전반적인 현황을 작성했다. 울릉도의 위치를 살펴보면 동쪽에 일본 오키가 위치하고, 정서쪽에 삼척이 위치한다고 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으로 울릉도와 항로로 연결된 부산항과 원산항이 있다고 기록했다.[65]

심능익에 따르면 울릉도의 크기는 동서 35리, 남북 40리였다. 울릉도는 동쪽으로 일본 오키현(隱岐縣) 해리(海里) 1천 리(里), 서쪽으로 삼척지(三涉地) 해리 800리, 남쪽으로 부산항(釜山港) 해리 1천 리, 북쪽으로 원산항(元山港) 해리 1천 리에 위치했다.

그런데 1906년 5월 1일자 『제국신문』에 따르면 "울릉군의 관할 섬은 죽도와 석도이고, 동서가 60리이고, 남북이 40리이니 합쳐 200여 리이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울도군수 심능익은 울릉도 중심으로만 기술했고, "동서 35리, 남북 40리"라고 보고했다. 통감부 시기의 울도군수 심능익은 대한제국 시기의 심흥택 군수에 비해 울릉도 부속섬인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능익에 따르면 울릉도는 3면(面) 20동(洞)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인의 호구는

---

63 홍정원, 「조선의 울릉도 독도 인식과 관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6, 236쪽.

64 宮內府, 隆熙 3年(1909) 1月, 『宮內府雜綴』(藏書閣 K2-3637).

65 홍정원, 「조선의 울릉도 독도 인식과 관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6, 236쪽. 홍정원은 '慶尙南道鬱島郡地方狀況'이라는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굴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00호(戶), 인구는 4,470명이었다. 일본인의 호수는 201호, 인구는 667명이었다.

심능익에 따르면 울릉도에는 평지 마을이 없었다. 논(水畓)은 겨우 20두락에 불과했으며, 산에서 화전으로 경작했다. 농산물은 콩(大豆), 보리(牟麥), 양배추(玉菜), 고구마(甘藷, 甘藷)였고, 해산물은 오징어(烏賊魚), 미역(甘藿), 김(海衣) 등이었다.

심능익에 따르면 울릉도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눈이 쌓여 통행이 어려웠다. 선편은 일본 풍범선(風帆船)을 이용했다. 2월부터 7월까지 순풍이 불면 통행(通涉)했다. 겨울에는 오랫동안 통행할 수 없었다. 울릉도민은 물품을 무역하러 부산항에 갔다가 7월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다음 해 정월 이후에나 돌아올 수 있었다. 울릉도에서는 화폐가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한 콩(秋太)을 활용하여 일본 상인과 교역했다.[66]

1909년 통감부 시기 울릉도민은 일본 풍범선을 이용했다. 심흥택이 부임한 후에는 여러 가지 개선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화폐가 유통되지 못했고, 일본 상인과 교역했다. 이것은 통감부 시기 울릉도의 상업이 여전히 정체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울도군은 부산과의 교통 관계로 1906년부터 경상남도에 속했지만, 경상북도 포항으로 가는 항로를 개설한 후에는 우편물뿐 아니라 모든 물자를 포항과 유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총독부령 제111호」(1913년 12월 29일 공표, 1914년 3월 1일 시행)에 의해 울도군은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67] 대한제국 시기와 통감부 시기에 울릉군수는 배계주, 심흥택, 구연수, 심능익,

---

66 "慶尙南道鬱島郡地方狀況 一本島地方東西三十五里南北四十里 東日本國隱岐縣海里一千里 西三涉地海里八百里 南釜山港海里一千里 北元山港海里一千里 一三面二十洞戶口九百戶人口四千四百七十口 一日本人來住戶數二百一戶人口六百六十七口 一全島內無里數平地島內水畓勤爲二十斗落故山上火田耕作農業 所産大豆牟麥玉菜甘藷 一海産烏賊魚甘藿海衣等 一海島中惡風太甚綿麻不成無海風則溫暖每年十月爲始翌年 二月至積雪不爲通行 一錢貨不通人民日用事物以秋太爲務交易通貨於日本商賈 一通涉船便日本風帆船一年內自二月六七月間順風則通涉冬節 則永不通涉故人民等貿物次到釜港七月以前若不還歸則 過冬後翌年正月以後還歸本島事 隆熙三年一月日 鬱島郡守臣沈能益."(宮內府, 隆熙 3年(1909) 1月, 「慶尙南道欝島郡地方狀況」, 『宮內府雜綴』(藏書閣 K2-3637))

67 1913. 10. 8, 「欝島郡管轄變更ノ件」, 『面廢合關係書類』(국가기록원 CJA0002564); 홍정원, 「鬱島郡守 沈能益 報告書(1909)를 통해 본 울도군 상황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58, 2011, 2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태홍 등이 수행했다.[68]

2. 통감부 시기 울릉도 경제상황의 악화

1907년 7월 24일 일본은 한국을 강점하기 위한 예비조처로 고문정치를 '차관정치'로 변경한 '한일신협약(제3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법령 제정권, 관리 임명권, 행정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7개항의 조약이었다.

조선 통감부는 '한일신협약' 체결 이후 울릉도의 지도와 호구를 조사했고, 울릉도의 정기항로를 개시했다.

1907년 10월 16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통감부는 일본 황태자의 방한에 맞추어 대한제국의 호구(戶口)와 지도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통감부는 "국내 호구수(戶口數)를 정실(精實)히 조사성표(調査成表)하고 여지도(輿地圖)를 소상(昭詳)히 선제(繕製)하여 송교(送交)하라"고 대한제국 내부에 조회했다.[69]

---

68 "(守宰) (李朝) 裵季南(高宗朝), 姜泳禹, 裵季南(再來), 심홍택(建郡廳), 具然壽, 沈能益, 全泰興(純宗朝), (併合) 洪鍾旭."(『江原道誌』 7卷(1940); 「江原道誌」 2, 『韓國近代道誌』 23, 1991, 468쪽)

69 "論說地圖戶口查製紛忙. 近日 日本皇太子殿下渡韓에 就ᄒᆞ야 我國戶口와 地圖를 殿下의 御覽에 進呈ᄒᆞᆯ 必要가 有ᄒᆞᆷ으로 日昨 統監府에서 內部로 照會ᄒᆞ고 國內戶口數를 精實히 調査成表ᄒᆞ며 輿地圖를 昭詳히 繕製ᄒᆞ야 送交ᄒᆞ라 ᄒᆞᆷ으로 內部版籍課에서 戶口表와 輿地圖의 調査繕製에 十分 紛忙ᄒᆞ다ᄂᆞᆫᄃᆡ 其期日이 短促ᄒᆞᆷ으로 該部書記郎이 竣工치 못ᄒᆞ깃다 ᄒᆞ야 他人을 臨時雇用ᄒᆞᆯ 次로 經費 一百二十圜을 支撥ᄒᆞ라고 度支部에 請求ᄒᆞᆷ을 某新聞에 揭載ᄒᆞ얏스니 吾輩ᄂᆞᆫ 此에 對ᄒᆞ야 遺憾이 不無ᄒᆞ도다 大抵 內部에 版籍課를 設置ᄒᆞᆷ은 其職務가 何에 在ᄒᆞᆷ인가 十三道戶口의 數를 調査ᄒᆞ야 每個年에 戶口表를 精製ᄒᆞ야 男女의 生死와 人民의 增減을 比較ᄒᆞ며 且其烟戶의 盈縮도 檢査코져 ᄒᆞᆷ이니 所謂 戶牖에 不出ᄒᆞ고도 能히 天下를 周知ᄒᆞᆫ다ᄂᆞᆫ 古語가 此로 由ᄒᆞᆷ이오 又其各道郡의 山川道里와 坊面村落을 昭詳記載ᄒᆞ야 輿圖를 繕製ᄒᆞᆷ은 卽疆域의 版圖라 其古今의 沿革과 政治의 區域을 隨時訂校ᄒᆞ야 完全ᄒᆞᆫ 圖籍을 整備ᄒᆞᄂᆞᆫ 것이 是版籍課의 所掌ᄒᆞᆫ 職務로다 然ᄒᆞᆫ즉 全國의 版圖와 戶口를 掌ᄒᆞᆫ 其責任이 重大ᄒᆞᆫ지라 國家의 關係가 何如ᄒᆞᆫ고 昔에 支那漢丞相 蕭何가 秦京에 入ᄒᆞ야 府庫에 藏ᄒᆞᆫ 圖籍을 先收ᄒᆞᆷ으로 能히 天下의 戶口와 郡縣의 區劃과 租稅의 收入을 詳知ᄒᆞ야 漢家의 成立ᄒᆞᆫ 基業을 定ᄒᆞ얏다 ᄒᆞ니 版籍의 關係가 如是綦重ᄒᆞᆫ 者라 該課에서 平日에 何許事務를 紛忙ᄒᆞ얏ᄂᆞᆫ지 未知ᄒᆞ거니와 戶口의 調査表와 版圖의 繕本을 修整치 아니ᄒᆞ얏다가 今에 日本皇太子殿下供覽ᄒᆞ기 爲ᄒᆞ야 始修整ᄒᆞᆷ에 紛忙ᄒᆞ야 期間의 促迫ᄒᆞᆷ을 憂慮ᄒᆞᆷ으로 各種 困難이 有ᄒᆞ다 ᄒᆞ니 實로 慨歎ᄒᆞᆷ을 不堪ᄒᆞ도다 此로 因ᄒᆞ야 推觀ᄒᆞ건ᄃᆡ 其他 諸部를 可知ᄒᆞᆯ지라 엇지 內部에 版籍課만 如斯ᄒᆞᆯ 쁜이리오 各府部의 諸局課가 皆因循姑息으로 時日을 捱過ᄒᆞᆷ은 平均通患이라 謂ᄒᆞᆯ지니 豈他人의 藉口ᄒᆞᆷ을 得免ᄒᆞ리오 因此로 口實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9년 8월 21일 『황성신문』은 울릉도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거주 현황을 보도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울릉도는 부산항에서 180마일(哩)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한국인은 7천여 명, 일본인은 670명이 거주했다. 선박은 한 달에 한 번 왕래했다. 일본인은 석유 발동기를 사용하는 선박을 한 달에 2회 항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농상공부에 청원했다.[70]

1910년 7월 19일 『황성신문』은 1910년 7월 18일자 『관보』에 기초하여 울릉도의 상황을 보도했다. 울릉도는 호수호세(戶數戶稅), 주세(酒稅), 연초경작세(烟草耕作稅), 연초판매세(烟草販賣稅), 수산세(水産稅), 인삼세(人蔘稅), 어업세(漁業稅) 등의 세금을 징수했다. 울릉도는 1909년부터 30전(錢)의 호세(戶稅)를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로부터 징수했다. 또한 울릉도는 수산세 중 인원미상(人員未詳)의 16.150(一六.一五〇) 세액(稅額)을 거두었다. 그런데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은 어업세를 부산이사청에 납세했기 때문에, 울릉도에는 어업세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었다.[71]

1910년 7월 18일 『관보』는 재무휘보(財務彙報)에 근거하여 '울도에 관한 조사(鬱島에 關ᄒᆞᆫ 調査)'를 기록했다. 『관보』는 울릉도는 울도(鬱島)와 울릉도(鬱陵島)라는 명칭을 동시에 사용했다. 『관보』에 따르면 울릉도는 원래 강원도 삼척군에 소속되어 국유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1881년(개국 490) 조선 정부는 이규원을 파견하여

唱ᄒᆞ야 日本의 人士로 官吏에 充任케 ᄒᆞ니 當初 我國의 慣例가 如是ᄒᆞᆫ 故로 雖開明國의 官吏를 雇用ᄒᆞ더라도 亦是此等習慣에 傳染되야 能히 實際로 刷新改良의 効를 未見ᄒᆞᆯ지오 但 其掣肘의 歎만 自招ᄒᆞᆯ 而已로다 此等事理ᄂᆞᆫ 吾輩의 臆說로 橫竪ᄒᆞᆷ이 아니오 皆現狀에 證ᄒᆞ야 瞭悉ᄒᆞᄂᆞᆫ 바이라 此後에 又何等機會를 因ᄒᆞ던지 今番 版籍課와 如히 促迫紛忙ᄒᆞᆫ 事를 當치 아니ᄒᆞᆯᄂᆞᆫ지 難保ᄒᆞ리니 從今으로ᄂᆞᆫ 各府部各局課에서 一層注意ᄒᆞ야 其分內에 當ᄒᆞᆫ 職務ᄂᆞᆫ 切勿怠忽ᄒᆞ고 到底努力ᄒᆞ야 他人의 口實을 勿爲케 ᄒᆞ도록 自勵自謀ᄒᆞᆯ진져."(『皇城新聞』, 1907. 10. 16)

70 "鬱島의 日人. 鬱陵島ᄂᆞᆫ 釜山港과 相距一百八十哩에 不過ᄒᆞ고 人口ᄂᆞᆫ 我國人 七千餘人과 日本人 六百七十人이 居住ᄒᆞᄂᆞᆫ디 港灣中에 滊船의 碇泊處이 無ᄒᆞᆷ으로 交通機關이 完全치 못ᄒᆞ야 一個月에 一次의 往復에 不過ᄒᆞᆫ즉 石油發動機를 使用ᄒᆞ야 每月二回의 航海를 開ᄒᆞᆯ 터이니 相當ᄒᆞᆫ 補助를 下附ᄒᆞ라고 農商工部에 請願ᄒᆞᆫ 日本人이 有ᄒᆞ다더라."(『皇城新聞』, 1909. 8. 21)

71 『皇城新聞』, 1910. 7. 1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택지(宅地), 기간(起墾), 산전(山田) 등을 민유지로 인정하고 매매를 허가했다. 현재 전체 호수는 한국인 891호, 일본인 200호였다.

『관보』는 울릉도에서 "융희 2년 이전 일본인에게 징수함이 무(無)"라고 기록했는데, 1908년 이전에는 일본인에게 '호세(戶稅)'를 거두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불법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관보』에 따르면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은 어획(漁獲)에 종사하므로 어업세를 부산이사청에 납세했다.

통감부에 따르면 울릉도는 천호내외(千戶內外)의 소읍(小邑)으로 화폐가 유통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재무서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간 1-2회 관리를 파견하여 세금을 감독하는 상황이었다.

『관보』에 따르면 울릉도는 현재 수목(樹木)의 벌목과 동시에 토지가 척박하게 되었고, 곡물과 어획의 감소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울릉도는 물가가 일반적으로 비싸고 생활도 곤란하여 영구적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72]

---

72 "彙報, 鬱島에關ᄒᆞᆫ調査(財務彙報抄錄). 本島ᄂᆞᆫ 高麗時代에 牛山國이라 稱ᄒᆞ야 島民이 壯勇强悍ᄒᆞ야 弊害가 多ᄒᆞ얏슴으로 討伐된 以來 七百餘年間 無人島로 江原道 三陟郡에 所屬되야 全部가 國有地의 性質을 有ᄒᆞ얏서나 開國四百九十年(距今二十九年)에 政府ᄂᆞᆫ 開拓使大將 李奎遠을 派遣ᄒᆞ사 宅地及起墾山田은 民有로 認定된 以來로 轉轉賣買가 行ᄒᆞ야 民有의 實態가 되얏고 光武二年(距今十三年) 慶尙南道에 移屬ᄒᆞ야 始히 郡을 設ᄒᆞ야써 今日에 至ᄒᆞ니 今現行 稅法에 依ᄒᆞᄂᆞᆫ 課稅物件數及稅額等을 記ᄒᆞ면 左와 如홈.

戶稅 戶數(韓人)八九一 每戶一. 三○○ 稅額一. 一五八. 三○○ 同 同(日人)二○九 同 三○○ 同 六二. 七○○ 但日人에게ᄂᆞᆫ 舊慣의 一圓三十錢을 賦課徵收홈은 穩當치 아님으로 認ᄒᆞ야 一般의 三十錢을 徵收ᄒᆞᆯ 事로ᄒᆞ얏ᄂᆞᆫᄃᆡ 隆熙二年以前은 日人에게ᄂᆞᆫ 徵收홈이 無홈.

酒稅 四八人 稅額 九六.○○○ 煙草耕作稅 一一九人 同 五九. 五○○ 煙草販賣稅 二人 同 四.○○○ 水產稅 人員未詳 同 一六. 一五○ 人蔘稅 同 同 一. 二○○ 漁業稅

同但漁業稅ᄂᆞᆫ 多히 日本人의 漁獲에 從事ᄒᆞᄂᆞᆫ 者이니 所轄釜山理事廳에서 納稅홈으로 當局에서ᄂᆞᆫ 不明ᄒᆞ고 又韓人으로 漁業稅ᄅᆞᆯ 納ᄒᆞᆯ者가 有ᄒᆞ나 久間署長이 在署치 아니홈과 同島에ᄂᆞᆫ 收入印紙賣下所가 無홈에 依ᄒᆞ야 施行이 如意히 遂치 못ᄒᆞᄂᆞᆫᄃᆡ 其方法을 詳示ᄒᆞ야 督促中인즉 不日課稅ᄅᆞᆯ 見ᄒᆞᆯ지나 結局韓日人을 通ᄒᆞ야 貳百圓以上을 出치 못ᄒᆞᆯ 預想이라.

該島ᄂᆞᆫ 貨幣가 流通치 아니홈으로 此流通을 圖ᄒᆞ야 新政의 餘光에 浴케 홈이 急務라ᄒᆞ나 抑此百五十餘浬ᄅᆞᆯ 距ᄒᆞᄂᆞᆫ 絶海의 孤島 戶數千戶內外의 小邑인즉 此에 多大ᄒᆞᆫ 經費ᄅᆞᆯ 要ᄒᆞᆯ바도一思ᄒᆞᆯ만ᄒᆞᆫ 問題이라 因ᄒᆞ야 現狀을 觀察ᄒᆞ야 施設치 아니치 못ᄒᆞᆯ지니 各種의 稅ᄂᆞᆫ 總히 每年秋收期에 徵收ᄒᆞᄂᆞᆫ 實狀임으로 財務署의 常設은 其必要가 無홈과 如ᄒᆞ나 此ᄅᆞᆯ 他財務署에 併合ᄒᆞᆫ다ᄒᆞ면 日當의 執務上彼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결국 울릉도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인들의 불법적인 벌목과 어업으로 인해 곡물과 어획량이 감소하여 1910년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다. 울릉도는 1909년부터 일본인에게 '호세'를 징수했는데, 1908년 이전 울릉도 내 일본인은 모두 불법 거주자들이었다.

Ⅴ. 나오며

1903년 울도군수에 부임한 심흥택은 울릉도민과의 합의를 통해 세금 납부를 결정했고, 정부의 지원 아래 군청의 건립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심흥택은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거주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것은 심흥택이 기초적인 행정 관할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울도군수 심흥택과 내부대신서리 김규홍은 조일수호통상조규에 기초하여 불통상항구에서 일본인의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수행했다.

대한제국 내부는 울릉도에 일본경찰서를 설치하는 것은 만국공법(萬國約章)에 없는 사실이고, 우방국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법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내부

의 不便이 有홈과 徵收期에 至ᄒᆞ야 署員을 派出ᄒᆞᄂᆞᆫ等 困難ᄒᆞᆫ 事態가 發生ᄒᆞᆯ지라 故로 先히 現在ᄃᆡ로 此를 存置ᄒᆞ고 年一回乃至二回局員을 派ᄒᆞ야 監督케ᄒᆞᄂᆞᆫ 外에 他에 適切ᄒᆞᆫ 施設事項이 無홈.

本郡은 鬱島及鬱陵島(日本서ᄂᆞᆫ 多히 鬱陵島라 稱홈)라 稱ᄒᆞᄂᆞ니 由來韓國은 地名稱을 其土地로 形容ᄒᆞᄂᆞᆫ 者가 多ᄒᆞ니 本島도 亦然ᄒᆞ다 信ᄒᆞ노라.

本島ᄂᆞᆫ 七百餘年間 無人島인ᄃᆡ 其名과 如히 老木이 鬱蒼ᄒᆞ야 嘗히 斧伐을 入ᄒᆞᆫ事가 無ᄒᆞ니 故로 魚族의 來集이 多ᄒᆞ얏심을 想像ᄒᆞ기 難홈이 無ᄒᆞᆫ지라 故로 各道郡峽에 居住ᄒᆞ던 人民은 該島의 富源膏沃홈을 聞ᄒᆞ고 一時的移住ᄒᆞ기 爲ᄒᆞ야 渡船入島ᄒᆞᆫ 者인ᄃᆡ 今에 樹木은 漸伐홈과 同時에 土地의 瘠薄이 되야 穀物의 收穫及漁獲도 亦昔日과 如치 아니ᄒᆞ며

又上述과 如히 貨幣流通치 아니홈으로 生活上消費物品을 船便에 依ᄒᆞ야 輸入ᄒᆞᄂᆞᆫ者가 有ᄒᆞ나 現金을 交付ᄒᆞ야 買用ᄒᆞᄂᆞᆫ事가 無ᄒᆞ고 秋收後에 計算을 ᄒᆞᄂᆞᆫ 狀態인ᄃᆡ 從ᄒᆞ야 物價가 一般으로 高ᄒᆞ고 單調된 生活도 尙히 困難홈으로써 永久的居住의 思想이 有ᄒᆞᆫ者가 殆無ᄒᆞ고 些少의 資產을 得ᄒᆞ면 內地에 移住ᄒᆞᆯ 意嚮이 有ᄒᆞ다 云홈."

(內閣法制局官報課, 隆熙 4年 7月 18日 月曜日, 「第四千七百三十三號 鬱島에 關ᄒᆞᆫ 調査(財務彙報抄錄)」, 『官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울릉도 경찰서 관원을 즉각 소환하고 일본인들의 철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대한제국은 불통상지역 무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심흥택, 김정근, 이하영 등의 정부 관료는 주한 일본공사관에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거주를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1906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오간 문서를 살펴보면,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의 '본군 소속 독도' 관련 보고서는 1906년 4월 29일 강원도 관찰사서리 이명래가 일본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내부대신 이지용에게 보고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1906년 5월 1일『제국신문』에 따르면 대한제국 내부대신 이지용은 "쟁이상지하거든 일본리사에게 교섭하여 쳐단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1906년 5월 20일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이명래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독도 영지(領地)의 설은 전혀 근거가 없으니, 그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동향을 다시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1906년 7월 13일『황성신문』에 따르면 일본 통감부는 내부에 강원도 삼척군 관할(管下) 울릉도의 소속 도서와 군청의 설치연월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대한제국 내부는 "울릉도의 관할 섬은 '죽도'와 '석도'이고, 동서가 60리이고, 남북이 40리이니 합쳐 200여 리이다"라고 답변했다.[73] 이것은 대한제국이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답변했음을 알려준다. 무엇보다도 1906년 5월 1일자『대한매일신보』와 1906년 7월 13일자『황성신문』의 '독도'와 '석도' 명칭을 종합하면 '독도'와 '석도'가 동일한 장소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또한 대한제국 시기 '독도'의 공식 명칭은 여전히 '석도'였지만, '독도'라는 명칭도

---

73 이지용(李址鎔)은 내부대신에 임명되어 1905년 5월 20일부터 1906년 11월 23일 주일 특사에 임명될 때까지 대체로 내부대신 업무를 수행했다. 박제순(朴齊純)은 1905년 11월 28일 의정부 참정대신에 임명되어 1907년 4월 22일까지 대체로 참정대신 업무를 수행했다(『高宗實錄』, 1905年 5月 20日; 1905年 11月 28日; 1906年 11月 23日; 1907年 4月 22日). 1896년 9월 신설 당시의 명칭은 참정이었으나, 1905년 2월 참정대신으로 바뀌었다. 칙임관으로 1898년 6월까지는 내부대신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다가 1898년 6월 이후 별도로 임명되었으며 1907년 6월 의정대신과 함께 폐지되었다. 참정대신은 의정대신이 신병이 있거나 사고가 있을 때 대신하여 의정부 회의를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 의정부의 사무를 대신 처리했다(法制處,『古法典用語集』, 法制處, 1981 참조). 현재 울릉군청의 공식적인 면적은 72.86제곱킬로미터다. 일본의 1里는 약 3,927미터, 한국의 1里는 392미터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결국 대한제국은 1900년 울릉도의 부속도서를 죽도와 석도라고 규정했고, 울도군수 심흥택은 1906년 독도가 외양 100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내부는 울릉도의 관할 범위를 200여 리(약 80킬로미터)라고 하면서 죽도와 석도의 범위를 포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독도가 100리 밖에 있다는 심흥택의 보고서, 울릉도의 부속섬에 '석도'를 포함시켜 관할 범위를 200여 리라고 밝힌 대한제국 내부의 답변서 등을 통해, '석도'는 바로 '독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소중하게 여겼고 그 의식은 대한민국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장

석도와 독도 등의 명칭 관련 한국의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Ⅰ. 들어가며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할 것'을 공포했는데 제2조에서 울도의 관할 범위를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규정했다. 이것을 통해 독도(獨島)가 울도의 관할권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칙령에 나오는 석도(石島)가 독도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1] 그럼에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나오는 석도가 독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2] 왜냐하면 칙령 제41호의 석도 명칭은 한국의 고유영토론을 강화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3]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독도라는 명칭은 1904년 일본 군함 니이타카호(新高號)가 작성한 일지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조선인들이 리앙쿠르라는 바위섬을 독도로 표기한다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현재까지 한국 문헌 중에는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이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낸 '본군 소속 독도(本郡所屬獨島)'라는 구절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독도의 명칭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 고문헌에 등장하는 우산도(于山島)나 삼봉도(三峰島), 가지도(可支島) 등의 명칭, 일본 고문헌의 송도(松島)나 죽도(竹島)가 각각 어디를 지칭하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4] 또한 독도가 울릉도민의 인식과 중앙정부의 인식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울릉도

---

1 허영란, 「독도 영유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학영사, 2004, 31쪽; 신용하,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2006, 32-33쪽. 홍정원에 따르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처음 세상에 공개된 것은 1966년 이종복(李宗馥, 한양대학교 교수)에 의해서였다(홍종인, 「독도를 생각한다」, 『주간조선』 427호, 1977. 3. 20).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소개하면서 석도가 독도임을 처음으로 밝힌 논저는 이한기인 것으로 보인다(이한기,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250·281쪽; 홍정원, 「조선의 울릉도 독도 인식과 관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6, 188쪽).

2 한철호,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40, 2007, 219쪽.

3 허영란, 「독도 영유권 문제의 주요 논점과 '고유영토론'의 딜레마」, 『이화사학』 36, 2008, 122쪽.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석도와 독도라는 근대적 명칭은 근대 민족국가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그 명칭의 유래, 출현의 조건 등이 해명되어야 한다(배성준, 「울릉도 독도 명칭 변화를 통해서 본 독도 인식의 변천」, 『진단학보』 94, 2002, 52쪽).

4 허영란, 「독도 영유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학영사, 2004, 2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大韓光武三年九月廿三日 土曜日 陰曆己亥八月十九日 (一)

皇城新聞

光武二年三月八日 農商工部認可

每日刊行 第二卷 第二百十八號

別報

鬱陵島事況

◎蔚珍之東海에一島가有ᄒᆞ니曰鬱陵이라其附屬ᄒᆞᆫ小六島中에最著者ᄂᆞᆫ于山島竹島ㅣ니大韓地誌에曰鬱陵島ᄂᆞᆫ古于山國이라地方이百里오三峰이律兀ᄒᆞᆫ디所産은柴胡、蕙本、石楠、藤草、香木、槐木、蘆竹이오土性은宜麥ᄒᆞ고古에牛形無角ᄒᆞᆫ水獸가有ᄒᆞ니名曰可之오海鳥가有ᄒᆞ니名曰霍鳥ㅣ러라島中에人烟이稀少ᄒᆞᆷ으로公稅를殆徵ᄒᆞ고每式年에附近地方官으로差使員을定送ᄒᆞ야島中情形도査察ᄒᆞ고香木과蘆竹을載還ᄒᆞ야御貢할분이러니癸未年에朝廷에서金玉均으로東南諸島開拓使兼捕鯨使를任ᄒᆞ고白春培로從事官을任ᄒᆞ야該島開拓事務를辦理케ᄒᆞᆫ얏더니翌年甲申의變을因ᄒᆞ야擧劾치못ᄒᆞᆫ얏고其後戊子年에島民徐敬秀로越松萬戶를差定ᄒᆞ야該島人民을繁殖ᄒᆞ고外國人의樹木侵伐ᄒᆞᄂᆞᆫ弊를防禁케ᄒᆞᆫ얏더니翌年에徐敬秀가身死未遂ᄒᆞ얏고開國五百四年에內部에서本島民裴季周로島監을任ᄒᆞ야島務를管理케ᄒᆞᆫ얏더니本年春에裴季周가內部에來報ᄒᆞᆫ되近者에日本人이夥數流入ᄒᆞ야樹木을斫伐ᄒᆞ고居民을侵擾ᄒᆞ니政府에서設法防護ᄒᆞ기를請ᄒᆞᆷ인ᄃᆡ內部에서海關總稅務司柏卓安에게委托ᄒᆞ야西人一員을派送ᄒᆞ야該島情形을査報케ᄒᆞ얏더니其報告의概況이如左ᄒᆞ니

鬱陵島ᄂᆞᆫ距陸二百餘里오面積은約計七十五方里니逼嶋ᄂᆞᆫ에耕植ᄒᆞᆫ地ᄂᆞᆫ不多ᄒᆞ고樹木이海濱으로從ᄒᆞ야山巓ᄭᅡ지鬱密ᄒᆞᆫ얏ᄂᆞᆫᄃᆡ山高ᄒᆞᆫ計有四千英尺이오距岸三里內의水深은自六千至九千六百英尺이라

居民은男女約三百口ㅣ니數十年來로漸次船匠商客과漁人耕夫가相隨而至ᄒᆞ야居生ᄒᆞᄂᆞᆫᄃᆡ海水가太深ᄒᆞ야魚産은未盛ᄒᆞᆫ고다만海菜의運出이每年에二千擔에多至ᄒᆞᆫ고土質은膏沃ᄒᆞ야糞溉를要치아니ᄒᆞᆫ고樹叢燼灰로覆耕ᄒᆞ야一年兩熟을得ᄒᆞ니春季에ᄂᆞᆫ大小麥이오秋季에ᄂᆞᆫ蕎麥과豆인ᄃᆡ上年所穫이蕎二萬包、大麥二萬包、黃豆一萬包、小麥五千包이오地勢가太斜ᄒᆞ야禾穀은耕作지못ᄒᆞᆫ고材木은老年巨杉과各種貴重實木이亦多ᄒᆞ고槐木香木柏子木甘湯木이產有ᄒᆞᆫ더라

大陸과通商이極少ᄒᆞᆫᄃᆡ往往히商旅의輸入ᄒᆞᆫᄂᆞᆫ物貨ᄂᆞᆫ食物烟草布疋等數包뿐이오其載出ᄒᆞᆫᄂᆞᆫ物品은海菜가居多ᄒᆞᆫ고板木도間或裝運ᄒᆞᆫ더라

鳴邊海狗峯石壁亂叢中에一小灣이有ᄒᆞ니約濶一百英尺이라該灣으로日本船商의輸入品은米塩瓷器日本酒洋布木綿火油火柴雨傘等件인ᄃᆡ土民으로더부러交易ᄒᆞᄂᆞᆫ法은物로物을易ᄒᆞ고其輸出品은豆麥外에滿山材木을亂斫鋸削ᄒᆞ야船隻에載往ᄒᆞᆫᄂᆞᆫ者ㅣ其値가不貲ᄒᆞ고本嶋中에築室族居ᄒᆞᆫ日本人이二百餘名인ᄃᆡ土民을侵凌ᄒᆞ야相鬨ᄒᆞᆫ弊가有ᄒᆞᆫ더라

農民商民의公稅ᄂᆞᆫ原定ᄒᆞᆷ이無ᄒᆞ고但嶋監이海菜에ᄂᆞᆫ十分의一을徵ᄒᆞ고木料에ᄂᆞᆫ每船一隻에葉二百兩을徵ᄒᆞ며日本人은實貨時口文(百抽二)外에ᄂᆞᆫ納稅ᄒᆞᆫ이無ᄒᆞᆫ더라

本年九月에內部에서右項報告을等因ᄒᆞ야外部에照會ᄒᆞ얏더니外部에서駐京日本公使에게照會하야該嶋에潛越한日本人을訂期刷還ᄒᆞ고不通商口岸에密行買賣ᄒᆞᆷ을禁飭케하라하얏더라

『황성신문』(1899. 9. 2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獨島는우리의섬
原名은돌섬(石島)

『한성일보』(1948. 6. 13)

민의 생활반경 속에 독도가 얼마나 밀접하게 들어가는지도 주목해야 한다.[5]

방종현은 독도라는 이름이 '석도(石島)'의 뜻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방종현에 따르면 독도는 돌로 이루어진 섬이고 돌뿐이다. '돌섬' 또는 '독섬'의 두 가지로 불리는데, 전라남도 해안에서도 돌을 독으로 불렀다.[6]

이기봉에 따르면 『한국지명총람』(20권) 전체에서 표준말 '돌(石)'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는 '독'이 순한국말 지명에서 가장 앞쪽에 오는 경우만 해도 총 319개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 중 전라도가 251개, 충청도가 31개, 경상도가 21개였다.[7]

송병기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석도와 독도의 명칭 문제를 설명했다. 석도를 훈독(訓讀)하면 '독섬' 혹은 '돌섬'인데, 현재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독섬' 혹은 '돌섬'이라 부른다. 석도는 바로 독도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이 강원도 관찰사서

---

5 이병도, 「우산 죽도의 명칭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김정숙, 「독도에 대한 역사 지리적 인식」, 『독도연구』 1, 2005, 3쪽. 명칭을 직접적으로 다룬 국내 논문은 다음과 같다. 方鍾鉉, 「獨島의 하루」, 『京城大學 豫科 新聞』 13, 1947; 申奭鎬, 「獨島 所屬에 대하여」, 『史海』 1, 1948; 申奭鎬, 「獨島의 來歷」, 『思想界』 8, 1960; 이병도, 「독도의 명칭에 대한 사적 고찰」, 『趙明基博士華甲記念佛敎史學論叢』, 1965; 이병도, 「독도의 명칭에 대한 사적 고찰」, 『獨島』, 大韓公論社, 1965; 申奭鎬, 「獨島의 來歷」, 『獨島』, 大韓公論社, 1965;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1998; 배성준, 「울릉도 독도 명칭 변화를 통해서 본 독도 인식의 변천」, 『진단학보』 94, 2002; 서종학, 「독도 석도의 지명 표기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36-3, 2008; 유미림, 「일본의 석도=독도설 부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해양정책연구』 23-1, 2008; 오상학, 「일본측 독도영유권 주장의 비판적 검토」, 『독도연구』 6, 2009.

6 방종현, 「독도의 하루」, 『京城大學 豫科 新聞』 第13號, 1947; 방종현, 「독도의 하루」, 『一簑國語學論集』, 1963, 570-571쪽.

7 이기봉, 「순한국말 지명과 한자 표기의 관계를 통해 본 석도 독도 고찰」, 『문화역사지리』 24-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2, 111-11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리 이명래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독도운운(獨島云云)'한 독도는 석도, 즉 '독섬'에서 음을 빌린 것이라 하겠다.[8]

정연식은 돌섬이 독섬과 독도(獨島)로 변화하는 우리말의 어원을 추적했는데, '돍(石)'이 '돌'과 '독'으로 발음되는 과정을 풀이했다. 남해의 여러 섬들 가운데는 '돌섬'을 '독섬'으로 부르거나 '독도(獨島)'로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다. 우리말에서 '돌'의 원시적인 형태는 '도락(turak)'이고 '도락(turak)'에서 중간의 모음이 소실되면서 '돍(turk)'으로 변했으며 중세 국어에서 다시 '돓(torh)'이 되었다가 현대어에서 '돌(tol)'로 정착했다. 초기에는 말음이 외파(外破)하여 말음의 겹자음이 충실하게 발음되었으나, 절음화가 진행되면서 내파(內破)하여 겹자음 가운데 하나는 발음할 수 없게 되었다. '닭(鷄)'은 '닥'으로 발음하고 '돍(石)'은 '돌'로 발음하게 된 것인데, 방언에서는 '닭'도 때로는 '달'로 발음되고 '돍'도 때로는 '독'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9]

이 논문은 대한제국 시기 울릉도와 우산도, 석도와 독도 명칭의 문헌적 연관성을 추적할 것이다. 또한 대한제국 시기 울릉도와 독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한제국 시기 울릉도와 우산도의 인식, 심흥택의 보고서 전후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대동보(大東報)』의 울릉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따른 한국의 여론 등을 주목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논문은 돌섬(독섬)의 한자와 일본어 표기를 추적하여 돌섬=독섬=독도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

8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215쪽.

9 정연식, 「울릉도와 독도의 여러 이름의 뜻과 유래」, 『2018년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결과보고서』, 2018, 3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I.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전후 울릉도·우산도·석도·독도의 명칭

1. 대한제국 시기 『황성신문』에 보도된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인식

대한제국 시기 '석도(독도)'는 동해 속의 '우산도'라는 명칭이 동시에 사용되었다. 대한제국은 한국을 둘러싼 사해를 '동해, 남해, 서해, 북해'로 불렀다.

1903년 3월 19일 장례원경(掌禮院卿) 김세기(金世基)가 오악(五嶽)·오진(五鎭)·사해(四海)·사독(四瀆)에 대한 제사를 지낼 것을 제안했고, 고종이 승인했다. 사해에서 제사를 지낼 장소로 동해(東海)는 강원도(江原道) 양양군(襄陽郡)이고, 남해(南海)는 전라남도(全羅南道) 나주군(羅州郡), 서해(西海)는 황해도(黃海道) 풍천군(豐川郡), 북해(北海)는 함경북도(咸鏡北道) 경성군(鏡城郡)이었다.[10] 조선은 강원도 양양에 '동해신묘(東海神廟)'를 만들어 동해신(東海神)에 제사를 지낼 정도로 '동해'를 중시했다.[11]

1899년 9월 23일 『황성신문』에 이미 '울릉도 사황(鬱陵島 事況)'이 보도되었다. '울릉도 사황'은 『황성신문』이 조사한 정보, 부산해관 세무사서리 라포르트가 조사한 보고서 요약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황성신문』은 울릉도의 부속섬 중 '죽도'와 '우산도'를 구별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울릉도는 울진의 동해에 위치하고, 6개의 부속섬으로 구성되었다. 부속섬 중 가장 큰 섬은 '우산도(于山島)'와 '죽도(竹島)'였다. 『대한지지(大韓地誌)』에 따르면 울릉도는 고우산국(古于山國)이었다.[12]

---

10 "四海: 東海 江原道 襄陽郡."(『高宗實錄』 高宗 40年(1903) 3月 19日)

11 조선시대 양양(襄陽) 낙산진(洛山津)에는 동해신묘(東海神廟)가 있었고, 제향을 드리는 예법까지 법전에 실려 있을 만큼 동해신(東海神)을 중시했다(『正祖實錄』, 正祖 24年(1800) 4月 7日).

12 "別報 鬱陵島事況. 蔚珍之東海에 一島가 有ᄒᆞ니 曰 鬱陵이라 其 附屬한 小六島中에 最著者ᄂᆞᆫ 于山島 竹島니 大韓地誌에 曰 鬱陵島ᄂᆞᆫ 古于山國이라."(『皇城新聞』, 1899. 9. 23, 鬱陵島 事況) 현채(玄采)의 『대한지지(大韓地誌)』 부록 대한전도(大韓全圖)에는 울릉도 바로 옆에 우산(于山)이 구별되어 있다(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3년 12월 10일 『황성신문』은 '울도연혁시말(鬱島沿革始末)'이라는 제목으로 울릉도가 한국 영토인 역사적 근거를 상세하게 논설로 실었다. 『황성신문』은 장한상(張漢相)의 울릉도 수토를 소개하면서 울릉도의 부속도서 우산도의 존재를 언급했다.

"정축년 일본인이 울릉도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정(朝家)은 장한상을 특별히 파견하여 도형(圖形)을 만들었는데 토지가 넓고 비옥하고 사람이 살던 터가 있었습니다. 그 서쪽에 우산도가 있었는데 심히 광활(廣濶)합니다. 조정이 3년마다 수토하는 법을 정하여 현재까지 준수했습니다."[13]

조선시대 기록을 살펴보면 위의 내용은 1735년 행좌참찬(行左參贊) 김취로(金取魯)의 발언이었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따르면 "조정은 정축(1697)·무인(1698) 연간에 장한상을 보내어 울릉도 도형을 살피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울릉도에 관해 들으니(而聞鬱陵島), 토지가 넓어 일찍이 사람들이 살던 터가 있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서쪽에는 우산도가 있는데 매우 넓었다고 합니다. 그 후 3년마다 한 번씩 그곳에 가서 조사하는 것을 일정한 방식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예조(例操, 조련)를 정지(停止)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해상을 방어하는 경고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강원도의 흉년과 사소한 폐단을 이유로 매년 폐지하여서는 안 됩니다."[14]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장한상을 파견하여 파악한 울릉도의 부속도서를 '우산도'라고 지칭했다는 점이다. 특히 『황성신문』은 우산도라는 명칭을 별도로 구별했

采譯輯, 『大韓地誌』, 廣文社, 1901(初版 1899))

13 "論說. 鬱島沿革始末 … 往在丁丑에 倭人이 來請此嶋 故로 朝家 特送張漢相ᄒᆞ야 圖形以來ᄒᆞ니 盖地廣土沃에 有人居舊址ᄒᆞ고 其西에 又有于山嶋ᄒᆞ야 亦甚廣濶 故로 朝家遂定三年一搜之法하야 至今遵行이라 한ᄃᆡ 上이 遂命搜討하시니라."(『皇城新聞』, 1903. 12. 10) '울도(鬱島)'라는 명칭은 1884년 11월 26일 전(前) 오위장(五衛將) 이경렬(李京烈)의 상소문에도 나온다. "울도(鬱島)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深知鬱島利病)."(『高宗實錄』, 高宗 21年(1884) 11月 26日)

14 『備邊司謄錄』 97冊, 英祖 11年 1月 19日; 『英祖實錄』 卷 四十, 英祖 11年 1月 13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울릉도의 세트인 우산도가 존재했다고 기록했다. 이것은 조선의 관찬사료인 『비변사등록』이 울릉도의 부속도서 우산도(독도)를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황성신문』이 1903년 우산도의 존재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결국 조선시대 독도의 공식 명칭은 '우산도'였다.

『황성신문』은 울진 동해의 소도(小島)를 '울도'라고 지칭하면서 독도의 역사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복속되었고, 우산국의 다른 명칭은 울릉도였다.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태조 13년 울릉도인(島人)이 방물(方物)을 헌납했고, 의종대에 김유립(金柔立)이 시찰했다. 조선 태종대에 삼척인 김인우가 유민을 쇄출했고, 세종 20년 만호(萬戶) 남호(南顥)가 김환(金丸) 등 70여 명을 데려왔다. 성종 2년에 박원종(朴元宗)은 삼봉도(三峰嶋)를 찾다가 단지 대죽(大竹)과 대복(大鰒)을 가지고 왔는데, 조선 정부는 그 이후 3년마다 삼척영장(三陟營將)과 월송만호(越松萬戶)를 파견했다. 숙종 28년 5월 삼척영장 이준명(李浚明)과 역관(譯官) 최재홍(崔再弘)이 울릉도를 시찰하고 도형(圖形) 및 산물을 바쳤는데 윤회수토(輪回搜討)가 실행되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영조대에는 수토제도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영조 11년 강원감사 조최수(趙最壽)는 울릉도를 3년마다 수토했지만 금년에 흉년이 들어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정 대신은 울릉도의 수토 연기를 반대했다.

결국 영조는 행좌참찬(行左參贊) 김취로(金取魯)와 호조참판(戶曹判書) 이정제(李廷濟) 등 조정 대신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토를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이 일은 바다를 건너는 것을 꺼려하여 울릉도에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만일 이곳을 버린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찌 사람을 울릉도로 들여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금년은 울릉도 수토를 시행하도록 분부를 내린다."[15]

『황성신문』에 따르면 조선 정부는 세종 이후 울릉도를 "공기지(空其地)하고 구무

15 『備邊司謄錄』 97冊, 英祖 11年 1月 19日; 『英祖實錄』 卷四十, 英祖 11年 1月 13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거민(久無居民)"했지만, 고종 즉위 전후 30-40년 전부터(自近三四十年來) 기근으로 인해 각도 남녀가 유입하고 거주한 결과 설감(設監)과 설군(設郡)을 실시했다.

『황성신문』은 『여지승람(輿地勝覽)』과 『문헌비고(文獻備考)』의 울릉도 관련 내용도 소개했다.

『여지승람』에 따르면 울릉도는 일명 무릉(武陵) 또는 우릉(羽陵)이니 울진 동해 가운데 있는데, 지방 100리이며 토지가 비옥했다. 울릉도는 세 봉우리가 하늘에 닿으니 날씨가 맑으면 봉우리 머리의 수목과 산 아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고 이틀이면 갈 수 있었다.

『문헌비고』에 따르면 울릉도는 등초(藤艸), 향나무(香木), 갈대와 대나무가 많았는데, 노실(蘆實)과 도핵(桃核)의 크기가 술잔이나 됫박만큼 했다. 울릉도 바다에는 짐승이 사는데, 소 모양으로 눈동자는 붉고 뿔이 없었다. 해안에 떼 지어 누워 있다가 혼자 가는 사람을 보면 해치지만 사람이 많으면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름을 가지(可之)라고 한다. 『황성신문』은 냉제(冷齋) 유득공(柳得恭)의 '사자(獅子)', 순암(順庵) 안용복(安鼎福)의 '가지어(嘉支魚)'도 소개했다.[16]

그런데 『황성신문』이 보도한 『여지승람』은 1531년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과 동일했다. 『황성신문』이 보도한 『문헌비고』는 1770년에 발간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내용과 동일했다.[17]

결국 『황성신문』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문헌비고』에 기초하여, 장한상의 파견 이후 파악한 울릉도의 부속도서를 '우산도'라고 지칭했다. 『황성신문』은 우산도라는 명칭을 별도로 구별했고,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우산도가 존재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조선 후기 문헌의 연속성을 함께 살펴보면 '우산도'를 뚜렷하게 구별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 후 대한제국은 독도를 '우산도'와 '석도'라는 명칭으로 동

16 『皇城新聞』, 1903. 12. 10.

17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문헌비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영수, 「고종과 이규원의 울릉도와 독도 위치와 명칭에 관한 인식 과정」, 『사림』 63, 2018, 45-5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에 표기했다.

2. 돌섬(독섬)의 한자와 일본어 표기

고종 시대 '돌섬'의 한자와 일본어 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종실록』은 1878년 '돌섬'을 '석서(石嶼)'라는 한자로 표기했다.[18] 이것은 한국의 관찬사료에는 돌섬을 한자로 '석(石)'이라고 표기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894년 8월 17일 인천 주재 일본영사 노세 다쓰고로(能勢辰五郎)는 1894년 8월 10일 인천 거주 도쿠나가(德永正一)의 선박이 대동강 유역을 지나갈 때 발견한 '돌섬'을 "톳셈(トツセム) 또는 톶체무(トツチヱム)(席島)"라고 주한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에게 보고했다. 즉 돌섬을 일본어로 '톳셈' 또는 '톶체무', 한자로 '석도(席島)'라고 표기했다.[19] 이것은 돌섬을 한자 발음으로 '석도'라고 표기할 수 있으며, 일본어로 돌섬을 '톳셈'으로 가장 가깝게 표기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데 1906년 6월 14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강원도 통천군 시중대(侍中臺)는 천도(穿島), 묘도(卯島), 우도(芋島), 승도(僧島), 석도(石島), 송도(松島), 백도(白島)의 7소도(七小島)가 있었다. 『황성신문』은 강원도에서 지명으로 '송도'와 '석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20]

---

18 1878년 9월 10일 충청감사(忠淸監司) 이명응(李明應)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수심을 측량하는 일본 배가 결성현(結城縣)의 성호포(星湖浦)에 와서 정박하고 백사장에 깃발을 세우고서 돌섬에 회칠을 하였습니다(忠淸監司李明應以 日本測水船, 來泊于結城縣 星湖浦, 立旗於沙場, 塗灰於石嶼事 啓)." (『高宗實錄』, 高宗 15年(1878) 9月 10日)

19 "「トツセム」又ハ「トツチヱム」(席島ナラン乎)."(『駐韓日本公使館記錄』(3), 1894年 8月 17日, 〈五. 軍事關係一件〉(25) 臨庶第80號 [大同江 軍艦出現에 관한 聞取書 別紙 보고] [別紙] [右件 目擊顚末 聽取錄], 仁川 二等領事 能勢辰五郎→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20 "大東古事 ᄉᆞ侍中臺ᄂᆞᆫ 在歙谷北七里許ᄒᆞ니 修岡이 迤逶東蟠ᄒᆞ고 三面은 皆大湖니 湖水瀰漫ᄒᆞ야 汀回渚曲ᄒᆞ고 外周大海ᄒᆞ야 七小島〔穿島, 卯島, 芋島, 僧島, 石島, 松島, 白島〕 森列海中이러라 臺在湖海之間ᄒᆞ고 靑松이 夾路ᄒᆞ야 景致與鏡浦臺〔在江陵〕로 相甲乙ᄒᆞ니 舊名七寶臺라 世祖朝時에 巡察使韓明澮ㅣ 登覽于此라가 拜相之 命이 適至故로 改以今名ᄒᆞ니라."(『皇城新聞』, 1906. 6. 14) 시중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결국 근대 한국과 일본 문헌에 따르면 '돌섬'은 한문으로 '석서(石嶼)', '석도(席島)', '석도(石島)' 등으로 표기했고, '돌섬'은 일본어로 '톳셈(トツセム)'과 '톳체무(トツチヨム)'로 표기했다. 무엇보다도 대한제국 시기 '돌섬'을 한자어로 '석도(石島)'로 표기한 문헌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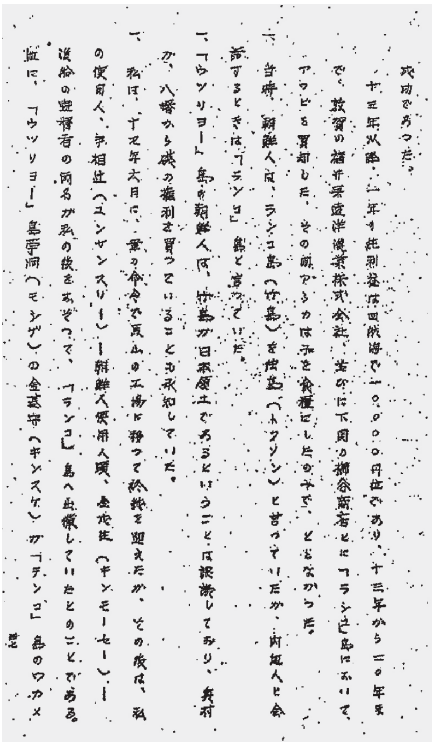

오쿠무라 아키라의 구술서(1953)

그런데 1953년 7월 11일 오쿠무라 헤이타로(奥村平太郎)의 장남 오쿠무라 아키라(奥村亮, 43세)는 독도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했던 일에 대해 구술했다. 오쿠무라 헤이타로는 시마네현 야츠카군(八束郡) 가가촌(加賀村) 출신으로, 메이지 40년경 울릉도에 건너가 통조림공장을 경영했다. 오쿠무라 아키라는 1938년 이후 '랑코섬'에서 잡은 전복을 시모노세키 등에서 판매했고, 강치를 생존을 위한 식량으로 사용했을 뿐 다른 목적으로는 포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쿠무라 아키라는 "당시 조선인은 랑코섬을 독도라고 불렀다(當時, 朝鮮人は, ランコ島(竹島)を獨島(トクソン)"라고 했다.

는 강원도 통천군 흡곡면(歙谷面)에 있는 삼면(三面)이 호수로 둘러싸인,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시중대에는 묘도(卯島), 우도(芋島), 승도(僧島), 석도(石島), 송도(松島), 백도(白島)의 7도가 있다. 1738년 정선의 『관동명승첩(關東名勝帖)』에 시중대 그림이 실려 있다(간송미술관 소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어 '톡손(トクソン)'의 한국어 발음은 '독섬'이다. 주목할 점은 '독도(獨島)'와 '톡손(トクソン)'을 동일하게 파악했다는 사실이다.[21] 근대 일본 문헌에서는 돌섬을 '톳셈(トツセム)'과 '톡손(トクソン)'으로 불렀고, '톳셈'은 한자로 석도(石島)였고, '톡손'은 독도(獨島)였다. 무엇보다도 일본어 '톡손'은 한국어 발음으로 '독섬'이므로, 일본 문헌으로 '돌섬'과 '독섬'이 같고, '독섬'과 '독도'가 같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돌섬=독섬=독도).

일제강점기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에는 "독名 「돌」의 사투리. 石"이라고 나오는데, '돌'은 '독'이라는 사투리로 사용되었다.[22] 한국인은 '돌'과 '독'을 함께 썼고, '석(石)'이라는 한자로 표기했다.

1948년 6월 13일 『한성일보』는 "獨島는 우리의 섬 原名은 돌섬(石島)"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한성일보』에 따르면 독도의 원명은 '돌섬'이고 '석도(石島)'였다. 『한성일보』는 울릉도 주민들이 1881년 이전부터 '독도'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한성일보』는 "원래 이름은 '돌섬(石島)'인데 그 후 와전되어 '松島' 또는 '독섬(獨島)'으로 개칭되엇든 것이라고 한다"라고 보도하여 돌섬(石島)이 '독섬(獨島)'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23] 『한성일보』는 석도와 독도가 동일하고 '돌섬'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1947년 10월 15일 『독립신보』도 독도를 '독섬(獨島)'이라고 표기했다.[24]

---

21 "오쿠무라 아키라는 마산의 공장에서 일본의 패망을 맞았다. 오쿠무라 아키라의 사용인 尹相辻(조선인 사용인 우두머리 金戊生), 어선의 감독자 2명은 '랑코섬'으로 출렵했다. 울릉도 저동의 金基守는 '랑코섬'에서 미역을 채취했다."(アジア局2課, 昭和 28年(1953) 8月, 「(秘)竹島漁業の變遷, 奥村亮 口述書」, 『昭和28年度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 33쪽(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廣報文書課)) 오쿠무라가 독섬이라고 말한 것을 기록자가 독도라고 문서 표기로 바꾼 듯하다. 이로써 일제강점기 한인들은 독도보다 독섬이라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유미림, 『우리 사료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3, 297-298쪽).

22 文世榮, 『朝鮮語辭典』, 博文書館, 昭和 13年(1938), 379쪽.

23 "원래 이름은 '돌섬(石島)'인데 그 후 와전되어 '松島' 또는 '독섬(獨島)'으로 개칭되엇든 것이라고 한다."(『漢城日報』, 1948. 6. 13, 「獨島는 우리의 섬 原名은 돌섬(石島)」)

24 "울능도(鬱陵島) 동남 39리 해상에 있는 독섬(獨島)을 엄연한 조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獨立新報』, 1947. 10. 15) "독섬(獨島)."(『漢城日報』, 1947. 10. 1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7년 현재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에는 206개의 무인도가 있는데, 독섬, 석도(石島), 독도(獨島) 등의 지명으로 불리는 섬이 있다. 이 세 가지 지명은 원래 '돌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25]

이것은 한국의 지명으로 '돌섬'과 '독섬', 독도(獨島)와 '석도(石島)'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돌섬=독섬=독도=석도). 결국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石島)'는 '돌섬'과 '독섬'에서 유래했고 바로 '독도(獨島)'를 가리키는 것이다.

Ⅲ. 러일전쟁 이후 울릉도·독도·석도의 명칭과 한국의 인식

1. 『대동보(大東報)』의 일본의 울릉도 영토 주장에 따른 대한제국 언론의 반발(1905)

러일전쟁 시기 일본은 한국의 포구에 대한 무역권까지 확보했다. 1905년 5월 7일 『제국신문』에 따르면 대한제국 정부는 5월 5일 각 포구에서 일본인의 무역을 허가했고, 기한은 15년이었다.[26] 더구나 1905년 서울에서 발간된 일본인 신문 『대동보(大東報)』[27]는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여, 한국인의 반발이 확대되었다.

1905년 8월 11일 『대한매일신보』는 울릉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

25 고홍군, 『독섬, 石島, 獨島 고홍의 증언』, 2017년 8월 22일 국회학술심포지엄, 92-93쪽.

26 "재작일 정부에서 각 포구에 일본인의 무역을 허가한다 하는 일공사의 청구한 문제를 회하여 인허하기로 결정하엿는대, 년한은 15년으로 작정하엿고 과한 후에는 다시 년한을 작정하기로 하엿다더라."(『帝國新聞』, 1905. 5. 7)

27 1906년 9월 조선통감부(朝鮮統監府)는 1895년 일본인이 창간한 『한성신보(漢城新報)』와 1904년 일본인이 창간한 『대동신보(大東新報)』를 인수, 통합하여 통감부의 기관지 『경성일보(京城日報)』를 만들었다. 『경성일보』 창간호는 韓國字 8면, 日本字 12면, 총 20면으로 구성되었다(『皇城新聞』, 1906. 8. 24; 金允植, 光武 10年(1906) 9月 1日, 『續陰晴史』 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도했다. 『대한매일신보』에 따르면 『대동보』 기자는 일본인이 "일본해중(日本海中) 울도(鬱島)를 개척하였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매일신보』는 울릉도가 한국의 21개 고도(故都) 중 하나이고, 신라 때부터 수천 년 동안 한국판도(韓國版圖)였다는 것이 역사(歷史)와 지지(地誌)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28]

1905년 9월 22일 『대한매일신보』는 『대동보』의 기사를 비판하면서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개척 문제를 보도했다. 『대동보』에 따르면 '일본해중(日本海中)'에 풍요(豐饒)로 유명한 울릉도는 일본인 개척 이후 경제가 발달하고 일본인 호구가 매달 증가했다. 하지만 『대한매일신보』는 울릉도가 한국 삼척해중(三陟海中)에 있으며 예전부터 우산국으로 알려져 왔다고 보도했다. 『대한매일신보』에 따르면 울릉도는 신라 시대부터 조선의 영토였고, 조선 정부가 관리를 파견하여 백성을 다스렸다고 주장했다.[29] 일본은 100년 전부터 울릉도가 자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하지만, 울릉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역사(歷史)와 지지(地誌)에서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원래 울릉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의도했지만 한국의 반발로 불가능해지자, 이후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했다.

1905년 9월 24일 『대한매일신보』는 '울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중대한 사건이며 조종강토(祖宗疆土)를 무시하는 사람은 애국하는 신민(臣民)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한매일신보』에 따르면 울릉도는 한국의 고도(故都) 중 하나이고, 신라 때부터 수천 년 동안 명백히 한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했다. 대동기자(大東記者)는 "울릉도가 일본의 고유한 물건이다"라는 사연서(肆然書)를 작성하자, 『대한매일신보』는 대한제국 정부와 사회가 대동기자의 사연서를 반박하고 정오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매일신보』는 한국 정부가 울릉도 사건에 대해서 공법

28 『大韓每日申報』, 1905. 8. 11.

29 『大韓每日申報』, 1905. 9. 2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公法)에 근거하여 각국에 성명(聲明)하고 담판(談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0] 『대한매일신보』는 공법 · 성명 · 담판 등의 국제법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대동보』의 주장은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다. 한국인은 자국의 영토를 빼앗긴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토 관련 사실의 공개, 공법에 따른 해결 등의 다양한 방안이 신문에 제기되었다.

1905년 9월 『황성신문』은 울릉도의 역사와 관련된 투고(寄書)를 2회 연속 연재했다. 1905년 9월 27일자 『황성신문』에 따르면 울릉도는 한국의 판도내(大韓國版圖內)의 옛 산천(舊山川)이며 수천 년 역사상(數千年歷史上)의 명백한 영토였다. 『황성신문』은 한반고(漢班固) 박물지(博物志), 삼국사(三國史), 삼한강목(三韓綱目), 여지승람(輿地勝覽), 문헌비고(文獻備考), 21도회고시집(二十一都懷古詩集) 등의 울릉도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1883년(當宁二十年癸未) 배계주(裴季周)와 최성린(崔秉麟) 등이 16가구를 인솔하여 울릉도에 들어가 삼림을 개척하고 토지를 개간하여 이주민이 증가했다. 조선 정부는 배계주를 도감, 최성린을 시찰로 임명하여 진무(鎭撫)에 힘쓰게 했는데, 울릉도는 조선인 개척의 섬이 되었다. 고종은 1900년 칙명을 내려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하고 배계주를 군수로 임명했는데, 지금은 심흥택이 군수로 임명되어 군현(郡縣)이 되었다.[31] 『황성신문』은 한국이 다양한 문헌을 통해서 울릉도를 인식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종 시대 울릉도에 대한 본격적인 이주와 관할 활동을 소개했다.

1905년 9월 28일자 『황성신문』 투고(寄書)에 따르면 『대동보』는 "일본해중(日本海中)에 풍요(豐饒)로 유명한 울릉도는 일본인 개척 이후부터 일본인 호구(戶口)가 매달 증가(每月增加)"했다고 보도했다. 『황성신문』은 울릉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대동보』의 기사가 오보라며 성토했다. 『황성신문』은 일본이 선

30 『大韓每日申報』, 1905. 9. 24.

31 『皇城新聞』, 1905. 9. 2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린(善隣)의 높은 뜻으로 한국의 영토 보전을 준수할 공맹(共盟)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32] 『황성신문』은 통감부 시기 일본이 울릉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선린과 공맹을 준수할 것을 환기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이 자국의 영향력이 강할 때 울릉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자국의 영향력이 약해질 때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논리와 결부되었다. 이것은 숙종 시기 안용복 사건, 고종 시대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거주와 벌목, 통감부 시기 일본인의 울릉도 개척 주장 등의 역사적 기원과 연결되었다.

2. 심흥택의 보고서 전후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1905년 6월 2일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은 러일해전 관련 일본연합함대(日本聯合艦隊)의 전보를 그대로 실으면서 독도를 '리은고루도'와 '안고후島'라고 표기했다. 이것은 대한제국의 신문들은 일본의 정보를 그대로 번역하여 기사를 작성했고,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도 불구하고 일본 해군이 독도를 프랑스어인 '리앙쿠르'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905년 6월 2일 『제국신문』에 따르면 러일해전은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충도(沖ノ島, おきのしま) 부근에서 울릉도 근처까지의 해전이었다. 일본연합함대의 전보에 따르면 1905년 5월 28일 오후 일본함대는 '리안고루도'(리앙쿠르, 독도) 근처에서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여 항복을 받았다. 일본연합함대의 전보에 따르면 일본함대는 28일 오후 3시경 '리안고루도' 서남방에 북으로 러시아 함대를 발견하고 오후 6시 이후에 러시아 함대를 격침하고 생존자 300명을 생포했다.[33] 『제국신문』은 일본연합함대의 공개 내용에 근거하여 독도를 '리안고루도'라고 표기했다.

---

32 『皇城新聞』, 1905. 9. 28.

33 『帝國新聞』, 1905. 6. 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황성신문』은 1905년 5월 28일 러일해전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일본연합함대는 5월 28일 '안고후島'(*리앙쿠르) 부근에서 러시아의 주력 함대를 포위·공격하여 항복을 받아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일본연합함대는 오후 5시경 아도미라루자고후호(號)가 동남 방향에서 북방으로 향하자 추격했는데, 오후 6시 이후 격침하여 생존자 300여 명을 생포했다. 제4함대와 제2구축함대는 오후 5시경 순양함 '라미도리돈스고리'호를 발견하고 추격했다. 일본연합함대 소속 연호(蓮號)는 28일 저녁 울릉도 남방에서 러시아 군함(俄艦) '류도뷔샨'호를 포획했다.[34]

일본연합함대의 전보는 일본 『관보(官報)』에 공식적으로 게재되었다. 1905년 5월 29일과 30일 일본 『관보』는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서 벌어진 러일해전 소식을 공지하며 독도 명칭을 '리양코루도암(リヤンコールド岩)'으로 표기했다.[35]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후에도 일본 해군성은 러일해전에 관한 공식 보고에 독도를 '리양코루도암(リヤンコルド岩)'으로 기록했다.

울도군수 심흥택은 1906년 3월 29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에게 보고했고, 이명래는 4월 29일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보고했다. 이 문서는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독도가 대한제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심흥택에 따르면 일본인도 독도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본군(本郡) 소속 독도(獨島)가 외양(外洋) 100여 리 밖에 있습니다. 일본 관인(官人) 일행이 관사(官舍, 군청)로 와서 스스로 말했습니다. '독도가 이제 일본 영지(領地, 영토)가 된고로 시찰차 내도(來島)했습니다.'"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1906년 5월 20일 "올라온 보고는 다 읽었고, 독도 영지(領地)의 설은 전혀 근거가 없으니, 그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동향을 다시 조사해 보

34 『皇城新聞』, 1905. 6. 2.

35 大蔵省印刷局, 明治 38年 5月 29日 月曜日, 「戰報」, 『官報 號外』(国立国会図書館); 大蔵省印刷局, 明治 38年 5月 30日 火曜日, 「戰報」, 『官報 號外』(国立国会図書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하라"고 지령(指令) 제3호를 내렸다.[36]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는 당시 대한제국의 여러 신문에서 보도할 만큼 일본의 한국 영토 침략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1906년 5월 1일 『대한매일신보』는 울도군수 심흥택(沈興澤)이 일본 관원의 울릉도 방문에 관해 내부에 보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일본 관원 일행이 울도군에 도착하여 본군 소재 독도(本郡所在獨島)가 일본 속지(日本屬地)라 자칭했다. 대한제국 내부는 심흥택에게 다음과 같이 지령(指令)했다. "유람(遊覽道) 차(次)에 지계호구(地界戶口)를 녹거(錄去)함은 객혹무괴(客或無怪)이다. 독도(獨島)를 지칭하며 일본 속지(日本屬地)는 반드시 그 이치가 없으니(必無其理) 지금 보고가 심히 놀랍다(訝然)."[37] 『대한매일신보』는 대한제국 내부의 공식적인 지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실었다. 이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불법적인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데 1906년 5월 1일 『제국신문』도 독도 관련 대한제국 내부의 지령을 보도했다. 『제국신문』에 따르면 대한제국 내부는 구체적인 항의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내부는 "쟁이상지하거든 일본리사에게 교섭하여 쳐단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것은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1906년 2월 1일 설치된, 통감부 소속 지방기구인 이사청(理事廳)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38] 실제로 대한제국 정부는 이사청을 통해 항의를 제기할 것을 강원도 관찰사와

---

36 江原道觀察使署理春川郡守 李明來→議政府參政大臣 閣下, 光武 10年 4月 29日, 「報告書 號外」, 『內部來去文』 13; 議政府外事局, 『各觀察道去來案』 1; 『各觀察道案』, 一-三,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奎章閣, 7990-1).

37 『大韓每日申報』, 1906. 5. 1.

38 "내부에서 훈령하기를 일인이 호구 됴사는 용혹무괴한 일이어니와 점령하였다는 말은 무기한 일이니 쟁이상지하거든 일본리사에게 교섭하여 쳐단하라 하엿다더라."(『帝國新聞』, 1906. 5. 1) 장영숙에 따르면 이 시기는 이미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공문서로 확인해보라는 상부의 명령만 있을 뿐, 어떠한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일본의 한일병합이 가속화하면서 일본의 독도 침탈은 병합의 한 단계로 귀결되었을 뿐, 한국 정부가 목소리를 낼 여지는 남아 있지 않았다(장영숙, 「대한제국기 일본의 울릉도 자원침탈에 따른 대응과 인식」, 『역사와현실』 95, 2015, 27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울도군수에게 명령했다. 이것은 대한제국 정부가 독도 영유의사에 대한 행정 관할 의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906년 5월 9일 『황성신문』은 울도군수 심흥택이 대한제국 내부에 보낸 보고서를 보도했다. "본군 소속 독도가 외양(外洋) 100여 리 밖에 있는데, 이달 4일에 일본 관인 일행이 관사에 도착하여 직접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도가 지금 일본의 영지가 되었으므로 시찰차 내도했다.'"[39]

『황성신문』은 울도군 소속 '독도'에 1906년 4월 4일 일본 관원 일행이 관사로 와서 독도가 지금은 일본 영지이므로 시찰차 왔다고 보도했다. 이때 심흥택은 "본군 소속 독도"라고 보고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무엇보다도 독도가 울릉도의 '외양(外洋) 100여 리 밖'이라는 거리 개념은 정확했다.

1906년 7월 13일 『황성신문』에 따르면 일본 통감부는 대한제국 내부에 울릉도의 소속도서와 군청의 설치 연월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것은 통감부와 내부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문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대한제국 내부는 "광무 2년(1898) 5월 20일에 울릉도감으로 설시하였다가, 광무 4년(1900) 10월 25일 정부 회의를 거쳐 군수를 두었습니다. 군청은 태하동에 두었고, 이 군이 관할하는 섬은 죽도와 석도입니다.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이니 합쳐 200여 리입니다"라는 답변을 통감부에 보냈다.[40]

이 내용을 살펴보면 독도의 공식 표기는 여전히 '석도'였다. 대한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울릉도와 죽도와 석도라고 규정했다. 울도군수 심

---

39 "鬱倅報告內部 鬱島郡守沈興澤氏가 內部에 報告ᄒᆞ되 本郡所屬獨島가 在於外洋百餘里外인디."(『皇城新聞』, 1906. 5. 9, 鬱倅報告內部)

40 "鬱島郡의 配置顚末. 統監府에셔 內部에 公函ᄒᆞ되 江原道三陟郡管下에 所在鬱陵島에 所屬島嶼와 郡廳設始年月을 示明ᄒᆞ라 ᄒᆞᆫ故로 答函ᄒᆞ되 光武二年五月二十日에 鬱陵島監으로 設始ᄒᆞ얏다가 光武四年十月卄五日에 政府會議를 經由ᄒᆞ야 郡守를 配置ᄒᆞ니 郡廳은 霧台洞에 在ᄒᆞ고 該郡所管島ᄂᆞᆫ 竹島石島오 東西가 六十里오 南北이 四十里니 合二百餘里라고ᄒᆞ얏다더라."(『皇城新聞』, 1906. 7. 13, 鬱島郡의 配置顚末) 현재 울릉군청의 공식적인 면적은 72.86제곱킬로미터다. 일본의 1里는 약 3,927미터, 한국의 1里는 392미터다. '200리'는 한국의 里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홍택은 1906년 독도가 외양 100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대한제국 내부는 울릉도의 면적이 200여 리이고, 석도(독도)를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결국 『황성신문』은 "본군 소속 독도(本郡所屬獨島)", "해군 소속도(該郡所管島)는 죽도석도(竹島石島)"라고 표기했다. 이것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석도'는 곧 '독도'임에 틀림없다. 당시 대한제국은 독도의 공식 표기를 여전히 '석도'라고 규정했다. 무엇보다도 1906년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와 1906년 7월 13일자 『황성신문』 등의 독도 명칭을 종합하면 '독도'와 '석도'가 동일한 장소라는 사실이 분명했다.

Ⅳ. 나오며

대한제국 시기 1903년 12월 10일자 『황성신문』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문헌비고』에 기초하여, 장한상의 파견 이후 파악한 울릉도의 부속도서를 '우산도'라고 지칭했다. 『황성신문』은 우산도라는 명칭을 별도로 구별했고, 울릉도 서쪽에 우산도가 위치한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조선 후기 문헌의 연속성을 살펴보면 '우산도'를 뚜렷하게 구별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 후 대한제국 시기에 이르러 우산도를 '석도'라고 표기했다고 파악할 수 있다.

1906년 5월 9일자와 7월 13일자 『황성신문』은 "본군 소속 독도(本郡所屬獨島)", "해군 소속도(該郡所管島)는 죽도석도(竹島石島)"라고 표기했다. 이것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석도'는 곧 '독도'임에 틀림없다. 당시 대한제국은 독도의 공식 표기를 여전히 '석도'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심흥택의 항의 이후 통감부가 조치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서로, 통감부와 대한제국 내부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문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무엇보다도 1906년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와 1906년 7월 13일자 『황성신문』 등의 독도 명칭을 종합하면 '독도'와 '석도'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일한 장소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근대 한국과 일본 문헌에 따르면 '돌섬'은 한자로 '석서(石嶼)', '석도(席島)', '석도(石島)' 등으로 표기되고, 일본어로는 '톳셈(トツセム)'과 '톶체무(トツチヱム)'로 표기된다. 무엇보다도 근대 일본 문헌에서는 돌섬을 '톳셈(トツセム)', '톡손'(トクソン)으로 표기했고, 한자로 '톳셈'은 석도(石島), '톡손'은 독도(獨島)로 표기했다. 무엇보다도 일본어 '톡손'은 한국어 발음으로 '독섬'이므로, 일본 문헌으로 '돌섬'과 '독섬'이 같고, '독섬'과 '독도'가 같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돌섬=독섬=독도).

대한제국 시기 '돌섬'을 한자어로 '석도(石島)'로 표기한 사례가 있었다. 이것은 한국의 지명으로 '돌섬'과 '독섬', 독도(獨島)와 '석도(石島)'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돌섬=독섬=독도=석도). 따라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石島)'는 '돌섬'과 '독섬'에서 유래했고, 바로 '독도(獨島)'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언변에 힘쓰면 내실을 잃는 법이다. 일본은 근대까지 울릉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의도했지만 한국의 반발로 불가능해지자, 패전 이후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이 자국의 영향력이 강할 때 울릉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자국의 영향력이 약해질 때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논리와 결부된다. 숙종 시기 안용복 사건의 부정, 고종 시대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거주와 벌목, 통감부 시기 일본인의 울릉도 개척 주장 등이 바로 일본의 궤변의 역사적 기원과 연결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부 '러일의 해양탐사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관한 영토의식을 가졌고, 법률을 마련하여 수토정책을 실시했는데, 대한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죽도와 석도(독도)를 포함한 울릉도의 영토의식을 구체적인 법령으로 완비했다. 일본은 19세기 후반에 대륙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주목했는데, 일본 내무성과 외무성은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인식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독자적으로 독도 영토편입에 대한 방안을 구상했다. 러시아는 19세기 후반에 해양 전략적 중요성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주목했는데,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톡-원산-울릉도'의 해양거점을 구상했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대한 영토의식을 가졌고 법률을 마련하여 수토정책을 실행했다. 무엇보다도 『동국문헌비고』에 따르면 안용복은 송도(松島)가 우산도(芋山島)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했다. 이것은 조선이 "조종(祖宗)에서 물려받은 강토(疆土)"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1770년 이전에 이미 울릉도와 독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조선의 영토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조선 후기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에 대한 인식은 장한상 등의 보고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문헌비고』 등의 관찬문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별되었다. 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규원(李奎遠)은 우산도가 울릉도를 포함한 부속도서였지만 최소한 독도를 발견하려고 시도했다. 고종은 처음 울릉도와 우산도를 구별했지만 이규원과 대화한 이후 우산도, 송도, 죽도를 구별했다. 결국 1770년 『동국문헌비고』는 일본에서 부르는 '죽도(竹島)'가 '울릉도'이고 '송도(松島)'가 '우산도'라고 규정했고, 1908년 『증보문헌비고』는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을 구별했다.

이규원은 1881년 5월 23일 울릉도 검찰사(檢察使)로 임명되었다. 이규원은 1882년 4월 7일 고종을 알현하고 4월 10일 서울을 출발했다. 고종은 1882년 4월 7일 그동안 울릉도에 대한 수토(搜討)정책의 소홀함을 지적하면서 울릉도를 상세히 살필 것을 이규원에게 지시했다.

고종은 조선의 관찬사료에서 기록된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정보에 만족하지 못했다. 울릉도에 본격적으로 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다. 그래서 고종은 검찰사 이규원이 출발하기 직전에 밀사 전 흡곡현령(歙谷縣令) 이명우(李明宇)에게 울릉도를 조사하라는 비밀명령(密旨)을 내렸다. 이것은 울릉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의도였는데, 그만큼 고종이 울릉도에 대한 정보 파악과 이주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규원은 울릉도 주변을 성실히 조사(檢察)할 것을 다짐하면서 울릉도 주변의 섬 송도와 죽도가 2개 섬이 아니라 하나의 섬인 송죽도(松竹島)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종은 울릉도 및 '송도'와 '죽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이규원의 사실 출처를 추궁했다. 이규원은 울릉도 수검인(搜檢人)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고백했다. 이규원은 울릉도의 명칭 및 위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규원은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울릉도'와 '송죽도'만 구별했다. 반면 고종은 관찬문헌을 참고하여 울릉도와 우산도 및 '송도'와 '죽도'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했다.

고종은 1880년 초반 울릉도의 이주와 경영 방안을 고민했다. 고종은 최소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문헌비고』 등의 관찬문헌을 참고하여 울릉도 연혁을 이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파악하고 있었으며, 민생과 경작의 연결성을 인식했다. 고종은 과거 울릉도에 읍이 설치되어 섬의 경영이 이뤄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고종은 울릉도 이주정책을 펼치기 위해 검찰관 파견을 지시했다. 고종은 울릉도 경작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울릉도의 개척과 경영을 위한 읍의 설치를 구상했다. 그러자 이규원은 울릉도를 '조종의 강토'라고 강조하면서 영토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이것은 고종이 조선시대 문헌의 연속성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고, 고종과 이규원이 고유의 역사성에 기초하여 울릉도를 포함한 섬에 대한 수호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 후 이규원의 검찰 보고서와 면담을 통해서 고종은 울릉도 개척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울릉도에서 불법벌목을 일삼는 일본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울릉도 관련 행정제도 신설, 울릉도 개척을 위한 백성 모집 등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 정부는 1880년대 울릉도 개척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침입하여 불법벌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지 울릉도감의 보고서를 통해서 파악했다. 그 과정에서 1894년 1월 7일 조선 정부는 장정(章程)에 근거하여 울릉도가 불통상(不通商) 지역이므로, 외국 범선들이 오더라도 통상할 수 없으며, 울릉도 주민들이 다시는 몰래 외국 범선에 물건을 주지 못하게 할 것을 울릉도와 평해군에 지시했다.

조선 정부는 1896년 아관파천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1899년 9월 16일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은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에게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에 대한 엄벌(嚴罰)을 요구했다. 외부대신 박제순은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이 첫째, 조약을 위반하여 울릉도에 촌락을 이루어 살고 있고, 둘째, 통상 항구를 통하지 않고 몰래 매매를 하고 있으며, 셋째, 삼림을 도벌하기 위해 무기 등을 휴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제순은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에 대한 벌금 징수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1899년 9월 20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다. 이후 하야시는 주한 일본영사관원을 울릉도에 파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고 대한제국 외부에 회답했다. 하야시는 주한 일본영사관원을 파견한 목적이 울릉도 상황을 조사하고 일본인들을 타일러 귀국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공문에 기록했다. 주한 일본공사관도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의 철수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대신 이건하(李乾夏)는 1899년 여러 차례 울릉도 도감 배계주(裵季周)의 보고서를 받았고, 1899년 9월 시찰관을 파견해 울릉도의 상황을 조사하자는 상주를 올려 고종의 재가를 받았다. 그 후 우용정은 주한 일본공사와 회동하여 절차적인 문제를 처리했다. 대한제국의 내부와 외부는 1900년 5월 울릉도 시찰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했다. 1900년 5월 31일 우용정은 울릉도감 배계주가 거주하는 도동항에 도착했다. 당시 울릉도를 조사한 주요 인물은 우용정,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김면수(金冕秀), 부산해관 세무사서리 라포르트(E. Laporte, 羅保得),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보(領事官補)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輔), 경부(警部) 와타나베 다카지로(渡邊鷹治郎) 등이었다.

울릉도 시찰 과정에서 첫째, 우용정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불법벌목와 선박 제조를 금지했다. 이는 울릉도의 주요 자원인 삼림을 보호하려는 의도였다. 둘째, 우용정은 매년 울릉도의 인구 변동과 곡물 수확량을 정확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우용정은 울릉도 항로와 무역의 편리를 위해서 선박의 구매와 회사의 설립을 지시했다. 넷째, 우용정은 울릉도 생활과 교육에 필요한 염전 산업과 학교 설치를 지시했다. 무엇보다도 우용정은 일본인이 조약을 위반하여 불법거주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우용정은 일본인들과 결탁한 울릉도 주민의 잘못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향후 우용정은 일본인의 불법벌목에 협력하는 울릉도 주민은 부산으로 압송되어 수감될 것이라는 훈령을 내렸다. 우용정은 각 동의 대표에게 자신의 영칙(令飭)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우용정의 파견은 내부에서 울릉도의 관제 개편을 계획한 상황에서 추진된 것이다. 대한제국은 울릉도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강력한 행정 관할을 시도하려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준비한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과 반포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0년 10월 22일 의정부찬정 내부대신 이건하는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에 관한 청의서(請議書)」를 의정부의정 윤용선(尹容善)에게 제출했다. 내부대신 이건하가 참고한 자료들은 배계주의 보첩(報牒), 시찰관 우용정의 시찰록(視察錄), 동래세무사의 시찰록(視察錄) 등이었다. 무엇보다도 칙령 제41호는 개국 504년(1895)의 울릉도에 대한 행정구역 변천의 법률을 모두 기록하는 역사적 연속성을 보여주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할 것」을 제정했는데 2조에서 울도의 관할 범위를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규정했다. 즉 울릉도의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였다. 죽도는 울릉도 바로 옆 죽서도(竹嶼島, 대섬)였고, 석도는 돌섬을 의미했다. 대한제국은 고종 시대 '석도(石島)'를 돌섬과 독섬으로 불렀는데, '돌섬'과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 石島(석도)와 獨島(독도)였다. 대한제국은 죽도와 석도를 포함한 울릉도의 영토의식을 구체적인 법령으로 완비했다.

결국 「심흥택 보고서」와 『대한매일신보』 및 『황성신문』 등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관리는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무엇보다도 『황성신문』에서 "본군 소속 독도(本郡所屬獨島)", "해군 소속도(該郡所管島)는 죽도석도(竹島石島)"라고 표기했다. 이것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대한제국은 '석도'를 '독도'로 표기했다. 또한 『황성신문』은 "합 200여 리(合二百餘里)"라고 했는데, 여기서 200여 리는 독도까지의 거리였다.

일본 외교관 세와키 히사키(瀨脇壽人)는 1876-1877년 사이 송도개척 요구를 일본 외무성에 보고했던 핵심 인물이다. 그런데 일본 외무성은 1876년 세와키의 블라디보스톡 출장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조선의 국경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했다. 일본 외무성은 세와키의 송도개척 보고를 받고 죽도(竹島)와 송도(松島)에 관한 문서를 정리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 외무성의 지시를 받아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가 작성한 『죽도고증(竹島考證)』은 6세기부터 19세기 후반(1881)까지의 '죽도'와 '송도'에 관한 기록을 집성한 것이다. 『죽도고증』은 일본 외무성의 필요에 의해 1881년 8월에 작성되었다. 편찬자 기타자와 마사나리는 일본 외무성 직원으로 1880년에 발족한 흥아회(興亞會) 회원이었다. 그는 일본의 중국 진출을 위해 대륙낭인(大陸浪人)을 적극 지지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1879년 도쿄지학협회(東京地學協會) 설립에 참여하여 간사로 활동했다.

외무성 기록국장 와타나베 히로모토(渡邊洪基)는 1877년 도다 다카요시(戶田敬義)와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의 청원서를 살펴보고 죽도(竹島)와 송도(松島)를 검토하는 보고서 11호와 12호를 직접 작성했다. 와타나베는 "막부가 일이 시끄럽게 되는 것이 싫어서 단지 그 지리적 원근만을 따져서 그들의 지도에 있는 울릉도라 하여 죽도를 조선에 주었다"라고 파악했다. 그는 울릉도가 일본보다 한국에 더 가깝기 때문에 막부가 울릉도를 한국에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 공신국장(公信局長)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는 1878년 '송도'개척과 관련하여 별지 23호에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했다. 다나베 다이치는 '송도'가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죽도'가 울릉도이고, '송도'가 우산(于山)이자 울릉도의 속도(屬島)라고 인정했다. 다나베 다이치는 '송도'를 개척하면 조선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조선에 사신을 보낼 때 '송도'에 해군 함대를 파견하여 '송도'를 무주지로 만들어 일본 영토로 개척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일본 외무성의 '송도'개척이라는 제목은 무토 헤이가쿠의 문서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문서에서 처음 '송도'라는 명칭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역사무관(貿易事務官) 세와키 히사토(瀨脇壽人)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무토 헤이가쿠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표현하면서 그에 대한 정보까지 인용했다. 두 사람은 '송도'가 울릉도라는 사실을 한국인에게 전해 들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모두 '송도'가 '죽도'라는 사실도 이해한 인물이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결국 무역사무관 세와키는 무토와 연결되어 '송도'개척 청원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송도'가 울릉도이자 '죽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송도'라는 명칭을 써서 일본 외무성에 혼란을 야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송도'가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울릉도를 일본의 영토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것은 일본 정한파의 '울릉도-조선-만주' 진출의 논리와 연결된다.

이와 동시에 1876년 10월 5일 일본 내무성 지리국(地理寮) 스기야마 에이조(杉山榮藏)는 시마네현 지적편제계(地籍編製係)에 '죽도'에 대한 기록이나 고지도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1876년 10월 16일 시마네현 참사 사카이 지로(境二郎)는 울릉도와 독도의 지적편찬에 관한 질의서를 내부경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에게 보냈다. 이 질의서에는 유래의 대략과 기죽도 약도가 첨부되었다. 1877년 3월 17일 내무경 대리 마에지마 히소카(前島密)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다음 태정관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에게 질의했다. 태정관은 1877년 3월 29일 지령문을 확정하여 내무성을 통해 시마네현에 보낸 다음, 「일본해내 죽도외일도를 일본영토외로 정함」이라는 제목을 새로 붙여 관보인 『태정류전』에 게재했다. 결국 일본 내무성과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9세기 러시아는 한국의 해양탐사를 실시했다. 러시아의 해양탐사는 항로를 위한 탐사, 정보에 따른 지역 분석, 해당 지역에 대한 해군력 강화로 연결되었다.

전함 팔라다호(Фрегат Паллада)는 1853년 8월 9일과 10일 사이 나가사키(長崎) 항구에 정박하여 일본을 1차로 방문했다. 팔라다호는 일본 정부와의 수교 협상이 지연되자, 1853년 11월 5일 식료품을 보충하기 위해서 상하이로 떠날 것을 결정하고 11월 11일 출발했다. 그 후 팔라다호는 상하이 근처 새들군도를 출발하여 1853년 12월 24일 나가사키에 정박하여 일본을 2차로 방문했다. 팔라다호는 1854년 2월 27일 마닐라를 출발해서, 5월 22일 시베리아 해안에 진출했다. 그 사이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일부터 7일까지 거문도에 정박했고, 4월 9일 나가사키 항구에 정박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 일본을 3차로 방문했다.

1854년 러시아 함대는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하고 두 섬의 전략적 가치를 파악했다.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일부터 7일까지 거문도에 정박했고, 4월 20일 조선 연안에 도착해서 5월 11일까지 동해안 조사를 시작했다. 곤차로프는 거문도를 직접 답사했다. 그 과정에서 서양 최초로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명명한 국가는 러시아였다. 올리부차호는 독도를 발견하면서 서도를 올리부차(Оливуца), 동도를 메넬라이(Менелай)로 명명하면서, 실측에 기초하여 최초로 정확하게 좌표에 기입했다. 또한 '동해(Восточное море) 및 동해안(Восточная берега)'이라는 명칭도 사용했다. 그만큼 러시아는 한국 해양의 명칭에 깊숙이 개입했다.

19세기 후반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동해에서 울릉도를 경유하며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태평양함대 사령관 알렉세예프(Е.И. Алексеев, 1843–1918)는 동해에서 전략적인 거점으로 울릉도를 주목했다. 이것은 러시아가 1896년 9월 두만강·압록강·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획득하여 한국에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태평양함대 사령관 알렉세예프는 1895년 1월 태평양함대 사령관에 임명되자 한반도 주변의 해양탐사를 강화했다. 그는 한반도의 주요 해양 거점지를 주목했고, 러시아의 해양 기지 설치를 준비했다. 알렉세예프는 1895년 7월 거제도와 마산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러시아의 해양 거점 후보지로 분석했다. 알렉세예프는 1896년 3월 한반도의 해양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마산포와 원산을 러시아의 해양 거점 후보지로 예상했다. 알렉세예프는 1896년 5월 한국 정부와의 협상 끝에 제물포 월미도에 러시아 저탄소 설치 부지를 획득했다.

알렉세예프는 1895–1896년 사이 러시아의 한반도 해양 전략계획을 구상했는데, '블라디보스톡–원산–울릉도'를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중시했다. 그는 남해에서는 '거제도–마산포'를 연결하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그리고 황해에서는 제물포를 주목했고, 월미도에 러시아 저탄소를 설치했다. 그는 동해와 남해 지역에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원산과 마산포를 러시아의 해양 전략 거점으로 가장 중시했다.

알렉세예프는 한국도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 된다고 판단하여 러일전쟁을 대비한 군사전략을 마련했다. 알렉세예프는 한국의 압록강 개항이 러시아의 이익에 반한다는 경고를 한국과 일본에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 전체를 차지하거나 혹은 한국 남쪽을 차지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알렉세예프는 "만일 일본이 한국 점령에 착수하여 한국 북부에 군대를 상륙시키고 집중시킨다면, 이는 러시아가 극동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러시아 해군부는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해양 전략기지를 설치하기 위한 구상을 전개했다.

해군대신 사무대리 띄르또프(Тыртов Павел Петрович)는 1898년 6월 극동에서 한반도의 마산포를 러시아 해군의 거점으로 판단했다. 띄르또프는 태평양함대가 증강되는 동시에 독자적인 작전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뤼순항과 블라디보스톡의 연결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띄르또프는 러시아가 대한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반도 남해안에 강력한 기지를 구축하고, 일본의 한반도 남해안 점유를 저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띄르또프는 남동해안에서 가장 편리하고 중요한 곳이 거제도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해군부는 19세기 후반 한반도 해양탐사를 기반으로 한국의 전략적 해양 거점지에 대한 구상을 작성했다. 러시아 해군부는 서해에서는 뤼순-진남포-제물포를 연결하는 거점, 남해에서는 거제도-마산포, 동해에서는 블라디보스톡-원산-울릉도를 연결하는 거점을 중시했다.

2부 '러일의 울릉도·독도 조사, 대한제국의 영토해양 인식과 정책'에서 살펴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전개했지만 다양한 모순을 갖고 있었다. 첫째, 1905년 2월 22일 전후 시마네현 지사는 도쿄 출장으로 '고시'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표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둘째, 1905년 2월 『시마네현현보(島根縣縣報)』가 발간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없었다. 셋째, 일본은 19세기 후반 송도개척원(松島開拓願) 과정에서 '죽도'와 '송도'를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부정했다. 넷째, 일본은 1905년 2월 전후 '죽도'와 '송도'라는 명칭에 혼란을 겪었고 일부러 명칭까지 변경했다. 다섯째, 1770년 발간된 관찬사료 『동국문헌비고』에는 일본이 말하는 '송도'가 바로 독도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한제국은 '석도'가 '독도'이고 독도 영유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울도군수 심흥택은 1906년 독도가 외양 100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대한제국 내부는 죽도와 석도를 관할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본의 시마네현과 오키도의 관리는 1905년 독도의 불법 영토편입 과정에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한 문서를 주고받았는데, 오키도사(隱岐島司) 히가시 분스케(東文輔)는 독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죽도'까지 작명할 정도로 깊숙이 개입했고, 시마네현은 1905년부터 1906년까지 울릉도와 독도의 지형과 어업 상황을 본격적으로 조사했다.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동해상에서 다양한 해군 전술훈련을 실시했고, 그 위치가 블라디보스톡–울릉도–나가사키 등이 주요 지역이었다. 러시아 군함은 1899년부터 1903년까지 본격적으로 울릉도의 지형을 조사하면서 해군 수뢰 분소 설치에 대비한 조사를 실시했다.

대한제국은 1900년 11월 29일부터 1903년 1월 26일까지 배계주를 울도군수로, 그 사이인 1901년 10월 9일부터 1902년 2월 19일까지 강영우(姜泳禹)를 울도군수로, 1903년 1월 26일부터 1907년 3월 14일까지 심흥택을 울도군수로, 1907년 8월 14일부터 1909년 7월 31일까지 심능익을 울도군수로 임명하여 울릉도의 행정 관할을 실행했다.

1901년부터 1903년까지 울릉도에서는 제익선(濟益船)의 구매와 파손을 둘러싸고 전사능과 김성술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 군수 배계주와 현 군수 강영우를 둘러싼 대립이 핵심이었다. 여기에 내장원경 이용익은 경무사로 활동하면서 배계주를 구금하고 심문하는 데 관여했다.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는 1901년 12월 울릉도 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법거주 일본인들의 철수를 둘러싸고 주한 일본공사관과 협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울릉도에 일본 경찰관을 파견하고 경찰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실행했다.

1901년 10월 의정부찬정 외부대신 박제순은 울릉도에서 외국인 출입, 흥판(興販), 건축(建屋), 영업(營業), 삼림(森林) 등의 금지를 울도군수 강영우에게 훈령했다. 동시에 외국인이 토산물을 침탈(侵損土産)하고, 가옥을 짓고 영업(營建房屋)하는 행위를 처벌할 것도 지시했다. 외부대신 박제순은 외국인의 울릉도 거주가 조약을 어기는 불법행위이므로, 불법거주 외국인들을 동래감리서에 구금할 것을 울도군수 강영우에게 지시했다.

1901년 11월 고종의 측근인 이용익도 울릉도 삼림 벌목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했다. 내장원경 이용익은 울릉도 주민 일부가 일본인과 결탁해 불법벌목을 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이용익은 일본인들의 불법벌목을 제지하지 못하는 면임(面任)과 동임(洞任)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익은 울릉도 내부 소식을 파악하여 울릉도의 행정체계까지 제시했다. 이용익은 신임 군수 강영우를 통해서 울릉도의 삼림과 이권을 장악하고 내장원을 통한 직접적인 통제를 시도했다.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거주에 대한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이 교통의 편익을 얻기 위해 일본인의 도항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하야시는 1901년 배계주와의 면담을 통해서 일본인이 울릉도에 도항하게 된 계기와,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했다. 따라서 그는 일본의 울릉도 영유권 주장,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 합법화 등을 염두에 두고 배계주와의 면담에 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야시는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 합법화를 위한 논리를 개발했다. 우선 일본경찰서를 울릉도에 신설할 것을 본국 정부에 제의했다. 일본 정부는 하야시의 제안을 승인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를 합법화했고, 나아가 울릉도를 통치하려는 전략을 추진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야시 공사는 1901년 12월 10일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 대한 통제정책으로 '일본 경찰의 울릉도 파견을 통한 단속법'을 일본 외무대신 고무라에게 제안했다. 하야시의 '단속법'이란 울릉도를 부산 또는 원산 주재 영사관의 관할 구역으로 편입시켜, 6개월부터 1년까지 경부 1명과 순사 2명을 울릉도에 파견하는 것이었다. '단속법'의 목적은 첫째, 단속법을 만들어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인이 울릉도민과 타협할 수 있고, 둘째, 일본인이 울릉도민과의 융합이 가능하다면 일본인의 철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외부협판 최영하는 1902년 울릉도 일본경찰서의 폐해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에게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울릉도에 경찰서를 신설하고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인을 불법체포하여 심문했다. 최영하는 조일수호통상조규에 의거하여 울릉도 주재 일본경찰서를 철폐하고, 일본인들을 철수시킬 것을 하야시에게 요구했다.

1903년 8월 19일 대한제국 외부는 내부를 통해서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를 파악하고, 20일 주한 일본공사관에 울릉도 불법거주 일본인들의 철수를 요구했다. 1904년 6월 김기우는 배일격문에서 철도, 어업, 은행권, 울릉도 벌목 등을 일본인의 대표적인 이익 농단으로 지목했다. 특히 벌목은 일본인을 배척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였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이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적 정서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것은 불법벌목이 1900년대 들어서 울릉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대한제국은 1900년 울릉도와 죽도와 석도라고 규정했고, 울도군수 심흥택은 1906년 독도가 외양 100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대한제국 내부는 울릉도의 관할 범위를 200여 리라고 하면서 죽도와 석도의 범위를 포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독도가 100리 밖에 있다는 심흥택의 보고서, 석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포함시키면서 울릉도의 관할 범위가 200여 리라고 규정한 대한제국 내부의 답변서 등을 통해서, 대한제국은 '석도'를 '독도'로 보았으며 독도의 영유권을 지키려고 노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어민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는 독도에서 강치를 포획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나카이는 1904년 9월 29일 '리양코 영토편입 및 대하원(リヤンコ島領土編入幷ニ貸下願)'을 작성했다. 나카이는 독도를 리양코, 무인도 등으로 설정했는데, 그 이유는 이미 독도 편입의 국제법적 절차를 논의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시마네현과 오키도의 관리는 1905년 독도의 불법 영토편입 과정에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한 문서를 주고받았다. 특히 오키도사(隱岐島司) 히가시 분스케(東文輔)는 독도의 새로운 명칭 '죽도'까지 작명할 정도로 깊숙이 개입했다. 결국 '죽도'라는 명칭의 사용은 나카이의 편입 요청에 따른 히가시의 결정이었다.

독도의 불법 영토편입에는 일본 농상무성 수산국장인 마키 나오마사(牧朴眞), 일본 해군성 수로부장(水路部長)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山座圓次郎) 등이 깊숙이 개입했다. 첫째, 농상무성 수산국장 마키 나오마사는 반드시 죽도가 한국령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의를 나카이에게 주었다. 둘째,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키는 나카이에게 단정을 제공하여, 죽도가 완전히 무소속이라는 것을 나카이에게 확인시켰다. 셋째,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는 러일전쟁 상황에서 시급히 독도를 영토로 편입할 필요가 있으며,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여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고, 나카이의 청원서를 외무성에 회부해야 한다고 나카이에게 제기했다. 나카이는 시마네현 출신의 법학사 구와타(桑田) 귀족원 의원의 소개로 외무성 정무국장과 면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기준으로 일본의 독도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시마네현청에 따르면 1945년 8월 시마네현 청사가 전소될 때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원본도 소실되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1905년 당시 필기체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시마네현청의 고시 제40호는 인쇄체 형태다. 이것은 원본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본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기한다. 또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원본 문서가 없다면 그 문서에 기반을 둔 일본의 증거력도 국제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1905년 5월 20일 강치 관련 공동 사업으로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 허가원이 제출되었다.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는 1905년 5월 22일 공동어업권에 대한 합의를 시마네현 제3부장 호리 신지(堀信次)에게 보냈다. 그런데 나카이는 "5월 19일 정부의 영업 준비 내부 명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했다. 이는 독도 어업권이 오키와 시마네현의 지방 관료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키도와 시마네현의 합작품으로 죽도 어업권을 나카이에게 내준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다.

오키도사 히가시는 1905년 8월 울릉도와 독도 조사 내용을 시마네현 제3부장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에게 보고했다.

오키도사 히가시에 따르면 독도 조사 내용은 연해 조류의 상황과 완급,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 해저 심해의 어초의 존재, 물가에 서식하는 어패류와 해조류의 종류, 어종의 유무와 계절별 상황, 어렵 채취 방법의 전망, 초목 재배 가능성과 그 종류, 상주 전망의 유무, 식수의 존재와 수질 양호 여부 등이었다. 히가시에 따르면 독도 거주 여부에 대한 조사, 독도 어업에 관한 조사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오키도청은 1906년 3월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다. 시마네현은 독도의 지리적 정보, 강치 등의 어류 서식, 망루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은 어업적·군사적 활용을 위해서 독도의 주변 환경을 파괴했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시마네현의 비호 아래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1905)와 죽도어업조합(1906)을 설립하고 독도의 어업권을 독점하여 불법적인 어업활동을 벌였다. 나카이는 독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본 어업법까지 어겨가면서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와 죽도어업조합을 조직했고, 1만 마리 이상이 서식했던 강치를 불법적으로 남획하여 독도의 생태를 파괴했다.

나카이는 1907년 오키도청을 통해서 사할린의 강치(海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데, 홋카이도의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사할린의 강치 포획을 준비할 수 있었다. 나카이는 독도에 거주하지 않았고, 어업활동을 한정된 시기에만 전개했다. 그러나 죽도어업조합은 조합원이 독도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어업조합규칙을 위배하는 것이었다. 나카이는 겨울철에는 어업활동을 중단했고, 소금과 배 등을 독도에 남겨놓고 철수했다가 봄철에 다시 어업활동을 전개했다.

러시아의 대한제국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청일전쟁 때부터 시작되었다. 청국과 일본이 대한제국에 군대를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위협하자, 대한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러시아가 극동지역의 불안한 정세를 우려했고,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대한제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후 러일전쟁 직전까지 대한제국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그 배경에는 1900년 6월 의화단 사건 이후 러시아 군대가 만주를 점령하자, 일본은 1902년 1월 영일동맹을 통해 외교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대한제국 진출에 대한 러시아의 포기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태평양함대 사령관 알렉세예프는 1896년 1월 한국의 주요 항구들을 조사하면서 전략적 가치에 관한 탐사 보고서를 러시아 해군부에 제출했다. 알렉세예프는 동해안의 전략적인 거점으로 울릉도를 주목했다. 알렉세예프는 20세기 초반 러일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의도 및 러시아 군비 증강의 필요성 등에 관한 러시아의 극동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알렉세예프는 1900년대 러일협상에 대해서 러시아의 국가적 이해관계와 일본의 야심찬 계획 때문에 타협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알렉세예프는 일본이 러시아와 협정을 체결했더라도 향후 군사적 조치를 위한 일시적 협정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파악했다. 알렉세예프는 일본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알렉세예프는 일본이 러일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에서 행동의 자유를 부여받아 군사적으로 한국을 이용할 것이고, 향후 만주의 러시아군에 대해 최후통첩을 보낼 것이라고 판단했다. 알렉세예프는 극동에서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해군부는 1899년 8월 1일 임명된 태평양함대 사령관 길떼브란트(Я.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Гильдебрандт) 중장에게 태평양함대의 임무와 작전수행, 한반도 전략 등에 관한 훈령을 내렸다. 해군부에 따르면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극동에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열강은 자국의 극동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했다. 열강들이 태평양 연안에서 자국의 세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확고히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평양함대 사령관 길떼브란트는 1899년 11월 11일(양력 11월 23일) 순양함 드미뜨리 돈스꼬이호와 함께 보브르호와 까레예쯔호를 뤼순항으로 보냈다. 길떼브란트는 "한국의 동해안과 남해안의 군도를 따라 항해하면서 기상 상황에 따른 항해 거리를 측정하고, 러시아 · 영국 · 일본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모든 만을 관찰할 것"을 드미뜨리 돈스꼬이호 함장에게 지시했다.

1899년 11월 25일(양력 12월 7일) 태평양함대의 러시아호, 빠먀찌 아조프호,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 등이 길떼브란트의 신호에 따라 나가사키 항로로 항진하기 위해 종대대형을 형성하여 외해로 진출했다. 태평양함대는 동해상에서 다양한 해군 전술훈련을 실시했고, 그 위치는 블라디보스톡–울릉도–나가사키 등이 주요 지역이었다. 결국 러시아 군함은 1899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울릉도의 지형을 조사하면서 해군 수뢰 분소 설치를 대비한 조사를 실시했다.

러시아는 1901년 울릉도의 삼림 탐사를 목적으로 까르쩨프(В.А. Карцев) 대위를 파견했다. 당시 파견된 러시아 군함은 까레예쯔호였다. 까르쩨프 대위는 1901년과 1903년 울릉도를 두 차례 방문하여 조사했다. 1903년 9월 2일 오전 11시경 포 2문을 갖춘 러시아 선박 야꾸트(Якут)호의 러시아 해군장교 2명과 수병 19명이 울릉도 남양동(南陽洞)에 상륙했다. 러시아 장교와 수병은 남양동 해안에서 약 10정(町)의 산중턱 주변에서 야영을 하면서 울릉도 지도를 제작했다. 1903년 울릉도를 탐사한 레베제프는 울릉도에 대한 러시아의 상업적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레베제프는 "러시아 외교관이 극동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얻은 성과인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레베제프는 러시아 민간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울릉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러시아 외교관 뽀지오의 『한국개관(Очерки Кореи)』(1892)은 19세기 후반 한국의 지리적 형태, 국가체제, 민속과 종교 등을 개괄하고 있다. 지리적 형태에서는 압록강과 울릉도 및 항구와 섬 등에 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안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특히 뽀지오는 '울릉도(О-Лон-То)'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울릉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술했다.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후반 서양에서 울릉도를 정확하게 인식했고, 울릉도와 독도를 혼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그의 책에 첨부된 지도에는 서도를 올리부차, 동도를 메넬라이로 표기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정확하게 포함시켰다. 특히 뽀지오는 한국 동쪽 바다의 이름을 동해와 '일본해(Японском и Восточном морях)'로 표기했다. 뽀지오는 한국 쪽 바다를 동해, 일본 쪽 바다를 '일본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19세기 후반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했다.

러시아 동방학자 뀨네르의 『한국개관(Очерки Кореи)』(1912)은 울릉도 주변 섬으로 독도(Liancourt)와 죽서(竹嶼, Чюксё)를 기술했다. 뀨네르는 독도의 명칭을 '리앙쿠르(Liancourt) 또는 얀코(Янко)'라고 기술했다. 뀨네르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이후인 1912년에 '죽도(다케시마)'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 독도의 중립적인 명칭인 '리앙쿠르(Liancourt)'라고 기록했다. 뀨네르는 독도를 '작은 섬(островок) 또는 섬(остров)'이라고 기록했다. '바위'가 아니라 '섬'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더구나 뀨네르는 독도를 연료와 식수가 충분하지 않지만 어선이 선착하기 편리한 곳이라고 기록했다. 뀨네르는 독도를 섬으로 파악하면서 독도의 어업적 가치에 주목했다. 뀨네르는 독도 주변에 해마를 포함한 해산물이 풍부하다고 기록했다. 뀨네르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필로그

> 항상 행운이라는 것은 재난 속에서도 빠져나갈 길을 주기 위해 한쪽 문을 열어놓는 법이다.
>
> –세르반테스, 『돈끼호테』, 3편 15장

독도를 둘러싼 과거의 조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학계에서는 '식민지 반성'과 '독도공유론'이 함께 제기되어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 같은 혼란은 독도를 둘러싼 과거의 시대와 인간에 대한 이해는 사라지고 현재의 시선에서 머리로만 과거를 해결하려다 보니 스스로 자초한 상황이다. 그 결과 러일전쟁 전후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시대와 인간은 실종되었다.

역사학자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1] 더욱이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면서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했다.[2] 와다 하루키는 독도의 일본 편입이 강치 어업 종사자의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전쟁에서 대한제국을 굴복시켜 얻은 지위와 권력에 입각하여 러일전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3]

---

1 "에도시대의 죽도(울릉도)를 둘러싼 도쿠가와 막부와 조선왕조 사이의 외교 절충 및 그것에 부수되는 마쓰시마(독도)의 정치적인 처리에 관한 역사적 사실은 상세히 밝혀졌다.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버려야 할 대상일 뿐이다."(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론」, 『독도 문제는 일본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제이앤씨, 2015, 74-75쪽)

2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한 '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가지고 독립했다'고 일본에 요구할 때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하기에 이른 일본은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일까?"(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독도의 역사적 의미와 해결법」, 『독도 문제는 일본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제이앤씨, 2015, 52쪽)

3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독도의 역사적 의미와 해결법」, 『독도 문제는 일본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럼에도 도고 가즈히코(東郷和彦)는 독도를 평화와 협력의 섬으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활용하자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류한다. 둘째, 민간 차원에서부터 법적·역사적 측면을 포함한 대화를 시작한다.[4] 이것은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없는 '독도공유론'과 연결된다.

신운용은 자유주의 사관에 기초한 '반(反) 한국민족주의' 경향을 갖고 있는 '독도공유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비판했다. 신운용에 따르면 한국의 '독도공유론자'들은 역사적 배경 설명 없이 한국과 일본 모두를 갈등의 주체로 보았다. 이 점에서 '독도공유론자'들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의 근거가 되는 사료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독도를 한국사에서 분리하려고 시도했다. 따라서 독도를 한일 간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일본과의 독도 '공유'를 통해서 평화를 지향하자고 주장했다.[5]

필자는 러시아와 일본이 제국주의를 지향하면서 권력과 인간을 일치시켜, 영토를 확장하려는 이중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 정부는 수산업자 나카이 요자부로를 활용하고 일본 어민의 '애국심'을 작동시켜,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경제 침투를 비호하고 독도의 불법적인 영토편입을 정당화했다. 러시아 정부는 상인 브리네르를 동원하여 울릉도 삼림 개발 이권을 획득하게 한 다음,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를 해양 거점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했다. 결국 제국이라는 권력은 패권 추구와 세력권의 형성을 특

가』, 제이앤씨, 2015, 39쪽.

4 도고(東郷和彦)에 따르면 독도 문제의 해결 방향에 대한 하나의 원칙은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1965년 독도밀약설에 따르면 "독도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했다고 간주한다." 해결하지 않았으니 서로 주장하는 권리까지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간주하려 하므로 양측 주장의 강도가 완화될 수밖에 없다(도고 가즈히코(東郷和彦), 「독도 문제와 한일 관계: 일본인의 시점」, 『독도 문제는 일본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제이앤씨, 2015, 153-157쪽). 이와시타(岩下明裕)는 센카쿠와 남쿠릴에 관한 일본의 영토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독도에만 로버스 색(Robert Sack)의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을 비판했다. 이와시타는 로버스 색이 제시한 인간과 공간의 상대적인 관계, 즉 '인간의 영역성'이라는 관점을 중시했다. "공간(영토)을 분석할 때, 인간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인식·생산·이용·제어했는지, 역사와 지리적 맥락에서 고려해야 한다."(이와시타 아키히로(岩下明裕), 「일본의 영토분쟁: 정리와 전망」, 『독도 문제는 일본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제이앤씨, 2015, 160쪽)

5 신운용, 「한국 학계의 '반민족주의' 논조와 '독도공유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단군학연구』 38, 2018, 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징으로 식민정책을 통한 풍요로운 국가를 약속하면서, 자국민의 상업적 활동을 권장하는 동시에 자국민을 군사적 침략의 도구로 적극 활용했다. 그런데 근대 동북아에서 제국의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를 배경으로 여전히 투영되었다.

그것은 바로 1952년 1월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이었다.

한국 외무부에 따르면 1952년 1월 18일 한국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을 선포하자, 1월 24일 오후 일본 외무성은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발표했다. 1월 28일 일본 외무성이 주일 대표부에 항의각서를 보내면서 한일 간의 외교전이 전개되었다.[6]

1952년 1월 28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에서 '다케시마'(또는 Otherwise known as Liancourt Rocks)로 알려진 '일본 해상'의 도서에 대하여 영토권을 가정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영토인 이들 도서에 관한 한국의 어떠한 가정 또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7]고 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면서, 독도에 대해서 '다케시마(Takeshima)' 또는 '리앙쿠르락스(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1952년 2월 12일 한국 외무부는 독도가 수 세기 동안 한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하면서, 먼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677호와 1946년 6월 22일 맥아더라인(MacArthur Line, SCAPIN 1033)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일본 정부 측에 주장했다.[8] 한국 정부는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해방 이후 근거들을 제시했다.

1952년 4월 25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각서 등이 영유권의 결정 및 연합국의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단지 리앙쿠르

---

6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편, 『독도문제개론』, 외교통상부, 2012, 42-43쪽.

7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1977, 2쪽.

8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독도(국토지리정보원, 201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암(Take-Shima)에 관한 통치상(governmental) 또는 행정상(administrative)의 권능(authority)의 실행을 중지시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라는 문서를 보냈다.[9]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능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 후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의 편입과 관리를 중시하면서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한 국제법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국 외무부는 독도의 불법 편입이 러일전쟁과 연결되었으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역사성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외무성은 '죽도'와 '송도'의 변경된 명칭을 해명하는 데 분주했고, 한국 외무부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일관된 명칭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1953년 7월 13일 일본 외무성은 전근대와 현대의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면서 먼저 독도의 과거 명칭을 다루었다. 그것은 일본 외무성이 울릉도와 독도를 따로 구별하여 독도 영유권 논쟁을 전개하려는 의도였다.

일본 외무성은 "과거 다케시마(竹島) 혹은 이소다케시마(磯竹島)는 현재 울릉도이고, 현재 다케시마(竹島)는 마쓰시마(松島)"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문헌과 고지도에는 현재의 '다케시마'가 옛날에는 '마쓰시마'로 일본에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은 과거 죽도(竹島)=울릉도, 송도(松島)=독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볼트에 의해 1840년에 간행된 일본 지도에 울릉도는 마쓰시마(松島)로 잘못 표기되었으며, 일본에서도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로 부르게 되었고 마쓰시마로 알려진 작은 섬은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을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명칭의 혼동을 지볼트의 잘못으로 돌렸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인이 1881년 어업과 벌목활동을 일삼자, 조선 정부가 일본인의 이주를 항의하고 금지시켰던 장소는 바로 울릉도였다. 일본 외무성은 "한

9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 간에 존재했던 모든 충돌이 울릉도에 관한 것이고, 현재의 다케시마(竹島)는 양 정부에 의하여 논쟁된 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10]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독도에 대해서 한국과 논쟁 또는 합의한 적이 없다는 논리를 핵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구별하려는 노력을 전개했지만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되고 관리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국제법적 영토권 설정에 '영토 의사 표시와 효과적인 관리'를 지적했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나카이 요자부로의 어업활동'을 근거로 제시했다. 결국 '시마네현고시 제40호'의 사본 문제 및 '고시'의 유무, '나카이 요자부로의 어업활동'의 불법성 등을 해명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

일본 외무성은 "현대 국제법의 견해에 따르면, 국가가 육지에 영토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육지를 자국 영토의 일부로 하고자 하는 의사 및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합병 전에 다케시마를 1905년 2월 22일자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하여 시마네현에 속하는 오키도사의 관리하에 두었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일본 정부의 관허를 얻어 다케시마에 소옥(小屋)을 세우고 도서 근방의 강치 포획에 착수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를 "일본인이 제2차 세계대전 발발까지 효과적으로 개발했다"라고 주장했다.[11]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국제법적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나카이 요자부로의 어업활동'의 불법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1904년 러일전쟁과 1905년 을사늑약이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영토 침략과 식민지 정책을 외면했고,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은 나카이의 특혜 사실 및 불법

10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5-16쪽.

11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어업을 고려하지 않았다. 더구나 나카이는 강치 포획을 남발하여 독도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했다.

1953년 9월 9일 한국 외무부는 1953년 7월 13일자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 외무부는 한국의 고대문헌 및 역사책에 기록된 독도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제시했다.

한국 외무부는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에 일관성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울릉도는 우릉, 무릉, 울릉도 등으로 불렸고, 독도는 우산 또는 삼봉도라고 불렸다는 것이다. 경상도 방언에서 '독'은 돌(石) 또는 암(岩)을 의미한다. 독도는 돌섬(石島) 또는 암도(岩島)를 의미한다.[12]

한국 외무부는 안용복의 울릉도와 독도 수호, 심흥택의 울릉도와 독도의 경영과 관리를 제시했다. 『숙종실록』에 근거하여, 1696년 안용복을 포함한 한국인이 울릉도 및 독도에 가서 한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일본 선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중 경고했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한국 외무부는 한국이 독도를 발견하여 자연히 평화적으로 점령의 정당한 권리를 가졌고, 울릉도의 속도로서 도서상의 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독도를 경영하고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은 '본군 소속 독도(本郡所屬獨島)'라고 한국 정부에 공문서를 제출했다. 독도는 1910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점령하기 이전까지 울릉도의 행정관리 담당자가 관리했다."[13]

한국 외무부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강조했다. 즉 일본은 소위 '한일의정서(1904년 2월 23일)'와 '한일협약(1904년 8월 22일)'을 한국에 강요했다. 일본은 필요하면 전략적 기지에서 한국 영토의 어떤 부분도 점령할 수 있었고, 외국인 외교고문들의 권고를 받도록 강요했다.

---

12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32쪽.

13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3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 외무부는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고시를 통고하지 않았으며 지방청의 고시가 한국의 주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외무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상적인 외교 절차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 법적으로 송부하지 않았다.[14]

한국 외무부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관계없이 1910년까지 독도 영유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근거로 한국 외무부는 나카이가 1904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판단했던 사실, 1907년 통감부 수산과 소속 이하라 분이치(庵原文一) 기사(技師)가 어업 조사를 실시하면서 독도를 포함시켰던 사실 등을 제시했다.[15]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는 독도가 시마네현의 관할하에 법적으로 있었는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16]

1954년 2월 10일 일본 외무성은 1953년 9월 9일자 한국 외무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했다. 일본 정부는 'Dokdo'('Takeshima')로 표기하면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역사적 사실 및 문헌 등이 현저한 오해에 근거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나열했다.[17]

일본 외무성은 독도의 명칭에 대해서 한국 자료를 정리했다. 일본 정부는 우산도와 우산국이 모두 울릉도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문헌을 통해 울릉도와 다름없는 삼봉도 또는 우산도(于山島)에 관한 인용(passages)을 지적한다"라고 했다. 그 근거로 첫째, 『세종실록』에 따르면 "신라시대에 그 섬은 우산국이라 칭하고 또한 울릉도로서 알려졌다"라는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에도 "일설에 의하면 우산과 울릉은 일도이며 동일한 도명을 가졌다"[18]라고 나온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우산도

14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35쪽.
15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36쪽.
16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38쪽.
17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43쪽.
18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4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와 우산국을 구별하지 못했고, 『세종실록』에 없는 '그 섬은(the island)'이라는 대목을 삽입하여 오역했으며, 『세종실록』의 핵심 부분인 우산(于山)과 무릉(武陵)의 구별을 고의적으로 회피했다.

일본 외무성은 『숙종실록』에 기록된 안용복 관련 사실을 부정했다.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선을 만나 울릉도와 독도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그해에 울릉도에 접근한 일본인 어부들은 전혀 없었다.[19]

일본 외무성은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포함한 울도군수 심흥택과 사무관 진자이의 관련 문서를 제시했다.

일본 외무성은 "1906년 3월 시마네현청의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를 지휘자로 한 40명 이상이 다케시마의 현지조사에 종사했고, 울릉도를 방문하고 심흥택을 만났다. 진자이는 다케시마에서 포획한 강치 1마리를 군수에게 선물하고 심흥택은 방문과 선물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했다. 만약 군수는 다케시마가 울릉도에 속한다고 생각했다면 그와 같이 진자이를 영접하지 않았을 것이다"[20]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라면 심흥택이 진자이의 선물과 방문을 거절했어야 한다는 궁색한 주장을 폈다. 당시 대한제국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일본에 외교권을 빼앗긴 상황이므로, 한국 관료가 일본 관료의 방문을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나카이가 "다케시마에 관해 오키도청에 제출한 이유서에 따르면, 나카이는 다케시마가 장기간 일본인에 의하여 인지되고 관리되었다고 믿었다." 일본 외무성은 나카이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믿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한국

---

19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46쪽.

20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4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부로부터 독도를 양도받을 신청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21]

일본 외무성은 1910년에 발간된 『한국수산지』의 독도 관련 내용을 부정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1910년 5월 출판하고 한국의 농상공부 수산과에서 편찬한 『한국수산지』 2권에서 독도의 명칭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들이 위치 선정한 소위 '다케시마' 어느 것도 현재 문제의 다케시마와 동일시할 수 없다."[22] 실제 『한국수산지』에는 '죽도(竹島: Liancourt rock)'라는 섬이 표기되었으므로 일본 외무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통감부가 1908년에 간행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에는 독도를 '죽도(竹島, Liancourt rocks)'로 표기하고 있다.[23]

일본 외무성은 1904년 2월 23일자 소위 '한일의정서'와 8월 22일자 '한일협약'의 '죽도'와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일의정서'와 '한일협약'은 "러일전쟁 기간 한국의 영토 보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시상의 장소를 잠시 점령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었고,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려는 어떤 수단도 취하지 않았다"[24]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제국주의 영토 팽창을 의미하는 러일전쟁을 미화했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부정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은 일본 내무성이 러일전쟁과 독도와의 연관성을 언급한 사실조차도 부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현대 국제법에 근거하여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필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영토를 획득하는 국가의 의사, 둘째, 의사(intention)의 공적 발표, 셋째, 영토를 지배하는 적당한 세력(adequate power)의 수립이었다.[25] 그럼에도 이것에 근거하면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공적 발표'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의

---

21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49쪽.

22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50쪽.

23 農商工部 水産局, 『韓國水産誌』, 日韓印刷, 1908. 100쪽; 부경대학교 해양문화연구소, 『한국해양사자료총서』 1권, 새미, 2010, 118쪽.

24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51쪽.

25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5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영토 취득에 실패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에 관한 조선의 '공도정책'을 내세워 한국의 고유영토론을 부정하고 일본의 일방적 독도 고유영토론을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다케시마는 '마쓰시마'의 옛날 명칭으로서 일본에 알려졌고, 일본인은 일본 영토의 일부로 생각하고 항해와 어업에 이용했다. 에도시대(江戶時代)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쇼군(將軍)은 요나고의 오야(大谷)와 무라카와(村川)에게 다케시마를 지배하도록 허가했고, 다케시마는 울릉도에 항해하는 데 중간 정박소로서 사용되었다. 일본인은 다케시마를 포함한 해역에서 어로 및 수렵에 종사했다."[26] 일본 정부는 자국이 울릉도과 독도의 어업을 허가한 사실만 기록하고 금지한 사실은 은폐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대해서 공도정책(Policy of non-inhabited island)을 수행하여 울릉도보다 더 떨어진 다케시마에 행정적 지배를 확장하지 않았다. 더구나 다케시마의 영토권은 한일 간에 논의된 적이 없었다."[27]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의 수토정책을 부정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현대 국제법하의 영토 취득의 조건을 충족했다며 국제법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핵심은 영토 취득 의사, 공개 발표, 영토 지배였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첫째, 일본 정부는 영토를 획득하는 국가의 의사를 실행했다. 즉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로 1905년 1월 28일자 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둘째, "영토를 획득하는 국가 의사의 공개 발표(public announcement)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청이 발행한 고시(notification)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일

---

26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53쪽.

27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5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본 외무성은 당시 선점의 발표에서 '고시'라는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일본 외무성은 영토에 대한 국가의 '공개 발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시마네현청이 발행한 '고시'가 공개 발표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론적으로 그 소유를 완성하기 위하여 영토를 지배하는 적당한 권력의 수립이 필요하다." 일본 외무성은 1905년 8월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松永武吉)의 현장조사, 1906년 3월 시마네현청의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를 포함하는 40명 이상의 현장조사, 1905년 5월 17일 일본 정부가 토지대장에 기입한 사실 등을 주장했다.[28] 또한 시마네현은 '죽도' 강치 포획을 위해서 1905년 4월 14일자 시마네현령 18호에 의해서 어업통제규정을 개정했고, 1905년 6월 5일 나카이 등 4명에 대해 '죽도'의 강치 포획 면허를 허가했다.[29]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독도 편입 이후 강치의 포획이 줄어들어 독도 주변에서 어업이 중단된 상황을 기록하지 않았다.

1954년 9월 25일 한국 외무부는 1954년 2월 10일자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박했다.

한국 외무부는 일본 외무부가 주장한 문헌과 서류의 내용이 불확실하며, 또한 영토주권의 취득 권리의 근거인 '선점'을 독도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외무부는 "각종의 증거로서 고대부터의 독도에 대한 한국의 소유권과 독도에 대한 효과적인 한국의 관리를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주장했다.[30]

한국 외무부는 역사적 사실을 제시했는데 우선 우산도 명칭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박했다. 한국 외무부는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근거하여 우산과 울릉 2도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산국과 우산도를 구별했는데 우산도는 우산국의 일부였다.[31]

---

28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55쪽.

29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56쪽.

30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76-77쪽.

31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78-7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 외무부는 조선 정부가 3년에 한 번씩 수토관(搜討官)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일본인의 범경유무(犯境有無)를 조사했고, 일본 정부도 『숙종실록』의 안용복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1837년 일본인 하치에몬(八右衛門)의 울릉도 밀무역을 금지시켰다고 주장했다.[32]

한국 외무부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정책 및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불법성을 비판했다. 일본 제국주의가 1904년부터 1906년까지 불법적인 조약과 협정을 한국에 강요한 상태에서, 한국 영토에 대한 불법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한국 외무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04년 2월 소위 '한일의정서'를 강요했고, 1906년 2월 '통감부'를 설치한 상황에서 1906년 3월 진자이 시찰단이 울릉도를 방문했다.[33] 일본은 1904년 8월 22일 '1차 한일협약'(한일협정서)에 근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스티븐스를 외교고문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했다.[34] 한국 외무부는 일본 제국주의가 1904년 이후 한국 영토를 강제 점령할 목적으로 측량 행위와 강치 어업 등의 불법적인 한국 침략을 기도하여, 국제법의 '영토지배권의 계속적 행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35]

한국 외무부는 독도가 한국 영토의 일부였으므로 국제법상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외무부에 따르면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이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편입을 결정했다는 주장은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정책에서 나온 것이었다.[36] 한국 외무부는 "시마네현청의 고시라 하는 것은 암암리에 시행된 것으로 외국에는 물론 일본의 일반 국민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를 결코 일

---

32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82-83쪽.

33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84쪽.

34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87쪽.

35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91쪽.

36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9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가의 의사의 공표(公表)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37]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공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 외무부는 1904년 나카이 요자부로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단하고 독도를 대여(貸與)받으려고 노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외무부에 따르면 "나카이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믿었고,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보다 1년 전부터 한국 정부로부터 독도를 대여받을 것을 운동했다."[38]

일본은 먼저 한일 양국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고, 제3자인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외무성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처음으로 한국 외무부에 제안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 정부의 누차의 진정과 중대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의 침입, 다케시마 주변 영해의 어로, 다케시마에 한국의 국토 표식과 등대 설치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 최근 일본 감시선이 다케시마에서 사격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가 국제법의 근본 원칙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영토권에 관한 분쟁인 만큼 일본과 한국 정부의 상호 합의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39]

1954년 10월 28일 한국 외무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분쟁화하려는 시도"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거부했다. 한국 외무부는 독도가 한국 주권의 상징이며 한국 주권의 보전을 시험하는 실례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국은 독도에 대하여 시초부터 영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권리에 대한 확인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제기를 제안하여 소위 독도 영유 분쟁에 관하여 다만 잠시라도 자국

37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91쪽.

38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85쪽.

39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74-7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한국과 동등한 입장에 놓으려는 의도이다."

한국 외무부는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1905년 시마네현청이 독도를 관할권에 일방적으로 포함시켰고, 1910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했으며, 그 결과 한국이 40년 이상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권리를 약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독도가 일본 침략의 희생물이 된 최초의 한국 영토였다"라는 것이다. 한국 외무부는 독도를 통해서 일본이 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침략을 반복하고 있는지 의심했다.[40]

그러자 일본 외무성 정보문화국은 1954년 10월 28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제안을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라며, "한국 정부가 다케시마 문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41]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1956년 9월 20일 일본 외무성은 1954년 9월 25일자 한국 외무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박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독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법적 점유, 한국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일본 외무성은 "무선장치 등의 시설을 다케시마로부터 즉각 철수 및 제거하고, 다케시마 사진을 담은 우표를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42]

일본 외무성은 첫째, 한일 양국 중 어느 나라가 독도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가졌는가, 둘째, 독도를 영토의 일부로 생각하고 경영했는가, 셋째, 어느 정부가 독도에 관

---

40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19-121쪽.

41 외무부 정무국, 『독도문제개론』, 외교문제총서 11호, 1955(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편, 『독도문제개론』, 2012 재발행, 158쪽).

42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3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 국제법상 필요한 영토 취득의 요건을 충족했는가 등을 핵심으로 판단했다.[43] 일본 외무성은 독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 영토의 경영,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조건 등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일본 외무성은 우선 독도의 명칭에 대해서 정리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첫째,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우산(于山), 무릉(武陵) 양도설(兩島說)을 취하고 있는데, 그 주기(注記)에서는 이 두 섬이 울릉도이며 신라시대의 우산국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해석은 "신라 때에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 하였다"라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우산과 무릉 이도설을 인정했지만 "두 섬이 울릉도"라고 잘못 해석했다. 둘째,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증보문헌비고』 등과 같이 이도설(二島說)을 취하면서도 일도이명(一島二名)의 의문을 남기고 있다."[44] 일본 외무성은 우산도가 독도라는 사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두 문헌은 모두 "일도이명(一島二名)의 의문"이 없었고 우산도와 울릉도를 구별했다. 무엇보다도 일본 외무성은 '송도'가 '우산도'라는 『동국문헌비고』 등의 관찬사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고, 그 결과 조선 문헌의 정확한 지식과 연속적인 발전을 파악하지 못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고 정확한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1600년 이후 독도를 숙지하고 있었고, 일본 어민의 활동 장소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조선이 울릉도를 "완전히 공도화(空島化)하여 임진왜란 이후 약 100년에 걸쳐서 일본인의 어채지(魚採地)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울릉도 왕복 당시 배가 정박하는 곳으로서, 또한 강치와 전복 등의 어채지로 이용되었던 곳은 마쓰시마(松島)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오늘날의 다케시마였다."[45]

---

43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39쪽.

44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40쪽.

45 "교호(享保) 9년(1724), 막부의 명에 의해 호우키노쿠니 이케다번(伯耆池田藩)이 납품한 마쓰시마, 다케시마의 지도는 마쓰시마(즉 오늘날의 다케시마)를 좁은 물길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마주한 2개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 외무성은 과거 '마쓰시마(松島)'가 독도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것은 '마쓰시마'가 '우산도'라는 『동국문헌비고』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이 안용복 사건 이후 울릉도와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자국에 유리한 자료만 사용했다.

일본 외무성은 안용복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면서, 개인의 발언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46]

일본 외무성은 막부가 1618–1692년 울릉도를 경영했다고 주장했지만, 1696년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 이후 조선 정부가 울릉도에 수토관(巡檢官)을 정기적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47]

일본 외무성은 수토관의 보고서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1884년 조선 정부의 울릉도 개척을 인정하면서도 "작은 바위섬인 오늘날의 다케시마에까지 한국 측의 경영이 미쳤다"라는 사실을 부정했다.[48]

일본 외무성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905년 1월 28일 각의결정 및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를 거쳐 정식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조치를 취했다"[49]라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각의결정에 근거하여 시마네현 지사가 발표한 것이었고, 편입의 국내 형식에 관계 없이 일본의 국가 의사 표명이었고, 일본의 영토 취득 시의 관행이었던 고시 방법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외국에 대한 통고가 국제법 원칙에서 영토 취득의 절대적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50]

섬과 이를 둘러싼 여러 개의 암초로 나타내고 있다."(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42쪽)

46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43쪽.

47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46쪽.

48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47쪽.

49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49쪽.

50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5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 외무성은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의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한다'라는 규정을 1910년 일제강점 전의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것을 일본이 인정했다"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51]

그런데 당시 시마네현 지사는 도쿄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고시를 발표할 수 없었고, 상대국에 대한 통고의 의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 '일본의 영토 취득 시의 관행'은 무주지일 때 가능한 것이다. 더구나 에도 막부의 울릉도와 송도에 대한 도해금지, 태정관의 죽도와 송도에 대한 일본 영토의 부정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점하기 위해 러일전쟁을 일으켰고, 대한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통감부를 설치했다. 일본은 러일전쟁, 통감부 설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1910년에 한국을 강점했다. 결국 일본은 러일전쟁 이전 한국의 영토를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1959년 1월 7일 한국 외무부는 역사적·지리적 증거와 문헌이 증명하고, 국제법의 논쟁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1956년 9월 20일자 일본 외무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다시 반박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외무부는 독도 인근 영해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초계정이 무단 침입한 일에 대해 항의했다.[52]

한국 외무부는 조선시대 우산도와 울릉도가 각각 다른 2도(二島)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우산국은 울릉도 부근의 무인소도를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53] 한국 외무부에 따르면 일본에서 죽도와 송도의 명칭이 서로 바뀐 것은 일본인의 지리적 지식이 명확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했다.[54]

한국 외무부는 『증보문헌비고』「여지지(輿地志)」의 "울릉 우산 개우산국지 우산

---

51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53쪽.

52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86쪽.

53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88-189쪽.

54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9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즉왜소위송도야"(欝陵 于山 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라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이며, 우산도는 송도라고 기록했다.[55]

한국 외무부는 일본 외무성 관료가 마쓰시마(松島)를 우산(독도)으로 판명하고 일본 어민의 개척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외무부에 따르면 "1876-1878년 일부 일본 어민들이 소위 '송도개척원'을 제출했는데, 일본 외무성 공신국장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는 '마쓰시마(松島)는 일본인의 명명(命名)이나, 실은 조선 울릉도에 속한 우산(于山)이다. 지금 까닭 없이 사람을 보내어 순시한다는 것은 타인의 보배를 욕심내는 것이다'라고 하여 소위 개척을 불허하자는 결론을 내렸다."[56]

한국 외무부는 안용복의 도일담판사건(渡日談判事件)이 한국의 관찬기록 및 일본 기록(三國通航一覽)에도 나오는 사건이라며, 당시 일본 정부는 큰 충격을 받아 마침내 일본인의 출어를 금지시켰다는 점을 상기시켰다.[57]

결국 한국 외무부는 "독도가 역사상으로나 지리상으로나 분명한 한국 영토인 울릉도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진즉 공동운명체적 관계에 놓여온 것이고 반대로 무주물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외무부는 독도 관련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1905년 이전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한국 강점의 전초공작으로서 비밀리에 수행된 일방적인 국내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국 외무부에 따르면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적어도 1905년 당시까지 일본이 독도를 그 영토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하나의 유력한 반증을

---

55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90쪽. 여지지(輿地志, 1656년 東國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鬱陵)과 우산(于山)은 모두 우산국(于山國)의 땅이다. 우산은 왜(倭)가 소위 송도(松島)라고 한다.'(『東國文獻備考』 卷18, 輿地考 13, 關防 3, 海防 1, 東海 蔚珍, 1770年 發刊, 8-12쪽(奎章閣 古 031-H757do); 『增補文獻備考』 卷31, 「輿地考 19」, 關防 7, 海防 1, 東海 蔚珍, 1908, 6-11쪽))

56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91쪽.

57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9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시하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여 궁극적으로 병탄(倂呑)하기 위한 전초공작(前哨工作)으로, 우선 독도 침범행위를 합리화할 하나의 구실로서 마치 무주지 선점과 같은 국내적 조치에 불과했다.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일방적 국내 조치로 국제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외국에는 물론 일본의 일반 국민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58] 일본은 자국의 소수 관료만 파악한 종이 조각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59]

한국 외무부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사이의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정리했다. 한국 외무부에 따르면 "1895년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을 개시하여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을 감행했다. 소위 독도를 편입하기 전년인 1904년 8월 22일 소위 '한일협약(韓日協約)'을 강요하여 사실상 한국의 실권을 장악했다. 한일협약 제2항에 의해 스티븐슨을 매수파견(買收派遣)하여 한국의 외교상의 실권을 장악했다. 연합국의 일본 영토의 처리는 카이로 선언과 대일평화조약에 이르는 일련의 국제문서에 의거했다."[60]

결국 한국 외무부는 대일평화조약 2조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원래의 한국 영토 일체(一切)를 대한민국에 반환할 것을 연합국에 엄숙히 약속하였다"라고 해석했다.[61]

1962년 7월 13일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1959년 1월 7일자 한국 외무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다시 반박했다.

일본 외무성은 국제법상 "국가가 문제의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적(實效的)으로 지배경영(支配經營)을 해왔는지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

58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94쪽.

59 "우리는 도리어 1888년 '국제법협회'의 선언이 선점에 관한 요건으로서 은밀한 고시가 아니라 외국에 대한 통고를 요구하고 있는 데에 일본 측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96쪽)

60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97쪽.

61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9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 외무성은 일본이 '죽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지배경영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와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 "지금의 '다케시마'를 마쓰시마(松島)라고 하고, 울릉도는 '다케시마(竹島)'라고 불렀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조선이 공도정책을 실시하여 울릉도의 경영을 방치했지만, 일본이 16세기 말부터 약 100년간 울릉도를 일본인의 어채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62]

일본 외무성은 "메이지 초년(1877-1878년)에도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인 것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역사적 근거를 배경으로 메이지 38년(1905) 1월 28일의 각의결정 및 같은 해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를 거쳐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조선의 고문헌과 안용복의 진술 등을 부정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일본 외무성은 "조선의 고문헌에서 다케시마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증보문헌비고』에 기록된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63]

일본 외무성은 "안용복의 공술이 허위로 가득하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사인(私人)인 그의 언동은 한국에서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64]

일본 외무성은 일본의 '죽도'와 '송도'라는 명칭의 변동은 유럽인의 판정 오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1840년 지볼트가 일본 지도를 만들 때에 종래의 일본 지도에 다케시마(지금의 울릉도),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로 적혀 있던 것을 잘못하여 다케

62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236쪽.

63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239-240쪽.

64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24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마를 아르고노트(Argonaute)섬에, 마쓰시마를 다줄레(Dagelet)섬에 적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유럽인의 측정 오류에서 비롯한 다케시마, 마쓰시마 두 섬의 이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1905년 2월 종래의 '마쓰시마'가 시마네현에 편입될 때에 이것을 '다케시마'라고 정식으로 명명했다"[65]라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1877년 '송도개척원'에 대해서 공신국장 다나베 다이치의 '송도'가 울릉도에 속한 '우산도'일 가능성을 인정하고, 기록국장 와타나베 히로모토(渡邊洪基)의 '송도'가 '호넷 락스'라고 스스로 기록했다. 그럼에도 일본 외무성은 '우산도'가 독도라는 사실을 부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1880년 9월 군함 아마기(天城)가 가서 실제로 이 섬을 측량한 결과로서, 마쓰시마는 울릉도 그 자체이며 울릉도 부속의 섬에 다케시마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66]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송도개척원을 심사했던 외무성의 요로(要路)는 다케시마가 일본령에 속하며 조선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송도개척원'을 통해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확정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럼에도 일본 외무성은 '송도개척원' 과정에서 일본 외무관료가 울릉도와 울릉도의 부속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극구 부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대해서 "일본이 근대국가로서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일본의 근대 행정구역 안에 편입하고 공시한 것으로, 다케시마에 대한 실효적인 점유 및 경영에 의한 주장의 행사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각의결정에 근거하여 시마네현 지사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이러한 절차는 당시 일본이 채용하고 있던 통상의 편입 방법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67]

---

65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243쪽.

66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244-245쪽.

67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24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 외무성은 "실제로 시마네현 고시는 메이지(明治) 38년 2월 22일자 시마네현 현보(縣報)에 실려 있으며, 1905년 2월 24일자 『산인신문(山陰新聞)』 제5912호는 위의 공시가 있었던 사실 및 내용을 보도했다"라고 주장했다.[68] 그럼에도 1905년 2월 시마네현 현보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 문서이고, 『산인신문』 제5912호는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직접 공표한 적이 없었다.

일본 외무성은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공시(公示, notoriety) 또는 공표(公表, publication)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국제법에서 영토 취득의 요건으로 외국 정부에 대한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시마네현 고시 이전부터 다케시마를 유효하게 경영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고 전혀 근거도 없다"라고 주장했다.[69]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다케시마는 옛날부터 일본국 및 일본 국민이 평화적으로, 또한 공공연히 영유하고 유효적으로 경영해왔다"라며 일본이 무력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70]

1965년 12월 17일 한국 외무부는 1962년 7월 13일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전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짧게 반박했다. 한국 외무부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이며,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합법적인 영토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71]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과 한국 외무부는 1952년부터 본격적으로 독도를 둘러싸고 외교적인 문서를 주고받았다. 일본은 현재까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1945년 이후 패전국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을

---

68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246쪽.

69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247쪽.

70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248쪽.

71 外務部 編, 『獨島關係資料集(Ⅰ):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28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계기로 1954년 9월, 한일 수교협상을 계기로 1962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인 2012년 8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일본이 한일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한국은 오히려 독도가 아닌 한일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동북아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국주의 고향의 소멸을 의미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책의 기초가 된 논문

김영수, 「근대 독도 · 울릉도 명칭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시각」, 『역사와현실』 73, 2009.

김영수, 「과거를 현재로 끌어낸 역사자료의 힘: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한국근현대사연구』 53, 2010.

김영수,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 판례와 사료적 증거」, 『독도연구』 10, 2011.

김영수, 「국제관계가 한반도에 남긴 어두운 그림자: 독도 1947」, 『영토해양연구』 1, 2011.

김영수, 「뀌네르의 한국개관에 나타난 한국 영토와 자료」, 『이화사학연구』 48, 2014.

김영수, 「근대 독도 포함 해양 관련 역사분야 성과와 한계」, 『동북아역사논총』 53, 2016.

김영수, 「근대 서양인이 바라본 한국의 영토와 해양」, 『역사학보』 232, 2016.

김영수, 「근대 러시아의 해양탐사와 울릉도 · 독도 발견」, 『독도연구』 22, 2017.

김영수, 「고종과 이규원의 울릉도와 독도 위치와 명칭에 관한 인식 과정」, 『사림』 63, 2018.

김영수,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탐사와 곤차로프의 조선, 일본, 중국 인식」, 『독도연구』 25, 2018.

김영수, 「러시아함정 야꾸트호의 울릉도 조사의 과정과 내용(1903)」, 『군사』 109, 2018.

김영수, 「일본정부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의 과정 및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고시'의 유무」, 『동북아역사논총』 62, 2018.

김영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전후 석도와 독도 등의 명칭 관련 한국의 인식」, 『역사학보』 242, 2019.

김영수, 「러일전쟁 전후 울릉도 군수 심흥택의 활동과 대한제국의 영토해양 정책」, 『이화사학연구』 58, 201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찾아보기

ㄱ

가게야마 간파치로 513
가사노(笠野) 136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33
가우쁘트(Н.А. Гаупт) 366
가이다막호 112
가지도(可支島) 48
가타오카 히로치카(片岡廣親) 311
가토 주조(加藤重造) 383, 397, 398, 415, 423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512
각의결정 393
『강계고(疆界考)』 186, 188
강영우 452, 459, 460, 462, 465, 466, 468, 471, 472, 474, 475, 477, 482, 483
『강원도지』 493
강치 49, 227, 385, 386, 389, 390, 393, 397, 399, 414, 417, 418, 430, 431, 433~437
거문도 73, 88, 96, 102, 116
거제도 121
『고려사(高麗史)』 168, 183, 184, 532
고무라 475, 483
고종 118, 119, 179, 195, 197, 224, 226, 230, 241, 260
『고종실록』 534
고쿠분 쇼타로(國分象太郎) 474
고하라 이와조(小原岩藏) 389
곤차로프(И.А. Гончаров) 56, 57, 62~68, 70~75, 86, 88, 90, 91, 93, 95~101, 103, 104
공기지(空其地) 532
『공문류취(公文類聚)』 410
『관보』 289, 291
구연수 515
『궁내부잡철』 516
그리피스(W.E. Griffis) 140, 141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132
기르스(Н.К. Гирс) 114, 117, 118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 378, 379, 394, 410
기죽도(磯竹島) 167
기쿠모토 겐타로(菊本源太郎) 429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 128, 152
길떼브란트(Я.А. Гильтебрандт) 80, 337, 34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41, 342
길랴크(Gilyak, Nivkh)족 74
김규홍 494~497, 499, 521
김기우 501
김면수(金冕秀) 250, 324~326
김병시(金炳始) 115
김성원(金聲遠, Kim Long-won) 250, 254
김수희 378
김영학 502, 503, 504
김옥균 43, 201, 232
김용원(金庸爰) 263, 314
김인승(金麟昇) 135, 136, 140, 141, 143
김정근(金禎根) 361, 363, 364, 464, 468, 469, 478, 479, 498, 500, 522
김취로 531
까레예쯔(Кореец)호 120, 121, 341, 355, 366
까르쩨프(В.А. Карцев) 361, 362, 364~367, 374
꾸라빠뜨낀(А.Н. Куропаткин) 333
꾸리엘호(Куриэль, 쿠리엘호) 138
뀨네르(Н.В. Кюнер) 334, 335, 347~351
끄레이세르(Крейсер)호 115
끄론쉬따트(Кронштат) 83
끄루젠쉬떼른(И.Ф. Крузенштерн) 111

ㄴ

나가사키 73, 75, 90, 100, 120, 151
나미 칸이치(永海寬市) 433
나카다 다타이치(仲田忠一) 432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 49, 378, 380, 381, 387, 391, 397~399, 409, 412~416, 428, 433~435
나카토세 니스케 384
남정익(南廷益) 232
『노보에 브레먀』 334
노세 다쓰고로(能勢辰五郎) 318, 534
니꼴라이 2세 343
니이타카호(新高號) 47, 526

ㄷ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 155, 159, 161, 163
다비도프(Давыдов) 117
다줄레(Dajalet, Dagelet)섬 141, 348, 355, 367
다카오 겐조(高雄謙三) 310, 357
다케우치 다케시(竹內猛) 378
『대동보(大東報)』 529, 538, 537, 539
대어국환해사도(大御國環海私圖) 160
대일본국송도규곡(大日本國松島槻谷) 43
대한제국 260, 261, 262, 268, 276, 281, 282, 285, 287, 302, 303, 308, 324, 325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47, 48, 286, 444, 484, 489, 526, 530, 543
『대한지지(大韓地誌)』 530
대한해협 345
데리지미 무네노라 155
도다 다카요시(戶田敬義) 144, 145
도해면허(渡海免許) 144
독도 77~79, 143, 194
독도 어업권 423
『독도연구(獨島硏究)』 34
독사유감(讀史有感) 442
돗토리현(島取縣) 149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182, 185, 190, 192~194, 196, 229, 533, 544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18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국여지지』 189
『동국통감(東國通鑑)』 168
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島開拓使) 44, 232
동남제도개척사겸관포경사(東南諸島開拓使兼管捕鯨事) 41, 44
『동방학소식(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355
두바소프(Ф.В. Дубáсов) 336
드미뜨리 돈스꼬이(Дмитрий Донской)호 341, 505
띄르또프(П.П. Тыртов) 119, 336, 337, 352

ㄹ

라듸젠스끼(Н.Ф. Ладыженский) 117
라자레프 115
라페루즈(La Perouse)호 367
라페루즈(Лаперуз) 탐험대 348
라포르트(E. Laporte, 羅保得) 249, 250, 252~259, 297
러시아 극동정책 342
러일전쟁 50, 332, 333, 343, 354, 487, 502, 505
레베제프(Е.Лебедев) 355, 365~375
레사르(П.М. Лессар) 333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リヤんコ島領土編入並び貸下願)」 387, 412, 413
리하체프(И.Ф. Лихачев) 112, 113
리훙장(李鴻章) 117
린데스뜨람(Линдестрам) 121

ㅁ

마까로프(С.О. Макаров) 119, 368
마산포 121
마쓰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 389, 393, 396, 400, 406, 409
마쓰다 마모루(Мацуда Мамору) 347
마쓰모토 시게요시(松本繁榮) 311
마쓰무라 야스타네(松村安種) 168
마쓰시마 49
마키 나오마사(牧朴眞) 378
만주 132
메넬라이(Менелай) 77, 111, 345, 388
메르꾸쉐프(В.А. Меркушев) 365
메이지 유신 132
멘쉬꼬프호 87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 穆麟德) 116, 249
무라비요프 336
무릉(武陵) 192
무주지 선점론 51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 131, 135, 145~147, 157, 166, 168
『문헌비고(文獻備考)』 533
뮈텔 250, 251
미우라 시게사토(三浦重郷) 111, 164, 165
미첼(Митчель, Mitchell) 234, 368
민영목(閔泳穆) 233

ㅂ

박보리스(Б.Д. Пак) 57
박영효(朴泳孝) 178, 241
박정양 241
박제순(朴齊純) 250, 263, 265~267, 270, 273, 274, 281~283, 286, 325, 461, 47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80, 489, 510, 522, 541
박지양(朴芝陽) 272
박지영(朴之榮) 237
배계주(裵季周) 241, 254, 260, 261, 264, 265, 271, 278, 279, 287, 297, 300, 311~313, 315, 316, 322, 444~450, 452~454, 457, 458, 463, 465~472, 475, 482, 484, 485, 539
배일격문(排日檄文) 사건 501, 502
배치겸 455
베베르(К.И. Вебер) 115, 119
베자브라자프(А.М. Безобразов) 333
벤제니우스(C.G. Benzenius) 249, 255
보각(К.И. Богак) 333
보스톡호 83, 87
보신전쟁(戊辰戰爭) 135
보예보다호 112
부산항 121
부솔(Boussole)호 367
불법벌목 462, 463, 485, 502, 506
브라운(J.M. Brown, 柏卓安) 251, 253
브리네르(Бринер) 368
블라디보스톡 114, 120, 122, 131, 133, 134, 136, 138, 139, 146, 153, 154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531
빠블로프(А.И. Павлов) 333
뻬쩨르부르크 76
뽀드스따빈(Г.В. Подставин) 347
뽀시예트(Посьет, 포시에트) 121, 133~135, 138
뽀즈드네예프(Д.М. Позднеев) 334
뽀지오 344~346, 351
뿌쨔찐(Е.В. Путятин) 59, 60, 66, 67, 70, 72, 74~77, 83, 85~87, 92, 94, 98~102, 111

ㅅ

『사업경영개요(事業經營概要)』 378, 394
사이토 시치로베에(齊藤七郎兵衛) 152, 160, 166, 168
사카다 모로도오(坂田諸遠) 159
『산인신문(山陰新聞)』 403, 405, 406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 167
『삼국사기』 183, 532
삼림벌채권 360
삼봉도(三峰島) 48, 192
상하이 153
서경수(徐敬秀) 234~236, 299
세르게예프 중령(Подполковник Сергеев) 78
세와키 히사토(瀨脇壽人) 130, 131, 152, 154, 155, 158, 159
『세종실록(世宗實錄)』 177, 183, 184
세벨료프선박회사(Шевелёв) 353
소볼(Соболь)호 112
솔즈베리(R.G. Salisbury) 253
송도(松島) 48, 49, 128, 131, 135~137, 139, 142, 143, 145, 147, 150, 153, 159, 167, 191, 207, 223, 225
송도개도원서병건언(松島開島願書幷建言) 154
송도개척론 40
송도개척원 130
수토정책 177
쉐스따꼬프(И.А. Шестаков) 114, 116
쉬빼이에르(А.Н. шпейер) 117
슈미트(Шмидт) 118
슈요국(周陽國) 389
스끄리쁠료프(Скрыплёв)섬 341
스뜨렐린꼬프(Стрельников) 13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스뜨루베(К. В. Струве) 133
스미스(D.H. Smith) 451, 452
스빨빈(Е.Г. Спальвин) 347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359
시마네현(島根縣) 144, 149, 323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51, 378, 381, 389, 403, 405, 406, 408, 409, 410~413, 540
『시마네현현보(島根縣縣報)』 403
시모노세키 147
시모다조약(Treaty of Shimoda, 下田條約) 75, 85, 102
시모무라 린하치로(下村輪八郎) 160
시베리아 횡단철도 122
시부치(Сивуч)호 79, 116, 120
신경준(申景濬) 186, 188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81~183, 185, 187, 188, 191, 196, 229, 533, 544
심능익 515, 516, 517
심순택(沈舜澤) 203, 206, 299
심홍택 48, 360~365, 487~495, 497~503, 505, 507~512, 521, 523, 528, 540~543
쓰시마 113, 137
쓰시마 도주(對馬島主) 128

ㅇ

아관파천 299
아드미랄 꼬르닐로프(Адмирал Корнилов)호 354, 356, 357, 359
아라오 세이(荒尾精) 132
아르고노트섬 148
아리마 다카노부(有馬高孝) 359, 360, 489, 496
아리마 다카요시 494, 495
아마기함(天城艦) 111, 128
아스트롤라베(Astrolabe) 76
아시아주의 132, 157
아오키(青木) 269, 276
아이사카 고헤에(合坂五兵衛) 420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272, 277, 310, 312, 313, 315, 316, 319, 320~323
아파나시예프(Афанасьев) 134
안용복 193, 533, 545
안용복 사건 281
알렉세예프(Е.И. Алексеев) 80, 333, 342, 343, 352, 375
야꾸트호 365, 366, 374, 376
야나기 나라요시(柳楢悦) 165
야마모토 오사미(山本修身) 46, 202, 221
야마자 엔지로(山座圓次郎) 378, 394, 410
양코도 49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202
에도막부(江戶幕府) 222
「여지고」 190
『여지승람(輿地勝覽)』 168, 533
연해주 156
영일만(Унковский) 116
예르마크(Ермак)호 354
예밍천(葉名琛) 58
오경진(吳兢鎭) 93
오노 케이지(大野桂治) 314
오상규 457, 465
오상일(吳相鎰) 278, 311, 313, 452
오스똘로뿝프(Остолопов) 115
오영렬 446, 460
오쿠무라 아키라(奥村亮) 53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오쿠무라 헤이타로(奧村平太郎) 535
오키 148
오키국(隱岐國) 144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534
오페르트(Опперт) 355
올리부차 77, 111, 345, 388
와키타 쇼타로 452
와타나베 다카지로(渡邊鷹治郎) 297
와타나베 히로모토(渡邊洪基) 131, 147~149, 150, 163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32
요시다 헤이고 513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 391, 393, 407
우릉(羽陵) 192
우산(于山) 161, 192
우산국(于山國) 190, 302
우산도(于山島) 48, 181, 180, 191, 193, 196, 223, 226
우에노 가게노리(上野景範) 206
우용정 271, 273, 278, 287, 296~310, 314, 316, 325, 358, 444, 448, 449
울도(鬱島) 229, 234, 290, 302
울도군수(鬱島郡守) 290
「울도기」 302
울도에 관한 조사(鬱島에 關ᄒᆞᆫ 調査) 519
울도연혁시말(鬱島沿革始末) 531
울릉(蔚陵) 192
울릉감무(鬱島監務) 262
울릉도(鬱陵島) 77, 79, 80, 132, 139, 143, 148, 191, 193, 194, 203, 206, 220, 222, 226, 230, 252, 260, 281, 322, 345, 346, 348, 349, 350, 353, 356, 357, 360, 367, 369~372, 374, 376, 449, 521
울릉도감(鬱陵島監) 290, 310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 41, 212, 217
「울릉도기(鬱陵島記)」 229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34
「울릉도외도(鬱陵島外圖)」 217
원산항 120, 152
윌포드(ботаник Вильфорд, botanist Wilford) 367
유리예프(Юриев) 119
유형원 187
윤시병 237, 238
『은자의 나라 조선(Corea: The Hermit Nation)』 140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59, 160
을사늑약 508, 509
의죽(礒竹) 192
이가환(李家煥) 191
이건하(李乾夏) 263, 265, 266, 268, 270, 273, 278, 279, 284, 287, 288, 296, 299, 297, 300, 450
이경렬(李京烈) 233
이구치 류타(井口龍太) 382, 397, 398, 415, 423, 427, 428, 433, 435, 438
이규원(李奎遠) 167, 179, 180, 181, 197, 202, 203, 208, 209, 210, 211, 213~215, 217~224, 226, 230, 299
이근택 458
이남희 470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203, 206, 207
이능해 468, 469, 479, 485
이도상 44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도재 494
이명래 504, 509, 514, 522, 541
이명우(李明宇) 203, 226~229
이뽀네츠호(Во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Японец) 134, 137, 143
이사청 542
이승채(李升采) 287
이오지마(硫黃島) 138
이와사키 다다테루(岩崎忠照) 220
이용익 461, 462, 463, 465, 469, 470, 484, 485
이용태 467
이원용(李源鎔) 272
이이명(李頤命) 195
이재극 470
이재면(李載冕) 207
이종인(李種仁) 236
이준명(李浚明) 195
이중하(李重夏) 178, 241
이쥬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250
이지용 522
이태욱 455
이하영(李夏榮) 361, 498, 499, 505, 522
이홍장 117
『일본수로지』 388, 390, 409
일본연합함대 541
임한수(林翰洙) 178, 203, 226

ㅈ

전석규(全錫圭) 231
『전함 팔라다호』 56, 84
전회일(田會一) 178
정기택 470
『제국신문』 262, 263, 265, 269, 287
제물포 118, 120
조던(J.N. Jordan) 250
조러수호통상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 115
조병규(趙秉圭) 262, 447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142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 536
조선해 159
조선해협(Восточный Корейский пролив, 대한해협) 79
조일수호통상조규 135, 158, 283, 486, 521
와타나베 다카지로(渡邊鷹治郎) 297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285
조종성(趙鍾成) 238
죽도(竹島) 48, 128, 131, 135, 139, 142, 143, 145, 147, 149, 150, 192, 193, 223
죽도경영상필요계획(竹島經營上必要計劃) 422
죽도경영에 관한 진정서(竹島經營ニ關スル陳情書) 421
『죽도고증(竹島考證)』 38, 39, 41, 128, 131, 166
『죽도급울릉도(竹島及鬱陵島)』 378
죽도대여청원(竹島貸與請願) 389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 145
죽도도해원서(竹島渡海願書) 166
죽도마루(竹島丸) 430, 431
「죽도서류잡찬(竹島書類雜纂)」 168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竹島漁獵海驢合資會社) 380, 381, 401, 412, 414~416, 418, 419, 430, 437, 43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죽도 어업권 432
죽도어업조합(竹島漁業組合) 423~428, 432
죽도의 날 51
「죽도판도소속고(竹島版圖所屬考)」 167, 206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194~196
『증정문헌비고(增訂文獻備考)』 194~196
「지리지」 184
지방구역정리(地方區域整理)에 관한 건(件) 508
『지봉유설(芝峯類說)』 187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 426, 427, 513

ㅊ

청일전쟁 332, 354
「총독부령 제111호」 517
최동식(崔東植) 286
최병린 456, 459, 484
최성린 539
최영하 478, 480, 481, 486
춘관지(春官志) 191

ㅋ

코펠(Coppell) 146
크림전쟁 76, 85

ㅌ

타케(камень Таке, 다케시마) 79
태평양함대 337, 340~342, 351, 352
통감부 290
『통감부통계연보』 347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166

ㅍ

파리조약(Treaty of Paris) 58
팔라다호(Фрегат Паллада) 57, 58, 61, 63~65, 67, 69, 71, 73~75, 77, 83, 84, 86, 88~91, 94, 95, 99, 100~102, 111
포시스(C.C. Forrsyth) 388
프리돌프 겍(фридольф Гек) 118
피오퀸토 항구 87

ㅎ

하마모토(畑本吉藏) 284
하시오카 다다시케(橋岡忠重) 417, 436
하시오카 도모지로(橋岡友次郎) 397, 398, 415, 423, 436
하야시(林權助) 267~269, 270, 271, 274, 275, 282~284, 318, 319, 359, 471~477, 480~484, 486
하타모토 요시조 452
『한국개관(Очерк Кореи)』 335, 344, 345, 347, 351
『한국근대도지』 218
『한국신지리(韓國新地理)』 349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34
『한국지』 334, 335
『한국지명총람』 528
『한국총람(韓國總攬)』 347
한규설 465
한러수교 114
한일공동조사위원 272
한일신협약 518
한일협정서 5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려어업허가원(海驢漁業許可願) 399, 400
해양탐사 114, 119
『행정제관청왕복잡서류(行政諸官廳往復雜書類)』 394
현상건 452
호넷록스(Hornet Rocks) 148
호리 신지(堀信次) 391, 397, 398, 400
홍봉한 186
홍순목(洪淳穆) 231
『황성신문(皇城新聞)』 232, 234, 251~253, 261, 270, 281, 289
황인건(黃仁建) 178
후지쓰 마사노리(藤津政憲) 221
후쿠마 효노스케(福間兵之助) 311
흥아회(興亞會) 128
히가시 분스케(東文輔) 391, 396, 397, 400~402, 417, 426, 428, 429, 430, 512
히가키 나오에(檜垣直枝) 221
히케(остров Хике, 이키)섬 7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88

제국의 이중성

근대 독도를 둘러싼 한국 · 일본 · 러시아

초판 1쇄 인쇄 2019년 6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19년 6월 30일

지은이 김영수
펴낸이 김도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9
이메일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9

ISBN 978-89-6187-475-5 9391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종합목록 구축시스템(http://kolis-net.nl.go.k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9023992)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